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10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목차

Ⅰ 화해·긴장완화 편

1. 정치적 화해 014
1-1. 내독관계의 성격 014
1-1-1. 특수관계: 서독측의 입장 017
1-1-2. 평화공존관계: 동독측 입장 026
1-2. 내독관계의 주요 쟁점 029
1-2-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시의 입장 차이 031
1-2-2. 단일 국적 문제 034
1-2-3. 민족(Nation) 문제 040
1-2-4. Salzgitter 소재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 폐지 문제 042
1-3. 정상회담 및 고위급 접촉 050
1-3-1. 회담 및 접촉 개관 050
1-3-2. Brandt-Stoph의 에어푸르트(Erfurt)에서 양독 간 첫 정상회담 051
1-3-3. Brandt-Stoph의 카셀(Kassel) 제2차 정상회담 055
1-3-4. 과거 동·서독 간 주요 정상회담 행사사례 조사표 060
1-4. 분쟁조정기구 072
1-4-1. 상주대표부 072
1-4-2. 3개 분야 공동위원회 108

1-5. 내독관계에 대한 동·서독측 기관 관할권 113
1-5-1. 서독측 113
1-5-2. 동독측 118
1-6. 정당 간 접촉·교류 120
1-6-1. 동·서독 정당들의 접촉·교류에 대한 입장 120
1-6-2. 기본 조약 체결 이전의 정당 간 접촉사례: 연사교환 제의 122
1-6-3. 동독의 위성정당들과 서독 정당 간의 접촉·교류 125
1-6-4. 서독 사민당(SPD)과 동독 공산당(SED) 간 교류 130
1-6-5. 녹색당(Die Gruenen)과 동독 정당들 간 대화 153
1-7. 서독 내 공산당의 활동과 서독 정부 대응 155
1-7-1. 통독 이전 독일내 공산당 현황 155
1-7-2. 서독에서의 KPD(독일공산당)의 불법화 157
1-7-3. DKP의 창당 및 활동과 서독정부 대응 162
1-8. 동·서독 간 간첩사건 처리 166
1-8-1. 동독의 대서독 간첩활동과 서독정부 대응 166
1-8-2. 기욤사건에 대한 서독정부 대응 169
1-8-3. 기욤사건에 대한 동독측의 반응 170
1-9. 인권문제 논란 172
1-9-1. 국제적인 인권규약과 동독 172
1-9-2. 동·서독의 인권개념 차이 173
1-9-3. 동독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75
1-9-4. 국제적 비난에 대한 동독측의 대응 182
1-9-5. 서독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 183
1-9-6. 국제기구(UN)를 통한 동독 인권문제 거론 187
1-10. 동독 지역 정치범 석방을 위한 내독 간 비밀거래(Freikauf) 191
1-10-1. 협상 및 동·서독의 입장 191
1-10-2. 거래의 시작 196

1-10-3. 지불방식 및 거래 201
1-11. 행정·사법 공조 208
1-11-1. 행정공조 208
1-11-2. 사법공조 210

2. 외교·안보와 내독관계 214
2-1.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독일통일 214
2-2. 동독의 대서방 외교정책 220
2-3. CSCE와 내독관계 224
2-3-1. 서독측의 독일(통일) 정책과 CSCE 224
2-3-2. 동독측의 CSCE 과정 참여에 대한 입장 229
2-3-3. CSCE가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 233
2-4. UN에서 동·서독의 활동 243
2-4-1. UN 가입 이전의 동·서독과 UN 243
2-4-2. 동·서독 UN 가입 후의 UN에서 활동 247
2-4-3. 동·서독의 UN내 투표행태 253
2-5. 군사·안보분야 교류·협력 256
2-5-1. 협상 및 협정 체결 256
2-5-2. 미·소의 유럽내 핵무기 배치와 동·서독 258
2-5-3. 양 독일 국가의 군비축소 및 군사협력 노력 260

Ⅱ 통행·통상·통신편

3. 인적 교류(통행 문제) 266
3-1. 협상 및 협정 체결 266

3-1-1. 통과(서독-서베를린 간) 교통협정(Transitabkommen) 266
3-1-2. 동·서독 간 통행협정(Verkehrsabkommen) 268
3-2. 여행 및 방문교류 275
3-2-1.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275
3-2-2.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278
3-2-3. 통과(서독-서베를린 간) 교통에 따른 동·서독 간 쟁점 286
3-2-4. 최소의무환전(Mindesumtausch) 제도 292
3-2-5. 내독 간 사체·유골의 반입·반출 294
3-3. 동독주민 탈출·이주문제 296
3-3-1. 동독측의 국경차단과 탈출·합법이주 296
3-3-2. 서독정부의 동독 피난민·이주민 정착지원 302
3-3-3. 동독으로부터 이주에 따른 이사물품 반출 309
3-4. 국경지역 개발 312
3-4-1. 서독측의 내독 간 접경지역 지원 312
3-4-2. 국경부근에서 동·서독 간 협력사업 322
3-5. 동·서독 교통망확충 공동 프로젝트 325

4. 경제 교류·협력(통상문제) 328
4-1. 내독교역의 국제·국내정치적 재조명 328
4-1-1. 냉전의 도구로서 내독 간 경제교역 328
4-1-2. 화해기의 접근을 통한 변화와 내독교역 337
4-1-3. 기본조약 체결 이후의 내독교역 344
4-2. 내독 경제교역의 시작과 협정상 근거 348
4-3. 내독 교역의 현황과 발전 과정 352
4-3-1. 일반현황 352
4-3-2. 품목별 현황 355
4-3-3. 내독교역이 동·서독에 갖는 의미 361

4-4. 내독교역 상의 청산·지불 368
4-4-1. 청산단위(VE)에 의한 지불거래 368
4-4-2. 청산단위(VE) 대신 경화를 통한 지불거래 374
4-5. 내독 간 자본거래 389
4-5-1. 자본거래의 유형 389
4-5-2. '83, '84 대규모 대동독 은행차관의 정치·경제적 의미 391
4-6. EC와 내독 교역 400
4-6-1. 내독무역에 관한 의정서 400
4-6-2. 내독무역의 존속결과로서의 EC 시장교란 404
4-7. 동독의 외화 획득 사업과 내독 관계 407
4-7-1. Genex(선물회사) 408
4-7-2. Intershop 413
4-7-3. 외환결제 상점들의 역할 및 내독관계에서의 의미 420
4-8. 내독 간 물품 거래시 유의사항 425
4-8-1. 물품의 반입·반출 425
4-8-2. 임가공거래(Lohnveredlungsgeschaeft) 436
4-8-3. 경유무역거래(Transithandelsgeschaeft) 439
4-8-4. 삼각무역거래(Dreiecksgeschaefte) 443
4-8-5. 인쇄물 445
4-8-6. 영화 필름 거래 448
4-8-7. 쌍무거래(Gegenseitigkeitsgeschaefte) 450
4-8-8. 물품의 통과운송(Warendurchfuhr) 450
4-8-9. 라이프찌히 박람회(Leipziger Messe) 451
4-9. 내독 간 용역 거래시 유의사항 458
4-10. 내독 간 경제협력의 제 유형과 절차 465
4-10-1. 라이센스 거래(Lizenzgeschaeft) 465
4-10-2. 생산 협력(Produktionskooperation) 471

4-10-3. 재구매의 의무가 있는 설비 공급(Anlagelieferung mit Ruechkauf-verpflichtung) 475
4-10-4. 장기적 반출 및 반입거래 476
4-10-5. 판매 협력(Absatzkooperation) 479
4-10-6. 제3국을 통한 협력(Drittlandkooperation) 482
4-10-7. 연구와 개발에 관한 협력 484
4-10-8. EC 역내시장 실현 이후의 기업 경영적 협력 485

5. **우편·통신 교류** 487
5-1. 협상 및 주요 쟁점 487
5-2. 협정을 통한 주요 합의 내용 492
5-3. 구체적 교류 사례 494
5-3-1. 우편(서신·소포) 분야 494
5-3-2. 전화·전신 분야 499
5-4. 우편일괄금(Postpauschale) 503
5-5. 동독지역에 대한 선물용 소포발송시 유의사항 507
5-5-1. 수취인·발송인 및 선물용도 507
5-5-2. 무게, 포장, 주소 기입 508
5-5-3. 허용·금지된 내용물 509
5-5-4. 서독 연방체신청(Deutsche Bundespost)의 책임·변상 511

Ⅲ 분야별 교류·협력 편

6. **비상업적 지불 및 청산 교류** 516
6-1. 협상 및 주요 쟁점 516
6-2. 협정 체결 520

6-3. 생계비 지불 522
6-4. 폐쇄구좌예금(Sperrguthaben) 분야 525
6-5. 상속재산처분 529
6-5-1. 서독내에서 외환관리법에 의한 통제 529
6-5-2.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속재산 반입 530
6-5-3. 동독에서 서독으로 상속재산 반출 533
6-6. 은행 구좌 설치 및 거래 535
6-6-1. 동독지역 이외 거주주민의 동독지역에 구좌 설치 535
6-6-2. 동독주민들의 서독 은행구좌 538

7. **학술·과학·기술 분야** 541
7-1. 협상 및 협정 체결 541
7-2. 주요 쟁점 543
7-3. 문화협정에 의한 학술·과학·기술 협력 546
7-3-1. 연방내독관계성(BMB)을 통한 지원 547
7-3-2. 문화협정상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의 학술협력 549
7-3-3.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을 통한 지원 550
7-4. 과학·기술 협정 이후 협력 553
7-4-1. 독일연구공동재단(DFG)을 통한 지원 554
7-4-2. 폴크스바겐 재단(VW-Stiftung)을 통한 지원 556
7-4-3. 쾨어버 재단(Koerber-Stiftung)을 통한 촉진 556
7-5. 경제적 측면에서 본 과학·기술협력 558

8. **환경 분야** 562
8-1. 협상 및 협정 체결 562
8-2. 주요 쟁점 564
8-3. 양독 국경지역에서 하천 보호 문제 570
8-4. 양독 국경지역에서 대기 오염 문제 572

8-5. 내독 간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사업 574

9. **보건 분야** 576
9-1. 협상 및 협정 체결 576
9-2. 상대편 지역 방문 도중 발병시 의료지원 580
9-3. 건강·보건분야 전권위임자 접촉 585
9-4. 서독에서 동독으로 선물소포로 발송가능한 의약품 586
9-5. 내독관계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역할 590
9-5-1. 이산가족 재회 추진 590
9-5-2. 환자 수송 591
9-5-3. 실종자 찾아주기 591
9-5-4. 양 적십자사 간 접촉 592

10. **문화 분야** 593
10-1. 협상 및 협정 체결, 주요 쟁점 593
10-2. 구체적 교류 사례 599
10-2-1. 기본조약 체결 이전 599
10-2-2. 기본조약 체결 이후부터 문화협정 체결 이전까지 600
10-2-3. 문화협정에 따른 교류 609
10-2-4. 문화협정에 따른 동·서독 공동사업계획서(전문번역) 612
10-3. 동독의 문화정책과 동독문화인들의 반체제 활동 619
10-4. 동독으로부터 예술품·문화재의 반출 623

11. **청소년 교류** 626
11-1. 협상 626
11-1-1. 협상과정 626
11-1-2. 청소년 교류에 대한 동·서독의 상이한 입장 630
11-2. 협정 및 국내법적 근거 635

11-3. 청소년들의 상호여행 636
11-4. 신교 청소년단체 간 접촉 644

12. 스포츠 교류 646
12-1. 단절과 경쟁의 스포츠 교류사(기본조약 체결 이전) 646
12-2. 스포츠 교류에 대한 입장 651
12-2-1. 동독측 스포츠를 정치에 악용 651
12-2-2. 동·서독의 스포츠 교류에 대한 동·서독의 입장 655
12-3. 조약 및 협정 657
12-4. 스포츠 교류 계획(Sprtplaene)의 수립과 시행상의 제문제 658

13. 방송·언론 분야 664
13-1. 협상 및 협정체결 664
13-1-1. 언론인 활동에 관한 협정상 근거 664
13-1-2.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 666
13-2. 주요쟁점 670
13-2-1. 동·서독 간 언론의 자유문제와 관련한 쟁점 670
13-2-2. CSCE를 통한 언론인 활동조건 개선 674
13-3. 서독방송이 동독체제에 미친 영향과 동독의 대응 677
13-4. 동독인들의 서독 TV·라디오 청취현황 684

14. 도시 자매결연 694
14-1. 협상 및 협정 체결 694
14-1-1. 역사적인 전개과정 694
14-1-2. 자매결연 합의문 작성 697
14-2. 주요 쟁점 703
14-3. 자매결연 상대의 선택 708
14-4. 구체적인 교류 사례 712

15. 종교·교회 분야 716
15-1. 동·서독 교회의 분리와 교회의 분단극복 노력 716
15-2. 공산당의 대교회정책 725
15-3. 과거 서독교회의 대동독교회 지원 729
15-3-1. 현물을 통한 물질적 지원 730
15-3-2. A형 교회사업: 동독 교회지원 목적의 원자재 공급을 통한 재정이전 732
15-3-3. B형 교회사업: 인도주의적 목적(정치범 석방, 이산가족 재합류)을 위한 원자재 이전 736

참 고 문 헌 739

CHAPTER I

화해 · 긴장완화 편

1 정치적 화해
2 외교 · 안보와 내독관계

1. 정치적 화해

1-1. 내독관계의 성격

○ 동·서독의 기본조약 체결시 제1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한 관계는 “상호 동등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선린관계”(“normale gutnachbarliche Beziehungen zueinander auf der Grunlage der Gleichberechtigung”)임.

- 동독측은 “정상적인 선린관계”라는 의미를 동독에 대한 서독의 국제법적 승인을 포함한, 외국과의 관계설정으로 파악했음.
  - 아울러 동등한 주권을 가진 외국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동독의 대외정책 추진상의 기본개념인 평화공존(frideliche Koexistenz) 관계하에서 서독과의 관계를 파악했음.
  - 따라서 동독측은 동·서독 관계를 내독관계(innerdeutsche Beziehungen)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음.
- 서독측은 반면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적인 “승인 또는 인정”(Anerkennung)을 의미하지 않고, 단순한 실체 “존중”(Respektierung)을 의미하며, “선린”(gutnachbarliche)이란 표현은 “밀접한 공간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음.

  - 서독측은 이 “정상적인 선린관계”가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통일달성시까지 고수했음.
  - 동독측이 기본조약 제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동·서독 관계를 외국과의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비엔나 조약법 협정(Wiener Vertragskonvention) 제31조에 따라 조약의 각 조항은 “조약당사자 간의 신의 성실에 기초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해석이 가능하므로”, 조약 협상 당시 서독측은 분명하게 동독측에게 이를 통해 국제법적인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동독이 주장하듯 외국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음.
  - 서독측은 동독과의 관계를 “우방국이나 동맹국의 주민들 간에 존재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 특수한 성격의 관계(Bezehungen besonderer Art)”라고 공식적으로 규정지었음.

○ 내독관계 전문가인 Wilhelm Bruns는 과거 양독 간 관계의 특징은 협력(Kooperation), 대결(Konfrontation), 경쟁(Kompetition)의 3K로 요약한 바 있음.

- 협력(Kooperation)은 양측이 정치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고, 각종 교류 분야에 대한 협상을 통해 협정을 체결하는 관계임.
- 대결(Konfrontation)은 양 독일 국가가 이념적인 측면에서 상대편과 결코 화해하지 않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자기 체제의 안보를 위해 70년대 이래 각 분야 교류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군비경쟁을 지속해 왔던 관계임.
- 경쟁(Kompetition)은 양 독일국가가 자신의 경제·사회체제가 상대편 체제에 대한 모범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경제·사회체제가 상대편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하에, 자기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했던 관계임.

○ 따라서 위의 세 가지 특성을 지녔던 과거 동·서독 관계는 “적대적인 협력 관계”(Antagonistische Kooperation)였다고 말할 수 있음.

- 이러한 “적대적 협력관계”의 특징을 Wielfred von Bredow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이런 관계하에서는 양측 모두 어는 한쪽편의 도움 없이는, 발생된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양측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은 체제내적으로는 강화된 체제단속을 통해 체제의 공고화를 꾀하며 체제외적인 협력관계와 균형을 이루려 한다. 따라서 여전히 이념적인 적대관계는 의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 양 독일 국가는 각 군사동맹체의 충실한 일원으로서 자기 체제의 가치 및 질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상대편에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나, 이러한 경쟁의 현실을 핵전쟁시대의 인류전멸의 가능성에 대한 공동인식하에 공존의 필요성이란 절대명제에 적응시켜 나갔던 것임.
- 그러나 동·서독은 80년대 동·서진영 간 신냉전 질서하에 70년대의 비군사분야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가 군사적 분야의 화해로까지 확산되지 않아, 군비경쟁과 그에 따른 안보위협 인지에 따른 적대감이 형성되어, 양측 모두 군비는 증강되지만, 안보는 위협받는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됨.
- 이러한 내독 간 "적대적 협력관계"하의 이념상의 대립상태가 군사적인 대결상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치적·군사적 상호신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안보동반자" 관계의 설정 논의가, '82년 이래 서독 야당이었던 서독 사민당과 동독 공산당 간에 이루어졌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음.
  - 2개의 상이한 체제 간의 대립과 경쟁이 이제는 독일이 핵전쟁터가 되고 동·서독 국민의 생존과 전멸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자, 생존이라는 공동의 이해 때문에 동·서독 간에는 "이성의 연합"(Koalition der Vernunft) 또는 "공동안보"(Gemeinsame Sicherheit)를 통한 "안보 동반자 관계"(Sicherheitpartnerschaft) 형성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임.
- 그러나 동·서독은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충실한 동맹국으로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협력관계 설정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동·서독으로서는 양 진영 간의 첨병으로서 자국내에서의 전쟁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였으며, 서방동맹국들은 서독이 유럽내에서 경제적인 강대국으로서 유럽질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안보정책적으로 중립화되어 독자노선을 걷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서독은 집단 안보체제인 서구동맹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음.

1-1-1. 특수관계: 서독측의 입장

1-1-1-1.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이전까지 양독 간 '특수관계' 논의

○ 양독 간의 특수관계란 개념은 1969년 동독(DDR)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독에서 벌어졌던 정치 논쟁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음.

- 자민당(FDP)은 1969년 7월 23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종전 이후 서로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서독과 동독이라는 두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양독 관계를 규정한바 있음.
- 서독 정부는 1969년 10월 28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 "서독 정부가 동독을 국제법상 승인(voelkerrechtliche Anerkennung)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설사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서로에게 외국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특수할 수밖에 없다."

○ 서독 기본법에는 특수 관계(Sonderbeziehung)를 언급하는 조항이 없음.

- 왜냐하면 서독 헌법제정자들(Verfassungsvaeter)로서는 당시 양독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임.
-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에도 특수관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1조에 '정상적인 선린관계'라고 언급되었음.
- 이 기본 조약의 합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벌어졌던 정당들 간의 논쟁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의과정에서도 이 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
- 바이에른 주 정부 법률자문관인 W. Wengler가 처음으로 이 기본조약을 어떤 법 질서(Rechtsordnung)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이 기본조약이 실제 헌법 적용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처음으로 논란이 됨.
- 1973년 6월 18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양독 간에 체결된 기본조약과 관련한

판결에서 양독 간의 관계에 언급하면서 "양독 간의 가깝고도, 특수한 관계는 포기할 수 없는 법적 지위(unaufgebbare Rechtsposition)를 부여받았다."라고 규정함.

○ 연방 헌법재판소가 기본 조약에 관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연방 정부는 양독 간의 특수관계를 미해결 독일 문제, 독일 민족의 존속, 동일한 역사,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겪어야 하는 공동 운명 등으로 특징지우면서,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만 간주했음.

- 이러한 정치적 측면에서만 양독관계를 특수관계로 이해하려는 입장은 1969년 10월 28일자 정부 성명이나 1970년 1월 14일자 민족 현황에 대한 보고서(Bericht zur Lage der Nation)에 잘 나타나 있음.

○ 물론 양독 관계를 법적 측면에서 논의한 정부측 발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체로 정치적인 의미로만 특수관계를 파악했음.

- 1970년 1월 16일자 민족 현황 보고서와 관련한 논의에서 당시 연방 수상이던 빌리 브란트는, "동·서독 관계는 국제법상의 문제도 아니요, 그렇다고 서독 또는 동독 헌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분단 독일 양국 간에 존재하는 특수 상황을 규정하는 구성요소"(Bestandteil des der Nation)라고 언급했음.

- 두 번에 걸친 양독 정상 회담(1970년 3월 19일 제 1차 Erfurt 회담, 1970년 5월 21일 제2차 Kassel 회담)시의 서독 정부 성명서에서도 양독 간의 특수 관계는 법적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보다 강조되어 논의되었음.

  • "기본조약의 세부 사항은 양 독일이 처해 있는 기존의 특수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제 3국가와 체결한 계약이 갖는 효력과 동일함), 독일내 두 국가 간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약상의 별도 규정이 지금까지 합의되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 상의 제 원칙(allgemein anerkanne Prinzipien des zwischenstaatlichen Recht)이 양독 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카셀의 20개 항 정부 성명 중에 내독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음.

○ 요컨대, 연방 정부는 각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공존해 나가는 관계(Modus-Vivendi)로 기본 조약이 양독 관계를 규정짓고 있다고 보고, 독일 문제를 계속해서 미해결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내독 관계의 비-국제적 성격(Nicht-Auslands-Charaketer)을 강조하면서도, 국제법 상의 예외로 규정짓는, 양국에만 해당하는 특별 국제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음.

- "연방 정부가 양독 간의 관계를 특수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결코 동독의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양 독일에 독일인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 독일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특수성을 인정하는 바이다."라고 1975년 1월 30일자 민족 현황에 대한 정부 보고서는 밝히고 있음.

1-1-1-2. 연방 헌법재판소의 양독 간 '특수 관계' 해석과 논란

○ 기본조약과 관련한 연방 헌법 재판소의 심의 과정에서는 사실 양독 간 특수 관계의 법적 근거와 그 내용 보다는, 헌법적 측면에서 본 독일의 법적 지위(Rechtslage Deutschlands)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졌음.

○ 연방 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과 관련하여 1973년 6월 18일과 1973년 7월 31일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양독 간의 가깝고도, 특수한 관계는 포기할 수 없는 법적 지위임".

  • 이는 연방 정부가 동독을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다른 입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

- 7월 31일 판결에서는 "양독 간에 존재하는 특수한 관계"와 "이 조약은 특수한 관계에 상응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을 한 바 있음:

  • "동독은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인 동시에 국제법 주체(Velker-rechtssubjekt)이기는 하나, 서독은 이를 구제법상으로 승인하지 않음."

  • "기본조약의 체결은 양독관계의 특수한 성격의 사실상 인정(faktische Anerkennung besonderer Art)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연방 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을(형식적으로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나, 내용상으로는, 특히 Inter Se-Beziehung을 규정짓고 있는) 이중 성격의 조약(Vertrag mit

Doppelcharakter)으로 평가함.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자면, 기본조약은 내독관계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특정짓고 있음.

- 독일에 대한 '전승 4대국의 권리와 책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양독 간의 합의.
- 외교 사절 대신 상주 대표를 교환한다는 데 대한 합의.
- 양독 간의 거래는 내독 교역의 성격을 띤다는, 다시 말해 대외 무역이 아니라는 점에 양자 합의.
- 국적문제는 기본조약상 규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데에 양측이 동의.
  - 이는 단일 독일 국적을 존속시키고자 한 서독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
- 재산 문제는 동·서독의 서로 상이한 법적 입장 때문에 기본조약에서 다룰 수 없다는 데 대하여 합의.

○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기본조약의 이중성(Doppelcharakter)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음.

- 예를 들어, D. Kimmininch는,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현재 적용되는 국제법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함.
- G. Ress는, 조약을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며, "이같은 구분 하나만으로 조약의 이중적 성격이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표명함.
- 법학자들은 연방 헌법재판소가 사용한 "inter se-Beaiehung"이라는 개념 역시 지극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지적함.
  -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inter se-Beziehung"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 "inter se-Beziehung"이라는 표현이 양독관계가 특수하다는 법적 기초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임.
  - 이 밖에 헌법재판소 판결은 "inter se-Beziehung"이 어떠한 특수 내용 때문에 다른 관계들과는 달리 특수해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이 결여되어 있음.

○ G. Ress는 특수 관계의 법적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려진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옹호하며 다음과 같이 해석함.

- 기본조약은 국제법의 주체인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 기존의 전체 독일 헌법을 보완하며, 양독 간에 기 존재하는 특별 법질서(Soderrechtsordnung)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함.
  - 이로써 조약은 국제법상의 성격(양독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뿐만 아니라 국가법상의 성격(전체 독일에 적용되는 헌법체계란 의미에서)까지도 띠게 됨.
  - 아울러 연방 헌법재판소의 이 조약의 내용을 - 적어도 일부 규정에 대해 - 국가법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약으로 합의된 전체 독일 헌법(paktiertes gesamtdeutsches Vergassungsrecht)으로까지도 간주했다고 함.
- 원래 조약의 기본 원칙과는 어긋나는 일부 규정들은 존속하고 있는 '전체독일'에 양 독일이 귀속되어 있다는 당위성이 빚어내는 어쩔 수 없는 귀결이라는 것이 연방 헌법재판소의 견해임.
- G. Ress는 이와 같은 연방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기본 조약이 내포하고 있는 이중성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함.

○ 연방 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과 관련하여 1973년 7월 31일에 내린 전체 판결(das gesamte Urteil)이-판결문이 판결 이유서를 포함하고 있음-연방 헌법재판소법 제31조 1항에 의한 법원판결기속(Bindungswirkung) 사항으로 평가함.

- 이로써 이 판결은 정작 조약 당사자인 동독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으나, 서독의 국가 기관들에 대해서는-원칙상으로는-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1-1-1-3. '특수 관계'의 정의와 관련된 법 이론 및 논쟁

○ 법적 구성 원칙과 관련하여 양독 간 특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양독 간의 합의에서 '특수 관계'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이론.
- 민족(Nation) 개념을 이유로 내세워 특수 관계를 근거짓고자 하는 이론.
- 전체 독일(Gesamtdeutschland)에 대한 전승 4대국의 권리와 책임에서 특수관계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이론.
- 전체 독일이라는 법률상의 개념(rechrtliche Konzeption)으로부터 특수 관계를 유추해 내고자 하는 이론.
  - 이 이론은 다시 독일 제국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서독과 동독을 그 구성원으로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견해(이는 동·서독이 잠재적 분할 과정 latenter Dismembrationsprozess에 있다고 보고 있음)와
  - 서독과 독일 제국은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나 동독은(신설 국가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다는 이론(이 때, 특수 관계를 근거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분단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독일 제국이 서독과 동독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임) 등으로 구분됨.

○ 첫 번째 이론과 관련해서는 조약 당사자들의 의지(Parteiwillen) 그 자체 만으로는 특수한 관계를 규정한다고 근거지을 수 없음을 이미 연방 헌법재판소가 올바르게 판결한 바 있음.

- 첫 번째 이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양독 간의 합의 부재와 기본조약의 제2조와 제3조 그리고 전문의 '비합의 조항'(Dissensklausel)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두 번째, 독일 민족의 존속(Fortbestand der deutschen Nation)에서 특수 관계의 법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이론 역시 타당하지 않음.

- 우선, 민족(Nation) 개념을 두고서 양 독일국가는 현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
  - 서독은 독일 민족의 단일성(Einheit der deutschen Nation)을 인정하는 반면, 동독은 민족(Nation)을 이념적으로 구분하여 동독 스스로를 '독일 사회주의 민족'(deutsche sozialistische Nation)으로, 서독은 자본주의 내지는 부르죠아지 민족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이같은 민족(Nation) 개념을 둘러 싼 양독 간의 견해차는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은 바, (기본조약 전문의 비합의 조항에 따라) 단일 독일 민족국가의 존속을 역사적으로 주어진 사실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동·서독이 합의를 못 본 채 기본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민족 단일성(Einheit der Nation) 역시 특수 관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그러나 이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현대 국제법에서는 민족(Nation)을 국제법적 주체(Voelkerrechtssubjektivitaet)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있음.
  - 따라서 독일 민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양 독일 국가와는 별개의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정법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상으로 정당성을 찾을 수 없음.

○ 세 번째 이론과 관련 여러 법학자들은 전승 4대국의 권한 및 책임을 양독 간 특수 관계의 법적 근거로 내세움.

- 실제로 전승 4대국은 전체 독일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서 내독관계의 특수성의 뿌리를 찾는 것은 이론상 가능함.
- 이와 관련, 서독과 동독은 각각 동·서방 동맹국가들과 맺은 조약들을 통해 전체 독일에 대한 이들 전승 4대국의 권한과 책임이 계속 유효함을 인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1971년 9월 3일자 베를린에 관한 4대국 협정, 동·서독 UN 동시 가입, 동구제국들과 맺은 동방 조약(Ostvertraege) 그리고 기본조약 제9조에 대한 의정서 교환 등을 통해 이 사실이 재확인되었음.
  - 물론 기본조약에는 전승 4대국의 권한과 책임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또한 1972년 11월 9일 동·서독의 UN 동시가입과 관련하여, "양국의 가입으로 인해 전승 4대국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4장에 걸쳐 마련된 규정, 결의 및 실행사항 등은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는 전승 4대국의 성명서에서도 권한과 책임의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그렇다고 이 사실이 전승 4대국의 권한 및 책임이 단지 '대상없는'(objektlose)

또는 '추상적'(abstrakte)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애매모호한 사실 정황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독일'(Deutschland)이라는 법 개념(Rechtsbegriff)의 존속이 한번이라도 포기된 적이 없다는 것임.

- 특수관계와 관련해서는 1973년 7월 31일. 독일 제국의 존속과 관련하여 내린 연방 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연방 헌법재판소는 전승 4대국의 전체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전체 독일의 존속을 규율하는 유일한 법규로 이해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일 명제(Gebot der Wiedervereinigung)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전승 4대국의 권한과 책임) 통일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추가적 법적 근거, 다시 말해 국제법상의 법적 근거로 이해해야 헌법과 부합된다는 판결을 내림(연방 헌법 제 36조, 19조 참고).
- 요컨대, 연방 헌법재판소는 전승 4대국의 권리와 책임이 양독 간 특수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법과 국제법 요소들을 혼합시키는 데 있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음.

○ 네 번째 이론인 특수 관계의 근거를 분단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Unabgeschlossengeit des Teilungsvorgangs), 다시 말해 계속해서 독일 제국은 존속한다는 법적인 요소(fortbestehende reichsstaatliche Element)에서 찾고 있는 이론은 특히 G. Ress에 의해 대변되었음.

-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함.
  - 첫째, 서독을 과거 독일 제국과 동일하게(identisch) 간주함.
  - 둘째, 동독은 해체과정(Sezession) 중에서 분리되어 나가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 있음.
  - 셋째, 이 해체과정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
- 우선 이 이론은 기본조약의 국제법적 요소를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찾고 있음.
  - 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은, 만약 조약 당사자들이 "이를 특별법규(Sonderrechtsordnung)로 다루거나 공동 인정 국가법(gemeinsam anerkannte staatsrechtliche Ordnung)의 범주로 간주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설사 분할 내지는 해체과정(Dismembraten- bzw. Sezessionprozes)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부 국내법상의 구속사항(Restvestaende staatrechtlicher Bindungen)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 분단 과정의 미해결은 '종결성'(Endgueltigkeit)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즉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분단 과정이 전승 4대국에 의해 합법화되지 않았다는 점(mangelnde Legalisierung desgesamten Teilungsprozesses mit Wirkung fuer ≫Deutschland als Ganzes≪ durch die Vier Maechte)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음.
- 종결되지 않은 분단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독의 대외 입장 표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임.
  - 첫째, 서독은 지금까지 동독을 국제법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
  - 둘째, 기본조약에서 국적법(Staatsangehoerigkeitsgesetz) 문제를 유보사항으로 남겨놓았다는 점 등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 관계의 근거를 전적으로 '전체독일'에 대한 전승 4대국의 책임에서 찾거나, 또는 전승 4대국의 책임과 이를 보장하는 연방 정부의 성명을 근거로 한 국제법 및 국내법 요소들의 혼합에서 독일 분단의 미완결성을 유추해 보려는 시도 등은 법이론상으로는 가능함.

- 이 때 특히 후자는 전체 독일에 대해 (전승 4대국의 책임이라는 국제법상의 법규 외에) 구속력을 갖는 국내법상의 법적 근거가 존재해 있다는 연방 재판소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들은 국가법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특수한 입장에 처해 있는 독일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양독 간에 체결된 기본 조약과 이에 따른 내독 간 협약 사항들이 헌법과도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데 있어 이 특수 관계라는 모델을 굳이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73년 7월 31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에서 특수 관계에 대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기본법에 부합된다는(verfassungskonform)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로써 이 기본조약은 국제법과 독일 기본법 외의 또 다른 특수한 내독간의 법규가 없이도 그 합헌성(Verfassungsmaessigkeit)을 입증할 수 있게 됨.

○ 양독 간 특수 관계를 '특수한 성격의 사실상 인정'이라고 발언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표현 역시 문제가 됨.

- 예를 들어 R. Bernhardt는 이 개념을, "국제법학자들이 다룰 수 없는" 문제로 판단함. 그렇다고 이를 국가법상의 인정(staatliche Anerkennung)으로 해석하는데 대해서도 그는 이의를 제기함.
- G. Ress 역시 같은 맥락에서 '특수한 성격의 사실상 인정'을, '전승 4대국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이에 따른 독일 분단의 미완결을 고려하여 동독을 국제법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modifizierte voelkerrechtliche Anerkennung der DDR)으로 해석함.
- 그러나 '특수한 성격의 사실상 인정'이란 연방 헌법재판소의 표현은 특수관계의 내용을 두고 한 언급일 뿐, 이는 특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므로 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인다고 해서 특수 관계의 법적 구성문제가 법적으로 명약관화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음.

1-1-2. 평화공존관계: 동독측 입장

○ 동독을 위시한 동구공산권의 서구진영에 대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인 "평화공존" 개념은 협력과 대결형태를 규정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었음.

- 한편으로는 "평화공존"은 주권평등, 영토불가침, 내정간섭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가진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임.
  - 이 협력의 형태를 통해 동독은 상호이익이라는 기초 위에 서방제국과 경제교류를 해왔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다자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왔으며, 서독과 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시켜 왔음.
-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공존"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계급투쟁의 특수한 형태로서 대결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기도 하여, 야누스의 두 얼굴에 비유될 수 있었음.
  - 동독 공산당 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가 9차 전당대회(1976)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평화공존은 "결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간의 투쟁이 종식된 계급적인 평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경제·사회적인 현상유지(sozial oekonomische Status Quo)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이념적인 공존(ideologische Koexistenz)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음.
  - 동독은 이 평화공존 관계에 입각 서독과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공산당을 통해 "이념적인 계급투쟁"을 벌이면서, 교류협력에 따른 서독체제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단속조치를 취했음.

○ 동독측이 의미하는 "평화공존"이란 문구는 기본조약을 비롯한 동·서독 국가 간에 맺어진 조약과 협정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서독정부는 이 동독측 "평화공존" 개념의 이중성 때문에 이 문구를 합의문에 삽입하는데 신중을 기했음.
- 단 동·서독 노조 간의 접촉 이후 발표된 1976. 11. 10자 코뮤니케에 "평화와 사회적 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평화공존"이란 구절이 포함되어 있을 뿐임.
- 또한 80년대 후반에 성사된 도시 간 자매결연에 대한 합의문 작성시 동독측이 평화와 군축문제를 강조하며 "평화공존"이란 문구를 전문에 삽입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서독측 지방자치들의 반대로 합의문에서는 빠졌음.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적 적대관계 청산 불가능의 명제에 기초한 기존의 "평화공존" 개념은,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정책 추진 이후 소련에서, 동독에서는 동독 공산당이 야당으로서 서독 사민당과 "이념논쟁과 공동안보"(Der Streitkultur der Ideologie und die gumeinsame Siherheit)라는 문서에 합의한 후 그 개념이 수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브레즈네프 시대까지 소련은 "평화공존" 재념적용의 대상에서 제3세계 민족해방전쟁, 혹은 일국내에서 브르조아와 프로레타리아의 계급투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의한 무력개입으로 인한 전쟁은 정의의 전쟁으로서 제외했었음.

- 그러나 고르바쵸프는 “핵무기를 다량 보유한 초강대국 간의 전쟁은 결코 정치적 목적의 관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평화공존에 입각 국제적인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이념의 공존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음.

– 동독 공산당(SED)은 국가 간의 합의문은 아니지만 정당 간 교류·접촉의 일환으로 서독 사민당과 합의한 공동문서에서 정당 간에 이념상의 상이성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경쟁시대에 동·서 진영 간의 유일한 투쟁방법은 평화적 체제경쟁이라고 밝혀 이념적인 공존을 허용하면서 기존의 동독 “평화공존” 개념을 공식적으로 수장한 바 있음.

※ SED-SPD의 “이념논쟁과 공동안보” 합의문은 본책자 정당 간 접촉·교류편(129-143p) 참조

1-2. 내독관계의 주요 쟁점

○ 기본조약을 통해 양독 간의 관계는 정상화되고 국제적으로 공식화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양독 간 관계의 성격(국가 평화공존이냐,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이냐), 관계정상화의 목표(동독은 서독으로부터의 현상유지인정을 통한 자국의 독자적인 국가성 인정쪽에, 서독측은 조약의 도구적, 잠정적 성격을 강조하며 분단고통 완화를 통해 궁극적인 통일쪽에), “민족문제”, “국적문제” 등에서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보였음.

– 74 유엔총회 연설에서 양독의 외무장관은 “민족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이한 입장을 표명함.

- 서독외무장관 Genscher는 “우리측은 현 분단상태를 민족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일민족에 의한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분단국가는 재통일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하나의 독일민족에서 파생되는 양독 간의 관계는 특수 관계(Beziehungen besonderer Art)라고” 재차 천명함.

– 이에 대해 동독외무장관 Fischer는 “이러한 서독측의 민족자결권 강조는 현 유럽의 상태를 변경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이미 동독의 국민들은 자결권 행사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며, “오늘날 독일 땅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2개의 민족, 즉 ‘사회주의적 민족’(sozialistische Nation)과 ‘자본주의적 민족’(kapitalistische Nation)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함.

– 서독은 브란트 이후 “독일 내에 상이한 사회체제를 가진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물론 국제법적인 인정은 아님), 동·서독 국민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간주한 반면, 동독 지도부는 양독 간 교류·협력이 진행됨에 따라 체제의 약화를 우려하며 철저한 대서독 분리정책(Abgrenzungspolitik)의 일환으로, “2민족론”(zwei-Nationen-These)까지 주장하게 됨.

– 서독측은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기본법 제116조에 “1937년 12월 31일 현재(히틀러 제3제국 등장 이전) 독일제국의 영토하에서 독일의 국적을 가졌던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비속”은 기본법에 규정된 “독일인”(Deutscher)으로서

독일 국적(deutsche Staatsangehoerigkeit)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는 서독측이 분단 이전 독일민족의 정통성을 법적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며, 따라서 동독지역과 현재 폴랜드·체코·소련 땅이던 과거 실지에 살고 있던 사람도 독일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함.
- 따라서 동독에 살던 사람들(Uebersiedler)이나 폴란드·체코·소련에 살던 사람들(Aussiedler)이 서독으로(기본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로) 이주·피난해 올 경우 다른 외국인에 요구되는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서독주민이 기본법상 갖는 모든 권리를 당연히 갖는 것으로 해석했음.
- 동독측은 서로 다른 2개의 국적을 주장하며 '67. 2 국적법(Gesetz ueber die Staatsbuergerschaft)을 제정했고,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는 서독측이 2개의 국가와 그에 따른 2개의 국적을 명시적으로(ausdruecklich)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 이러한 양측의 국적에 관한 상이한 입장은 양독 간 교류협력 기간 중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킴.
  - 특히 양국과 영사,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에서 동독주민이 서독의 영사관이나 대사관(기본법의 효력이 미치는 곳)으로 피난하여 올 경우 이들을 독일국적을 가진 자로 취급하여 제반보호를 제공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 동독은 제3국과 영사관계에 관한 조약(Konsularvertreage)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최소한 서방국가에서는 서독측의 입장이 관철됨.
  - 동구권 국가에서는 동독측의 입장이 관철되었고,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서는 동독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영사업무는 보지 않았음.

○ 1980. 10. 13 동독 공산당 서기장 Honecker는 소위 'Gera 선언'을 통해 동·서독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독관계의 쟁점해결을 주장한 바 있음.

- 동독의 독자적인 국적 인정
  - 2개의 독자적인 국가 인정을 통한 동독의 주권존종, 내정불간섭.
  - 서독 방문시 또는 제3국에서 동독인들이 외국으로 여행할 때, 서독정부나 대사관은 여권 또는 임시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 바, 이의 금지.
- Salzgitter 소재 "Zentrale Erfassungsstelle"(동독지역 정치적 폭력사례 기록 보존소) 철폐.
- 상주대표부 대사관 승격.
- 동·서독 국경 중 미확정된 부분인 Elbe강 하천 중앙선의 동·서독 국경 인정.

1-2-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시의 입장 차이

○ '72. 12. 21 동서독 실무협상대표(서 : Bahr, 동 : Kohl) 간에 서명된 양독 간 기본조약은 체결 당시 조약내용이 기본법의 통일명제조항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많았지만, 연방 헌법재판소가 '73. 7. 31 최종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통일직전까지 양독 간의 기본관계를 설정한 장전으로써 그 효력을 발함.

- 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이 평화의 보장과 분단고통 완화를 통한 인도적인 측면에서 전민족의 이해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기본법 전문에 규정된 재통일명제(Wiedervereinigungsgebot)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족의 단일성과, 단일독일국적은 고수되며, 동독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결했음
- 또한 재통일은 헌법상의 의무명제이므로 "자유하의 재통일"(WIedervereininung in Freiheit)에 반하는 그 어떤 법률적·실질적 조치들일지라도 위헌이며, 연방과 주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속됨을 재차 강조함.
- 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이 "일종의 국제법적인 조약"(Seiner Art nach ein voelkerrechtlicher Vertrag)이면서도, 조약 내용상으로는 양독 간의 관계(inter-se-Beziehungen)만을 규정하는 "이중적인 성격"(Doppelcharakter)을 갖고 있다고 판시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효력은 기본법 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독지역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하며, 동독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 연방 헌법재판소법 31조에 의하면,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들은 서독의 헌법기관과 연방과 주의 법원만에 기속적인 효력을 가짐.

○ 기본조약 체결에 임하는 양독정부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았음.

– 서독정부의 입장

- 기본조약은 분단고통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적인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독측과 더 많은 협상을 벌이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Instrument)임. 따라서 기본조약은 잠정성(Modus vivendi)을 갖음.
- 기본조약 문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에도 불구하고 양독간의 문제를 협상과 협정체결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법제화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독일문제"는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장래에 정치적, 법률적으로 다시 해결되어야할 문제임.("Die deutsche Frage bleibt offen").
- 이 조약을 통해 국제적 긴장완화와 국가 간 협력에 이바지함.
- 이 조약에서는 재산권과 국적문제는 규정대상으로 삼지 않음.
- 이 조약은 "4대협정"을 보완하여 베를린의 항구적인 생존을 보장하는데 기여해야함.

– 동독정부의 입장

- 이 조약을 통해 동서독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공존"(frideliche Koexistenz) 관계가 성립됨.
- 이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며"(voelkerrechtlich gueltig) 따라서 동독이란 국가의 주권성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임.
- 이 조약 체결은 외국으로부터의 동독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과 국제기구 및 협약체결에 동독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
- 이 조약 체결은 냉전기간 동안 동독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차별하던 서독의 대외정책(할슈타인 독트린)의 일대 변환을 의미함.

- 이 조약은 동독의 서베를린에 대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임.

○ 상기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양독정부는 총 10조로 되어 있는 기본조약의 구체적인 문안 작성함에 있어 서로의 입장을 절충식으로 표현했으나 각 조항별 강조점과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은 통일전까지 각각 달랐음.

– 우선 양측은 기본조약의 전문에 "민족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양독국가국민의 복리증진과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이 조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음.

– 조약의 제1조, 제7조, 제8조의 문안 작성에는 서독측의 입장이 관철되었음.

- 양독 간의 관계를 동독측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외국과의 관계로 설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서독측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beziehungen besonderer Art)를 주장했는 바 이를 절충하여 제1조에 "정상적 선린관계"(normale gutnachbarliche Beziehungen)로 표기함.
- 제7조에서는 이 조약을 기초로 각 교류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인도적인 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제협정을 체결해 나가도록 함.
- 제8조에서는 동독측이 대사를 교환하자고 주장했으나, 내독 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주대표를 교환하기로 함.

– 반면 동독측은 제2조, 제4조, 제6조에 큰 의미를 부여함.

- 제2조에서 양국에 부여된 "모든 국가의 주권적 평등, 독립, 자주성 및 영토보존의 존중" 의무는, 서독측이 동독을 "국제법적인 주체"(Voelkerrechtssubjekt)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 제4조의 "양국가의 어느 한편도 다른 한편을 국제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서독의 단독대표권(Alleinvertretungsanspruch)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제6조의 "양국의 주권적 고권(Hoheitsgewalt)은 각자의 영토에 한정되며, 양국은 대내외 문제에 있어 각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동독의 독립국가성을 완전히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 그러나 서독은 제6조의 문안작성시 동독측이 요구한

"인정"(anerkennen)이란 표현 대신, "존중"(respektieren)이란 의미가 모호한 표현으로 국가의 존재를 존중하나 국제법적인 국가인정은 아니라는 기본입장을 관철시킴.

- 제3조(상호무력 사용금지, 상호 국경선 불가침), 제5조(유럽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축지지), 제9조(기체결된 양국의 양자 간, 다자 간 조약 불변) 등은 국제적 긴장완화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양국이 거의 이견이 없었음.

  * 제10조는 효력발효에 관한 조항임.

1-2-2. 단일 국적 문제

○ 역대 서독 정부는 1913년 7월 22일자 독일 국적법에 따라 단일독일 국적의 존속(Fortbestand der einheitlichen deutschen Staatsangehoerigkeit)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서독 기본법 제16조와 제116조의 규정 또한 기존 국적법의 변경을 금하고 있음.
  - 단일 국적 포기는 일방적인 개인 권리의 박탈로서, 이는 기본법 제16조 내용에 위배이며, 동·서독 간의 정치적인 대립상황에서 개인에게 국적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서독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음.
  -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과거 독일 민족과 국가가 존속하고 있다는 법적인 입장을 취함.
    - » 연방 헌법재판소는, 독일 국적 소지 독일인의 지위는 감축 또는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이 서독 보호구역으로 들어 올 경우,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권 향유 및 법원으로부터의 완전 보호(voller Schutz)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내독관계 정상화 이후 동독과 폴란드 정부가 이 법의 존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데, 특히 호네커는 양독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로 국적 문제의 해결을 든 바 있음.
- 서독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일련의 수정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본법의 변경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안들로서는,

  - 우선 2개 국가, 국민, 2개 시민권의 존재(Existenz zweier Staats- voelker- und zweier Staatsbuergerschaften)를 인정하자는 자민당 (FDP) 소속 빌리암 보름(William borm)의 주장;
    - » 이를 통해 동독 주민들이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서독 지역을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소속이 독일'(drutsche Zugehoerigkeit)이라는 초국경적 포괄 개념안에 동독 시민권을 포함시키자는 주장.
  - 일반 독일 국적을 유지하면서 별도 연방 시민권(besondere Bundesbuergerschaft)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서독이 분단 이전 독일 민족의 정통성을 법적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서독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더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단일 독일 국적 문제는 모든 독일 민족 성원(alle Angehoerigen des deutschen Volkes)에 대한 서독 정부의 책임 사항으로서, 이는 특히 이들이 서독 영토로 들어 왔을 때 서독 정부와 법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규정짓고 있음.
  - 이는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한 독일인(동독인)이 서독 영사관의 보호를 청해 온다면, 이는 보장됨'을 의미함으로 내독 간 인적교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과 관련 중요한 문제였음.
  - 그러나 서독측은 이 단일 국적 입장의 고수를 통해 전체 독일차원에서 외국에게 특정 요구를 내세우거나 또는 서독 외의 지역에 대해 간섭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 왔음.
  - 서독의 국적 관련 규정은 1913년 7월 22일자 국적법에 따라 종전시 독일 국민이었거나 또는 독일 국민이 된 자들 모두에게 설사 이들이 현재 동독, 폴란드 또는 이 밖의 다른 국가에 체류한다 할지라도 - 적용되나, 그렇다고 해서 서독이 이 법을 근거로 자국영토 외에 거주하거나 또는 자의에 의해 제3국 국민이 된 자에 대해 그 어떤 국적상의 의무 준수를 요구하겠다는 것은 아님.

- 서독 입법 제정자들은 오래 전부터 선거권, 방위 의무, 납세 의무 등과 같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인의 체류지를 원칙으로 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 특히 독일인이 동독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 독일 국적이 직접적인 실효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는데, 이들 독일인들이 서독 영토로 넘어 왔거나 또는 제3국에서 자의로 서독의 보호를 요구할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했으며, 단일 독일 국적은 서독 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했음.

- 이들이 서독 영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완전 시민권(volle Buergerrecht)의 취득을 위해 특별한 법적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점(단, 내국인과 전적인 동등 대우(Inlanendergleichbehandlung)는 보장되지 않음);

  - 설사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간주하여 동독 영토 내 사항들에 대해서 주권상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이 지역 주민들이 서독 지역으로 넘어 올 경우 서독은 이들 독일인들을 보호해야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음.

- 이들은 외국에서 - 제3국의 양해 하에 - 서독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서독에서 제기된 기존 국적법 변경안들의 내용과 이 변경안이 실시될 경우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았음.

- 첫째, 두 국가 국민, 두 국가 시민권(zwei Staatsvoelker, zwei Staatsbuergeerschaften)을 주장하는 Borm의 제안을 들 수 있음.

  - 이는 독일 문제를 일반 공식으로 해결코자 한 50년대식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는데, 이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다음을 지적할 수 있음:

    » 한 국가의 시민권을 인정함은 곧 그 국가를 국제법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됨. 그럴 경우 이는, 동독을 국제법상으로 국가로 인정치 않는다는 기본조약에서 서독이 보인 입장과 상충됨.

    » 또한 이상의 국적 문제와 관련, 설사 서독이 동독의 국가 인정 요구에 응한다고 해서 동독 정부가 주민들의 여행 자유를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임.

    » 이 밖에 이 안은 기본법 제1, 2, 3, 104조의 기본권과도 대립됨.

- 둘째, 양독 국가를 초월하는 상위 질서 속에 동독 시민권을 포함시키자는, 즉 단일 독일 국적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별 소속권(Landesangehoerigkeiten) 제도를 마련하여, 동독의 시민권을 이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Morrs의 제안을 들 수 있음.

  - 이 안은, 동독측에서 자국의 시민권을 격하를 의미하는 이같은 대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동독이 이를 기본조약 제1조에 명시된 동독에 대한 자율성 침해로 간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임.

- 셋째, Krueger와 Zieger가 전개한 이론으로서, 내적 단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복수국가제(ein dualistischer Staat in der Einheit)를 들 수 있음.

  - 그러나 동독이 그들의 시민권을 전체 독일 질서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동독 주권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 역시 현실성 없는 주장에 불과함.

- 넷째, Messen은 계속해서 기존의 독일 국적을 보전해 나가면서, 동시에 별도의 연방 독일 시민권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또한 이 같은 입법 사항을 소련의 승인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같은 제도는 베를린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었음.

  - 이 밖에도 이 방안만으로는 일반 독일 국적의 폐지를 요청하는 동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양독 주민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에도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별도의 연방 독일 국적은 일반 독일 국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었음.

  - 다시 말해, 별도 연방 독일 국적이 마련될 경우, 일반 독일 국적만으로는 전과 같이 제3국에서 모든 독일인에 대해 외교상의 보호를 보장해 줄 수 없게 된다는 한계가 있었음.

- 국적 문제는 모든 독일인들에게 소속 선택의 자유(Oeffnung ihrer Zugehoerigkeit fuer alle Deutschen)를 보장코자 하는 서독측의 대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또한 전체 독일인을 민족 개념 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에서만 허용될 수 있었음.

- 반면 동독은 1974년 동독 헌법의 수정을 통해 사회주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역사·사회의 변증법적 전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진보적 개념으로 정의내림으로써, 서독식의 민족 개념과 확연히 구분짓고 있음.

○ 서독 정부는 국적과 관련된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처리에 있어서는 법률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법률을 융통성있게 적용하여 왔음.

- 주요 이유는 서독 영토 내로 들어와야만 완전 시민권 취득 권리가 발생한다는 단일 독일 국적 규정이 안고 있는 내용상의 한계에 기인함.
- 아울러 국제법 통례상 제3국가는 다국적 소지자의 사적 문제(결혼, 이혼, 유언 등) 처리와 관련하여 국적이 문제시 될 경우,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실질 국적(effektive Staatsangehoerigkeit)을 법적 처리의 기초로 삼는 것이 상례이며, 그 중요한 전제조건은 생활 본거지 이전에 대한 본인의 자율의사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점임.
- 동구권 지역에 살고 이는 기본법 116조의 의미에서 독일인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보장보험과 같은 과거 권리 사항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의 문제에서 동구권 각국과 명확한 입장에 합의를 보아야 했음.
  - 서독은 독일인의 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1970년 12월 7일 서독 기본법 제116조의 의미에서의 독일인을 독일 민족의 일원으로 간주한다는데 대해 폴랜드 정부와 합의를 봄.
    - » 사회보장보험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1975년 10월 9일에 체결된 협약을 통해 체류지를 기초로 하여 각국이 생활 보장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를 봄.

○ 대동독 관계에 있어서는 독일 국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일반 법규를 변경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지속된 전체 독일인에 대한 법적 귀속성을 약화시키기보다는 동독의 국적 규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실무 처리에 있어 법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융통성을 보이며 개별 사례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음.

- 제3국에서 서독 영토로 입국하려는 독일인에 대한 서독정부의 보호 문제와 관련 동독은 오스트리아 및 영국과의 영사 협정을 통해 동독의 시민권을 근거로 하여 동독인들을 구속하고자 시도했으나, 서독측과 협의한 관계국들이 독일인의 국적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 시도는 무산된 바 있음.
- 동독 주민과 동베를린 주민들의 개인적인 문제, 특히 가족권리(Familien-Recht) 등에 대한 판결시, 이것이 국적문제와 연계되어-양독 간 적용 민법 특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국제법상의 민법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면, 이 때는 일반 독일 국적이 법적 근간이 되기보다는 실질 국적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쪽으로 서독측은 보았음.
  - 현재 서독에서는 이러한 실질 국적을 참작한 법원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바, 이는 합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동독법에 따른 법적 판결을 존중한다(respektieren)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만약 1913년도 국적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이로써 단일 독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동독 국가 시민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독일 국적은 1913년도 국적법에 준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독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것이 일반 독일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됨.
  - 일부 서독 법원은 1913년도 국적법을 엄격히 준수하려고 들기보다는 동독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적법상의 문제를 처리해 나가기도 하였음.
    - » 실례로 이태리인을 아버지로 둔 자가 동독 국적을 취득한 사례의 처리를 놓고, 이 자의 국적을 일반 독일 국적으로 인정해 준 바 있음.
    - » 또 다른 예로서, 국적상실은 국적 포기(Entlassung)를 위한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았을 경우 가능해지므로, 동독법에 따라 외국에서 타 국적 취득 신청을 한다고 해서 1913년도 국적법 제25조에 따른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었음.
    - » 구체적으로, 타 국적을 취득한 동독여성이 국적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타국적 취득을 일반 독일 국적의 상실의 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음. 왜냐하면 이는 동독법에 따라 취한 행동이기 때문임.

1-2-3. 민족(Nation) 문제

○ 분단 독일에서 민족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되었었음.

- 국가민족(Staatnation)을 민족으로 보는 입장으로 프랑스혁명의 전통을 이은 서구적인 전통적 민족개념임.
  - 이 개념에 의하면 분단 상황에서 두 개의 상이한 국가형태가 존재하는 한, 동·서독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지므로, 서독 정부는 이 국가민족의 개념에 의해 통일문제를 논하지 않았음.
  - 이 국가민족 개념에 의하면 기본법상 명시되어 있는 "전 독일 국민에게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자유로운 자결권행사를 통해 완성할" 의무를 부과한 통일명제가 의미가 없어짐.
- 문화민족(Kulturnation) 개념에 의하면 민족은 공통된 역사와 언어와 문화를 가진 문화 공동체로 파악됨.
  - 이 개념에 의하면 두 개의 상이한 사회체제에 기초한 별개의 정부 형태를 가진 동·서독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계급적인 요소(계급, 계급투쟁, 사회주의)를 민족개념을 구성하는 불가결의 요소로 보는 입장임.
  - 동독은 동·서독 분리정책의 일환으로 민족개념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며, "사회주의적인 민족"(Sozialistische Nation)과 "자본주의적 민족"(Kapitalistische Nation)으로 나누어, 서독과 같은 민족임을 부정해 왔음.
  - 동독의 입장에서 보면 계급적 관점에서 평화, 진보, 사회주의 편에 있는 모든 독일인이 사회주의 민족에 속함.
  - 동독은 공통의 역사와 언어, 문화 등의 귀속적인 요소는 "Nationalitaet"라는 개념으로 설명함.

○ 기본조약상에는 동·서독 양측의 민족적인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의 불일치가 전문 5절에 명시되어 있으며, 서독 헌법재판소도 기본조약에 대한 판결에서 기본조약과 기본법을 연관시키면서 민족문제에 관한 동·서독의 상이한 입장을 지적한 바 있음.

- 서독 정부의 민족개념은 당시 수상이던 Willy Brandt가 1960. 1. 14 "민족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역사적인 현실과 정치적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공통의 언어와 문화, 국가와 사회질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서 느끼는 지속적인 공통귀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서독 정부는 독일정책 추진상 민족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독일 민족의 존재는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임과 동시에, 이러한 하나의 민족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독일정책은 독일민족의 정치적인 의지와 상충됨으로 동독의 민족이질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동질성 유지에 역점을 두어 왔음.
  - 문화민족으로서 독일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민족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만이 현재 통일이 실현될 가망이 없어 보이는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음.
  - 서독의 독일정책은 따라서 민족의 영속성의 기본전제가 되는 동·서독인들 간의 민족의지, 민족의식, 민족의 공통귀속성을 유지하고, 장려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서독측은 민족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의식적인 요소를 강조했지만, "정지적인 유대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지를 중요시하였음.
  - 서독측은 동독과 기본조약 체결시 조약전문에 서독측 민족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명확한 조약상의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민족개념 정의는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로서, 양측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조약상의 합의자체가 불가능했던 만큼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였음.
- 동독은 1968년 헌법까지 하나의 독일민족(eine deutsche Nation) 입장을

고수했으나, 1970년대 초부터 민족문제와 관련 2개의 민족론(Zwei-Nationen-These)을 선언했음.

- 1974년 헌법과 1976년 동독공산당 강령의 수정을 통해 "독자적인 사회주의 민족의 창출"과 더 이상 단일한 독일민족이 존재하지 않음을 천명했음.
- 1974년 헌법에는 1968년 헌법에 포함되어 있던 "독일민족" 단어와 "통일"(물론 사회주의 하의)이란 단어가 삭제되어 있음.
- 1976년 공산당 강령에는 "사회주의적 민족이란 노동자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해 영도되는, 적대적인 모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계급과 제 계층으로 구성된 우호적인 공동체를 말함. 이 사회주의적 민족은 동독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포괄하고 있음. 이 사회주의적 민족은 독자적 주권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며, 그의 경제적인 토대는 사회주의적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제 생산수단에 기초한 사회적인 소유임.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임."이라고 명기되어 있음.
- 이념담당 정치국원인 Hearmann Axen은 '사회주의적 민족'에 관한 정의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권력, 사회주의적인 생산방식, 이에 따른 대내·외적인 정책이 자본주의 독일 민족국가가 서독과 대치되는 사회주의 독일민족국가인 동독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밝힌 바 있음.

1-2-4. Salzgitter 소재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 폐지 문제

○ 설치근거

- 베를린장벽 설치로 인하여 동독지역과의 왕래가 차단된 이후 각 주 법무장관회의('61. 10. 25~27)에서 동독지역에서 자행되는 반법치국가적, 정치적 폭행사례를 기록하기 위하여 니더삭센주 법무성 산하에 임무 수행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것을 결의함.
- 니더삭센주 국경근방 도시인 Salzgitter에 이 기관이 설립된 것은 니더삭센주가 가장 동독과의 국경이 길었고, 국경근방 도시 중 Salzgitter가 지방법원이 소재한 비교적 큰 도시였기 때문이었음.
- 니더작섹주 법무장관은 '61. 11. 15자 발령을 통해 Salzgitter에 주 법무부 부속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를 설립했으며, '61. 11. 24자로 공무를 개시함.

○ 조직 : 총 7명

- 검사 2명 : 고등검사 1명(소장), 평검사 1명
  - 고등검사는 주1회 근무, 평검사는 주2회 근무
- 주 법무성 공무원(실무책임자) 1명
- 계약직 공무원(기록전문요원) 4명

○ 임무 및 기능

- 서독정부는 동독지역 주민의 인권보호적 견지에서(인권보호적 기능), 통일 후의 법치국가적 질서확립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가해의 수단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이되면, 또는 동독이 자유민주국가가 되면 그러한 자연법적 질서를 어긴 악행은 처벌 받는다는 경고를 통해 가해자들로 하여금 그 폭력행위를 자제토록 하기 위해(경고적 기능) 설치되고 운영되었음.
- 이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은 형사소추권은 없고 동독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사례의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를 사례 및 관계인 이름별로 분류기록하고 그 증거서류를 보존함.
  - 거주이전의 자유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정권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여지거나, 지시되거나 또는 묵인된 모든 형태의 살인행위 및 그 미수행위.
  -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너무 과도한, 인도주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형벌을 선고한 테러적 판결.
  - 수사과정 중 또는 형사재판상의 조사를 구실로 행하여진 내지는 형무소 수감자에게 자행된 부당행위로서, 이것이 "동독의 정치폭력체제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경우.

- 서독 형법 220조 a(종족살인), 234조 a(납치) 및 241조 a(정치적 무고)에 따른 처벌사항으로 인정되는 제 행위.

– 폭력행위 사례에 관하여 충분한 혐의점이 있을 경우 이는 기록되며, 그 이후의 절차는 행위의 유형별로 달라짐.

  - 살인행위의 경우 사실관계는 광범위하게 규명되었음. 특히 증인으로 간주되는 자는 경찰의 심문을 받으며, 그밖의 모든 제공증거들이 수집됨. 이에 의거 범행혐의가 현저하여, 판사에 의한 증거확보 또는 구속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 건은 형사소송법 제13조a에 따라 관할법원 결정을 위해 연방대법원으로 이송되며, 다음 절차는 관할법원의 검찰청이 인수하여, 후속조치를 취했음.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절차는 필수적이었음. 이를테면 본 부서가 독자적으로 판사에 의한 증인심문 따위를 신청할 수는 없었음.

  - 가혹행위와 관련, "동독내의 정치폭력체제의 표현"으로 분명히 평가될 수도 있었을 그러한 사례는 수형자들이 가해사례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교도관들의 부당행위로서, 이것이 동독 정치지도층에 의해 조직적으로 지시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묵인되었음은 확인되지 않았었음. 이러한 사례는 폭행사례 기록보존소에 의해 동독의 각 형무소별 서류철에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기재되며 진술에 입각하여 범행자로 간주되는 자의 성명은 추가로 알파벳순의 명부에 기록됨.

  - 정치적 무고로 기록된 경우는 형집행기간 동안에 있었던 정탐행위 내지는 탈출계획을 동독관헌에 밀고하는 행위들이 주를 이룸. 이 경우 사건의 진상규명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혐의로만으로는 연방대법원에 의한 관할법원 결정과 담당 검찰청의 사건처리를 의뢰할 수 없었음. 따라서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는 이러한 사례는 기록하는 정도로만 업무를 한정지었으며, 물론 피해 인물이 서독으로 넘어올 경우, 수집보관자료는 활용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사건은 피해자 거주지역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됨.

  - 폭행사례 기록보존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유죄판결 사례를 주로 다룸. 본 사례는 서독 또는 서베를린으로 넘어오는 피해자가 폭행사례 기록보존소가 주도하는 심문과정에서 자신과 동료 죄수들의 불운에 대해 보고를 함으로써 공개된 바 있음. 이 경우 기록보존소는 판결사례를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이는 기록되었는데, 소위 '공화국 탈주'로 인한 1년 이상의 금고형 판결사례가 주였으며, 피해자와 증인의 심문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기록보존소의 소관영역에서 제외되었음.

ㅇ 기록절차

– 관계인들로부터 자료·정보 수집

  - 서독에서 댓가를 지불하고 동독으로부터 구해온 정치범들(63년부터 약 33,000명) 증언.
  - 동독지역으로 탈출한 군인(베를린장벽 설치 이후 약 2,600명)들 증언.
  - 동독에서 발행되는 각종 시사지, 간행물 등에서 사례 수집.
  - 동독지역에서 서독의 친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전화를 통한 피해사례 수집(전화는 도청당할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했음).
  - 동독지역을 방문한 서독사람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례 수집.
  - 합법 이주자들로부터 사례 수집.
  - 기타 연방 정보기관과 협조.

– Salzgitter의 Erfassungsstelle에서 각 주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여 관계인이 서독지역에 와있는 경우, 질문서를 보내 진술청취 및 조사.

  - 국경선에서 국경탈출자에 대한 발포행위의 경우는 국경수비대에서 조사서를 작성함.

– 진술조사를 마친 질문서는 다시 Salzgitter에 있는 Erfassngsstelle로 보내져 정리되어 컴퓨터에 입력 수록됨.

– 30년 동안 80,000명의 관계인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10,000명은 형사소추가 가능한 피의자들이고, 70,000명의 관계증인 및 피해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판검사도 6,500명이나 수록되어 있음.

– Salzgitter의 Erfassungsstelle는 형사사건만 기록하고 민사사건의 경우, 특히

재산권의 경우는 정치적 박해에 의해 재산이 몰수된 경우 이외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 설립시 모범으로 삼은 기관

- 바덴뷔테베르그주의 Ludwigsburg에 소재한 전후 전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처벌하기 위한 나찌만행 기록소인 Zentrale 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

○ 통일 이후 중요한 역할 담당

- 동독지역 신설주의 사법체계를 세우는데 있어 과거 전력이 깨끗한 판·검사를 선발하는 주요한 증거자료 제공.
- 동독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통일 후 신체상, 재산상의 복권,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
- 신설주의 사법체계 수립 후 과거 반법치국가적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증거자료 제공.
- 통일과 더불어 애초의 기록기능을 이미 상실했으며 자료의 대부분이 이미 Koblenz의 중앙문서 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통독 이후('91) 해체되었음.

○ 기관의 운영문제

- 예산과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니더삭센주 법무성 산하에 설치되어 관할에 속했으나,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는 완전 중앙독립기관 역할을 하였음.
  - 각 주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각 주 법무장관 회의에서 니더삭센주 법무장관을 통해 의견을 표명했지만
  - 사건별 기록업무는 직접 각 주정부 경찰에 지시하여 수행함.

○ 동독정부는 이 기관의 존재 자체를 동독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이 기관의 해체를 주장해 왔음.

- 동독은 동 기록보존소를 "서독이 독일을 단독으로 대표하겠다는 저의에서 서독법원의 주권확대를 목적으로 협법상의 국민권 실행을 빙자하여 동독 국민을 불법적으로 박해하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기관"이라고 간주했음.
-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서독법원이 동독내에서 동독 독일인에 의한 행위를 형법상의 관점에서 법률행위로 인정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서독형법 제7조 2항의 1호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범행시 독일형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됨 : 범행이 범행지에서 처벌대상이 되고 범행자가 범행시 독일인이거나 또는 범행 후 독일인이 되었을 경우임.
- 기본조약의 합헌성에 대한 '73. 7. 31일자 연방 헌법재판소의 확인판결에 의거 서독정부는 동독을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으로 간주하지 아니했음.
- 서독형법 제7조 2항 1호의 의미에서는 마치 동독이 외국처럼 다루어지나, 동독주민은 위에서 언급한 판결에 의하면 기본법상 독일인이기 때문에 서독의 법원은 동독에서 벌어진 범행이 동독에서도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 서독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음.

동독의 정치폭행사례 관계인 조사질문양식

- Salzgitter Erfassungsstelle 제공자료 번역문 -

1. 상기 증인(정치폭행사례 피해당사자를 지칭함)을 대상으로 실시된 처벌절차는 어떤 개별적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는가?

2. 언제 어떤 법원에 의하여 판결을 받았는가?

3. 재판담당판사, 배석판사 및 검사의 성명은 어떠한가?
   증인은 Stasi 요원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는가?

4. 재판부는 어떤 사실에 입각하여 선고를 내렸는가?

5. 재판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가?

6.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7. 증인측에 불리한 재판절차상의 부당행위가 있었는가?

8. 어떤 형벌이 가해졌는가?

9. 증인은 재판기록(기소문, 공판결의서, 판결문, 석방문서 등)을 아직 소지하고 있는가?
   그럴 경우 주어진 문서들의 사본 보관.

10. 증인과 더불어 다른 인물들도 처벌을 받았는가?
    그럴 경우 세부사항(피해자 인적사항과 소재지 및 형량)의 확인.

11. 증인은 밀고행위로 인한 피해자였던가?
    그럴 경우 증인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관련자로 간주되는 인물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함(성명, 익명, 주소, 연령, 인상착의, 특징).

12. 증인은 언제 어떤 처벌기관에서 심리구속 내지는 금고형을 치루었는가?

13. 수사, 심리구속 및 형집행과 관련되어 증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들이 밝혀지고 있는가? 그럴 경우 상세한 내용과 증인으로 간주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

14. 정치적 이유로 처벌을 받은 동료 수감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증인으로부터 알려지고 있는가?
    어떤 교도기관에 그들은 수감되었는가?

설문서는 3부로 작성될 것.
증인이 이주를 했을 경우, 본 설문서는 신 거주지 관할 공안 경찰서로 송부될 것.

1-3. 정상회담 및 고위급 접촉

1-3-1. 회담 및 접촉 개관

회담·접촉대표		일시 및 장소	논의내용
공식회담	1. 브란트 수상-슈토프 수상	1970. 3. 19 에어푸르트(동독)	양국관계 정상화
	2. 브란트수상-슈토프 수상	1970. 5. 21 카셀(서독)	양국관계 정상화
	3. 슈미트 수상-호네커 국가평의회의장	1981. 12. 11 동베를린(동독) ~12. 13 근교	경제협력 등 양독관계 전반
	4. 콜 수상-호네커 국가평의회의장	1987. 9. 7 본(서독) ~9. 11	동독인들의 서독 자유여행, 환경·과학·기술분야 교류
	5. 콜 수상-모드로 수상	1989. 12. 19 드레스덴(동독) ~12. 20	대동독 경제지원 및 동독 개혁
	6. 콜 수상-모드로 수상	1990. 1. 16 본(서독)	대동독 경제지원 및 통일방안
비공식접촉	1. 카스텐스 대통령-호네커 국가평의회의장	1982. 11. 14 모스크바(소련)	브레즈네프 장례식 참석
	2. 콜 수상 - 호네커 국가평의회의장	1984. 2. 14 모스크바(소련) ~9. 11	아드로포프 장례식 참석
	3.콜 수상 - 호네커 국가평의회의장	1985. 3. 12 모스크바(소련)	체르넨코 장례식 참석

1-3-2. Brandt-Stoph의 에어푸르트(Erfurt)에서 양독 간 첫 정상회담

○ 양독 간의 첫 정상회담은 Brandt 수상이 1969. 10. 28 취임시정연설에서 양독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동독측에 협상을 제의한 이래, 먼저 동독측의 구체적인 회담개최 제안에 의해 이루어짐.

- '69. 12. 17 동독 국가수반인 Wallter Ulricht는 서독대통령 Gustav Heinemann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동·서독 간 동등한 관계수립을 골자로한 국가조약안 협상을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협상대표로 Willy Stoph 동독수상과 Otto Winzer 동독외무상을 지명함.
- 이에 대해 Heinemann 대통령은 Ulbricht에게 '69. 12. 19 협상제안을 환영하며 서독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회신함.
- '70. 1. 22 서독 Brandt 수상은 동독수상 Stoph에게 서신을 보내고 "두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중에서도 동등한 관계의 설정문제에 관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실질문제에 관한 협상을 통해 주민들의 분단고통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양독 간 정상회담(수상 간)을 수락한다고 밝힘.
  - 아울러 회담의 사전준비와 진행 등 기술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대표로 서독측에서 Egon Franke 내독관계성 장관을 지명함.
- 그 이후 Dr. Horst Ehmke 서독 수상실장관과 Michael Kohl 동독 내각 사무처 처장 간의 전문교환을 통해, '70. 2. 20 양측은 '70. 3. 2 첫 회담 준비 실무접촉을 갖기로 함.
  - 실무접촉 대표로 서독측은 수상실 차관보인 Dr. Ulrich Sahm을, 동독측은 내각 사무처 부처장인 Dr. Gerhard Schuessler를 각각 임명함.
  - 이 실무회담은 '70. 3월 3, 5, 9, 12일에 각각 개최됨.

○ 실무접촉 과정에서는 의제문제보다 회담장소 문제가 더 쟁점이 되었음.

- 동독측은 '70. 3. 9 양독 정상회담 준비 실무접촉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Brandt 서독수상이 서베를린을 거쳐 동베를린을 방문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함.

- 서독측은 Tuebingen의 Wicker-Institut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독 주민의 86%가 회담장소로 Berlin 이외의 지역을 거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
- 결국 동독측은 서베를린 문제로 제기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3의 장소로 Erfurt를 제안했고, 서독측도 이를 수락함.

○ Brandt 수상 일행은 특별열차편으로 '70. 3. 19일 7:45에 국경에 도착했으며, 동독 각료회의 내각사무처 처장인 Dr. Michael Kohl과 외무성의전장인 Horst Hain의 영접을 받음.

○ 특별열차는 '70. 3. 19일 9:30에 Erfurt 중앙역에 도착했으며, 마중나온 동독수상 Willy Stoph는 "나는 당신이 동독땅을 밟게 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나의 초청을 수락하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라고 짤막한 인사말을 건네고 양측은 각 회담대표를 소개함.

○ '70. 3. 19 Erfurt 첫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협상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함.

동독측(7개항)

1. 국제법의 기초 위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고 동독과 서독 간에 동등한 정상적인 관계의 수립, 어떤 형태로든지 서독정부에 의한 단독 대표라는 월권의 포기.
2. 다른 국가의 대외관계에서의 불간섭, 할슈타인 원칙의 궁극적이고도 명백한 포기.
3.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제한없는 국제법상의 주체의 상호승인, 영토보전과 기존 국경선 불가침성의 상호승인하에 동·서독 간의 무력 포기.
4. 동독과 서독의 유엔기구에의 가입신청.
5. 핵무기 소유의 포기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핵무기 처분권의 포기, 생화학무기의 생산, 사용 및 저장의 포기, 군비지출의 50% 감축.
6.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잔재의 제거와 관련되고 있는 문제들의 토의.
7. 동독에 대한 서독의 모든 부채의 청산과 서독에 의한 배상 규정 마련.

서독측(6개항)

1. 양국가는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수호할 의무를 짐. 양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님.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들, 특히 모든 차별의 배제, 영토 보존의 존중, 모든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의무 및 양측경계의 존중 의무 이행.
3. 조약 파트너의 영역 안에 있는 사회구조를 폭력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함.
4. 양 정부는 선린관계적 협력, 특히 정부 간 합의에 의해서 상호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함.
5.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강대국의 현존하고 있는 권리와 책임들은 존중되어야 함.
6. 베를린 그리고 베를린을 에워싼 지역의 개선에 관해 합의하려는 강대국의 노력을 지지해야함.

- 동독측은 Stoph의 연설을 통해 이날 회담에서 동독이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서독측으로부터 제한조건 없이 국제법적인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서독은 이미 파리조약을 통해 스스로 외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양 국가 간의 관계는 내독 간의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음.
- Stoph는 양독은 서로 상이한 사회체제를 갖고 있으며, 서로 그 어떤 간섭이나, 체제 간의 잘못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Brandt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동독공산당(SED)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초 위에 차후에 통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서독 내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함.
- 한편 서독측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서독국방성이 동독과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함.
- 원칙문제 7항에 제기한 배상은 1961. 8. 13 베를린장벽 구축 이전에 국경이 개방되어 있을 때 서독측에 의해 저질러진 "경제전쟁"(Wirtschaftskrieg)으로 인한 인력의 유출(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탈출한 고급 인력)에 대한

대가라고 함.

- 서독측은 양국 간의 관계는 차별금지, 동등성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한편이 다른 한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Brandt는 Stoph의 서독국방성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고, 상호 차별금지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함.
  - Brandt는 자신의 '69. 10. 28자 서독의회에서의 시정연설을 상기시키며 동독의 국제관계에 관한 서독과 그 우방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독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함.
  - 아울러 Brandt는 독일민족의 자결권은 그 어떤 조약을 통해서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확인함.
  - 마지막으로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해 '70. 5월 초에 Stoph를 서독으로 초청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특별전권위원자나 공동위원을 임명하자고 제안했음.
- '70. 3. 19 오후에 속개된 회담은 Brandt와 Stoph 간의 단독면담으로 이루어졌는데, Stoph는 Brandt의 특별전권위임자나 공동위원의 임명제안을 동독의 대사교환제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였고, Brandt는 원칙문제 7항에서 동독측이 제안한 배상요구를 "양측이 각기 도입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라고 거부함.

○ '70. 3. 19 오후에 Brandt 수상은 Winzer 동독 외무상의 안내로 이전 나찌 수용소 기념관이 있던 Buchenwald를 방문하여 헌화함.

- 이곳 방문시 데모대들이 "서독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군국주의와 신나찌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서독의 노동자와 학생들의 민주적인 제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 '70. 3. 19 저녁 양측은 짤막한 공동성명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 양측은 '70. 5. 21 Kassel에서 제2차 회담을 갖기로 회의함.
- 양국의 회담대표 중 동독 외무장관과 서독 내독관계성 장관은 각각 '장관'(Minister)으로만 호칭됨.

○ 동독정부는 Erfurt 정상회담에서 51개국 616명의 언론인에게 취재를 허용함.

- 이 중에는 136명의 서독 언론인과, 15명의 서베를린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음.

1-3-3. Brandt-Stoph의 카셀(Kassel) 제2차 정상회담

○ 1970년 5월 21일 양 독일국가는 에어푸르트(Erfurt)에서 합의한 대로 양독 간의 관계수립을 위한 제2차 수상 간 정상회담을 가졌음.

- 오전에는 양측의 각각 기조연설(서독측이 먼저)이 있었는 바, 동독측의 Stoph 수상은 기조연설에 앞서 동독을 차별하는 서독 연방법의 국제법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서독측을 비난했음.
- 점심 휴식시간에 동독 Stoph 수상은 서독 공산당(DKP) 당수인 쿠어트 바흐만(Kurt Bachmann)을 접견하고 환담함.
- 오후에는 양측이 제2차로 각각 입장을 설명했으며, 그 이후는 또 한번의 브란트-슈토프 간 단독회담을 가짐.
- 에어푸르트에서와는 달리 회담 후 다음 번 회담속계를 언급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음.
- 동독으로 떠나기에 앞서 동독측은 브란트 수상의 안내로 파시즘 희생자 위령탑을 방문하고 헌화함.

○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장 밖에서는 극우단체와 서독공산당(DKP)이 주도하는 극좌단체 간의 충돌이 일어났음.

- 극우단체의 청년 3명은 회담장의 동독국기를 끌어내려 찢어버렸으며, 동독회담 대표들에게 투석을 하고, 파시즘 희생자 위령탑에 헌화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시도함.
- 한편 서독공산당(DKP)은 1968년 서독정부로부터 창당이 허용된 이래 이번 동독수상의 방문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주요 계기로 삼고, 대대적인 인력동원을 계획하고 서독정부에게는 동독정부와 타협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함.

- 서독 공산당은 애초 노조, 사민당내 좌파와 자민당내의 진보적인 세력을 망라하여 십만 이상의 시위대를 카셀로 동원할 계획이었으나, 서독공산당원과 소수의 다른 좌파그룹 등 3,000명을 동원하는데 그침.
- 그러나 많은 수의 젊은 층을 동원하여 이를 계기로 서독내에서 서독공산당의 잠재적 지지계층을 확인할 수 있게 됨.
- 서독공산당의 시위계획의 목표는, 동독공산당은 사회주의 통일당(SED)이 동독주민에게 그러했듯이, 서독공산당을 서독주민에게 카셀에서의 협상실패가 서독정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하였음.

○ 브란트 수상은 양독 간의 동등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과 조약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20개 항을 제시함.

○ 동독측 슈토프 수상은 기조연설에 앞서 서독측의 동독에 대한 차별적인 입법조치에 대해서 항의함.

– 그는 "여전히 서독에는 서독의 정부기관들과 재판소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서독의 국경선을 넘어 동독과 동독시민들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는 법률, 판결, 국가적 행위의 전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주장함.

– 아울러 브란트 수상에게는 "서독의 법률과 법령, 판결문, 서독국가 기관의 결정 및 행위들이 그 기존 국경 안에 있는 서독과 그의 시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동독과 그의 시민들에까지 국제법을 위반하여 확대함은 무효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브란트 수상은 준비한 연방공보처에서 작성한 동·서독 입법 조치에 관한 문서를 전달하며 동독측의 주장을 반박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동독은 서독 입법에 있어 '내국'이라는 개념이 1937. 12. 31의 경계선 안의 제국영역으로 알고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동독의 견해에 의하면 서독은 이로써 다른 국가와 그 국가의 주민들에 관한 고유한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법 위반적인 단독대표라는 월권'이 문제되고 있고, 새로운 동방정책과 구주평화질서를 위해 서독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배후에는 침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고, 이는 '법률적인 침략' 또는 '계획된 합병의 법률적인 선제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음…

– … 서독정부는 동독을 차별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해 '법류적인 침략책'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음. … 오히려 일련의 우리 법률들은 동독주민에게 명백히 이득을 주고 있음. 특히 내독 간 경제교류에 관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하여 동독에게 상당한 재정적인 이득을 만들어 주고 있는 1961년 6월 21일자의 관세법은 물론, 구주경제공동체 내에서 서독의 노력에 의하여 독일 내의 양 국가의 무역과 구주경제공동체의 공통적인 무역정책의 규제들을 구주경제공동체의 조약에서 제외시키고, 그리하여 동독에 매년 마다 1억 '마르크' 이상 규모의 이득을 제공해주고 있는 규정을 관철시킨 1957년 3월 25일자의 양독 간 통상에 관한 '의정서'를 언급할 수 있음.

– …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은 독일 땅 위에 있는 독일민족은 1970년에 현존하는 사실상의 경계안에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의 기반 위에서 서독은 그의 입법 실제에 있어 기본법의 헌법질서가 기본법의 효력권에 대해서만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확신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어떤 형태로든 동독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서독의 법률들이 그의 형식적인 효력을 1937년 12월 31일자의 경계안에 있었던 옛날의 독일제국의 영역에까지 미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률들은 그의 실제적인 적용을 기본법의 효력권에 국한시키고 있음.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적으로 형식상 1937년 12월 31일자의 경계에 있던 독일제국의 영역에까지 요구하고 있는 1967년 5월 29일자의 매상세법의 적용을 관세관청 관할권에 관한 규정들에 의해 오직 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에 있는 그의 기업들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에 국한시키고 있음.

– … 1945년 이후 독일 점령지대들 간에 완전한 법의 평등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동독과 서독에 법률체계가 각기 별도로 발전했고 1949년 이후 동독에서는 전해오는 동독법을 새로운 입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완전히 폐기하려는 경향이 명백히 나타나기 시작했음. 동독의 정치질서와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이러한 새로운 입법은 어떤 경우 빈번히 그의 효력을 서독에도 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음. 그에 대한 좋은 예는 소위 1950년 12월 15일자의 평화보호법이 바로 그것임.

– … 항의를 받고 있는 서독의 국적규정에 관한 기본법 제116조는 동독에서 살고 있는 독일인에 대한 서독 국가권력 행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 기본법 제116조는 그의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 기본법의 효력권 안에 자기 주소 또는 일시적인 체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거나 자신이 서독의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함. … 동독의 형법전 제3장 제80조를 근거로 하여 '다른 국가의 시민들 및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동독의 주권에 대한 범죄를 또는 동독에 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동독 밖에서 범한 범행 때문에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음. 1950년 12월 15일자의 평화보호법 제3장 제10조는 '독일국가 시민의 행위가 동독의 영역 안에서 범해지지 않는 경우, 비록 그 행위자가 동독의 영역 안에서 여하한 주소나 통상적인 체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독의 최고재판소가 관할한다고 천명하고 있음. … 1965년 12월 12일자 동독친족법 시행법 제1장 제15조 2항을 근거로 동독시민과 다른 국가의 시민 간의 결혼은 '비록 그 결혼이 동독 밖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호적제도 문제를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 이것은 서독 연방지역 안에서 동독의 주민과 결혼하고자하는 모든 옛날의 동독 피난민은 물론 그의 후손들도 동독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규제로써 동독은 상당한 정도로 그의 입법과 사법권의 영역을 서독시민에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동독이 서독을 비난하고 있는 바를 자신이 범하고 있는 것임"

○ 슈토프의 오전·오후 2회에 걸친 연설을 통한 동독측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았음.

– 브란트 수상이 제시한 20개항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분명히 거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함.

– 동독측으로서는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없이는 그 어떤 문제에 관한 규정을 통한 양독관계의 제도화도 불가능함.

– 동독측은 파리조약 7조의 효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

– 독일민족의 통일은 이미 불가능함.

– 동독에서의 이미 포츠담 협정의 기본정신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4대 점령군의 독일에 대한 책임은 단지 서독과 관련된 문제임.

– 서베를린은 결코 서독에 속하지 않으며, 동독 영토내에 존재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위체임.

– 양독 국가가 UN에 동시에 가입해야 함.

– 서독측이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문제에 관하여 현실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

1-3-4. 과거 동·서독 간 주요 정상회담 행사사례 조사표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1)	본('87)
• 회담일시	- '70. 3. 19	- '70. 5. 21	- '81. 12. 11 - 13(3일간)	-'89. 9. 7 - 11(5일간)
• 회담대표	- 서독측 · 브란트 수상 - 동독측 · 수토프각료회 의장(수상)	좌 동	- 서독측 · 슈미트 수상 - 동독측 · 호네커 당서기장 겸 국가평의회 의장	- 서독측 · 콜 수상 - 동독측 · 호네커 당서기장 겸 국가평의회 의장
• 영부인 대동여부	- 대동하지 않음	- 대동하지 않음	- 대동하지 않음	- 대동하지 않음
• 수행원	- 서독측 〈 공 식 〉 · 프랑케 내독관계성 장관 · 도른 내무성차관 · 알러스 공보처장	좌 동	- 서독측 : 54명 〈 공 식 〉 · 프랑케 내독관계성 장관 · 람스도르프 경제성 장관	- 동독측 : 51명 〈 공 식 〉 · 미타크 정치국원 겸 국가평의회 부의장 · 피숴 외무성 장관 · 바일 대외무역성 장관
	· 삼 수상실 차관보 · 바이허르트 내독관계성 〈 비공식 실무진 〉 · 슈테른 수상실 과장 · 뮐러 공보처 국장 · 리첼 수상비서 · 만케 내독관계성 과장 · 쉬어바움 내독관계성 과장 · 프리취 연방수사국 과장 · 그 외 9명의 속기, 경호, 의전 관계자 - 동독측 〈 공식〉 · 빈쩌 외무성 장관 · 콜 내각사무처 처장 · 코르트 외무성 차관 · 슈쓸러 내각사무처 부처장 · 보쓰 외무성 차관보 〈 비공식 실무진〉 · 로르프 외무성 국장	좌 동	· 후온케 수상실 국무상 · 뵐링 상주대표부 대표 · 베커 공보처장 · 뷔르첸 경제성 차관 · 히르트 내독관계성 차관보 · 마이흐스너 내독관계성 차관보 · 리흐트호펜 수상실 국장 · 브로이티감 외무성 국장 〈 비공식 실무진 〉 · 슈테른 수상실 국장 · 헬벡 상주대표부 부대표 · 훼인크 수상실 과장 · 뢰쉬 경제성 과장 · 브룬스 수상실 수상 비서 · 플뤽 공보처 과장 · 뵐펠 주치의 · 포겔 경제성 공보과장 · 귄터 의전담당 참사관	· 헤르만 국가평의회 의장 비서실장(차관급) · 니어 외무성 차관 · 몰트 상주대표부 대표 〈 비공식 실무진 〉 · 레트너 당국제정치 경제위원장 · 켈름 당서기장 개인비서 · 볼프 소장 · 그룀케 미타크 개인비서 · 크라바취 외무성 기획국장 · 메이어 외무성 공보국장 · 야르놉스끼 외무성 의전장 · 니클라스 외무성장관 비서실장 · 사이델 외무성 서독담당 국장 · 슈테커 대외무역성 차관보 · 파울 대외무역성 국장 · 데바욱스 외무성 본부대사 · 로렌샤이트 외무성 공보과장 · 소르 외무성 의전과장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 교통수단 – 왕래교통수단	– 특별열차 · 국경까지는 자국	좌 동

동베를린 근교('81)	본('87)
· 2명의 기자담당자 (공보처, 상주대표부) · 3명의 수상실 여비서 · 1명의 공보처 속기사 · 1명의 상황실 요원 · 1명의 문서기록 요원 · 1명의 사진사(공보처) · 2명의 화물담당자 · 6명의 통신요원(연방국경수비대) · 13명의 특별열차 운행 관계자 · 15명의 경호요원 – 동독측 · 피숴 외무성 장관 · 야놉스키 외무성 의전장 – 갈 때는 특별공군기 (보잉 707)	· 2명의 여비서 · 3명의 각료회 문서기록 요원 · 3명의 의사 · 1명의 상주대표부 1등 서기관 · 5명의 통신요원 · 17명의 경호요원 – 서독측 · 브로이티감 상주대표부 대표 · 두이스베르그 수상실 국장 · 숄렌부르그 외무성 의전장 · 2명의 의전관계자 · 1명의 주치의 – 인터폴르크 특별 민항기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올 때는 특별열차	열차이용, 국경에서부터는 객차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관차만 상대편 것으로 교체	좌 동
– 상대편지역내 이동	– 의전차량	좌 동
– 수상전용차량 유무	– 안갖고 갔으며 초청국 의전차 이용	좌 동
• 도착시 영접		
– 기상영접	– 없었음	– 없었음
– 영접자	– 슈토플 수상 · 각 공식 수행원 도열	– 브란트 수상 · 각 공식 수행원 도열

동베를린 근교('81)	본('87)
	– 헬기, 의전차량 좌 동
– 동독외무성 의전장,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 호네커 당 서기장 겸 국가평의회 의장 · 마터크 정치국원 겸 국가평의회 부의장 · 피숴 외무성 장관	– 외무성 의전장,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 – 쇼이블레 수상실 장관 · 브로이티감 상주대표부 대표 · 레링 내독관계성 차관 · 두이스베르그 수상실 국장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1)	본('87)
• 도착 환영식				
– 장소	– 행사 따로 없었음 · 바로 회담장인 호텔로 직행	좌 동	· 헤르만 국가평의회 의장 비서실장(차관급) · 니어 외무성 차관 · 몰트 상주대표부 부장 · 메이어 외무성 공보 국장 · 사이델 외무성 서독 담당 국장 〈 서 독 측 〉 · 뷜링 상주대표부 대표 · 상주대표부 직원 도열	· 슐렌 베르그 외무성 의전장 〈 동 독 측 〉 · 몰트 상주대표부 대표 · 상주대표부 직원 도열
– 국가연주	– 없었음	– 없었음	– 행사 따로 없었음	– 수상실
–의장대 서열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양독국가연주 있었음 · 동독국가 먼저
			– 없었음	– 있었음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1)	본('87)
– 예포발사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국기게양				
– 환영식장	– 환영식 없었음	좌 동	– 공항의 국기게양대에서 각각 1개씩	– 수상실에 각각 8개의 동독국기와 서독국기 게양
– 숙소	– 회담장이자 숙소인 호텔 앞에 양국국기 1개씩	좌 동	– 영빈관에 양국국기 각각 1개씩	– 영빈관에 양국국기 각각 1개씩
– 거리	– 동독국기와 적색기 게양	– 게양하지 않음	– 게양하지 않음	–게양하지 않음
– 회담테이블	– 양국 국기를 놓았음	– 없었음	– 양국국기를 놓았음 (동독의 의전관례)	– 양국국기를 놓지 않았음 (서독의 의전관례)
– 차량	– 수상 동승차량에 양국 국기 부착	좌 동	좌 동	좌 동
– 기관 및 지역 방문시	– 기관 및 지역방문 없었음	좌 동	– 국가의전사항은 아니고 각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	좌 동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본('87)	동베를린 근교('81)
• 도착 후 숙소 또는 회담장까지 동행	- 슈토프 수상 동행	- 브란트 수상 동행	- 쇼이블레 수상실 장관이 수상실까지 동행 · 수상실에서 숙소까지는 의전장이 동행	- 호네커 당서기장 숙소까지 동행
• 모터 싸이클 동원	- 없었음	- 없었음	-7대 동원 · A급 수상 실무 방문 대우 · 본 지역과 주간에만 동원 · 바이에르주에서는 국빈으로 대우하여 15대 동원	- 13대 동원 · 국빈대우
• 가두시민 환영 또는 시위	-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앞과 연도에서 브란트 수상 환영(브란트의 첫 이름인 '빌리, 빌리'를 외침) - 동독정부에 의해 동원된 관제 데모대가 플랭카드('우리는 동독의 승인을 원한다; 산나찌주의를 철폐하라')를 들고 구호를 외침	- 서독공산당(DKP)을 위시한 극좌파와 독일민족주의당(NPD) 등의 극우파가 시위 중 충돌. - 극우파 청년 3명이 호텔 앞에 게양된 국기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음	- 극우파 단체의 시위는 있었으나 미미했음 · 동독에서 데려온 경호요원 15명 이외에도 상주대표부 직원 50명이 경호에 참가 경호조치에 동독측이 신경을 많이 썼음 · 호네커 서기장의 서독주민들과의 거리에서의 대화는 없었음.	- 귀스트로 방문시 · 보안요원들이 주민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에어푸르트에서와 같은 자발적인 지지 시위 없었음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본('87)	동베를린 근교('81)
• 현화	- 브란트 수상이 부헨 발트 나찌 유대인 집단수용소 기념관 방문 현화 · 빈쩌 동독외무상 안내	- 슈토프 카셀의 파시즘 희생자 위령탑에 헌화 · 브란트 수상 안내	- 뭔헨방문시 근교의 다하우 나찌 희생자 위령탑에 헌화 · 다하우시장 안내 · 동독측이 다하우를 택한 것은 호네커 자신이 개인적으로 나찌의 박해자였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키려 하였고, 본 근교에는 "전쟁과 폭력지배 희생지" 묘역이 있으나, 서독에서는 폭력지배 희생자의 범주에 나찌 희생자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의 희생자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동독측에서 이를 반대함	- 슈미트 수상이 직접하지 않고, 내독관계성 장관이 샤센하우센을 후온커 수상실 국무상이 할베를 각각 방문하여 나찌 집단수용소 기념관에 대신 헌화 · 외무성 부의전장이 각각 안내 · 서독측에서는 국가 예방적인 성격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여 슈미트 수상이 직접 하지 않음
• 공식연회 – 만찬	– 없었음	– 없었음	– 콜수상 초대만찬(9. 7) – 호네커 서기장 초대만찬(9. 8)	– 슈미트 수상 초대만찬(12. 13)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1)	본('87)
– 오찬	– 없었음	– 없었음	– 호네커 당서기장 초대오찬(12. 12)	– 바이체커 연방대통령 초대오찬(9. 7) – 라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츠 주지사 초대오찬(9. 9) – 포겔 라인란트팔츠 주지사 초대오찬(9. 10) – 슈트라우스 바이에른 주지사 초대오찬(9. 11)
– 공식연시회 공연	– 없었음	– 없었음	–없음	–없었음
• 지역방문	– 회담개최 장소와 헌화 장소 이외에는 다른 지역 방문 없었음	좌 동	–귀스트로 방문 · 슈비트 수상이 개인적으로 현대미술가인 에언스트 발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기념관 방문 · 시장이 열리는 광장을 지나 교회 방문	–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라인란트 팔츠, 자르란트, 바이에른 등 4개주 방문 · 각 주지사 면담 · 부퍼탈 프리드리히 엥겔스 생가 방문 · 트리어 칼막스 생가 방문 · 노인키르헨 호네커 고향 방문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1)	본('87)
• 환송식	– 슈토프 수상이 에어푸르트역에서 귀환하는 브란트 수상 전송	– 브란트 수상이 카셀역에서 귀환하는 슈토프 수상 전송	– 호네커 서기장이 수행원과 함께 귀스트로역에서 전송 · 외무성 의전장 기차내까지 안내	– 슈트라우스 바이에른 주지사가 공항에서 전송 · 바이에른주 의전장이 기내에까지 안내
• 숙소 – 장소	– 역에서 가까운 호텔	좌 동	– 영빈관 · 후버투스스톡성	– 영빈관 · 김나히성
– 숙소에 환영 현판 설치 여부	– 현판설치 없음 도착역에 "동독은 평화와 사회주의의 국가다"라고 적힘	– 환영현판설치 없음	– 현판설치 없음	– 현판설치 없음
– 음식준비(메뉴 결정, 기피음식, 기호음식 통보)	– 초청자측에서 메뉴 결정	– 초청자측에서 메뉴 결정	– 초청자측에서 메뉴 결정 · 선발대가 기피음식, 기호음식 사전 통보	– 초청자측에서 메뉴결정 · 선발대가 기피음식, 기호음식 사전 통보
– 검식			– 방문자측에서 원하면 할 수 있으나, 서독측은 하지 않았음	– 동독측은 경호요원들의 요구로 했음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1)	본('87)
– 전용요리사 대동 여부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본국과의 통신 수단 – 통신장비	– 가져갔음	좌 동	좌 동	좌 동
– 직통전화 가설	– 통신요원 간의 협조하에 가설	좌 동	좌 동	좌 동
• 경호용 무기 반출입	– 사용무기 명세를 상대방에 통보하고 반출입	좌 동	좌 동	좌 동
• 선발대 파견	– 회담준비 사전 실무 접촉을 갖음 · 공보·경호·의전 회담 장소문제 논의	좌 동	– 서독 외무성 의전장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선발대 파견 · 다른 국가 방문시와 마찬가지로 선발대 구성	– 동독 외무성 의전장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선발대 파견 · 다른 국가 방문시와 마찬가지로 선발대 구성 · 각행사별로 공보·경호·의전사항 확인

사 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1)	본('87)
• 체제 및 행사비용 부담	– 행사비용 동독 부담	– 행사비용 서독 부담	– 체제 및 행사비용 모두 동독 부담 · 동독측은 수행원 규모에 관련 없이 항상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주장	– 체제 및 행사비용 모두 서독 부담 · 서독측은 국빈과 15명의 수행원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나, 동독측과는 상호주의에 의거 모든 비용을 다 부담 · 각 주를 방문할 때는 연방에서 교통·통신 분야 비용만 부담하고 숙식은 각 주가 부담
• 주치의 대동 및 구급차량 제공	– 주치의 대동하지 않았으나 동독측 구급차량 대기	– 주치의 대동하지 않았으나 서독측 구급차량 대기	– 1명 주치의 대동, 동독에서 제공한 구급차량이 주치의를 태우고 행사에 따라 다님	– 3명의 주치의 대동, 서독에서 제공한 구급차량이 주치의를 태우고 행사에 따라다님

1-4. 분쟁조정기구

1-4-1. 상주대표부

1-4-1-1. 설치에 따른 논란

○ ’72. 12. 21 기본조약 협상시 동·서독 양측은 기본조약 제8조에서 양국 정부 소재지에 각각 “상주대표부”(Staendige Vertretung)를 설치할 것에 합의하였음.

- 그 이래 동·서독이라는 양국관계의 법적성격과 상주대표부의 법적성격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늘 공개적으로 정치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서독 헌법재판소는 ’73. 7. 31자 기본조약에 관한 판결에서 “양국은 정부 소재지에 각각 대사가 아니라 상주대표를 교환한다”라는 기본조약 제8조 규정을 양독 간에 “법적인 입장에서 특수한 성격을 인정하는 의견접근으로” 보았음.

○ 서독정부는 기본조약 제8조 제2항에 따른 동독과 협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음.

- 공식명칭은 대사관이 아닌 “상주대표부”로 함.
  - 동독측은 동베를린 주재 상주대표부는 유럽의 다른 국가 외교기관과 동일한 대사관이며, 본 주재 상주대표부도 동일한 위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
  - 서독측은 연방내의 국가 간 관계나, 독일에서 19세기부터 존재하던 연방국가내의 각 지역 국가들 간의 교섭관계, 또는 기 설치된 국제기구나 유엔의 대표부(예를 들어 유엔대표부, 파리의 유네스코 대표부 등)에서와 같은 관계로 파악하고 있음.
- 대표부의 책임자는 대사가 아닌 “상주대표부 대표”로 함.
- 동독 상주대표에 관한 업무관할은 수상실(Bundeskanzleramt)이 담당함.
  - 동독측은 상주대표부 대표의 소속논쟁에서 외무성 소속을 주장하고, 서독측은 민족내부 특수관계상 내독관계성 소속을 주장함.
  - 양측은 결국 협상과정에서 혼합방식을 채택 양국정부 재량에 맡기기로 하되, 서독은 수상실 소속으로 동독은 외무성 소속으로 각각 절충됨.
- 비엔나 외교협정(’61. 4. 18) 규정은 “준용”(entsprechend)하여 적용됨.
  - 의정서 문안작성 중 가장 끝까지 쟁점이 됐던 비엔나 외교협정의 적용문제는 동독측의 강력한 요구로 대표부 근무자들에 대해 동 협약을 적용하기는 하되, 서독측은 상주대표부의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동독측의 의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선에서 절충됨.
  - 서독측은 비엔나 협정의 단순한 준용이 상주대표부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누차 강조하고, 국제법적 승인을 통한 외교관계는 아니지만 국제관계의 의미상 “비외교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을 취함.
- 연방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Akkreditierung) 문제
  - 당시 야당인 기민당은 의정서 3항에 규정된 연방대통령에 의한 신임장 제정 행위는 이미 동독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서독정부는 헌법 59조 1항에 규정된 신임장 제정대상인 “파견된 자”(die Gesandten)를 꼭 외국으로부터의 “외교사절”에만 한정하지 않고, 광의로 해석하여 동독이 현재 하나의 국가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외국이 아닌 내독 간의 특수관계 대상으로 독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상주대표부 설치가 동독과 외교관계가 수립이라는 서독내 논란

-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제3항에 의하면 각 상주대표부 대표는 각 국가 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되어 있는 바, 정부여당(SPD)과 야당(CDU) 사이에 각 국가원수에게 신임장 제정문제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음.
  - 야당측은 연방헌방재판소법 제32조와 기본법 제93조 1항 1절에 따른 기관 쟁송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합의에 반대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음.
    - » 야당측 주장의 핵심은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의 신임장 제정은 결국 특수관계의 법적성격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음.

- 즉, 신임장 계정을 통해 동·서독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음,
  - » 외교관계 수립은 명백히 동독을 암암리에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며, 이것은 기본조약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음.
  - » 구체적으로 동독상주대표부 대표의 신임장 제정은 기본법 제59조 1항 3절의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제법적 인정으로서 동독은 결코 외국이 아니므로 결코 국제법적인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제까지의 연방정부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 또한 이것은 "특수한 내독관계"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의무를 연방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이행해야 하는 것과도 배치된다는 것이었음.
-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동독상주대표부 대표에 의한 신임장 제정행위가 결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 기본법 59조 11항 3절에 따르면 연방대통령은 "파견된 자"(die Gesandten)를 영접하고 신임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파견된 자"란 문자 그대로는 의미상 보통 외국으로부터 외교사절(diplomatische Vertreter)로 이해하나, 동독상주대표부 대표는 이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 » 의정서 문안에 상주대표부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으므로 결코 동독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동독도 한 국가이며 기본조약의 이중적 성격상 양국가 간의 관계상 각 상주대표부 대표가 상대방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신임장 제정이 꼭 외교관계 수립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제법의 제규정에 의하면 양 국가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그런 관계는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었음.
  - » 기본법 59조 1항 3절은 단지 "파견된 자"들이 연방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 »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의 서명시 정부성명을 통해서 연방정부는 기본조약을 통해서 정부 간, 국가 간의 관계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국가원수에 대한 신임장 제정을 위해 결정적으로는 중요하므로, 신임장 제정의 형식은 대표부의 성격을 넘어서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 정부의 계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정서 규정 전체가 외교관계 수립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상주대표부 대표"란 직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주대표부와 그 부장의 활동내용과 그 기능 때문에 학자들은 그것을 외교관계 수립여부로 논쟁을 벌였음.
  - 외교사절의 대표는 항상 "대사"(Botschafter)라고 불리우지 않으며, 만약 상주대표부 대표의 명칭이 "대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견된 자의 장"(Missonschef)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한 그 기능을 변하지 않으며, 더구나 비엔나협약 제14조 1항 1절에는 "그 밖에 동일한 지위에 상응하는 파견된 자의 장"의 직명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동·서독 관계가 외교관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음.
  - 더구나 동독이 "대사"라는 직명을 고수하며 외교관계 수립을 강조하는 마당에 "상주대표부 대표"(Leiter der Staendigen Veretung)란 직명만으로 내독관계의 특수성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약하다는 것임.
  - 또한 의정서 4항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들이 "준용되어" 적용된다는 규정도 비록 양 당사자가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 명확한 증거가 되긴 되지만, 이 조항만으로 양국 간 사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임.
- 그러나 이미 기본조약에 특수관계가 내포되어 있고 기본조약이 특수관계의 지속이란 기본적인 입장하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의 입법화를 위한 별다른 콘센서스 형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음.
-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상호 동의가 동·서독 간에는 결코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으며, 서독정부는 늘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해 왔음. 이러한 기본입장하에 기본조약 제8조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가 합의된 것으로 보아, 상주대표부 설치에도 불구 내독관계의 특수성은 유지된다고 서독정부는 보았음.

○ 동·서독 간에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및 부속의정서는 '74. 3. 14 서명되었는 바, 이는 '73. 11. 16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내독 간 전제조건이 조성됨으로써 가능하였음.

- '74. 4. 24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정으로 '73. 11. 16에 제정된 법률이 더욱 구체화되어 동독 상주대표부 근무요원에 대한 특권 면제 가능성의 범위가 확정되었음.

1-4-1-2. 상주대표부 설치의 국제적 관행

○ 서독은 "상주대표부" 내지 "상주대표"라는 명칭을 동·서독 간뿐만 아니라 기타 양국 간 교류관계에 있어서도 사용하고 있음.

- "UN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UN주재 서독상주대표", "UN 사무실 및 제네바 소재 기타 국제기구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제네바 소재 유엔 구주사무소 및 기타 국제기구 주재 서독상주대표부"와 같은 실례를 들 수 있으며, 그 이외에 UNESCO(Paris), IAEA(Wien), European Council(Strasburg), OECD(Paris), NATO(Bruessel), EC(Bruessel)에도 "상주대표부"가 있음.

○ '61. 4. 18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4조에 명시된 공관장의 대사, 공사, 대리공사와 같은 3가지 구분은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니며, 양국 간 교류에 있어서는 공관장에 대한 또 다른 명칭부여도 가능함.

○ 국가 간의 관행에 있어서 양국 간 교류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수형태는 영국의 영연방(Common wealth of Nations)에서 형성되었음.

- 국제법적으로 볼 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이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와 같은 국가들은 서로 "외국"(auslaendische Staaten)으로서 보지 않았음.
- 또한 Commonwealth 회원국은 상호 간에 대사를 교환하지 않고 "High Commissioner"를 교환하였음.

-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인정하는 Commonwealth 국가들의 High Commissioner들은 통상 신임장을 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재국내 관계기관 접촉시 주재국의 외무부를 거치지 않고 총리 및 기타 장관과 직접 접촉했음.
- Commonwealth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영사교류를 하지 않음.
- 그러나 '52년도의 외교특권법(Diplomatic Immunities Act) 제정과 함께 Commonwealth 국가들의 High Commissioner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대표에 관한 권한의 공식적 기본원칙이 형성되었는 바, 이에 따라 High Commissioner들은 다른 나라의 대사와 동일하게 "재판절차로부터의 면제, 공관, 개인주택 및 문서의 불가침성"(from the suit and legal process, and the like inviolability of Residence official premise and official archives)와 같은 면책특권을 누렸음. 이와 같은 것은 대표부의 직원, 직원의 가족, 직원의 가사종사자에게도 준용됨. 이들은 특수한 입법이나 행정합의에 따라 면세의 혜택을 받음.
- "외교특권법"은 '64년도에 그 중 일부가 폐지되었으며, 그 이래로 High Commissioner는 기타 외교관들과 마찬가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규정의 적용을 받게되었음.

○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독일에는 독일내 개별 국가들 간에 내독 간 공사파견권(Innerdeustsches Gesandtschaftsrecht)제도가 있었으며, 1871년 독일통일 이후에도 개별국가들의 공사권은 존속되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음.

- 개별국가를 대표한 대외적인 활동.
- 독일내 개별국가 간의 선린관계 유지.
- 전체국가적 의사결정시 개별국가의 참여가 연방국가제도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국전체 문제 결정 참여.

○ 공사제도는 1919. 8. 11자 제국헌법(Reichsverfassung)하에서도 계속 존속되었는데, 공사제도가 존속하게 된 이유는 각 개별주(Laender)가 그들의 이익을 제국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제국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존립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음.

- 또 다른 이유 중에는 일부 Laender- 그 중 특히 Bayern국-가 명멸해가는 국가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이의 계속적인 존속을 주장했는데, 이에 바로 공사제도가 곧 국가적 주권의 표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었음.

○ '45 이후 당시 미군점령치하의 각 주(Laender)들은 내독공사제도를 부활시켜보려고 시도하였음.

- 독일제국 주재 Bayern 대표부는 항복 이후에도 Berlin에 계속 존속하였는데, '45. 12 Bayern 경제성 Berlin 대표부가 개설되었으며, Berlin과 소련군 점령치하의 Laender와 교류를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었음.
- 이 대표부는 '47년도에 "주 Berlin Bayern 연락사무소"로 개편된 후 Bayern 정부와 독일중앙행정기관 및 당시 소련군 점령치하의 Laender, 정부, 그리고 Berlin시 간의 교류 ; Bayern 관련 사법공조 소청에 대한 행정안내 및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Bayern 연락사무소는 '50. 12. 31 폐쇄되었음.

1-4-1-3. 설치에 따른 동·서독 간 합의와 국내법 제정

○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74. 6. 14 연방하원(Bundestag : 서독의원)은 동독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의 보장에 관한 법률(Gesetz ueber die Gewaehung von Erleichterung, Vorrechten und Befreiungen an die staendige Vertret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을 결의하였으며, 서독상원은 '73. 7. 6 동 법을 비준하였음.
- 외교사절단과 그 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부여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적용하나, 서독정부는 동독과 진정한 의미의 외교관계 수립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었으므로 동독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새로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유엔에 가입문서 제출 이전에 양국은 외교사절단 교환이 아니라 상주대표부를 설치한다는 양독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서독 기본조약이 동독의 비엔나 협약 가입문서의 제출 이후에 비로소 동·서독 간에 그 효력을 발하게 되었으므로 동독이 기본조약 협상 당시의 태도와 모순되게 상주대표부 설치와 관련 비엔나 협약의 직접적용의 정당성 주장을 도출할 수 없었음.

○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정

- 동·서독 회담대표들이 '74. 3. 14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현안문제가 내포된 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74. 4. 5 서독 상원은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보장에 관한 시행령에 동의하였음.
  - 동시행령은 '73. 11. 16자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동 법률에 상주대표부 설치를 위한 시행령의 제정이 위임되었음.
  - 이와 같은 시행령은 동·서독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직접적용이 아니라 단지 준용(entsprechende)에만 합의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였던 것임.
  - 이 시행령은 그 내용상 실제적으로 비엔나 협약의 제규정에 그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양국 간 교류에 통례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외조치(Exemtion)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시행령에는 비엔나 협약을 벗어나는 일부 규정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예외는 양국 간 관계에 있어서 상례적이었으며, 동독과는 상호주의에 근거하고 있었는 바,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3조 제1항 : 상주대표부 대표 및 그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기타 공과금의 면제.
  - 제3조 제3항 : 동독에 대한 대지구입세의 면제.
    동·서독은 부속 의정서 제5에서 이와 같은 면세조치를 명확하게 표현해 놓았음.
  - 제3조 제4항 및 제5항 : 차량세 및 보험세 면제. 이와 같은 사항은 양국 간 교류에 있어서 상례적이며 동독 역시 서독 상주대표부에게 이와 같은 면세조치를 보장하였음.
  - 제16조 제1항 : "상주대표부 건물의 건설 또는 개축에 사용되거나 건물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설물과 관련된" 지출공과금

면제(Eingangsabgabenfreiheit)의 대상일 경우에 한하여 비엔나 협약 제36조 제1a항의 규정은 예외가 인정됨. 동독 역시 호혜성을 보장하였음.

○ 동독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근무요원의 특수복무에 따르는 제문제에 관한 법률

- '74. 3. 22 서독하원은 동독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근무요원의 특수복무에 따르는 제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74. 4. 1부로 효력이 발효되었음. 동 법은 동·서독이 외국이 아니었으므로 외교대표부 근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하였음. 동 법에는 공무원의 잠정퇴직 조치, 공무원 봉급(퇴직금 가산과는 무관한 보조금), 인사대리권, 이사비용 등과 같은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동·서독 간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및 부속의정서

- 의정서는 어려운 협상을 거쳐 '74. 3. 14 Bonn에서 서명되었으며, 의정서는 '74. 5. 2에 효력을 발생했음.
  - 의정서 제5에 규정된 상주대표부의 임무는, 파견국의 이익을 접수국에서 대변하며 인적인 지원과 보조를 하고, 동·서독 간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에 걸친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촉진 및 확장하는데 있음.
- 6개에 달하는 부속의정서(Protokollvermerk)와 더불어 추가규정이 결정되었음.
  - 제1의정서 각서는 상주대표부 대표의 note 교환을 통한 동의, 기타 직원의 서면을 통한 임명, 접수국 정부의 대표 및 기타 직원의 소환권이 규정되어 있음.
  - 제2의정서 각서에는 하시를 막론한 출입국 권한이 규정되어 있음.
  - 제3의정서 각서에는 상주대표부의 통신시설 설치 및 작동에 관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음.
  - 제4의정서 각서와 더불어 서독정부는 Duesseldorf 주재 동독 대외무역부 사무소가 동독 상주대표부 무역정책실 지소로서 변경됨에 합의하였음.
  - 제5의정서 각서는 파견국의 대표부용 대지구입 및 기타 공용 대지구입시 세금과 기타공과금을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의정서 각서는 서Berlin 포함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음.

- 서독정부는 의정서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의정서가 기본조약 제8조에 대한 후속협정(Folgeabkommen)이 아니라, 시행합의(Durchfuehngsvereinbarung)라고 확정하면서 "시행합의는 동·서독 간의 정치적 관계가 이미 기본조약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1-4-1-4. 서독 상주대표부의 구체적인 활동과 임무

1) 동독내 상황 분석·보고

○ 동독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동독의 국내·외 정치상황이나 경제상황 등을 현지에서 파악·분석·보고하는데 있음.

- 동독의 정치상황과 동독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 서독정부가 대동독정책을 수립하는데 생생한 자료를 제공하였음.
  - 상주대표부의 현지보고는 동독의 언론매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였음.
- 상주대표부의 보고는 기본적으로 연방수상실에 대해 이루어지나, 필요에 따라 똑같은 보고서가 내독관계성(주로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이나, 기타 주무부서(다자간 협상과 관련된 경우 외무성, 기타 통신·통행·내독 간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할 부처)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었음.
- 상주대표부는 조직이 크게 정치담당실, 경제담당실, 법률담당실, 총무담당, 의전담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황 분석·보고는 정치·경제담당실에서 담당함.
  - 정치담당실은 동독과 모든 협상에 관여하며, 동독의 국내정책, 대외·안보정책에 관해 보고함.
  - 경제담당실은 동독의 국내경제 특히 농림수산업 동향과 대외무역에 관한 보고뿐만 아니라, 동·서독 통과교통문제도 관여하였음.
  - 그러나 동·서독 교류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내독무역에 관한 업무는 기존 채널인 서베를린에 소재한 상공신탁처(TSI)에서 관장하고 서독 상주대표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이러한 보고전달의 주요 매체는 다른 외교 보고 채널과 마찬가지로 전문과

파우치(외교 행낭)였음.

- 전문타전을 위한 기계의 설치와 운용을 위한 권리는 1974. 3. 14자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주석 3항에 보장되어 있음.
- 파우치의 운용은 수시로 서독의 본(Bonn) 정부와 동베를린 주재대표부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1961년 비엔나 외교협정에 준하여 보장되었는데, 동 협정 27조 2항과 3항에 의거 파우치는 주재국에 의해 공개되거나 압류될 수는 없음.

2) 서독 주민들에 대한 편의 지원·정보 제공, 동독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 상주대표부 일상 업무 중 가장 많은 업무가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주민의 법적인 보호와 그들에 대한 편의지원 및 정보제공 업무였음.

- 이 업무는 주로 법률담당실(Rechtsabteilung)에서 담당했는데, 서면·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된 처리건수가 상주대표부 창설 이후 1981년까지 32,000건이 넘었음.
  - 우선 내독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증명서, 졸업자격증, 상속재산의 청산, 재산권의 관리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음.
  - 예를 들면 가족 상봉 사업의 일환으로 서독으로 이주한 연금생활자들의 재산처리와 관련한 법적인 구조 제공 등이 주요 업무였음.
- 상주대표부는 이러한 관련정보를 구하는 서독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동독 관청과 관련될 경우, 관할 동독관청에 문의하여 일을 처리해 주었음.
  - 특히 상업적인 목적(예를 들어 동독 근해에서 어로와 관련한 어로 계약을 맺기 위한 어부들의 동독 방문시)으로 서독주민이 동독기관 방문을 희망시, 동독에서의 계약관행과 해당 동독 방문기관 알선을 하였음.
- 상주대표부는 또한 서독주민들이 동독 체류시 체류와 관련된 상담 및 알선을 하며, 여행시 발병한 환자와 장애자의 귀환수송 업무를 지원하며, 비상시는 이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기도 함.
  - 예를 들어 동독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체인수와 사후처리를 담당함.
  - 상주대표부는 이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24시간 비상요원을 대기시켰음,
- 동독에 주재하는 서독 특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업무도 상주대표부의 주요 임무였음.
  - 특히 서독 특파원과 동독 관할 관청 간에 마찰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일을 동·서독 양 정부에게 상당히 정치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미묘한 사안이었음.

○ 상주대표부에 가장 큰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으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동독기관(예를 들어, 세관경찰, 교통경찰, 국경경찰 등)에 의해 체포된 서독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일이었음.

- 상주대표부는 동독 구치소에 억류된 매년 평균 300~400명의 서독인 구속자를 지원했음.
- 모든 서독인 구속자는 일단 상주대표부 직원이 구치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접견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접견은 구속된 지 보통 4~6주 후에나 가능했는데, 이러한 접견에서 상주대표부는 구속자의 인적사항, 구속된 상태 등을 파악하며, 구속자에게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구호물품이나 구치소 내에서 물건구입에 필요한 소정의 현금을 제공했음.
  - 상주대표부는 서독에 살고 있는 구속자의 보호자나 가족, 직장이나 소속관청에 3일 이내에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경우, 승용차의 등록 취소, 주거지의 해약통지, 구속자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반통지를 취함.
  - 상주대표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에 방청인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교통·관세·외환에 관련된 구속은 이러한 방청이 허용되나, "공화국 도주"(동독 탈출) 방조나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구속은 방청이 허용 안됨.
- 구속자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상주대표부는 인도적인 문제해결과 관련 실무협상채널(서독 내독성 차관과 동독 변호사 Vogel 간)을 갖고 있던

내독관계성측과 긴밀히 협조하며 또한 구속자 및 그 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구속자의 주거지 관할 사회보장 담당 관청과 협조함.

- 구속자 지원문제와 관련한 상부대표부의 동독측 공식 협상창구는 외무성이었음.

○ 동독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 상주대표부는 서독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동독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음.
- 상주대표부는 어떤 의도적인 정치적·이념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분야의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들을 만들어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재상봉의 가능성과 같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다만 서독 상주대표부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 상부대표부를 방문, 정보 및 안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사안별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형식을 취했지, 동독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 지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음.
- 더구나 상주대표부는 동독정부기관에 대해 동독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음.
  - 상주대표부 대표였던 Gaus나 Braeutigam은 동독과 협약한 제 협정상의 정신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이러한 활동은 상주대표부가 스스로 자제해 왔음을 술회한 바 있음.
  - 또한 1977. 2. 동독 주민들의 서독 상주대표부 청사 출입이 서독 상주대표부가 "동독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독 경찰에 의해 봉쇄당하자, 당시 서독 수상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 동독주민 정보제공 활동에 대해 설명한 바 있음.
    - » "상주대표부의 편의지원 및 정보제공 업무는 서독 주민에게 뿐만 아니라 때때로 동독 주민들에게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독일 내의 현실이나, 한편으로는 우리측 상주대표부 업무는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어렵게 개선한 동독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더욱 촉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함. 특히 동독 주민들에게는 정보가 객관적이고 분별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 상주대표부는 다른 서독의 재외공관과는 달리 동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서독정부를 대표해서 체류허가(Visa)를 발급하거나 , 동독 주민 또는 서독 주민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영사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았음.

- 외국인들은 동베를린에 머물고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서독 공관이나 서베를린의 경찰청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해야 했음.
- 적지 않게 동독에 사는 외국인들이 서독이나 인접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서독 상주대표부를 방문했으나, 서독 상주대표부는 사증 발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들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 및 사증발급과 관련된 안내제공 업무는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음.

○ 서독(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의 동독 주민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업무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음.

- 우선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주민들에 비해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음.
- 또한 서독에는 동독에서와 같이 동독으로 이주·탈출하려는 자에 대한 통제나 또는 이에 따른 도주방조자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독에서 그러한 사유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없어 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만큼 동독인들에 대한 법률구조제공 업무와 같은 큰 부담이 없었음.
- 그러나 동독 상주대표부는 동독주민들에게 서독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대부분의 경우 서독 내에서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구속일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절도 등 단순 형사사건일 경우도 있었음) 이들에게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함.
- 동독 상주대표부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동독을 방문하려는 자에 대한 사증(Visa)의 발급임.
  - 동독을 방문하려는 서독 주민들은 동베를린에 거주하는 기관으로부터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과 통보에 의해 방문허가증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국경에서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동독 상주대표부는 이러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서독 주민에게 여행 사증을 발급했음.

- 라이프찌히 박람회 방문의 경우는 박람회 방문증명서로 통상적인 방문허가증을 대신함.
- 국경지역 동·서독 왕래방문의 경우에는 동독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가 동독 관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복수여행허가증을 서독지역 방문자에게 발송하여 국경에서 비자를 받음.

– 동독 상부대표부는 서독으로 이미 이주했거나 또는 탈출한 이전 동독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들의 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동독 정부의 중요한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일 경우 관여함.

- 주요 사례를 보면 연금생활자로서 서독으로 동독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주한 동독 주민이, 동독의 국적을 가졌을 당시에 자신이 취득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를 동독 정부에 요구했을 경우 이에 대한 동독 정부의 입장을 통보하는 임무를 담당함.
- 1978. 7 3명의 동독 주민이 비행기로 동독을 탈출 Kassel에 착륙했을 때, 동독 상주대표부는 서독 수상실을 통해 탈출자들과의 접견을 희망하며, 두 명의 동독 상주대표부 직원을 Kassel에 파견하였지만, 이들 탈출자들이 접견을 희망하지 않아 접촉이 안 된 사례가 있었음.
- 그러나 1981. 6 동독인민군 장교 1명이 동독을 탈출해 왔을 때는 동독 상주대표부 부대표가 수상실의 허가를 얻어, 동베를린에서 급히 건너 온, 동 장교의 부인과 상봉을 시켜, 그를 설득하여 다시 동독으로 귀환시킨 사례도 있었음.

– 동독 상주대표부는 그러나 동독측에 의해 국적이 박탈된 동독 주민의 경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예를 들어 1983.6 Jena시 평화운동단체의 일원이었던 동독 시민은 자기의사에 반하여 동독 정부로부터 국적을 박탈당하고 서독으로 추방당했는데, 그는 동독 상주대표부에 자신의 서독 추방에 대한 사유를 문의해 왔을 때, 동독 상주대표부는 그의 대표부 출입을 아예 허용하지 않았음.

3) 동독측과 접촉선·대화 채널 유지

○ 상주대표부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내독관계가 정상적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동독측의 고위층 또는 실무진들과 접촉할 수 있는 협상채널을 구축하는 데 있었음.

– 공식적으로 1974. 3. 14 의정서에 의하면 서독 상주대표부의 협상 창구는 동독 외무성임.

- 동독 외무성 내에는 "서독"(BRD) 담당실이었는데, 상주대표부 대표는 동 실장과 정기적인 접촉을 가졌으며 중대 사안일 경우, 외무장관 또는 차관과 대화를 가졌음.
- 서독 상주대표부 업무 중 특히 여행객과 구속자 지원문제가 많기 때문에 외무성 영사국과도 많은 접촉이 있었음.
- 외무성외 동독의 다른 정부기관과의 접촉은 거의 예외 없이 외무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음.
  - » 이는 비엔나 외교협정 제41조 2항과 동독 정부가 제정한 1963. 5. 2 외교사절의 지위에 관한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음.

– 반면, 서독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는 꼭 수상실에 한정하지 않고 중대사안이 아닐 경우 실무적인 문제협의를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었음.

- 서독측에서는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가 비교적 용이하게 수상실 차관이나, 내독관계 담당실장을 접촉할 수 있었음.

○ 상주대표부를 통한 동 ·서독 간 접촉은 고위급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행정차원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졌음.

– 동독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문헌이나 전문서적을 열람하려는 서독측 학자, 동독에 대표단을 파견하려는 사회단체(체육, 노조, 청소년단체), 동독에서 전시회를 열려는 예술가들의 일정을 주선하는 일이 가장 빈번한 업무였음.

– 양독 간의 상설위원회(통과여행, 교통, 국경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의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 상대편지역에 접촉 창구를 개설하기도 했음.

○ 공식적인 대화채널 이외에도 서독의 상주대표부 대표는 동독의 고위급 당·정 인사나 신교교회 지도자들과의 비공식 접촉을 가졌음.

- 슈미트 수상시절에는 모든 내독관계 협상의 전권을 동베를린 주재 상주대표부 대표(Gaus)에게 위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주대표부 대표는 사안에 따라 호네커 서기장이나 정치국원, 또는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신교지도자들을 접촉할 수 있었음.
- 반면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부장은 실질적인 내독 간 문제해결과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전권을 위임받지 못한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서독외무성과 군축 및 평화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며 또한 서독공산당(DKP) 지도자나 기타 서독 정당지도자들과의 대화를 가졌음.
  - 동독측은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군축문제 실무부처인 외무성과 접촉을 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서독과의 관계가 국제 관계인양 과시할 수 있었으므로, 공식적인 협상창구인 수상실이 아닌 외무성과의 접촉을 끊임없이 시도했음.

○ 동·서독 관계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측 상주대표부는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항의 의사표시의 전달자 역할을 해야 했음.

- 항의 표시의 의사전달경로는 각자 자기편 상주대표부 대표를 각 공식 접촉창구(동독은 외무성, 서독은 수상실)에 보내는 방법과 상대편의 상주대표부 대표를 동독의 외무성과 서독의 수상실에 소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의 방법이 더욱 강력한 항의표시 방법이었음.
  - 그러나 사안이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항의표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1975년 동독측이 슈피겔지 특파원과 1976년 제1 TV 특파원을 추방하면서 서독 특파원들의 취재활동을 제한했을 때(서독측).
  - 1976년 함부루크의 휴가객이 실수로 동독 국경을 넘어가자 동독측이 발포를 하여 휴가객이 중상을 입었을 때(동·서독측).

- 1976. 8 베를린 장벽 구축 기념일에 베를린 장벽 반대 시위를 위해 서베를린으로 집결하려던 기민당 청년 당원들의 통과 교통방해시(서독측).
- 1977. 3 라이프찌히 박람회 구경을 위해 동독에 입국하려던 서독 주민들을 대규모 강제귀환시켰을 때(서독측).
- 1977. 10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가 1977. 9 서독내의 동독탈출 방조 조직과 탈출을 희망하는 동독주민의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린데 대해(동독측).
- 1980. 10 동독측이 최소의무환전액을 인상하며 동·서독 방문여행에 난관을 조성했을 때(서독측).
- 1981. 3 서독의 주·정부 간 문화(문교)장관회의에서 모든 교과서의 지리책과 지도제작시 반드시 1937년 당시 전후의 실지까지 포함된 전체 독일의 국경을 표시하기로 결정했을 때(동독측).
- 1984. 9 서독 국방성이 함부루크 소재 동독 운수회사 "Eeutrans"의 지사에 서독연방군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훈련용으로 화물차를 징발한다고 통보했을 때(동독측).

4) 공무여행 출장자 지원

○ 정부 각 기관 및 연구소, 의회 및 정치지도자들의 방문시 안내 업무 또한 다른 공관과 마찬가지로 상주대표부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음.

- 매년 평균 약 5,0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무여행을 했음.
  - 대통령, 수상으로부터 일반 행정 공무원 및 야당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지원업무는 자료제공, 일정주선, 안내 등임.
- 이러한 일정주선 중 고위급 접촉은 상주대표부가 개입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수상이 상주대표부 대표에게 의존하지 않고 "특사"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83년도 10억 DM 차관제공 보증과 관련한 바이에른주 수상인 Srauss의 동독방문은 서독 상주대표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서독 야당지도자들의 방문시는 상주대표부가 관여하기도 하고, 관여하지 않기도 함.
  - 사민당 안보정책 담당자인 Bahr는 1981년도 방문시 동독공산당 정치국원 Axen과의 대담에 상주대표부 대표가 배석했으나, 1983년도 방문시에는 수상실 차관에게 단지 통보만 하였음.
  - 1983년도 야당인 사민당은 원내의장인 Vogel의 호네커 서기장 면담시에는 서독 정부에 대화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상주대표부 대표가 배석하였음.

○ 물론 상주대표부가 서독을 대표해서 동독에서 서독 주요 인사들의 동독인들과의 접촉에 개입할 특권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다원주의에 입각한 대의정치구조를 가진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모든 공식접촉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는 없었음.

- 1977년 당시 야당인 기민당/기사당의 원내의원들은 동독 상주대표부에 방문 주선을 의뢰했으며, 1981년 사민당 당수였던 브란트는 당시 프랑스 사회당 당수인 미테랑과 동독지역에서 당시 자기가 갇혔던 포로수용소 방문일정을 동독 상주대표부에 의뢰하기도 하였음.

5) 문화행사 및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 양독 간 문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양측 상주대표부는 문화행사를 직접 개최하고 후원하였음.

- 서독 상주대표부에서 개최된 주요 서독예술가들의 문화행사를 보면, 1976. 4 Manfred-Schoof-Orchester 연주회, 1980. 1 Horst Janssen 작품전, 1980. 11의 August Sander의 사진전, 1981. 11 Joseph Beuys의 작품전 등을 들 수 있음.
  - 서독 상주대표부에서 개최된 이러한 문화행사에는 동독의 저명 예술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단 개막이 되고, 나중에 서독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일반 동독 주민들에게도 공개되었음.
- 이러한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는 문화행사에 동독의 당·정 고위관리가 참여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이들과 서독 상주대표부 관리들과 회동을 한다는 점이었음.

-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에서도 적지 않게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1977년 베토벤 사후 150회 기념연주회가 동독 연주가들과 함께 개최되었고, 1978 .7에는 동독 도자기 전시회, 1980 가을에는 호네커 자서전 출간 기념회가 열렸음.
  - 때때로 동독 상주대표부에서는 서독인 예술가들에 대해 영예나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 등이 거행되기도 함.

○ 양측 상주대표부는 문화행사 이외에도 국경일 행사나 기타 행사에 다른 외교사절과 함께 상대편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기도 하였음.

- 서독 상주대표부는 1975년 이후부터 매년 5월 23일에 서독 기본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동독의 주요 인사를 초청했으며, 동독 상주대표부는 1974년부터 매년 10월 7일 동독국가수립 기념일에 서독의 주요 인사를 초청했음.
  - 이러한 국경일 행사에는 동독에서는 보통 동독 외무성의 차관이나 동독 공산당 정치국원이 서독에서는 내독관계성 장관, 수상실 차관 또는 각 부처 장관·차관급들이 참석하여 고위급 레벨에서 상호 의견 교환의 기회로 활용했음.
- 이러한 고위 정치인들의 국경일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서독 국회에서는 1974. 10. 16 격렬한 논쟁을 벌인 바 있음.
  - 당시 야당인 기민당 국회의원 Abelein은 "서독 정치인들이 본에서 개최된 동독 국가 기념일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독일 국민들에 의해 구성된 서독정부의 위신을 해치고, 기본법에 명시된 전독일 국민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공격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동 행사에 참석했던 내독성 장관 Franke와 Bahr 수상실 차관은 "단지 연방정부가 본 주재 상주대표부를 의전적(protokolarisch)으로 무시하는(ignorieren) 행위만으로는 양독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없다"고 답변했음.
  - 아울러 "한편으로는 상주대표부 설치에 동의해 놓고도, 다른 한편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음.

- 여당측은 동독 국경일 25주년 기념식에 이날을 "축하하는 날"(Jubeltag)로 간주했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외교 사절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의전상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참석했을 뿐이라고 말했음.

–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인 Gaus는 동베를린에서 1974년 25주년 국가창건일 행사에 선별적으로 참여해 왔음.

- Gaus는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군사퍼레이드와 동독청소년 전위조직인 FDJ의 횃불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서독측은 이 행사가 4대국 관리하에 있는 베를린의 지위에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행사참석으로 이러한 시위행진을 서독이 지지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참석을 피했음.

– 1982년 이후에는 사민당의 대동독 정책을 비판하던 기민당/기사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기민당 소속의 내독관계성 장관과 수상실 차관은 계속 동독의 국경일 행사에 참여하여 왔음.

6) 동독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기구 및 인적구성

기구·업무 분장	원소속부처
대표	정치적 임명(수상실)
부대표	내독관계성
의전담당	외무성
공보담당	대표가 임명
제1부(정치부)	
부장	외무성
동독 국내정치 및 내독관계 기본정책 담당	내독관계성
동독의 국제관계 담당	외무성
문화·교회 담당	서베를린시
제2부(경제부)	
부장	경제성
동독의 경제 및 내독 간 교역 담당	경제성
과학·기술 담당	과학기술성
농업·임업·환경 담당	농림성
제3부(법률부)	
부장	부태표 겸임 또는 내독관계성
일반적인 법률문제·보건문제 담당	내무부
이주민·이산가족 재합류, 정치범 석방 및 후견	법무성
교통·우편문제 담당	교통성
총무부	수상실 내독관계성

1–4–1–5. 내독관계에서 상주대표부 대표의 역할

○ 초창기 부임한 상주대표부 대표인 Guenther Gaus는 동독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음.

– 1974년 가을 부임하여 처음으로 Honnecker 서기장을 만난 Gaus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는 Honnecker가 "서독과의 모든 관계설정에 관한 모든 정책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함으로써 Bonn에 주재하는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가 협상의 전권을 갖지 않으며, 베를린에서 모든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음.

- 실제 1974년 8월에 Bonn에서 서독 경제성 차관 Poehl이 스웡의 인상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했으나 별 성과가 없어 Gaus가 나중에 재차 이 문제로 동독측과 협상을 벌이는 사례가 있었음.

–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과정 구조상 동독측 대표들은 질서가 있고 복종심이 강해서, 협상과정에서 논의되는 문제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 거의 없었음.

- 서독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여러 부처가 참여했을 경우 논란이 많고, 논의되는 사항들이 누설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동독은 일관된

전략·전술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음.

- 동독의 협상실무대표들은 정치적인 방향이 상부에 의해 정해지면, 매 협정체결이나 합의사항을 도출하는데에 있어서 확실한 조건과 입장을 훨씬 더 빨리 제안해 왔음.
  - 서독의 경우 "의회주의"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정치적인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음.

○ 서독측은 이러한 동독측의 일사분란하고 모든 정책이 일관되게 조정되어 접근하는 협상태도를 경험한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모든 분야의 협상의 전권을 협상실무대표(Unterhaender)로서 상주대표부 대표(차관급)에게 일임함.

- 그러나 상주대표부 개설 이전에 이미 동독과 협상을 진행 중이던 국경확정문제, 우편요금문제, 건강·보건분야 협상, 학술교류 및 사법공조문제는 예외로 하였음.

○ 동독측은 1975년 중반부터 이러한 서독측 협상실무대표인 상주대표부 대표의 상대자로서 대외무역성 차관이었던 Alexander Schalck-Golodkowski를 내세웠음.

- 그 이전까지는 내각사무처 정무차관 Michael Kohl이 동독측 협상대표였음.
- Gaus와 Schalck는 다른 협상대표단의 수행없이 많은 경우, 1주일에 2~3회의 2인 단독 대좌를 통해 두 사람은 1975~1980년까지 동·서독 간의 주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협상해 나갔음.
- 이들 두 사람의 면담 장소는 당시 비밀에 붙여졌으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Berlin-Niederschoenhausen에 있는 상주대표부 부장 저택이었음.

○ 이러한 단독 대좌 이후 Gaus 상주대표부 대표는 상주대표부에서 실무진에게 협상내용을 구술한 후 이 내용을 먼저 상주대표부에 파견되어 있는 수상실, 내독관계성, 각 부처 실무진들과 협의함.

- 실무진들이 협상의 결과를 듣고 앞으로도 계속 협상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주대표부 대표는 Bonn으로 가서 이를 Bonn의 각 실무전문가들과 협의함.

○ 상주대표부 대표와 그 상주대표부 실무진 일행은 Bonn에서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의 합의점을 찾는데 동독과 협상하는 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허다했음.

- 먼저 상주대표부 대표는 내독관계성 독일정책실 (Abt II) 실장이 소집한, 과장(Referatsleiter)급으로 구성된 각 부처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여 주로 전문적인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협상 진행 과정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 각 부처 과장들은 각 부처로 돌아가 이를 실·국장을 거쳐 차관에게 보고하여 각 부처의 입장을 정리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주대표부 대표는 협상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동의를 얻는데, 이러한 각 부처 과장급 실무진들과 직접 협의를 통해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은, 차관끼리 회의를 거쳐 이를 아래 실무자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다시 차관의 동의를 받는 절차보다 의사결정과정이 훨씬 간단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음.
- 베를린에서 상주대표부 대표가 더 협상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상세한 전문적인 보충설명자료(예를 들면 동·서독 간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표준 사양 등)를 각 부처에서 준비해주면, 상주대표부 대표는 이를 지참하고 베를린으로 돌아 옴.

○ 이를 토대로 동독과의 재협상에서 일단 커다란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주대표부는 내각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각의 형식적인 절차인 결의를 통해 동독과의 협정이 체결되게 됨.

○ 동독측 협상실무대표인 Schalck는 주로 당 중앙위원회 경제담당 서기이자 정치국원인 Guenter Mittag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Honecker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음.

- 사안에 따라서는 비록 형식적이지만 거의 결정이 내려진 협정사안을 중앙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는 경우도 있었음.
- 가끔 본 주재 상주대표부 대표가 베를린으로 와서 Bonn에서 본 협상과 협정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Schalck와 회담도중 회동하는 경우도 있었음.

ㅇ 각 협정의 문안작성은 상주대표부 대표와 Schalck 간에 서독 상주대표부 관저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양측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각 조항의 문구에 완전히 합의를 해야 다음 조항을 합의하는 방식을 취함.

ㅇ 협상대표단이 수행한 경우는 공식적인 대표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협상의 핵심적인 문제에 이르면, 공식회담을 중단하고 2인 단독회담을 통해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킴.

- 그러나 공식협상과 이들의 2인 단독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음.

ㅇ 그러나 이러한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협정이 양측에 의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명될 때는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와 Schalck 간에 서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와 동독의 해당 부처 대표자 간에 이루어짐.

- Schalck는 비밀협상의 주역으로서만 활동하고 공식적인 내독 간 협정체결 등은 공식적인 기관의 대표를 내세움.
- 그 이유는 Schalck가 대외무역성 차관이자 Koko라는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조직을 거느린 외환확보담당 총책이었다는 사실로 명확해지는데, 동독측이 서독과의 협상에서 정치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반대급부, 특히 외환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서독정부 또한 2인 단독대좌 채널을 통하여 불필요한 여론의 비판을 따돌리면서 동독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급부를 제공하여 인도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분단 고통 완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내독 간의 비밀협상방식은 내독관계성 차관과 동독 변호사 Wolfgang Vogel 간에 비밀교섭을 통해 이루어졌던 정치범 석방거래에서도 적용됨.
  - 이러한 비밀협상방식은 양측으로 하여금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게 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며, 너무 공개적으로 일이 촉진되었을 경우에 따르는 체면이나 명분으로부터 중압감을 제거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점 모색이 가능하게 됨.
  - 이러한 비공식 접촉은 본 회담을 신속하게 진행시켰음.

ㅇ 동독측이 Honecker의 신임을 받는 전권위임자격인 Schalck를 내세운 반면, 서독측은 초창기 Egon Bahr가 1970~1973년 간 협상을 주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특사를 파견하지 않고 상주대표부 대표로 하여금 일종의 외교사절의 역할을 하면서도 협상실무대표로서 전권을 위임했음.

- 상주대표부 대표에게 협상전권을 위임하며 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토록 했던 방식은 2개 국가 간 관계개선과 현안해결을 위한 외교정책 수행방식으로 볼 때, 상당히 예외에 속했음.
  - 가령 비인주재 독일대사관은 독일외무성 본부의 훈령에 따라 움직였으나, 상주대표부 부장은 수상실 관할하에서 상당한 독자적인 협상권한을 갖고 있었음.
- Bonn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가 단지 외교사절(Missionschef) 이었음에 반해 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는 외교사절이었을 뿐만 아니라 협상대표(Verhandlungsfuehrer)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특이함.

ㅇ 1980년 4월 이후부터는 Gaus와 Schlack의 합의를 통한 일괄 처리 방식(Paketloesung)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함.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국제 정치적으로 미·소 간에 신냉전의 기운이 감돌았으며, 서독의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 1980년 2월 서독 각의에서는 Gaus가 동독과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한 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음.
  - 그러나 동독측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던 서독측으로부터의 반대 급부를 보장하지 않는 한, 서독이 원하지만 동독체제에 불리한 다른 분야에서의 협상의 가능성은 점점 좁아지게 되고, 결국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한 비밀접촉은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됨.
- 그후 2년 간 Gaus는 Schmidt와 Honecker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역할을 주로 함.

ㅇ 1981년 2월부터 1982년 5월까지 Klaus Boelling이 상주대표부 대표가 되었으나, 외교사절로서의 역할 이외에는 특별히 협상대표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Hans Otto Braeutigam 역시 Bonn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음.

ㅇ 1984년 여름부터는 기민당 정부하에서 수상실 장관인 Philipp Jenniger가 협상대표가 되어 동독측의 Schalck 및 Wolfgang Vogel 등과 협상을 벌여 차관제공을 조건으로 주민들의 인적왕래에 따른 제한조치를 완화하도록 유도하였음.

ㅇ Gaus 상주대표부 대표가 물러난 이후 Bonn의 정계에서는 협상권의 집중화로 인해, Bonn 정부 지도자들이 베를린 공식 방문을 꺼리게 됨에 따라 양독 관계가 보다 각계 지도자들 간의 접촉을 통해 심화될 수 있고, 동독의 체제가 좀 더 개방화될 수 있는 여지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대두되었음.

- 따라서 Gaus 이후에는 각 해당 관계부처끼리의 접촉이 국제적 관례에 따른 대표단 파견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 이러한 전문부서끼리의 접촉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간 10년 동안의 정치적인 협상과 상호의견교환을 통해 동·서독 간에 기본적인 장애가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극복되었으며 따라서 이제 양독 국가 모두 분단을 관리하는 추세로 나아갔기 때문임.
- 환경분야 및 과학·기술 분야 협정체결에는 동·서독 환경처 및 과기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음.

ㅇ 내각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순조롭게 하고, 고위급 레벨에서의 독일정책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해 비공식적인 조정위원회(Koordinierungsgreminum) 형식의 "4자 회동"(Viererrunde)이 1976년부터 1982년 10월까지 존속했었음.

- 이 회동에는 수상실장관이 주축이 되고, 내독관계성 차관, 베를린 연방문제담당 장관, 상주대표부 부장이 모였음.
- 1978년부터는 서방 3대국과의 협의·조정을 위해 외무성 차관이 포함되어 "5자회동"이 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교통성, 경제성, 재무성 차관이 배석하기도 하였음.

ㅇ 사민/자민 연정에서 기민/자민 연정으로 정권이 바뀐 1982년 10월 이후부터는 이러한 "5자 회동"이 내독관계성 장관이 주재하는 "독일정책 조정회의"(Deutschlandpolitische Koordinierungsgespraeche)로 바뀌게 됨.

- 이 회의는 주로 내독관계성에서 열렸는데 초기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탈피, 거의 상설위원회적인 성격을 가졌음.
- 이 회의에는 5자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들 이외에 내독관계성 장관이 참여하였음.

ㅇ 실무적이 차원에서는 1973년 이래 3-4개월 마다 내독관계 실무회담 대표들의 모임이 있었음.

- 이 회의에는 국경위원회, 통과여행위원회, 교통위원회의 서독측 대표, 보건협정 전권위임자, 상공신탁처 처장, 수상실·외무성 관계관, 베를린 대표부 대표와 상주대표부 대표가 참여함.

1-4-1-6. 서독 상주대표부 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 사례

1) 동독측의 서독 상주대표부 포위 사례

ㅇ 비엔나 외교협정 제22조, 29조에 의하면 상주대표부 건물과 상주인원은 주재국의 공권력으로부터 불가침 특권을 향유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동·서독 관계가 악화되어 긴장이 고조될 때는 이러한 외교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무의미해지면서 상주대표부 주변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음.

ㅇ 이러한 위기상황과 관련된 주요 사례로는 1977. 1. 11~12 동독주재 서독 상주대표부가 동독 인민경찰에 의해 포위당한 채 출입이 통제되었던 때가 있었음.

- 동독정부는 이틀 동안 동독 주민들의 서독 상주대표부 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1963. 5 제정한 외교사절 및 외국대표부와의 접촉(구체적으로 통신, 회합, 방문)에 관한 시행령을 근거로 동독주민들의 서독 상주대표부 출입을 사전허가제에 의해 통제하고, 서독 주민의 출입은 신분증 제시를 전제로 허용했던 사례가 있었음.
-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인 Gaus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한 통제가 CSCE 정신에 어긋나며, 양독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고, 서독 수상실은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를 소환 엄중 항의했음.
- 그러나 동독정부는 동독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서독 정부의 비난을 반박하고, 서독 대표부의 특정 활동들이 비엔나 외교협정

41조 1항(외교사절은 주재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음)에 위배된다고 오히려 항의했음.

  • 동독 공산당 기관지 “Neues Deutschland”와 동독외무성은 서독 상주대표부가 방문하는 동독주민들에게 가족재상봉을 위해 상담을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행위는 상주대표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서독정부를 비난했음.

- 동독정부는 서독정부의 거센 항의에 상주대표부 출입 통제를 해제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동독주민에 대해 상주대표부 방문 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했음.

- 서독 수상 슈미트는 1977. 1. 19 하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업무한계 내에서 그것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일해왔다. 우리가 결코 동독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음에도 동독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하나의 생트집이다. 그것은 동독지도부의 정치적인 위치가 불안정하며 가치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동독측의 행동에 대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서독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동독측은 계속해서 외교문서를 통해 상주대표부의 활동들이 “동독에 대한 내정간섭”, “조약과 국제법의 위반”, “동독주민들의 권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항의를 계속해 왔으나, 서독측은 동독측과 맺은 협정을 준수하고 동독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왔음을 강조했음.

○ 이러한 동독측의 서독 상주대표부의 포위사건 이후 서독 상주대표부를 찾는 동독주민들의 수는 줄어들었고, 아울러 서독 상주대표부를 방문하는 동독주민들에 대한 동독보안기관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음.

- 서독 상주대표부가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동독인민경찰과 사복차림의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상주 근무하며, 동독 상주대표부를 나오는 동독주민들을 검문했는데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녹음을 함으로써, 동독주민들 스스로가 위협을 느끼게 했음.

- 동독측은 상주대표부 맡은 편 건물에 국가보위부 요원을 상주시켜 상주대표부 출입인사 전부에 대한 동향파악과 아울러 상주대표부에 대한 도청을 시작했음.

- 서독정부는 상주대표부 건물내에 대 도청장치를 완비했고, 동독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시장치들이 비엔나 외교협정 21조, 29조, 30조에 위배된다고 계속 항의했으나, 이러한 감시체제는 통일직전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음.

  • 이러한 서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감시·통제는 다른 동독 주재 외교사절단의 감시·통제와 비교하여 유일무이 했는데, 다른 기관에 대한 감시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 서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것만큼 지속적으로 강도있게 진행되지는 않았음.

2) 1984년 동독주민들의 서독 상주대표부 점거·농성 사례

○ 1984년 초부터 여름까지 지속된 서독 이주를 희망하는 동독주민들의 서독 상주대표부 점거·농성은 상주대표부의 업무관할범위, 지속적인 동독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피난·탈출문제, 향후 동독주민들의 서독 상주대표부 출입문제와 관련 동·서독 정부 간의 분쟁을 촉발시켜 내독관계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음.

- 1974년 동·서독 간 상주대표부 설치와 관련하여 서독정부는 서독 상주대표부를 서독지역(서베를린 포함)의 주민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연방 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에 대한 판결에서 기본법 제16조와 116조 1항에 따라 동독주민들도 “독일국적”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러한 동독주민들의 독일국적소지는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기본법이 미치는 범위 안에 들어 올 경우, 국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했음.

- 한편 서독파견 외교사절의 자국민에 대한 국제법적인 권한 보호 의미와 관련하여 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연방정부는 기본법의 효력 범위 내에서 또한 모든 외교사절 공관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기본법 116조 1항에 의미하는 독일인을 보호하고 그들이 그들의 기본권 방어를 위해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권한도 가지며, 이러한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현재 서독에 살고 있는 독일인이건 다른 나라에 나가 살고 있는 독일인이건 법적인 차별이 없다”라고 하였음.

- 그러나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피난을 요청하며 상주대표부를 점거·농성을

벌이자 동독주재 서독 상주대표부가 과연 외교사절의 공관이며, 서독 기본법에 의한,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공관인가가 문제가 되었음.

- 당시 야당인 기민당/기사당의 입장은 동독을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동독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는 외교사절의 공관은 아니지만 서독의 관청인만큼, 서독정부는 서독 상주대표부와 함께 상주대표부 내로 들어 온 동독주민들에게 서독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당시 상주대표부 대표인 Gaus(사민당)는 "동독에게 서독의 법률을 인정하고, 서독의 거주이전의 자유원칙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동독과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당시 서독의 상주대표부가 동독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음.
- 서독 상주대표부는 외국에 존재하는 외교사절이 아니므로, 동독주민에 대해서는 단지 동독과 타협을 통한 정치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 법적으로 동독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음.

– 또한 일반적인 국제법이나, 1961년 비엔나 외교협정의 테두리 내에서는 파견국의 외교사절이 주재국 국민들에게 자국 공관내에서 "외교적인 보호"(diplomatischen Schutz)나 "외교적인 망명"(diplomatisches Asyl)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비엔나 외교협정 41조 3항에 근거한 목적 외 근무활동 금지의 원칙에 의거 각 공관은 국제법적으로, 협정상 허용된 외교업무 수행만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한편 공관은 주재국으로부터 모든 수색조치에 대한 면책특권을 누리며, 주재국의 인사들이 공관을 들어설 때는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주재국의 주민이 공관으로 피신하거나 망명을 요청할 경우, 이를 강제로 끌어 낼 수 없고, 공관과 파견국에 대해서는 단지 통상적인 외교적인 수단(항의, 공관장에 대한 Persona-non-grata 선언, 외교관계 단절)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음.

○ '84 동독주민들의 서독 상주대표부 점거 및 서독이주 요청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음.

– 1984. 1. 20 6명의 동독인(주동자는 아버지가 Stasi에 근무했던 28세의 예술전공 학생, 두 명의 정치범, 한 명의 노동자, 오래 전부터 서독으로 이주신청을 해 온 한쌍의 부부 등임)들이 동독주재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했으며, 서방언론 특파원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혔음.

- 미대사와 상주대표부 대표인 Braeutigam, 그리고 동독 정치범 석방 거래의 협상주역인 Vogel 변호사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이들은 동독정부에 인수된 후 곧바로 이주신청을 하게 하여 동년 1. 22 서베를린으로 이주가 허용되었음.
- 당시 보고를 접한 동독 공산당 서기장 Honnecker는 프랑스 외상, 캐나다 수상 등의 동독방문을 앞두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안보담당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서독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이들의 이주를 허용했다고 함.

– 1. 24 이번에는 12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의 상주대표부를 점거했으며, 이들은 역시 동독측의 비밀협상 결과 서독으로 이주가 금방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1. 27부터 서독 상주대표부 주변에는 보안요원들이 투입되고 동독인에 대한 출입통제가 가해졌음.

– 1. 29 서독 수상실 장관 Jenniger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서독 상주대표부를 서독이주에 이용하려는 동독주민들에게 경고를 했음.

- "일련의 사태 해결 결과를 서방국가의 공관이나 서독의 상주대표부가 동독피난민들에게 망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당사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양독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족재결합과 서독으로 합법이주를 위해 노력하는 서독정부의 특별노력에 큰 악영향을 끼쳐 기존의 특별노력사업에 따라 혜택을 입게 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서독정부의 목표는 동독이란 국가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데 있지 않다."

• 서독정부는 처음 공관점거자들에게 허용한 예외조치가 일상화되어 이로 인해 동·서독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음.

- 그러나 1984. 4에는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에 35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망명신청을 했으며 이들에 대한 서독이주도 허용되었음.

- 1985. 6. 5~25 사이에 약 40여 명(이중에는 어린이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의 동독주민이 서독 상주대표부에 몰려들었으며, 서독 상주대표부는 이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고, 이들이 어떤 형사처벌 없이 자기 거주지에서 합법적으로 서독이주 신청을 하여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동독측과 협상하였음.

- 1984. 6. 20 서독 수상실 장관인 Jenniger는 동독주민들에게 "극단적인 압력에 가까운 형태로 서독이주를 강요하는 방식"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서독정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서독 간 협상을 통해 상호 방문가능성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힘.

- 1984. 6. 20 동독측 협상실무자인 Vogel 변호사는 "동반하려는 자녀들 때문에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상황의 악화로 이제까지 어렵게 양독 간 협정과 합의로 이룩된 양독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서독측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음.

- 1984. 6. 26 서독 상주대표부 앞에서 서독으로의 이주를 외치며 동독주민 한 명이 분신자살을 기도했고, 10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측의 출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상통풍구를 통해 서독 상주대표부 안으로 잠입하자 1984. 6. 27 서독 상주대표부는 방문객 접수용 출입구를 완전 철폐해 버렸음.

  • 서독주민에 대한 방문객 지원업무는 계속했으며, 동독주민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만 가능토록 하였음.

  • 내독관계성 장관인 Windeln은 이러한 상주대표부 폐쇄조치가 "일종의 긴급정당방위로 결코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공관폐쇄조치는 5주간 계속 되었음.

  • 서독 수상 Kohl은 연방의회에서 서독 상주대표부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특히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한 독일민족 분단의 고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우리의 연대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바 있음.

- 6. 28 내독관계성 차관인 Rehlinger는 동독측의 협상대표인 변호사 Vogel과 50여 명에 달하는 상주대표부 점거 동독주민들의 처리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음.

  • 동독측은 이들이 즉각 자발적으로 상주대표부를 떠난다면 형사처벌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서독측은 이들이 동독법에 준해 서독으로 이주신청을 할 경우 이들에게 이주허가를 즉각 해 줄 것을 요구했음.

  • 다만 현역 해군 한 명, 전역한 동독인민군 대위 한 명, 퇴직한 공무원 한 명에 대한 처리가, 동독측이 이주허가를 내 줄 수가 없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이들도 결국 동독측의 양보로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었음.

  • 동독주민 점거자들은 7. 5일까지 상주대표부를 떠났으며, 이들은 전부 8월초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었음.

- 이 사건 이후 서독 상주대표부 측은 동독 방문자를 위한 별도의 통로와 사무실을 만들어 이들이 공관내의 다른 공간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서독정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대 동독정책과 내독관계에서 커다란 딜레마에 직면했으나, 동독과의 비밀협상통로를 이용한 협상을 통해 동독측의 양보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음.

- 서독측은 동독정부에 좀 더 내독 간 국경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적교류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서독으로 이주를 원하는 동독주민이 공관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해 공관의 폐쇄라는 조치를 취하는 이중성을 보였음.

  • 또한 공관점거자들이 더 이상 공관을 악용하도록 방치하지 않아야만 지속적인 내독관계의 유지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상주대표부 전체 업무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딜레마가 있었음.

- 서독정부는 원만한 내독관계를 위해 상주대표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독측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해야 했음.

  • 서독 상주대표부는 동독인 방문객에 대하여 별도의 접수실을 마련하여, 서독인 방문객과 차별적으로 처리하여 이들이 서독으로 망명신청을 위해

상주대표부를 점거 농성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였음.

- 서독정부는 서독으로 이주를 요구하는 동독인들의 불행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만, 이에 개별적으로 대처할 경우 이러한 사태가 여론의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이에 따라 내독관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동독주민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음.
- 서독정부는 상주대표부 점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민들의 자유이주를 억제하려는 동독정부의 정책에 기인하지만, 또한 동독정부의 협조 없이는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독과의 비밀협상 창구를 최대한 활용했음.

○ 동독정부도 이 사태해결과 관련하여 상당한 딜레마에 봉착했음. 우선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외교사절인 서독 상주대표부에 대해서 그 어떤 공권력을 행사, 자국의 국민을 강제로 연행할 수는 없었음.

- 그러나 서독정부에 대해서는 비엔나 외교협정에 따른 외교사절의 목적 외 활동 금지 원칙과 상주대표부 활동에 관한 합의 중 망명자문제 처리가 빠져 있음을 들어, CSCE정신에 따른 이주의 자유의 침해라는 국제적인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서독정부에 대해 망명신청자에게 편의·지원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했음.
- 궁극적으로 그러나 동독정부는 극단적인 외교적 압력수단(대표 소환 또는 단교 위협)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서독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되, 서독 상주대표부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음.

○ 결국 양독정부는 협상을 통해 양측의 체면을 살리며 실리를 취하는 방식을 채택했음.

- 우선 대표부 점거자들은 동독측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서독으로 이주신청을 하면 바로 이주가 되도록 동독측이 허용하였음.
  - 동독에서 서독으로 합법 이주민 수는 1983년의 7,729명에서 1984년 34,982명으로 5배가 증가했음.
- 이러한 동독측 입장의 최종 결정권자인 Honnecker 서기장은, Mielke 국가보위부장을 위시한 대서독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독측과의 협상자인 변호사 Vogel에게 직접 지시를 하여 서독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던 것으로 전해짐.

- 우선 호네커는 '83년의 10억 DM 서독은행차관에 이어 동독경제의 대외결제능력제고와 이를 통한 동독주민에 대한 물자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84년에도 서독은행으로부터 10억 DM의 차관을 들여와야 했기 때문에 대 서독 강경정책을 쓸 수가 없었음.
- 또 한편 호네커를 비롯한 늙은 정치국원들은 동독주민들의 동독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과신하며, 서독으로 이주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음.

» 체제 불만자들에 대해 서독으로 이주신청을 받아 이들을 방출함으로써 이들을 담보로 서독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하고, 체제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를 노렸던 동독 지도부는 동독 주민들의 서독 상주대표부 점거라는 극적인 사태 처리에 있어서도, 하나의 선례가 되어 유사사태가 발생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질 경우, 체제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은 당시만 해도 하지 않았음.

» 실제로 5년 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동구권 국가들의 서독 공관과 동베를린 서독 상주대표부에서 발생함으로써 동독이란 국가가 멸망하는 역사적인 기원이 된 바 있음.

» 특히 동독지도부는 동독주민 중 서독으로의 이주희망자의 수를 5만 정도로 유지하며 매년 조금씩 서독으로 이들을 방출하여 왔는데, 실제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서독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동독주민이 50~500만, 심지어 동독 민권운동가인 Baerbel Bohley의 견해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2에 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동독체제 붕괴 이후에 밝혀진 바 있음.

1-4-2. 3개 분야 공동위원회

1-4-2-1.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

○ 양독국가는 1973년 1월 31일 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1972년 12월 21일 서명, 1973년 6월 21일 발효) 부속의정서에 따라 양독 간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를 구성함.

- 기본조약 3조 :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라 동·서독은 양국 간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억제한다. 양국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양국 간에 현존하는 국경선의 불가침을 재확인하며, 양국의 영토보존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 기본조약 3조에 대한 추가의정서(Zusatzprotokoll) : "양국은 양국정부가 임명한 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동 위원회는 양국 간에 현존하는 국경선의 확정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국경표시를 개정 또는 보완하며, 동시에 국경선 통과에 관한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다. 동 위원회는 국경선 통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예컨대 수자원, 에너지공급, 재해방지와 같은 문제 처리에 기여한다. 위원회는 조약의 서명과 즉시 활동을 개시한다."

○ 국경위원회에는 동·서독에서 각기 필요에 따라 임명된 대표단을 파견하였음.

- 서독측에서는 내무성 직원을 단장으로, 내독관계성, 재무성, 동독과 국경을 접한 4개주(바이에른, 니더삭센, 헤센, 슐레스비히-홀스타인)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음.
- 동독측에서는 외무성 직원을 단장으로, 국방성(국경수비대) 환경 및 수자원 보호성, 내무성 직원으로 구성됨.

○ 국경위원회의 회의는 국경부근의 도시에서 동·서독을 번갈아가며 개최되었는데, 1978년 11월 정부 간 의정서에 의해 1년에 정기적으로 4회 개최 합의시까지, 보통 이틀 간 계속되는 회의가 45회가 개최되었음.

○ 국경위원회의 임무는 기본조약 3조에 대한 추가의정서에서 규정된 대로임.

- 현존하는 국경선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경표시를 개정 또는 보완하며, 국경선 통과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
  - 기존 국경선 표시의 법적인 근거는 4대 전승국이 합의한 1944년 9월 12일자 독일과 베를린 점령지역에 관한 런던 의정서임.
- 국경선 통과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양국 간의 문제 특히 수자원, 에너지 공급과 재해방지 문제의 처리였음.

○ 6년 간의 양독국경위원회의 공동작업 끝에 양독정부는 1978년 11월 29일 "정부간 의정서"(Regierungsprotokoll) 형식으로 국경문제와 관련한 공동 최종문서(ein gemeinsames Schlussdokument) 작성에 합의함.

- 동 의정서 제1조에서는 그간 양독 간의 1,297㎞에 달하는 국경표시의 확인작업 결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엘베강 유역의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런던의정서 자체가 불명확하여, 양독 간에 엘베강 동쪽 하안선인지, 서쪽 하안선인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규정함.
  - 이 엘베강 국경확정 문제는 계속하여 양독 간에 쟁점으로 남음.
- 동 의정서 제2조에서는 국경선 통과와 표식 및 국경지도 작성에 관한 문서(Grenzdokumentation)에 관해 규정함.
- 제3조에서는 이제까지 국경통과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경위원회가 합의한 10개의 정부 간 합의와 의정서 주석의 효력발생에 대해서 규정함.
  - 1973년 9월 20일 양독 간 국경에서 재해방지에 대한 정부 간 합의.
  - 1975년 12원 11일 홍수에 관한 정보교환에 대한 정부 간 합의.
  - 1978년 3월 9일 상대편 국경을 넘어서는 에너지원 채취 금지에 대한 정부 간 합의.
  - 1973년 9월 20일 국경수자원 보존과 수자원 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정부 간 합의.
  - 1978년 9월 14일 수자원 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의정서 주석.
  - 1973년 12월 6일 지적/토지대장 및 계량기 관련서류 교환에 관한 의정서

주석.

- 1976년 2월 3일 국경부근의 산림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의정서 주석.
- 1977년 2월 2일 국경부근의 도로에 관한 의정서 주석.
- 1977년 10월 27일 동독의 국경부근 수자원 채취 및 관개로에 관한 의정서 주석.
- 1978년 5월 18일 국경수로인 베라(Werra)와 살레(Saale) 간의 스포츠용 보트와 다른 해상운송수단의 월경에 관한 의정서 주석.

- 제4항에서는 국경위원회의 업무처리 방법에 관해 규정함.
  - 국경위원회 회의는 통상 1년에 4회를 개최하며, 양측의 요구로 추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국경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일정한 지역조사를 위해 실무위원회나 전문가들은 위촉할 수 있음.
  - 국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함.

○ 양독정부는 이 국경위원회 최종문서 형태와 관련하여 입장을 크게 달리하였음.

- 동독측은 완전히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국가조약(Staatsvertrag) 형태로 이를 체결하고,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처에 등록하여 명실공히 외국과의 조약체결로 서독측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시도하였음.
- 반면 서독측은 조약형태를 처음부터 거절하고 정부 간 의정서(Regierungs-protokoll) 형태를 주장했으며, 만약 동독이 유엔에 이 최종문서를 제출하면 일방적인 동독만의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1-4-2-2. 통과여행 위원회(Transitkommission)

○ 통과여행위원회는 1971년 12월 17일자 "동독지역을 경유하여 서독-서베를린 간을 왕래하는 민간인들의 통행과 민간물자 통과에 관한 양독 간 협정"(일명 Transitabkommen) 제19조에 의거하여 1972년 7월 양독 간에 설치되었음.

- 동 협정 19조에 의하면
  - 1항 : "협정당사자인 양측은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견해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함".
  - 2항 : "이 위원회에 참가할 양측 대표단의 대표는 서독 교통성 장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자와 동독 교통성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각각 맡음".
  - 3항 : "위원회의 소집은 협정당사자 쌍방 중 일방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짐".
  - 4항 : "회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함".
  - 5항 : "만약 위원회가 그들에게 위임된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조정하지 못할 때는 쌍방은 이 문제를 각자의 정부로 위임함".

○ 이 통과여행위원회 회의는 본(BONN)과 동베를린을 번갈아가며 개최되었음.

- 1986년 3월 현재까지 약 90회가 개최되었음.
- 양측의 회의참가자는 교통성 직원을 대표로 관련부처가 참여하였으며 서독측은 내독관계성 직원을 추가로 참석시킴.

○ 이 위원회에서 동·서독측이 주로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서독측은 주로 서독지역으로부터 서베를린 지역을 왕래하는 주민들로부터 동독지역 통과여행시의 불편한 사항을 청취하여, 동독측에 전달하였고, 특히 동독기관의 반복되는 검문·검색과 통과절차의 복잡성 등에 항의하였음.
- 반면 동독측은 동독지역 탈출을 기도하는 동독주민들이 이 통과도로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서독측이 방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그러나 이러한 동독측의 항의에 대해 서독측은 모든 독일인의 여행자유권보장은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로 간주하여 이를 반박함.

1-4-2-3. 통행위원회(Verkehrskommission)

○ 통행위원회(Verkehrskommission)는 1972년 5월 12일자 "양독간 통행문제에 관한 조약"(Verkehrsvertrag) 제32조에 따라 1972년 11월 설치됨.

- 동 조약 32조에 의하면
  - 1항 : "본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상 쌍방 간에 이견이 대두되는 경우 양

조약당사국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해결함”

- 2항 : “이 위원회에 참가할 양측대표단의 대표는 서독 교통성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자와 동독 교통성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각각 맡음”
- 3항 : “위원회의 소집은 협정당사자 쌍방 중 일방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짐”
- 4항 : “회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함”
- 5항 : “만약 위원회가 그들에게 위임된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 쌍방은 이 문제를 각자의 정부에 위임함”
- 아울러 본 조약 32조에 대한 의정서 주석에 의하면 “제32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는 여객이나 화물운송의 간소화 및 합리적인 운영의 문제에 대해 자문하도록” 되어 있음.

○ 이 통행위원회 회의도 본(BONN)과 동베를린을 번갈아가며 개최되었으며, 1972년부터 1986년까지 45회가 개최되었음.

○ 이 위원회에서는 양독 간 국경에서 인적 또는 물적인 상호교통왕래 및 제3국으로의 통과교통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다룸.

1-5. 내독관계에 대한 동·서독측 기관 관할권

1-5-1. 서독측

1-5-1-1. 수상실(Bundeskanzleramt)

○ 수상실의 고유기능은 수상의 국정 전반에 대한 기본정책 결정권을 근거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는 것임.

○ 그러나 1969년 브란트정부가 동독정부와 접촉과 협상을 시작한 이래 독일정책 추진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부서로서 고유한 업무 영역을 갖게 되었는 바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동독측은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내독 간의 특수관계를 부인하며 내독관계성을 협상의 상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서독측 또한 동독측이 요구하는 대로 외무성에게 협상을 맡길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수상실이 독일정책 추진의 관할기관이 됨.
- 1970~1973까지 수상실 국무차관이었던 Egon Bahr가 동독과의 협상을 주도하였는 바(개인적인 역량과 브란트와의 친분관계 때문이었음), 독일정책에 대한 관할권이 수상실로 집중되게 됨.
- 1974년부터 상주대표부가 개설되고 이 상주대표부의 관할권이 수상실(동독측은 외무성)로 양독 간에 합의됨에 따라 수상실은 명실공히 독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게 됨.

○ 수상실내 담당기구는 Abt 2(외교·안보·독일정책담당실) 아래 “독일정책보좌관”(“Arbeitsstab Deutschlandpolitik”)과 Gruppe 22(국장급)가 설치되어 있었음.

- “독일정책 보좌관”실은 1977년에 설치되어 독일정책에 관한 각 부처 조정 업무를 담당함.
- Gruppe 22는 3개 과로 구성됨.
  - Ref. 221 : 상주대표부, 내독관계 중 환경·연구·언론 분야 베를린 문제 담당.
  - Ref. 222 : 내독관계 중 사법·통행·가족상봉 분야 담당

• Ref. 223 : 내독관계 중 경제·문화 분야 담당

1-5-1-2. 내독관계성(Das Bundes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

○ 내독관계성은 모든 독일정책 결정 및 독일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각 부처가 동독측과 협상시 수상실과 함께 조정·자문 기능을 하며 참여했음.

- 내독성 산하 Abt. Ⅱ(독일정책실)에는 각 분야별 동독문제 전문가가 배치되어, 대동독문제에 관해 각 부처와 상호 협의하였음.
- 그러나 동독측이 내독관계의 특수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서독내에서만 동독과의 모든 협상을 준비 실행하는 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었으나, 공식적으로는 동독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부처에 속하기도 했음.

○ 비공개적이지만 내독관계성이 전적으로 관여하여 동독측 대표와 직접 협상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사업을 들 수 있음.

- 이 비밀협상에는 서독측에서는 내독관계성 차관이, 동독측에서는 Honnecker의 신임을 받았던 Vogel 변호사가 실무책임자로 참여했음.
- 이러한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의 결과 1963~1989 동안 33,000명의 정치범이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인도되고 ,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재회할 수 있었음.

○ 공식적인 동독과의 협상에서 내독관계성이 동독측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며, 동독측이 협상대표로서 묵인한 경우 호칭시 “내독관계성”이라는 명칭은 빼고 몇몇 분야 협상에 참여하기도 하였음.

- 1970년 에어프르트와 카셀에서 최초로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는 내독관계성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회담을 수행했으며, 이때 내독관계성 장관은 단순히 “장관”으로만 호칭되었음.
- 1982년 호네커-슈미트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로서 여행·방문 완화, 이산가족재회, 상주언론인들의 취재활동자유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내독성 장관이 동독 외무성 장관과 회동한 사례가 있었음.
- 1986년에 체결된 문화협정의 경우 서독 연방정부내 문화성이 없었던 관계로 내독성 문화관계 담당관이 협상을 주도하였음.
- Werra 강의 환경오염 제거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내독관계성 직원이 대표단을 인솔하기도 하였음.

1-5-1-3. 상공신탁처(Die Treuhandstelle fuer Industrie und Hande)

○ 상공신탁처(약자로 TSI, 1981년까지는 명칭이 Treuhandstelle fuer den Interzonehandel 이었음)는 독일상공회의소에 의해 1949년에 점령지역 간 통상을 위하여 서베를린에 설치되었으며, 1953년 이후부터는 연방경제성의 감독을 받았음.

- 상공신탁처의 처장은 경제성 내독경제담당과의 과장이었으며, 연방정부와 베를린 시정부로부터 내독 경제 문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있었음.
- 상공신탁처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동독과의 경제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동독측 정책결정기관(주로 대외무역성)과의 접촉 유지.
  - 내독 간 무역에 관심이 있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 이 기구의 설립으로 내독관계가 정상화되기 이전에도 준 공식적인 관계가 동독과 지속될 수 있었으며, 냉전시에는 이 기구를 통해 순수한 경제교류를 넘어 특히 인도주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조치가 논의되었음.

○ 기본조약체결 및 상주대표부 설치 이후에도 동독측과의 내독 간 경제관계에 관한한 상공신탁처의 소관업무영역과 위상면에서 아무 변동이 없었음.

- 1976년에는 상공신탁처와 대외무역성 간에 국경에서 광산물 채취와 관련한 회담이 열리기도 했음.

○ 상공신탁처 대표와 동독의 대외무역성 대표는 최소한 1달에 2번 이상 접촉을 갖고 내독 간 재화와 용역 교류에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를 모색함.

- 분단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 동독과의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한 유일한 기관이었음.

○ 상공신탁처의 대동독 접촉 이외에 내독 간 경제담당 최고 책임자들 간의 접촉은 라이프찌히 박람회에서 서독 경제성 장관과 공산당 중앙위원회 경제담당 비서 및

대외무역성 장관의 회동을 들 수 있음.

1-5-1-4. 외무성(Auswaertiges Amt)

- 외무성은 베를린과 독일 간의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 독일통일의 외적인 측면의 해결에 관한 모든 문제 해결에 관여해 왔음.
- 본(Bonn)에는 서방 3개국(미, 영, 불)과 공동으로 독일문제 및 베를린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3국 대사와 서독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4대국 조정위원회("Viermaechte-Botschafterlenkungsausschuss")가 설치되어 있었음.
  - 외교정책실(Politische Abteilung I) 산하에 1개의 과(Ref. 20; Aussenpolitische Fragen, die Berlin und Deutschland als Ganzes betreffen")를 설치하고 이 문제처리를 담당하였음.
- 외무성은 서방 3대국과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베를린 통행협정, 교통협정, 기본조약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실무대표로서 참석하였음.
- 양독 외무장관들은 국제회의나 다자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테이블에서 상호접촉을 갖기도 했으며, 기본조약 체결시 구두로 합의한 바 있는 군축문제에 관한 정치적인 협의 방침에 따라 군축 문제 전권 위임자(Abruestungbeauftragter) 접촉을 주도하기도 하였음.

1-5-1-5. 베를린 시 정부

- 베를린 시 정부는 서베를린의 서독지역에 편입을 보장하고, 서방 3대국의 베를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동독정부와의 협상에 참여하였음.
- 1971년 9월 4대국 협정(Vier-Maechte-Abkommen)에 의하여 베를린의 지위 및 안전문제, 여행·방문문제, 지역교환 및 국경문제, 수로 및 철도문제 등은 연방정부가 협상을 주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베를린 시 정부가 동독측과 협상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베를린 시 정부의 동독정부와의 합의사항은 서독정부 및 서방 3대국의 동의를 필요로 했으며, 독자적인 결정권한은 없었음.
- 베를린과 동독과의 합의사항 중 특히 연방정부의 비용분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베를린 시 정부 연방관계담당장관이 동독측과 협상 및 협정문제를 담당했음.
- 단지 베를린과 관련된 여행·방문문제는 주지사실 제2실(Abt. II)에서 담당했는데 실장이 동시에 베를린 주민 여행·방문문제담당 전권위임자(Beauftragter fuer den Reise-und Besucherverkehr der Einwohner von Berlin)를 겸했음.

1-5-1-6. 교류·협력 담당 각 부처

- 양독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적·정치적인 돌파구 마련은 수상실, 내독성이 담당하였지만, 기본조약 이후(이미 기본조약 체결 이전부터 동·서독 간에 행해진 내독경제관계에 대한 경제성의 관할권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후속협정 마련과 협상은 각 교류·협력 부처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
  - 아울러 3개의 동·서독 간 공동위원회와 1개의 전권위임자 접촉에는 관련부처의 실무자가 회담대표로 참석하였음.
  - 그러나 동독과의 모든 회담과 협상에는 내독관계성의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였음.
- 내독관계에 관한 주요 부처별 업무분장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성: 내독경제교류 전반, 내독관계 주요 법령 제정, 상공신탁처 감독.
  - 내무성: 국경문제, 스포츠 교류.
  - 법무성: 각 주정부 법무성과 함께 동독과 사법공조문제.
  - 교통성: 통행·통과여행문제.
  - 체신성: 우편·통신교류.
  - 보건·청소년성: 보건협정에 의한 교류·협력, 청소년 교류.
  - 환경성: 환경협정, 환경보호, 원자력 이용.
  - 교육성: 대학생 교류, 학자교류.

1-5-2. 동독측

1-5-2-1. 사회주의통일당(SED)내 기구

- 동독의 대 서독관계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대외관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나, 동독의 정책결정구조는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었으며, 공산당의 영도성 원칙이 관철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 내 정치국이 대 서독정책을 결정하였음.
-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의 결정은 공산당 정치국이 사실상 결정하되 당 공식기구인 중앙위원회(ZK) 이름으로 공표하였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서기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당 서기장이 최고 정책결정자라고 할 수 있음.
  - 서기장 아래 국제관계 담당서기, 경제 담당서기, 선전/선동 담당서기가 대 서독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중앙위원회 서기국 산하에는 2,000명의 사무처요원과 40개의 실·국이 있었으며, 그중 "West" Abt.(서독담당실)이 대 서독관계를 총괄함.
  - "West" Abt. 산하에는 서독의 전독문제연구소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제정치·경제연구소(Institut fuer Internationale Politik und Wirtschaft, 약자로 IPW)가 있었음.
    - 이 연구소의 기능은 서독의 각계·각층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분석, 서독의 정치적인 변동상황 파악, 동독의 대 서독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관찰·보고하는데 있었음.

1-5-2-2. 국가기관

- 국가의 상위정책결정기관으로는 당 서기장이 의장으로 있던 국가평의회(Staatsrat)를 들 수 있으나, 실질적인 대외정책 집행업무는 내각평의회(Ministerrat)에서 결정됨.
- 동독외무성(Das Ministerium fuer Auswaertige Angelegenheiten)은 서독과의 기본조약 체결 이후 134개국(통독직전까지)으로부터 국가적 승인을 받으며, 그 위상이 커졌는데,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t.(서독담당실)이 내독관계를 담당함.
- 대외무역성(Das Ministerium fuer Aussenhandel)은 대외무역에 있어서 독점권을 갖고 대외무역회사를 관리했는데, 내독무역에 있어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당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였음.
  - 내독무역에 있어서는 물품과 용역거래에 관련한 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해하는 업무를 담당함.

1-6. 정당 간 접촉·교류

1-6-1. 동·서독 정당들의 접촉·교류에 대한 입장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 점령기간 동안 활동이 재허용되었거나, 신설된 독일 내 대중정당들은 소련 점령지역과 서방 점령지역으로 나뉘어져 활동하고 있었으나, 두 점령지역 간(나중에는 동·서독 국가 간) 소위 "자매정당"(Schwesterpartei) 간의 접촉은 어떤 형태로든지 끊기지 않고 간헐적이나마 지속되었음.

- 동·서독 분단국가 수립 이후 동·서 진영 간 냉전의 격화시기에도, 서독의 정당들은 제3국의 중개인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행사를 통해 동독 정당과 대화를 위한 접촉을 모색해 왔음.
  - 서독 사민당(SPD)은 국제 사회주의 그룹의 일원으로서 이 단체의 활동을 이용해, 특히 이태리 공산당을 통해 동독 공산당(SED)과 접촉을 꾀했음.
  - 서독 기민당(CDU)은 동독 기민당 측과 비정치적으로 국제적인 기독교집회나 교회단체모임에서 접촉을 모색했음.
- 특히 동·서독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서독 내에서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새로운 정부의 대동독 정책이 불분명한 경우에, 동독 공산당(SED)은 서독 정치계의 의중을 탐색키 위해 그 위성정당을 동원하여, 정당차원에서 접촉을 모색해 왔음.
  - 동독에서는 공산당이 영원한 집권당으로서 서독 정당들과의 대화를 주도했으나, 공산당의 영도성 원칙에 의거 조정을 받던 위성정당들도 서독 내의 대중정당들에 대해서 자매정당임을 표방하여 적지 않은 접촉을 해 왔음.
- 서독측 정당들의 대동독 정당 접촉에 있어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국가·사회체제의 상이성,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상호 많은 인적인 접촉을 통해 대화를 해야만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상호 정치적인 편견을 극복할 수 있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음.
  -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철의 장막에 가려 상대방에 대해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편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일깨워 이러한 편견을 제거하는데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음.
  - 그러나 서독측 정치인들은 정당지도자들 특히 고위급 정치인들의 접촉이 동독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인권침해사례들을 거론하지 않은 채 대화채널을 유지하는데 급급해 동독측이 노리는 동독체제에 대한 인정을 노리는 "상층부 간의 접촉"에만 머물지 않도록 노력했음.
- 반면, 동독측의 정당들은 동독 공산당의 대서독 정책 즉 독일 내의 2개의 국가 인정과 동독의 국제법적인 승인, 군축·평화공세 등의 입장을 서독측 정당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하는데 그 활동 목표가 주어졌음.
  - 동독측의 대화유지 노력의 중점은 늘 서독측 고위급 정치인들과 접촉선 유지 그 자체를 동독체제에 대한 인정으로 유도하여, 체제 내부적인 갈등을 호도하고 국제적으로 동독정부 자체의 존립성을 선전하는데 두었음.

○ 동·서독 정당들이 상호 대화나 접촉을 모색하는데 근본적인 장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임.

- 우선 각 정치체제 내에서 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은 정치적 정통성의 정도가 상이했음.
  - 서독은 전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켜, 의회에 진출한 대중정당들이 구성한 연립정부는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절차적·실체적 정통성을 획득하고 있었음.
  - 반면 동독의 공산당은 "민주적 집중주의" 원칙에 의한 일당독재체제 구축, 어떤 형태의 체제비판이든 이에 대한 탄압, 행정적 감시망의 구축, 이데올로기적 선동과 선전 메카니즘과 대중 집단에 의한 회원가입 강요에 의거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동원된 지지를 획득하면서도, 많은 체제비판세력을 잠재적으로 생성해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물적 욕구 충족에 실패해 서방체제를 동경하여 서독으로 이주하는 인력이 끊이지 않았음.
    - » 정치, 경제, 사회·문화 체제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거부, 공개적 비판의

차단 등으로 주민들은 한편으로 정치로부터 이탈해 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운동·환경보존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체제 민권운동이 점차 체제 내에서 조직화되기 시작하여 통치상의 정통성 부재상태가 지속되었음.

- 이러한 양독 정치체제의 정통성 획득 정도의 상이성으로 인해, 동독의 정당들은 서독의 정당들과 접촉을 하면서도 개방에 따른 정통성 부재상태의 노출과 체제의 와해를 우려했기 때문에, 상호 논의되는 의제는 늘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음.
  - » 서독측 정당지도자들은 접촉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동독측의 특히 위성정당들은 공산당의 통제와 서독 정당들에 대한 정통성 부재의식 때문에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

– 동·서독은 정당 및 국가형태,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개념에 입각하여 상이한 정치체제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당 간 교류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
  - 특히 동독내 위성정당들이 모두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에 입각 "민족전선"에 강제로 편입된 이후에는, 서독측의 정당개념에 의한 독자적인 사회세력으로서의 정당의 존재와 기능이 동독 사회 내에서는 부재한 것으로 간주되었음.

1-6-2. 기본 조약 체결 이전의 정당 간 접촉사례: 연사교환 제의

○ 1950, 1960년대 중반까지 냉전기간 동안 동독의 위성정당들에게는 서독의 힘에 의한 우위정책 고수와 동독 공산당의 이러한 서독측의 단독대표권에 대한 거부자세로 말미암아 정치인들 간의 개별적인 접촉 이외에 내독 간 정당교류는 정당차원에서 성사될 수 없었음.

○ 1966년 서독에서 기민-사민당 간 대연정이 이루어지고 외교·독일 정책적으로 사민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대동독 화해정책의 기운이 돌자, 동독 공산당은 동독이 주권국가로서 인정받으려는 의도하에 서독 사민당과의 대화를 모색하며 동독 내 위성정당들에게도 각기 정당의 성격에 맞는 서독의 대중정당들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라고 지시하였음.

– 이러한 동독측의 첫번째 시도가 정당 간의 연사교환(Rederaustausch) 제의임.

○ 정당 간 연사교환 제의 경위와 무산 배경

– 1966. 3. 26 동독공산당 중앙위는 양독관계의 핵심문제에 관해 정치인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동독에는 공산당을 위시한 5개의 정당이 있지만 우선 서독 사민당과 동독의 공산당이 동독의 칼 막스(Karl-Max)시와 서독의 에센(Essen)시에서 번갈아가며 연사를 선정, 대중연설을 하자고 제안했음.

– 1966. 3. 31 서독 자민당(FDP)은 당대회의 결정으로 동독자민당에게 서독 사민당-동독 공산당 간과 같은 연사교환제의를 하였고, 이를 동독 자민당이 수락 3명의 동독 자민당 대표가 서독을 방문,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함.

– 1966. 3. 31 서독 TV 방송국(SDR, SWF)은 서독 사민당(SPD)과 동독 공산당(SED), 서독 기민당(CDU)과 동독 기민당, 서독 자민당(FDP)과 동독 자민당(LDPD), 서독 기사당(CSU)과 동독 민족민주당(NDPD) 간에 각 정당 지도자를 초청 TV를 통해 공개토론을 개최하자는 초청장을 전달했음.
  - 이에 서독의 사민당과 자민당은 수락했으나, 당시 여당인 기민당/기사당은 정부대변인을 통해 이러한 TV토론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동 대화가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며 동 토론내용이 서독과 동독에서 동시에 중계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음.
  - 동독정부는 서독 정부대변인의 조건을 지적하며, TV토론 제의를 거부했는데, 서독 사민당은 동독측의 폐쇄사회에 익숙한 공개토론 회피 자세를 비난하는 한편, 서독정부에게도 조건없이 대화를 하자고 건의했음.

– 서독 사민당은 이에 따라 동독 공산당과 독자적으로 연사교환 문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수차에 걸친 실무협상을 거쳐 1966. 5. 26 연사 교환 합의에 관한 공공커뮤니케를 발포하였음.
  - 양측에서 번갈아가며 연사들이 연설을 하되(6. 14 동독 칼 막스시, 6. 21 서독 하노버시) 연설의 내용을 정확하게 신문, 라디오, TV를 통해 보도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자유로운 집회개최와 왕래가 양측에 의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합의함.

- 그러나 동독측은 교환의 원칙적인 합의 이후 베를린 지역이 아닌 서독지역으로의 동독인들의 자유왕래와 관련해서, 서독정부의 독일 단일대표권의 원칙에 입각한 서독형법 중 국가보위에 관한 조항(1951. 8. 30부터 발효됐음)과 이 조항의 동독 국민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적용 및 이에 따른 서독 재판권의 동독인에 대한 확대적용문제를 국제법적인 주권침해 행위라고 문제삼고 나왔음.
  - 동독측은 서독 형법 80조~100조까지의 국가보위에 관한 조항 자체가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서독인들의 대동독 접촉을 제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서독정부가 이 조항을 1957. 12. 31자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독일제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독일인(동독주민뿐만 아니라 폴란드, 소련에 살고 있던 실향민에까지)에게도 적용하며, 특히 "죄형법주의"(Legalitaetsprinzip)가 아닌 "편의주의원칙"(Opportunitaetsprinzip)에 따라 연사교환에 있어서도 정치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려 한다고 비난했음.
  - 동독측은 연사교환을 위한 사민당과의 실무접촉에서도 개최장소와 관련 서독 사민당이 요구한 서베를린이 아닌 Bonn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했으나 서독 사민당측이 이를 거부한 바 있음.
- 서독 사민당은 다른 서독의 당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연사교환과 관련한 동독측의 선전을 봉쇄하기 위해 서독방문 연사들의 자유왕래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강구하게 됨.
  - 연방의회는 각 당이 격론을 벌인 끝에 1966. 6. 23 "독일 재판권의 잠정적인 적용 배제에 관한 법률"(Gesetz ueber befristete Freistellung von der deutschen Gerichtbarkeit)을 통과시켜, 서독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에게 만약 이들의 활동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재판권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함.
  - 이러한 잠정적인 기간 동안은 모든 법원, 형사소추기관 및 기타 수사단체의 법적용이 유보되며, 따라서 연사교환을 통한 내독 간의 정당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들의 신변이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동독측에게 명확히 하였음.
- 1966. 6. 29 동독측은 서독측이 통과시킨 "독일재판권의 잠정적인 적용배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사들의 연설집회가 서독지역에서 질서있고 안전하며 개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연사교환 사업 자체를 무산시켜 버렸음.

○ 동·서독 간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이전, 동·서독 간 화해무드가 싹틀 때 최초로 시도된 내독 간 정당교류라 할 수 있는 연사교환은 서독정부의 단독대표권을 법적·정치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동독측의 계산된 의도에 의해 시도되고, 진행되다가 협상 파트너인 서독 사민당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며 정치적으로는 융통성을 보이면서도 법적으로는 기존 대동독 정책의 기조하에서 동독체제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동독측에 의하여 무산되고 말았음.

1-6-3. 동독의 위성정당들과 서독 정당 간의 접촉·교류

1-6-3-1. 동독내 공산당 외 위성정당(Blockpartei)들의 현황

○ 동독에는 주도정당인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 이외에 정치적 동원, 사회적 통합 및 사회적 통제를 위해 특정 계층을 당원으로 겨냥한 4개의 위성정당이 존재했음.

- 동독 기민당(CDU)은 1945. 6. 26 창당되었으며 분단 후에도 서독 기만당과 같은 이름을 계속 사용했으며 동독 내에서 신교·구교신자층(800~900만 추정)을 주요 지지자로 겨냥했음.
  - 동독 공산당 지도부로서는 이 기독교 신자들을 현존하는 사회주의 체제 내에 흡수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SED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위성정당이었음.
  - 당원은 분단 직후인 1948년 21만이었으나, 통독 전인 1987년에는 14만이었음.
- 동독 자민당(LDPD)은 1945. 7. 5 창당되었으며, 동독 내에서는 중·소 제조업자와 자영수공업자층, 공산주의적인 교조주의를 거부하는

문화인·지식인층을 주요 지지자로 겨냥했음.

- 경제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사회가 국제적으로 다원화되자 SED는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 이 LDPD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는데, 가장 지지층이 다양한 위성정당이었음.
- 당원은 1948년 20만이었으나, 1987년 10만으로 줄어들었음.

– 독일 민족민주당(NDPD)은 1948. 4. 21 창당되었으며, 과거 나찌 청산의 대상이 되었던 나찌잔당과 퇴역장교들을 새로운 사회주의 질서 내에 통합시키기 위해 SED의 주도하에 결성되었음.

- NDPD는 이들 과거청산 대상들이 연로해짐에 따라 이들의 자녀들을 당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중·소제조업자나 자영수공업자층이 주요 대상이었음.
- 정강정책 면에서 보면 뚜렷한 특징이 없어 지지층이 가장 취약한 정당이었음.
- 당원은 1948년에는 1만 명이었으나, 1987년에는 11만 명 정도였음.

– 독일민주농민당(DBD)은 1948. 4. 29 SED가 주로 농민층을 노동자와 함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동맹자로 흡수하기 위해 창당되었음.

- DBD는 SED의 농업정책을 추종하며 1960년대 농업집단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음.
- 당원은 창당 당시 1만 2천 명이었으나, 1987년에는 11만 5천 명이었음.

○ 총 47만의 당원(동독 성인의 4%, 1987년 현재)을 보유했던 4개의 위성정당은, 230만의 당원(동독 성인의 20%, 1987년 현재)을 거느렸던 SED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음.

– 4개의 위성정당 모두는 창당 당시의 독자적인 정관을 폐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영도적인 역할을 영원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관을 채택했음.

– 위성정당의 당원들은 위성정당이 그들에게 정치적인 보호와 특혜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았음.

- 특히 지방에서는 이러한 위성정당이 직업상, 개인사교생활에 있어 특정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
- 공산주의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적지않은 동독 주민들은, 그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국가에서 살면서 직업상의 일정한 경력을 쌓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위성정당을 활용했는데, 동독 기민당과 동독 자민당 당원의 경우가 특히 그러했음.

○ 이러한 위성정당들은 동독공산당의 지시와 통제하에 각각 서독의 “자매정당”들과 접촉과 교류를 시도했는데, 동독 위성정당들의 존재의의가 동독공산당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념 그룹(예를 들면 진보적 기독교인, 평화주의자, 극우파, 중립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포섭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대중정당들과 근본적으로 교류를 모색할만한 역량이나 가능성이 이러한 동독 정당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동독의 위성정당 중에서 서독 정당들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정당은 동독 자민당(LDPD)이며, 동독 기민당은 동독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미미했음.

– 동독내에서는 민족주의 우파 진영을 대변하는 NDPD도 서독내에서 NPD 등 민족주의 적극 우파 그룹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미미했음.

- NDPD는 서독내에서 1980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반미민족주의 운동에 주목하면서 중립주의를 표방하여 이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NDPD는 반소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았음.

1-6-3-2. 서독기민당(CDU)/기사당(CSU)의 동독 정당과 교류

○ 서독 기민당과 기사당은 동독의 자매당이라 할 수 있는 기민당과 당 차원에서 그 어떤 공식적인 접촉을 갖지 않았음.

– 소련 점령지역의 기민당 지도부(예를 들어 서독의 초대 전독성 장관인 Jakob Kaiser)가 강제로 서방지역으로 추방되고, 동독 기민당이 동독 공산당의 위성정당이 된 후부터 1986년까지, 보수당으로서 서독 기민당과 기사당은 냉전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대공산당 강경정책 때문에 동독 기민당과 공식적인 접촉 모색문제를 당론에 회부하기도 하였으나 당 지도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음.

- 1986년 바뎀 뷔르템베르크주 수상이자 기민당 부당수인 로타 슈페트가 대동독 기민당 정책에 전환을 촉구하며 동독을 개인 자격으로 방문 동독 기민당 지도자이자 교회지도자인 하르무트 미트첸 하임과 접촉을 가진 후 새로운 교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나, 당 차원의 교류가 아닌 고위 정치인들 간의 개별적인 접촉에 그쳤음.
  - 개인자격의 비공식적인 접촉은 양당의 소속 국회의원 또는 당 간부들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능했음.

○ 서독 기민당/기사당의 대 동독 기민당에 대한 보수 강경자세는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지방행정 차원에서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도시 간 자매결연에 따른 대화의 일환으로 양당 간의 접촉이 이루어짐.

- 가장 접촉이 활발했던 경우가 Trier와 Weimar인데 두 도시 모두 기민당 출신이 시장을 하고 있어 자연스레 도시자매결연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많은 접촉을 가졌음.

○ 집권당으로서의 기민당은 동독 공산당(SED)과 당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정부지도자들 간의 접촉을 통해 교류를 가졌음.

- 기민당 당수 Kohl은 동·서독 정상회담을 통해, 기사당 당수 Strauss는 대동독 차관 공여시 막후 협상을 통해 동독과 접촉을 가졌음.

○ 특히 동독 공산당은 동독 기민당 소속의 교회 지도자들의 서독 기민당과의 친근관계를 고려, 동독 자민당 지도자들보다도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여, 동·서독 기민당 간의 접촉을 대대적으로 지원했는데, 동독 지도부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서독 보수 정당의 대동독 강경책을 완화시키고, 이러한 접촉들을 동독의 "군축 및 평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파악했기 때문임.

1-6-3-3. 서독 자민당(FDP)의 동독 정당과 교류

○ "자유주의"라는 이념의 공유를 내세우며 동독의 위성정당 중에서 서독의 자매정당인 서독 자민당과 가장 활발한 접촉을 벌였던 정당은 동독 자민당임.

○ 서독의 자민당은 냉전기간 동안에도 대동독 정책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진영을 초월한 유럽의 평화구조 창출에 두었기 때문에, 보수당인 기민당/기사당 보다 훨씬 더 자유스럽게 동독 정계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모색했으며, 동독 지도부는 자민당 지도자들을 조정 동독의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과의 대화를 적극 장려했음.

- 1956년 다른 정당들은 모두 동독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을 때 처음으로 Weimar에서 동독 자민당과 공식적인 당 차원의 접촉을 가졌음.
- 1966년 서독 사민당과 동독 공산당 간의 연사교환문제가 논의될 때, 유일하게 동독 자민당과 서독 자민당은 서독에서(Bad-Homburg)에서 3명의 동독 자민당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가진 바 있음.

○ 서독 자민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내독관계가 정상화된 이후부터는 동독 자민당의 동독 공산당에 대한 예속성과 서독 자민당의 국정참여로 인해 당대 당의 접촉과 교류는 거의 없었음.

- 동독공산당(SED)은 1980년도 들어서 동독 자민당에게 서독 자민당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하기 시작했음.
- 동독 자민당은 1982년 바이마르에서 열리는 그들의 13차 당대회에 서독 자민당 인사를 초청했으며, 서독 자민당 대표들은 발언을 하지 않는 업저버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가했음.
- 서독 자민당은 당 대회 참가를 통해 양측의 독일문제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확인했으나, 서로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 계기가 되었음.
- 그 이후 답방형식으로 동독 자민당 대표가 서독 자민당 당대회에 역시 업저버 형식으로 참가했음.

○ 특히 과거 소련점령지역 출신이면서, 동독 자민당에 입당했다가 서독으로 망명한 서독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겐셔 당수, 미쉬니크 부당수)과 동독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방문 접촉이 1984년 이후부터 잦아졌음.

- 서독 정치인들의 고향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접촉을 통해 당시 양 자민당 지도자들은 당시 동·서 진영 간 최대의 쟁점이었던 군축·평화문제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분야에서의 동·서독 간의 관계개선 등에 관해 논의했음.

- 동독 공산당은 동독 자민당에게 서독 정치인들과의 접촉시 동독 정부의 "평화정책"을 최대한 선전하도록 하여,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서독 집권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이 서독의 대외정책(연정시 서독의 외상직은 자민당의 몫이었음) 입안시 동독정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음.

○ 그러나 동독자민당 지도자들은 정치인별로 개인적인 접촉을 선호한 반면, 당차원에서 이들과 공식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가능한 한 회피했음.

- 왜냐하면 "자유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자민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독지역의 자민당의 강령과 정책이 공산주의체제하에서 하나의 위성정당으로 존재하는 자민당보다 훨씬 본래의 "자유주의"에 가깝다는 강박관념이 동독 자민당 지도자를 지배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독의 자민당 기층 당원들이 서독의 자민당 정치가들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임.

○ 각 지구당 차원에서는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이 실시된 이후부터 도시 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접촉이 있었음.

1-6-4. 서독 사민당(SPD)과 동독 공산당(SED) 간 교류

○ 독일 노동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공통성과 사민당의 대 공산당에 대한 보수당보다 진보적인 자세로 인해 정부 차원이 아닌 정당 간 교류 시도와 구체적인 합의가 가장 많았음.

- 사민당은 양 진영 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체제 간의 갈등을 현상으로 수용하면서, 주민들의 분단고통완화를 위해 양독일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에 힘썼지만, 적대적 체제내에서 상대편의 안보이익을 존중해주고, 특히, 동독체제의 불안정을 인위적으로 겨냥하는 정책은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독의 기민당이나 자민당의 대동독 정책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
- 그러나 점령기간 동안 소련지역 사민당이 강제로 SED로 합병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이념적인 차별성으로 인해, 동독 공산당과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원칙을 지켰음.

○ 동방정책을 주도했던 Willy Bradnt는 1986년 사민당의 동독 공산당과의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세계관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국가구성원리, 민주주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관점이 다른 바,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의사표현의 자유, 노조와 정치적인 결사의 자유 그리고 자유왕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다름.
- 이러한 이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보장이 이론상의 논쟁보다 우선되어야 함.
  - 이념과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고 상호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됨.
  - 유럽 내에서 동·서 진영 간 국경을 초월하여 군축과 평화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함.
- 동구 공산권 자체 내에서 일기 시작한 개혁에 대해 주목하며,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치하 주민들이 그들의 인권을 방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그 지원형태가 내정간섭이나 직접 개입의 형태를 띠어서는 안됨.
- 서독내 독일공산당(DKP)은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는 대화의 상대로서 별로 의미가 없는 정치집단임.

1-6-4-1. 1980년 후반 동독공산당(SED)과 야당으로서 서독사민당(SPD)의 교류

○ 70년대 유럽의 화해무드가 70년대 후반부터 미·소 양 강대국 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유럽내 핵무기 전력증강으로 나타나 새로운 냉전질서에 빠져들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핵전쟁의 최전방에 서게 된 서독 내에서는 평화운동(Friedensbewegung) 그룹과 애국적 좌파(patriotische Linke) 그룹을 중심으로 반핵운동전개와 기존 동맹관계를 안보종속관계로 파악하려는 움직임

등이 나타나 제도정치권에 독일문제 재조명에의 하나의 충격을 주게 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기존 제도권 안보정책과 다른 새로운 대체(Alternative) 안보정책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전쟁억지이론(Abschreckungsdoktrin) 논리에서 귀결된 강화된 군비와 핵무기는 국민안전을 보장하기는 커녕 원하지 않는 전쟁에 말려들게 한다고 함. 따라서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기존의 모든 군사전략은 폐기되고 안보를 이룩하는 방법으로 이 그룹은 군사무기에 의한 안보가 아닌 사회적 방위(Soziale Verteidigung)를 주장함.
- 새로운 안보정책은 양 강대국(미·소)을 그들 대외정책면에서 동시에 같은 정도로 팽창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판단하며, 따라서 NATO와는 더 이상 운명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서독이 모든 블록에서 탈퇴하여 오스트리아식의 중립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존의 안보정책이 환경파괴와 경제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야기해 국민적 정당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안보정책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아래로부터의 안보"(Sicherheit von unten)를 주장함.

○ 이러한 좌파들의 평화문제 해결을 통한 민족문제 동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급진적, 현상변경적 새로운 안보구상에 대해 70년대 화해정책을 주도했고 14년 간 집권경험이 있는 책임있는 제도권 정당으로서 사민당은 충격적인 주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 기존에 이룩한 동구권과의 협력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구와의 동맹관계도 유지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대응정책을 모색하는 바, 그 결과 제2의 동방정책이라 불리는 새로운 안보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됨.

- 제2의 동방정책의 특징은 제1의 동방정책이 이룩하지 못한 핵전쟁 위협의 해소와 평화질서 창조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강대국 중심이 아닌 분단국 중심, 더 나아가 유럽중심으로 모색하는 데 있었음.
- 이 대안모색과정에서 안보정책 분야의 새로운 정치적 개념틀로 등장한 것이 '공동안보'(Gemeinsame Sicherheit)인데, Egon Bahr는 핵전쟁 시대의 새로운 안보이론 모색을 위한 팔메 위원회(Palme K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동안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

  - "양 진영의 이념 간의 차이는 도저히 공통점을 찾을 수 없고 수렴할 수 없는 신념과 세계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그 차이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핵전쟁시대에 있어서 신념에 기인한 전쟁(Glaubenskrieg)은 모두에게 자살일 뿐이다. 따라서 세계평화의 유지가 각자 이념의 관철에 우선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공동생존이란 목표는 '공동 안보'를 요구한다. 상호확증 파괴가 가능한 핵전쟁시대의 안보는 더 이상 적대자를 배제한 채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적대자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공동안보'는 적대자를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폭력의 사용으로 적을 더 이상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민당은 '83년 이래 야당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동구권내 다른 공산당 특히 동독정부와 유럽내 평화질서 창조를 위해 새로운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협상을 벌이고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보수당이 대 동구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안보분야에서 동·서 간 협력 가능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 공동안보이론에 입각하여 사민당(SPD)과 동독 공산당(SED)이 합의하였거나 협상을 벌였던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비화학무기 지대에 관한 합의
  - 1985. 7. 21 양측은 서독과 동독, 체코를 포괄하는 지대에서 화학무기를 철수시키며 생산을 금지하며 다른 나라로부터 반입을 금지하는 비화학무기 지대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
- 중부유럽에서 비핵지대화를 위한 비핵회랑(Atomwaffen freien Korridor) 건설 협상.
  - 양측은 1986. 10. 21 비핵회랑에 관한 기본입장을 협상을 통하여 밝혔음.
  - '82년 팔메 위원회(Palme Kommission)가 제시한 300km 넓이 지역에서 모든 핵무기-핵탄두 운반수단, 핵탄두, 재래무기 및 핵무기로 이중 사용 가능한 무기체계-의 폐기, 현대화 및 반입금지를 서로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음.
  - 이러한 회랑은 서독과 동독 및 체코의 국경선을 중심으로 양쪽 150km 씩 걸려 있음.

- “이념논쟁과 공동안보”(Der Streit der Ideologie und die gemeinsame Sicherheit)에 관한 원칙 합의.
  - 1987. 8. 27 서독 사민당의 정책위원회와 동독 공산당의 사회과학원 사이에 평화와 이념문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6개 항에 걸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음.
  - 서로 다른 체제의 정당 간에 이념상의 차이가 서로 존재함은 인정하면서도 원자무기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동·서 진영 간의 유일한 투쟁방법은 평화적 체제경쟁이라고 합의하여, 기존 평화공존론에 대한 수정으로 평가되었음.
  - 양측은 “평화공존과 공동안보라는 발상이 상호대립과 세계적으로 패권 및 우위를 추구하려는 노력들과 배치된다는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의했음.
  - 정치논쟁의 문화와 관련해서는 상호대립된 기본가치에 대한 해석에 있어 상대방의 존재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논쟁의 형태는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선전을 포기하고 체제경쟁에 있어 개방된 토론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 서독 사민당은 이 원칙들을 통해 동독 공산당에게 체제 간 경쟁의 궁극적 목적이 자본주의 파괴가 아니고 양측이 개혁을 통해서 서서히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동독 공산당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정치세력을 가진 두 국가가 독일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한편, 두 체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그 우수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선으로 이념논쟁을 후퇴시켰다는 점이 주목됨.
  - 그러나 이 합의서는 어떤 체제가 우월한가하는 문제를 미해결의 문제로 상정했고, 동독체제가 유럽인도주의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동독체제의 개혁가능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에서 당시뿐만 아니라 통독 후에도 보수진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 방어지대(Defensive Zone) 창설을 통한 재래무기 분야의 안정화
  - 이것은 재래식 전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선제기습공격을 한쪽편이 감행할 수 없도록 방어지대를 구성하여 불안정의 요소가 되는 무기를 그 방어지대로부터 철수하였거나 그 수를 줄이려는 방안임.
  - 이를 위해 중부유럽(동독, 서독, 체코)에 국경을 따라 각각 50km 씩 도합 100km의 비탱크지대를 설정하고, 아울러 MBFR 국가와 덴마크, 헝가리를 포함한 지역에 방어지대를 설정하여 그 지역에 배치된 공격용 무기-장갑차, 대포, 전투용 헬기, 전투기-를 완전 철수하든가, 일정한 최저하한선을 설정하여 그 수를 줄이려함.

서독 사민당과 동독 공산당 간 “이념논쟁과 공동안보”: 합의문 전문

(Der Streit der Ideologien und die gemeinsame Sicherheit)

I. 공동안보를 통한 평화보장

1.

우리는 인류가 공존할 수도, 또는 공멸할 수도 있는 세계사적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존과 공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이렇듯 기로에 섰던 선례가 역사상에는 일찌기 없었다. 이토록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서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 평화보장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정치사상이 필요하다. 핵무기 경쟁시대에 전쟁은 더 이상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으로 무장된 동맹체제 간의 전쟁이란 정치의 종말이자 모든 추구하는 이상의 파멸일 뿐이다. 이제 평화보장이 모든 책임정치 구현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군비를 강화하면서 군사적 대결과 우위를 추구하고 국제 정치의 헤게모니 장악에 집착하는 모든 정책은 이러한 평화보장 정책과 상충된다. 그러한 정책은 국제적인 긴장을 조성시키면서 국제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의 변화를 위해 평화의 공동보장 정책, 대화정책, 군축정책, 타협정책, 상호 이해 조정 정책, 협력정책, 긴장완화과정의 재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현재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대량 살상무기를 끊임없이 증대시키면 안보가 달성된다고 아직도 신봉하고 있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여 관철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변혁은 현 국제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 평화보장, 군비경쟁의 종식, 긴장완화는 양 체제의 관심사안이자 모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전 인류의 관심사이다.

-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 조직, 정당, 정부, 국가는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세계관적 이질성을 초월하여 늘어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더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다.

핵시대의 평화와 안보는 더 이상 정밀한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지속적인 정치행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동 · 서 진영 모두에서 늘어나고 있다. 무기의 질이 아닌 정치의 질이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좌우한다. 이러한 인식이 현실정치에서 실현되도록 모든 사람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2.

오늘날 평화는 대립적 군비경쟁이 아닌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공동안보와 동등안보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는 곧, 상대방의 정당한 안보이익을 함께 배려할 것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오로지 이렇게 해야만 군비통제회담과 진정한 평화 · 군축 이니셔티브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때 양측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국안보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국제안보체제는 군사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인도주의 분야 역시 망라해야 한다. 왜냐하면 군축, 대화와 신뢰구축, 공정한 국제경제질서의 구축과 국제문제의 공동대처, 기아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은 상호교호적으로 촉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인식에 오늘날의 평화공존과 공동안보개념이 그 근거를 두고 있다.

3.

새로운 양상의 인류파멸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관계 정치사상과 정치행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인류의 공동관심사로서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핵위협의 추방
- 생명의 보전과 인간존엄성의 보장
- 생태계의 유지와 환경위기 극복
- 기아퇴치, 제3세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궁핍의 제거와 부채 경감

이러한 정치사상과 정치행위의 목표는 유럽과 전세계에 걸쳐 공고하고 지속적인 평화체제의 확립이다. 평화체제는 정치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배제하고 군사적 무력수단-이 수단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한-의 동원을 방지하고 국가 간의 분쟁을 합의절차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로지 방어와 불가침 능력을 지향하는 군사독트린 역시 이러한 목적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목표는 평화적 경쟁,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상반성에 관한 비폭력적 논쟁, 상호 이익과 도움이 되는 협력과 같은 특징을 갖는 두 사회 체제 간 경쟁의 형태와 일치한다. 이제 양 체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상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

- 수단선택에 있어서 예측성, 공개성, 신중성
- 대화 · 신뢰구축 · 합의점 도달 · 불신과 공포심의 제거 ·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의 유지 능력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비경쟁의 역학구조에 제동을 걸고 군축의 역학 구조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II. 사회체제 간의 평화적 경쟁

1.

양 체제의 관계는 상호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통성, 일치성, 접근성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상충성이라는 특징도 동시에 갖고 있다. 질적으로 상이하고 적대적 관계를 갖는 사회 ·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가 병존하면서 상호 대립하고 있는 것이 국제관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오로지 평화가 보장되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조건하에서만 보다 나은 사회체제를 위한 논쟁은 허용될 수 있다.

2.

따라서 사회체제 간의 대결은 평화적 경쟁의 형태, 즉 무력사용이 따르지 않는 대결로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한 체제 내 · 외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만 한 체제의 장점을 다른 체제에게 보여줄 수 있다.

사회체제와 정치체제의 경쟁은 각 체제가 공통된 인류문제의 해결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인간성의 창달에 유리한 사회적인 조건을 창출하며, 동시에 인간에게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고, 그 가치와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기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각 사회체제는 평화의 보장, 환경위기 극복, 제3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 과학 · 기술적 진보에 대한 사회적 통제성 확보
- 생동감있는 민주주의의 전개, 상호연관성이 있는 사회적 · 정치적 · 개인적 제 권리의 실현과 계속적인 발전
- 후세대에게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와 생태,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형성

4.

사회체제 간의 경쟁과 협력은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비록 모순적일 때가 흔하기는 하지만-통일을 지향한다.

쌍방을 이롭게 하는 동서 간의 대등한 협력은 국제관계의 변화를 촉진시켜주며 유럽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 이는 70년대의 긴장완화 과정 중의 경험을 통해 실증되었다. 한편 긴장완화 과정의 진전은 정치, 경제, 과학 · 기술, 문화, 인도주의 등 제 분야에 걸친 국가 간의 협력가능성을 동시에 증대시킨다.

체제 간의 협력은 세계경제의 상호 분업 구조가 발달되고, 생산력의 발전이 국가 영역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며, 전 지구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첨예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체제 간의 협력과 국가 간의 협력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제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국제문제의 단계적 해결과 전세계적인 기아와 저개발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문화와 정보교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인류문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평화적인 협력을 하며 신뢰가 넘치는 선린우호관계가 형성된 유럽을 원한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모든 과정을 강화하는 것 역시 오늘날 이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양 독일은 그 역사적 의무와 지정학적 위치에 부응하여 이에 기여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5.

오늘날, 대립적인 체제 간의 군축과 평화적 경쟁을 통한 적극적인 평화보장 정책에 필적할만한 합리적 대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이, 심각한 장애에 봉착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경쟁과 협력의 정책은 대립적 사회구조와 양 체제 존립의 제 원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군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행되는 체제경쟁은 양 체제의 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가속시킬 것이다.

Ⅲ. 정치논쟁문화와 대화문화의 필요성

우리 독일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시대의 평화가 더 이상 대립적 군비경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로부터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통인식이 도출된다.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공히 유럽의 인도주의적인 유산을 승계하고 있다고 표방하고 있다. 양측은 이러한 유산을 계속 유지하고, 인간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해 나갈 것을 각 체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70년이나 이러한 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쓰디쓴 논쟁을 벌이면서 살아오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양측이 동일한 개념을 상이한 내용으로 연계시킬 때가 잦아 더욱 심화되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를 서구 민주주의의 일부라고 이해한다. 그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분립과 권력통제가 따르는 다원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가 유사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호되어야 하는 구속력있는 골간이며, 그들은 이러한 범위내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는 그 본질상 중요생산수단의 독특한 소유관계를 통한 권력행사의 형태로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정치권력으로서 특징지워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주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권으로 이전과 다른 근로자들과 연대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권력 쟁취가 곧 광범한 민주적 권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그들은 민주주의를 경제와 사회를 주도하고 형성하면서 이를 통제하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공동작업이라고 이해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인권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로서, 여하한 형태의 경제적, 국가권력으로부터도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권은 기본권으로서 국가활동의 기준이자 목표이다. 이러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기본권과 기본가치의 기초 위에서만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과 평등한 생존과 교육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소유권의 사회화, 그리고 이에 연계된 정치적 권력관계를 통해 인간의 계발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기초를 창출해야 한다고, 자신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안전보장, 완전고용, 사회정의, 만인을 위한 현실적 교육기회와 같은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한 절대적인 기초이다. 그들은 인권의 실현은 사회체제와 경제체제의 계속적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는 문화, 학술, 예술, 정치적 여론 형성에 있어 생동감 있고 긴장감이 넘치고 단절되지 않는 다원주의가 양보할 수 없는 자유의 표현이고 인간을 개발시켜 주는 민주주의의 선결조건임과 동시에 그 결실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사회만이 그 본질상 사회발전과 과학 · 기술의 발전을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시킬 수 있으므로 인간이 매사에 중심이 되어야지 장외로 밀려나서는 안 되며, 모든 인간의 창조성, 그 독창력과 사상의 풍요성이 다양한 관심과 욕구의 실현을 촉진하고 조성할 능력이 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기본문제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쪽과 저쪽의 이론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마저 없지 않다. 이토록 대립적인 기본 입장에 관한 논쟁은 타협의 형태나 물론 평화의지에의 호소를 통해서도 끝나지는 않는다. 비록 다른 형태의 기본원칙이 소멸되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입장에 관한 논쟁이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각각 상대방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적대감을 갖지 않으며, 상대방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념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대표를 비방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시킬 수만 있다면 생산적인 체제 간 경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양측은 그 체제의 능력과 성공, 무능과 실패여부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반대로 완전 고용과 만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보장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이 국가와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연계되어 있으며 젊은이에 대한 교육과 안전한 미래보장 등 내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위험성을 부인하지 않는 가운데,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 사상과 해결방안의 자유로운 경쟁만이 곧 새로이 발생한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적정한 해답이 모색되도록 해 주며, 고도의 생활의 질을 달성할 새로운 기술적 발전 가능성을 부여해 주며, 경제적인 권력가들의 권력남용에 대처하는 대응세력이 동원되도록 할 수 있게 해주며, 다가오는 필연적인 변화에 대하여 대중다수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도록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서구 민주주의적인 헌법구조상 국민적 합의과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정치세력과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다른 경쟁세력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많은 문제해결에 있어 서구 민주주의를 대표하여 그것을 옹호한다. 그러나 다른 정치세력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체제 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화에 참여해 준다면 환영할 일이다.

IV. 정치논쟁문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우리는 평화가 곧 우리 각자의 가치와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조건이고, 평화 보장을 위한 협력은 이러한 가치의 부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되었다. 즉 우리의 견해가 일치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논쟁을 계속해야 할 다른 문제도 있다. 우리는 합의와 갈등의 긴장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대결의 형식과 내용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1.

양측은 장기적으로 그들이 병존하고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긴 시간을 상정해야만 한다.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의 생존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제거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각 체제가 개혁능력이 있고 체제 간의 경쟁이 양측의 개혁의지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즉 공존과 공동안보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

2.

양측은 상호 평화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동구측이 주장하는 서로 다른 질서를 가진 국가 간의 평화공존 방안과 서구측의 주장 중, 특히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구상인 공동안보방안은 진지한 것으로서 각 방안은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평화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상대방의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방의 평화능력 부재를 가정하게 된다면 이 두 방안은 이론적으로 무의미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실현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양측은 성공적인 평화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비록 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시대에는 평화보장에 관해 상대방이 진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해야만 한다.

3.

양측은 팽창주의, 즉 무력적 팽창주의를 추구한다는 인식이 상대방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체제는 상대방의 이해관계의 구조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해 영향권 확대와 지배권 확대에 전력하고 있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 역시 자본주의식 상품생산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과 독점에 관한 레닌의 분석을 통해, 또한 서방측의 반공전략과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통해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동안보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이러한 공포심을 제거시켜야 한다. 또한 양측은 그러한 공포심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4.

평화의 공동보장을 위한 과정에 비록 조약, 합의, 제도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독일 사회주의통일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은 논쟁의 문화와 대화문화가 전개될 것을 지지한다. 이러한 정치논쟁문화는

- 양측이 갖고 있는 가능수단의 현실적 분석에 근거해야 하며,
- 사회정책적 대립성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하되,
- 이를 국가 간의 관계에 이전시키지 말아야 하며,
- 무력이나 전쟁을 분쟁해결 수단으로부터 배제하고 경직된 대결구도를 초월해야 하며
- 이로써 평화에 기여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무력사용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측은 이러한 문화를 위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호대화의 기준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양측의 기본가치가 동등하게 통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양측의 분명한 의도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 상호대화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생겨난다.

5.

한편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한편에서 자세가 평화지향적이 아니고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지 않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솔직하고 분명한 비판을 하는 가운데서만 우리가 서로 함께 활동하면서 협상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협력과 경쟁과 분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상호대화의 형태가 모색되어져야 한다.

6.

체제 간의 관계에서는 논쟁, 경쟁, 협력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질 수만은 없다. 협력하는 가운데 경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류의 기본적 권익 중에는 평화 이외에 생태계의 보존, 제3세계의 기아와 참상의 극복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동서 진영은 광범위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각 체제가 인류의 커다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함을 전제로 한다. 협력하는 가운데 경쟁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V. 정치논쟁문화의 기본규칙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논쟁문화는 몇 가지 설정된 기본 원칙적 기준과 규칙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정치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규칙은 상이한 사회질서내에서 사회적 · 정치적 세력들의 국가간 행위를 통해 그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배울 능력을 갖고 있을 때에야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논쟁 문화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을 성문화해 볼 수 있다.

1.

사회체제는 정지상태에 있지 않다. 사회체제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그 자체 토대 위에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사회체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는데 변화와 발전과 개혁이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체제 간의 경쟁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미래의 사회질서는 현재의 사회상과 매우 다르게 될 것이다. 양 사회질서는 서로 발전과 개혁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

그 어느 누구도 상호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평등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명한 비판이나 공격적 표현을 할 권한이 없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최종 선언에 열거된 “주권 평등성”은 긴장완화 방안의 정신적 논쟁과 관계된다. 상호 간의 비판과 협력을 모두 배제해서는 안 된다.

3.

다른 체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은 차후 검증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의도를 무조건 찬양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방 활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비판은 우선 상대방의 논리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는 시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해보는 사람에게는 공격성 트집잡기식의 논쟁에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4.

정치논쟁의 새로운 문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총괄적으로 적대감을 조장하거나 위협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현실상황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비평화적이라든가, 평화능력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은 일체 피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 유지 노력을 위한 자세는 양측이 모두 지역분쟁을 방지하고 종식시킴에 더욱 전력하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를 조장하지 않을수록 더욱 신뢰성을 갖게 된다.

5.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다른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날카로운 비판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반박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이든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요구할 권한이 어느 쪽에도 없다는 "주권평등"의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

6.

체제 간의 경쟁, 체제의 성공과 실패, 체제의 강점과 취약점에 관한 공개적 토론이 각 체제 내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진정한 경쟁은 이러한 토론이 촉진되고 현실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 오로지 양 체제가 실천과 경험에 관한 비교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때에만, 실책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것을 계속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인수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7.

동 · 서 진영의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평화보장 과정과 체제경쟁 과정의 의의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를 위해 양 체제의 국가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선언 정신에 부응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 다른 회원국의 정기간행물과 비정기간행물과 인쇄매체의 보급이 용이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8.

양측의 사회조직, 기구, 사회세력, 인간간의 대화는 평화보장과 체제간 경쟁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에는 체제의 국경을 초월한 방문과 답방, 세미나 학술회의 문화행사의 참석 역시 포함된다.

VI 새로운 사상, 새로운 행위

공동안보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양국관계를 해치는 형태를 취하거나,

해독을 끼치거나, 심지어 체제 간 권력적 갈등이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선과 악 간의 투쟁형태를 취하여서는 달성될 수 없다.

공동안보에는 다른 국가의 정치현실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안보는 체제 간의 평화적 경쟁, 공동개발된 규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쟁, 정치논쟁문화, 그리고 건설적 대화문화를 포괄하고 있다.

이것이 곧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이 공동으로 밝히는 평화보장정책에 부응하는 것들이다.

1-6-5. 녹색당(Die Gruenen)과 동독 정당들 간 대화

○ 서독의 정당 중 1980년대에 원내에 진출한 녹색당만이 유일하게 동독의 공산당이나 위성정당들과 당 창립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공통성이 존재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정책결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녹색당은 동독 공산당과 대화를 모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더구나 녹색당은 대동독 정책,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당내에 현실 정책적인 입장, 민족정책적인 입장, 운동권적인 입장 등 시각이 다양해 동독 지도부로서도 녹색당을 수권능력이 있는 신뢰할만한 대화의 상대로 보지는 않았음.

○ 녹색당은 서독 원내진출 정당 중 유일하게 동독의 독자적인 국가성을 인정하여 동독과의 외교수립 및 독일민족국가 형성의 포기, 동베를린의 동독 수도 인정, 동독의 군축정책 지지 등을 주장하는 당이었지만, 그 성격상 제도권내의 원내활동과 병행해 사회변혁 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에 동독공산당으로서는 이들과 동독 사회내 반체제 세력과의 제휴를 우려하여 이들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회피하여 왔음.

- 서독 녹색당은 동독내에서 70년대 중반 이래 신교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평화운동단체, 환경보존운동단체, 제3세계 연대운동단체 그리고 민권운동단체들과 연대와 접촉을 모색했기 때문에 동독 지도부로서는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며, 이들이 동독내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했음.
- 동독 공산당은 Honnecker가 1980. 10 내독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건 "Gera의 요구"(동독국적인정,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사관으로 승격, Salzgitter 소재 Erfassungsstelle의 철폐, Elbe강 하천 중앙선의 동·서독 국경 인정)를 녹색당이 서독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지지하고 나섰을 때는, 동독 SED가 이를 환영했지만, 녹색당이 현 동독공산독재체제의 정치적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그것도 직접 운동의 형식을 통해 행동으로 부인하는 한 이들과의 대화는 거부되었음.
- 녹색당 간부들의 초창기 동독 방문은 시위방문으로 시작되었는데, 1983. 5 Petra Kelly 등 서독 녹색당 대표들이 동·서 진영 간 군축을 지지하며 동독내

반체제 단체와 평화시위를 벌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동베를린에서 시위를 목적으로 한 녹색당원들의 동독여행은 허가되지 않았음.

○ 그 이후 녹색당은 시위참가를 통한 운동권적 접근방식을 버리고 제도권내의 채널을 통해 동독측과 대화를 모색했음.

- 1985년에는 녹색당 소속 여성의원단이 동독 의회를 방문, 환경·평화·인권·안보정책, 특수폐기물의 서독에서 동독으로 처리문제, 외국인 망명자 문제 등을 논의했음.
- 1986. 9에는 동독 인민의회 의장이 녹색당 의원단을 초청하였는데 녹색당이 표명한 동독 정당들과 대화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음.
  - 동독측과의 대화는 제도권내 공식적인 대표들뿐만 아니라 동독 체제내 평화·환경 운동권 단체들과 병행하여 추진됨.
  - 동독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화는 이를 통해 동독내 운동권 그룹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녹색당은 동독을 근본적으로 평화운동의 동맹자로 보지는 않으며, 동독과의 공동보조는 "이성의 연합"(Koalition der Vernunft) 형식을 취한 군비경쟁에 반대하는 정책의 일환임.
  - 동독의 환경보호정책은 많은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음.
  - 녹색당의 동독과 대화의제는 평화·환경보호문제뿐만 아니라 양독관계의 새로운 형성, 인권보호 및 민주주의 문제까지 포괄해야 함.

○ 녹색당 현실론자들과 SED 지도부 간의 접촉과 대화는 동독의 국제법적 승인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견해의 일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부 차원의 양독관계 분위기에 크게 좌우되었음.

1-7. 서독 내 공산당의 활동과 서독 정부 대응

1-7-1. 통독 이전 독일내 공산당 현황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7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공산당은 KPD, SED, SEW, DKP 등 4개의 주도적인 정당 형태로 존재하였음.

- 최초로 KPD(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독일공산당')가 Rosa Luxemburg와 Karl Liebknecht의 주도하에 1919. 1. 1 창당되었음.
  - KPD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소비에트식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고, 1919년 코민테른에 가입했으나, 초기에는 소련 공산당과는 독립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음.
  - Ernst Thealmann이 당권을 잡은 1925~1933 동안 KPD는 스탈린주의를 신봉하며, 소련공산당에게 전적으로 예속되었음.
  -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는 KPD의 당원이 30만명에 이르렀고, 600만명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대중정당이었음.
  - 히틀러 집권시 KPD는 철저한 탄압을 받았는 바, 당원 30만명 중 15만명이 구금되었고, 그 중 2만명이 살해되었음.
  - 전후 1945. 6. 11 KPD는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한 공화국 창설에 찬성하며 소련공산당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나, 소련점령지역하의 KPD는 소련점령군에 의해 SPD와 강제로 합병되어 SED(Sozialistische Eingeitspartei Deutschland: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라는 이름으로 동독공산당이 됨.
  - 서방점령지역 KPD는 합병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당으로 존재했으나, SED 중앙위원회의 조종을 받았음.
  - 서독지역 KPD는 첫 서독연방의회 선거에서 5.7%를 득표하여 15명의 의원을 원내에 진출시켰으나, 두 번째 선거인 1953년에는 2.2%의 지지에 그쳐 의회진출이 좌절되었음.
  - 1956. 8. 17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고, 정당활동이

금지될 때까지 KPD는 동독공산당 SED의 조종을 받으며, 서독내에서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서독체제 전복활동을 해왔음.

- 정당활동이 금지될 당시의 KPD 당원은 7만이었으나, 1968년 DKP로 서독내 공산주의세력이 재규합 될 당시 서독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한 KPD 당원 수는 약 7천명 정도로 추산되었음.

– 동독공산당인 SED는 1946. 4. 소련점령지역 SPD(당원 비율 53%)와 KPD(당원 비율 47%)를 강제로 통합하여 창당되었으며, 1971년까지 Walter Ulbricht, 그 이후부터 통독시까지는 Erich Honcker가 당서기장으로 당을 주도함.

- 창당 당시 당원 수는 130만이었으나, 소련 군정 기간 동안 계속 늘어나 1948년에는 200만(전체 성인의 16%)에 달했으며, 1988년 당시 약 230만이었음.
- 동독에서 대변혁 이후 1972년부터 당서기장이었던 Erich Honnerk가 사임하고(1989. 10. 18), 당 명칭을 SED/PDS(사회주의통일당/민주회주의당)을 거쳐 PDS(민주사회당)로 바꾸고, 당 강령도 수정하여 민주적 다원주의 틀 안에서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 사회주의 정당으로 변신하였음.
- 그러나 통독과정에서 구동독 주민들이 SED와 그 후신인 PDS를 외면하였고, 통독 이후에는 구동독지역에서 일부의 지지만 받고 있는 지역정당으로 전락하였음.
- 당원수가 통독 이후 23만('91. 6 현재)으로, 분단시에 비해 1/10로 감소했으며, PDS 당원 중 97%가 구 SED 출신이며, 신규가입당원은 3%에 불과함.
- 통독과 관련한 주요 선거에서 지지율은 구동독 자유 총선거에서 16.3% 최초 전독총선시는 독일 전체에서 2.4% 구동독지역에서는 11.15%의 지지를 얻었음.

– SEW(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Westberlins: ' 서베를린 사회주의 통일당') 은 SED의 서베를린 지구당 형식으로 존재하다가 1959. 4. 26에 독립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1962. 11. 24 독자적인 정관을 채택하였으며 1966, 제1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였음.

- SEW는 이념적으로나 독일정책 추진면에서 SED와 똑같은 입장을 취했음.
- 당원은 약 7,000명이었으며, 1971년 서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는 2.3%, 1981년 선거에서는 0.7%의 지지를 얻었음.

– DKP(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독일공산당')는 KPD 잔류당원과 좌파 청소년층을 망라하여 Kurt Bachmann의 주도하에 1968. 9. 26 창당되었음.

- 1969. 4. 12 제1차 전당대회시 2만 2천명의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학가와 공장 내에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으나,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는 받지 못했으며, 의회진출도 좌절되었음.
- 1972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0.3%, 1976년에 0.3%, 그 이후에는 0.2%의 지지를 확보했음.
- 노선은 창당당시 동독공산당인 SED를 "도식적으로 모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재정적으로 SED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SED와 소련공산당의 노선을 거의 대부분 추종했으며, KPD의 전통에 따라 유로코뮤니즘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음.
- 80년 초 서독에서 창당된 녹색당의 환경·평화운동그룹에 좌파 진영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DKP는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음.
- 소련에서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 SED의 노선에 따라 DKP도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을 비난하면서 당내 민주화를 통한 자체개혁을 거부한 채, 스탈린주의적인 당 운영을 계속하다 통독과 더불어 그 세력은 거의 와해상태에 이르렀음.

1–7–2. 서독에서의 KPD(독일공산당)의 불법화

○ 1950년부터 조직을 갖추기 시작한 서독의 국내 보안기관들(연방 및 주의 헌법보호청)은 소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freig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위협하는 극우·극좌 적대세력을 척결해 나가기 시작했음.

- 연방정부(내무성)는 1950. 9(한국전쟁 직후) 13개 극우·극좌 조직의 회원들은 공공기관(공무원, 계약사무직, 일반노무직으로)에 종사할 수 없다고 선언했음.
  - 11개의 극좌단체에는 KPD, FDJ, Kulturbund zur demokratischen Erneuerung Deutschlands, VVN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극우단체는 Sozialistische Reichspartei와 Schwarz Front 등임.
  - 서독의 공공기관 노조(OeTV)는 이러한 연방정부 결정을 수용했으며, 당시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각 주정부 이하 지방자치 단체도 이러한 결정에 따랐음.
- 1951. 7 서독 상·하원은 제1차 형법개정령을 의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위해죄'(Staatsgefaehrdung §80 StGB)를 신설했음.
  -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적 기본원칙으로는 다음 6가지가 열거되었음.
    - » 국민은 선거 또는 국민투표 형식으로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대표를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할 권리를 가짐.
    - » 입법은 헌법적인 질서에 기속되며, 행정과 사법은 법과 법률에 기속됨.
    - »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반대당이 결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 정부는 의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
    - » 법원은 독립성이 보장됨.
    - » 모든 자의적인 폭력 지배는 배제됨.
  - 이 '국가위해죄'는 기존의 '헌법상 반역죄'(Verfassungsverat, § 89 StGB)와 함께 1956년 KPD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불법화될 때까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음.

○ 1951. 11. 22 연방정부(내무성)는 연방헌법재판소에 KPD(독일공산당)의 위헌심사를 요청했는데, 이 재판은 57개월간이나 진행되었으며, 1956 .8. 17 연방헌법재판소는 KPD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연방정부는 1951. 11. 19 극우단체인 Sozialistische Reichspartei에 대해서도 그 단체 활동상의 위헌 여부를 제소했는데, 이 극우단체는 11개월만인 1952. 10에 위헌판결을 받았음.

- KPD에 대한 위헌판결이 지체된 이유는 KPD재판이 전승 4대국의 독일전체에 대한 책임 및 독일통일문화와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 당의 강령이나 활동이 서독의 헌법적인 기본질서에 분명 어긋나지만, 당시 세력면에서 미미하여 당장 체제유지에 커다란 위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KPD의 불법화가 국제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독일통일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연방정부에 상기시키며 충분히 검토해야 하였기 때문임.
  - KPD는 독일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4대 전승국에 의해 정당활동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KPD활동을 서독에서 금지시키는 것은 차후 독일통일문제와 관련, 서독측이 오히려 난관을 조성하고, 분단고착화를 지향한다고 소련과 동독측으로부터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이 문제가 국제적인 선전에 이용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당시 아데나워 수상은 철저한 반공정책과 서독의 전독 단일대표권(Alleinvertretungsanspruch) 입장에 의거하여 KPD 위헌 판결을 강력하게 요구했음.

1956. 8. 17자 연방 헌법재판소의 KPD 위헌 판결문 요지

-I-

1) KPD는 위헌적(Verfassungswidrig)인 정당임.

2) KPD는 해체되어야 함.

3) KPD의 대체단체를 결성하거나, 기존단체를 대체단체형태로 존속시키는 것은 금지됨.

4) KPD의 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연방정부에 귀속시킴.

－Ⅱ－

각 주 내무성은 상기 1)~3)까지의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을 위임받음.

각 주는 모든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이러한 판결과 관련한 지시를 내려야 함. 재산의 귀속문제는 연방내무성 장관에게 위임하여, 각 주 내무장관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음.

－Ⅲ－

고의로 이러한 판결내용에 반대하거나 판결과 관련한 처분조처에 대해 반대할 경우 연방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2조에 의해 최하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함.

○ 판결 이유서는 전 425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나 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 첫 번째 부분은 포츠담협정과 기본법상의 통일명제(전문과 제146조)가 기본법 제21조 2항(위헌정당금지조항)에 의거 KPD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KPD의 주장에 대한 연방 헌법재판소의 반론임.

• 우선 전승 4대국이 합의한 포츠담 협정상 규정된 '민주주의'(Demoktarie)는 단지 나찌주의에 반대하는 소극적인 개념만을 포괄하고 있으나, 서독기본법은 이러한 포츠담 협정상의 소극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에 덧붙여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을 헌법상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그 민주주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주장함.

•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하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민주주의 개념에 의거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해하려는 정당들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KPD에 대한 위헌심사의 정당성을 밝힘.

• KPD의 금지는 독일통일에 대해(전체 독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전승 4대국의 합의위반임으로 장차 독일통일이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KPD의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통일문제가 국제법적인 문제인 만큼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전승 4대국의 결정사항들이 서독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KPD에 대한 위헌심사와 그 정당활동 금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효력을 미치는 서독지역내의 국한된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차 전승 4대국과의 동의하에 추진될 독일통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함.

» 당시 연방정부와 의회는 통일은 전독자유총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장차 전승 4대국의 동의하에 제정될 전독총선을 위한 선거법이 KPD의 선거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당시 KPD 위헌결정과 KPD의 전독총선에 참여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KPD의 위헌결정이 독일통일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KPD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임.

• 전체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자유와 통일을 성취한다는 기본법 전문과 146조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독일통일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목표로서 이러한 통일을 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치를 금지시킬 것을 명하고 있다고 해석함.

»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과 아울러 내적·외적인 자유의 확보가 불가결한 바, 자유민주적인 기본법 질서에 위배되는 KPD 활동의 금지는 새로운 통일된 독일의 헌법 창출에 기본전제조건이 되는 서독내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적인 질서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이므로, KPD의 금지가 국민의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KPD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함.

• 헌법재판소는 결국 KPD가 추구하는 목표인 서독내에서의 공산주의 실현과 공산주의에 의한 독일통일은 부정하며, 서독 기본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하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서만 통일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음.

– 두 번째 부분은 KPD의 목표, 행동강령, 당원들의 활동이 구두심리와 증거제시를 통해 어떻게 위헌적인가를 밝히고 있음.

• 연방 헌법재판소는 구두심리과정에서 KPD의 대표도 인정했듯이 KPD의 궁극적인 목표가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통해 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 사회질서를 건설하는데 있는 바, 이러한 목표와

수단이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양체제는 한편이 다른 한편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결함.

- 오직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원칙만이 통용되는 국가질서하에서는 기본법의 본질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보장은 실현할 수 없다고 판결함.
  - » 사회복지적·법지적 민주주의, 다당제도, 반대당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사상의 자유, 관용성, 다른 사상·신념의 용인 등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반대되는 국가질서라는 것임.
- 연방 헌법재판소는 KPD가 목표실현을 위해 급진적인 수단을 통한 일정계급의 독재를 실시할 경우 자유주의적인 질서는 파괴되고, 주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억압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해 현재 서독에서 당원교육, 선전·선동, 정치투쟁을 벌이는 방법과 수단들을 총체적으로 심사해 볼 때 기본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판시함.
  - » 특히 연방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KPD의 구체적인 강령으로서 1952년의 "Programm der nationalen Wiedervereinigung"을 제시했음.
    - 그러나 연방 헌법재판소는 학문상 이론으로서(als Lehre)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음.

○ 연방정부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KPD가 제소된 1951부터 1958까지 서독에서는 80개의 정치단체들이 KPD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약 3,000명의 공산주의자 또는 동조자들이 구속기소되었음.

1-7-3. DKP의 창당 및 활동과 서독정부 대응

○ 1968. 9. 22 독일공산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새로운 창당에 대한 찬·반양론이 내부에서 전개된 가운데 동독공산당인 SED 지도부의 제안으로 소련공산당과 동베를린에 형식상 존재하던 KPD 중앙위의 동의하에 DKP를 창당하였음.

- 창당에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서독정부의 합법화조치는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는 전제조건을 수락할때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서독내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했음.
  - 실제로 DKP 창당맴버였단 Kurt Erlabach는 Spiegel지와의 인터뷰('68. 10. 21)에서 창당 직전에 서독정부(내무성 및 수상실) 관계자와 DKP의 향후활동에 관한 의견조정이 있었음을 시인했음.
  - 반대자들은 새로운 당을 재창당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불법화되었던 KPD의 부활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서독정부를 '비민주적'이라고 국제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했음.
- 창당에 찬성했던 파들은 서독 제도권 정당 중에는 노동자의 권익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도권내 정당을 결성하여 이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
  - 당시 학생운동세력을 중심으로 의회 밖에서 체제반대투쟁을 벌이던 재야세력(Apo; ausserparlamentrische Opposition)을 조종하고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정센터로서 새로운 공산당의 설립에 대해 SED와 소련공산당의 이해가 일치되었음.
- 어쨌든 사민당 정부의 새로운 동방정책 준비과정과 독일공산당의 합법성복구를 의미하는 DKP의 창당은 당시 국내정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연관관계에 있었음.

○ DKP는 KPD와는 달리 그의 기본정강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공산당의 영도성에 관한 명제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

- KPD는 서독정부에 대해 '반동적'(reaktionaer), '권위적'(autoritaer), '반민주적인 권력지배형태'(demokratiefeindliche Herrschaftsform) 등의 극한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비방했으나, DKP는 공식선언문에서도 상당히 유화적인 자세를 견지했음.
  - 특히 궁극적인 독일문제의 해결, 권력쟁취의 방법, 동독에 대한 관계설정문제에 있어서 KPD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음.
- DKP는 국내정치적으로는 장외 재야단체인 APO의 입장을 그대로 지지했으며, 대외·통일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동독공산당(SED)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음.

- DKP는 KPD가 그랬던 것처럼 SPD 좌파 및 APO와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의회내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 대외적으로는 서독 단독대표권의 포기, 동독과 내독 간 국경의 승인, 핵무장의 반대, 군사비 축소, 유럽안보체제의 형성, 동·서독 간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조약체결 등을 요구했음.
- 특히 APO 그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조했으며, SED를 '도식적으로 모방'(eine schematische Nachanhung)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음.

○ DKP는 창당 당시 SED를 정강정책에서도 모방하지 않으며, SED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지만, 당의 조속한 재건과 활동을 위해서는 서독지역에서의 당비나 헌금으로만 충당할 수 없었고 SED에 많이 의존해야 했음.

○ DKP 당원들의 활동에 대해 서독정부는 당시 국제적인 화해무드와 브란트정부의 신동방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50년대 KPD에 대한 대응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형법적용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한)는 취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임용시 DKP 당원들을 배제하는 행정적인 규제를 가했음.

- 특히 DKP는 일반학교와 대학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당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교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공무원법(oeffentliche DIenstrecht)을 적용, 이들을 채용하지 않거나, 기존인력을 해고시켜 나갔음.
- 특히 사민당은 당시 보수당(기민/기사)측으로부터 그들의 신동방정책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용만 당한다는 비난을 국내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던 주의 각 주정부부터 먼저 '극렬주의자'(주로 DKP 당원을 겨냥한)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직업금지'(Bertfsverbot)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음.
- 1971. 6. 브레멘 주정부는 Horst Holzer라는 사회학 교수를 그가 DKP 당원이라는 이유로 브레멘 대학에서 채용하지 않았으며, 이어 브레멘 행정법원은 이러한 주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Horst Holzrt의 행정처분 무효 소송신청에 대해 그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

- 브레멘 행정법원은 그 판결이유로 DKP의 1969년 창당원칙 선언서(Grundsatzerklaerung)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옹호하고 있고, 이것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

- 이어 1971. 11. 23 함부르크 주정부는 공무원 임용시의 원칙과 관련한 지침에서 "특히 교육분야의 공무원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극우·극좌파 단체의 회원은 임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으며, 그 지침 이후 DKP 당원은 국가시험은 치루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았음.

- 연방정부는 각 주별로 취해지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를 통한 직업상 차별조치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72. 1. 28 연방수상과 각 주정부 지사회의를 통해 공동결의안을 마련하였음.
  -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독 헌법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는 자들은 공직에 임용될 수 없음. 반헌법적인(Vergassungsfeindlich)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에 가입된 자들은 그 단체에 가입 사실 자체가 그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도록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에 기초하여 서독정부는 이러한 자들의 공직임용을 배제할 수 있음"이었음.
  - 이 결의안은 "반헌법적인" 단체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단체가 "반헌법적인"지는 행정부 특히 헌법보호청(Vergassungsschutz)에 그 판단을 위임하였음.
  - 따라서 정부내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그들의 전력과 관련 "반헌법적인" 단체 소속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신원조회(Regelanfrage)를 해야만 했음.

- 이러한 서독정부의 공직에서 직업상 차별조치에 대해 DKP는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KPD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계속 유효한 가운데 DKP 마저 위헌심사를 받을 우려가 있어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음.

1-8. 동·서독 간 간첩사건 처리

1-8-1. 동독의 대서독 간첩활동과 서독정부 대응

○ 70년 초부터 시작된 서독정부의 대동독 긴장완화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동독정부의 서독에 대한 간첩활동은 줄어들거나 그치지 않았음.

- 연방내무성산하 헌법보호청(Vergassungsschutz) 1976 연례보고서는 동독은 서독의 긴장완화정책을 역이용하여 인정·물적 왕래에 편승, 간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함.
- 동독측은 첩보활동자체를 동·서체제 간 경쟁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였음.
  - 그들의 "평화공존" 논리에 의하면 국가 간 대화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과 자본주의국가와의 이데올로기적 공존은 불가능하므로, 그들 이데올로기 관철을 위한 투쟁의 도구로서 첩보활동을 계속 강화함.
- 동독측이 인적·물적·정보교류가 어느 정도 실현된 이후에도 첩보활동을 지속한 이유는, 동구 공산권지도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기인하기도 함(헌법보호청장 Meier의 말).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많은 정보가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개된 자료를 믿지 않고 첩보원을 투입시켜 정보를 검증케 하려는 불신감에 원인이 있기도 하였음.

○ 동독의 대서독 간첩활동은 국가보위부(Stasi) 산하 중앙정찰국(Haupt-verwaltung Ausklaerung)에서 담당했는데, 헌법보호청은 기욤사건이 발생한 74년 당시 약 11,000명의 동독간첩이 서독에서 암약한 것으로 추산했음.

- 동독의 서독에 대한 첩보활동 대상은 크게 5개 분야에 걸쳐 있었음.
  - 연방정부, 주정부, 각 정당 및 사회단체 및 서독재외공관에 대한 정치적인 첩보활동.
  - 국방성 및 군사시설과 서독주둔 나토사령부에 대한 군사첩보활동.
  - 핵연구시설, 전자산업, 컴퓨터산업, 항공산업 및 군수산업에 대한 산업첩보활동.
  - 대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학원첩보활동.
  - 동독으로부터 온 피난민, 합법이주자들이 기거하는 임시수용소와 정착지 그리고 동독출신 향우회 등에 대한 동독출신 대상 첩보활동.
- 동독은 '62년 처음 서독으로 이주를 합법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소수에 불과하였고 이주신청이 기각된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서독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진 다음부터는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첩보활동이 강화되었음.
  - 동독 첩보기관은 탈출한 피난민을 서독으로부터 강제로 납치하여 송환한 후, 탈출방조자와 탈출 경위 등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또는 일부러 일정한 동독인을 탈출하게 하여 놓고 이를 추적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었음.
  - 또한 합법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첩보활동에 이용한 사례가 많았는데, 특히 취업연령에 속하여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들에게 이주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서독에서 정보수집활동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음.
  -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서독으로 탈출한 것으로 가장한 간첩들은 서독에서 장기간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대공당국의 관심이 없어질 즈음 애초에 의도했던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전을 펴는 간첩(Perspektic-Agenten)이 많았는데, 기욤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 또한 서독 주민들 중에서 동독에 있는 친척이나 배우자, 약혼자들의 서독이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독 첩보기관에 대한 일정한 반대급부가 없으면 관계인들의 이주자체를 성사시켜주지 않거나, 동독으로의 방문여행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음.

○ 서독정부의 대간첩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기본법에 따라 모든 (동·서독) 독일인에게 완전 자유왕래를 보장했으며, 기본조약체결 이후 특히 양독 주민들 간의 인적교류를 적극 장려했기 때문에 동독 간첩의 침투와 왕래가 자유스러웠음.
- 간첩사건에 대한 양측의 형사처리기준(법죄구성요건과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1968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인도적인 견지에서

간첩교환가능조항을 법제화했는데, 동독측이 서독측의 이러한 정책을 악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 서독측은 1962년부터 동독측과 교섭을 통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상호 간첩교환을 허용해했는데, 의회에서 모든 당의 지지하에 1968년 형사소송법 153조 C항을 삽입하여 간첩교환의 법적기초를 마련함.
- 동법률에 의하면 검거된 간첩에 대한 형사소추는 만약 “이러한 형사소추로 인해 서독정부에 심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이익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결우에 한하여”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고 되어있음.
- 동독의 간첩들은 이러한 서독측의 입장을 악용하여 간첩활동을 하다가 잡히더라도 교환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별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고 활동했는데, 실제 법개정 직후인 1970년에는 동독간첩의 숫자가 1년만에 30%가 증가했다고 헌법보호청은 밝히고 있음.
- 동독측은 또한 서독간첩검거시, 서독에서의 형량과 비교가 안될만큼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또한 범죄구성요건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간첩교환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 하였음.
- 서독측은 동독측에 검거된 간첩에게 종신형 또는 사형을 내리는 사례가 잦아지고, 수감자들이 열악하고 비민주적인 행형시설하에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동독측이 제시하는 교환조건을 수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교환의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절대비밀이 보장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연방정부기관이 참여하여 협의하였음: 수상실, 법무성, 내무성, 내독관계성, 대검, 정보기관.
- 기욤사건의 경우 기욤은 1975년 서독에서 1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1976년 동독측은 기욤과 동독에서 검거된 40명의 서독간첩을 교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제의 이후 동독탈출 방조자와 간첩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재판이 행해져 그 수를 채워 기욤과의 교환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음.

1-8-2. 기욤사건에 대한 서독정부 대응

○ 기욤(Guillaume)은 Stasi HVA 소속 대위였으며, 체포 당시 수상실에 근무하며 브란트 수상의 사민당(SPD) 담당 개인 비서였음.

○ 기욤간첩사건이 발표된 74. 4. 25 당시는, 기본조약 체결 이후 그 후속협약과 조치들이 양측 간 합의되어 화해분위기가 고조된 시점이었음.

- 74. 3. 14에는 상주대표부설치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되었고, 이에 따른 상주대표부 업무개시와 상주대표부 대표의 신임장 제정 일정에 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었음.
  - 당시 모든 실무협상채널은 서독수상실장관 Gaus(초대 상주대표부 대표)와 동독 외무차관 Nier 간에 일원화되어 있었음.
- 또한 비상업적분야에서 지불교류(이산가족 간의 양육비지급, 보험료지불 등)와 보건분야에 관한 협상과 문안작성이 끝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양측 체육교류에 관한 협정도 마무리 단계였고, 문화협상이 진행중이었음.

○ 서독정부의 기본입장은 기욤사건을 확대·극화함으로써 동·서 간 나아가서는 동·서진영 간 긴장완화추세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음.

- 브란트수상은 인터뷰에서 동독을 “SED(공산당) 국가” 라고 지칭하며-동방정책 추진 이후 이러한 용어를 브란트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음-동독이 “자신에 대한 적대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으나 동독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노골적인 비난은 자제함.
- 서독정부 대변인 발표에서도 동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양독 주민들의 복리와 분단고통완화를 위해 후속협정체결을 통한 화해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함.
- 다만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상주대표부 대표 신임장 제정일정협의를 위한 예정된 차관급 실무접촉을 즉각 취소시키고, 신임장 제정일정 자체를 무기연기시킴.
-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인 교류·협력과 관련된 비상업적 분야 지불교류협정과 보건협정은 74. 4. 25 각각 양측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아울러 양독 체육회 간의 체육교류협정도 74. 5. 8 서명되었음.

- 74. 6. 20 기욤사건으로 연기되었던 양측 상주대표부 대표(서독 Gaus, 동독 Kohl)의 신임장이 동시에 제정되었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동독 정부에 대해 기욤사건을 적극적으로 쟁점화하지 않았음.

○ 다만 이 사건을 통해 국내정치적으로는 야당(기민당, 현 여당)이 적극적인 정치공세로 나오자, 75 5. 7 브란트 수상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수상직을 사퇴했으며, 슈미트가 수상으로 선출됨.

- 슈미트 수상은 74. 5. 17 취임연설에서 기욤사건과 관련 "우리는 화해 정책의 정신과 모든 독일인의 이익을 위해 동독측과 조약을 체결했던 만큼, 각 조약 당사자는 조약의 문구자체에만 얽매이지 말고 조약에 담긴 정신을 지켜나가야 함. 최근에 일어난 간첩사건은 이러한 조약이 담고 있는 정신에 위배되며, 동·서독 주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음. 우리는 이 사건을 양조약당사자 간의 관계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우리측만이라도 조약의 문구와 정신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밝혀 둠"이라고 언급함.
- 이 사건을 계기로 슈미트 집권하의 사민당정부는 동방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해정책(Entspannungspolitik) 자체가 다른 수단을 동원한 동·서 체제 간 경쟁의 연장이며, 동·서독 간의 상이한 체제에 기인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적대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상황의 이중성을 직시하고 대동독정책에 있어, 브란트정부에서보다 좀 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선회함.
  - 다만 동·서독 주민들의 복리와 분단고통완화에 기여할 각 분야에 걸친 후속협약의 체결(제도화된 교류·협력)에 주력함.

1-8-3. 기욤사건에 대한 동독측의 반응

○ 동독정부는 74. 4. 25자 서독정부의 기욤간첩사건 발표에 대해, 사건자체를 보도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 사건 직후 동독통신사 AND는 기욤사건에 대한 언급없이, 서독측이 상주대표부 대표 신임장제정 일정 확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연기했다고만 보도함.

- 공산당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지는 5. 2에야 짤막한 사실보도를 했으며, 5. 7 브란트수상의 퇴임발표가 있자 동독 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함.
  - "전적으로 서독의 내정문제이나, 동독정부는 양독관계를 정상화하고 유럽의 화해질서 확립에 기여한 브란트의 현실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정부도 체결된 조약을 실천하는데 건설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 동독정부는 서독언론이 연일 기욤사건을 대서특필하자 드디어 5. 8 본(Bonn) 주재 "노이에스 도이치란트" 특파원 디터 볼프의 현지기사를 통해 "서독에서의 간첩사냥"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함.

- "최근 서독의 언론매체들은 수상실 직원의 간첩혐의 체포사건을 계기로, 마치 서독 전체가 동독 첩보원들에 의해 파괴당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선전하고 있음."
- "슈피겔지는 헌법보호청 대공전문가의 말을 인용 11,000명의 동독 간첩이 서독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음."
- "이는 최근 동독정부에 의한 건설적인 관계정상화정책으로 인해 조성된 동·서독 화해분위기를 와해시켜 보겠다는 저의로, 헌법보호청을 위시한 보안기관이 벌이는 반공주의 선동의 일환임."
- "서독의 정치가들은 양독일 국가 간의 관계개선이란 중대한 문제를 사소한 주변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됨."
- "동독에 대해 연방정보부가 벌이고 있는 무절제한 첩보활동에 대해서 동독정부 또한 무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음."
- "그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다할지라도, 양독일국가 간에는 각기 정보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기관의 존재가 양국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여건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왜냐하면 기본조약체결시 양국 모두 상대방의 비밀정보기관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조약내용에는 이 기관의 폐지에 관한 어떤 언급이나 합의도 없었기 때문임."

○ 동독 정부는 이렇듯 간첩사건 자체를 조작이라고 하지는 않았으며(북한처럼) 다만 국제관행처럼 되어있는 간첩활동을 반공주의자들이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조였음.

1-9. 인권문제 논란

1-9-1. 국제적인 인권규약과 동독

○ 동독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은 CSCE에 참여하면서, 서방국가와 중립 국가들의 요구로 헬싱키 최종문서(Helsinkischlussakte)에 인권조항을 삽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이후 국내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 감시와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음.

- 마드리드에서 열린 CSCE 후속회의(1980-1983)에서도 서명국들이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새삼 강조되었음.
- 서명국들은 또한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선언이나 협정에 서명할 의무가 아울러 부과되었는 바, 대표적인 국제인권규약은 1966. 12. 10 UN에서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UN 국제협약(Der Internationale UN-Pakt uber bue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이하 국제 인권협약이라 함)임.

○ 동독은 국제인권협약을 1973. 11. 2 비준했으며, 1976부터 이 협약이 동독내에서도 효력을 발하게 되었음.

- 이 협약은 CSCE 최종문서에서와 같은 단순한 선언규정에 그치지 않고 동독이 형식적이지만 이를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음.

○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서방측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동독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그들의 인권현실을 옹호했음.

- 첫째, 인권개념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이해가 서로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임.
- 둘째, CSCE 최종문서 원칙 제6항에는 내정불간섭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방국가들의 인권문제 비난은 일종의 내정간섭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셋째, 구동독 지도부는 동독에서는 CSCE 최종문서가 요구하는 인권문제 해결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1-9-2. 동·서독의 인권개념 차이

○ 동·서독 간 인권은 형식상 거의 같은 정도로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통해 보장되고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법적인 조건을 어떤 방법을 통해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 인권개념이 달라지고 있음.

- 서독을 위시한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갖는 서방측은 헌법상 보장된 인권의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체제 혹은 구조 결정문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치적인 자유영역으로 위임함.
  - 서독측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인 의사형성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다수결로 결정된 권력구조를 수용하면서도
  - 인권보장이 그 어떤 제도보다도 우선하며 인권은 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자유로운 의사형성 구조와 정치적인 제도로부터 사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음.
- 동독을 위시한 구 동구권 국가에서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구조가 중요하며,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인권존중 그 자체와 같은 구속력을 갖음.
  - 이러한 개인의 인권실현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으로는 "마르크스-레닌 정당의 권력", "노동계급의 과학적 세계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 확립", "중앙계획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등을 들 수 있음.
  -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 세계관이 정치·경제·사회 체제 내에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척도이자, 최고의 가치기준임.

○ 이에 따라 동·서독 주민들에게는 체제선택과 관련한 기본권 보장의 가능성이 상이하게 주어지게 됨.

- 서독주민들은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집회·결사·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체제를 자유로이 비판할 수 있었음.
- 반면 동독주민들은 일정한 세계관에 입각한 주어진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없어 체제수용을 조건으로만 기본권이 보장됨.

- 이런 의미에서 동독에서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보호장치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구조하에서의 재생산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로서 이해되었음.

○ 따라서 양측의 기본권이 형식적으로는 "헌법적인 질서에 입각하여" 보장된다고 선언되었지만, 실제로 "헌법적인 질서"가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달랐음.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서독측에서는 체제반대자의 권리까지를 포함한 다원화된 제도에의 참여의 보장을 의미하는 반면,
- 동독측에서는 국가에 의해 보장된 사회주의 소유권의 인정, 중앙계획경제구조의 인정,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성 인정,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인정 등을 의미했음.

○ 동독측 학자들도 서독측과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정치적·시민적인 권리보다 사회·경제적인 권리실현을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서독측에게 주민들의 노동의 권리(Recht auf Arbeit) 부재와 불균등한 재산분배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문제를 제기해 왔음.

- 그러나 서독에서 사회복지국가적 원칙에 의한 사회권의 보장은 동독에서 의미하는 노동의 권리에 입각한 완전고용이 아니며, 시장경제적 질서하에서는 완전고용이란 불가능하므로 노조의 공동결정권의 보장, 고용보호, 전직·직업훈련 등 각종 실업대책에 참여, 사회 부조금 수령권 등을 의미했음.
  - 서독인들은 주어진 정치적인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기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정책적 질서와 프로그램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동독주민들에게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러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을 받는 노동의 권리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었음.
- 서독의 자유민주적인 체제하에서는 정치적인 참여권과 사회권이 보장되더라도,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부의 불균등 분배가 동독에 비해 심한 것은 사실이었음.

- 그러나 서독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정치적인 기본권의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적인 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동독에서는 이러한 평등문제에 관한 사회권을 보장받고 있더라도 국가의 후견에 의해 주민들이 미성년자화되므로 하향적 평준화 이상의 대안을 모색할 수는 없었음.

1-9-3. 동독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9-3-1. 자유왕래 및 이주권리 관련

○ 국제원권협약 제12조에는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이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국민건강, 공중도덕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동독은 1983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 동독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단지 상기조건들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례들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라고, 서독측은 주장했음.

1-9-3-1-1. 국경 봉쇄·차단

○ 동독측이 설치한 국경탈출방지장치와 차단장치는 국제인권협약 제12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

○ 국경탈출자에 대한 총격사용 사살행위 또한 동 협약을 위반하는 것임.

- 동독측은 1982년도에 제정한 국경법을 근거로 이러한 총격사용행위가 동독의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었음.

1-9-3-1-2. 정치적 형사처벌

○ 동독으로부터 합법·비합법적으로 이주하려는 국민들에 대해 가해지는 정치적인 형사처벌이 명백하게 동 협약에 위반임.

- amnesty international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81년 한 해 동안 200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 160명이 탈출 또는 이주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들에게 적용되는 정치적 박해목적의 형법규정을 살펴보면

- 제213조 : "불법적인 월경을 통한 공화국 도주죄"
  - 형량은 1979년 3차의 형법개정을 통해 5-8년 징역임.
- 제214조 : "국가·사회생활 침해죄"
  - 1983년 Jena에서는 한 주민이 이주허가신청이 기각되자, 이의 관철을 위해, 하얀 옷을 입고 침묵시위를 벌였는 바,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음.
- 제 219조 : "불법적인 외부인사 접촉죄"
  - 이주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었는데, 서방측 인권단체나 언론기관들과 접촉을 하고, 자신의 신상명세나 기타 문서를 전달한 경우 적용됨.
  - 특히 동독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를 방문하여 이주를 호소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음.
- 제 220조: "공공기관 비방 중상죄"
  - 이주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재차 다른 공공기관에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항변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됨.
- 제 99조 : "국가반역적인 정보·자료 유출"
  - 자신의 이주 희망의사를 다른 자료와 함께 서방측 언론에 공개했을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됨.
- 제106조 : "반국가적인 선동죄"
  - 자신의 이주문제와 관련하여 동독내 정부지도자급 관계인(특히 호네커)을 비방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됨.
- 제100조 : "국가반역적인 요원으로 활동죄"
  - 자신의 이주허가문제를 서방측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Vereinigung fuer Menschenrechte", "Hilferufe von drueben", "amnesty international") 등과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제97조 : "간첩죄"
  - 동독측 정보기관이 이주희망자를 간첩으로 분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제225조 : "불고지죄"
  - 동독을 탈출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이에 해당됨.
- 제104조 : "반국가적인 인신매매죄"
  - 서방측 탈출방조자와 그 도움으로 동독을 탈출하려는 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됨.

1-9-3-1-3. 이주·자유왕래를 방해하는 행정적·직업상 제재

○ Stasi나 내무성 또는 지방행정기관 이주 당당 직원들의 협박과 회유.

○ 이주허가신청의 접수거부 및 이주허가신청서 양식의 교부 거부.

○ 직장에서의 해고위협 및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 거부.

○ 형법 제48조에 의한 정치범의 일상생활통제.

- 일정지역(특히 동베를린지역)의 체류금지, 매일 주거장소를 경찰에 신고토록 함, 직장변경 및 특정인과의 교제금지 등.

○ 특별증명서(PM12)의 발행

- 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한 외국여행이 제한되며, 기관에 의해 늘 용의자로서 취급됨.
- 1984년에 구동독에는 약 6만여 명이 이 특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음.

1-9-3-1-4. 가족 재상봉 거부 및 지연

○ 서독으로 탈출했거나, 합법이주했거나, 동독 정치범이었다가 서독으로 석방된 사람들과 그 잔류가족의 재상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또한

국제협약에 위반임.

○ 많은 경우 구동독 정치범들은 자신이 수감된 이후 그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박탈되고, 심한 경우 다른 부모에게 강제 입양되는 경우가 있었음.

1-9-3-1-5. 인적 접촉 제한

○ 동·서독 간 방문·여행시 이들의 주민들 간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동독 기간원들의 조치 역시 국제협약에 위반됨.

- 동독정부는 긴급한 가사사유로 서독을 방문하려는 자들을 회유하여 이들로 하여금 여행을 포기하도록 함.
- 동독정부는 많은 동독주민들을 "비밀 소지자"로 분류하면서, 해당 대상자의 범위를 세탁소 및 음식점 종업원에까지 확대하여 왔음.
- 서독으로의 단체여행시 Stasi 요원들이 동행하여 서독주민들과 자유로운 접촉을 제한하는 사례.

1-9-3-1-6. 추방, 재입국 거부

○ 1970년대 중반부터 체제반대자들에 대해서 의사에 반하여 서독으로 이주를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음.

- 특히 평화운동단체 일원들에게 이러한 이주강요가 빈번했는데, 강제로 이주신청서를 내게 하고 만약 승낙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였음.

○ 구동독을 탈출하였거나, 합법적으로 허가를 얻어 이주하였거나, 정치범으로서 서독으로 석방되어 간 자들에 대해서는 서독에서 재차 동독으로의 여행이나 방문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음.

1-9-3-2.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 국제인권협약 19조 2항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취득과 전파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동독측은 이를 보장하지 않았음.

- 동독 헙법 제21조 1항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원칙에 상응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헌법의 기본원칙이란 당의 국가·사회에서 영도적인 역할, 개인과 국가 이익의 원칙적인 일치, 동독의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지역적인 해석이 가능한 헌법상의 유보조항을 이용하여 형법을 제정함으로서 국제인권협약에 규정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실로 삼았음.

○ amnesty international은 매년 200여 명에 달하는 새로운 정치범 중 거의 50% 정도가 동독정부나 체제를 비판하다가 재판을 받고 수감된 것으로 파악했음.

1-9-3-2-1. 형법을 통한 인권침해

○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된 형법조항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동·서독 평화운동단체가 연대한 평화운동 집회개최와 관련하여
  - 제99조 : "국가반역적인 정보·자료 유출"
  - 제219조 : "불법적인 외부인사 접촉"
- 폴란드 "연대노조"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와 관련하여
  - 제100조 : "국가반역적인 요원으로 활동죄"
  - 제200조 : "공공기관 비방중상죄"
- 반체제 지식인들의 체제비판에 대해
  - 제97조 : "간첩죄"
- 공산당내의 새로운 분파를 형성하고 다른 사상을 널리 알리려한 경우
  - 제106조 : "반국가적 선동죄"

1-9-3-2-2. 기타 제재 수단을 통한 인권침해

○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주로 대상이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이 발표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동독에서 출판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요 수단이었음.

- 그러나 이러한 작가들에 대한 박해는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 동독정부에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들 비판적인 작가들의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었음.
- 또한 동독내에서는 이들 작가들이 쓴 글을 서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완전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나, 서독에서 이들의 작품이 출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음.
- 이러한 분류에 속했던 주요 작가들은 Stefan Heym, Christa Wolf, Christoh Hein, Gabriele Eckart 등을 들 수 있음.

1-9-3-3. 양심과 종교의 자유 관련

○ 국제인권협약 제18조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종교와 세계관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약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독정부는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인권규약은 지키되, 다만 교회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주권과 헌법과 법질서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음.

○ 동독에서 종교자유 침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 보다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고백을 통해 반체제적 활동을 하는 각 개인들을 대상으로 가해졌는 바,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신교의 보호 아래 이루어졌던 평화운동·환경보호운동 단체의 회원들이 박해의 주대상이었음.
- 부모가 기독교인인 자녀들은 상급학교인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서 불이익을 당했음.
- 기독교적인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임용되는데 제한을 받았음.
-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으며, 군복무 자체를 거부한 경우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음.

○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평화-환경보호운동단체들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었지만,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전부 보호해 줄 만한 능력은 없었음.

1-9-3-4. 법적인 보호 관련

○ 국제인권협약 제14조는 재판의 공개와 변호인의 선임과 변호업무에 대해 피고인이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동독에서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구금, 형사처벌이 빈번하여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금지 및 방해.
- 피의자가 Stasi에 의해 조사를 받은 경우, 작성된 조서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강박에 의해 서명하는 사례.
- 요청한 법전과 기소문 등이 전달되지 않거나, 기소문이 서면으로 전달되지 않고 간수가 잠깐 읽어주는 식으로 전달되는 사례.
- 재판의 공개는 형식적으로만 보장되어 있고 실제는 제한된 당관리나 Stasi 요원들만이 방청이 허용되는 사례.

1-9-3-5.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 고문

○ 국제인권협약 제7조에는 고문,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나 처벌 등을 무조건 금하고 있음.

- 동독은 UN 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가혹행위나 고문은 그들의 법적·도덕적인 기준에 합치하지 않으며, 결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음.
-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행형시설내에서의 육체적인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정도면에서 심하게 동독측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으나, Stasi에 의해 체포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을

구속한다는 위협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지적되었음.

- 행형시설내에서의 간수들의 폭력행사나 구치소에서의 고문 등은 동독내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가끔 그런 사례들이 알려졌으며, 행형시설 자체가 매우 열악하여 서방측 기준으로 볼 때 인도적인 수감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음.

1-9-4. 국제적 비난에 대한 동독측의 대응

○ 동독측은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자국의 인권상황 비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지적에 대해 소극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내정간섭이라고 아예 대응을 하지 않거나, 국제인권협약에서 유보조건으로 허용된 예외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대처해 나갔음.

○ 그러나 동독은 국제인권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또한 CSCE에 서명한 만큼, 어쨌든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했고,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만약 동독측이 국제인권협약에서 허용된 제한조건을 들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고 할 경우, 회원국들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의 보장이 어떻게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치는지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 따지는 경우가 많았음.

○ 동독지도부는 서방측의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를 동독내에 반체제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로 받아들이고 서방측이 제기한 인권의 보장이 결국 잠재적인 체제반대세력을 양성하게 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었음.

- 결국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동독체제 내부의 정치적인 안정화 정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고하는 셈이 되었음

1-9-5. 서독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

○ 동·서독은 기본조약 체결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동 조약 제2조에 국제연합헌장의 제원칙을 열거하면서 "인권의 보호"(Wahrung der Menschenrechte)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독측의 요청으로 기본조약에 이 조항이 삽입되었음.

○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는 1973. 7. 31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판결문에서 후반부에 동·서독 양측이 이러한 기본조약체결에 따라 존중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보장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언급하고 있음.

- 동·서독인들에 대한 서신, 우편·통신·비밀 보장은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없고,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제한할 수 없음.

- 라디오, TV제작 및 방송과 관련하여 동독측이 원치 않는 방송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서독측은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에 동독측과 합의하면 안됨.

-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동독측이 원치 않는 단체가 결성되어 이 단체의 목적과 선전활동이 조약의 정신에 일치하지 않으며 내정간섭을 행하고 있다고 동 단체를 금지하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서독측은 동 단체가 기본법질서를 준수하는 한 이를 금지해서는 안됨.

- 동독측이 서독측의 내정간섭을 구실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주민들의 이익의 표출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조약을 위반하는 것임.

- 주민들의 자유왕래를 방해하는 내독 간 국경선의 현실 즉 장벽, 철조망, 죽음의 사선, 탈출자에 대한 사격명령 등은 조약의 정신과 합치하지 않음.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러나 서독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동독 지역 주민들에게도 효력을 미쳐야만 그들에게 실제적인 인권보호를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음.

- 기본조약은 양독국민들의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서독기본법 제16조 및 116조 1항과 기본조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동독주민들도 서독주민들과 같은 단일 독일 국적을 갖고 있었음.

- 그러나 서독의 기본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기본법 제 23조에 의하면 서독지역에 한정되어있으므로,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기본법에 의한 인권의 법적 보호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법이 적용되는 서독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동독지역에 머물고 있는 동독주민들에 대해 서독의 기본법이 규정한 인권의 보장을 동독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내독관계에서 법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

○ 결국 서독측은 양독 간의 합의에 의한 동독주민들의 인권상황개선은 불가능하므로, 양독국가가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만 동독에 대한 인권문제를 효과적으로 거론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동구 공산주의 국가도 모두 서명, 비준동의하였던 UN 국제인권협약(시민적·정치적 제 권리에 관한 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에 관한 협약)이 최초의 보편적이고, 국제법적으로 성문화된 하나의 인권문제에 관한 장전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서독은 동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음.

- 서독측 문헌에 나타난 UN 국제인권협약과 관련하여 동독측에 제기한 서독측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음.
  - 국제인권협약에 보장된 인권의 상대화와 인권보장의 우선순위 설정은 곤란함. 예를 들어 동독측이 중요시하는 노동의 권리는 서독측이 중요시하는 거주이전 및 이주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음.
  - 국제인권협약 그 자체가 인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기준이며, 이 협약에 서명한 이상, 다른 국가에게 인권실현을 촉구하며 강요할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 인권(Menschenrechte)을 계급적인 권리(Klassenrechte)로 이해하며 특정한 주민, 특정한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보장하는 그러한 인권의 정치화 현상에 반대함.
  - 인권침해사례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인권침해의 범죄화에 반대하는 바, 예를 들어 동독주민에 대해 이주불허결정을 하고 이들을 다시 동독형법을 적용, 처벌하는 일이 없어야 함.

○ 서독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역대정부의 독일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였음.

- 독일정책은 평화, 자유(인권), 통일 3가지 헌법적 명제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어느 명제에 중점이 두어졌는지는 시대상황에 따라 달랐음.
- 주민들의 자유(인권) 보장 명제가 국가적 통일의 달성 명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동독(동구권 포함) 측과 화해를 통한 독일내, 나아가서 유럽내의 평화확보라는 명제가 다른 두가지 명제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단 이후 역대 정권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변해왔음.
- 사민당이 새로운 동방정책을 추진한 이후부터는 점차 평화보장명제의 중요성이 커져 갔으나, 결코 평화정책·화해정책 추진의 이유로 인권의 보장문제가 대동독정책에서 그 중요성을 잃었던 적은 없다고 보아야 함.

○ 평화·화해정책을 통해 오히려 체제개방에의 양보를 동독측으로부터 얻어내었으며 동독주민들의 분단에 따르는 고통은 오히려 완화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동독주민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개선되어 갔다고 볼 수 있음.

- 실체인정을 통한 동독측의 양보를 유도, 가족재상봉, 여행·방문조건의 완화, 방해받지 않는 서독TV·라디오 시청이 가능해졌고 서독측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이 용이해질 수 있었음.
- 물론 이러한 동독의 대서독 완화조치들은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독측에서 볼 때 냉전시대의 동독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선언적으로 거론할 때보다는 그 실제결과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성과가 많은 것이었음.

○ 실제 독일정책 추진에 있어 화해정책을 구실로 인권과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결코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지만, 상대편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독의 기본법에 보장된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 수도 없었음.

- 공개적으로 동독을 비판하는 기준은 해석상의 여지가 있지만 상호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이 되어야 했으며, 이러한 기준을 통한 서독측의 동독에 대한

비판은 좀 더 관계개선에서 현실적인 결과를 염두에 둔 온건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

- 구동독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서독지도부는 동독정권담당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상호이익존중(Interessenausgleich)을 필수적으로 간주했음.
- 동독지도부가 서독측의 화해정책 실시 이후 특히 동독체제가 서독체제보다 주민들로부터 확고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체제의 취약점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으며,
- 서독측은 평화의 보장에 역점을 두고 화해정책을 추진한 반면, 동독측은 체제개방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잠재적인 체제반대세력이 동독내에 양성화되어, 체제의 존립문제로 화해정책을 바라보게됨에 따라, 서독측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운 대동독정책이 요구되었음.
- 따라서 서독측은 인류보편의 가치인 민주화와 자유·인권의 보장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으로 설정해 놓고, 동독주민들의 실질적인 조건개선을 위해 화해정책을 추진하며 조심스런 곡예를 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동독측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서독측은 국제적인 회의를 통한 간접적인 논란제기와 비밀협상 채널을 통한 "특별노력"(besondere Bemuehungen) 등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시도하였음.

- 점진적인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동독정부에게 전반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타의 협력관계를 동결시킨다는 전략은, 소망스러운 목표이기는 해도 동독으로 하여금 점진적인 인권상황의 개선마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의 채택되지 않았음.
- 동독정부가 체제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권상황의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서독정부는 내독관계성 차관을 실무책임으로 하여 구동독의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재상봉을 중심으로 동독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동독측과 비밀협상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 왔음.

○ 서독측 특히 사민당측의 정치가들은 동독주민들의 인권보장 노력이 동독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제 권리 특히 이주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더 이상 체제의 존립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동독의 체제가 와해되지 않는다고 동독측을 설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동독 지도부는 서방측이 요구하는 동독주민들의 인권 보장 문제를 정치·사회적 체제 통합을 저해하는 체제의 존립문제로 간주하여 일정한 선 이상의 타협의 여지가 없었음.

○ 그러나 서독측의 비밀노력이 계속되는 한 결코 국제적인 논란을 통해 직접 구동독의 인권침해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음.

1-9-6. 국제기구(UN)를 통한 동독 인권문제 거론

○ UN을 통해 개별 국가들의 국제인권협약 이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국가별 소원(Staatenbeschwerde) 제기, 개인별 소원(Individualbeschwerde) 제기 등 3가지가 있었음.

- 국제인권협약 서명국들은 국제인권협약 제40조에 따라 UN인권위원회(동 협약 제28조 1항에 의거 1977년 처음 구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독은 각각 1인의 국제법 학자가 참여함 : Ausschuss fuer Menschenrechte)에 동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내의 제반조치들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대해 UN 인권위원회는 보고서 제출국에 대해 보고서 내용을 심사한 후 일반적으로 소견서를 작성,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각 서명당사국들은 보고형식을 통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기된 인권침해사례지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인권현실을 정당화해 갔음.
- 동 협약 제41조에 의하면 서명국들은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별 소원(Staaten-beschwerde)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국가별 소원제기는 동 조항에 의거 소원제기를 받아들인다는 서명국가별 승복선언(Unterwerfungserklaerung)을 전제로 해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서독은 1976년 4월에 이 선언을 한 반면, 동독은 자신들의 인권상황을 동·서독관계와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 이 선언을 거부함으로써 이 방법을 통한 동독에 대한 서독측의 인권개선 희망은 실현될 수 없었음.
- 또한 이러한 국가별 소원제기 절차를 통해서도 결코 국제적으로 인권침해국에게 그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음.
- 또한 국가별 소원제기에 의해 작성된 국제인권위 보고서 자체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다른 국가 인권상황을 거론하는 그 자체를 꺼려했으며, 국제적으로 법적인 제재조치의 마련보다 외교채널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인권상황 개선효과는 미미했음.
  - UN인권위원회는 다른 서명국가의 인권침해에 관한 소원제기국의 보고를 접수하고, 소원제기 대상국가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양 국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UN 인권위는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게 되어 있으며, 그 보고서를 관련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 활동을 일단 마감함.
  - 만약 관련 당사국들이 사전에 동의할 경우는 인권위원회는 동 협약 제42조에 따라 사례별 특별위원회(Ad-hoc-Vergleichs-kommission)를 설치하여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인권침해사례를 위한 입장표명을 하고, 권련국들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면 관련국들도 3개월 이내에 이 특별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하나, 이 경우도 관련 당사국이 동의여부 입장표명을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동 협약 추가의정서인 Fakultativprotokoll1 제1조에 의하면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개인별 소원제기(Individualbeschwerde) 가능성이 있었음.

  -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동 협약에 규정된 인권침해에 의한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각 개별국민에게 소원을 제기케하고, 이를 인권위원회가 심사하고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음.
  - 그러나 동 협약 서명국이면서도,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서면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동독과 서독은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아 내독 간에는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소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편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없었음.

○ 국가별 소원제기나, 개인별 소원제기 방식을 통해 동독의 인권상황을 거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단지 UN 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을 통해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 스스로 보고토록 하고 UN 인권위의 질문에 대해 동독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국제기구(UN)를 통한 동독 인권문제 거론의 한계가 있었음.

○ 동독측은 UN 인권위원회에 1977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제2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동독측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동독은 동 보고서에서 헌법과 인민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담긴 선언적인 명제만을 언급하였지, 실제 인권의 현황과 경험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 동독측 보고서에 나타난 동독의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음.
  - 평화의 유지가 국제인권협약에 담겨있는 제반 규정을 실현하고, 담보하는 불가결한 조건임.
  - 국경의 수호와 무조건적인 현 국경의 인정만이 어떤 정책이 평화보장과 이익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가리는 시금석임.
  - 시민적·정치적인 제 권리 보장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제 권리 보장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서로 한편이 다른 한편을 규정짓고 지원함.

- 사회주의적인 사회질서를 통해서만 국민들이 시민적·정치적인 제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생활조건이 창출됨. 이러한 실질적인 조건 충족을 통해서만 동독의 모든 주민이 차별없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정치적인 제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장되는 다음과 같은 권리 즉, "노동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자유와 휴가의 권리", "건강보호와 노동력 보호권리", "주거공간의 확보 권리"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모든 인권은 그 권리가 동독헌법의 기본정신과 목표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보장됨.

– 보고서 제출 이후 동독측 대표의 구두진술과 이에 대한 인권위 소속 국제법 전문가(서독측에서도 참여함)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인권위측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 지적에 대해 동독측은 주로 국제인권협약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했음.

- 거주이전 및 이주자유 제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주불허는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에 취해질 수 있으며 그것은 국제인권협약 제12조와 제13조의 예외조항에 보장되어 있다고 항변함.
-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행위 지적에 대해서는 동·서독 간의 국경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국가 간의 국경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1982년도 국경법 및 그 법운용상의 실제상황과 국제인권협약 제6조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고 함.
- 정치범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동독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짐으로 해서 처벌받을 수 없으므로 동독에는 정치범이 없으나 평화를 위협하거나, 파시즘적이며 군사적인 선전을 하는 행위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징을 하고 있다는 주장함.

1-10. 동독 지역 정치범 석방을 위한 내독 간 비밀거래 (Freikauf)

1-10-1. 협상 및 동·서독의 입장

○ 전독성(Das Ministerium fuer gesamtdeutsche Frage, 내독관계성 전신)은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분단고통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주민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 특별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 온 바 있음.

-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지불거래(Freikauf) : 동독의 감옥에 수감 중인 정치적인 박해자를 서독에서 비밀거래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서독으로 석방해 옴.
- 이산가족 재상봉(familienzusammenfuehrung) : 동독 정부와 협상을 통한 이산가족의 합법이주 추진.

○ 베를린 장벽 개방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그러한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지불거래 사실이 단편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음.

– 내독관계성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의 증언과 회고록에 의하면 연방정부예산을 동독 정부에 지출하여, 총 33,755명의 정치범을 석방하였음.

- 아울러 비밀거래를 통해 이주가 허용된 정치범들의 가족 또한 자동적으로 이주가 허용되도록 동·서독 간 협상이 계속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6개월 후에 왔으나 나중에는 상봉기간이 짧아져 3~5주만에 재결합됨.
- 이를 통해 2천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살도록 허용되었고,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되었음.

– 이 사업을 시작한 당시에 구동독에는 1만 2천명의 정치범이 있었으나, 1989년 말에는 2천 내지 2천 5백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음.

– 이러한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측이 동독에 지불한 대가(Gegenleistung)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1인당 초창기부터 1977년까지 40,000 DM, 1977년부터 1989년까지는 95,847 DM에 해당되는 물건으로 지불하였음.

-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간을 매매한다는 국제여론과 동독정부의 체면을 감안, 대가는 총량으로 계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동독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처음에는 사과쥬스와 같은 음료수, 열대과일 등을 동독측이 요구하였으나, 나중에는 주로 공산품으로 석유, 기계 등 고가품목을 지급하였다고 함.

– 석방대상은 주로 체제저항운동을 하다 투옥된 인사나, 동독으로 불법으로 탈출하려다가 투옥된 사람으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박해자”에 한정하였음.

- 초창기에 동독에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일반 형사범”도 서독으로 방출하려 하였으나, 서독 측에서 심사하여 밝혀지면, 대가지불에서 제외하였음.

○ 동·서독 간에는 이 비밀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서상의 합의나 조약은 없었으며, 서독정부는 정부예산으로 지원은 하였지만, 모든 거래는 변호사와 신교단체를 내세워 간접적으로 참여해왔음.

–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양측의 변호사를 통한 간접적 협상 방식에 변함이 없었으며, 상주대표부 설치 이후에도 이 업무는 상주대표부로 이관되지 않았음.

– 서독측에서는 석방자 명단 작성 및 예산지원에 내독관계성 차관이 직접 관여했으나, 초창기에는 서독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접촉했으며, 내독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상주대표나 내독관계성 차관이 직접 동독 변호사와 협상을 하였음.

- 거의 30년 간 이 업무를 담당해 온 Wolfgang Vogel이라는 동독측 변호사는 카톨릭 신자이자 SED 당원이었는데 호네커와 서독정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함.

- 석방요구자의 명단이 서독측으로부터 동독측으로 전해지면 동독측은 내무성, 국가안보부(Stasi), 검찰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석방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함(특히 Stasi 형사범처벌 및 이주문제 담당부서 적극적으로 관여).

- 일단 명단이 넘어오면 1년 정도 걸려 그 석방여부가 결정되었음.

– 동독국민들 사이에 이러한 서독정부의 사업이 알려지자 동독지역에서 서독으로 불법탈출자가 급증함.

- 특히 기술자와 고급 인력의 경우, 합법이주를 신청하여도 잘 허가해주지 않고, 3~4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여 실패하더라도 서독측에서 구제해주면 오히려 자유스러운 상태가 되는 기간이 짧아진다고 판단한 사람도 많았다고 함.

○ 양측이 이러한 정치범 거래 및 인도에 합의된 배경은

– 서독측으로서는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 동독측은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는 인물들을 추방함으로써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또한 서독측이 지불한 대가는 이제까지 동독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주로 정치범들로 지식인, 기술자들이 많았음) 국가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서독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임.

- 실제로 동독 변호사 Wolfgang Vogel은 “동독에서는 형사처벌이 그 대상자가 전체사회에 끼친 손해에 따라 내려진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소할지 몰라도 이러한 형사처벌 대상자들이 끼친 손해는 물질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발상이 서독과의 물질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석방거래를 가능케 한 동독지도부의 의사결정 근거이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 있음.

○ 통독후 과거 서독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꼭 정치범 석방을 위해 거래를 했어야 했는가 하는 의문과 아울러 꼭 그 댓가로 그러한 물자제공방식을 택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구동독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측이 대가로 지불한 원자재 등 물자들이 직접 동독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쓰여졌는가, 아니면 권력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는가 하는 문제가 과거청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제기는 과거 서독정부의 대동독 화해정책이 동독체제의 붕괴를 지연시켰는가, 아니면 가속화시켰는가 하는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 정책결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1992년 8월 28일자 "Die Zeit"지는 정치범 석방을 조건으로 동독에 제공된 물자들이 동독주민들의 부족한 물자공급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고, 권력자의 권력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과거 서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음.
  - 동 기사에 의하면 제공된 물자가 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인 Koko를 통해 외국에 재판매되고 그 대금 중 수십억 DM이 호네커의 비밀구좌로 들어갔으며 서독측의 관계자들 특히 연방내독성(내독성 차관이 실무책임자였음)이나, 신교복지구호단체인 Diakonisches Werk의 담당자, 물자공급업체 등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음.

○ 정치범 석방거래정책 추진의 정당성에 대한 내독관계성 관계자 등 정부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동독의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서독의 체제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오늘날의 시각만으로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동독은 내독관계에서 실체를 인정받았던 엄연한 대화의 상대로서 서독측을 견제하고 협상에 묶어 둘 중요한 견제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임.
  - 서독측은 베를린의 서독편입문제, 주민들의 자유왕래문제, 동독주민들의 분단고통완화 및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동독과 타협하고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음.
  - 특히 정치범 석방, 가족 재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동독에게 양보하는 것이 불가결했으므로 서독정부가 특별사업으로 지정, 이를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통독 이후에 평가해 볼 때, 결국 이러한 정치범 석방 거래는 동독정권의 내적인 정통성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면서 결국 체제붕괴에 일조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인 의의를 간과할 수 없음.

○ 이러한 정치범 석방 거래가 동독체제 특히 동독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됨.

- 동독측은 애초에 대가로 서독측에게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외환을 요구했으나, 서독측은 동독측과 타협을 통해 돈 대신 물자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
  - 냉전시 서방측의 주요 전략은 경제적인 봉쇄정책과 아울러 동구권이 경화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는데, 서독 또한 내독관계에서 경화를 지불할 수는 없었음.(예를들어 서독이 동독측에 DM으로 지불한 통과여객일괄금(Transitpauschale)은 1972년부터, 동독 고속도로건설 등에 자본참여는 1976년에 가서야 이루어졌음.)
  - 동독측으로 금수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략물자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했음.(돈으로 지불했을 경우 이 돈으로 동독은 용이하게 외국으로부터 직접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
  - 서독측은 아울러 물자공급을 통해 서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확보되는 효과를 노렸음.
- 그러나 제공된 물자들이 외국에 재판매되어 동독의 외환을 확보하는데 긴요하게 쓰이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 제공된 물건이 직접 또는 동독에서 재가공을 통해 제3국으로 판매되어 동독이 외환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거나,
  - 서독으로부터 물자공급이 아니었다면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으므로 외환을 절약하여 결국 외환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음.
- 문제는 이렇게 제공된 물자가 재판매되거나 투자되어 동독국민경제 전체에 가시적인 도움이 되었거나 동독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임.
- 이로써 서독정부가 협상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제공된 물자의 용도를 지정하거나 물자 사용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이를 동독측에게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독정부의 정치범 석방 거래시 대동독 정책을 비판해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내독관계에서 동독정부는 늘 동독주민을 담보로 협상시 서독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또 서독에 대해 늘 독립국가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서독측이 협상에서 동독측에게

물자사용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

- 또한 제공물자를 주민들을 위해 쓰도록 지정하고 이를 동독이 받아들였다 한들 효과면에서 볼 때 동독주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증가시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동독체제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갖게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

1-10-2. 거래의 시작

○ 전독성(내독관계성의 전신)의 정치범 석방을 위한 인도적인 특별노력사업(humanitaere Bemuehungen fuer politische haeftlinge)은 1963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그 전부터 동독지역의 정치범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음.

- 동독지역의 정치범(Politische Haeftlinge)은 크게 동독 공산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나찌추종자 또는 전범자들과 동독 체제를 비판하거나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구속된 공화국 도주자(Republikflucht)들인 국가보안사범으로 크게 대별되었음.
  - 전범자는 1945~1978년 동안 12,800명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국가보안사범은 1950~1984년까지 140,000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음.
  - 전체 정치범 중 1956년부터 국가보안사범의 비율이 점차로 늘어났으며,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1961년부터는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구속된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는데, 1969~1976년 동안 전체 정치범 중 국가보안사범의 비율이 75%를 차지했음.
  - 동독의 사법부와 검찰은 "법은 지배계급의 권력행사의 특별한 형태"라는 그들의 정의에 따라, 동독 사회를 개조하는데 공산당 통치권력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권력의 시녀화로 정치목적으로 구속 수감된 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었음.
- 종전 직후부터 신교단체는 소련점령지역에서 전범이나, 정치범으로 몰려 구속수감되어 있는 군인 또는 민간인들을 돌보아왔음.

- 양쪽에 분단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는 서독 외무성은 변호사 사무실(변호사 Behling 주도)을 개설하고 분단에도 불구하고 동독측과 아직도 접촉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를 동원, 동독의 정치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왔음.
  -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만해도 동·서독은 동·서베를린의 왕래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정치적·군사적으로 완전한 분단은 불가능했으며, 국경선 넘어 각 사회단체들의 접촉과 서신연락이 가능했었음.
  - 당시 동독의 정치범 현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서독 정부에 구조를 요청해 왔던 서독의 주요 단체는 실향민 단체, 사회 구호 복지(적십자사, Caritas), 노조, 동베를린에 지부(Ostbuero)를 갖고 있던 정당 등이었으며, 아울러 서독지역으로 탈출한 피난민들도 자신과 주변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
- Behling이 주도하던 변호사 사무실이 전독성 내로 흡수되어 전독성 내에 "법률 보호실(Rechtschutzstelle)이 개설되었으며, 이 "법률보호실"이 동독지역의 정치범 현황과 법률구조활동에 대한 중심지가 되었음.
  - 1955년부터는 이 법률보호실은 동독의 변호사들과 연계를 갖고, 이들 동독변호사들에게 정치범들의 변호와 법적인 보호를 요청했음.
  - 비록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를 띠었지만 이러한 서독 변호사들의 법률구조활동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던 동독지역정치범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자, 희망이었음.
- 동·서독 변호사들 간의 연락과 상호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중개인이 필요했는 바, 동독에서는 Wolfgang Vogel 변호사가 서독에서는 Juergen stange 변호사가 각각 중개인으로 상대편 지역을 방문하면서 활동했음.
  - 동베를린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던 Wolfgang Vogel은 1957년부터 서베를린지역에서도 변호사개업이 허용되었는데 동·서독 지역에서 동시에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연고로 서독의 변호사들과 접촉하며 정치범 법률구조와 관련한 중개역할을 하였음.
    - » Wolfgang Vogel은 1963년부터 서독정부의 정치범석방 특별사업이 시작된 이래 통독 직전까지 동독측의 최고위층의 신임을 받고 비밀리에

서독측과 협상을 벌이고 정치범 또는 스파이들의 석방과 교환에 참여했던 실무주역으로서 활동했는 바 통독 이후에는 Stasi의 조정하에 비공식 정탐요원으로 활동했다는 비난과 함께 정치범 석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건수임 의뢰인들을 강박으로 위협하며 이들 재산을 부당하게 갈취했으며 변호사 활동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 서독출신 변호사인 Juergen Stange는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후 서베를린 지역 주민이나 변호사들의 동베를린 왕래가 완전히 차단되자 서독지역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음.

  » 당시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인들의 왕래를 완전히 차단했으나, 기타 서독지역 출신의 출입은 제한적으로 허가했기 때문에, 서베를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었지만, 연고지가 다른 서독지역(Braunschweig)인 Juergen Stange는 중개인으로 동베를린을 왕래하며 법률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정치범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대주는 법률구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1963년부터 서독정부가 관여하기 전에 물질적인 대가(돈)를 사용해 정치범을 석방한 사례가 극비에 붙여졌지만 있었음.

    - 교회단체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교회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독변호사 Wolfgang Vogel을 통해 2명의 정치범을 알려지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비밀리에 석방한 것으로 Ludwig Rehlingen(전독성의 베를린지소 정치담당으로 동독정치범 석방 사업을 최초로 정부에 건의하여 이 사업을 주관했으며, 후일 내독 관계성 차관이 됨)는 그의 책자에서 밝히고 있음.

    - 당시 교회는 석방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만약 이 사업을 확대추진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o 정부차원에서 전독성이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정치범 석방을 위한 특별사업을 비밀리에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임.

  – 이 사업의 초창기 실무주도자였던 Ludwig Rehlinger는 "적으로부터 억류되어 있는 자국국민을 돈을 주고서라도 구해오는 일은 역사상 늘 있어왔으므로" 동독과 이러한 협상을 하는 것이 비도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인도주의적이라고 보았음.

    - 이러한 발상에 대해 전독성의 간부들은 대부분 거부반응을 보였는데, 당시 보수당인 기민당 출신 간부들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이지만 정치범 석방을 위해 돈을 주고 공산 불법체제와 인신매매를 한다는 자체가 비도덕적이라고 보았음.

  – 동독 변호사 Vogel은 서독 변호사 Stange를 통해 동독측이 서독측으로부터 물질적인 대가가 있을 경우 대규모로 정치범을 석방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왔음.

  – 서독측 "법률보호실" 변호사들은 동독측과 예상되는 대규모 석방 거래에는 재정적·법률적·정치적인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전독성)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음.

    - 정부가 아닌 사회단체가 이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래에서 동독측이 요구하는 대가지불을 위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고, 냉전기였던 만큼 상대편지역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회합 또는 통신 등 활동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정부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

  – 서독 "법률보호실" 변호사들은 당시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베를린 출신 신문재벌인 Axel Springer을 움직여 당시 전독성장관인 Rainer Barzel에게 이 사업추진을 요청했고, Barzel은 보수당인 기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층과 협의를 했음

    - Barzel은 아데나워 수상, 수상실장관, 재무성장관, 기민당 원내의장들과 협의를 거쳐, 이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을 얻어 냄.

  – 이러한 서독정부 결정은 Stange 변호사를 통해 동독측에 전달되었으며, 동독측은 비밀리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조건으로 1,000명의 정치범을 돈을 받고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음.

    - 아울러 동독은 서독측에게 요구하는 석방자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음.

ㅇ 양측 정부의 기본적인 결정이 있은 후 서독측은 “인도적인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노력”(Besondere Bemuehungen der Bundesreguerung im humanitaeren Bereich)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동독측과 비밀리에 사업을 시작했음.

- 전독성 베를린지소 정치담당인 Reglinger가 실무주무를 맡아 우선 “법률보호실”에 정리되어 있는 12,000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1,000명을 선발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음.
  - 극비로 이루어진 이 작업은 보안유지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받을 수 없어 매우 어렵게 이루어졌는데, 선발시 고려기준은 다음과 같음.
    - » 구속과 판결이유, 형량, 수감자의 건강상태, 수감자의 가족 상황, 수감자의 경력 등이었음.
- 동독측은 실제로 이 사업의 실행단계에 이르자 석방자 범위와 관련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음.
  -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 장벽의 첫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서독내에서 대동독 강경론이 우세한 가운데, 서독의 보수당 정부가 이 비밀 사업을 선전적으로 이용하여 동독을 궁지로 몰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동독지도부에 일기 시작했음.
  - 동독은 처음 사업으로 1,000명은 너무 많으니, 500명으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고, 서독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있자 계속 이 사업 규모의 축소를 요구하여 100명, 50명, 10명 최종적으로는 8명으로 결정이 되었음.
- 서독이 애초에 기대한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첫 시도였던 만큼, 동독측으로부터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 동독측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음.
  - 합의에 관한 그 어떤 문제상의 협정도 없었고 다만, 양측 정부 최고위층의 의중을 전하는 동·서독 양측 변호사들에 대한 상호신뢰에 의해 이 일은 진행되어야 했음.
- 동독측은 “최고위층”의 재가를 얻어 검찰총장 Josef Streit와 변호사 Vogel이 Stasi의 관여하에, 서독측이 제시한 명단을 기준으로 8명의 선발작업을 벌였음.
  - 8명의 최종 선발과 관련하여 동독측은 비밀리에 추진되는 사업이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하였음.
  - 동독측은 이 선발과정에 고위층이 개입되어 있다는 확신을 서독측에 주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죄목으로 여러 곳에 분산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을 선발했음.
  - 특히 당시만해도 서독측이 제시한 명단에는 소련점령치하에서 소련군정에 의해 판결을 받은 정치범이 많았지만, 동독은 소련을 의식하여 이 숫자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 하였음.
- 개략적으로만 파악된 최종적으로 확정된 8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소련군정 재판소에 의해 종신형을 받은 1명.
  - 서독기민당, 사민당, 서독자민당, 서독노조와 각각 연계를 갖고 소위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정치적 확신범 각 1명씩 4명.
  - 자발적으로 동독체제의 폭력지배에 대해 항거하다 구속된 정치범 1명 등임.
- 서독측은 이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사업의 첫 해인 1963년도에는 서독측 중개 변호사인 Stange를 통해 8명에 대해 총 320,000 DM이 현금으로 동독측 변호사 Vogel에게 전해졌음.
  - 각 정치범 1인에 대한 가격이 동·서독 양측에 의해 협상되었는데, 정치범의 정치적인 비중과 개인적인 학력·경력을 기준으로 가격을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음.
- 동독측은 서독측이 지불하기 전에 우선 3명을 석방하여 사업진행의 성의를 보였으며, 서독측으로부터 대가가 전달된 이후 나머지를 석방하였음.
  - 서독측 변호사 Stange가 동베를린에서 이들을 호송해왔으며, 서베를린에서는 “법률보호실”로 넘겨져 서독에서 정착하는데 대한 도움을 받았음.

1-10-3. 지불방식 및 거래

ㅇ 국가적 차원에서는 1963년(Adenauer 수상, Bazel 전독성 장관시) 처음으로 32만 DM의 현금을 지불하고, 8명의 정치범을 석방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DM 직접 이전은 동독과의 정치범 석방 거래 지불에서 유일한 예외로 냉전시 경화인 DM을 동독에 직접 이전하는 것을 서방동맹권과 보수당인 기민당 정치가들은 허용하려 하지 않았음.
  - 당시만 해도 서방측의 평화전략이 태동되는 단계에 불과하고 대 동구권 경제봉쇄정책을 철칙으로 삼았던 엄연한 냉전시대였으므로, 동독으로 유입된 경화가 군사 및 전략물자 구입에 쓰여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음.
  - 서독정부는 따라서 기존의 내독무역상의 물자제공(물론 내독무역은 청산단위 VE를 통해 상호정산하지만, 정치범 거래에 있어서는 서독측의 일반적인 이전임)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함.
- 1964년 7월 연방정부가 본격적인 정치범 석방을 추진하면서 대가로 교회를 통한 물자지원방식을 택하기로 방침을 확정함.
  - 서독교회에서는 1957년부터 동독의 교회와 교회산하기관의 운영을 돕기 위해 서독으로부터 외환의 이전이 불가능함을 감안 동독측의 대외무역성을 파트너로 하여 동독이 필요한 산업용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 금액만큼 동독정부가 동독의 교회를 도와주는 방식을 취해 왔음.
  - 서독정부는 인신매매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또한 외환을 동독에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정치범 석방거래시 교회를 통한 이러한 물자공급방식을 택하기로 함.
  - 교회측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을 구별하기 위해, 순수하게 동독측 교회를 돕기 위한 사업을 A형 교회사업(Kirchengeschaeft A), 정치범 석방을 위한 사업은 B형 교회사업(Kirchengeschaeft B)이라고 명명했음.
- 당시 내독관계성은 신교구호단체인 Diakonisches Werk 부회장인 Ludwig Geissel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1982년까지 Geissel이, 그 이후에는 Diakonisches Werk 회장이 A형 교회사업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B형 교회사업을 수행했음.
  - B형 교회사업은 기관으로서 Diakonisches Werk에 연방정부가 전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 A형 교회사업을 추진했던 Geissel이나 그 이후 회장 개인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이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해 Dikonisches Werk 실무자들의 협조를 받았음.

- A형 교회사업의 경우 서독측 주립교회 전권위임자(초기 Geissel)가 동독측의 대외무역성의 대표자와 협상을 벌였는데 1966년 대외무역성 산하에 외환용 대외무역총괄회사 "Koko"가 신설되면서부터 Koko의 책임자였던 Schalck(대외무역성 차관이자 동독외환확복의 총책이었으며, 내독관계 비밀협상의 동독측 주역이었음)와 제공물자에 관해 협상을 벌였음.
  - 서독교회는 동독측이 요구하는 물자 중 COCOM- list에 들어있지 않는 물자를 국제시장에서 신용하는 회사를 통해 EKD(신교연합회) 예산으로 구입하여 동독에 제공했음.
    - 동독은 내독무역으로나 COMECON 국가로부터 유리하게 구입할 수 없는 산업용 원자재를 요구했는데, 주로 품목은 초창기 미국산 코우크스탄, 면화, 철강석 등에서 나중에는 원유, 구리, 은, 고무원료, 주석원광, 수은, 산업용 다이아몬드, 원두커피 등 구입에 절대적으로 외환이 필요한 물품을 거의 망라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원자재는 거의 대부분 외국산이었으므로, 내독무역이 아닌 통과무역상의 물자공급으로 상품송장에 T(Warenbegleitschein T)로 표시되며, 서독연방경제성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음.
    - 은, 옥수수와 같이 서독이 원산지인 품목은 내독무역의 일환으로 상품송장에 U(Warenbegleitschein U, U는 unentgeltlich의 약자로 무상이라는 표시임)로 표시되었으며, 내독무역 품목과 같이 제세공과금이 면제되었음.
  - 이렇게 동독에 제공된 물품은 동독에서 현 시가를 동독 마르크로 환산(후일에는 외환용 마르크인 Valuta_Mark로 환산) 동독 독일무역은행(Deutsche Handelsbank)의 회계장부의 대변에 기입되고, 그 총액만큼이 교회를 위해 쓰여지도록 되어 있었음.
    - A 형 교회사업은 신·구교가 공히 재정부담을 하였는 바, 1957~1990년 간 총 28억 DM 어치를 동독에 공급했으며, 그 중 21억 DM은 신교가, 7억 DM은 구교가 부담하였음.

• 이러한 총물자공급액의 50%는 내독관계성의 예산(예산항목 68521)으로 보조되었음.

○ 정치범 석방을 위한 B형 교회사업의 경우 1964년부터 A형 교회사업방식에 따라 전적으로 내독관계성 예산을 통해 수행되었음.

– 처음 시작 연도인 1964년에는 전적으로 동독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버터, 식용유, 커피가 전체 제공물량의 2/3에 달했으나, 1965년부터 산업용 원자재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함(아래 도표 참조).

1964~1976 B형 교회사업에 의해 동독에 제공된 품목

단위 : 백만 DM

품목	상품송장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원유	T	–	–	–	–	–	–	–	16.9	18.3	8.0	11.5	24.0	32.1
다이아몬드	T	–	11.8	–	–	–	7.0	7.7	22.0	10.1	4.5	8.0	12.0	10.5
구리	U	–	2.8	2.0	25.0	4.0	9.8	19.0	20.3	12.0	6.0	40.2	24.5	49.1
은	U	–	4.3	–	–	6.0	4.0	6.0	8.0	4.6	14.0	20.0	30.0	30.1
수은	T	–	–	2.7	–	3.5	–	3.5	2.0	4.6	1.5	2.5	7.5	8.1
질산은	U	–	–	–	–	–	–	–	1.0	7.0	–	–	–	–
주석	U	–	–	–	–	3.0	–	3.0	11.0	4.9	4.0	–	6.0	–
로듐	U	–	–	–	–	–	–	–	1.0	0.5	–	3.5	–	–
팔라듐	U	–	–	–	–	–	–	–	2.0	1.5	4.5	2.5	–	–
철광석	U	–	34.1	–	–	–	7.1	–	–	–	11.5	–	–	–
탄성고무	T	7.1	5.1	5.0	–	–	–	–	–	–	–	–	–	–
다른원자재		3.5	7.3	15.1	5.2	12.0	6.9	2.0	–	6.0	–	–	–	–
옥수수	U	2.7												
커피	T	8.5												
카카오원두	T				1.3		10.0							
버터	U	13.9												
식용유	T	2.2	2.3											
		37.9	67.7	24.8	31.5	28.4	44.9	50.7	84.2	69.5	54.0	88.1	104.0	129.9

– 동독측은 제품결정시 1965년부터 소비제품보다는 외환절약 효과가 크고 국민경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산업용 원자재를 선호하였으며,

비밀협상에서 서독측에 의해 이러한 물자의 공급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범 석방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짐.

• 서독측은 당시 동독측의 이러한 요구를 승낙하는 방향에서 정치적인 기본방향에 관해 결정을 하였으며, 결국 B형 교회사업에 있어서 동독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나 소비재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음

• 더구나 교회단체나 실무부처인 내독관계성은 이러한 정치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음.

– 1970년대 들어서는 산업용 원자재중 상품송장에 U로 표시된 품목보다 상품송장에 T로 표시된 국제현물거래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금방 상품화할 수 있는 물자(Boersenwaren)의 비중이 커져 갔음.

• U로 표시되는 물자는 독일에서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동독으로 확실히 수송이 되나, T로 표시되는 물자는 외국산으로 연방경제성은 이 물자가 교회사업(A형·B형을 막론하고)인 만큼 외국에서 동독으로 수송되는 것에 대해 어떤 통제를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신용하는 회사를 통해 물자제공을 허가하기 때문에 이 물자가 동독에서 주민들을 위해 직접 소비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얼마든지 재판매될 수 있었음.

– B형 교회사업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물자는 원유, 산업용 다이아몬드, 구리, 은 등이었음.

• 1979년 동독측이 U로 표시된 물품인 구리에 대해 산업기술상 가공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른 T로 표시되는 품목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은 이후, 80년대 말에는 B형 교회사업 물품 중 U로 표시된 물품은 은밖에 남지 않았음.

• 이러한 B형 교회사업 제공물자 품목의 변경은 "Koko"의 총책인 Schalck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동독의 외화확보를 위해 국제시장에서 재판매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품목선택이 이루어졌음.

• 심지어 U로 표시된 물품마저도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후에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매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U로 표시된 물품의 재판매는 수송 및

창고보관 비용이 많이 들었음.

- T로 표시된 물품 중 국제현물시장에서 인기 있는 물자와 원유는 이러한 수송 및 창고보관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 신속하게 관계서류(청구서, 품질보고서, 선하증권, 보관증명서 등)의 인도로 외환과 직접 바꾸어졌음.

○ 동독이 B형 교회사업으로 제공받은 원자재를 해외에 재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1990년 통독을 즈음해서 밝혀지기 시작했음.

- Peter Przybylski는 구동독 정치국원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책에서 이러한 돈이 1974년부터 동독 독일무역은행(Deutsche Handelsbank) 서기장 구좌(Generalsekretaerkonto) 번호 0628에 입금됐다고 밝히고 있음. (Peter Przybylski 책 "Tatort Politbuero" Band 1, 2, 1991·1992 참조)
  - 독일무역은행은 이 돈을 외국에 투자하여 외환증식의 수단으로 삼았음.
  - 호네커 당 서기장은 입금된 금액 중 1년에 1억 Valuta- 마르크까지 자유로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음.
  - "Die Zeit"지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통독 직전 1989년 12월 현재 구좌잔액은 2,105,781,064(약 21억) Valuta-마르크로 나타나 있음.
  - 이 잔액은 통독 이후 연방정부가 구동독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고스란히 서독측으로 되돌려졌음.
- 연방은행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1963~1990년 동안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에 정치범 석방을 위해 지불한 대가가 총 34억 6천만 DM임으로(1 Valuta-마르크를 1 DM으로 환산할 경우) 총 지불액 중 1/2이 넘는 액수가 쓰이지 않고 회수된 셈임.
  - 동독정부는 B형 교회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동독주민들을 위해 쓰지는 않았지만, 통독 이후 반 이상을 남겨놓고 쓰지 않아 통독 이후 서독측에 의해 회수되었음.
- B형 교회사업 이외에 통과여객일괄금(Transitpauschale) 등 그밖에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에 지불한 돈들이 이러한 서기장 구좌에 입금되어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동독이 주권국가로서 실체를 인정받고 있던 당시의 내독관계내에서는 서독이 동독으로 하여금 정치범 석방을 통해 획득한 돈을 동독주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어떻게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임.
  - 그것은 "접촉을 통한 변화정책"으로 특징지워지는 내독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서독측이 감수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희생이었음.

○ 서독정부가 1970년대부터 동독에 대해 외환을 다른 경로(통과여객일괄금 등)를 통해 송금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B형 교회사업의 경우도 차라리 직접 DM을 은행을 통해 송금했었으면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과 물자거래에 따르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이미 70년대 초 대동독 화해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는 동독이 외환을 획득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냉전적인 사고방식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았으며, 예산액 중 대동독 DM 지불액과 비교하여 B형 교회사업 지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임.

대동독 DM 송금액과 B형 교회사업 지출액 비교

단위 : 백만 DM

	DM 송금액	B형 교회사업 지출액
1979	998.0	107.6
1980	918.9	133.8
1981	1044.3	180.0
1982	999.7	179.3

- 그러나 정치범 석방거래가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긴 하나 반대급부로서 직접 돈을 제공할 경우 동독측에게 인신매매라는 비난이 국제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서독측 교회라는 매개단체를 통한 물자제공 방식이 계속 통용된 것으로 보임.

1-11. 행정·사법 공조

1-11-1. 행정공조

1-11-1-1. 기본조약 체결 이전

○ 기본조약 체결 이전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양독 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처리와 관련된 행정공조가 이루어져 왔음.

- 국경부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화재공동진화, 하수처리, 홍수방지 등을 위해 행정전문가들 사이에 접촉이 있어 왔으며, 베를린지역은 거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전기·가스·수도 등의 단절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 간 접촉이 있었음.
- 사회보험, 보건·의료, 청소년복지, 수의(동물의료)행정, 경찰·공안 행정, 호적업무와 같은 분야에서는 거의 지속적으로 활발한 행정공조가 이루어졌음.

○ 이러한 행정공조 교류는 동독측이 50년대 초부터 난관을 조성하여, 제한을 받기 시작했음.

- 그러나 세무행정, 나치스 불법에 관한 복권 및 과거청산과 관련된 사항, 제2차 세계대전 피해자에 대한 상호부담조정, 유가증권의 청산, 국경지역 발생사안, 동독 피난민 관련 사안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서독측에서 행정협조를 요청해도 동독측은 전혀 응하지 않았음.
- 동독측은 60년대 말부터 그때까지 동급의 단위 행정기관 간에 수행되어 오던 행정공조의 관행을 거부하고, 동독측은 서독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안 취급부서를 중앙 정부 각 부·처 또는 관구(도에 해당)로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하여 점점 난관을 조성했음.
  - 동독측의 의도는 동·서독 관계 정상화 단계에서 동독국가 승인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행정공조는 오로지 "정부대 정부 간"에만 논의될 수 있다는 요구마저 제기했음.
  - 그러나 어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단위의 어느 기관과 접촉한다는 일관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동독측의 행정협조는 늘 지연되기 일수였음.

○ 이렇듯 동독측이 응하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접촉창구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행정공조 교류가 대체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이 분야에서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적은 결코 없었음.

1-11-1-2. 기본조약 체결 이후

○ 기본조약 체결시 동독측은 행정공조 교류와 관련하여, 기본조약 추가의정서에서 "가족의 생계 관련 사항, 후견인 문제, 개인신분증명 문제, 사회보장 문제 등에 있어서 기존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하며, 가능한 한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행정기관 간 상호지원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개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 서독의 신분증명 발행기관과 동독의 소관기관 간에 이루어짐.
- 동·서독에 떨어져 살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비 지불을 위해 부양비 지불인의 체재 여부를 조사하는 문제.
- 사회보장
  - 동독측에 거주했으며, 보험가입 대상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연금에 관한 자료와 보험가입자의 근무연한에 관한 통보를 동독으로부터 받는 일이 포함됨.
  - 사회보장 보험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자료 요청이 있을 때, 동독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 중 전쟁 중에 분실되지 않는 자료를 서독으로 통보함.
- 동·서베를린 시 간의 협조.
  - 철도 및 교외철도 운영
  - 수도 관리
  - 폐기물 처리
  - 지역 교환

○ 동독에 대한 행정공조의 일환으로 동독기관에 대한 개인의 신상기록에 관한 행정문서의 제공과 관련하여 각 주 자료보호법(Datenschutzgesetz) 제정시에 과연

동독기관을 외국의 기관으로 간주할 것인가, 독일 내의 기관으로 간주할 것인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음.

- 1987년 9월 2일 브레멘 주의회(사민당 다수)는 주 자료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동독에 대한 자료제공은 외국기관에 대한 자료제공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삽입과 관련하여 논란을 벌인 바 있음.
  - 그러나 기본법과 기본조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동독은 결코 외국이 아니므로 동독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은 서독내의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과 같이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기민당 측과 내독관계성 측으로부터 제기되었음.
  - 그 이후 동독이 기본법의 적용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독에 대한 자료제공은 서독내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절차에 준하되, 이러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과 서독의 헌법질서가 침해를 받거나 서독의 법률의 목적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 되었음.
- 동독의 입법과 판결이 서독과 다른 정치·사회·세계관적 근거로 인하여 서독의 기본법 질서와 다르게 취해질 수 있으므로, 행정·사법공조에 있어서 동독측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고, 인간의 기본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서독측이 거절할 수 있었음.

1-11-2. 사법공조

1-11-2-1. 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공조

○ 1945~1966 동안 양독 법원 간 직접적으로 사법공조가 행해져 왔음.

○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동독과 사법공조를 할 수 있는 서독측의 법적인 근거는 1953년 5월 2일자 "형사사건에 있어서 내독 간 법률공조 및 행정공조에 관한 법률"(Gesetz ueber die innerdeutsche Rechts-und Amtshilfe in Strafsachen, 1974년 10월 18일 개정).

- 이 법률에는 서독의 법원과 행정기관이 기본법 적용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 어떻게 공조요청을 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에 의하면 사법공조행위는 해당지역 검찰청의 허가를 필요로 함.
  - 단 형사처벌 전과기록은 예외로 함.
- 그러나 공조요청 내용이 "연방 법률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법공조의 대상이 법치국가의 기본원칙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에서는 사법공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사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음.

○ 동독 법무성도 서독과의 사법공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1965년 외국에 대한 동독법원의 국가 간 사법공조에 관한 법무성 내부 지침을 통해 마련하였음.

-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했으며, "양국 간 사법공조 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나,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고 요청된 것은" 반드시 협조를 하기 전에 법무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
- 1969년 동독 법무성은 또 다른 내부지침을 통해 동독의 법원과 공증기관이 서독(서베를린 포함)의 법원과 사법공조를 할 경우 반드시 법무성을 거치도록 하였음.
  - 또한 서독으로부터의 사법공조는 서독의 연방 법무성이나 주 정부 법무성을 거쳐 신청하도록 하였고, 법원에서 직접 법원으로 요청된 것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려토록 하였음.
- 이러 인해 70년도 초에는 양독 간 사법공조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음.

○ 동·서독 검찰 간에도 하급차원까지 전후 많은 협조가 있었으나, 1967년부터 서독 각급 검찰청의 공조 요청은 동독대검찰청을 통해야 했고, 동독의 대검찰청은 서독측에게 모든 요청시 반드시 서독의 대검찰청을 통하도록 요구하였음.

- 서독의 각급 검찰청은 이러한 동독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청 간의 교류가 기본조약 체결 이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1-11-2-2. 기본조약 체결 이후 공조

○ 양독은 기본조약 체결시 기본조약 제7조에 관한 추가의정서 제4호에서 "동·서독은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하여 특히 민법과 형법

분야의 법률공조 관계를 가능한 한 간소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후속협정을 통해 규정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음.

- 1973년 8월 이 분야에서 후속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는데 수십차에 걸친 회담에도 불구하고 양독 간에 합의서가 작성되지 못했음.

○ 양독 간의 사법공조 분야 회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동·서독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법률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법률정책적인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었음.

- 동독 사법부의 정치적인 예속화와 정치적인 목적의 형사처벌의 증대를 우려한 서독측은 동독측과의 사법공조에 응하는 기준은, 제반 연방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기본법의 가치체계에 알맞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과 일치할 것 등이었음.
  - 예컨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 때문에 동독으로 인도되어 사형이라는 형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서독측은 동독측에 이 범인을 인도할 수 없었음.
  -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는 1953년 법률공조법 해석과 관련하여 동독으로 인도되는 자들에게는 재판시 공평무사한 재판관의 선임과 서독수준에 상응하는 자신의 범죄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인도적 수준에서 볼 때 계속 확보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들이 정치적인 동기로 인하여 그들의 범죄행위가 가중처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음.

- 사법공조 회담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양국의 국적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임.
  - 동독은 1967년 2월 20일 독자적인 국적제도를 만들었으며, 그때까지 유효하던 1913년 7월 22일자 제국국적법(Reichs-und Staatsgehoerigkeitsgesetz)에 따른 독일의 단일국적제도는 동독지역에서는 폐지되었음.
  - 그러나 서독측은 기본법에 의해 독일의 단일국적제도를 고수하였으며, 독자적인 국적제도를 인정해 달라는 동독의 요구를 거절하여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많이 제기되었던 소송사건의 공조는 기대할 수 없었음.

○ 양독 간에는 결국 협정상의 근거없이 사법공조가 사안별로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서독측은 1970년 "내독관계 내각소위원회"에서 사법공조와 관련하여 "동독에 대한 사법공조는 관할 주 정부 법무성을 거쳐 동독법무성에 요청하며, 이에 따라 동독내 해당 지역 법원에 공조요청이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기본조약 이후에도 동·서독은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전달방법을 통해 사안별로 처리해 왔음.
  - 동독에서 처리된 사항은 직접 해당 법원에서 통고되지 않고 동독법무성을 거쳐 연방법무성으로 전달되었는데, 연방법무성은 주 법무성에, 주 법무성은 관할 법원에 이를 이첩함.
  - "내독 간 사법공조"(innerdeutsche Rechtshilfe)라고 표기된 문서에 의한 공조요청은 동독측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음.
- 검찰청장의 행정공조도 양측의 대검찰청을 창구로 사법공조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2. 외교·안보와 내독관계

2-1.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독일통일

○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과 긴장완화정책은 현상유지(Status quo)내에서의 역동화(Dynamisierung)를 겨냥했으며 분단유럽의 극복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음.

- 50년대 아데나워의 '힘에 의한 우위정책'에 대응하는 신동방정책은 베를린장벽 구축 이후의 미·소 접근에 따른 대외정책적 조건을 배경으로 추진되었음.
- 이 동방정책 추진의 의도가 진정 독일의 재통일을 겨냥했느냐 아니면 독일 내의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동·서 간의 긴장완화와 유럽의 안보에 기여하려 했던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에곤 바의 개념에 입각한 신동방정책은 첫째, 독일문제가 동·서 간 갈등의 근본적인 쟁점사항인 만큼 이를 서독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소하여 유럽의 안보에 기여하고, 둘째, 동·서독 관계의 제도화된 병존을 인정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상이성을 초월한 실질협력관계에 바탕을 둔 긴장이 완화된 공존관계를 정립하여, 동독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데 정책추진의 목표가 주어졌음.
- 따라서 신동방정책은 민족적인 이해에 입각하여 독일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기 보다는, 독일문제는 우선 새로운 유럽평화질서가 조성된 가운데 단지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음.

○ 신동방정책 추진의 대외정책적 배경은 동·서 진영 간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서독이 그 간의 대외정책을 고수할 경우 외교정책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었다는 데 있음.

-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소 간 긴장완화정책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군축과 세계평화에 새로운 전망이 제기되면서도, 유럽의 제국은 미·소의 공동지배(Kondominium) 하에 외교정책적으로 주도권을 상실할 위협에 처하게 되었음.
- 특히 서독은 할슈타인 원칙의 고수와 단독대표권 주장 때문에 더욱 외교정책의 대미의존성이 심화되어 왔는 바, 미국은 새로운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냉전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서독에 압력을 가하여 모든 현안문제를 소련과 해결하려 하였으므로 서독은 외교적 고립상태에 처하게 되었음.
-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이러한 서독 외교의 편중성에 따른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추진된 것임.

○ 신동방정책 추진의 국내정책적 배경은 그간 힘에 의한 우위정책이 실패하고 양독일 국가는 더욱 분단이 심화되었다는 데 있었음.

- 50년대부터 추구되던 '힘에 의한 우위정책'(Politik der Staerke)을 통한 동독체제의 약화 및 이를 통한 재통일 달성에의 희망은 베를린장벽 구축에 따라 동독의 체제가 국내외적으로 더욱 안정화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서독의 많은 정치가들은 분단이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힘에 의한 우위정책이 무용한 정책이 되어버렸다고 판단하게 되었음.
- 아울러 동독지도부는 신봉쇄정책(neue Abgrenzungsstrategie)과 신감시정책(neue Ueberwachungsstrategie)을 펴며, 여행, 가족방문, 관광은 물론 상호 통신마저 어렵게 하며 동독은 서독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머나먼 이웃나라'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음.

- 따라서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추진의 목표는 인적 접촉의 재개, 강화와 더불어 유럽이라는 틀 속에서 독일의 단일성 회복(Wieder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을 추구하는 것이었음.

○ 신동방정책에 대한 당시의 국내정치적인 논쟁

-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을 반대하던 당시의 야당(기민당측)은 독일이익의 포기, 나아가 재통일 포기라고 비난했던 반면, 이를 지지하던 집권여당측은 전후 독일이 서방측과 추진한 화해정책의 보완조치로써 동구권과의 화해모색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음.
- 당시의 중요한 쟁점은 과연 신동방정책이 독일의 재통일 정책을 촉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를 지속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인가? 또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게 긴장완화라는 환상 때문에 주도권을 양보하면서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특히 서독측의 국익에 위해가 되지는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
-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신동방정책의 주요 맹점은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동독체제의 변화를 겨냥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정책추진으로 인하여 동독공산지배체제를 인정해 주고 안정화시켜주며 나아가 이롭게 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데 있음.
- 신동방정책의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정책수행 간의 모순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 신동방정책의 통일달성의 기여에 대한 통독 이후의 재평가

- Die Zeit지를 중심으로 '92 서독정부의 동방정책이 과연 동독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는가, 또는 지연시켰는가라는 논쟁이 제기된 바 있음.
- 신동방정책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사들은
  - 공산독재체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는 결코 극복될 수 없으므로, 접근을 통해 체제 자체에서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 이러한 서독의 대동구(동독 포함) 화해정책 추진이 없었다면, 소련에서 고르바쵸프의 출현과 동구권의 개혁, 동독의 평화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 서독의 힘에 의한 우위정책을 고수했을 경우 동·서독 적대감을 동독지도부가 악용, 이를 정통성 유지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아 체제가 경직되어 동독주민의 분단에 따른 고통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반면, 신동방정책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사들은,
  - 신동방정책은 공산주의 체제의 점진적인 개혁가능성을 믿고, 그 체제가 오래 존속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출발하고 있어 현상유지 일변도의 역사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본적인 오류가 있고,
  - 동·서독 교류·협력 기간 동안 동독주민을 담보로 협상을 벌이는 동독지도부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여 동독정권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그 독재체제의 생명을 연장시켰으며,
  - 서독정부는 정부차원의 접촉, 동독지도층과의 대화를 동독 반체제 인사들과의 대화·접촉보다 중시함으로써 동독에서의 개혁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음.

○ 독일의 통일은 서방측의 힘에 의한 우위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서방측의 대 동구 화해정책과 서독측의 동방정책의 소산인가?

- 신동방정책의 결과 서구진영에서는 서독과 서구진영 간 관계가 정상화되고 동구진영에서는 체제의 유연화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음.
  - 신동방정책의 결과 동·서 긴장완화 상태 속에 독일은 더 이상 긴장완화의 방해요소가 아닌 양진영 긴장완화 추진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음.
  - 서독이 CSCE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독일과 소련이 비밀협상을 맺어(라팔로 조약 재판 우려) 유럽의 평화가 교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서방동맹국들로부터 완전히 불식되어 갔음.
  - 동구권은 이 정책을 현상의 고착(유럽에서 소련지배질서의 인정), 나아가 대대적 경제협력의 기회로써 포착하였으며, 동독은 더 나아가 국제적인 승인과 국제적 협력 증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베를린장벽 구축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동·서독 체제 이질화 정책 내지는 접촉 제한 정책이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었음.

• 동독측은 이에 따라 신감시정책의 강화일환으로 Stasi 요원을 2배로 증가하고 체제단속을 위한 보안장치를 강화해 갔으나, 접촉에 따른 '체제의 유연화' 과정이 불가피해 졌으며, 정권에 대한 주민의 불만은 증가하여 갔음.

- 80년대에 집권한 보수당 정부도 신동방정책 기조에 따라 동·서독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동·서독은 70년대 말부터 조성된 동·서 진영 간의 신냉전 질서하에서도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시켜 옴으로써 '독일의 독자성'이 확보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동방정책은 새로운 역동성을 갖게 되었음.
- 서독의 동방정책 뿐만 아니라 CSCE를 중심으로 한 서구진영의 대 동구 화해정책이 동구권 체제의 이완과 자유화, 체제개혁을 촉진해 갔으며, 이는 1980년부터 폴란드, 1982년부터 헝가리, 급기야 1985년부터 소련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폐기되고 소련의 동구지배질서는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동·서 진영 간 주민들 간의 인적인 접촉이 증대됨에 따라 서로 적대감이 줄어들고, 체제불만 세력이 비교적 자유로이 체제저항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방정책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자체 폐기로 동독주민들이 소련의 군사적인 개입 의사가 없다는 확신과 체제극복에의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은 직접적으로 신동방정책 추진의 결과라기보다는 소련체제 붕괴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소련의 대동구 지배질서와 내부체제의 붕괴과정은 서독의 신동방정책 추진 및 그에 따른 서구진영의 대동구 화해정책과 불가분의 인과관계가 있으며, 결국은 새로운 대동구 화해정책으로 전환한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
- 한편 이러한 동구권의 붕괴에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무한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새로운 힘에 의한 우위정책-50년대 미 국무장관 델레스의 힘에 의한 우위정책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음-이 서방의 동구권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50년대의 힘에 의한 우위정책은 서독체제를 공고히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동독체제를 개방화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신동방정책을 통해 비로소 동독체제 내부로부터 이완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체제이완 과정이 레이건의 새로운 힘에 의한 우위정책으로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2-2. 동독의 대서방 외교정책

○ 1972년도까지 동독은 소련과 동구국가를 제외한 유럽의 어느 한 국가로부터 국제법적, 외교적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

- 그 이유는, 서독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은 유럽국가가 동독을 인정하게 되면 독일의 분단을 인정한다는 점과, 서구방위체제가 정치도덕적, 안보상의 대원칙인 서독의 할슈타인원칙(55. 8)을 고수함으로써 바르샤바기구에 대해 견제를 했기 때문임.
- 그러나 동독은 이와 같은 미진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럽내 기타 비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인정을 통해 상호왕래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였음.
  - 그 결과 60년대 말까지 터키를 포함한 유럽 12개국에 동독 대외무역회(Kammer fuer AuBeuhandel=KfA)의 사무소를 개설함.
  - 핀란드만은 소련과의 특수관계상 동베를린과 헬싱키에 무역사무소를 상호 개설하여 준영사관계를 수립함.
- 서독과 기본조약 체결(1972) 이후 UN에 가입(1973)한 동독은 외교공세를 취하여 1969. 1. 1부터 1973. 12. 31까지 86개국과 외교관계 수립에 성공하였음.

○ 동독 외교정책의 특징

- 동독외교의 기본원칙은 평화공존과 반제국주의 투쟁이었으며, 비사회주의 및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동독외교정책의 내용은 정치분야에서는 수세적, 무역분야에서는 공세적 성격을 취함.
- 동독공산당(SED)은 탈냉전의 국제관계를 이용하여 경제·문화·학술·기술 접촉의 강화를 꾀하며, 동독경제의 안정을 통해 바르샤바기구와 COMECON 내에서 정치역량 강화를 시도함.
- 1975년 헬싱키에서 CSCE에 서명한 동독은 체제 간 교류로부터 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동독 집권체제의 안정을 취하고자 내적으로 체제단속을 강화함.
  - 따라서 서유럽제국과의 정치적 협력을 비롯한 국가 간 관계의 정상화는 당 지도부의 안보정책적 판단에 의존했음.

○ 대 EC 관계

- EC가 불변의 "독점자본주의"라는 동독의 프로파간다가 국제정치적 현실에서 모순으로 파악됨으로써 1973년부터 소련과 동독지도부는 서유럽의 정치·경제·군사적 잠재력 증가를 비판하면서도 대 EC 외교의 강화는 탈미국 현상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화를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음.
- 동독은 유럽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국제적 주전장"으로 간주하면서도 동·서 간 긴장완화를 이루는데 SED의 노선이 공헌하였으며, 소련의 대서구관계 정책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음.
- 특히 군축정책적 논쟁에 있어서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서독과 동독자체의 유럽의 평화를 위한 책임감을 강조했음.
  - SED 지도부는 약소국인 동맹국들의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헤게모니 주도국인 소련보다도 유럽 및 강대국 간의 군비제한 회담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함.
  - 이로써 동독은 80년대 초부터 소련 및 동맹국의 정책과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군축 평화정책을 표방하여 대부분의 유럽제국으로부터 책임감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유럽국가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받게 됨.
- 동독은 당면하고 있는 자체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경제 및 기타분야에 걸친 "범유럽 협력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고도산업 선진국인 서유럽제국과 접촉을 시도했음.
  - 그 결과 1970년대부터 소련의 동의하에 대서유럽 산업국과의 양국관계의 정상화("강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서독에서 콜·겐셔 내각의 등장과 함께 서독이 대서방 결속을 강화하자 동독은 독일정책 추진에 있어 대화자세를 보이며 매우 유연해졌음.
- 동독의 대유럽정책의 문제점으로서는 이데올로기적 고정관념 때문에 끊임없는 실질정책적 균형모색을 근거로 양국 간 협력의 "정상화"를 꾀하면서도, 혁명적 진보세력 및 외국공산당(예 : 서독의 DKP)을 지원하면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이중성을 보였음.

- 동독의 유럽정책은 또한 제2차 CSCE 마드리드 회담시 동독이 유럽군축회담 참여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CSCE 벨그라드 회담(1977/78)시 서유럽측의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던 인권 및 인도적 문제 조항(Ⅲ항)을 동독과 동구권이 계속하여 거부하였음으로 실질적 관계개선에 한계를 노출하였음.
- 동독지도부는 계속적으로 체제내에 독자적 평화운동을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통제되지 않은 서방측 정보와 여론의 입수, 자유여행도 공식사절단과 당 간부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았으며, 국제사면위원회의 동독형무소 방문도 동독의 이미지 손상 때문에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서유럽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관계 수립은 이루어질 수 없었음.
- 유럽과의 주요 관계개선 내용을 보면,
  - 1989년 현재 43개국과 영사협정 체결
    (미국 1973, 영구 1973, 프랑스 1980).
  - 장기적 무역협정 및 경제학술기술 협력협정 체결
    (1973년 영국과 10년 간, 1975년 프랑스와 5년 간으로 연장).
  - 일부 서유럽국가와 도로교통협정, 항공교통협정 체결.
  - 6개 비사회주의 국가에 동독 무관부 설치
    (NATO 회원국 벨지움, 이탈리아 포함).
  - 1974년-1982년까지 EC, EFTA 및 국제기구 간에 150여 개에 이르는 협정, 약정, 의정서, 합의서 등을 경제·기술·문화·미디어·대학교류 분야에 걸쳐 체결.

ㅇ 대 미국 관계

- 1974. 9. 4일 대 미국 외교관계 수립은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는데, 동독 외교정책은 북미대륙에 대한 문화정책적 이미지 개선(심포니 오케스트라 파견 및 미술전시회)에 중점을 두었으나, 미국-동독 간 경제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담은 성공치 못했음.
- 1979년 이래 제한적인 학술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미국측은 다만 준국가기구인 "International Research and Exchange Board"를 통해 동독과 주로 접촉을 하였음.

- 대미관계 정상화를 막은 장애요소로서는 동독정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태인에 대한 NAZI 보상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었을 뿐이라 미국재산 탈취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등 반유태주의 자세 때문이었음.
- 또한 미국의 베를린문제에 대한 입장은, 특히 4대국 점령상태 유지의 고수로 인하여 미국-동독 간의 관계개선은 기대하기 힘들었음.
- 그러나 무역면에서 보면 최근 수년 간 미국은 동독에 대한 사료를 비롯한 농산물 최대 수출국이었음.

ㅇ 대 아시아 관계

- 1977. 12월 호네커의 필리핀 방문과 1977. 11월 정치국원 Mittage의 일본방문은 동독외교정책의 국제적 범위확장으로 평가되었음.
  - 필리핀과 일본의 두 나라는 동독과 경제협력 및 재화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동독의 아시아정책은 독자적 정책이 없이 소련의 영향력하에 수행되고 있는데, 소련이 주장하는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적극 지원하지는 않았음.
- 대 일본관계는 1973. 5. 15일 외교관계 수립 이후 일본기술의 노하우 수입을 비롯한 수출관심을 바탕으로 1954년부터 시작된 대외무역 관계를 발전시켜 경제관계의 강화에 중점을 둠.
  - 1975년 초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무역협정 체결
  - 1977년 6억 마르크 상당의 차관계약이 체결
  - 1978년도 중일 친선조약 체결을 동독은 대소련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SED의 당 차원에서는 일본 사회당을 계속해서 관계증진을 주장하고, 소련을 비판하는 일본 공산당에 대해서는 거리감 유지함.
  - 1981. 5월 호네커 일본방문은 SED의 여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양국간 경제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1981년 약 10억, 1982년 약 13억 마르크 단위) 정치적 성과로서는 SED 당지도부의 권위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

2-3. CSCE와 내독관계

2-3-1. 서독측의 독일(통일) 정책과 CSCE

○ 1975. 8. 1 헬싱키에서 CSCE 3개 참가국들이 최종의정서(Schlussakte)에 서명하기에 앞서, 서독 외무장관 Genscher는 1975. 7. 11 연방상원에서 CSCE가 독일통일문제 해결에 있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사민·자민 연정)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 CSCE는 독일과 베를린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아님, 이 회의는 독일에 대한 평화조약(Friedensvertrag)이나 준평화조약(Ersatzfriedensvertrag) 체결을 논하는 회의가 아님.
- CSCE의 권고사항, 결의문, 선언문 등은 단지 정치적·도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선언일 뿐 새로운 지역적인 질서를 규정짓는 국제법이 될 수는 없음.
- 서독정부는 CSCE 최종의정서 문안 작성시 CSCE의 결정사항으로 인해 종래 독일(통일)정책의 목표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음.
- CSCE 최종의정서는 기존의 조약과 협정에 의한 서독정부의 각종 권리와 의무사항과 결코 상충될 수 없음.
  - 특히 전체독일은 계속 존속하며 독일 전체에 대한 4대 전승국의 권리와 책임문제는 불변임.
  - 서방 3대국과 체결한 독일조약(Deutschlandsvertrag) 제7조 1, 2항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독일국경확정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자유민주적인 헌법을 통해 독일통일을 실현한다는 내용 등은 불변임.
- 대동독 관계에 있어서는 제국가가 동등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대원칙하에, 국제법상의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제국가들 간의 국경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을 CSCE를 통해 재확인함.
- CSCE 원칙선언에서는 다른 원칙과 아울러 제민족의 자결권이 재확인됨.

○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당/기사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독정부의 CSCE 최종의정서 서명에 반대하였음.

- CSCE 최종의정서는 분단독일과 독일국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지 못하며, 더구나 전체 독일민족의 자결권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CSCE 선언 내용 중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상호 상반된 해석 때문에 양 진영간 화해 대신,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분쟁의 소재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CSCE 선언내용에는 인적왕래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한 등 서방측이 요구한 사항들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서독 정부는 CSCE 최종의정서 서명시 독일통일문제와 관련하여 3가지 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했음.

- 독일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지 여부
  - CSCE가 독일통일문제를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완결짓는 회의인가, 아닌가?
- 국경문제 확정문제
  - 동·서독 간의 국경은 영원히 변경될 수 있는가, 없는가?
- 독일민족의 자결권 행사문제
  - 동독주민들의 자결권 행사는 영원히 유보되는가?

○ CSCE를 통한 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논란

- 서독정부의 입장은, CSCE의 최종의정서는 전체독일의 운명을 국제법적으로 최종적으로 규정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음.
  - 특히 영토적인·국제질서적인 측면에서 현상유지(Status quo)를 고착화시키는 준평화조약의 성격을 띠지 않음을 강조했음.
- 이미 이러한 독일문제의 미해결 상태(offenhal der deutschen Frage)는 서독정부가 동방조약, 동독과의 기본조약 체결시 누누이 강조한 바 있음.
  - 서독정부는 독·소조약 체결시 소련측에게, 기본조약 체결시 동독측에게 각각 "독일통일에 대한 서한"(Brief zur deutschen Einheit)을 보내, 이러한 조약들이 유럽의 평화를 확보하고, 독일민족이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통일을 달성해 나가는 서독정부의 정치적인 목표와 상충되지 않음을 천명한 바 있음.

- 이러한 독일통일문제에 대한 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CSCE 과정 참여를, 기본조약정신을 양 진영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CSCE 최종의정서 범주1 제10원칙 1절·6절에는 서명국들은 "국제법의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적인 기본원칙에 기인하는 모든 국제법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최종선언은 기존의 국제법적인 의무와 권리의 수행, 각종 조약과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

- 이러한 CSCE 최종의정서내의 비저촉조항(Unberuehtheitsklausel)은 CSCE 선언이 독일과 관련해서 맺은 동방조약과 동·서독 기본조약에 포함된 권리와 의무이행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국경문제

– 이미 동방조약과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시에도 국경문제는 정치적·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음.

- 기본조약 전문 제3절에는 국경의 불가침(Unverletzlichkeit der Grenze), 영토보존의 존중, 모든 국가의 주권존중이 유럽 평화의 기본전제조건이 됨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국경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평화적인 국경의 변경은 허용되는 것으로 서독측은 이해했음.

- 독·소 간 모스크바 조약 체결시에는 이러한 국경의 불가침이 국경의 불변성(Unverletzlichkeit der Grenze)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경의 평화적인 변경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인지가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나, 모스크바 조약에도 불구하고 양독일 국가의 통일과 내독 간 국경의 평화적인 변경은 허용되는 것으로 서독정부는 이해했음.

– CSCE 최종의정서 원칙선언 제1원칙에서는 명시적으로 상호동의하에 국경을 변경시킬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

- "서명국들은 그들의 국경을 국제법에 부합하는 한, 평화적인 수단과 합의를 통해 변경시킬 수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CSCE 최종의정서 범주1 원칙선언 제3원칙, 제4원칙에서는 각각 서명국들의 국경의 불가침과 영토의 보존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선언이 내독 간 국경을 영구히 고착화시키거나, 독일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서독측의 입장이었음.

○ 민족자결권 문제

– 동·서독 기본조약 제2조에는 UN헌장의 제원칙을 열거하면서 자결권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자결권이 국제법적인 성격을 갖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음.

- 과연 자결권 행사의 주체가 동·서독 국민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동독에서 주장하듯이 동독주민들은 그들의 자결권 행사를 이미 향유하고 있는가 등이 문제되었음.

– CSCE 최종의정서 원칙선언 제8장에서는 서명국들이 제민족(Voelker)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기본조약 규정에 비해 "제민족"(Voelker)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모든 서명국들은 제민족의 동등성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영토의 보존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협상할 때는 UN헌장의 목표와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한다. 모든 민족은 항상 이러한 자결권과 동등권 원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그들의 내적·외적인 정치적인 지위를 외부의 내정간섭 없이 결정하고, 그들의 희망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인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CSCE 최종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독일통일문제는 독일민족 전체가 완전한 자결권 행사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외부의 간섭없이 결정할 때까지 미해결된 상태이며, 독일통일문제는 독일민족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되는 것임.

- 서독측은 동독지역을 소련점령지역이라고 명명하며, 동독주민들은 공산통치하에서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 CSCE에 참여하는 서독의 입장은, 기본법에 명시된대로 "통일유럽의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기본법적인 명제는 독일민족의 분단이 극복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서독정부는 "독일통일에 대한 서한"을 통해 "독일민족이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그들의 통일을 쟁취하는 가운데 유럽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그들의 대원칙을 선언한 바 있음.
- 독일통일은 유럽에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이러한 유럽평화구조 창출의 중요한 기본축으로 EC, NATO, CSCE 등을 꼽았음.
- 서독정부는 CSCE가 이러한 유럽의 평화구조정착에 기여해야하며, 이러한 평화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식적인 접촉 이외에도 국가의 구성원인 주민들과, 사상(정보)과 물자가 자유스럽게 접촉되어야만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었음.
  - 이러한 자유는 동독주민들의 인권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독일민족이 자유롭게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을 갖출 수 있다고 파악하였음.
- 브란트정부는 독일통일문제 해결에 있어서 향후 CSCE가 갖는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보았음.
  - CSCE 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동독과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분단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독일의 분단상황을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CSCE는 서독의 대동구 화해정책의 일환으로 동구권 국가들과 맺은 양자 간 조약인 동방조약을 다자간 관계로 재설정을 함으로써 유럽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만듬.
  - CSCE는 이제까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정치적인 긴장완화와 군사적인 안전보장의 확보를 상호 연계시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파악함.

2-3-2. 동독측의 CSCE 과정 참여에 대한 입장

○ 동독측은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그들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인 "평화공존"(friedliche Koexistenz) 원칙의 범주내에서 해석하였으며, CSCE 과정에의 참여입장 또한 마찬가지였음.

- 따라서 헬싱키 최종의정서 범주 1인 원칙선언 부분의 규정도 영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상의 인정을 의미하나, 결코 사회·경제적인 현상의 고착화나 이념적인 공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동독정부의 평화공존개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평화공존"은 계급적인 이해가 상반된,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질서를 갖는 국가들 간의 관계를 의미함.
  - "평화공존"은 정치적·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간 협력을 지향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념적인 계급투쟁 노선을 견지함.
  - "평화공존"은 "협력"(Kooperation), "대결"(Konfrontation)을 포괄하는 개념임.
- 따라서 동독정부는 CSCE의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해석과 그 이행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 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체제내의 사회·경제적 질서의 상호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체제수호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음.

○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국제법적인 성격과 관련해서, 동독정부는 서독정부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견지했음.

- 서독정부는 동 최종의정서가 UN 헌장 102조(국제적인 조약과 협정의 등록)에 의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격상될 수 없는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했음에 반해, 동독정부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문서임을 강조했음.
  - 특히 최종의정서 범주I(Korb I)에 규정되어 있는 10개의 원칙선언 중, 동구공산주의 체제의 실체를 인정하는 "영토의 불가침"과 "내정불간섭" 조항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여 동독의 독자적인 국가성을 강조하려 했음.

- 1975. 7. 30 Erich Honecker 동독공산당 서기장이 주장했듯이 동독측은 헬싱키 최종문서를 전후 양진영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에 지장을 주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장전으로 보았음.
  - 호네커는 동·서독 기본조약과 UN 동시가입에 이어, 양국이 CSCE 최종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독일 내에 "완전히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2개의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승인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CSCE 최종문서를 통해 독일통일과 독일민족의 피점령상태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소위 "독일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서독측이 "독일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Deutsche Fage ist offen.)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종문서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최종문서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동독측은 범주I의 원칙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인 공세의 입장을, 범주II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범주III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음.

- 동독측은 범주I을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핵심적 부분"으로 간주했으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의 존중", "국가 간 협력" 등의 원칙보다는, 서독에 대해 독립국가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국경의 불가침"과 "국내문제 불간섭" 등의 원칙을 강조했음.

- 범주II에 대해서는 동독측은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음.
  - 왜냐하면 동독은 서독과 이미 내독경제교류를 분단 직후부터 지속해 왔고, 서독을 통해 EC의 준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음.
  - 다만 내부적으로 기존의 동·서독 간 경제교류방식인 단순한 물자교류를 넘어, 생산합작 등 경제협력 문제를 범주II를 통해 실현해 보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음.

- 범주Ⅲ에 대해서는 동독체제의 정통성 흠결을 의식하여, 끊임없이 서독에 대한 이념투쟁을 강조하여 극히 수세적으로 대처하였음.
  - 역사적인 공동체 형성 경험, 언어·문화 등의 공통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정치·사회·경제적인 질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공산당 지도부의 노력은, 서독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 주민들로부터 정통성을 획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늘 실패를 거듭해 왔는 바, 이로 인해 범주III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동독지도부는 이데올로기적인 오염에 대해 극히 경계하여 왔음.
  - 동독정부는 헬싱키의정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들이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화해할 수 없는 계급투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범주III에 규정된 체제가 다른 국가들 간의 인간적인 접촉에 대해서 그 실행조치와 함께 내부적으로 이념적인 투쟁을 강화하여 나감.

- 동독주민 중 서독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들이, 동독이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이를 근거로 이주허가신청을 폭발적으로 요구하자, 이러한 CSCE 과정 참여로 인한 동독체제 정통성 문제와 관련한 파급효과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헬싱키 최종의정서 전문이 동독주민들에 공표된 이후 더 많은 동독 주민들이 이주 신청을 냈는 바, 1976 당시 서독 언론은 동독이주 수를 약 10~20만으로 추정했음.
  - 특히 1976. 8 Riesa에서는 주민 70명이 집단으로 이주신청을 내는 사례도 있었음.
  - 그러나 동독관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이주민 수는 동독측의 CSCE 최종의정서 서명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음.

----------〈헬싱키 최종의정서 주요 내용〉----------

- 제1범주(Korb I)

〈서명국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선언〉

- 주권의 평등
-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의 배제
- 국경의 불가침

- 국가영토의 보전
-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 내정 불간섭
- 사상, 양심, 종교·확신의 자유를 포괄하는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
- 제민족의 동등성과 자결권 보장
-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
- 국제법상의 제의무의 성실한 이행

〈안보문제〉

- 군사적인 신뢰 구축, 안보, 군축
-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 군축과 관련한 제반문제

– 제2 범주(Korb II)

〈경제·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 무역증진
- 경제협력, 공동 프로젝트 추진
- 과학·기술협력
- 환경문제 공동 해결
- 교통 및 관광진흥 분야 협력, 이주자들의 경제·사회적 측면의 문제해결 공동노력, 전문기술인력 직업교육 등

– 제3 범주(Korb III)

〈인간적인 접촉 분야〉

- 가족 재결합·가족 상봉 추진
- 국적이 다른 나라 국민들 간의 결혼 제한조건 제거
- 개인적·직업상의 이유로 인한 여행 적극 추진
- 관광여행의 조건 개선
- 청소년들 간의 접촉 증대
- 체육분야 교류 증대

〈정보 교류 분야〉

- 정보의 교환, 접근, 전파의 개선
- 정보교류 분야 협력사업 추진
- 언론인의 활동조건 개선

〈문화분야〉

- 문화분야 교류·협력 증대

〈교육분야〉

- 학문교류 장려
- 외국어·문화 소개 촉진
- 교습방법 교환

2-3-3. CSCE가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

2-3-3-1. CSCE가 내독관계 진전에 미친 영향

○ CSCE의 정신과 헬싱키 최종의정서가 내독관계를 급진적으로 진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가 서명될 때, 동·서독 간에는 이미 기본조약을 비롯한 많은 조약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음.

- 비록 동독으로부터 많은 제한을 받기는 했지만, 통행·통상·통신 분야에서 주요 협정이 체결되어 기초적인 인적·물적, 정보의 교류가 실현되고 있었음.

–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 범주III에 규정된 제한없는 주민들 간의 인간적인

접촉, 문화교류, 학술분야 교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양독 간의 후속협정 체결은 헬싱키 최종의정서가 서명된지 훨씬 시간이 지난 1980년대에 가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음.

- 청소년 교류 합의 ('82. 9), 문화협정체결('86. 5)
- 도시 간 최초자매결연('86. 10), 과학·기술협정체결('87. 9)

○ 동독측은 CSCE 과정 참여에도 불구하고, 헬싱키 정신을 양독관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할 때, 우선 동독체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체제유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분야부터 서독측과 타협을 했고, 체제유지에 부담을 주는 분야는 서독과의 합의를 미루어왔음.

- 따라서 동독측에게는 CSCE 최종의정서가 그들의 대서독관계를 설정하는데 다른 요소(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득)들과 함께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었어도,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동독측이 CSCE 과정 참여를 통해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는 동독의 광범위한 국제법적인 승인이었던 만큼, 서독측의 이해가 관철되는 내독관계의 실질적인 진전문제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음.

○ 동독측은 헬싱키 최종의정서 범주III에 규정된 사항들의 이행으로 인한 체제내부로부터의 잠식과 그에 따른 내독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주I의 원칙(특히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지켜지는 한에 대해서만 범주III의 실현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음.

○ 반면 서독측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이 동독측에 의해 취해져야만 CSCE가 내독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음.

- 동독주민의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의 침해사례를 최소한 개선하고, 열악한 상황이 개선될 것.
- 내독 간 방문여행 등 인적교류를 통해 주민들의 접촉과 만남의 기회를 넓혀, 분단에 따른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

○ 양독 간의 관계는 동독정부가 특히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가장 체제를 위협하는 민감한 문제로 받아 들였던 동독주민들의 서독 방문 및 이주에 대한 열망이 압력으로 작용됐다는 점에서 CSCE 여타 서명국 간의 양자관계와 달랐음.

- 또한 서독정부는 이주문제 해결을 특별사업으로 지정, 동독과 비밀협상 통로를 개설하여, 다른 서방 국가들의 외교채널과는 다른 방식을 취했음.
  - 정치범석방과 이산가족 재상봉문제 등은 CSCE를 통한 외교적 접근방식이 아닌, 동·서독 간 직접 비밀 접촉 방식을 통해 해결했음.
- 서독정부는 CSCE 후속협정협상에서 자유이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을 국가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음.
- 동·서독주민들 간의 인간적인 접촉의 증대를 위한 서독정부의 노력은 친척들 간의 상호 방문, 국경부근거주 이웃들 간의 방문 등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의 개선에 주력함.
  - 특히 방문여행자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최소 의무환전액의 감액과 폐지를 강력히 주장함.

○ 동독측의 CSCE 선언 내용 이행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서독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음.

- 교회나 그 보호 하에 있던 반체제 단체에 대한 정치적인 활동의 허용문제, 신교단체, 환경운동단체 탄압.
- 정치범 수의 증가.
- 이주희망자들에 대한 직업적·사회적 박해.
- 국경탈출자에 대한 총격 사살행위.
- 교회나 평화시위, 반체제그룹에 대한 서방 언론인들의 취재 방해.
- 정치적인 박해 수단이 되는 형법의 재검토 문제.

2-3-3-2. CSCE를 통한 내독 간 인적·정보교류 확대

2-3-3-2-1. CSCE 과정에서 범주III의 실천을 위한 서방진영의 노력

○ 2차 대전 이후 군비 경쟁을 통한 '철의 장막' 상태에 놓였던 양 진영 간의 국경은 긴장완화기를 거치며, 국경이 점차 이완되기는 했으나, 동구권이 붕괴될 때까지 사람, 정보, 사상 등의 완전한 자유로운 이동은 실현되지 못했었음.

- 양 진영 간에 이러한 사람, 정보, 사상 등의 자유로운 왕래문제가 국제적

협상의 의제로 상정된 것은 1955. 7 제네바에서의 4대국 정상회담이 처음임.

- 여기서 독일통일, 유럽의 안보, 군축에 이어 네 번째의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음.
-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서방측은 '접촉을 통한 인간적인 고통경감', "더 많은 정보교환" 등을 대동구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끊임없이 제기하였음.

– 냉전기에는 실제로 이러한 인적·정보교류가 국제적 차원이 아닌 교회단체, 정당, 청소년단체, 문화기관에 의해 선도적으로 이루어졌음.

-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은 동구권으로부터는 이데올로기적인 사상통제와 관료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방해를 통해 제한을 당했고, 서방측 정부로부터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반공주의에 입각한 불신 때문에 회의적으로 평가되었음.

– 동구권이 점차 이러한 인적·물적·정보교류의 제한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말부터임.

- 냉전기간 동안 경제·사회정책을 바탕으로 동구권 국가들 간에 확고한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상대편 체제에 사회를 조심스럽게 개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음.
- 또한 서방측으로부터 외환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여행자들의 여행조건을 완화하여 갔음.

○ 서방동맹국들은 CSCE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사람과 사상과 정보의 더 많은 자유왕래"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는 바, 그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음.

– 이러한 "사람과 사상과 정보의 자유왕래"가 실현될수록 양 진영 간 긴장완화정책이 동구권 국가들에 있어서는 국내정치적으로 볼 때 저변으로 확산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 양 진영 간의 장기적인 평화적인 공존관계는 더 많은 주민들의 접촉과 의견교환,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음.

– 그러나 이러한 양 진영 간 긴장완화 정책이 과연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사회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가 양 진영 간 교류에 따른 사회의 혼란과 체제의 이완을 우려하여 반대로 강력한 체제수호 정책을 내부적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방동맹국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

– 이러한 향후 전망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방측은 CSCE 협상의 성공여부는 단순한 외교적인 긴장완화 정책을 넘어서 이러한 "사람, 사상, 정보의 자유왕래"를 촉진하고, 장려하는데 달려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헬싱키 최종의정서 작성에서 서방측의 요구로 범주III을 설정하고 "문화와 교육분야 교류의 증대,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 인적 접촉 증대,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Korb 3 전문) 등에 동·서양 진영도 합의하였음.

– 그러나 서방측은 이러한 원칙적인 선언을 동구권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선언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했고, 더구나 이 선언을 서로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후속협상을 통한 보완이 요구되었음.

○ 베오그라드 후속회의('77-'78), 마드리드 후속회의('80-'83)에 이어 통독 이전 마지막 CSCE 후속협상이었던 Wien 후속회의('86-'88)의 최종문서(Schlussdokument)에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보장에 대해 상세한 서명국들의 실천조치가 명기되어 있음.

2-3-3-2-2. Wien 최종문서를 통한 동독의 인권상황개선 및 동·서독 인적·정보교류 확대조치

○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권리(Recht auf Freizuegigkeit)

– 동독측이 1988년 11월 30일 제정한 "동독주민의 외국여행에 관한 규정"(Verordnung ueber Reisen von Buergern DDR nach dem Ausland)과 Wien의 최종선언 정신에 일치하는가가 문제됨.

- 서독측은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한 자유로운 이주의 제한규정(이유: 국가 안보·공공질서, 공중보건, 공공관습

등)을 동독측이 빈번히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동독주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Wien 최종선언 작성시 노력했음.

- 동독측은 Wien 최종문서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적 의무와 CSCE가 부과한 의무에 상응하도록” 동독의 국내법을 개정할 의무가 부과되었음.
- 동독측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빈번히 자의적으로 구실로 삼은 “국가안보”에 관해서도, Wien 최종문서에는 ”지속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으며 그 제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또한 자의적으로 이러한 제한조치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독측이 제한조건으로 제시한 이유로 이주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제한조건에 대해 법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마다 제시한 제한 조건상 변화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동독측에 부과됨.

- Wien 최종문서에서는 여행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가족 재결합 및 결혼으로 인한 이주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신청자들의 불안을 덜게 하고 있음.
  - Wien 최종문서에서는 이러한 이주의 신청과 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신청자들이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 여행규제 완화

- Wien 후속협상에서는 서독측의 문제제기로 동독측이 동독을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부과하고 있는 최소의무환전(Mindesumtausch) 제도가 문제가 되었음.
  - 동독측의 완강한 반대로 최소의무환전액 제도의 완전폐지나 환전액의 감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CSCE 최종문서(Korb Ⅲ 11, Korb Ⅱ 39, 4절)에 앞으로 최소의무환전액을 인상하는 것은 Wien 최종문서가 지향하는 목표에 상충된다는 구절을 삽입하는 선에서 절충되었음.
  - 동독은 최소한 가족방문의 경우부터 점차 이러한 최소의무환전액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 친척 방문의 경우 다른 친척 여러 명과 함께 공동으로 친지를 상봉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부과되었는 바, 이를 통해 더 많은 친척들이 함께 공동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음(Korb III 7).
  - 또한 친척을 방문하는 기간도 “상당 기간”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지웠음.
- 1988. 11. 30자 여행허가 규정에서 허용하는 친척의 범위도 확대하여, 먼 친척에게도 방문기회가 주어지도록 배려하고 있음.
- 동독은 국경통제지역 내에서는 서독 방문자들이 개인 가정에서 숙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특히 노약자나 자녀가 많은 방문자들에게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가족 경조사로 인해 동독을 방문하는 일반 여행객에게도 이를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
  - 국경지역 부근 방문과 베를린 지역 방문시는 여관에서만 숙박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러한 동독 내의 자유로운 여행제한 조치들이 CSCE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되었음.
  - 또한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한 여행과 단체관광시도 친척집 등 여관 이외의 장소에서 숙박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는 바, 이것도 계속 검토의 대상이 되었음.
-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방문과 체육행사 교환개최 등은 특히 국경의 통과로 갈라져 살게 된 도시내의 가족과 이웃들의 방문을 촉진시키기 위해 장려되었음.
- 동독은 종교활동상의 접촉과, 방문여행, 성지순례와 종교집회 참석을 장려하도록 함.
- “긴급한” 가사로 동독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여행허가 신청서 처리를 3일 이내, 또는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함.
- 개인적 또는 직업상 “중요한” 방문의 경우는 신속하게 여행허가 업무를 처리하며,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는 바, 특히 법정출석, 상속문제 처리, 상속재산 처리, 재산의 관리, 학업 등은 그 중요도를 감안 배려해야 함.
- 동독정부는 Wien 최종문서에 따라 청소년 여행을 장려하며, 학생과 교사들의 교환방문을 주선할 의무를 가짐.

• 학생들의 경우 친척집에서 숙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짐.

- 동독측은 동독 여행·방문시 방문자들이 지참하는 물건에 대한 반입·반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한 고액의 관세와 통과수수료를 부과했는 바, 이를 완화할 의무가 부여됨.

- 공무상 여행으로 분류되는 과학·문화·체육,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방문의 경우는 방문자들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자유로이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동독으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자 중, 이미 동독을 불법으로 탈주했던 자나, 동독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자와의 접촉을 갖고 있는 서독측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입국허가나 나지 않았는 바, 이들에게도 만약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가사의 경우는 이를 허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인권침해시 법률구조 또는 소원제기 가능성 부여

- Wien 최종문서에는 이주허가 등 중요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허가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자신의 인권이나 기본권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공적인 경로"를 통해 소원(Beschwerde)을 제기할 가능성이 주어지여. 그러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때는 법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가능성은 최초로 헬싱키 후속협정인 마드리드 최종문서에서 정치상황과 관련한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 침해사례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그 이후 Wien 최종문서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음.

• 특히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은 이러한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부여되었음.

○ 인도적인 차원의 공동협의회 개최

- Wien의 최종문서에 의하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장과 관련된 인도적인 차원의 공동협의회 개최를 통해 서명국들 상호 간에 그 침해사례에 대해 협의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음.

• 모든 서명국들은 미해결된 인권문제나 인권상황개선과 관련하여 양자 간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체 서명국들의 공동협의회에서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짐.

- 이러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동협의회는 내정간섭을 근거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다른 서명국들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동구권 국가들의 노력을 사전에 봉쇄하는 효력을 가지게 됨.

○ 종교의 자유

- 서독측으로서는 동독내 신교의 역할 특히 반체제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던 특별한 역할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CSCE 과정에서 국제적인 보장장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특히 최종문서에서는 서명국들에게 "신자와 무신론자들 사이에 상호 관용과 존중의 분위기"를 창출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동독측은 신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폐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특히 신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음.

○ 민권운동단체 활동 보장

- 동독내에서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의 확보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 또는 체제내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동결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단체, 환경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들은 동독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Wien 최종문서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의 긍정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단체들 간 또는 구성원 간의 접촉과 상호 의견교환의 기회를 장려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CSCE 서명국들이 인정한 이 단체들의 긍정적인 역할이란 특히 CSCE의 결정사항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며 여론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CSCE 규정을 이행하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말함.

- 특히 서명국들은 이러한 단체들이 CSCE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상호정보교환과 자유로운 의상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반조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 방송전파 방해의 금지.
- 신문·잡지의 자유로운 유입.
- 언론인의 활동보장.

2-4. UN에서 동·서독의 활동

2-4-1. UN 가입 이전의 동·서독과 UN

2-4-1-1. UN내 논의대상으로서의 독일

○ UN헌장의 소위 "전국조항"(Feindstaatenklauseln : 제53조,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독일은 전승국에게 과거의 적대국에 대한 조치시 UN 헌장상의 의무수행에 구속될 필요가 없음을 허용하였음.

- UN이 창립된 후 수년 간에 걸쳐 나치스 독재의 범죄에 대한 단죄가 끊임없이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UN의 결의로 독일에 대해 이와 관련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음.
- 다만 전후 인도적인 분야에서 기아, 강제노역, 피난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독일에서도 필요함이 강조되었음.

○ UN은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한 영향력만을 행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후에 곧이어 나타난 냉전의 결과 유럽의 질서유지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상이한 정책적 고려 때문이었음.

- 미·소 간의 갈등, 곧 "동·서 간의 분쟁"을 UN 내에서가 아니라 UN의 장외에서 해결하려는 강대국의 의도 때문에 동·서 냉전의 주전장이었던 독일은 UN에서 단지 논외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음.
- 독일과 유럽의 분단결과 파생된 문제점으로서는 두 개의 독일이라는 국가의 생성, Berlin 문제, Berlin과 독일 전체에 관한 4대 전승국의 권한과 책임의 존속과 같은 것이었음.

○ 독일문제의 일부가 UN의 권능으로 처리되도록 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연계되어 단 두 번 밖에 없었으며, 그것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

- 1948/49년 소련의 Berlin 봉쇄
- 1951/52년 전독 자유선거의 준비

가) '48-'49 Berlin 위기

○ '48. 6. 24일 소련점령군은 연합국 공동위원회로부터 탈퇴한 후, 서 Berlin 왕복 육로 및 수로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6월 29일 대Berlin 시의회는 UN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서방측 3대 점령국은 '48. 9. 29일 3개의 동일한 내용의 통첩을 UN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음.

- 서방측은 소련의 봉쇄조치는 UN헌장 제2조에 위배하며 UN헌장 제VII장에 따른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상태가 유발된다는 것을 UN 사무총장에게 주지시켰으며, 소련은 그와 같은 서방 3대국의 행동에 대하여 안보이사회에 제소하여 맞섰는데, 미국의 목표는 Berlin 위기를 국제여론의 광장으로 끌어들인 후 소련이 침략세력임을 단죄하는데 있었음.
- '48. 10. 4일에 개최된 UN 안보이사회에서 Berlin 문제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으로서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직 절차상의 문제에 국한되었음.

○ '48. 10. 4-25일까지 안보이사회는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8회에 걸쳐 Berlin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원칙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었음.

- 봉쇄의 즉각 중지, 독일에 관한 4대 전승국 회담 개최, 대Berlin에 동독 마르크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중립국화에 대한 결의안 채택은 '48. 10. 25일 안보이사회에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고 말았음.
- UN의 권능에 입각한 기타 중재시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으며, 결국 Berlin 봉쇄는 '49. 5. 4일 UN의 장외에서 성사된 4대 전승국의 합의와 함께 종결되었는 바, UN은 이와 같은 분쟁해결에 있어 단한번의 진정한 회담의 광장조차 제공하지 못했음.

나) '51-'52 전독 총선문제

○ 서독정부는 '51. 9. 27일 헌법 제정을 위한 독일의 국민의회 구성을 전제로 하는 전체독일 자유선거 실시 건의안을 공표하였으며, 서독의 하원인 Bundestag 역시 지지했던 이 건의안은 '51. 11. 5일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각각 동일한 내용의 통첩으로 UN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음.

- 그 내용은 선거의 준비와 시행은 국제적 보호와 감시하에 실시되도록 하며, "UN 감시하의 중립적인 국제위원회"로 하여금 양독 간의 주어진 현실속에서 어느 정도 자유선거가 가능할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 이와 같은 서방측 공세의 배경은 '51. 9. 15일 동독 인민의회의 전독총선 실시 제의에 있었는데, 동독은 전독 총선제안과 함께 서독의 친서방 결속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었음.
- 서방 3대국은 독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서독의 서방결속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UN 위원회의 파견과 같은 전술적 대책에 착수하였음.
- 전체독일의 자유선거 및 비밀선거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조사하는 임무를 띤 UN 조사위원회가 구성·파견될 것이 '51. 12. 20일 UN 총회에서 찬성 45, 반대 6, 기권 8로 가결되었음.
- 서독측은 '52. 2. 11일 동 위원회의 활동에 협력할 것에 동의하였지만 동 위원회의 동독 및 동Berlin 입국은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절되고 말았음.

○ UN 조사위원회는 문제점 해결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독일분단 내지 재통일과 관련된 제문제점은 동·서 간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이 일차적으로 자국의 이해관철을 위해-물론 서로 상반됨-UN을 도구화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던 것임.

- 독일통일문제는 5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UN총회시 원칙문제 토론 때 마다 대두되었던 중요한 테마였음.
- '61년 Berlin 장벽 구축과 더불어 UN대표단의 주의가 환기되면서 독일 문제는 UN의 구두논쟁의 쟁점으로서 다시금 부각되었으나, 그 이후 독일 문제는 UN에서 점점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음.
- UN 총회시 독일문제의 주쟁점은 '66년 이후, 통독문제로부터 서독의 단독 대표권 행사의 문제점 및 동독의 국가적 인정에 관한 요구로 전이되었음.

○ UN이라는 대화의 광장에서 Berlin 위기발생 초기, 위기상태 관리에 효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총체적으로 보아 UN은 단지 동·서 간 갈등의 당사국이 그들의 상반된

입장과 이권을 UN이라는 기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전하는 효과적인 장으로서 역할밖에 못했으므로, 궁극적인 독일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했음.

2-4-1-2. 서독의 UN내 단독대표권 행사('49-'73)

○ '73년까지 동·서독의 UN정책은 양국 간에 상존하던 상호인정에 관한 갈등(Anerkennungskonflikt)을 반영하고 있음.

- 서독은 스스로 "제3국"의 유일한 민족적, 법적승계자임을 표방하였으므로 동·서독이 함께 UN 회원국이 된다는 사실을 동독에 대한 자동적인 국가인정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였음.
- 한편, 소련은 안보이사회에서 서독의 단독가입을 거부권을 통해 방해하였으나, UN 산하 특별기구에서는 총회와는 달리 회원국의 다수결에 의해 동독과 비교할 때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서독의 단독대표권 행사가 인정되었음.

○ 탈식민지화 과정에 있던 많은 신생국들에게 미해결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약속과 함께 UN 회원국의 대다수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임.

○ 서독은 '50년, 건국된지 1년만에 FAO에, '51년에는 ILO와 WHO와 UNESCO에 가입하였으며, '52년 서독은 New York의 UN본부 상임 업저버국이 되었으며, ECE, UNCTAD, UNDP, UNHDR과 같은 UN 기구에도 가입하였음.

- '55년까지 서독은 모든 UN 산하 특별기구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그 이후 신설된 IFC, IAEO, IMCO, UNIDO에는 자동적으로 회원국이 되었음.
- 따라서 '50-'73년까지 서독을 UN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비회원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광범한 UN 활동은 주로 독일(통일)정책적 동기에 근거하였던 바, 서독은 UN에 의무적인 기여 이외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특히 동독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저지하고자 진력하였음.

2-4-1-3. UN국외자로서의 동독('49-'73)

○ 동독은 국제적 인정획득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함에 있어 UN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72년까지 단 한번도 공식업저버국 지위조차 획득하지 못했음.

- 50년대에 소련에 의해 동독의 UN 가입 발의가 있었으며, 드디어 '66. 2. 28일 동독은 스스로 UN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은 UN 회원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적 기준인 동독이라는 국가성이 부인됨으로써 좌절될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동독의 UN 정책은 동맹국을 통한 동독의 입장표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그때까지 성공적이던 서독의 차단정책으로 말미암아 동독은 UN에서 "견해표명 정도의 협력" 이상을 벗어날 수 없었음.

- 이와 같은 동독에 대한 UN 가입저지는 '72년 동·서독 간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동독이 UNESCO 가입이 가능하게 된 다음에 철폐되었음.
-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국제적 관심은 동·서 화해 분위기 속에 현상유지를 기초로 하는 독일문제의 정체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독에 대한 UN으로부터의 계속적 차단은 기본조약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끝났을 것임.

2-4-2. 동·서독 UN 가입 후의 UN에서 활동

○ 동·서독의 UN가입은 4대 전승국의 선언과 함께 가능하게 되었던 바, 4대 전승국은 동·서독의 UN가입을 통해 동·서독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가 Berlin 및 전체로서의 독일에 해당된다고 확인하였으며, '73년 결의안('73. 6. 22일 UN 안보리 결의안 335(1973) 및 '73. 9. 18일 UN 총회 결의안 3050(XXVIII)의 내용에 일치하는 선언을 하였는 바, 이로써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독일의 특수한 지위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되었음.

○ 서독은 UN 정회원국이 되면서 UN 체제 내에서 광범한 참여에의 길이 열렸음.

- 서독은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총회의 회원국 및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기구의 모든 정회원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일련의 기구(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군축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정규적으로 선출되었음.
- 서독은 모든 특별기구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또한 서독은 원칙적으로 임의에 따른 각종 기여를 하며, UN 산하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

• 예를 들어 UNEP, WFP, UNHCR 등에 정규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투표권을 행사했음.

- 서독은 UN 체제내에 있는 개도국을 위한 모든 다국적 원조프로그램의 가장 강력한 자본공여국 중의 하나였음.

• 서독은 UN 정규예산 기여국 중 4번째 회비 지출국이며, 이에 임의기여금을 가산하면 세 번째 국가였음.

o 그 반대로 동독은 외교적 장애가 제거된 이후에도 UN체제에 선택적으로만 참여하고 있었는 바,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재정적 한계성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체제의 속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었음.

- 동독역시 서독처럼 다수의 UN 대표기구에서 정규적으로 제한적 회원국의 위치를 누렸으나, 서독과는 달리 동독은 다른 국가군, 즉 동구권을 위한 교체원칙(Rotationsprinzip)에 따라 의석을 비워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았음.

- 동독은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동독지도층의 세계관에 따라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체제"를 대변한다는 Bretton-Woods 기구(IMF와 World Bank) 및 GATT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기여능력으로 참여하는 각종 산하기구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활동만을 벌여왔음.

• 그래서 동독은 FAO, ICAO, IFAD의 회원국이 되지 않았었음.

- UN 체제내에 있는 개도국을 위한 주요 다국적 원조그램에 대하여도 동독측은 미미한 기여밖에 수행하지 않았음

o "안보"(군축, 군비통제, UN 평화운동)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 UN의 군축활동 및 군비통제활동은 일차적으로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협약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국가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UN은 한편으로는 특정지역의 군사화의 절대제한 및 특수한 핵지대화의 제한(예 : 남극조약, 우주조약, 라틴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비핵지대화)를 비롯하여 다른 한편으론 특정 무기종류(예:생물학 무기금지 협정, 화학 무기회담)의 금지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서독은 UN 군축외교에의 참여를 통해 무력사용금지정책(Gewaltverzichts-politik)을 공고화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서독이 체결한 모든 조약(예:동방조약)에도 명시되어 있음.

• 서독이 제안한 모든 국제적 신뢰구축대책과 분쟁예방책 역시 이로부터 연유함.

• 서독은 또한 재래식 무기통제 및 전쟁방지문제를 거론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원래 UN 내에서 논의대상은 아니었음.

• 대체적으로 서독의 활동은 다만 서독과 NATO 정책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그 한계성이 있었으므로 서독은 NATO의 군사적 독트린과 대치되는 결의안에 대하여서는 반대표를 던졌음.

• 특히, 핵무기의 선제사용 금지문제와 관련하여서도 NATO와 공동보조를 취했음.

- "안보"정책 분야에 있어서 서독의 UN 정책 중 최근의 관심분야는 UN의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 : PKO)의 일환인 지역분쟁해결의 적극적 참여를 들 수 있음.

• 그러나 PKO가 UN헌장 속에 합법적 기본원칙으로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각 개별사례마다 UN임무의 조건이 모든 당사국의 동의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합헌여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음.

• 즉, 독일 연방군의 여하한 부대도 NATO의 작전지역 이외에 투입될 수 없다는 것이었음.

• PKO의 일반적인 재정적 지원 및 수송적 지원을 넘어서는 독일의 최초의 참여가 '89년 Namibia 선거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파견된 독일 연방국경수비대였음.

• 그리고 서독은 외교적 차원에서 EC와 공동입장을 표방하면서 기타지역의 분쟁(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중동, 중앙아메리카)에 대하여도 참여하였음.

- 동독은 UN내 그들의 군축활동을 평화공존 원칙의 실현으로서 이해하였음.

• 그와 같은 활동으로서 동독은 매년마다 UN 총회 제1분과위원회에 핵무기 감축과 핵전쟁 방지("no first use" 선언 등)를 겨냥한 다수의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원자력 군비경쟁 감축선언에 적극 참여하였음.

-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핵무기 군비경쟁에 대한 책임을 서방측에게 전가하는데 있었음.

– 특히 "안보"정책 분야에 있어서 동·서독의 활동에는 일련의 일치점이 있었음.

- 그와 같은 것으로서는 '80/81년의 동·서독의 UN 안보이사회 동시 회원국, '89년 Namibia 선거감시단(UNTAG) 및 '89/'90년 Nicaragua 선거감시단(ONUVEN)에의 회원국 피선과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 그 이외에 Palme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전개된 동·서 간의 "공동안보"(Gemeinsame Sicherheit, Common Security)에 관한 개념은 동·서독에서 공히 크나 큰 공명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이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음.

○ "경제"(개도국 지원과 경제질서)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 UN 개도국 지원활동 및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관한 국제적 회담에 대한 동·서독의 기본적 입장은 각각 동·서독의 개발원조정책(Entwicklungs-hilfepolitik)의 일반적 목표설정과 일치하였음.

- 서독은 EC 회원국들과 연합하여 UN 체제내 다국적 개발기금의 재정지원과 함께 제3세계의 국제시장 적응이라는 목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세계시장 적응에 부적합하거나, 직접 시장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형식의 법적인 여건마련에 대하여서든 한사코 반대하였음.
- 이로써 서독은-농산물에 대한 국가보조의 축소에 관한 GATT 회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한편으론 국제시장의 원칙에 다른 나라 국민경제가 적응할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서독이나 EC시장에 UN이 개입하는 것은 반대하였음.

– UN의 경제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서독의 의미는 서독이 '74년 UN 총회 이래 계속 UN 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으로 선출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가장 분명해짐.

- 서독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풍요스런 산업국으로서의 책임을 떠맡아 정기적으로 후진국의 채무차환 및 채무탕감대책에 참여해 왔음. 서독은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기금을 통해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국가군 중의 한 국가였음.

– 이 정책분야에 있어서의 동독의 정책은 서방측에 대한 (신)식민지주의 비판으로 점철되었던 바, "신국제경제질서"(NWWO)에 의한 제3세계의 요구에 대해 선언적 지원을 하였으나, 다국적인 후진국 개발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음.

- 이 분야에서 활동을 기피한 원인은(이데올로기 및 외환결핍으로 인해) 동독경제가 세계시장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었다는데 있음. 이와 같은 입장 때문에 동독은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서방산업국에 대항하는 후진국들과 투표시 보조를 맞추는 한편, 제3세계 발전문제에 대해 UN 업무내에서의 공동책임을 지는 것을 거절하였음.
- 동독의 개도국 지원은 주로 Angola, Ethiopia, Mosambik 같은 사회주의 개도국 내지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개도국에게 집중되었음.

–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 역시 동독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범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능력 한계 때문에 UN이 요구하는 환경정책은 수행할 수도 없었으며, 그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분야가 동독의 UN활동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음.

○ "통치"(인권문제)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 UN내 서독의 인권정책은 대체적으로 기본법에 의한 인권보장과 일치하고 있음.

- 서독은 개인의 인권보호 영역이 확장될 것과 함께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국제적 감독이 강화될 것을 주장했음.
- 특히 서독은 고문금지협정의 촉진 및 전세계적인 사형폐지운동에 있어서 자발적인 건의안을 제출했음.
- 서독으로부터 UNHCR은 특수재정지원 혜택을 누렸는데, 이는 유럽으로 몰리는 피난민 물결을 방지하기 위한 Bonn의 외교정책 중의 일환이기도 했음.

- 서독은 한편 반대로 사회주의국가들의 발의에 힘입어 제3세계가 펼치고 있는(평화에의 권리, 발전에의 권리와 같은) 집단권리인 "제3세대의 인권"(Menschenrechte der Dritten Generation)의 법전화에 반대하였음.
- 서독은 UNESCO에서 자유스런 정보유통을 규정하기 위한 "신세계 정보 및 의견교환체계"(NWIKO)의 구축과 같은 시도에 반대하였으나, 서독은 NWWO의 경우와 비슷하게 시장의 법칙성이 유지되는 한 제3세계에 대한 재정지원(실례 : 자체 통신사 구축)은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

– 서독은-독일정책이라는 관점하에서-각 민족의 자결권을 지원하기는 하였지만, 상기한 무력사용 금지정책에 부응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각 민족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였음.

- 또한 서독은 남아프리카의 경우처럼 일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는 호응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제우선의 서독의 태도는 결국 불법정권을 비호하는 인상을 주었고, 서독은 이 문제로 UN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었음.
- 이와 같은 비난은 동맹정책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Chile와 Israel의 경우에 있어서 대두되었음.

– 동독은 국제적 인권협력 분야를 주로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의 장(최근에야 "인도적 협력"이 커다란 인정을 받고 있음)으로서 판단, 시민사회의 "형식적인" 기본권을 비판하고 동독의 집단적,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하며 인권옹호국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음.

- 동독은 그러나(특히 동독의 국경안전을 위한 총격사용문제 등) 자체의 인권현황에 대한 비난과 사회주의 제국가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존 감시체계의 강화를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라고 처음부터 거부하였음.
- 오히려 동독은 제3세계와 함께 빈번하게 ILO와 같은 비교적 강력한 감시체계활동을 무력화시키려 기도하였음.
- 동독은 각 민족의 자결권과 해방운동을 위한 결의안을 지지하고 특히,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했음.
-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는 근 25년 간에 걸친 동독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쟁취하려는 투쟁과 함께 성숙되었으며, NWWO에 따른 제3세계의 요구처럼 NWIKO를 통한 자유스런 정보교류에 관한 규정화 역시 동독은 선언적인 지원만을 하였음.

2-4-3. 동·서독의 UN내 투표행태

○ 동독은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기명투표시 거의 대부분 찬성하였으며, 결의안 중 1/4 이상에 결코 반대한 적이 없었으나('87년도에는 단 한건도 반대하지 않음), 서독의 결의안 가결에 대한 반대율은 거의 2/3나 되었는 바, 그 중 절반정도는 기권의 방법이거나 단호한 "no"의 표현양식을 취했음.

○ 서독의 잦은 기권은 UN에서 "German vote"라고 야유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서독이 모든 측의 이해를 배려했음과 동시에 대화와 타협에의 용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음.

– 한편으로 서독은 서방산업국으로서 국제적인 지배 및 경제질서에 속해 있었고, 또 NATO 회원국으로서 핵무기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소수집단"의 위치에 처해있었으므로 부득불 기권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을 엄폐할 수밖에 없었음.

– 다른 한편 서독의 대서방결속으로 인해 투표시 갈등현상이 유발되기도 했는데, 서독은 전반적으로 안보정책적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했고, 이는 서독이 다른 어느 서방국가보다 동맹국에 대한 충성이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우주에서 군비경쟁"에 관한 표결에서처럼 견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서독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주로 기권이라는 방업을 취했음.

– 또한 미국과 친근한 Chile나 Israel이 미국을 비난할 때에도 서독은 유사한 방법으로 자제하였음

– 대외 무역정책 문제에 대하여서는 주로 EC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투표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서독은 자유스런 세계시장의 침해(신세계 경제질서에 관한 회담, UN 제3차 해상법 회담)에 반대하여 타협적 태세를 취하는 EC 회원국보다는 오히려 "hardliner"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게 동의하였음.

○ 동독은 서독과는 반대로 투표시 구조적으로 UN에서 "mainstream"을 타고

있었음.

- 동독의 선언적 반핵주의, 반식민지주의, 반자본주의는 제3세계 다수국가군의 안보·경제정책적 이해와 서방측 인권공세에 대한 거부경향과 일치하는 것이었음.
- 동독의 투표자세는 전적으로 그 동맹국의 이해를 고려하였음.
  - 소련을 반대하는 표결과 거의 미미한 예외일 뿐이었으며, 동독의 발의조차 특별한 동독의 이해관계에서 연유하기보다는 동유럽 동맹체제의 업무분담에 지나지 않았음.

○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50년대까지 유지되던 UN에서 절대다수를 기반으로 UN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했으며(예 : 한국동란), 남·북 문제에 관한 표결에서도 정기적으로 서방측 다수파의 승리로 귀결되었음.

○ UN에서 제3세계 국가군이 늘어난 이후에도 안보이사회의 veto 사용국이자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주도적 지위를 갖고 재정적 지원능력이 강한 미국을 의식하여 서방측은 선언적 차원을 초월하는, 미국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방향수정에 반대할 수 없었음.

- 그렇지만 서독은 미국처럼 국제기구의 정책이 마음에 들이 않으면 지원금 지불중지 또는 기구탈퇴(ILO, UNESCO)마저 서슴치 않았던 부정적인 UN의 도구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음.

○ 한편 서독은 안보정책적 내지 체제정책적 원칙문제에 있어서, 자체의 이해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한 UN기구의 권능강화 및 재정적 자립을 위한 모든 정책에 대해 찬성의 준비태세를 선언했음.

- 특히 "안보"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서독의 이니셔티브는 확고했으며, 확실한 대책으로 UN 군축외교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분쟁 해결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경제"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다수의 기금에 대하여 고액을 지불하였으며, "통치"정책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인권규제의 강화에 많은 기여를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개도국에 대한 확정된 프로젝트의 지원과 재정조달 방식은 남·북문제 해결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거부하는 서독정부의 변명을 위한 알리바이 정책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음.

○ 동독의 UN정책은 일반적으로 선전을 위한 광장지향적이었음.

- 동독은 UN기구를 "반제국주의 프로파간다" 매체로서 이용, 그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제3세계와 협력하면서 선언문의 통과에 주력하였는 바, 이와 같은 선언문을 통해 서방세계의 군사적인 핵전략, 세계경제질서의 고수, Pariah 국가들(Israel, Suedafrika, Chile 등)에 대한 지원을 탄핵하고자 노력하였음.
- 또한 UN이라는 대화의 광장은 동독으로 하여금 전세계에 걸쳐 서독과는 판이한 동독이라는 국가의 독자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음.

○ 동독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수 국가 진영의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가 목적달성을 위해서나 서방국가들에게 반대하기 위해 UN을 도구화하는데는 대체적으로 무력하였음.

- 동독은 또한 정확한 프로그램과 대책의 수립 및 재원조달, 국제기구의 권한강화 등에 관한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못했는데 이는 지불능력 결핍으로 인하여 UN의 결의로 결정된 "대금청구가 따르는" 의무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민이기도 했음.

2-5. 군사·안보분야 교류·협력

2-5-1. 협상 및 협정 체결

○ 분단 이후부터 서독 정부 특히 보수당인 기민당/기사당 집권시 서독정부는 기존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 내독관계에 군사·안보분야 협력 문제를 추가하여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예상결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음.

- 그것은 소련의 대 유럽 안보정책의 목표가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을 완전히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여 독일을 중립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기 때문에, 안보문제에 있어서 서구편입을 통해 NATO의 입장에 따라 대 공산권에 대해 억지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폈던 역대 서독정부(기조는 기민당의 아데나워 수상 때 이미 형성되었음)는 동독과 군축·평화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없었음.
- 또한 역대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가 소련에 군사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소련의 대 유럽 정책에 따라 군축과 평화선전 공세를 펴는 동독이 서독과 합의가능한 새로운 안보정책을 협의할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왔음.

○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모색, 군축(핵무기, 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등의 문제가 미·소를 중심으로 NATO 진영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진영 간에 유럽 안보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논의되었으므로, 동·서 진영의 최전방에 위치했던 동·서독은 이러한 다자간 협상에 주역으로 참여는 했지만, 독자적으로 동·서독이 군사분야 교류나 안보·협력 관계를 논의할 여지가 없었음.

- 동·서독은 기본조약 체결시 군사분야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기본조약 제5조에 "동·서독은 유럽에서의 안보와 협력에 기여하며, 다른 한편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유럽에 있어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적인 통제하에서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목표로 하되, 특히 대량살상무기 분야에 있어서 군비축소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양독 간 후속협정체결을 통해 교류·협력은 구체적으로 실천해 왔으나, 군사분야에서만은 동·서독 정부가 동·서 진영 소속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교류·협력을 모색하여 합의한 사례가 거의 없었음.
- 동·서독 정부 간 이 분야 교류·협력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것은 1987. 9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의 서독 공식 방문시로 공동성명에서 양독 정부는 "독일땅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되며, 이곳에서부터 평화가 싹터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으로 동·서독이 군사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양진영의 동맹국가 간의 안보 협력에 기여할 것을 상호 약속한 바 있음.
  - 구체적인 교류·협력 조치로써 우선 양측은 군축문제에 관한 전권위임자(서독은 외무성 실장급 별도 임명, 동독은 외무성 기존 군축 담당 실장이 겸임)를 임명하고 정기적인 접촉을 갖기로 함.
  - 이들 전권위임자들은 동·서독이 공히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 협상(예를 들면 제네바 군축 협상, 빈의 재래식 전력 군축협상)시 주 협상진행과 별로도 따로 만나 동·서독 간의 안보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협의를 가지며, 상호의견을 조정한 바 있음.

○ 동독과 구체적으로 군사 교류·협력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서독 정부가 아닌 야당으로서의 사민당이었던 바,-물론 정부 간 합의가 아니므로 구속력은 없는 선언에 불과했지만-사민당은 83년 이래 야당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동구권내 다른 공산당 특히 동독정부와 유럽내 평화질서 창조를 위해 새로운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협상을 벌이고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보수당이 대 동구 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안보분야에서 동·서 간 협력 가능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공동안보이론에 입각하여 사민당(SPD)과 동독 공산당(SED)이 합의하였거나 협상을 벌였던 분야는 다음과 같음(상세한 내용은 1-6-4-1. 참조).

- 비화학무기 지대에 관한 합의.
- 중부유럽에서 비핵지대화를 위한 비핵회랑(Atomwaffen freien Korridor) 건설 협상.
- 이념논쟁과 공동안보(Der Streit der Ideologie und die gemeinsame Sicherheit)에 관한 원칙 합의.
- 방어지대(Defensive Zonen) 창설을 통한 재래무기 분야의 안정화.

2-5-2. 미·소의 유럽내 핵무기 배치와 동·서독

○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들어 동·서 진영은 여전히 자기체제의 가치 및 질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핵전쟁시대의 인류전멸위기 가능성에 대한 공동인식하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상호대립에 우선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함.

- 동·서 화해의 시기에 양체제 간-물론 중심국가는 미·소 양국이지만-의 제한된 협력관계를 "적대적 협력"(Antagonistische Kooperation)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음.
- 두 체제가 이념적 대립관계에 있을 때, 한 체제는 자기 체제가 허용할 수 있는 체제유지적 측면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만에 대해 응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데탕트시기의 화해정책은 동·서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의 "협력(Kooperation)과 체제공고화(Abgrenzung) 사이의 혼합형태(Mischungs form)"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계하에서는 70년대 동·서 유럽 간의 해빙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군사적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나, 군사적 분야에서는 첨예한 이념의 대립을 구실로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군비 경쟁이 치열해짐.

○ 동·서독은 동·서 갈등구조의 첨병으로서 이러한 협력(상대방 체제인정)과 체제공고화(자기체제 안정)라는 변증법적인 관계에 철저하게 따름으로써 적대적 협력관계에 이를 수 있었는데, 달리 표현하면 냉전시대를 청산하고 교류협력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음.

- 적대적 협력관계로 표현되는 독일분단 완화모델의 본질은 2개의 독일 국가화가 유럽 평화의 구조적 요인이 된다는데 있는 바, 동·서 화해는 안정적인 세력균형관계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반면 독일의 분할 자체는 동·서 세력균형에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독일에 있어서 민족문제 해결이라는 통일문제는 늘 평화문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음.
- 결국 동·서독 간의 군사교류문제는 양 진영 간 안보정책의 종속 변수로서만 취급되며, 독자적인 안보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할 여지는 없었음.

○ 70년대 데탕트 시기에는 그러나 동·서 간의 교류협력 시대의 협력관계가 군사적 분야에까지 화해로 확산되지 않아 군비경쟁과 그에 따른 안보위협 인지에 따른 적대감이 형성되어 양측이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됨.

- 이러한 새로운 위기상황은 구체적으로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폴란드 연대노조 성립 이후 소련군의 개입위협이 증가되면서 증폭되어 나타남.
- 소련은 70년대 중반부터 중거리 핵무기(SS-20)를 유럽에 배치해 왔으며, NATO 국가들은 1979. 12 "이중 결정"(Doppelbeschluss)을 통해 만약 소련이 서유럽을 겨냥하고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군사적 균형유지를 위해 108기의 퍼싱 II와 464기 쿠르즈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이에 응수함으로써, 유럽에서 핵무기 경쟁이 시작되었음.
- 비군사분야 교류협력에 상응하지 않는 군사분야에 있어서의 군비증강에 의한 상호 억지전략의 고수 및 적대관계 지속은 평화질서 창출에 실패하고 교류협력분야 화해정책마저도 위협받게 되었던 것임.

○ NATO의 핵무기 배치에 대해 소련의 입장을 옹호하는 동독은 서독측에 대해, 이러한 핵무기 증강 결정에 동참하지 말 것과, 이러한 동맥국들 간의 안보 문제로 인해 기존의 동·서독 관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동·서독 관계 지속문제와 안보문제를 연계시키려 했음.

- 1981. 4 호네커 서기장은 "양독관계는 국제적인 상황과 연계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유럽에 핵무기가 증강·배치될 경우 양독 간에 더 이상의 관계진전이 없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서독 정부는 내독관계성 장관 성명을 통해 "내독관계를 서독의 안보·동맹관계 설정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차후 양독 관계 협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동독측의 선전적인 평화공세를 차단한 바 있음.
- 서독측은 내독관계에서 지속적인 화해와 협력을 위해 안보면에서 기존 동맹관계를 결코 포기할 의사가 없었으며, 동독측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음.
  - 양 독일 국가 간의 우호적인 교류협력관계는 한편이 다른 한편의 동맹관계에 대해 어떤 특정한 요구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양독 국가 간 교류·협력의 한계이자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현실에 부응하는 것이었음.

2-5-3. 양 독일 국가의 군비축소 및 군사협력 노력

○ 양 독일 국가는 양 진영의 최전방에 서 있던 국가였던 만큼 미·소 간의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될 수 있었으므로, 신냉전의 기류속에서 양 독일 국가는 전쟁의 방지와 평화의 보장을 위해 기존 CSCE내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양독 간의 군축정책을 모색하게 됨

- 1983~84년에 거쳐 NATO의 유럽내 핵무기 배치가 끝나자, 언제 발생하게 될지 모를 핵전쟁의 최전방에 서게 된 서독내에서는 기존의 동맹관계나 안보이론에 입각한 군비증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커녕 원하지 않는 전쟁에 말려든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음.
- 이에 따라 서독내에서는 평화운동(Friedensbewegung) 그룹과 애국적 좌파(Patriotische Linke) 그룹을 중심으로 반핵운동과 기존 동맹관계를 안보종속관계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기존 제도정치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기존 대중정당 특히 사민당 중심으로 새로운 군사분야에서 양독 관계 설정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게 됨.
- 이러한 논의에 따른 양독 간 구체적인 군사분야 협력조치는 기존의 양독관계, 그리고 양독국가들의 동맹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음.
  - 우선 서독 정부는 기존의 분단고통 완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러한 새로운 안보 협력관계 논의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새로운 안보협력관계가 오히려 이러한 교류협력관계를 보완하는 한에서만 이를 협의하려 하였음.
  - 양 독일 국가는 각각의 동맹파트너들에게 철저한 동맹관계 유지, 즉 독일이 안보정책적으로 독자노선을 걷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음.
  - 양 독일 국가가 직접 양독 간 안보협력관계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CSCE 등 다자 간 안보협력 체계내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양 독일 국가의 합의에 의해 새로이 주도되고 번복이 되어서는 안 되었음.

○ 1980년대 후반 서독의 보수당인 집권 기민당/기사당은 기존 NATO의 안보 개념에 입각, 동독측과 다자간 안보협력회의에서만 협상을 벌였기 때문에, 사민당의 새로운 안보이론("공동안보")에 입각한 제반 제의나 녹색당 평화운동 그룹의 "사회적 방위"(soziale Verteidigung)와 같은 제안을 독일정책에 반영하지 않았고, 더구나 기존 동맹관계에서 탈퇴하는 서독의 중립화 주장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철저히 배격했음.

- 우선 서독의 안보정책 및 방위형태를 보면 기본법에 외국에 대한 공격 금지와 방어적 방위 및 NATO에 연방군의 편입을 명시하고 있지만, 70년대부터 기계화사단의 장비현대화와 방공망의 현대화를 통해 전방위전략(Vorneverteidigung)을 구사함으로써, 일단 유사시에는 단순한 방어형 군사전략이 아니라, 동독으로 깊숙히 공격해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 동독 인민군에 비해 공군력이 우세하여, 동독측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재래식 전력의 숫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서독에 배치된 군사력에 대해 늘 안보상의 불안을 느꼈음.
- 동독측은 소련 공산당의 평화공세나 히틀러 군국주의의 역사 때문에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이 완전히 소련점령군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육성하지 못했고 또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못했으며, 공식적으로는 완전 방어형태의 군사체계라고 선전하고 있었지만 서독측으로 볼 때는 여전히 공격적이었음.
  - 그러나 서방측은 동독측의 공식적인 평화공존론에 입각한 방어위주 군사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며 동독측으로부터 안보위협을 강조했음.
    - » 우선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전략은 일단 유사시 전방에 배치한 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통해, 서독지역에 진군해 순식간에 작전을 벌이게 되어 있는 바, 이를 매우 선제공격적인 군사전력으로 평가하였음.
    - » 재래식 전력의 숫적인 우세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적개심을 조장하고 있었으므로 순수하게 방어적이라고 볼 수 없었음.

» 동독 인민군은 연방군에는 없는 우수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대량 살상무기가 서독측으로 볼 때는 커다란 위협이었음.

○ 주로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상의 일환으로 양독 간에 논의되었던 군사분야에서의 안보협력관계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은 분야임.

- 1986년 9월 CSCE 회원국들에 의해 서명된 스톡홀름의 양 진영 간 군사적인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문서에 포함된, 제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동·서독 간 실천문제
  - 군사적 행동의 상호예측성 제고를 겨냥한 군사훈련시 상호 통보 및 군사훈련 상호 참관단 교환.
- 상호 군사적 위협, 적대감의 해소
  -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87년 서독 사민당의 정강정책위원회와 동독 공산당 중앙위의 "이데올로기 투쟁과 공동 안보에 관한 공동문서"에서 이러한 점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 화학무기 감축
  - 1985년 서독 사민당과 동독 공산당 간에 감축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동·서독 정부 간 직접 합의된 바는 없음.
- 국가예산 중 군사비 축소 및 동 축소예산의 제3세계 원조기금으로 전환.
- 비핵 회랑지대 조성.
  - 1986년 서독 사민당과 동독 공산당 간에 공동으로 안을 작성한 바 있으나 동·서독 정부 간 직접 합의는 없었음.
- 재래식 무기 감축.
- 양독 간에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기존 군사전략(독트린)을 변경시키고, 핵전쟁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의 모색.
- 상호오해에 기인한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발의 배제를 위한 상설 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고츠바쵸프 등장 이후 소련은 1985. 3월부터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재개했는데, 감축대상 무기가 양 독일 국가의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집중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 독일 국가는 합의사항을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로 간주, 양측은 이러한 진영 간의 군축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참여했음.

- 제네바 회담에서 양 독일 국가는 사정거리권 안에 동·서독 양국이 포함되어 있는 중거리 핵무기, 화학무기 폐지 등의 미·소 간 대량살상 무기 감축에 동·서독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했음.
  - 1987. 12. 8 미·소는 정상회담을 통해 INF 협정을 체결 유럽내 지상 발사 중거리 핵무기의 완전철거에 합의함.
- 빈에서 개최되었던 재래식 전력감축협상에, 양 진영의 최전방에 위치한 양 독일 국가는 기습공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의 감축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

CHAPTER II

통행 · 통상 · 통신 편

3 인적 교류(통행문제)
4 경제 교류 · 협력(통상문제)
5 우편 · 통신 교류

3. 인적 교류(통행 문제)

3-1. 협상 및 협정 체결

3-1-1. 통과(서독-서베를린 간) 교통협정(Transitabkommen)

○ 1944/45년 서방 3대국은 서독지역으로부터 베를린 진입에 관한 소련과 조약상 처리를 등한히 하여 그 이후 자유스럽고 원활한 민간교통에 엄청난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동독과 소련은 이를 처음부터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였음.

- 왕복교통은 동독정부의 방해로 여행에 지장이 초래되기가 일수였으며 봉쇄까지 일어났으나, 항공로 이용에 관한 합의사항은 지켜졌었음.

○ 60년대 초 서방 3대국은 소련과 회담을 통해 베를린 진입로의 조약상 보장을 받아내려고 시도하였고, 1961/62에 개최된 미·소 간 회담은 1962년 5월 결론 없이 무산되었음.

- 1963년 6월 초 동독측은 통과로에 대한 감독과 방해를 강화하였던 바, 동독정부는 이를 빌미로 서독과 베를린 왕복교통에 관한 정부 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강력히 원했기 때문이었음.
- 한편 서독정부에게 그러한 협정체결은 전연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바, 그 이유는 서독의 동독 비승인정책 및 통과로에 대한 책임과 감독은 연합국의 권한이지 동독의 권한이 아니라는 관점 때문이었음.

○ 베를린 왕복교통에 대한 동독의 방해는 제1차적으로 서방 3대국이 아니라 서독 연방기관의 서베를린내 상설화를 반대하는 것으로서 서베를린에서 연방정부의 행사, 의회 전문위원회 개최, 원내총무단 회의, 연방대통령 선거인단의 회합 등이 개최될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던 의회의원의 통과마저 금지당하기가 일쑤였음.

○ 60년대 말부터 베를린 왕복교통은 더욱 어렵게 되었으니, 베를린 왕복교통 뿐만 아니라 동·서독 왕복교통의 전반에 대해 1968년 6월 11일 인민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의하였음.

- 극우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NPD) 인쇄물의 통과로 이용 운송금지.
- 동·서독 간 여행교통에 대한 여권 및 사증소지 의무화.
- 동독 도로이용에 대한 세금조정공과금 부과.
- 최소 의무환전액(Mindesumtausch)의 인상.

○ 1968년 7월 9일 연방정부는 내독 간 여행교통의 악화현상에 대응하여 사증비용을 지불하고 Hannover-Berlin 간 항공교통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불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1970년도까지 베를린 왕복 여행객 수는 거의 불변상태로 연간 1,100만 명 선을 유지하였는데 그 중 700만 명은 육로를 이용하였음.

○ 1971년 12월 11일, 31회에 걸친 회담을 마친 후, "동·서독 정부 간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민간인과 재화의 통과교통에 관한 협정(일명 Transitabkommen)"이 가서명되었으며 동년 12월 17일 서명되었음.

- 1972년 6월 3일 4대국 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와 함께 동 협정은 효력을 발휘하였는 바 동 통과교통협정과 더불어 동독지역을 통과하는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교통이 처음으로 조약화 됨.

○ 통과교통협정의 내용은 통과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간소하고 신속하며, 최대의 편의가 도모되는 여행절차를 걸쳐 여행이 수월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통과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동 협정 16조에 따라 "통과로의 악용"이라는 혐의가 충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의 체포, 교통수단과 개인지참물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민간재를 운송할 때의 간소화조치로서 도로화물차량, 철도화물차량, 내륙항행선박, 용기 등의 차량의 납봉인이 허용되었음.
  - 납봉인은 서독과 서베를린의 세관이 수행하며, 동독의 관계기관은 봉인상태와 관계서류만을 검토하였음.

3-1-2. 동·서독 간 통행협정(Verkehrsabkommen)

3-1-2-1. 협정 체결 이전의 통행문제

○ 항공교통 분야

- '45. 11. 30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승 4대국은 서독과 서베를린 간에 3개의 공중회랑 및 베를린 영공을 위한 통제지역을 만듦.
  - 공중회랑(20 영국마일의 폭)은 연합국의 항공기만이 사용할 수 있음.
  - 공중회랑의 통제와 같은 제 규정은 통독 이전까지 유효하였음.
  - 공중회랑은 베를린 위기를 비롯하여 특히 베를린 봉쇄시 공중 다리를 통해 베를린시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었음.

○ 철도교통 분야

- '45. 9. 10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대 전승국은 서베를린에 대한 생필품 및 연료의 공급을 위해 서독과 서베를린 간에 일간 16량의 화물열차 운행을 합의함.
- '49. 5. 11 서독의 독일연방철도(DB)와 동독의 독일제국철도(DR)는 동·서독 간의 철도교통 재개를 합의함(Das Helmstedter Abkommen).
- '65. 6. 30 DR은 DB와 합의한 공동협약을 해약하여 협약의 내용이었던 단일화된 운송조건 및 운송송장으로 해결되던 화물의 운송처리가 어렵게 되었음.
- '50년 이래 여행 및 화물열차교통은 각각 서로 다른 열차시간표에 정규적으로 수행되었음.

○ 도로교통 분야

- 베를린 교통에 있어서는 승용차 사용이 점증하였던 반면, 동·서독 간 여행교통에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개인적 여행교통은 점점 더 제한을 받았음.
  - 승용차를 이용한 동독입국은 동독측에 의해 사업여행, 라이프찌히 박람회 방문자 등 특수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되었음.
- 트럭을 이용한 화물운송을 베를린 왕복 및 동·서독 간 교통에 있어서 점증하였음.
  - 특히 베를린 교통에 있어서 트럭과 같은 교통은 성문화된 규정이 전혀 없어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았는데, '51. 9. 1부터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55. 4. 1부터 도료사용료는 2배 이상 인상되었다가 수차의 회담결과 부분적으로 다시 원상으로 복구됨.
  - 교통요금협정은 20년 간의 유효기간이 있었으며, '76. 1. 1부터 동독은 신규교통요금을 공표하였던 바, 대형트럭에 대한 요금이 매우 인상되었음.
  - '52년부터 원래 총 12개였던 도로통과소는 동독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8개가 철폐되고 4개로 줄어들었으며 '60년 부활절을 기해 1개소가 신설되었음.
- 여행자들에 대한 검문 강화, 트럭 적매물의 수색, 질질 끄는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통과소에서는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음.

○ 선박교통 분야

- 동·서독 간 선박교통에는 함부르크항과 로스토크항 및 북해-발틱해 운하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었음.
- 독일의 선박교통 일체는 '45년과 '46년 연합군 선박운행령으로 규정되었는 바,

선박 식별 표시방법, 4개 국어로 된 운행증(Permit), 승무원 명단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50년에는 서독에서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법령 제42호로 대치되어 선박교통이 매우 수월하게 되었음.

- '55년 소련군 점령 정권이 관할권을 동독측에게 위임함으로써 서독측은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함부르크 수로·선박운행청과 마데부르크 수로청은 회담을 통해 양 기관이 각각 당해지역에 대한 Permit 발행기관임을 합의했음.

3-1-2-2. 협정 체결 이후 통행문제

○ 통행협정 체결 경위

- '70. 11 서독의 Bahr와 동독의 Kohl은 동·서독 통행문제에 대한 협의 시작
- '71. 9부터 공식회담 개시
- '72. 4. 26 협정 가서명
- '72. 5. 26 협정 정식서명
- '72. 10. 17 효력발효(동·서독 간의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동·서독 정부가 비망록을 교환한 이후)

○ 협정에 대한 동·서독 간의 견해 차이

- 양측은 협정규정에 있어서 교통의 종류, 실질적인 개선문제, 향후 공동 협력 등에 관하여 상이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동 협정 체결과 관련 각각 상이한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음.
  - 동독정부는 4대 전승국과의 협정에 무관하게 서독과 국가 간의 협정 체결을 꾀하였던 반면, 서독정부는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서독 간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동 협정이행과 관련 국제법적인 협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도록 함이 중요하였음.
- 동·서독은 공히 국제 철도교통 규범체제인 CIM과 CIV와 같은 국제협정에 가입할 것을 노력하였으며, 특히 동독측이 이를 더욱 요구하였음.
- 특히 서독측은 여행교통의 장애철폐는 물론 통행협정의 효력범위가 서베를린에도 확장될 것을 요구하였음.
- 이 통행협정 합의는 동·서독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음(기본조약 체결에 앞서 맺어진 동·서독 간 최초의 국가조약).

○ 협정의 내용

- 협정의 대상
  - 동·서독 간 도로교통, 철도교통, 수로교통(교환교통) 및 동·서독을 통과하는 제3국행 교통(통과교통).
  - 항공교통은 동·서독지역에 대한 특수한 법률관계 때문에 배제 되었으나 후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양측은 의정서에 밝혀 놓았음.
- 협정의 기본적 원칙
  - 국제관행에 입각한 상호주의 및 배척금지의 원칙하에, 동·서독 교통이 상호 영토를 통해 최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장되고 용이화 되어지도록 노력함.
  - 교통사고나 해난시 상호구조, 교통장애시 상호정보 교환에 관한 규정을 확정함.
  - 기존 국경통과소의 변경은 양국 간 교통성의 동의하에 이루어짐.
  - 내륙선박교통, 해상교통, 연해항행은 허가를 조건으로 함.
- 철도교통
  - 열차시간, 열차구성, 차체구성의 합의에 관한 기본규정이 협정에 포함됨.
  - 국경을 통과하는 여객교통과 화물교통은 Berner Union의 국제여객운송법 및 국제 화물운송법을 참조하도록 하는 바, '73. 5. 1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못했던 상기 제 규정은 동·서독이 CIM과 CIV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됨.
  - 이로써 양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요금, 송장 및 귀환용 승차권 발행이 가능하게 됨.

• '72. 9. 25 DB와 동독교통성 간에 통행협정의 기본합의를 보완하는 국경선상의 철도교통을 위한 국경통과철도 운행이 결정됨.

• 연간 정기회담을 통해 열차시간표가 확정됨.

– 내륙선박 교통

• 통행협정 체결과 더불어 '45년 이후 처음으로 양측은 상대방지역의 수로운행에 따른 특수허가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음.

• 동·서독 국경을 흐르는 엘베강 공동구역의 무난한 내륙 선박교통이 통행협정에 분명하게 보장되었음.

– 차량교통

• 양측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여객교통이나 화물교통에 대한 허가 절차를 생략함.

– 해상교통

• 항구 및 기타 해상교통에 필요한 시설의 상호 이용 및 최혜국 대우.

• 일반적인 여행 교통은 해상을 이용해서는 허용되지 않음.

• 다만 '76. 5. 1부터 동독의 로스톡항만이 서독의 여객선을 위한 특수관광을 위해 사용가능하게 됨.

– 통행위원회

• 통행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견해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정 당사국간의 공동위원회가 구성됨.

– 통행협정의 서베를린 적용

• 협정서명시 양측 대표단장은 통행협정의 제 규정이 4대 전승국 협정과 일치하에 서베를린에도 의미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한다는 구두선언을 행함.

○ 차량교통사고 처리문제에 관한 추가협약

– '72. 4. 26 서독 법무성장관과 동독 재무성장관은 차량교통사고시의 손해변제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양측의 보험기관 간의 합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던 바, 이로써 '56년 내지 '58년의 기본합의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함.

– '73. 5. 10 서독의 자동차보험업협회와 동독의 국립보험기관 간에 체결된 합의는 '73. 5. 1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토록 함.

– 규정상의 원칙.

• 보험기구 관할지역내에 피해자가 주소지를 갖고 있으면 상대편지역 보험기구가 손상을 처리하고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책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금의 개별적 이전이 불필요하게 되었음.

• 배상금 지급기준은 사고지의 제 규정에 기준토록 함.

○ 차량세 면제협정('79. 10. 31)

– '79년도 서독의 차량세법 개정을 통해 동독차량에 대해 최초로 납세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동독차량에 대한 과세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상호 간 세금면제 협정체결을 위한 전제조건 조성에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 '79. 3. 23에 동독과 회담을 개시하였음.

– 동독과 체결한 차량세 면제협정의 내용

• 동독트럭과 버스운영에 대한 세금면제.

• 동독은 서독의 트럭과 버스에 대한 도로사용료 징수 철폐.

• 차량세 면제협정에 서독측 승용차를 포함시킬 수 없었던 바, 그 이유는 동독행 서독승용차가 베를린 통과교통을 제외하고는 200만대에 이르렀던 반면 극소수의 동독승용차가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왔기 때문에, 수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임.

• 그러나 서베를린은 차량세 면제협정에 포함되었음.

– 도로사용료 철폐와 함께 서독의 영업용 화물교통은 연간 1,200만 내지 1,500만 DM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독 화물업계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었음.

○ 승용차에 대한 도로사용료 일괄금지불 의정서('79. 10. 31)

– 여행교통의 촉진을 위하여 통행협정 제6조 1항에 의거, 승용차에 대한

도로사용료 일괄지불에 관한 장기적인 의정서가 작성되었는 바, 그 내용은

- '80~'89 간에 서독정부는 연간 5,000만 DM의 일괄금액을 동독에게 지불함.
- 이와 같은 결정사항은 서베를린에도 유효하며 서방 3대국에게도 이와 같은 결정사항이 보고되었음.

- '80. 1. 1부터 서독승용차에 대해 개별적인 도로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동독정부가 선언함.
- 일괄지불의정서 체결의 의의
  - 베를린 통과교통에 대한 일괄금 지불제도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여행교통의 안정화에 기여.
  - 특히 베를린과 국경 부근의 여행교통이 활성화됨.
  - 일일 방문자들에 대한 도로사용료 10 DM의 지불이 불필요하게 됨.

3-2. 여행 및 방문교류

3-2-1.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3-2-1-1. 여행가능성 및 제한조치

○ 서독지역(서방점령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소련점령지역)에로의 여행·방문은 비록 동독측이 끊임없이 제한조치를 가하여 어렵기는 했으나 분단 이후 항상 가능했음.

- 50년대에는 동독관계기관의 감시와 방해에도 불구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다가, 1961 베를린장벽 설치와 함께 완전히 단절되었으나, 1963년부터 동독측의 입국허가서를 대폭 발급하여 완화되었음.
  - '63년부터 동독측이 완화조치를 취한 배경은, 서독정부의 대동구 정책이 변화하면서 화해의 기운이 돌자, 더 이상의 여행금지조치가 국내정치적인 불안정의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임.
- 동독측은 인적인 교류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처음에는 1년에 한번 4주 간의 체류기간을 정하여 동독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음.
  - 여기서 친척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자식,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 1968년 6월부터는 동독여권법을 개정하여 동독입국을 희망하는 서독인들도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비자를 받아야 했으며, 아울러 비자 수수료도 징수함.
- 1964년 11월부터는 방문객들이 하루 여행 일수당 의무적으로 서독 마르크를 동독 마르크로 환전해야 했는데, 이 최소의무환전액은 1964년에는 5 DM, 1968년에는 10 DM, 1973년에는 20 DM, 1984년에는 25 DM까지 인상되었음.
- 특히 여행제한조치의 하나로 소지하는 물건에 대해서 일정품목은 아예 통관을 금지시키거나, 나머지 품목은 일정량까지만 통관을 허용하고 초과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고액의 통관료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음.
  - 1961년 1월 1일부터 동독을 여행하는 서독인들은 선물의 경우 1,000 동독 마르크까지만(5일 이내 여행일 경우 하루당 200 동독 마르크까지) 동독으로 반입이 허용되고, 선물이나 구입한 물건을 동독에서 서독으로 반출할 때는 4일 기준으로 200 동독 마르크까지만 허가없이 반출할 수 있었음.

- 이때 가격기준은 동독의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는 바, 생필품·전자제품·사치품·기호식품 등의 가격이 서독에 비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거의 물건을 반출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통관료 또한 초과되는 액수의 10-50%에 이르러 상당한 부담이 되었음.
- 서독에서 동독으로 반입금지품목 : 총기, 탄약류, 방송송수신기, 군사적인 색채를 띄는 어린이 장난감, "문화유산으로 볼 수 없거나 또는 현재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은" 카세트 테이프 및 음반, "사회주의국가와 국민의 이해에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쇄물과 영화 필름, 동독에서 배포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신문·시사잡지, 지도, 우표(및 우표목록), 동전, 의류와 신발류를 제외한 중고물품.
- 동독에서 반출금지품목 : 방송송수신기, "동독의 이익을 해치는" 영화필름, 사진, 서적, 원고, 동전, 우표, 문화재, 카세트테이프(음반은 허용), 도자기류, 특정유리제품, 광학기계, 고기.

○ 1972년 10월 17일 통행조약(Verkehrsverrag)이 발효된 이후, 동 조약문 부속문서인 서신교환을 통해 동독정부는 여행·방문에 있어서 대폭 완화조치를 약속했으며, 그 이후 여행, 방문이 획기적으로 수월해 졌음.

- 이제까지는 동독지역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만 여행, 방문을 허용했으나, 아는 사람(Vekannte)이 있는 경우에도 1년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을 허용함.
  - 1984년도에는 총 여행일수가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남.
- 친척, 친지 방문 이외에도 일반인들은 상업, 문화, 체육, 종교적인 이유로 동독의 기관이 초청하는 경우 동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됨.
- 양측 여행사 간의 합의로 단체관광여행이 허용되었으며, 체류허가는 여행 프로그램에 명시된 장소에 한정함.

○ 기본조약의 발효 이후 국경 부근의 56개 도시와 마을 서독 주민들은 동독의 54개 국경도시와 마을을 하루 체류를 조건으로 방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하루 체류 방문은 친척, 아는 사람, 관광 목적에 다 허용되었음.
- 매년 평균 45만 정도(국경 부근에 사는 서독인 450만 중 10% 정도)가 이

하루 체류 방문을 이용했는데, 1945년 이후 이곳에서 자란 세대는 친척이나 이웃이 국경 너머에 별로 없었고, 특히 비자 수수료 5 DM, 도로사용료 10 DM, 의무환전액 등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음.

○ 서 베를린 주민들도 4대국 협정과 더불어 1972년 6월 3일 맺어진 여행, 방문의 용이화와 조건개선에 관한 서베를린정부와 동독정부 간의 합의, 그 이후 후속협정에 의거, 동독과 동베를린을 1년 45일 범위 내에서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여행은 인도적인, 가사사유로, 종교, 문화적인, 관광목적으로 허가되었으며, 45일을 다 써버린 경우에도 긴급한 경·조사의 경우는 허용되었음.

3-2-1-2. 서독주민들의 동독 입국거절

○ 통행조약 체결 이후에도 동독정부는 개별적으로 서독시민과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과 동베를린 입국 거절조치를 강화하였던 바, 국경통과소에서 입국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허가 신청절차를 밟을 때 이미 입국허가서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 서독시민에 대한 동독정부의 동독 입국금지는 동·서독 간의 조약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약위반이 아니었으며, 다만 전적으로 동독관계기관의 재량에 좌우되었음.

- 1972년 5월 26일 통행조약에 대한 서신교환을 통해 동독정부는 "기존상태를 초월하는" 여행용이화 의사를 표명해 놓고도 서독시민 입국에 관한 구체적인 완화조치 마련에 대한 일반적 의무사항은 명문화하지 않았음.
-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입국은 서베를린시와 동독정부가 체결한 4대국 협정의 일환으로 확정되어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었음.

○ 1977년 3월 전년도보다 입국금지건수가(1977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 반 동안 1,160건의 입국거절 사례) 많아졌음이 서독정부에 의해 밝혀지자 동독정부는 입국허가서 발급의 금지조치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공식발표하였음.

- 동독이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원하지 않은 집단.
  - 과거 동독시민으로서 서독으로 합법이주한 사람은 과거의 고향인 동독에서 소요를 야기시킨 바 있고, 반국가적인 활동을 했거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됨.

- 서독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으로서 출국신청서를 제출한 동독시민에 대한 서독시민의 여하한 형태의 영향력 행사도 방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독인을 만나기 위하여 입국하는 서독인.

– 동·서독 시민 간의 약혼은 어디까지나 동독을 탈주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의 입국이 금지되었음.

– 동독의 관계기관이 원하지 않는 기타 특정인(정치인, 지식인 등)에 대한 입국이 금지되었음.

3-2-2.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3-2-2-1. 여행가능성 및 제한조치

○ 1946년 가을 이후 모든 여행객들은 서독지역(다른 점령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소련의 점령정권이 후일에는 동독이 발행한 여권을 소지해야만 했음.

– 1953년 6월 17일 동독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극히 극소수만이 서독지역의 친구와 친척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서베를린으로의 방문은 자유스러웠음.

– 1957년 여권법 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학생, 동독청소년단체(FDJ) 단원들의 서독 여행이 금지되었으며, 베를린 봉쇄가 시작되기 시작한 1958년까지 방문객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단지 베를린 시민만이 서베를린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음.

–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단지 공공 목적의 여행만이 허용되었음.

○ 1964년 동독정부는 처음으로 주민 일부에 대한 합법 출국을 허용하였음.

– 1964년 9월 9일 동독각료이사회는 시행령을 발표, 연금수령자(정년 퇴직자, 산재연금수령자, 장애연금수령자)로 하여금 1964년 11월부터 연간 4주 간 서독의 친인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금수령자로서의 방문객에게는 동독화 5 마르크에 대한 서독화 5 마르크

만의 환전이 허용되어, 방문시 여행경비는 서독의 친인척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되었는데, 서독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지자단체들은 방문시 1인당 100 DM의 환영금을 지불하여 이를 재정지원하였음.

– 일인당 100 DM에 달하는 동독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던 현금보조금은 거의 예외 없이 신청되어 활용되었으며, 이때부터 매년 100만 명에 달하는 연금수령자들이 서독의 친인척 방문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였음.

- 그 이후 연금 생활자들은 매년 평균 1백만 정도가 서독지역을 방문함.

○ 1972년 통행조약의 발효 이후 대폭 완화조치가 취해졌음.

– 연금생활자들은 1년에 여러 번 전체 30일의 범위 안에서 서독과 서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게 됨.

– 특히 연금생활자가 아닌 동독의 주민들도 긴급한 가사 사유의 경우 허가를 얻어 서독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됨.

- 여기서 긴급한 가사 사유란 : 출생, 세례, 견진성사, 성찬식, 유아세례, 결혼, 결혼기념일, 60세, 65세, 70세, 75세 및 그 이후의 생일, 생명이 위독한 질병 병문안 또는 임종.
- 여행허가 신청자격이 있는 친척의 범위 : 조부모, 부모, 자식, 형제·자매 간, 이복형제·자매 간.

– 1984년 8월부터는 친척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60일의 범위 내에서 방문할 수 있게 됨.

3-2-2-2. 동독여행·방문자에 대한 서독정부 재정지원조치

○ 서독 연방 정부(주무 부처: 내독관계성)는 동독 지역으로부터 오는 여행·방문자에 대해 재정 수단(예산)을 통한 각종 지원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의 서독 여행을 장려하여 양독 주민들 간의 접촉을 증대시키고, 상호이해를 촉진시켜 분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꾀하였음.

– 연방정부는 1972년 7월 1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 시행한 이래 점차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왔음.

- 재정지원의 법적인 근거는 내독관계성이 마련하여 각의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킨 '동독 방문객(동구권 포함) 지원 조치에 관한 기본 지침'임.
  - Richtlinien fuer Hilfsmassnahmen zugunsten von Besuchern aus der DDR und Berlin(ost) sowie 0s -und Suedosteuropa(1972년 7월 1일 처음 제정, 1982년 1월 1일 개정).

○ 연방 정부가 이러한 목적으로 동독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재정적 수단을 통한 지원 조치는 다음과 같음.

- 환영금(현금) 지원(Bargeldhilfe).
- 여행경비 지원(Reisehilfe).
- 의료비 지원(Krankenhilfe).
- 서독여행 도중 사망시 지원(Hilfen im Todesfall).

○ 지원 대상은 독일 국적을 소지한 동독 거주 주민(서독 기본법 116조에 의거 1937년 12월 31 현재 독일 영토에 거주했던 자)으로서 서독을 방문 중인 자이나, 다음과 같은 자는 방문자 지원 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상업 목적 여행 또는 공무 여행 중인 자.
- 독일 기업과 근로 계약에 의해 여행 중인 자.
- 서독 지역에서 어떤 목적이든 보수를 받고 활동 중인 자.
- 명시적으로 동독의 당, 국가 기관이나 기타 공공 기관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자 혹은 대표단의 일원인 자.
- 망명 신청 중인 자, 체류 허가 신청 중인 자.
- 자신의 통상 거주지로 더 이상 귀환하려 하지 않는 방문자.

○ 여행·방문자에 대한 지원 사무는 방문자들의 방문지에 소재한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위임을 받은 지방 자치 단체가 맡아서 하며, 연방 정부(내독관계성)는 관련 지원액 전액을 연방 정부 예산에 계상하여 국고로 지원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동독 주민 방문자)들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이에 대해 지원 조치를 제공함.

- 방문자들은 지원 신청시 요구되는 신분 증명 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함.

○ 환영금(현금) 지원

- 동독으로부터 방문객은 신청에 의해 서독 정부로부터 환영금(Begruessungs-geld)을 현금으로 받았음.
  - 이 환영금은 1987년 8월 26일까지는 1인당 1년에 2회에 한하여 30 DM씩 지불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1인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100 DM으로 증액되었음.
  - 만약 여행 기간이 연말(12월 31일)을 넘어 진행될 경우, 처음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환영금을 지급함.
- 허가 및 지급 절차
  - 이 환영금은 중복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독 주민들의 여행 목적지(Besuchort)에 소재한 지방 행정 기관에 의해서만 지급됨.
    - » 여행 목적지는 동독 주민이 소지한 여행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여행 목적지가 여러 군데일 경우에는 첫 번째 여행 목적지에서 지급함.
    - » 만약 여행 목적지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환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이 환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 목적지 지방 행정 관청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환영금은 반드시 방문객이 여행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야 지급되며, 사전에 지급될 수는 없음.

○ 여행 경비 지원

- 여행 경비 지원 대상은 여행 중인 동독 주민 중 노령 연금 수령자(여자 60세, 남자는 65세부터), 상이용사로서 연금 수령자, 재해 보험에 의한 연금 수령자임.
  - 여행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방문자가 여행 경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초청자 또는 서독 거주 친척 또한 경제적 여건 상 여행 경비를 지불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함.
    - » 보통, 사회 부조금 수령자, 전쟁 원호 보상 대상자, 실업 보조금 수령자이면 이러한 증명이 가능함.

- 여행 경비 지원은 여행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여행자가 노령, 육체적인 고통 등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여행을 동반한 자에 대해서도 지원됨.
- 여행 경비는 기차 2등칸이나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지원함.
- 여행 경비 지원이 가능하려면 방문 기간이 최소한 1주일 이상이어야 함.

– 여행 경비 지원은 추가 여행(Zusatzreise) 경비 지원과 귀환 여행(Rueck-reise) 경비 지원으로 나누어 짐.

- 추가 여행 경비 지원은 방문자가 서독 지역 내에서 방문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됨.
  - » 1년에 2회에 한하여 여행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이 지급됨.
  - » 만약 방문자의 서독 친척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중병을 앓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원이나 장지를 방문하는 추가 여행비용이 지급됨.
  - » 추가 여행 경비는 서독에서 외국으로의 여행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음.
- 귀환 여행 경비 지원은 서독 지역 방문지로부터 내독 간 철도 국경 통과 지점(Luebeck, Buechem, Dedisfeld, Helmstedt, Gerstungen, Probst-zella, Gutenfuerst)까지 보통 열차(Schnellzug) 2등 요금을 지급함.
  - » 여행자가 국경을 통과하는 전 구간을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귀환 여행 경비 지원은 방문지로부터 내독 간 국경 버스 통과 지점까지의 보통 열차 2등 요금에 준하여 지급함.
  - » 만약 여행자가 왕복 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귀환시 방문지에서 출발 공항의 역까지 귀환 여행 경비가 지급됨.
  - » 귀환 경비는 방문지로부터 국경 통과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됨.

– 허가 및 지급 절차

- 여행 경비 지원은 추가 여행 또는 귀환 여행을 시작하는 곳에서 행해짐.
  - » 신청권자는 양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여 서독 지역 출발지 철도역에서 현금 증서(Gutschein)를 받음.
  - » 이 현금 증서는 기차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3개월 간 유효함.
  - » 연방 철도청은 연방 정부와 추후에 현금 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정산함.
- 추가 여행의 경우 서베를린에서 서독 지역, 혹은 서독 지역에서 서베를린 여행시 꼭 비행기 편을 이용해야만 할 경우는 베를린과 하노버 또는 함부르크 간의 편도 요금을 지불해야 함.

○ 의료비 지원

– 본 자료집 보건분야 편 참조.

○ 서독 여행 도중 사망시 지원

– 동독 주민이 서독 방문 시 사망했을 경우는 다음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그 경비를 서독 정부가 지원함.
- 서독 지역 사망지 또는 방문지에서 장례를 지내는 경우의 비용 전액.
- 동독 거주지로 사체를 인도하는 경우의 비용 전액.
- 사체를 화장하여 유골 단지를 동독 거주지로 인도하는 경우의 비용 전액.

– 만약 가족 묘지 안장 등 특수한 이유로 동독 지역 거주지로 사체나 유골을 인도하지 않고, 서독 지역 내 일정 지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서독 지역에서 사체나 유골을 인도하는 비용이 동독 지역으로 인도하는 비용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동독 주민의 서독 여행 도중 사망 사건 처리는 사망지의 지방 행정 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사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함.

3-2-2-3. 동독주민 서독방문 여행시 편의제공과 안내

○ 기차를 이용한 경우 동독 방문객은 서독의 기차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적십자사 봉사센터나 교회봉사단체에 의해 여행안내와 여행 중 발생된 질병에 대한 간단한 구급처치를 받을 수 있음.

– 보통 기차를 갈아타는 경우 목적지까지 안내설명, 멀미나 기타 여행 관련 질병에 대한 구급약 제공, 구급차 제공 등.

○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으로 여행자가 여행경비가 없어 더 이상 목적지까지나,

고향으로 귀환하지 못할 경우, 교회나 적십자사는 여행경비와 제반 편의를 제공함.

- 서독측 초청인 또는 친지에게 도착 시간, 도착 열차 등과 관련한 전화 연락 등.

○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인들은 방문지에 도착하여서 각 지방자치단체(읍, 면 등)에 설치된 동독주민 안내센터(Betreuungsstelle)에서 관련정보를 얻으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우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환영금(Betreuugsstelle)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100 DM를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제공하는 추가 환영금을 받을 수 있음.
-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동독주민에 대해서 교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데 있어서도 할인혜택을 부여했음.
- 의료지원
  - 양독 간 보건협정에 의해 동독주민은 서독방문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나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무료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대학병원에 찾아가 여권을 제시하고, 관련 양식을 작성·제출하면, "증명서"(Verechtigungsschein)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만약 질병으로 인해 동독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간 내에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향 주소지의 경찰서나 본(Bonn)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에게 의사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만,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음.
- 노령 연금 수령자(여자는 60세, 남자는 65세부터), 상이용사로서 연금 수령자, 재해보험에 의한 연금수령자는 목적지에서 추가 여행을 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받음.
  - 단 1년에 2회에 한하며, 방문기간이 최소한 1주일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초청자 또는 서독 거주 친척이 사회부조금 수령자, 전쟁원호 보상 대상자, 실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초청자 또는 서독 거주 친척이 지방자치단체 안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사항을 증명하면, 현금증서(Gutschein)를 받을 수 있음.
- 만약 서독방문자가 동독으로 귀환하는 비용이 없을 경우, 그 초청자나 서독 친척이 서독의 사회보조금수령자, 전쟁 원호보상 대상자, 실업보조금 수령자일 경우에 한하여, 신청에 의해 경비보전을 위한 현금증서를 받을 수 있음.
- 중장애자의 경우 서독에서 중장애자 증명서(Schwerbehinderteausweis)를 발급받아 귀환시 또는 시내교통요금 지불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장애자 증명서는 연방원호법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원호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장애자는 취업시간의 50% 이상을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거동이 아주 불편한 자를 말함.
  - 귀환시는 간호목적의 동행자나 길안내 개에 대한 운임을 면제해 주고, 특별좌석을 마련해 줌.
  - 서독지역에서 시내교통요금은 전부 면제됨.

○ 여행자의 짐은 동독철도편으로 도착지까지 별도 운송될 수 있음.

- 탁송된 짐은 만약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거나, 열쇠를 같이 보낸 경우에 한하여 국경에서 여행자의 입회없이 통관수속이 가능함.
- 밀폐되었거나 열쇠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자의 입회하에서만 통관수속이 가능함.

○ 선물의 지참

- 여행자가 서독에서 구입한 물건이나 선물 등의 지참은 동독 관세 규정에 의하면, 전체 금액이 1,000 동독 마르크까지, 여행 일수가 4일까지는 매 체류일당 200 동독 마르크까지만 관세없이 통관이 가능함.
  - 물건가격의 산정은 현 동독 내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 현금의 지참

- DM의 지참은 동독내에서 DM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Intershop)에서 선물구입을 조건으로 허용됨.
- 지참한 DM은 세관에서 외환보유 신고절차를 마쳐야 함.

- 또는 동독주민으로서 동독정부에 신고를 하고 서독에 구좌를 갖고 있는 경우, 1인당 500 DM까지 서독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한 돈은 서독에서 사용하거나, 선물할 수 없고, 반드시 동독으로 지참해야 함.

3-2-3. 통과(서독-서베를린 간) 교통에 따른 동·서독 간 쟁점

3-2-3-1. 통과로의 악용(통과교통료를 이용한 동독주민 탈출 문제)

○ 오래 전부터 있던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탈주로가 세월이 경과하면서 차단되어 버리자, 동독을 탈주하려는 사람들은 새로운 탈출로를 모색하였는 바, 기타 공산권 국가를 이용한 우회로의 방법, 그리고 통과교통협정 발효 이래 동·서독 간에 합의된 통과로를 탈주에 이용했음.

- 동·서독 국경을 이용한 단독 탈주가 수년 이래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리자 탈주자들은 제3자(특히 서독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원활동은 서독측은 "탈출지원"이라 표현했고, 동독측은 "인신매매"라 비난했음.

○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직후부터 서베를린 시민들은 지하 터널을 이용해 탈주지원을 했는데, 이 당시의 지원은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으로서 지원자의 개인적 위험부담이 엄청났지만 거의 무상으로 수행되었음.

- 그러나 통과교통협정의 체결 이후 물질적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지원, 즉 상업적 탈주지원이 생겨났는 바, 동독시민은 서독의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게 고액을 지불하고 동독을 탈출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기업적 탈출지원은 상당기간 동·서독 간의 긴장을 초래했는데 동독측은 통과로가 수회에 걸쳐 탈주용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를 통과교통협정 제16조에 규정된 "악용"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임.

○ 동독측은 서독측에 대해 탈주지원업체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수차에 걸쳐 촉구했으나, 서독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음.

- 거주이전의 자유는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속하는 절대적인 기본권으로서 모든 독일인이 갖고 있는 권한이며, 서독은 단일 독일 국적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동독시민의 서독입국을 방해할 수 없음.

-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주이전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 즉 탈주지원을 하거나 탈주지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문서를 위조하였다 할지라도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 1977년 9월 서독 연방대법원은 3건의 "탈주지원에 관한 소송"에 대해 중대한 판결을 내렸던 바, 소송의 쟁점은 탈주지원자와 탈주자 간에 체결된 소위 "탈주지원 계약"과 그 합의 금액지불의 미이행과 관련된 문제였음.

- 3건의 탈주지원에 계약상 합의된 금액은 5,000 DM으로부터 45,000 DM이었는데 2건은 탈주가 성공되었으나, 탈주자가 잔금지불을 거절하였기 때문이었고, 1건은 탈주시도가 실패한 후, 이미 지불한 선금 9,000 DM을 환불하라는 요구 때문이었음.

- 연방대법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독일민법 제134조에 따르되, 통과교통협정이 개인의 권리와 특히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독 간의 국가관계만을 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탈주지원은 법적인 금지사항이 아니라는 관점을 표명했음.

- 또한 탈주지원계약은 동독에서 오는 독일인으로 하여금 기본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선의의 관습(gute Sitte)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탈주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 역시 선의의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관점이었음.

- 탈주지원 계약상의 금액합의에 따라 탈주자는 완전한 지불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했음.

  • 즉 탈주지원계약은 "합의된 지불대금의 액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만일 제3자가 탈주지원사업을 통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 한해서는 법적인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

○ 1978년 7월 연방행정법원은 탈주지원자로서 동독에서 자유형의 형기를 마친 사람은 연방구속자지원법에 따른 급부신청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역시 "탈주지원"과 관련된 중대한 법원 판결인 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음.

- 탈주지원자가 인도주의적, 종교적, 정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탈주자의 이익을 위해 탈주지원을 했을 것.
  - 따라서 기업적 탈주지원에 대한 급부신청권은 성립되지 않음.

○ 동독지도부는 서독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기본조약과 통과교통협정의 기본 정신과 조문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개와 항의를 했음.

- 동독 외무장관 Kurt Nier는 상기 판결이 "서독에 있는 범죄적 인신매매자들의 존재와 행위를 정당화시킬뿐더러 동독내 통과로의 악용을 공공연히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함.
- 동독 대법원은 서독법원들의 판결에 맞서 서독이 국제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서독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독 '도당에 의한 범죄행위'가 정당화되었으며, 통과로가 반국가적 인신매매에 공공연하게 악용되도록 인정하는 것은, 동독의 법률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림.

○ 탈주 및 탈주방조문제는 동·서독 간의 법적 관점과 헌법정책적 관점이 상이했기 때문에 심각했는데, 동독의 법률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허가 없이 동독의 영토를 이탈한 후 귀환하지 않는 것은 소위 "공화국 도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고 동독 이외 지역으로의 인간호송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음.

- 이미 1955년에 동독대법원은 동독으로부터 출국사주 또는 공화국 도주에 대한 지원과 같은 "유인행위"를 범죄구성요건화하여 1957년 12월 11일자 형법 개정안에 "동독출국 사주"와 "반국가적 인신매매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서 확정해 놓았음(동독 형법전 제105조).
- 동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2년으로부터 15년 간에 이르는 자유형이었는데, 1973년부터 수많은 소송을 통해 동 조항에 의한 최고 중형인 15년 간의 자유형이 취해진 판결이 수없이 많았음.
- 1977년 동독 형법의 개정과 함께 탈주지원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어 중범이라고 판단될 경우 종신금고형이 판결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
  - 통과교통협정이 발효된 다음 6년 동안 서독출신 총 952명이 동독에서 탈주지원 또는 탈주방조혐의로 체포되었으며, 판결받은 865명 중 634명이 "반국가적 인신매매행위"를 근거하여 유죄처분 되었음.

○ 동독측은 1977년 10월부터 상기 서독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통과교통협정 체결 이후 폐지되었던 의심가는 대상과 인물에 대한 검색과 검문을 잠정적이나마 급격하게 강화시켜 여행자와 서독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음.

- 서독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동독 관계기관의 활동은 통과교통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었던 바, 그 이유는 악용에의 현저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검색될 수 있다고 동 협정 제16조 2호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었음.
  - 동독측의 혐의가 있는 대상과 인물에 대한 검색은 지난 수년 간 탈주용의자가 통과로를 이용하여 서독으로 왔음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었음(연방정부의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연간 700~750명).
- 동독의 관계기관은 통과로의 검문강화조치로서 규정상 정연하게 납봉인된 트럭을 개봉하는 조치도 취했는데, 동독의 이러한 조치 역시 서독의 탈주지원 단체들이 납봉인된 차량을 탈주지원용으로 반복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정위반이 아니었음.

○ 1978년 초 서독 연방정부는 이렇듯 사태가 악화되자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본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동독측에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음.

- 1978년 2월 서독정부는 기업성 탈주지원에 관한 각 부서 공동 대책방안을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탈주지원이 원칙적으로 법적인 금지사항이 될 수는 없지만 통관규정, 탈세방지, 형법 등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탈주지원업체의 영업행위를 제한토록 하는 한편,
- 과연 탈주지원업체가 포탈, 봉인파손을 이용한 횡령여부(납봉인 상태의 악용), 마약 남용(탈주자의 마취) 등의 혐의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였음.

3-2-3-2. 통과교통 일괄금(Transitpauschale) 결정

○ 통과교통협정 제18조에 따르면 통과로와 관련된 공과금, 수수료, 비용은 연간일괄금의 형태로 서독이 동독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개인이 지불하였던 사증비용과 도로사용료는 철폐되었고

1972년부터 1975년 간의 연간일괄금은 2억 3,490만 DM으로 확정되었음.

○ 1975년 12월에 체결된 추가의정서에 따라 1976년부터 1979년 간의 연간 일괄금은 1억 6,510만 DM이 증가된 4억 DM으로 인상 확정됨.

- 일괄금의 인상확정은 1972년부터 1975년 간의 통과교통량의 증가를 배려한 것임.
- 동·서독은 추가의정서 2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는 바,
  - 1977년이 경과한 후 1976년과 1977년도 통과교통의 발전추세를 근거로 한 연간금액이 과연 실제교통량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것과
  - 만일 1976년과 1977년도의 실제통행량에 따른 계산액이 예정 연간 금액보다 6.25% 편차를 보일 경우, 1978년과 1979년도 연간 지불액은 그 편차만큼 증액 또는 감액하여 각각 2개 년도에 반반씩 계상하여 지불할 것 등임.
- 이러한 수정조항은 동·서독 간의 교통량 증가에 대한 평가가 상이했기 때문에 불가피하였음.

○ 이미 1976년이 경과하는 도중 실제교통량과 추정치가 실제로 일치하지 않음이 판단되었음.

- 1977년 말 1976년과 1977년도에 대한 서독관계기관의 계산에 따르면 사전계산보다 약 12%의 편차가 있었으나, 동독관계기관은 편차를 3.5% 계산하여 의정서의 조항이 적용될 수 없었음.
  - 추가의정서 5항에 대한 의정서 주석에 통과교통 관련자료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 "통과교통의 규모를 둘러 싼 견해차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각각 상이한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을 했기 때문이었음.

○ 1978년과 1979년에 대한 일괄금은 각각 4,000만 DM 씩 삭감했어야 했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견해차였으나 동독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서독정부는 통과교통의 새로운 부담을 막기 위하여 청산일인 1978년 3월 31일 4억 DM을 지불하면서 4,000천만 DM에 대해 언급하며, 추후 회담을 통해 통행분야에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음.

- 그러나 1980년부터 1989년 간 서독의 연간지불액은 그때까지의 4억 DM으로부터 5억 2,500만 DM으로 재차 인상 확정되었음.
  - 이와 같은 계속적인 일괄금 인상과 더불어 지난 수년 간 동·서독 간의 견해차이를 빈번하게 유발시켰던 수정조항은 무의미하게 되었음.

3-2-3-3. 통과로의 방해

○ 통행협정 제2조는 통과교통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어떠한 형태의 방해라 할지라도 협정위반조치로 간주되는데 통과협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통과로의 방해를 계속하였음.

○ 1974년 초 동독정부는 서독정부가 각의를 통해 서베를린에 연방환경청을 설립하기로 결정함에 대응하여 통과로에 다음과 같은 방해조치를 단행함.

- 대대적인 통제.
- 시간지연적 임검.
- 국경통과지점에 있는 신호등에 대한 장시간 동안 전력공급 차단.
- 장시간에 걸친 교통체증.
- 1976년 8월 베를린장벽 구축일에 즈음한 행사에 참석하려 서베를린으로 가려던 450명의 기민당 청년단원의 통과 금지.
- 1978년 여름 1953년 6월 17일 동베를린 동기일에 즈음하여 서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성토대회에 참여하려던 4대의 기민당 청년단의 버스를 국경통과소에서 입국 금지.
- 1978년 7월 Carter 미국 대통령의 베를린 방문시 동독은 12시간에 걸쳐 방해작전을 펼쳤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과 동행한 Schmidt 수상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음.

○ 연방정부는 동독측의 각종 방해공작을 통행협정 위반으로 간주, 공식항의를 하였는가 하면 통과위원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이의 개선을 촉구했음.

- 이러한 동독 관계기관의 처사는 Egon Bahr의 말대로 "여하한 이유를 근거로 하든 통과교통 장애는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었음.

3-2-4. 최소의무환전(Mindesumtausch) 제도

○ 1964년 12월 동독재무성은 서독인들의 동독여행제한과 동독의 외환확보를 위해 서독의 모든 방문자들에게 1일 1인당 5 DM의 소위 최소환전액 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 내용은
  - 입국일과 출국일도 공히 1일로 계산하되,
  - 1일당 5 DM을 입국시 동독마르크와 의무적으로 1:1 교환하며
  - 그 대상에서 연금수령자와 16세 미만의 자녀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었음.
- 1968년 최소환전액은-동독에서는 의무환전액, 서독에서는 강제환전액으로 통칭됨-5 DM으로부터 10 DM으로 증액되었으며, 1973년 11월 15일부로 또 다시 20 DM으로 증액됨.
  - 연금수령자와 어린이에게도 확대 적용되었음.
- 1980년 10월 13일부터 다시 25 DM으로 증액하였다가 1983년 서독측 은행들이 차관제공 이후에는 만 6세부터 14세 어린이에 대한 의무환전은 철폐했음.

○ 1973년 11월 동독지도부가 제시한 상기조치의 근거는 서독인의 동독방문 여행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역조, 즉 서독방문객이 동독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대부분이 수입되어야 하거나, 또는 이에 따라 수출용으로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서독은 동독정부가 환전액인상을 통해 1972년 이래 증가일로에 있던 서독방문객으로 인한 체제의 이완에 제동을 걸고, 아울러 서독의 경화를 확보하기 위한 이중전략이라고 보았음.

○ 실제로 최소환전액제도와 여행교통의 발전추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음.

- 1964년 최소환전액의 도입과 함께 실제로 여행은 격감했음.
- 환전액이 인상된 다음인 1968년과 1973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음.

○ 1973년도 동독의 이러한 조치와 함께 이미 기본조약이 발효한 초기연도에 동·서독관계가 심히 악화되었음.

- 서독정부는 최소환전액의 인상을 "조약상 명기된 선린관계와 협력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 동독과의 회담을 통해 그 방침철회를 종용했음.
- 1974년 11월 15일 동독은 환전율을 다시 인하할 용의를 보였으나 동독은 1973년 11월의 기존규정을 일부만 변경함.
  - 연금수령자는 환전의무로부터 다시 면제됨.

○ 서독정부는 대동독 차관제공, Swing 액수의 인상 등 대동독 경제지원협상시 마다 이 최소의무환전액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급부 대 반대급부 허용"이라는 방식이 이 분야에서는 동독측의 완강한 자세로 말미암아 통용되지 못했음.

- '73년도 최소의무환전액의 배증시 서독정부는 경제적 제재조치(Swing 무연장)를 가한다고 정치적으로 위협하여 이미 '74년도에 약간의 완화 조치성과를 거둔 바 있음.
- '81년 초 동독측은 완화조치로서 중장애자와 맹인의 동반자에게 면제 조치를 취했으나 중장애자는 자체는 면제혜택을 못 받았음.
  - '82년 초 Swing 연장을 위한 회담재개 직전 최소의무환전 완화와 Swing 액수를 연계시킨 바 있으나, '82. 4 동독외무부는 최소의무환전액은 변경할 수 없다고 발표함.
  - '82. 6 서독정부는 동독정부가 최소의무환전액 문제를 전연 착수하지 않았지만 Swing 연장회담 재개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동독 정부가 최소의무환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신뢰에 의거 성의를 보일 것을 바랄 뿐이었음.
  - '83, '84년 서독은행의 대 동독 차관제공시 동독측은 예외조치를 확대하며 이 문제에 성의를 보였으나, 통독 직전까지 폐지하지 않았음.
- 방문객 증가에 따라 이 환전액 자체가 동독에게는 엄청난 경화수입원(실제 국제시세와 달리 1:1로 교환되었으므로)이었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독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3-2-5. 내독 간 사체·유골의 반입·반출

3-2-5-1. 동독주민이 서독 방문 도중 사망했을 때 동독으로의 반입

- ㅇ 만약 동독주민이 서독지역을 방문하다가 사망하여 이를 동독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동독이 1971. 10. 20일 제정한 "사체인도에 관한 규정"(Anordnung ueber die Ueberfuehrung von Leichen)에 따랐음.
- ㅇ 사체나 화장한 유골의 인도는 장의용 운구차, 철도, 선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음.
  - 화장한 유골단지는 우편(소포)를 통해서도 송부가 가능했음.
    - 소포로 보낼 때 발송인은 반드시 화장터나 공동묘지 관리소가 되어야 하며, 수취인은 공동묘지 관리소나 매장지가 되어야 했음.
  - 사체 운반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한가지 운반수단으로부터 다른 운반수단으로 무단으로 옮겨 실어서는 안 되었음.
  - 사체를 장의차로 운구하는 경우 서독측은 국경통과소까지만 운반하고, 국경에서 동독측 장의차에 옮겨져 동독측에 의해 최종 장지까지 운구되었음.
    - 국경통과소에서 사체를 인도하는 일정은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음.
    - 국경을 통과한 사체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목적지로 향해야 함.
- ㅇ 사체를 인도할 때는 관계서류를 지참해야 했던 바, 사체운반증명(Leichenpass) 또는 사체운반증명에 준하는 서류와 사망신고서(Sterbeurkunde)가 요구되었음.
  - 유골은 소포로 발송할 때도 사망신고서를 동봉하든지, 동시에 발송해야 했음.
- ㅇ 동독으로 운구된 사체의 매장이나 유골의 매장을 위해서는 동독 지방관청(시·군 내무과)에서 발행한 매장허가서가 요구되었음.
- ㅇ 사체의 운반, 사체의 화장 또는 유골의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동독주민이 방문했던 서독지역 지방자치단체(공동묘지·매장담당부서)가 장의사나 관계인의 비용청구에 따라 이를 지불하였음.
  - 서독측은 서독지역에서 내독 간 국경까지만 운구할 수 있으므로 그 관련부분만 부담했음.

3-2-5-2. 서독주민이 동독 방문 도중 사망했을 때 서독으로의 반출

- ㅇ 사체인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역시 동독이 1971. 10. 20 제정한 "사체인도에 관한 규정"임.
- ㅇ 사체나 유골의 인도는 반입시와 같이 장의용 운구차나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화장된 유골은 우편으로도 가능했음.
- ㅇ 장의용 운구차를 이용할 때는 동독측은 국경까지만 운반하여 서독측에 인계했음.
  - 인도에 관한 일정은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음.
- ㅇ 사체운구를 위해서는 방문자가 사망한 지역의 지방관서(건강·사회담당)가 해당지역 경찰서의 동의하에 사체운반증명을 발행받아야 했음.
  - 사체운반증명의 발급은 반드시 사체의 도착지 관계인이 사체를 인도할 것이라는 서독 지방관청의 확인이 있어야만 이루어졌음.
  - 이러한 서독지방관청의 확인은 동독관청이 서독측 지방관청 공동묘지·매장담당부서에 조회했음.

3-3. 동독주민 탈출·이주문제

3-3-1. 동독측의 국경차단과 탈출·합법이주

○ 1,393km에 달하는 내독 간 국경은 서독측에게는 전적으로 열려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음.

- 서독측 주민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동독측과의 경계선까지 갈 수 있었고, 동독측에서 설치해 놓은 각종 국경 통제 시설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가서 상세하게 각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
- 국경 서독측 지역에는 아무런 제한구역이나 통제 시설이 없으며, 단지 "정지, 여기서부터가 국경임(Halt, Hier Grenze)"이라고 쓰여진 주의표지판만이 국경 부근에 세워져 있었음.
  - 그 표지판 바로 뒤로 동·서독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Grenzenstein)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음.

○ 그러나 동독측의 국경지역은 광범위하게 제한구역을 성정하여 엄중한 경비를 폈으며 탈출자에게는 "공화국 도주자"로 규정하여 총기사용 명령까지 내려져 있었음.

- 국경 3-5km 이전부터 "통제구역(Sperrzone)"이 설치되어 이 지역 출입에는 마을 사람들도 특별한 허가증이 필요했음.
- 이 통제구역 중에서 동·서독 구경까지 100-2,000m 내의 구역은 "방어구역(Schutzstreifen)"으로 지정되어 각종 탈출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

○ 양독 간의 국경이 완전히 차단된 이유는 동·서독 간에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동독측이 서독에 대해 늘 정통성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고, 많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희망하였으므로 동독지도부가 사회주의 토대의 상실을 우려하여 국경 통제를 점차 강화해 나간 데 있음.

- 1945년 이후 소련 점령지역으로부터 전문 인력이 계속 빠져 나가자 소련 점령당국의 요청으로 연합국측은 1946년 양 점령지역 간의 군사분계선을 잠정적으로 차단하기로 결정하였음.
- 냉전이 격화되던 즈음 1952년 5월 동독측은 서독과 서방측 간의 독일 조약이 서명되던 날 각료회의 결정으로 국경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양독 간 군사분계선 사이의 통행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제한시킴.
  - 1952년 5월 국경 경찰에 내려진 명령에서는 국경탈출자에 대한 총기 사용이 허용되게 되어 있었음.
- 1961년 8월 12일 각료회는 베를린 장벽 설치(8. 13)를 결정하고 그때까지 비교적 자유로웠던 베를린 주민 간의 왕래마저 차단함. 그 이후 내독 간의 국경에는 각종 차단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함.
- 1972년 양독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교류·협력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불안을 느낀 동독지도부는 국경에 더 많은 차단조치를 강구함.
  - 1971년에 이미 차단지역 내에 전자 감응 자동 발사기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1975년에는 더 많은 지뢰가 매설되었음.
- 1982년 3월 25일 국경법(Grenzgesetz)의 제정으로 탈출자에 대한 총기사용 명령이 법제화되었음.
- 1949년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국경(동·서 베를린 포함)을 탈출하다가 동독측의 총기사용으로 죽은 사람은 총 197명으로 내독 간 국경에서 119명, 베를린 주변에서 78명으로 공식 집계되어 있음.
- 국경에서 탈출을 기도하다가 국경으로부터 총격이나 지뢰 또는 자동발사 장치에 의해 탈출이 좌절된 예는 Salzgitter 소재 구 동독 폭력사례 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1961년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총 4,444건에 이르고 있음.

○ 동독이 건국된 이래 장벽구축과 사격명령 그리고 갖은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결코 종식될 수 없었던 서독으로의 부단한 피난민 물결과 출국인파는 동독의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며, 동독체제가 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키는 지시기와 같았음.

- 동·서독 간의 이와 같은 이주운동은 동독이라는 전체주의 정권의 정체를 폭로하는 중요한 계기였음.

- 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서독으로 향한 것은 서독에서는 보다 나은 생활조건이 보장되고, 자유민주적인 구조 속에서 좀 더 나은 생활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이 있었지만 후기 스탈린주의식 통치방식의 동독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

○ SED가 통치하던 동독을 떠나기 위해 서독행 탈출 또는 이주를 결행했던 동독시민을 이주민(Uebersiedler)이라 일컫는데 그들은 서독 기본법에 따라 독일인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국적 취득절차 필요없이 서독에서 정착하게 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많은 정착지원금을 받았음.

- 1961년까지 수십만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주로 Berlin을 비롯한 동·서독 국경을 거쳐 피난민으로서 서독으로 왔으며, 국경이 봉쇄되면서 수만 명이 "동독으로부터 영구히 출국하기 위한 신청"(Antrag auf staendige Ausreise aus der DDR)이 허락되기까지 때로는 수년 간을 기다린 후 연금수령자 또는 "이산가족 합류자"로서 서독으로 왔음.
- 그들은 피난민으로서 제3국을 거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장벽과 철조망을 극복한 후 서독으로 오기도 했으며,
- 서독에 의해 값이 지불된 후 동독의 형무소로부터 석방된 정치범(Freigekaufte)인가 하면,
- 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합법적인 여행자로서 서독에 온 후 머물러 버린 자들이기도 하였고,
- 동독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나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 주재 서독대사관을 거쳐 서독으로 넘어오기도 했음.

○ 1950년부터 1989년 말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유입된 인구는 49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서독을 떠나 동독으로 유입된 인구도 47만 명에 달함.

- 즉, 동독은 40년 동안 무려 440만 명이라는 인구감소를 당했으며, 1949년도의 동독으로부터의 유출인구(129,000명)와 1990년 전반기의 유출인구(238,000명)을 감안하면 52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동독을 떠나 서독행을 단행했음을 뜻함.
- 이 수치는 서독을 떠난 유입인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독 당시 1,600만이던 동독이라는 국가가 존립하던 동안, 핀란드의 인구수(1985년도 490만 명)와 거의 맞먹는 이주손실이 있었음을 나타냄.

○ 이러한 피난·이주민 물결의 파급효과

- 동독의 전체주의적 구조를 폭로하여 동독체제의 안정을 저해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젊은이들과 같은 혁신적이고 비판적인 인간자본의 손실로 말미암아 체제가 자체 개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케 하여 동독의 사회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음.
- 이러한 동독의 이주민들은 서독의 경제부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의 연령구조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서독의 60년대, 7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이주민들의 혁신적 역동력이 서독사회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주현황·이주동기

- 4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는 중 끊임없이 계속된 이주민 대열은 그때 그때마다 동독의 정치상황이나 경제현황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함.
- 1950년부터 1961년 동·서독 간의 국경이 봉쇄될 때까지 260만 명이 동독을 탈출해 왔음.
  - 1961년까지 피난민 당사자들이 제시한 피난의 근거는 정치적 원인(56% : 그 중 양심의 위기 및 기본권제한 12%, 정치활동 및 첩자활동 강요에 대한 거부 29%), 경제적인 원인(13% : 강제집단화, 국유화), 재정적 원인(10% : 수입개선 및 주거상태개선), 가정적·개인적 원인(15%), 기타 원인(6%) (Die Flucht aus der Sowijetzone und die Sperrmassnahme des kommunistischen Regimes vom 13. August 1961 in Berlin; hrsg. Bundesministerium fuer Gesamt-deutsche Fragen, Bonn-Berlin 1961. s.18-22. 참조) 등이었음.
  - 이 시기 동독출신 피난민 중에는 특히 젊은 연령층이 많았는데 1952년도 이주민의 48%가 25세 미만이었으며, 1960년에는 무려 53%나 되었으며, 65세 이상은 1952년에는 2%, 1960년에는 7%였으며, 1952년의 피난민 중 25세~45세인 자의 수는 32%였으며 1960년도에는 23%로 줄었음.

- SED는 지속되는 동독사회의 위기가 정치구조 및 사회경제구조에 그 원인이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1961년 8월 13일을 기해 Berlin 장벽을 비롯, 서독과 연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의 결정적 동기인 공화국 도주를 막아보려 하였음.
- Berlin 장벽이 조직적으로 구축된 이래 이주민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1961년 8월 이후 1970년 말까지 모두 281,000명이 서독으로 왔으며, 그 중 146,000명(52%)은 정식허가를 받은 자들이었으며 135,000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서독으로 올 수 있었음.
- 1971년부터 1979년 말까지 131,000명의 이주민이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왔으며 그 중 85,000명(65%)은 정식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었음.
- 60년대 말까지 합법적 이주는 거의 예외 없이 연금해당 연령측에게만 보장되었고, 70년대에 들어서도 거의 대체적으로 연금수령자들만이 보장되었고, 70년대에 들어서도 거의 대체적으로 연금수령자들만이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었으므로 60년도의 총 이주민 중 70% 내지 80%는 60세 이상인 자들이었으며, 25세 이하의 연령층은 약 10%(1965년도 10.4%) 정도였음.
- Berlin 장벽 설치 이후, 동독이 비교적 안정스러웠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도층은 사회현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민주적 구조를 공고히 하여 경제개혁을 책임감있게 단행함으로써 피난민 물결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갈파하지 못하였음.
- 1980년부터 1988년 말까지 총 204,000명(동독출신 유입주민의 89%)의 이주민이 연방긴급수용절차(Bundesnotaufnahmeverfahren)에 기록되었으며, 150,000명의 이주민(이주민 총 수의 74%)이 출국신청의 허가를 받아 서독으로 왔음.
  - 이 기간 중 54,000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하였으며 그 중 약 2,700명은 중무장된 동·서독 국경을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왔음.
  - 1961년 이래 1984년 들어 처음으로 35,000명에 달하는 서독행 대규모 이주가 허가되었으며 동독시민 중 젊은이들에 대한 출국허가 역시 점점 늘어났음.

  - 이주민의 연령구조는 계속해서 청장년층에 집중되었는데 1985년에는 이주민의 35%가 25세 미만이었으며 25세 이상 65세 미만은 53%나 되었으며 65세 이상은 12.5%로 감소되었음.
  - 80년대의 대표적인 이주동기 역시 정치적 근거와 경제적 근거가 결합된 것이었는데, 출국의 근거로서는 무엇보다도 의사표현의 자유 결핍(71%), 정치적 압력(66%), 여행가능성의 제한(56%), 불량한 급양(46%), 미래에의 희망부재(45%), 친척관계(36%) 등이었음(문항에 대한 중복 답변이 허용됨, Rong, V.: Von drueben nach hueben, Wuppertal 1985, S.18 참조).
- 1989년도에는 Berlin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동·서독 통일의 전기(wende)가 마련된 한 해였는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이주민 대열의 특징과 차원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동독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종말이 시작됨으로써 동·서독이 통일되는 전제조건이 조성되었음.
  - 1989년 8월과 10월의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철책의 철거 이후 피난민의 대열은 더 늘어나 8월 중 외국을 거쳐 서독으로 온 피난민은 약 8,000명이었지만 9월에는 이미 21,000명, 10월에는 26,000명이나 되었음.
  - 출국자의 물결과 걷잡을 수 없게 된 피난민의 홍수는 동독에서 평화적 대변혁을 가능케했고, 급기야는 동·서독 국경이 개방되어 이주민 수는 급상승했음.
  - 1989년에 동독을 떠난 사람들은 주로 젊은층이었던 바, 출국자와 피난민의 약 절반(46%)이 25세 미만이었으며 이주민 중 3%만이 65세 이상이었고, 대사관 점령 소동시, 그리고 장벽개방 이후에 젊은층의 비율이 특히 높았음.
  - 1989년 12월과 1990년 1월 간에 서독으로 온 이주민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주동기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Vogt, D. / Berlin-Demiriz, H. / Meck, S. Die innerdeutsche Wanderung und der Vereinigungsprozess, Deutschland Archiv 23 (1990), 5, S.736 u. 737 참조). ; 정치적 조건(93%), 개인적 부자유(86%), 낮은 생활수준 및 환경조건(72%), 친구와 친척 때문(59%).
-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된 최초의 동독인민회의 자유선거 이후 동·서독 통일의

희망이 일게 되자 서독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던 당시의 동기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특히 신속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비롯하여 실업과 같은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악화가 서독으로의 이주를 촉진시켰던 새로운 동기가 되었음.

  - 1990년 3월 선거 이후 동·서독 간의 국가적 통일이 조속하게 실현되리라는 확신과 더불어 이주민 수는 눈에 띠게 줄어들었는데, 1990년 3월의 이주민 46,000명은 전년도 11월의 약 1/3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음.

- 1990년 4월에 들어서자 이주민 수는 약 절반으로 줄었으며(24,600명) 6월에는 겨우 10,689명이 집계되는 등, 1월부터 7월까지 총 238,384명의 동독시민들이 서독으로 왔으나 동독에서 실업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주희망자의 잠재력은 또 다시 확대되고 있었음.

3-3-2. 서독정부의 동독 피난민·이주민 정착지원

3-3-2-1. 법적인 근거마련 및 운영상의 제 문제

○ 2차대전 후 소련점령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산정권의 통치를 피해 서방점령지역으로 넘어오자, 서방측은 이들을 다 수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수용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따라 서독의 기본법(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각 점령지역별로 피난민들이 서방측에서 확실히 인정할만한 어떤 사유로 넘어 왔으며, 이들이 어떤 기준하에 수용되는지 그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함.
  - 영국과 미군 주둔지역 주들은 각각 1947년부터 피난민의 수용기준과 주둔지역 정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1949. 8. 29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웰젠의 지침서"(Uelzener Richtlinie)라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
- 서독정부는 기본법 제정시 11조에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Freizuegig-keit)를 명시하였고, 166조에 구 동독지역 주민 또한 서독의 국적을 소지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구 동독주민 중 서독으로 피난오는 자들의 수용여부에 관한 국내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서독정부는 1950. 8. 22 "긴급수용법"("Notaufnahmegesetz"; 정식 명칭은 "독일인의 서독지역에의 긴급수용에 관한 법"; Gesetz ue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임)을 제정함.

- 이 법은 1961. 6. 29일 개정되었고, 시행령인 "Verordnung zur Durch-fuehrung des Notaufnahmegesetzes"가 1951. 6. 11 제정되었으며, 이 시행령도 1965. 6. 14일 개정됨.
- 이 법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음.
  - 양독 간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동독지역으로부터 지나친 피난민 유입을 적절하게 법적으로 통제함.
  - 각 지역 주정부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 수용키로 한 피난민은 각 지역주에 적절히 배분하여, 이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조속히 동화되도록 함.
  - 서독의 고용시장 및 주택사정을 고려하여
    - » 당시만해도 서독 또한 전후복구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동독지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피난민의 유입을 적절하게 줄여나감.

○ 이 법의 제정 이후 실제운용과정에서, 피난민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각 주정부의 도움으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입법취지는 달성되었으나, 피난민 유입을 줄여나가려는 세 번째 입법목적은 관철시키기 어려움이 드러났음.

- 우선 긴급 수용법 제1조에 의해 체류허가(Aufenthalterlaubnis)를 받기 위해서는 피난민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서독정부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했음.
  - 직계 존·비속 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피난.
  - 서독에서 주택과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제시할 수 있는 피난.
  - 특별한 정치적인 이유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시도한 피난.
  - 피난수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심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피난.

- 이러한 규정의 적용으로 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체류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들이 그렇다고 동독지역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민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음.
  - 더구나 체류허가를 못받은 사람들이 계속 체류하면서 피난민 담당 관청이 아닌 사회보장청이나 종교계통의 구호기관에 구호를 의탁함에 따라, 체류허가증 발급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음.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자 긴급수용법 제1조 1항과 기본법 11조와의 관계에 관한 정치적, 법적인 논란이 벌어지게 됨.

- 헌법재판소는 1953. 5. 7 기본법 11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동독지역으로부터 피난 온 독일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피난민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 선별을 규정한 긴급피난수용법 제1조 1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음.
-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 상황이 냉전으로 격화되던 시기였으므로, 동독지역으로부터 오는 피난민들은 서독땅에 일단 이주한 이후부터는 차별없이 기본법상 보장된 권리를 완전히 누린다는데 국민적인 합의가 조성되어 있었음.
- 시간이 지나면서 서독내에서는 구 동독의 공산정권은 점점 불법시되었고 이에 따라 서독내에서의 구 동독주민들의 "체류불허"에 따르는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으며, 피난민의 수용절차는 해당요건을 충족시키면 허가를 내리는 "선별절차"(Ausleseverfahren)에서 단순히 "기록하는 절차"(Registerverfahren)로 바뀌게 됨.
- 동독공산정권이 점차 독자적인 국가성을 강조하며, 국경선을 봉쇄해가고 베를린장벽을 구축한 이후부터는, 피난민의 체류허가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없어졌으며, 피난민이 수용허거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독으로부터 오는 모든 피난민은 기본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당연히 향유하게 되었음.

○ 긴급수용법에 의거 피난민들은 베를린과 기센(Giessen)에 있는 수용소에서 수용증명서를 발급받고, 각 주정부 대표자와 협의하에 각 지방주로 배분되어 정착하게 됨.

3-3-2-2. 구 동독 피난민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역

○ 긴급수용소 체재시 제공되는 혜택

- 연방정부에 의한 일회 보조금 : 1인당 200 DM
- 주정부에 의한 보조금 : 가장 30 DM
  가족 1인당 15 DM
- 이주민에 대한 용돈 (Hessen 주 사회복지기금에 의한 재원) : 가장 15 DM
  가족 1인당 10 DM
- 신청자의 요청(개인의 연고관계)에 따르거나, 주정부의 사정에 따른 정착가능성(직장, 주택 등)을 고려 수용될 주를 결정.
- 직업정착, 사회정착, 보조, 혜택에 관한 상담.
- 숙식 및 숙식비.
- 건강진단 및 의료서비스(필요시).
- 종교단체에 의한 의복제공.
- 향후의 주거지나 주립임시수용소까지의 차표.
- 긴급수용소(Giessen, Frienland, Nuernberg, Unna-Massen)로부터 향후 주거지까지의 이삿짐 운송.
- 대학진학상담.

○ 정착될 주에 도착한 이후

- 거주지 마련
  -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를 통한 주택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수용소에 기거.
  - 주택소개.
  - 주택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 연방정부는 피난민

복지주택건설촉진을 위해 주정부에 재정지원함. 주정부는 이 예산을 자체예산과 함께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사용.

- 복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주택건설법(WoBauG) 제25조에 따라 동독출신 이주민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주택입주상의 혜택을 줌.

– 생활상담과 후견

- 새로운 생활환경 소개

– 생활용품, 가구구입을 위한 저리 융자

- 독신자 : 3,000 DM
- 가족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기본액 : 4,000 DM
- 기타 가족 1인당 : 1,000 DM
- 최고액 : 10,000 DM

– 연방실향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 제92조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학교졸업증명서나 직업교육 자격증서의 인정.

– 연방교육촉진법(Bundesausbildungsfoerderungsgesetz : BAFOEG)에 따라(초중고 및 대학진학, 제한적으로 방송통신대학 진학시) 학자금 지원.

- 대학진학시 최고 연령이 30세(서독에서는 30세가 되면 융자를 받지 못하나 특별한 근거제출시 동법의 예외 규정 적용)에 달하더라도 장학금 융자지원.

– 대졸자(30세에서 50세 사이) 사회진출을 위한 보조.

- 자격증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업 정착이 가능하도록 학업추가 이수시 장학금 혜택.
- 동독에서 취득한 졸업증이 완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서독대학에서 추가연구를 마쳐야 적정한 직업정착이 가능하게 될 경우 학업이수에 따른 보조.

– 자녀수당지급

- 연방자녀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에 따라 특별한 조건이 제시되는 한 이주 후에도 동독,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

– 의료보호, 질병급부금

- 법정질병보험에 가입한 자는 서독에서 적용되는 질병보험법에 따라 질병보험으로부터 급부금을 받음.
- 동독에서 온 이주민으로서 서독에 도착한 지 3개월 이내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급부금 지원을 신청할 권한이 있음.
- 질병급부금은 단체협약임금의 최고 80%, 혹은 최고 최종실직수당 만큼임.

– 연금보험

- 서독에서 적용되는 연금법에 따른 개별적 급부금을 받음.
- 동독, 동베를린에서의 기여금 불입기간을 산정해 줌.
- 1945. 1. 1-1949. 12. 31 중의 기간, 강제이주기간 내지 피난기간, 도착 이후에 본인의 과실 없이 질병이나 실직에 의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일반적으로 산정해 줌.
- 과거의 자영업자도 기여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대상으로 고려.

– 실업보험

- 동독, 동베를린에서의 정치적 이유로 박해에 의한 실직기간도 취업기간에 고려.
- 정치범으로서 구류기간을 실업수당 및 실직지원금 계산시 고려.
- 자영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그 가족으로서 자영업을 도왔던 기간을 고려.

– 실업수당

- 자녀수가 최소 1명 이상인 실직자일 경우 단체협약임금(실수령액)의 68%.
- 독신자는 단체협약임금(실수령액)의 63%.

–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서독에서 적용되는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
- 동독, 동베를린에서 발생했던 산재의 경우에도 서독에서 적용되는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

- 전쟁희생자원호
  - 연방보호법(Bundesversorgungsgesetz : BVG) 제1조에 따라 신체의 장애를 받은 자는 신청할 경우 건강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원호를 받음.
  - 1945년 5월 8일 이전에 조국을 위해 근무하다가 신체의 장애를 받았거나, 1945년 5월 9일 이후 조국을 위한 병역의무 수행시 신체의 장애를 받았을 경우에도 원호대상이 됨.
  - 신체의 장애를 받은 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할 경우 원호혜택을 받음.
-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gilfegesetz)에 따른 지원
  - 생계비 지원.
  - 주택임대료 지원.
  - 난방비 보조금.
  - 의복과 가구에 대한 보조금.
- 공동사업발주에 있어 우선적 수주(§74 BVFG).
- 수공업자 협회에 가입 용이화(§74 BVFG).
- 소득세법(Einkommemssteuergesetz) §52 Abs. 24, §33a Abs. 1에 따른 세금면제 및 세제혜택.
  - 3년 간 세금면제(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적용지역에서 주거신고를 한 해 기준 또는 피난민 수용증명서가 발급된 해 기준).
  - 의복과 가구의 구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고려 세금공제.
  - 공장건물과 창고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허용.
- 주택보조금에 대한 특별 면제액(주택보조금법: §16 Wohngeldgesetz)
  -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주거지를 옮긴지 4년 이후 10년이 될 때까지 주택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 계산시 2,400 DM까지 공제해줌.
- 학자들에 대한 지원.
  - 학자들이 학술연구경력면에서 이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 연방교육부장관은 서독대학에서의 직업정착을 위해 최고 2년까지 인건비를 계약사무직(최고급수 BAT IIa) 기준으로 지급하며 재정지원함.
  -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은 서독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상기학자를 계속 채용한다는 약속을 할 경우임.
- 자영업 개업지원
  - 유럽개발계획(ERP) 기업신설프로그램(제조업)에 의한 유리한 조건의 융자.
  - 기업신설목적으로 체결된 저축계약을 근거로 한 저축에 대한 저축장려보조금.
- 농업정착(부업)을 위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 전쟁포로보상법(Kriegsgefangenenentschaedigungsgesetz)에 따른 구 전쟁포로에 대한 보상.
  - 구 전쟁포로에 대한 귀향민재단의 지원 및 연금조정금 보상.
- 구속자지원법(Haeftlingschilfegesetz)에 따른 지원(구 정치범 지원재단의 지원 포함).
- 부담조정법(Lastenausgleichsgesetz)에 따른 지원.
  - 주보상금.
  - 가구보상금.
  - 정착융자금.

3-3-3. 동독으로부터 이주에 따른 이사물품 반출

○ 법적 근거
- 1973. 6. 14자 관세법 제22차 시행령.
- 1976. 9. 13자 관세법 제27자 시행령.

○ 여기서 이사물품(Umzugsgut)이란 동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동독으로부터 이주한 자들의 동산에 속하는 물품만을 지칭했음.

- 이사물품은 세관에 반출 신고시 신고자가 이미 사용하던 물품임이 세관당국에 의해 인정되어야 했으며,
- 제3자와의 재산문제로 쟁송 중이 아닌 물품으로서 계속 신고자의 가계에서 사용되어야 했음.

○ 이사물품 반출은 주민들의 이주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물품 반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이주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반출이 허용되었음.

○ 이사물품의 반출은 관세가 면제되나,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했음.

- 이사물품 반출시 늦어도 3주 전에 거주지 관할 세관에 통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음.
-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았음.
  - 물품의 정확한 명세서 2통(이 물품이 관세법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 물건임을 직접 본인이 확인·서명).
  - 동독관청이 발행한 이주허가서.
  - 이주자 본인이 직접 운반하지 않을 경우는 운송회사(동독의 인민공유 운송회사에서 주로 업무를 취급했음)가 확인한 운송위임확인서.
- 개인이 직접 운반할 경우는 그 수단으로 화물차는 허용되지 않고 승용차만이 허용되었음.
  - 이사물품 운송은 서독 운송회사나 철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
- 서독 운송회사를 통할 때는 동독 운송회사(인민공유)의 중계를 받아야 하며, 대금은 DM으로 지불해야 했음.
  - 서독 운송회사는 신속하게, 물품의 손상 없이 운송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DM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음.
- 동독은 철도를 이용하여 서독의 목적지까지 이사물품을 운송할 수도 있었으나, 이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운송비용을 동독마르크로 지불해야 했음.

○ 이사물품 제한·금지품목

- 이사물품으로서 승용차나 생산재 등의 반출은 대외무역성의 특별한 허가를 득해야 가능했음.
- 귀금속, 보석, 진주 또는 진주로 만든 제품의 반출은 외환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했음.
- 다음과 같은 품목의 반출은 금지되었음.
  - 총포류 및 화약(가스총, 공기총, 공포탄 포함), 폭발물.
  - 동독 해당 관청이 반출을 금지한 동물.
  - 방송용 송·수신기 및 그 부품, 조립설명서.
  - 과학기술·경제적 측면에서 신발명품으로 간주되는 특허·신연구 기술에 관한 자료.
  - 지도 및 측량도.
  - 주식, 저금통장, 유가증권.
  - 의약품, 중독성 약품, 독극물.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고서적 등 원문(그림, 고가구, 도자기 등은 그 물건들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반출이 허용된 물품인지를 꼭 사전에 문의해 보아야 함).
  - 인화나 현상이 안 된 필름, 영화 필름.
  - 상업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대량 물품.
  - 인쇄물, 우표, 동전 등의 내용이 평화지향적이 아니고 선동적일 때.
  - 박물관에 보관할 가치가 있는 원광석, 화석 등

3-4. 국경지역 개발

3-4-1. 서독측의 내독 간 접경지역 지원

3-4-1-1. 접경지역(Zonenrandgebiet) 지원의 필요성

○ 서독은 국토의 분단으로 인해 특히 내독 간 접경지역의 경제가 침체하고, 생활조건이 열악해져 주민들이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독일(통일)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함.

- 서독정부는 향후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 살 수밖에 없으므로 해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주민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연대의 표현으로 이 지역에 대해 경제·사회·문화적인 차원의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함.
- 동독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브란트 정부는 1971. 8. 5 접경지역 지원법(Zonenrandfoerderungsgesetz)을 통과시켜, 이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인 기초를 마련함.
  - 이 법은 1985. 12. 19 세법개정으로 일부 개정되었음.

○ 동 법 제9조에는 접경지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범위가 명기되어 있음.

- 접경지역은 대략 내독 간 국경(1,393㎞), 체코와 국경(356㎞)과 북동해안선(384㎞)을 따라 서독지역 쪽으로 약 40㎞ 범위에 드는 지역을 포괄하고 있음.
- 이 지역의 면적은 약 46,800㎢로 서독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하며, 주민수는 1987년 기준으로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되었음.
- 이 지역은 또한 국경으로부터 근접성 여부에 따라 가장 중요한 지원 수단인 투자보조금 혜택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25% 지원중점지역(Schwerpunktorten), 15% 지원중점지역,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었음.

○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은 크게 투자보조금 지원, 세제상 특혜, 사회간접자본 구축 지원, 주택건설 지원, 사회·문화시설확충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3-4-1-2. 투자시 보조금 지원

○ 우선 물품생산과 용역제공을 통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으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보전케 해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주요 수단은 투자보조금(Investitionszulage) 지급인데, 이 지역의 신설기업은 타지역에서 제공되는 기존의 투자보조금법(Investions-zulagegesetz)에 규정된 투자보조금 지원액보다 더 높은 투자보조를 받게 됨.
- 지원은 기업의 신설 혹은 기존기업의 투자증액이냐에 따라, 그리고 국경으로부터 근접성 정도에 따른 중점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차이가 남.

○ 중점지원지역에서는

- 기업의 신설시는 기존 투자보조금법이 규정한 10%에 5%의 특혜를 부여하는 총 15% 지원중점지역과, 국경에 가까울수록 15%의 특혜를 부여하는 총 25% 지원중점지역으로 나누어짐.
- 이미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기업확장을 목적으로 투자를 증액할 때는, 50명 혹은 기존 고용인력에 비해 15%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할 경우 그 기업의 접경지역에서 근접성에 따라 최고 15%-25%의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의 고용인력은 투자개시일로부터 그 접경지역 안에 거주하는 임시고용이 아닌 장기고용 노동자수로 계산하며, 직업훈련생 1명 고용은 2명의 노동자와 같은 정도로 산정해 줌.
  - 또한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개시일의 고용인력이 과거 2년 간 평균 고용인력보다 적을 경우, 이것이 일시적인 고용감소 현상임을 입증하든가 아니면 장기 고용인력의 감소가 시장에서의 수요변화에 구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상임을 입증해야 함.

○ 중점지원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 기업 신설시는 그 기업이 주로 여성취업자를 장기고용하든가, 광산물 채취와 같이 꼭 일정지역에 입지해야 할 때, 공해산업이지만 주거지역에 꼭 입지해야 할

때, 10-15%의 투자보조금이 지급됨.

- 기업확장일 때는 투자보조 조건으로 그 기업이 1977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취득했을 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다른 조건은 기업신설시와 같음.

○ 접경지역 내에 있는 기존기업의 합리화와 구조재편을 추진할 때도 10% 내의 투자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기업은 기업의 존속과 장기고용보장을 조건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함.

○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거리 운수업체의 신설이나, 기존 운수업체의 기업합리화나 구조재편의 경우에는 투자액의 15%까지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업이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1년에 최소한 총 60,000만 DM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고급 경영 및 기술 인력의 일자리를 5년 간 유지할 경우, 이러한 고급인력 고용에 대해서도 기업은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25% 중점지역의 경우에는 25,000 DM까지
- 15% 중점지역의 경우는 15,000 DM까지 이러한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체가 투자보조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설, 확장시 또는 기업합리화 및 구조조정시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채무에 대해 연방정부가 일정액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 기업을 지원함.

- 1년에 1개 기업체에 대해 5백만 DM의 범위내에서 채무보증을 하는데, 보증액은 전체 채무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며, 채무상환은 15년 이내에 해야 함.

○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신설 또는 확충하는 경우에도 투자보조금이 지원됨.

- 도로건설, 에너지 및 상·하수도 공급공사, 쓰레기수거 및 정화시설 건설, 직업교육·전직훈련장 등 지역경제에 필요한 노동인력 양성소 건축 등이 그 주 대상임.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발주기관인 경우 또는 어떤 법인체 또는 자산인이 영리목적으로 이를 발주할 경우는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하청을 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원을 받음.

○ 이러한 투자보조금 신청은 해당기업이나 해당기관이 각 주정부 경제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이를 근거로 보조금이 지급됨.

3-4-1-3. 화물운반 운송료 보상, 세제상 특혜

○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국경 가까이에 있음으로 해서 원자재를 반입하거나 생산제품을 발송하는데 있어서 현저하게 화물운반 운송료를 많이 지불할 경우 이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루어짐.

- 접경지역 안에 있는 기업끼리 합병하여 제품운송량을 늘이는 기업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이러한 보상대상은 과거 내독 간 경계선이 생기기 전에, 동독지역으로부터 40% 이상을 반입했으나, 국경이 생김으로 인해 먼 길을 우회하여 수송될 수밖에 없는 물품들임.
  - 국경선 생성 이후 새로이 생산된 제품들은 이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 화물운송 방법에 따라서는 철도, 수로, 국도 운송제품이 보상대상에 해당이 됨.
- 쓰레기 폐기물이나, 부산물들 또한 보상대상이 안 됨.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화물운송료가 개별기업 당 2,000 DM이 넘어야 하고, 전년도 매출액의 0.4%가 넘어야 함.

- 보상액은 개별기업 당 1년에 4,000 DM을 넘을 수 없음.
- 보상대상 물품, 보상액, 보상대상 수송로 등에 대해서는 각 주 경제성과 상공회의소가 기본지침을 확정하여 시행하였음.

○ 각 기업이 이러한 보상에 계속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에 보상금의 5배에 달하는 액수를 신규투자 또는 기업구조 조정시 일괄 투자보조금 형식으로 보상하여 보상액의 기업자본금화를 유도하였음.

- 이러한 화물운송 보상액의 기업자본금화 신청은 개별기업이 신규투자시

투자보조금신청과 함께 할 수 있음.

○ 접경지역 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접경지역에는 각종 세제상 특혜가 주어짐.

- 연방재무성은 1978년 11월 10일 접경지역 지원법 제3조를 구체화하는 행정예규를 제정하였음.
- 동 예규에 의하면 구입 또는 제조된 후 3년이 지난 투자목적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세금을 물어야할 경우 재산의 특별 감가상각(Sonderabschreibung)을 허용하여, 세제상 특혜를 줌.
- 또한 적립재산(Ruecklagen)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하여, 기업의 자본축적률을 높이도록 지원함.

3-4-1-4. 공공발주에 있어서 입찰시 특권

○ 접경지역 지원법 제2조 3항에는 이 지역 기업이 공공기관 발주에 참여시 이 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 기업에 비해 특혜를 주고 있음.

- 이 지역 기업이 제시한 가격이 다른 기업이 제시한 최저입찰 제시가격보다 행정예규에서 정한 입찰제시가격에 따른 일정한 %를 상회하지 않으면 이 지역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낙찰이 되도록 함.
- 특혜 대상은 연방정부 발주 공공사업에 한하며, 이 지역 해당기업은 제조업, 건설업, 상공업 업종에 한정함.

○ 재무성은 1975년 8월 20일자 관보 제 152호로 접경지역 및 서베를린지역에서 공공사업 발주시 특혜에 관한 행정예규(RichtLinie fuer die bevorzugte Beruecksichtigung von Personen und Unternehmen aus dem Zonenrandgebiet und aus Berlin (west) bei der Vergabe oeffentlicher Auftraege vom 11. August 1975)를 공포한 바 있음.

- 이 행정예규에 의하면 다른 기업의 낙찰최저가가
  - 5천 DM 이하이며 6%,
  - 5천 - 1만 DM이면 5%,
  - 1만 - 5만 DM이면 4%,
  - 5만 - 10만 DM이면 3%,
  - 10만 - 50만 DM이면 2%,
  - 50만 - 100만 DM이면 1%,
  - 100만 DM 이상이면 0.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지역 기업이 낙찰가를 제시할 경우 이 지역 기업에게 응찰이 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함.

3-4-1-5. 접경지역내 농업지원

○ 접경지역내 농가와 농업생산기반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각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책

- 투자촉진을 위한 영농융자.
- 산간지역 또는 오지의 농가 투자지원.
- 청소년 영농자 지원.
- 낙후지역 소득보상.

○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책

- 농경지 정리 및 농촌 현대화.
- 수로 및 관개시설 확충.
-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 해안선 방조제 구축.

○ 농업 및 임업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 투자용 재산에 대해서 접경지원법 제3조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이 허용됨.

3-4-1-6. 교통 분야 지원

○ 접경지역 지원법 제4조에는 접경지역내에 도로망이나 철도의 개축·증축·신축시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고려하도록 되어있음.

- 연방정부는 국도보수·유지의 경우 5년마다 보수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보수·유지가 필요한 곳을 선정, 그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바, 접경지역내 국도의 보수·유지는 우선순위 결정에서 특별 보너스를 줌.
- 지방도의 경우는 도로건설·보수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가 보통 60%이나, 국경지역의 경우는 75%임.
- 철도의 경우는 철도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 구간의 선로 폐쇄 결정시, 다른 지역은 연방교통성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접경지역의 경우는 내각에서 결정토록 하여 신중을 기함.
  - 이 경우 연발철도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예산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특히 인구밀도가 적은 이 지역의 경우 철도 이용보다 도로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

3-4-1-7. 주택 분야 지원

○ 접경지역 지원법 제5조에 의하면 이 지역의 주택사정을 감안하여, 주택신축시 그리고 국민복지주택 입주시 특혜를 주도록 되어있음.

- 주택의 신축시는 이 지역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에서의 주택신축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도록 주택지원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1/3 가량 높이도록 되어있음.
- 특히 이 지역의 노동자들이 국민복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가능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의 상한선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입주가 보다 용이하도록 함.

○ 이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으로, 특히 생산업체에 종사하는 숙련노동자와 고급기술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짐.

3-4-1-8.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지원

○ 접경지역 지원법 제6조에 의해 체육관, 수영장, 기타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여 지원함.

- 이 지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주 문교성을 통해 이 시설 확충을 위해 연방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방내무성은 연방내독관계성과 함께 이를 심사하고 예산을 지급함.

○ 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이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접경지역 지원법 제6조에 의해 특별한 예산을 지원함.

- 이 지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 문교성을 통해 연방청소년성에 예산지원을 신청하면, 연방청소년성으로부터 연방청소년지원계획(Bundesjugendplan)에 의해 지원을 받음.

○ 이 지역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가족단위 휴양시설, 양로원, 병원, 장애자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을 받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주 사회성을 통해 연방 가족·보건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3-4-1-9. 문화 분야 지원

○ 이 지역주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사회적인 지원과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정신적인 건강유지와 이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내독관계성이 연방예산을 통해 특별 지원함.

- 각 주 문화성을 통해 지원신청이 이루어지면, 내독관계성에서 이를 심사 예산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인건비가 아닌, 물적 경비(시설유지, 공간확보)에 한정함.
- 연방예산으로 지원은 다른 재원수단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 지원 분야

- 유치원, 일반학교, 직업학교 시설구축 지원
- 성인교육기관, 도서관, 극장, 박물관, 전통문화·향토문화 전시관, 교회, 학생기숙사 신축·시설유지 지원

3-4-1-10. 국경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 보수

○ 연방정부는 1979년 6월 7일 내독 간 국경을 이루는 수로나, 국경을 관통하는 수로 등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 피해보상과 시설의 보수·유지에 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 물적인 피해보상과 피해방지 조치.

- 동독지역에서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여, 동 접경지역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피해보상 요청권자에게 보상함.
  -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방지조치에 대해서도 지원함.
- 이 경우 한 가지 사례 당 총 피해액이 5만 DM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0 DM 이하의 소액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음.
  - 예를 들어 피해를 안 당했다면 얻을 수도 있는 이익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음.
- 경찰·소방서 등의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치 않음.
- 재산피해시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보상액 산정시 고려됨.
  - 예를 들어 피해에 대한 공동책임, 피해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평소 피해방지 노력 등을 감안함.
- 동독에서 피해원인을 제공한 피해임으로 피해자는 연방정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 만큼, 동독지역의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요구를 포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국경지역 수로의 보수·유지 지원

- 국경을 이루거나, 국경을 관통하는 수로와 관리시설의 보수·유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50%까지 재정지원함.

○ 피해보상 신청 기간·방법

- 피해가 발생한지 1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
- 1973년 9월 20일 동·서독 간에 체결된 국경에서 피해방지와 국경 수로의 유지 및 개축에 관한 합의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1979년 3월 31일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해보상신청은 피해지역의 해당 시·군에 하도록 함.

○ 인격피해에 대해서는 1969년 9월 30일 연방노동·사회성이 지침을 마련하여, 연방원호법에 의거한 원호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피해보상신청은 각 지방 원호청에 하도록 함.

○ 국경부근의 산림피해에 대해서는 내독관계성이 각 주정부와 합의하여 마련한 지침을 통해 보상토록 함.

3-4-1-11. 국경지역 견학·여행 장려

○ 내독관계성은 국경지역과 동독의 실상에 대해 현장견학을 통해 널리 알리고, 독일정책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1~3일에 걸친 국경지역 견학·여행을 예산을 통해 지원함.

○ 견학 및 여행은 20~60 정도의 그룹별로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 25세 이상의 성인
- 15~25세의 학생, 청소년, 대학생
- 외국인 임.

○ 견학 및 방문 주요 프로그램

- 내독 간 문제와 국경지역에 대한 강연 및 필름 상연
- 국경의 전망대 안내
- 국경지역의 문화 유적, 사회·경제적인 시설 관람

○ 지원 내용

- 여행 경비 보조
  - 여행인원이 10명인 경우 1인 당 1km 당 0.9 DM,

    20명일 경우 1.6 DM,

    30명일 경우 2.1 DM,

50명일 경우 2.5 DM임.

- 숙박비
  - 1일 1인당 5 DM.
- 안내인 무료 제공.
- 단순한 휴가여행, 관광여행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 신청 방법

- 출발 6주 전에 해당기관에 신청함.
  - 학생, 청소년, 대학생은 각 주정부에, 성인 및 외국인은 내독관계성에 신청함.
- 보조금 지급 결정은 서면으로 여행 출발 전에 결정되나, 보조금은 여행·견학 이후에 지급됨.
  - 이때는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와, 안내인의 확인서, 참가자들의 명단 및 경비 영수증이 통보되어야 함.

3-4-2. 국경부근에서 동·서독 간 협력사업

○ 국경이 동독측에 의해 점차 공고화되어 가게 되자, 서독 정부는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 방문의 용이화 이외에도,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분단에 따른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국경 지역에서 동·서독 간 협력 사업을 모색함.

- 국경 지역에서 상대방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동·서독 간은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감.
- 기본 조약에 따라 설치된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에서 자연 재해 방지, 수자원 관리, 환경오염, 국토의 이용, 도로망의 연결 문제가 광범위하게 토의되었고, 협정이 맺어졌으며 특정 분야의 경우는 양 정부의 대표단이나 경제단체의 대표끼리 합의를 한 경우도 있었음.

○ 국경에서의 동·서독 협력 사례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경의 통과로 인해 주택, 공장 또는 도로를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협상을 통해 상대편의 양보를 얻어 한편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는 1973. 9. 20 국경위원회에서 양 측이 합의한 국경 지역에서의 공동 재난 방지에 관한 협정을 들 수 있었음.
  - 동 협정에 의하면 국경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홍수,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인간이나 가축에게 해를 주는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산림이나 농경지에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수자원이 오염되거나, 인간이나 가축·농작물에 피해를 유발하는 매연이 발생되거나, 폭발물 사고 등이 있거나, 국경 지역에서 교통사고나 방사선 누출 사고가 있어 상대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이를 상대편에게 신속히 알리고 공동 대처하기로 함.
  - 위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편 상주대표부(상주대표부 설치 이전에는 국경위원회)에 사전 연락키로 함.
  - 재난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상황이 급박하여 즉각 응급조치를 통해서만 상대편 지역에서의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각 서로 구두나 전화로 관련 사항을 통보키로 함.
  - 이러한 국경에서 재난방지 전화통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양측은 14개소에 국경 정보교환소(Grenzinformationsstelle)를 설치함.
- 국경의 통과로 인해 수자원 관리·이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주민들의 식수 이용이나 공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 측이 합의한 경우도 있었음.
  - 1973. 9. 20 국경위원회에서 양 측은 국경 지역에서 수자원과 관리 시설 설치 및 보수 유지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 수자원의 공동 이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함.
- 천연 자원이 국경 지역을 넘어 상대편 지역까지 매장되어 있어 상대편 지역의 천연 자원까지 채굴해야만 기술적으로 이쪽 천연자원이 개발되는 경우 상호 지하 월경의 허용과 정보 교환에 합의함.
  - 갈탄의 경우 1976년, 천연 가스의 경우 1978년, 칼리의 경우 1984년 각각 회사 대표 간에 합의됨.
- 국경에 관계없이 상대편 지역에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의도 있었음.

- 구동독 지역의 공장이나 도살장, 목장에서 폐수가 서독 지역으로 흘러들어 하천이나 수원지를 오염시키는 경우, 동독측이 비용 문제로 정화 시설을 마련하지 않자, 서독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정화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었음.
- 구동독 지역에서 원인이 발생된 대기 오염의 경우 특히 겨울철 기압이 낮을 때 장벽이나 철조망에 관계없이 서독 지역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쳐, 서독 정부는 환경 보호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노력함.

– 국경 통과로가 직접 연결되지 못하여 많은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며 멀리 돌아가는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독정부는 이러한 통과로 연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분단 이전에 40개의 철도 노선, 30개의 고속도로와 국도, 140개의 지방도로, 수천 개의 각 지역 간 통과도로가 있었으나, 동독측의 차단 조치에 의해 극소수만 허용됨.
- 통독 이전 양독 간에는 10개의 국경 통과 국도(이 중 4개는 고속도로), 8개의 국경통과 철도, 2개의 내륙 운하, 3개의 항공로만이 허용되었음.
- 동·서 베를린 간에는 8개의 통과로가 개설되어 있었음.

3–5. 동·서독 교통망확충 공동 프로젝트

○ 동·서독은 기본조약 제7조 3호에 대한 추가의정서를 통해 1972년 5월 26일 조약상 합의된 교통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음.

– 1974년 동독정부는 서독정부와 교통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회담을 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했고, 동년 12월 9일 베를린 왕복 철도와 도로와 같은 교통로 확장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음.

– 동독측은 동 제안에서 “동독에게 추가적인 경제부담을 주지 않고 비용은 서독측이 부담할 것”이라는 단서를 명백히 하였음.

– 이에 서독정부는 서베를린과 서독과의 통행로 연결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12월 9일자 동독의 전달사항을 “4대국 협정과 그 추가합의사항 체결 이후 가장 긍정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였음.

○ 1975년 12월 19일 동·서독은 수차례의 회담 후 통과로 확충 및 개선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던 바 그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독정부는 Marienborn과 Berliner Ring 간의 고속도로를 보수할 것(노면 보수, 일부 구간의 6차선화).

– 프로젝트의 총 경비 4억 500만 DM 중 서독정부가 2억 5,950만 DM을 부담할 것.

○ 이러한 합의에 대한 서독내에서는 찬·반양론이 있었는데

– 비판의 요지는

- 도로공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자면 동독은 기술적으로 15년이나 낙후되어 고속도로의 건설경험이 없는데, 동독측에게 건설을 위임한다는 점과,
- 서독측 재료가격과 임금에 기준한 서독수준의 건설비용의 계산이 너무 높아 재정지출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 찬성하는 측은

- 동독측이 애당초 회담제안과는 달리 프로젝트 비용의 35% 참여의사를

밝혀 서독측으로서도 비교적 생산성이 있는 거래이자, 킬로미터 당 예정가격이 서독의 국내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들었음.

- 즉 전장 150km의 Helmsteht-Berlin 간에 합의된 1km 당 합의비용은 267만 DM이나 서독의 경우 약 4백만 DM이 소요된다는 주장이었음.
- 그러나 km 당 건설비용은 최저수준으로 합의되었으며,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측의 부담을 제한 다음 궁극적으로 매 km 당 170만 DM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었음.

○ 동·서독은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게 대단했는데, 서독정부측은 베를린과 서독 간의 연계성에 의의를 두었던 반면, 동독측은 특히 전략적 의의가 큰 도로의 일부가 서독으로부터 재정지원된다는 점에서였음.

- 1975년 12월 초 COMECON 회원국은 Budapest에서 회동, 동구권과 서구권 간의 교통망 확충을 논의하였던 바, Marienborn과 Berlin 간의 고속도로 확장은 바르샤바와 모스크바로서도 동·서 교통로 확장에 중대한 의의가 있음이 인정되었음.
- 이는 고속도로의 서부 연장선이 곧 Helmsteht-Berlin 간의 고속도로의 일부였기 때문임.

○ 1975년 12월 19일 Berlin-Hamburg 간의 제2차 교통프로젝트 협상개시가 합의되었으며, 동독은 1978년도에 서독과 회담을 개시하고 1980년부터 공사에 착수했음.

- 1978년 6월 21일 동·서독 정부 간의 회담 내용 중 주된 쟁점사항은 자금조달문제와 노선확장문제였음.
- 1978년 11월 16일 5개월의 회담 후 아래와 같은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 북부 고속도로의 건설.
  - 베를린 남부 Teltow 운하의 재개.
  - 서독정부의 향후 10년 이내 비용을 부담하되 그 중 12억 DM은 고속도로 건설에, 1억 9,000만 DM은 Teltow 운하 및 통과로의 운하개선용으로 부담함.
  - 1980년부터 1989년까지 통과일괄금을 5억 2,500만 DM(기존 4억 DM)으로 인상함.
  - 동독은 서독제 현대식 건설장비 구입을 위해 1억 DM을 부담함.

○ 이러한 동·서독 간의 합의는 서독측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 간에 합의한 최대 규모의 합의였던 바, 베를린의 통과교통의 개선, 통독 이후를 염두에 둔 경제성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연방정부의 지나친 재정부담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

○ 동독은 서독 연방정부의 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급부를 제공함.

- 서독인들의 동독방문시 산재연금수령자에 대한 최소의무환전 면제.
- 더 많은 정치범을 서독으로 석방.
- 유료수표와 크레딧 카드의 동독 도입에 관한 양 정부 간 회담의 종결.

4. 경제 교류·협력(통상문제)

4-1. 내독교역의 국제·국내정치적 재조명

4-1-1. 냉전의 도구로서 내독 간 경제교역

4-1-1-1. 전후 서방 강대국들의 경제 전쟁

○ 독일내에서 피점령지역 간 교역(Interzonen-handel, 내독교역의 시초)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Truman의 Containment-polcy와 Eisenhower의 roll-back-policy와 연계하여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펼쳤던 경제전쟁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음.

- 미국은 무역규제정책(Embargo-Politik)을 통해 특히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치적 목표를 달성코자 하였음.
  - 무력 내지 혁명을 통한 공산세력 확대의 방지.
  - 평화달성 또는 적어도 전쟁위험 방지를 위한 조약 또는 협약의 체결.
  - 점진적 개혁을 통한 공산주의 진영 민족국가들의 독립, 이들 국가들과의 평화적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사회체제 개방 등을 위한 여건조성.
- 미국은 무역규제정책을 통해 일차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군수산업 발전을 억제시키고 기기산업부문의 성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음.
  - 이 같은 미국의 동유럽 정책은 '서방경제력의 강화-동유럽 공산국가들의 경제력 약화'야말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함.
- 이 같은 미국의 적극적은 경제적 공세전략은 단순한 정치·이념적 동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
  - 마샬플랜에 따른 장기차관 제공은 지원대상 국가들의 국민경제 회복과 경제 발전에 일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나아가 미국에게 새로운 자본 및 상품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도 함.

○ 동·서 교역(Ost-West-Handel)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마샬플랜 실시 이전부터 이미 있어왔음.

- 미국은 1947년 말부터 소련 및 영향권내 지역과의 특정무역활동을 규제한 바 있음.
- 차후 연합국 무역규제 규정의 기초가 되는 Export-Control-Act 속에서 미국은 수출규제 정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음.
  - 부족한 자원의 과다반출을 방지하여 국내경제를 보호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요급증이 야기하는 인플레 위험을 사전 봉쇄함.
  - 미국정부의 대외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미국의 국제의무 달성에 기여코자 함.
  -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출을 규제함.

○ 서독, 일본 및 기타 서방국가들 역시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미국의 이 무역규제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1949. 12. 15일 서독은 미국과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 미국의 무역규제정책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 한국전의 발발과 더불어 동·서의 무역전 역시 첨예화되었으며,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내독 간 교역, 특히 내독 간 불법거래활동에 대한 서방측의 불만이 더 증대했음.

- 1949년 체결된 프랑크푸르트 협정에 따라 서독은 동독에 대해 제철, 기계제품, 차량, 화학 및 고무제품, 전자제품, 비금속 제품 등을 납품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제품들이 무역규제 대상품목들이었기 때문에 연합국들은 내독교역에 개입을 하게 됨.
- 내독교역에 대한 비판은 연합국 정부들에서 뿐만 아니라, 각국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 됨.
  - 예를 들어 "Daily Mirror"지는 마샬 지원금의 일부가 내독교역을 통해 소련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함.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역규제정책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지도급 정치인들의 견해에 차차 변화가 있기 시작함.

- 이 같은 생각의 변화는, 거의 전 제품들이 전쟁물자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제 규정을 엄격히 지키자면-동·서유럽 전체교역 제품들을 무역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 같은 이유로 동·서독 간의 무역을 중지시킨다면 이는 결국 서방측 경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그 바탕으로 함.
- 이에 1951. 6월 미국대통령은 무역규제가 동·서유럽 간 수출·입 제한에 무조건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주장하며, 미국과 기타 자유 우방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에 한해서만 무역규제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함.

○ 한국전의 종식과 더불어 도처에서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동·서독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됨.

- 1954년 처칠은, 철의 장막을 넘어 영국과 소련 간의 교역이 빈번해질 수 있으며, 이로써 공동협력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함.
- 경제압력정책(oekonomische Pressionspolitik)에 대해 영국 및 기타무역 동맹국들이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러한 처칠의 발언에서 반영됨.

○ 서유럽 COCOM(Coc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가입국가들(벨지움, 룩셈부르그,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터키, 서독, 덴마크, 프랑스, 영국)이 정식으로 무역규제 대상품목의 감축을 요청함.

- 이러한 요구는, 더 이상 미국의 무역규제정책이 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
  - 요컨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미국의 무역규제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제지될 수 있었으나,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결속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음.
  - 이 밖에도 미국의 핵무기 단독 보유정책은 관련물자 및 기술반출의 철저한 규제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원자탄과 수소탄을 독자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좌절되고 말았음.

○ 처칠의 발언이 있은지 한달 후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정부 대표들은 무역규제 대상폭을 완화키로 합의함.

- 1953/54년 이후부터 미국은 무역규제정책을 점차적으로 완화시켰으며, 60년대부터 동구진영을 보는 미국의 시각에 변화가 있기 시작함. 즉, 전체동유럽 국가들을 한 집단으로 일괄취급하던 경향이 점점 줄어듬.
- 이 밖에도 동구라파에서 일기 시작한 다원중심체제(Polyzentrismus)로의 경향을 지원함으로써 소련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 역시 정책변화에 일조를 함.

○ 이 무역규제 완화정책은 COCOM 국가들과 COMECON(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국가들 간의 교역규모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동구라파에 대한 서유럽 COCOM 국가들의 수출규모는 1953년 3억 8천 2백만 불에서 1955년 6억 2천만 불로 증가함. 수입규모 역시 1953년 4억 8백만 불에서 1955년 7억 2천 3백만 불로 현저히 늘어남.

4-1-1-2. 서독의 내독교역 정책

○ 냉전시 양 독일 국가의 국제정치적 활동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

- 이는 양독의 집권자들이 각 동맹국들의 반공산주의 내지는 반자본주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데 기인함.
- 60년대까지는 서독정부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서독이 잘 살게 되면 경제난에 허덕이는 동독주민들은 자연적으로 소련체제에 대항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소련군들은 어쩔 수 없이 점령지역을-통합의 전 단계로-내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견해를 공식 정책노선으로 견지했음.

- 이 밖에도 서독의 언론과-공산당을 제외한-야당 정치가들조차 미국식 power policy를 통해서만 동독공산당을 타파할 수 있다고 확신했음.

○ 그러나 미국의 무역규제조치는 다른 어느 서방국가들보다 서독에 매우 큰 타격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인해-때로는 원래 의사와는 달리-철저히 이 규정을 준수했음.

○ 동유럽무역규제(ostembargo) 조치와 관련하여 서독은 기타 서방국가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었음.

- 왜냐하면 서독의 경우에는 국제 COCOM-규제 대상 목록보다 훨씬 더 규제가 심한 미국측 대상목록이 적용되었기 때문임.
- 서독의 경제계와 여러 정치계파들은 동유럽 무역규제조치와 관련한 미국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수락하는 서독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음.
  - 사민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인 기민당 소속 일부 의원들마저도 동유럽과의 무역에서 서독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
-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전쟁은 서독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무역에 뿐만 아니라 내독경제 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왔음.
  - 냉전 초 연합국들과 서독정부는 동·서독 점령지역 내에서의 물품거래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함으로써 내독교역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음.
  - 국가중앙규제조치 외에도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협정에 의거한 여러 장치들을 동원하여 서독정부는 기존협약을 파기하지 않으면서도 동독으로의 물품반출이나 서독으로의 반입을 언제라도 행정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특별규정을 새로이 만들어 인·허가 절차나 물품송장 발급을 어렵게 내지는 지연시켰는가 하면, 당국의 행정지도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선별적 내지는 한시적 경제제재 조처를 계속 단행했음.

  - 특히 냉전이 한창일 때 취한 서독측의 행정규제는 내독 간 경제관계에 뿐만 아니라, 동독경제 전반에 차질을 가져왔음.

○ 당시 내독교역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서독정부의 정치적·경제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서독정부도 내독교역을 냉전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
  - 소련과 동독이 베를린으로의 통행을 봉쇄할 때마다 서독은 이에 대해 경제적 조치로 맞서왔음. 다시 말해, 내독교역은 무엇보다 베를린으로의 통행로가 항시 열려있도록 보장해 주는 담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독 공산당을 몰락시키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음.
- 서독은 이러한 절대적 대동독 경제우위정책을 고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동·서독 간의 유일한 경제적 유대관계란 차원에서-최소한도의 내독교역을 유지시킴으로써 통일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했음.
  - 구체적으로 동독과의 내독교역을 통해 기존의 기술교류관계를 유지하고, 동독 주민들의 생활상태를 개선하며, 개개인들 간의 인적교류를 확대시키고자 하였는 바,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인적교류는 분명히 통일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서독측 정치가들의 신념이 있었음.
- 서독은 한편으론 경제우위정책을 통해 동독과 체제경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동독과의 원만한 경제관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이를 발전·활성화시키는데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
  - 50년대부터는 내독교역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각 서방국들로부터 내독교역의 특수성을 인정받게 됨.

○ 당시 서독정부의 입장은 이같은 경제교류를-실질적이던 법률상이던 상관없이-동독의 국가로서의 인정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음.

- 50년대에만 해도 서독정부는 내독교역과 관련된 협상 진행과정에서 동독 국가기관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해왔음.
- 그리하여 연방경제성의 지시하에 내독교역을 전담하는 상공신탁처(Treuhandstelle fuer den Interzonenhandel)가 독일상공회의소 안에 설치되었음.

- 이 기관은 서독과 동독 간의 교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동독 최고 경제기관과 협상을 벌였으며, 내독교역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업들에 대한 동독측과의 협상에서도 이 기관이 서독측 협상자로 나서곤 하였음.
  - 실례로, 고속도로 교량재건 또는 서베를린 주민들에 대한 통과사증 교부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독정부가 취한 경제압력조치가 내독교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경제적 우위를 통해 이룩코자 한 본래의 정치적 의도가 달성될 기미가 없자 내독교역 규제를 비판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나오게 됨.

- 사민당 의원 Kalbitzer는, 내독교역은 지금까지 미·소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척도였음을 지적함.
  - 동시에 그는 항상 대정치 기상도에 따라 좌우된 내독교역정책과 관련, 정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동방 및 독일정책 추진을 촉구함.
- 50년대 들어 서독의 경제대표들, 특히 루르지방과 한자동맹 도시들의 경제인들은 동독에 대한 교역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음.
  - 그러나 동유럽 무역과 내독교역 활동에 대한 경제계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하였음.

○ 이처럼 답보상태에 처해 있던 내독교역활동은 베를린 협정이 체결됨과 더불어 급속한 진전을 보이게 됨.

- 내독 간 물품교역규모는 1957년 이후 계속 늘어나게 됨. 이 같은 추세는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급작스런 무역 봉쇄조치 등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고, 행정절차개선을 통해 내독 간의 교역 처리가 간소화됨으로써 가능해짐.
- 서독은 1961. 1. 1 일부 신 내독교역협정 체결시 이전부터 동독이 요구하던 사항들을 이에 대폭 반영시킴.
  - 특히 거래대상 제품들에 대해서는 교역기한을 무제한으로 허가함.
  - 이로써 동독은 수년 간의 기한에 걸쳐 제품을 납품하고 장기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4-1-1-3. 동독의 내독교역정책

○ 동독은 서독측의 내독교역 규제조치에 대해 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독 공산당의 주요 당면문제는 경제회복이었기 때문이었음.

-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동독의 산업구조는 소련의 전쟁보상을 구실로한 경제약탈정책으로 인해 보다 더 악화되었음으로, 내독교역은 동독측으로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독보다 훨씬 더 절실한 사항이었음.
- 이러한 이유로 동독측은 60년대에 이르기까지 내독교역의 확대와 무역규제 완화를 재차 요청한 바 있음.
  - 서독국가수립 당시 동독측에서는 전체독일 경제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이 밖에도 동독은 서독에서의 화폐개혁 실시는 양독 간의 경제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행위이며, 영·미 점령국에 의한 동·서 점령지역 경계 봉쇄는 내독교역을 마비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했음.
- 동독측은 서방의 수출규제가 그들의 경제계획 달성에 큰 차질을 주고 있음을 직접 시인하기도 함.

○ 그러나 서독정부는 이 내독교역의 도움을 받아 동독이 독자적으로 경제개발을 하고 경제자립을 달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

- 실제로 미국의 동유럽 수출규제정책은 동독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가져다주었으며, 동·서독 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심화시켰음.
-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생활격차는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서독으로의 탈출을 결심케한 주요 이유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동독은 마침내 동·서독 간 인적왕래를 금지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 같은 수출규제정책은 동독공산당 내에서 점하고 있던 스탈린주의자들의 세력과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해주는 데에 일조를 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론 잔류한 동독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약화시켜 양독 간의

대립만 심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던 것임.

- 아울러 결과적으로 서방의 수출규제정책은 아래와 같이 동독경제의 사회주의경제 진영에로의 통합을 가속화시켰음.
  - 1950년 동독은 COMECON에 가입함.
  - 1952년 동독과 주요 사회주의국가들 간에 장기무역협정이 체결됨.
  - 1956년까지 동독은 소련으로부터 대부분의 주요 원자재를 공급받음.

○ 동독은 이처럼 동구라파 진영 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 구축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독교역 확대에 관심을 표명했음.

- 서방국가들의 간섭으로 인해 내독교역 협정 체결이 지연되자 동독측에서는 양독의 경제통합과 나아가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는 내독교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점령세력들의 수출규제조치를 신랄히 비난했음.

○ 동독측이 주장하는 독일의 경제 및 국가 통합은 단지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였으나, 내독 교역의 확대를 요구한 배경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계산이 깔려 있었음.

- 동독 경제에 있어서 내독 교역은 필수적이었음.
  - 왜냐하면 특정 경제분야의 취약으로 인한 불균형은 내독교역을 통해서만 완화될 수 있었으며, 일부 동독 제품의 경우 서독 시장만큼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 없었음.
  - 또한 관세동맹에 의한 국가내부거래 형식의 혜택 역시 내독 교류 확대 요구의 큰 이유 중의 하나였음.
- 50년대에 동독이 서방측의 무역규제조치를 비난하며 서독측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요약해 보자면,
  - 수출 규제 정책과 이에 따른 규제 대상 목록 완화.
  -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독의 인·허가 절차 완화.
  - 동독으로부터의 수입을 특정부분에 대해 제한하는 행위 완화.
  - 서독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동독회사 참가금지조치 철폐 등을 들 수 있음.

○ 동독은 장기 공급 협정 체결, Swing의 증대, 세목구좌(Unterkonten)의 통합 등을 요청하였는 바, 서독측은 50년대에 이미 이 같은 동독측의 요청을 모두 수락한 바 있음.

4-1-2. 화해기의 접근을 통한 변화와 내독교역

4-1-2-1. 변모하는 초강대국들의 이해관계

○ 냉전이 미·소 양대국의 정책에 의해 좌우된 것과 마찬가지로 긴장완화 및 화해정책 역시 이들 양국의 동의하에서만 진전될 수 있었음.

-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우위는 기타 전승국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는 바, 이 두 국가 역시 제2차 대전의 사실상 패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일본과 독일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이들 국가가 겪게 될 국제적 영향력 상실에의 우려는 이들로 하여금 독일에 대한 전승국으로서의 권리와 발언권 확보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게 하였음.
- 이러한 국면에 직면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내독교역을 전후 독일 문제 전개 과정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코자 했음.

○ 동·서방 진영 간의 화해물결은 아시아에서보다 유럽에서 먼저 일게 되었음.

- 독일의 통일은 베트남이나 한국의 경우와 같이 결코 무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강대국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야말로 동·서독 간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도 물품거래를 지속케 한 결정적 동기가 됨.
  - 산업국가들 간의 갈등이 무력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정치가들의 자각은, 객관적 인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현대 무기의 파괴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임.
- 그러나 전쟁을 피한다고 해서 체제 간 갈등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바, 예를 들어 화해기의 유럽에 있어서 동·서 간의 갈등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됨.

- 사회주의 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의 확보와 동시에 무역 및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서방의 경제적 우세를 극복코자 시도하게 됨.
- 반면 자본주의 국가들은 동구라파 국가들의 군사능력을 저하시키고, 경제적으로는 계속 우위를 점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함.

○ 이러한 근본적으로 상이한 이해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경제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군축협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

- 특히 전세계적인 자원 및 원자재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공동 협력 확대는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일기 시작함.
-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일반 무역 규제조치 폐지와 대규모 경제개발 계획 실현에 대한 지원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서방측은 일차적으로 실제 거래 절차의 간소화를 허용키로 하였음.

○ 이 같은 동·서방 간의 무역 및 협력 관계의 확대 노력은 경제적인 동기만으로 비롯된 것은 아님.

- 상황의 이 같은 발전은 '체제변화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 간섭을 통해서 보다는 내부에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정치적 인식에서 출발함.
- 양측은 교역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나, 그 협력을 통한 양측의 기대효과는 각기 상이하였음.
  - 이 같은 차이는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herung), 동독의 "따라잡아 능가하라"(Einholen und Ueberholen)라는 상이한 공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
- 이 같은 정치 사상적 변화는 냉전 중에도 조금씩 엿보이곤 하였으나, 강대국들 간의 관계와 양독 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임.

4-1-2-2. 내독 교역 정책의 변화

○ 동·서독 간의 갈등은 민족 차원에서의 경쟁의식과 이로 인한 강력한 안보 요구 등으로 인해 특히 독일의 경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게 됨.

- 그리하여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 전략"과 드골 대통령의 화해정치가 한창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의 갈등은 1958~1962년 간에 베를린 위기, 수차례에 걸친 베를린 봉쇄 그리고 서독측의 동독 고립화 정책 등을 통해 계속 지속됨.

○ 1960년 9월 서독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내독 협정 파기와 관련, 동독에 대해 또 한 번 경제적 압력을 행사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이전과 마찬가지의 결과만 가져다주었을 뿐임.

- 다시 말해 동독은 서독의 요구에 부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압력은 오히려 서독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사회주의 경제권을 결속시키고자 하는 의지만을 강화시켰을 뿐임.
- 이 밖에 건국 후 10년이 넘도록 항상 "국제 정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 양독 간의 관계형성에 항상 강대국들 간의 관계, 그리고 전승국들의 권리와 이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 또한 동독과 서독을 어렵게 만든 사항 중의 하나였음.
  - 양측은 또한 내독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냉전기간 동안 양독이 보였던 적대적 태도를 빨리 떨쳐버리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됨.

○ 1961. 8월 베를린에 장벽이 설치되자 서독 정치가들은 비로소 과거에 품었던 통일에의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게 됨.

- 통일에 대한 냉철한 인식은 내독 교역을 전체 독일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 고찰토록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음.
- 독일 민족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하자고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베를린 사민당이었음.
  - 이어 정부 여당에서도 1960년, 1961년 사건에도 불구하고-또한 바로 그로 인해-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화해 정치의 일환으로서 동·서독 간의 긴장을

해소시키자는 의견이 대두 됨.

○ 1961년 영국과 이태리가 그들의 동유럽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지원용 신용 대부를 규정 이상으로 제공하게 되자, 그때서야 서독 정부는 내독 교역의 일환으로서 동독과 차관 제공에 관해 협상할 용의를 보이기 시작함.

- 서독 정부는 투자용 물품에 대해 4억 DM에 달하는 장기 신용 대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동독측으로부터 전 서베를린 주민들에 대해 동베를린 출입증 발급과 기타 인적 교류 관련 조처의 완화를 요구하고 나섬.

○ 이 같은 서독측의 차관 제공 의사와 이에 대해 대가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집단은 서독내 보수세력에게도 있었음.

- 당시까지 서독인들에게는 반 공산주의 사상이 짙게 깔려 있었던 바, 정치인들은 선거를 고려하여 이 같은 대중의 심리를 무시할 수 없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가들은 동독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나섬.

  • 당시 베를린 시정부 대변인이었던 에곤 바(Egon Bahr)가 1963년 처음으로 동독과의 관계를 "접근을 통해 변화"(Wandel durch Annanehrung)시킬 것을 요구함. 그에게 있어 이제 동독은 협상 가능한 파트너에 해당 되는 바,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동독과 대화를 시도해 나가느냐하는 문제였음.

○ 1963. 12. 17일 베를린 시정부 지정 협상 대표와 동독 정부 전권 위임자 간에 최초의 통과사증협정(Passierscheinabkommen)이 체결됨.

- 이로써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서 결코 인정코자 하지 않으려던 종전의 태도로부터 한 걸음 양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독은 국제법상의 국가 인정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됨.

- 1963년 연말에 있었던 통과사증 협정정책은 "신 동방 정책"(neue Ostpolitik)을 향해 내딛은 첫걸음으로 볼 수 있음.

○ 연방정부는 그 이후 동독에 차관을 제공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을 인도적 차원에서 덜어 주고자 노력함.

- 1963년 11월, 당시 연방 전독문제 장관(Minister fuer Gesamtdeutche Fragen)이었던 에리히 멘데는 서독 정부는 선의의 표현으로서 동독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 이어서 그는, 이 같은 경제적 지원의 조건으로 특정 의무사항을 내걸고 있지는 않으나, 단 과거 로마법의 호혜평등원칙(do-ut-des)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선의의 표시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서독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란, 우선 인적 고통의 완화와 동독 정치범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의미했음.

  • 또한, 서베를린인들이 동베를린 거주 친지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장벽에서 일어나는 비인도적 행위를 중지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독여행을 점차적으로 자율화할 것을 요청했음.

○ 동·서독 간에 중단되었던 차관 협상이 1964. 9월 재개되었으며, 같은 달 제2차 통과사증-협정이 체결됨.

- 이어 동독 정부는 10월 초 1만여 명의 죄수들에 대해 사면조치를 취했음. 이 중에는 정치범들도 포함되어 있었는 바, 기타 다른 죄수들에 대해서도 감면조치가 취해짐.

- 11월 초부터 동독은 연금자들에 한해 서베를린 및 서독으로의 여행을 허가함.

- 그러다가 11월 말부터 동독은 서독·서베를린 그리고 비사회주의 국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의무 환전 조치를 도입함.

  • 서독은 동독측이 서독측의 do-ut-des 요청에 응할 용의가 없었음을 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서독 정부는 차관 협상 중지로 맞서고 나옴.

- 그러나 연방 정부는 동독에 대한 차관 제공 문제와 관련, 융통성을 발휘, 1965년 4월 한 동독회사에 대해 최초로 5년 이상 장기 융자를 제공해주기로 결정함.

4-1-2-3. 대 연정 출범 후 변화한 내독경제관계

○ 지속적으로 대동구 적대정책을 고수할 경우 국내정치로부터 고립될 위험과

동유럽 무역에서 경쟁국들에게 선수를 뺏길 수 있음을 인식한 보수당인 기민당의 아데나우어와 에어하르트 정부는 내독교역을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음을 강조했음.

- 그러나 이 같은 경제관계의 확대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강조했음.
- 1963년 10월 당시 서독 외무장관이었던 슈뢰더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갖는 긴장완화정책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음.
  - 동·서방 간의 긴장완화정책에 기여코자 한다면 서독은 "결코 동독정부의 위치를 격상시키거나 또는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오히려 사태를 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음.
  - 이어서 그는, 연방정부는 동·서독주민들 간의 관계, 나아가 동·서 베를린 간의 인적교류가 개선될 경우 재정상의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음.
- 1966년 말까지만 해도 서독정부는 내독교역 활동을 양독 간의 긴장과 대립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동독을 굴복시키기 위한 통일의 도구로 간주코자 하였음.

○ 대정당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새로운 대연정의 출범과 함께 서독의 독일정책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는 바, 이때부터 동독의 고립에 의한 통일달성이란 목표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동·서 간의 긴장완화에 보다 주력하기 시작함.

- 통일정책과 관련한 이 같은 서독측의 태도변화는 1967년 독일통일의 날인 6. 17일에 있었던 키징어 수상의 기념연설에서 잘 드러남.
- 키징어는 이 연설을 통해 독일통일은 동·서유럽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져야 함을 천명함.
  - 이 같은 서독정부의 긴장완화정책은 무역의 탈정치화를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동유럽 대상 수출업계의 기대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함.

○ 점점 더 치열해지는 동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해 서독경제인들은 정치인들에게 이에 대한 우려를 오래전부터 표명해왔음.

- 1965년 내독교역이 갖는 정치적 기능의 약화를 우려한 전독문제장관 에리히 멘데는 프랑스, 영국, 미국 또는 기타 국가들의 기계가 동독으로 납품되는 것은 소련이 추구하는 두 개 국가이론(Zwei-staaten-Theorie)에 부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며, 이 같은 이유로 서독정부는 우방국들에 대해 내독교역과 동유럽 무역을 분명히 구분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
- 서유럽 경쟁국들에 대한 서독정부의 우려는 결코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닌 바, 이 기간 동안 실제로 EC 국가들의 대동독 무역거래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변해 있었음.(1964년 : -7천 2백만 DM, 1965년 : +1억 1천 1백만 DM).
  - 이 같은 추세는 이들 국가들이 동독에 대해 수출과 관련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줌으로써 가능해졌음.

○ 서독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이 같은 서방국들의 대동독 경쟁에 대해 서독정부는 완강하게 대처했음.

- 1966년 8월, 서독은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경제공동체 회의에서 EC 국가들이 동독과 기타 무역 상대국들 간의 교역 간에 차이를 둘 것을 요구했음.
- 이에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하였음.
  - 국가가 완전 내지는 일부를 보장하는 차관의 기한을 동독의 경우 5년 이하로 제한할 것.
  - 동독에 대한 중·장기 차관 규모는 서독정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할 것.
  - 동독에 제공키로 한 차관규모를 서독정부에 통보할 것.
- 이 같은 유럽경제공동체 회의 결과에 동독측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이를 동독과 기타 국가 간 무역거래에 대한 "야비한" 간섭이라고 비난했음.

○ 그러나 대연립정부 출범 이후 내독교역은 한층 더 자율화되었음.

- 내독교역은 내독 간 특수거래라는 점에 있어,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코자 한 정치적 목표설정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었음.
- 그러나 전과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서독정부는 내독교역을 양독 간을 이어주는 한 가교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보다 더 확대시키기

위해 동독측이 제시한 거래절차상의 간소화 요청과 서독경제인들의 대동독 무역확대 요청을 수락할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음.

○ 60년대 후반까지도 동독은 계속해서 내독교역의 확대에 큰 관심을 보여왔음.

- 그러나 서독의 관계 정상화 노력이 진의임을 알아챈 동독은 최대한의 조건(Maximalbedingung)을 내세워 이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서독의 전체독일 단독 대표 입장을 반대하며 독자적인 국가성을 인정받기 위한 선전공세를 취하기 시작했음.
- 즉 1967/68년에 들어 동독은 독자적인 국가성을 인정받기 위해 내독 간 경제관계에 있어서 그 특수성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음.
  - 왜냐하면 내독 간의 특수성은 서독과의 관계를 일반 국제관계로 보고자 하는 동독측의 입장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임.
  - 동독은 내독교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저한 물질적 이득을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론을 선전해 댔음.

4-1-3. 기본조약 체결 이후의 내독교역

4-1-3-1. 동·서독 양측의 입장

○ 동·서독 양측은 기본조약 추가의정서 제7조를 통해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 교역은 "종전의 협정에 근거"하여 전개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따라서 기본조약은, 베를린협정이 내독경제관계의 법적근간이 되고 있으며, 내독교역의 특수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음.
- 서독측 입장으로는 양독 간의 교역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내독교역"(innerdeutche Handel)에 해당되며, 이는 기본조약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함.
- 서방측이 50년대에 제기하여 동독 역시 현재까지 계속 인정하고 있는 내독 간 특수관계에 의한 특별 예외규정으로서는
  - 관세 면제 및 EC-농작물 부과세 면제(Abschoepfungsfreiheit).
  - 상호 청산 결제.
  - Swing 규모 확대.
  - 내독교역과 관련된 협상을 상공신탁처를 통해 진행시킨다는 점.
  - 내독교역은 EC 공동무역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음.

○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동독은 한편으론 내독교역의 특수성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내독교역의 특수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등 내독교역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견지했음.

- 내독교역에 대한 양독정부 간의 견해차이는 서독이 그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 동독이 바라는 동독의 입장이 약화되고, 동독이 이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독관계로부터 얻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딜레마에 기인함.
- 또한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이 CSCE에서 경제, 무역, 학문, 기술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방안을 논의할 때, 자국에 대해서도 EC가 동독처럼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서독과 동독에 대해 내독간의 특수교역관계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라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하였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양독 간의 특수관계를 인정해야만 비로소 기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동독정부는 그 특수성을 사실상 인정하였음.

○ 내독교역에 대한 동독의 상반된 태도는 독일정책에 대한 동독공산당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서 비롯됨.

- 동독은 긴장완화정책이 진전될수록 동독 주민들에게 체제단속을 위해 사회주의 이념교육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개의 개별국가가 존재함을 강조해야만 했음.
  - 물론 동독공산당 지도부는 사회주의하의 독일 통일이라는 목표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아니었음.
- 한편, 동독공산당이 민족문제와 관련, 서독과 확연히 구분되는 노선을 펼치고 독일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한, 자연과학, 기술 및 경제분야에서의 서독과의 협력관계 구축에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었음.

- 왜냐하면 동독 지도부는 독일민족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내독 간의 특수관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반발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임.

○ 내독교역의 특수성에 대한 불만은 서독의 우방국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음.

- 특히 서방측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은 독일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혜임.

○ 서독정부의 내독교역 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서독정치인들은, 이 내독교역을 통해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보는 측은 동독이라고 주장함.

- 1960년대 말 동독과의 기본관계를 새로 정립하고자 토론이 벌어졌을 때 역시 동·서독 간의 교역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동독이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논의대상이 되었음.

- 1968년 한 해만 EC-농산물 부과세 면제, 관세면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혜택을 통해 얻은 동독의 이익은 약 4억 DM에 달했다고 보고 있음.

- 이 밖에도 통과사증협정의 체결로 서독은 지불의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했음.

- 70년대에 들어 내독교역을 비판하는 자들은 특히 동독에 대한 연방정부의 송금, 베를린 주와 연방체신성의 동독지원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음.

- 1974년 연방정부가 발표한 동독 지불내역에 따르면 1970~1973년까지 총 17억 DM이 동독으로 송금되었다는 것임.

- 신동방정책 지지자들 중에서도 긴장완화를 이룩하기 위해 서독이 치루는 대가가 너무 높지 않은가, 또는 이같은 물질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동독에 대해 좀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어났음.

- 그러나 내독교역이 결코 압력의 수단으로 적당치 못함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이를 통해 동독에 압력을 가하자는 요청에 대해 특히 사민당 측은, 양측 모두가 긴장완화의 정신을 살려 협력을 위한 협상체결에 정진해야 함을 강조했음.

- 긴장완화정책은 양측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만약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과거의 대립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내독교역은 기본조약체결 이후에도 양독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였음.

- 서독은 독일정책적 차원에서, 동독은 경제적 차원에서 내독교역의 확장에 관심을 보여왔음.

- 반면, 한쪽편에서라도 내독교역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서방국들이 동독측에 보다 유리한 교역 상대국으로 등장했을 경우, 동독은 더 이상 내독교역에 대해 경제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서방과의 관계를 증진시켰을 것임.

- 그러나 동·서독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독경제관계는 기타 서방 경쟁자들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발전되어 왔음.

- 그러나 이 같은 이해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서독은 경제적 희생을, 동독은 정치적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음.

4-2. 내독 경제교역의 시작과 협정상 근거

○ 1945년 5월 8일 독일제국이 군사적으로 무조건 항복한 이후, 전승국은 1945년 6월 5일 포츠담 회담을 통해 피점령지역 확정에 관한 연합국결정을 취함에 있어, 비록 독일이 정치단위로서는 붕괴되었지만 종전과 다름없이 경제단위로서는 존속해야할 것이라고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종전 이후 독일내 피점령지역 간 경제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형성되어 온 역사적, 정치적인 특수한 관계에 덧붙여 연합국의 점령권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했음.

○ 1949년 서독이 건국된 다음 연합국의 점령권은 사실상 모든 정치분야에 걸쳐 독일의 법률규정으로 대체되었는 바, 특히 대외무역에 있어서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으로 대체되었는데, 서독의 입법기관은 내독 경제교류에 관한 법정 근거 설정시 의식적으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이 아닌 연합국의 군정법(MRG) 53호인 외환관리법(Devisenbewirtcshaftungsgesetz)을 기준으로 하였음.

- 이 외환관리법은 포츠담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인 전독일 단일경제권을 기준으로 한 점령지역 간 물자교류와 지불문제를 다루고 있음.

- 서독측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근거는 독일이라는 땅에 2개의 상이한 경제체제와 사회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라는 국가와 경제의 단일성이 존속되고 있고, 다만 그 단일성의 실현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을 뿐이지, 결코 법률적 장애는 없다는 점 때문이었음.

- 독일내에 관세경계선(Zollgrenze)을 선정한다는 것은 모순이었으며, 서독에게 동독은 비록 "자국"(Inland)은 아닐지언정 그렇다고 "외국"(Ausland)이라고 간주될 수도 없기 때문에 내독 간 무역과 지불청산을 규정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률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불청산을 규정하기 위해 서독의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음.

- 이미 발효상태에 있던 연합국의 피점령지역 간 무역에 관한 규정과 연계하여 서독측은 국제법에 입각한 동독의 사실상 인정을 "내독 간 경제교류 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r inner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을 통해 회피하자고 꾀했음.

○ 동독은 서독측이 주장하는 "내독 간" 경제교류의 "특수상태"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식적으로 거부했는데, 2개의 독일이라는 국가 간의 경제교류는 통상 대등한 주권국가 간의 경제교류 이외의 형태를 띠는 교류란 있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실제로 이와 같은 "특수상태"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진정으로 시도한 바는 없는데, 그 이유는 내독 간 경제교류에 따르는 이익과 경제적 의의가 막대했기 때문이었음.

○ 양독 간 경제교류는 연합국의 점령권과 서독지역 화폐개혁 후인 1949년 9월 19일자 새로 수정된 군정법 제53호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르면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조건하에 허가"(Verbotsprinzip mit Erlaubnisvorbehalt)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바, 이는 분명하게 허가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뜻함.

○ 합법적인 내독무역은 베를린 봉쇄시점까지 점령국의 수중에 있다가 서독과 동독이 건국된 다음부터는 그 권한이 대대적으로 독일측에 위임되었음.

- 서방측 연합국은 서독측에 대하여 연방정부(소위 서독정부)로 하여금 전권을 위임받은 후 관계기관을 설치할 것을 허용하였음.

- 그 이래로 내독무역에 필요한 허가는 연방경제성 내지 연방경제성 산하 연방산업청(Bundesamt fuer gewerbliche Wirtschaft)이 관장하게 되었음.

- 동독과의 회담은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은 베를린 소재 피점령지역 간 무역 신탁관리처(기존의 Treuhandstelle fuer den Interzonenhandel 약 : TSI로서 현재 상공신탁관리처 Treuhandstelle fuer Industrie und Handel)가 주도하였으며, 동독측은 대외무역성으로 하여금 동독정부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음.

○ 내독 간 무역과 지불교류에 관한 협정상의 근거는 1951년 9월 20일자 베를린 협정(1960년 8월 16일 개정)이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이는 변함이 없었음.

- 그밖에 내독 간 경제교류는 양국 간 주무부서와 중앙은행 간의 각종 합의, 베를린 협정의 부속문서, 시행령, 내독무역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예외허가규정,

포고, 공지사항 등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한 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와 같이 각종 법률규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된 내독 간 경제교류의 특수상태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EEC 회원국들도 일부 회원국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승인하였음.

- 서독은 GATT 회원국이지만 1951년도 GATT에 관한 Torquay 의정서 보완조치에 따라 서독에게는 내독 간 경제교류의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 EEC 회원국들은 1957년도 EEC 조약에 관한 의정서와 더불어 양독 간 물품교류의 특수체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정하였음.
  - 동독은 이와 같은 소위 "개방된 무역경계"(offene Handelsgrenze)를 통해 EEC 회원국인 서독과 관세장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EEC 회원국들은 회원국들의 대외무역에 지장이나 심지어 손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동독과의 무역에 관한 사항을 협정을 통해 상호 보고하도록 합의하였음.

○ 내독무역, 즉 동서 간의 물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베를린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모든 합의사항은 통화지역조항(Waehrungsgebieksklausel)에 근거, "서독 DM 통화지역"과 "동독 마르크 통화지역" 간의 무역, 지불, 교류에 이 조항이 적용되며, 이러한 법률적용과 더불어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은 명확한 언급이 없이도 내독경제교류에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에 포함됨.
- 상품과 서비스의 반입과 반출은 상호지불거래시 불균형상태에 이르지 않고 중장기간에 걸쳐 대체적으로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추진됨.
- 상품거래는 예외 없이 상품목록(Warenliste)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상품목록은 무기한 유효하되 반출과 반입 가능성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함.
  - 비록 과거에 통용되던 반출과 반입에 관한 최대허용량 의미가 분명하게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서독 반입상품 중 상품가격 기준으로 약 1/3은 종전과 다름없이 한도량이 정해져 있음.
  - 모든 거래는 허가와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래 파트너는 반입허가서와 상품송장을 제출해야 함.
- 내독무역은 오로지 독일이 원산지인 상품의 교환만을 허용하며 외국생산품은 특별허가를 요함(예컨대 서독의 원유공급에 대하여 동독은 석유류 제품은 서베를린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
- 구상무역은 내독 간 무역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일정방향으로 향하는 상품공급에 대하여 그 반대방향으로 향하는 지불이 뒤따라야 함.
  - 상품과 상품의 직접 물물교환은 청산계정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 내독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체 간의 지불거래는 연합국의 외환관리법에 근거하여 처리됨. 이에 따라 양독업체 간 직접적인 송금거래(Uenerweisungsverkehr)는 불가능함.
- 동독의 상품공급에 대해 서독에서는 특별히 그 상품의 가격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로써 대량의 동독상품이 서독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어 국내생산 분야에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함.
- 내독무역에 따른 반입과 반출은 EEC 의정서에서 허용한 바와 같이 일반 관세 적용과 EC 농산물 수입 규제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특혜가 부여됨.
- 내독무역은 서독에서 일반거래세(Umsatzsteuer) 분야에 있어서도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음.

○ 서독측은 내독무역에 있어서 대외무역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제한과 규제를 가했으며, 이러한 지나친 제한과 규제는 양국 간에만 독특한 채무청산거래의 성격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이는 과거 주로 사회주의 중앙통제적 인민경제단위 사이의 대외무역이나 일부 저개발국가의 경제단위 간의 거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임.

- 채무청산 거래는 사실상 감독기관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처리되었으며, 특히 동·서독 간 정치적으로 급작스런 관계악화로 인한 양독 간 긴장상태가 유발되지 않는 한 내독무역은 지속되어 왔음.

4-3. 내독 교역의 현황과 발전 과정

4-3-1. 일반현황

○ 내독무역의 양적발전추세는 동독측은 물론 서독측으로 볼 때 제3국과의 대외무역 발전추세보다는 훨씬 저조함을 알 수 있는데 서독은 유럽시장과 북미시장에 대외무역의 중점을 두었던 반면 동독은 대체로 공산권 시장에 통합되어 있었음.

- 1955년에 비해 1987년의 내독교역 거래액은 12배가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중 서독의 대외무역은 19배, 동독의 대외무역은 36배가 증가하였음.
- 내독무역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독의 경우 1955년 2.3%, 1970년 1.8%, 1987년에는 1.5% 밖에 되지 않았으며, 동독은 1955년 12.3%, 1970년 11.4%, 1987년 7.6%였음.
- 내독무역은 서독에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지역적인 의미만 가졌는데 그 거래액은 보통 대 덴마크 거래액보다 작았고(무역상대국 순위는 15위 정도),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도 고용창출 중립적이었음.
- 반면, 동독에게는 경제적으로 서독에 비해 비교가 안될 만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987년 동독 통계에 따르면 서독은 동독에게 소련과 체코에 이어 제3대 무역 파트너이며, 1988년도 OECD 통계에 따르면 동독은 내독교역을 통해 다른 서방제국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물품교류를 하였음.

○ 상품과 용역의 내독 간 상호교류에 관한 발전추세가 현저하게 싸이클을 이루어 일정주기의 형태를 띠고 전개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일인데, 내독 경제교류의 순환성은(Zyklik) 주로 내독 간의 정치적인 관계에 기인하고 있음.

- 특히 1951-1953 중에는 베를린 봉쇄와 한국전 발발로 말미암아, 그리고 1960-1963 중에는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서독정부에 의한 "베를린 협정"의 잠정적 해약, 동독의 비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규제조치로 말미암아 퇴조기와 침체기가 있었음.
- 1967-1968 중의 내독 간 경제교류는 수에즈운하 봉쇄로 인한 긴장, 소련군의 체코 침공, 1963년에 시도되었던 동독경제개혁의 실패에 따른 결과와 연계되어 다시 침체상태에 빠져들었음.

○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정치적인 조건 면에서 그리고 동·서독 간의 관계가 매우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독무역량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경제적인 요인이 내독무역 신장의 장애요소였던 점도 지적할 수 있음.

- 양국 간 상품교류의 질적 측면, 즉 무역의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즉 내독무역의 상품공급과 상품수요의 구조는 처음부터 기형적이었으며, 반출과 반입 면에서 모두, 양국의 산업화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것도, 적정한 것도 아니었음.
  - 기초소재, 생산재, 광산물(서독측 반입은 50%, 서독측 반출은 60% 정도)이 대종을 이루면서 농산물(반입 10%, 반출 15% 정도)의 의미가 큰 반면, 투자재(반입 10%, 반출 20% 정도)의 의미가 적은 점 등은 사실상 개도국 간의 무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었음.
- 이미 1972년도 기본조약체결과 더불어 만족스럽지 못한 무역구조의 개선, 그리고 재화교류상 상호보완성만을 추구하는 경향(Komplementrartaet)의 극복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그 이래로 내독 간 상품교류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우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대국인 동독이 재화교류의 질적인 구조를 거의 좌우하였기 때문이었음.
    - » 동독은 어떠한 상품을 반입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했는가 하면, 어떠한 동독상품이 과연 서독시장에서 구매자를 만나게 될지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동독의 국제경쟁력(최근에는 계속해서 악화됨)을 스스로 제한해버렸음.
    - »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그 공급능력 면에 있어서 국제시장수준에 뒤져있고 제품의 질이 시장경제체제의 생산품의 우수한 품질보다 훨씬 뒤쳐져 있는 한,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추세하에서 내독무역의 질적구조의 개선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음.

- 둘째는 동독측 상품의 관세나 농산물 수출입 규제(Abschoepfungen)에 관한 면제요율은 생산품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동독의 국가기관은 무엇보다 특혜관세율이 매우 높은 상품을 서독으로 수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동독은 무역정책상 특별한 지위를 이용한 동독의 재정상 잇점이 극대화되도록 하였으므로 내독교역 발전이 한계가 있었음.
  - » 즉 동독은 관세면제로 인한 가격의 장점이 외국의 경쟁상품보다 훨씬 큰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생산품이 내독무역을 주도하던 기초 소재이자 생산재 등이었음.

○ 용역교류가 상품교류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였는데 동독의 용역수지 잔고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동독의 대외무역기관이 서독을 통과무역국으로 활용하면서 외화를 절약하고자 했기 때문임.

- 즉, 동독의 서방측 산업국과의 대외무역 거래량의 대부분은 서독의 교통수단과 서독의 화물적치장을 이용했는데, 통과항구로서 함부르크는 동독의 석탄, 원광, 곡물, 기타 농산물 수입을 위해 전략적 의미까지 갖고 있었음.
- 나아가 동독은 서독의 은행, 보험, 박람회, 시설조립 등의 분야에서 서독 기업의 서비스와 라이센스를 대대적으로 이용하였음.
- 내독 간 용역거래는 동독이 이를 통해 서방 산업국과 저개발국과 대외무역을 하면서 필요한 경화를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추진되었음.
  - 동독은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시 서독측 기업으로부터 운송 서비스, 보험서비스, 시설조립서비스를 받은 다음 내독 청산구좌를 이용, 자체 상품으로 지불할 수 있었으며, 동독은 이를 통해 US 달러, 스위스 프랑, 프랑스 프랑과 같은 어디서나 태환가능한 경화를 절약할 수 있었음.
  - 즉 동독은 이러한 경화를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 대신 절약한 경화만큼 예컨대 경화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로부터 밀, 커피, 기계, 비철금속을 수입할 수 있었음.

○ 결국 내독무역량의 발전 추세를 살펴볼 때-동독측으로 볼 때 만성적인 적자상태의 용역교류를 제외하면-무역추세가 전반적으로 매우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입과 반출은 세계경제가 국제무역의 심대한 불균형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던 몇 년 간에 걸쳐서도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음.
- 그러나 양국 간의 무역에서, 즉 반출과 반입에 따른 청산거래시 대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했다는 점은 양독 간에 심대한 수지불균형 상태를 방지하기는 하였지만 무역량의 역동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저해했다고 볼 수 있음.
- 내독무역의 역사적인 경험에 의하면, 양국 간 결제시 무역량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파트너, 즉 동독에 의해 좌우되었는 바, 결국 동독은 이러한 방식으로 내독무역의 의미와 규모에 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서독측이 쌍무관계원칙(Prinzip der Bilateralitaet)에 따라 어디까지나 동독측이 물자와 용역을 반입한 후 그 대응공급을 통해 지불할 능력이 있는 만큼의 상품과 서비스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임.
- 동독 공산당 지도층에게는 폴란드 사태로 인한 충격 이후 유럽과 일본의 은행은 물론, 더욱이 미국의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차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1982년-1983년 중 동독의 구체적인 외환지불 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내독무역이 매우 의미가 있었으며, 서독은 내독무역상의 특별한 규정을 통해 동독의 경제위기 해결과 궁극적으로 동독의 경제와 정치사회체제의 안정에 지대한 기여를 했었음.

4-3-2. 품목별 현황

○ 그전까지만 해도 동독은 내독교역에서 수년 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가 80년대 들어(1980년, 1981년) 흑자를 보이기 시작함.

- 내독교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음.
  - 동독은 투자제품 거래에서는 큰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제품 부문에서는 흑자를 올리고 있었음.

- 투자제품에 있어서 서독이 동독으로 반출한 양은 들여온 것의 2배에 달한 반면, 소비제품의 경우 반입은 반출의 3배를 넘었음.

– 70년대 초에만 해도 기초자재 사업과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동독으로 반출한 물품 양은 반입의 2배에 달하였음. 그러나 80년대에는 반입과 반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함.

- 반면 농산물 품목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서독이 동독에서 들여온 제품은 반출된 것보다 훨씬 많았으나, 이제는 동독 내에서의 농작물 감소로 인해 반입·반출이 거의 비슷해짐.

○ 농산물

– 내독교역에서 차지하는 농산물 및 식품의 비중은 70년대에 들어 급격히 줄어듬.

– 특히 이들 산업분야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거래품목이 일부제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임.

- 서독이 반입하는 제품들로는 육류, 곡물, 설탕 및 과자류 등이며, 반출제품은 주로 깻묵과 곡물껍질 그리고 생기름에 한함.
- 동독은 수입해 온 사료로 동물을 사육, 가공하여 이를 수출했음.

– 반제품을 수입한 뒤 이를 가공처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은 대외교역상 원래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이나 내독교역에서 농산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음.

- 많은 양의 특수사료를 필요로 하는 동독은 COMECO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만으로 충분치 않은 관계로 서독으로부터도 깻묵과 곡물껍질 등의 특수사료를 사들였음.
- 이들 특수사료는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을 수입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음.
- 비록 동독 농산물 가공제품을 고가격으로 다시 서독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사료수입으로 인한 높은 생산비용 때문에 이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

○ 기초자재 및 제조상품

– 기초자재와 제조상품을 대상으로 한 내독교역은 반입·반출 부문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음.

– 최근 10년 간 서독이 동독으로 반출한 제품들 중에서 기초자재와 제조업 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에 달하며, 반입의 경우도 1970년 31%에서 1980년에는 54%로 급격히 증가했음.

- 이러한 추세는 동독으로부터 대량의 석유제품을 사들여오는데 기인함.

○ 석유 및 석유제품

– 석유반출은 석유제품 수입과 직접 관련은 맺고 있었음. 이 부문에서의 거래는 1985년까지 적용되는 일반조건에 관한 협약(Rahmenvereinbarung)에 의거 이루어졌음.

– 동독은 서독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줄임과 동시에 서독에 대한 석유제품 반출을 늘려나갔음.

- 서독이 동독에서 들여온 석유제품은 1970년에만 해도 총 반입의 4%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26%에 이르렀음.
- 동독이 이들 석유제품들을 생산해 내기 위해 서독으로부터 들여온 석유는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소련과 OPEC 국가들(1980년-7.5%)로 충당하였음.

– 이때 동독이 소련으로부터 염가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독으로의 석유제품 반출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나, OPEC로부터 들여 온 석유에 대해서는 경화로 국제가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동독은 석유제품 부문에서는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석유 및 석유제품 부문에서의 거래는 양국가 간의 일반품목 교역 구조와는 상이하게 매우 활발했음.

– 서독은 석유(1980 : 120만 톤) 외에도 석탄과 석탄코크스(1980 : 약 1백만 톤)를 동독으로 납품했었음.

• 이는 동독의 전체 석탄 및 석탄코크스 수입에서 10%를 차지했음.

○ 금속제품

– 최근 몇 년 간 제철 및 강철 부문에서 있었던 내독교역을 보면, 서독 납품업자들은 고부가가치 금속제품을 동독으로 반출할 수 있었음.

• 그 이유는 동독이 주로 대량생산 강철제품을 서독으로 반출한 반면, 서독은 보다 정밀 가공·처리된 금속제품들을 동독에 납품하였기 때문임.

• 특히 이 분야에서의 동독의 금속처리 기술은 초보단계에 불과했음.

– 반면 구리제품 부문에서의 거래는 1979년부터 동독에 유리하게 진행되었음.

•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구리폐품을 사들인 뒤, 이를 가공하여 다시 서독에 팔고 있었음.

• 이 부문에서의 교역은 서독의 구리반출 능력에 좌우되었는 바, 동독 자체의 구리생산 능력만 갖고서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양의 1/3밖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임.

– 알루미늄 산업 역시 열악한 근로조건과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 인해 동독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었음.

– 서독이 동독으로 납품하고 있는 은(Silber)은, 이것이 COMECON 국가들을 그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사진 화학 및 전자기술 제품들의 원자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됨.

○ 화학산업

– 화학산업은 기계산업에 이어 동독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부문이었음.

– 그러나 내독교역에서는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했음. 화학제품은 서독이 동독으로부터 들여오는 제품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품종이긴 하나, 서독 역시 많은 양의 화학제품을 동독으로 반출하였음.

– 오히려 이 부문에서 동독은 적자를 면치 못하였는데, 다행히도 이 같은 상황은 1974년도 반출 대 반입 비율 3:1에서 1980년에 들어 3:2로 호전되었음.

•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양에서 보다는 가격 면에서 찾아지는데 대부분 화학제품의 경우-무기화학은 예외임-동독이 서독으로 반출하는 화학제품의 가격이 서독이 동독으로 수출하는 제품들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었음.

○ 소비제품

– 동독은 소비제품 부문에서 항상 흑자를 올려 왔음.

• 특히 경공업과 섬유업종에서 동독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오다가, 한동안 투자가 소홀히 되기도 했으나, 70년대 초부터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시 수출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음.

• 완구제품의 경우 50%가 반출되고 있으며 섬유, 가구제품들은 40% 이상이 반출되고 있었음.

– 서독이 동독으로 반출하는 소비제품들은 주로 가죽, 털, 실 등과 같은 반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서독이 동독으로부터 들여오는 소비제품들은 주로 섬유, 의류, 목제품 등과 같은 완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 동독내 생산소비 제품의 20%가 서독으로 반출되고 있었음.

» 특히 고급도자기와 유리, 섬유, 의류업 등이 주요 대서방 수출제품들에 속함.

• 동독이 서독으로 납품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그러하듯 이 소비제품들 역시 외환상의 이윤이 높지 않은 품목에 속했음.

○ 허가생산(Gestattangsproduktion)

– 허가생산은 일종의 특허사업으로서, 외국의 유명제품을 동독에서 생산해내는 것임.

– 이의 장점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know-how를 동독이 이전받아 동 제품을 수입하느라 많은 외화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우수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 자국민들에게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었음.

– 이 같은 형태의 협력관계는 동독경제에 매우 유리하게 적용하였으므로, 대상을 내구성 투자재 생산으로까지 확대시키려고 노력하였음.

○ 투자제품(Investitionsgueter)

– 투자제품 부문에서의 양독 간 교역은 미진했으며, 이는 서독에 대한 동독의

반출의 경우 특히 더 심한 편이었음.

- 동독이 수출하고 투자 및 기계제품 중에서 서독으로 반출되는 양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며, 이는 동독내 투자제품 총생산량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음.
  - 동독은 자국제품의 대 서독 반출량을 늘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 노력했으며, 동시에 이러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하여-이 부문에서의 서독측 생산기술과 제품수준이 뛰어나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독과 산업 기술상의 협력 가능성까지 꾀했으나 성과는 미미했음.
- 서독으로부터의 투자제품 반입은 동독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동독이 서방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투자제품 중 55%가 서독산 제품이었음.
  - 수입기계제조 품목에서 차지하는 서독제품의 비율은 5~10%에 이르렀음.
- 동독으로 납품되는 서독기계 제품들을 살펴보면, 단순 장비구입에서 점차적으로 원자재 개발, 금속제품 가공, 건축자재 생산 등에 필요한 제품들의 구입으로 추세가 변화했음.
- 동독으로 반출되는 기계제품들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80년대 들어 부속품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
  - 1980년의 경우 기계제품 반출에서 부속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40%에 이르렀음. 개별 공구까지 포함하면 동독에 대한 기계제품 반출의 50% 정도가 부속품으로 이루어짐.
  - 이는 동독이 서방국가들로부터 구입한 제품들의 부속품을 내독교역을 통해 충당했음을 의미함.
- 이 같은 경향은 노후화된 기존생산시설의 현대화를 겨냥한, 동독의 투자정책으로 인해 동독측이 내독교역에서 중점을 두었던 분야임.

○ 생산설비 거래(Anlagengeschaeft)

- 80년대 들어 동독에 대한 생산설비 거래가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되었는데, 이는 냉전 이후 긴장완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이같은 사업을 위한 구비조건, 특히 자본거래에 의한 차관 공여의 가능성이 열리면서부터 활발해짐.
  - 내독교역에서 특히 거래가 활발한 분야는 금속 및 화학부문이었음.
  - 대부분의 생산시설 수출·입 사업 계약은 1979년에서 1981년 사이에 맺어졌는 바(14건), 1980년과 1981년 동독측이 생산설비에 투자한 액수는 약 6억 DM에 달했음.

○ 현물상환교역(Kompensationsgeschaeft)

- 동·서 교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독교역에서도 반입과 반출이 특별히 연관을 갖는 현물상환교역은 전체 거래의 5~10% 수준이었음.
  - 동독은 내독교역의 일환으로 맺어진 전체사업 계약 중 80~90%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으나, 그 나머지 계약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현물상환교역을 조건으로 내걸었음.
- 동독은 현물상환교역을 국제적 분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래로 평가했는데, 이 같은 견해는 '되사기 장사'(Ruechkauffgeschaeft : 생산시설 비용을 생산해낸 제품들도 지불하는 방식)가 장기적으로 내다보아 동독에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출발했음.
  - 그러나 반입과 반출 간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들이 현물상환교역이라는 이름으로 서독으로 반출되는 경우는 자주 있었음.
  - 다시 말해 이는, 판매시장을 찾지 못한 동독이 현물상환교역 형식을 빌어 이들 제품을 서독측에 처분하려는 의도였음.

4-3-3. 내독교역이 동·서독에 갖는 의미

4-3-3-1. 서독에 대한 내독경제교류의 의미

○ 서독에 대한 내독경제교류의 경제적 의미는 극히 미미함.

- 80년대, 10년 간 내독무역은 서독 전체 대외무역고의 약 1.5%에 지나지 않으며, 서독과 서베를린 총 취업인구의 0.3%인 약 70,000명만이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내독무역거래의 반출업무에 종사했을 뿐임.
- 비록 동독이 운수업계, 보험업계, 은행업계의 서비스거래에 있어 훌륭한

고객이긴 하나, 전체 거래량과 비교해 볼 때 단지 Hamburg 통과항 이용정도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었음.

- 서독의 은행과 기업의 국제적인 대출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동독은 서독측에게는 완전히 부차적인 역할밖에 못 했음.
  - 1985년 말 서독은 은행과 공급업체를 비롯하여 독일연방은행은 "Swing"을 통해 동독에게 총 45억 VE를 대출하였으나, 이와 비교할 때, 동일기간 중 서독의 전세계 대출액은 8,200억 DM에 달했음.
  - 즉 동독에 대한 서독의 대출은 전체 차관규모의 0.55%에 지나지 않았음.

○ 내독경제교류가 서독에게 그토록 미미한 경제적 의미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반면, 그 정치적 의의는 매우 컸음.

- 내독무역은 항상 역대 연방정부가 추진했던 독일정책의 변함없는 중요한 구성요소였으며, 70년대 중반까지 내독무역은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이중적 기능 때문에 양독관계에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음.
- 한편으로는 내독무역은 동서독 경제제도상의 국민경제적 연관성의 강화와 무역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인적 접촉의 증대를 통해 분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공통성이 유지되도록 추진되었음.
- 다른 현편으로는 서독의 정치적 목표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역 및 자본교류가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음.
  - 전후 보수당 집권 연방정부에게는 내독무역을 협상수단으로 이용, 무엇보다도 Berlin과 서독 간의 자유왕래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목표였음.
- 이미 1966년 대연정의 출발과 함께 그때까지 유지되어 오던 무역장애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등, 처음으로 정책목표의 중점이 바뀌어 가다가, 1969년 사민당과 자민당의 집권과 더불어 내독 간 경제교류의 정치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됨.
  - 이때부터 내독 간 경제교류의 중점은 특수관계하에 있던 분단된 양독일 국가를 묶는 가장 안정된 장치가 되도록 하는데 두어졌음.

- 내독무역을 정치적 목표의 관철을 위해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던 시도는 없어지게 되었으며, 1971년 말에 체결된 통과교통협정(Transitabkommen)과 더불어 서독과 베를린 간의 아무 제한 없는 통행이 확보됨에 따라, 이 협정으로 내독무역은 양국 간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정치적인 역할분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1982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보수중도 연립정부인 기민당·자민당 연립정부는 내독교역을 지속하되,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와는 분명히 다르게 경제적 협력의 강화를 통해 재통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음.
  - 기민당·자민당 연립정부는 무역을 주로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했던 과거의 보수정부와는 반대로, 그리고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보다 훨씬 더, 내독무역을 긍정적으로 장려하면서, 그 결실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고자 노력하였음.
  -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비록 그 의미는 다르다고 할지언정-물품거래와 자본거래는 다시금 정치적으로 도구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비단 대형 유럽차관(Euro-Grosskredit)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증제공뿐만 아니라 Swing 최고액을 다시 인상하자는 회담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음.

4-3-3-2. 동독에 대한 내독경제교류의 의미

○ 내독 간 경제교류는 서독과는 반대로 동독에게 항상 막대한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었음.

- 동독의 계획경제에 대한 내독무역의 경제적 기능은-동독의 국제무역의 경제적 기능과 마찬가지로-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회주의 계획수립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품귀상품을 비롯하여 서방측 테크놀러지와 재원을 얻고자 하는데 두어졌음.
- 또한 서방측 시장경제와의 경제교류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상황에 따른 응급책으로서 물자공급을 통해 체제를 안정시키는 전략적 임무가 추가되었음.
- 특히 동독의 서독과의 경제교류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상황에 따른 응급책으로서 물자공급을 통해 체제를 안정시키는 전략적 임무가 추가되었음.

- 특히 동독의 서독과의 경제교류는 내독무역이 단지 특수관계에 의한 혜택 때문에 중요한 것만은 아니었음.
  - 내독무역은 지역적으로 가까웠기에 운송비가 적게 들었고, 독일어라는 공동언어사용상의 장점과 함께 이미 분단 이전에 거래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역할을 차지했음.
  - 동독의 계획경제가 필요로 했던 물질적 수요는 예측을 불허하고 갑작스러운 것이었기에, 내독무역이라는 방법을 통해 언제나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으면서 장기간의 운송시간이 필요 없이 충족될 수 있었음.

○ 내독무역이 동독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는데 동독 GNP의 약 3%를 차지하였고, 80년대 동독 대서방 무역의 36%는 내독무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40% 내지 50%까지 된 적도 있음.

- 서독은 동독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동독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 시장이었음.
  - 동독은 섬유, 의복, 유리, 도자기와 같은 일부 생산품의 대서방 수출 중 3/4을 서독에게 공급했음.
  - 화학제품, 철강 등 기타 생산품의 서독측 수입률은 약 50%나 되었음.
  - 동독의 대서방 무역 중 용역교류는 특히 서독에게 집중된 특징을 갖고 있었음.
- 서독과의 자본거래 역시 동독에게는 지대한 의미가 있었음.
  - 비록 동독은 서독보다 기타 서방국가나 소련에게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서독측 계산에 따르면 현재 동독의 대서방 부채 중 약 1/6이 내독무역거래에 의한 지불의무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었음.
  - 서방측 차관에 있어서도 서독은행의 국외지점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컨대 1983년과 1984년에 각각 10억 DM에 달했던 "Jumbo" 유럽차관(Eurokredit) 제공은 동독경제가 외환위기를 탈피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
  - 동독은 경제정책적 오판, 너무나 경솔했던 채무관리, 원자재와 농산품의 급격한 국제가격 등귀, 외국차관에 대한 유럽이자율의 폭등 때문에 1982-1983년 중 불과 수개월 만에 동독이 건국된 이래 전례 없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했으나, 동독은 위기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내독무역을 잘 활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었음.
- 동독정부는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처하여 내핍정책을 추진하며 국내경제적으로 특히 소비지출, 에너지 사용과 원자재 사용의 절약을 목표로 하면서, 대외경제적으로는 고액의 국제수지결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했음.
- OECD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급격하게 거의 40% 정도 절감되었으며, 대서독 수출 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했는데, 동독은 서독측이 묵인하는 가운데 OECD 수입절감에 따르는 물자공급 상의 애로를 내독무역에 의존하며 반입증가를 통해 거의 완전히 메꿀 수 있었으며, 그것도 서독에의 물자 및 용역반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즉 서독의 단기융자(Swing)를 사용하면서, 달성했음.

○ 무엇보다도 서독측 상품공급, 서비스 공급, 차관, 비상업성 외환지불에 대한 동독의 의존성이 너무나 눈에 띌 정도였기 때문에 동독의 정치지도자들은 서독측의 접근과 거리감 유지에 대하여 언제나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음.

- 내독 간 경제교류가 동독에 미친 정치적 의의가 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독 간 경제교류를 가능한 한 부단하게 확장해 보려던 동독정권의 관심 역시 처음부터 변함없었음.
- 내독 간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동독의 정치적 관심은 매우 이중적이었음.
  - 한편으로는 동독은 내독무역이라는 특수상태로부터 전략 상품과 전략원자재를 위시한 물질적 이익을 취함에 따르는 대서방 의존도는 경제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였음.
  - 다른 한편으로 동독은 "서독"과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경계를 지으면서 경제제도와 사회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분단독일의 평화적 재통일 가능성을 반동적인 유토피아라고 끊임없이

부인하였음.

- 동독은 경제교류를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던 서독의 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것임.

○ 독일경제연구소(DIW)의 표본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독에 대한 서독의 반제품 반출은 관련 동독업체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결론은, 단순히 동독의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서독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공급도(Versorgungsgrad:국내 순생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내독교역의 비중) 면에서 반입된 서독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밝혀짐.
  - 1980년도 동독의 전체 내독교역 반입액 80억 마르크 중 56억 마르크(70%)는 최종 주문과 동시에 출하된 제품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서독의 화학, 급속, 기계 및 차량생산업계가 동독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자재(반제품) 제공자에 속함.
  - 특히 서독의 전자기술 제품들은 동독의 투자와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 물론 주요 동독 수출업계 중 서독으로부터의 반제품공급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은 경공업 부문이었음.
- 1980년 동독이 내독교역에서 85억 마르크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원래의 수출제품 생산 외에도 72억 마르크에 달하는 서독으로부터 반제품 생산공급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 특히 경공업, 금속, 섬유, 화학 등 4개 분야에서 내독교역에 의존하는 생산량이 각각 전체생산량의 7%에 달했음.
- 아울러 동독의 주요 내독교역 수출업종은 화학(18%), 경공업(15%), 농업(11%), 금속(10%) 그리고 기계/차량산업(10%)이었음.

○ 동독이 서독으로부터 들여오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생산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OMECON 진영으로부터도 구입하기 힘든 제품들로 구성되었음.

- 내독거래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자재 부문에는 원료와 반제품뿐만 아니라, 동독의 자체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여러 특수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음.
- 소비제품의 경우도 서독으로부터의 반제품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

- 제품생산에 시급한 부품과 자재들은 우선적으로 도입해야만 했던 관계로 투자 제품의 수입은 극히 제한받게 됨.
  - 투자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선 급한 부속품과 신제품 구입 간에 구분을 두지 않을 수 없었음.
  - 여하튼 생산기계 전체를 구입하는 경우는 동독의 대서독 반출능력을 고려해 볼 때, 그리 많지 않았음.
- 내독교역에 대한 서독정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동독은 일부 업종의 경우 서독시장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었을 것임.

○ 동독의 서독 이외의 서방교역량이 증가됨에 따라 내독교역은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갔으나, 동독의 서방무역 상대국들 중에서 서독이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음.

4-4. 내독교역 상의 청산·지불

4-4-1. 청산단위(VE)에 의한 지불거래

○ 서독과 같은 경화보유 선진국에게 매우 드물게 내독교역에 따르는 거래상의 청산·지불은 전적으로 양국의 중앙은행에 의한 청산방식(소위 "양자간 정산": Bilaterales Clearing)으로 수행되었음.

-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국의 중앙은행은 각각 상대방을 위한 각종 청산구좌를 설정해 놓고 상품 및 용역교류에 따른 입금과 지출이 모두 이를 통해 정산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청산구좌는 인위적인 청산용 화폐, 소위 "청산단위"(약어:VE)로 운영되었는데, 모든 계산서를 발행하고 지불을 수행할 때 공식환율은 1 VE = 1 DM(서독 마르크) = 1 Mark(동독 마르크)가 적용되었음.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서독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DM을 1:1의 비율로 VE로 환산한 후, 이에 따라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음.
- 동·서독 무역에 참여한 기업 간의 자유로운 외환을 사용한 직접적인 송금교류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 반대로 양국의 중앙은행이 언제나 그 청산구좌를 통해 "중간역할"을 담당했음.
- 지불청구자와 지불의무자 간 직접적인 상쇄지불도 인쇄물과 영화상영권의 교환 및 에너지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었음.
- 내독교류가 경화, 즉 서독의 DM이나 US달러, 일본의 엔화 또는 기타 유럽 화폐로 처리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으나, 내독무역에 적용된 청산제도는 만성적으로 경화가 부족한 동독측에게는 지금까지 서독의 상품이나 용역제공에 대하여 외환으로 지불될 필요 없이 자체의 상품공급이나 용역제공 등, 다시 말해 결국 "현품"으로 지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양해하에 저발전 국가에나 적용되는 이 청산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
- 더구나 동독 마르크나 루블화로 처리된다는 것은 공산권의 화폐가 경화가 아니기 때문에 태환성이 없을뿐더러 서방측 거래 파트너들은 이러한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전연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음.
- 70년대 초까지 서방측과 동독무역 대부분이 이러한 채무청산방식으로 결제되었으나, 동독은 과거 양독 간 채무청산협정에 필적할만한 관계를 서방측에서는 단지 브라질, 에콰도르, 핀란드, 인도, 이란과 유지하고 있었음.

○ 양국 간 채무청산 파트너들은 상호 지불관계가 가능한 한 최대의 균형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면서, 이와 같은 쌍무관계원칙(Bilateralitaetsprinzip)이 공급가능 목록과 상품한도량의 현실적 조정에도 적용되도록 배려하였음.

- 그러나 쌍방 간의 지불관계가 단기적으로 보면 균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순전히 우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못할 경우가 많았으므로,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양국 간 채무청산의 한 방편으로 각 파트너가 쌍방을 위한 일종의 기술적인 청산용 융자(Verrechnungskredit), 즉 "Swing"을 개설하였음.
- Swing의 임무는 오로지 입금과 지출 간의 단기적 불균형상태를 균형있게 해줌으로써 지불교류의 연체현상을 막고자 함에 있었음.
- 이러한 "Swing"은 내독 간 청산거래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그 사용은 합의에 따라 무상으로 되어 있음.
- 통독진적까지 청산구좌에서 최고 8억 5,000만 DM까지 "초과대출"될 수 있었는데, 융자한도는 무역고가 최고 170억 DM인 경우, 청산구좌에 의한 지불액 중 단지 5%에 지나지 않았음.
- 약정된 "Swing"은 양국 간 채무청산거래시의 국제관례에 부응하는 것이었는 바, 더 이상은 낮은 융자한도 설정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유연성이나 역동성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피했음.

○ 1958년 서독의 연방정부는 내독 간 지불교류제도에 또 다른 요소를 추가시켰는데, 엄격하게 유지되어 온 양국 간에만 통용되는 채무청산제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 독일연방은행에 소위 "현금지불 특수구좌 S"(Barzahlungssonderkonto S)를 개설하였음.

- 동독은 이를 통해 VE 거래 이외에 경화를 지불하고 기존상품목록에 반출입 제한품목으로 되어있는 것 이외의 상품을 서독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음.

- 동독은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험적인 사례에 의하면 이러한 가능성을 지금까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였으며, 70년대 중반, 국제시장에서 원자재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악화일로의 국제수지결손 때문에 대서방 무역에 상당한 제한을 받자, 동독은 특수구좌 S를 통해 그나마 일부 구매를 했을 뿐임.
- 동독은 확보한 경화를 다른 서유럽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지불하였는 바, 내독무역은 여타가능성이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양국 간에만 통용되는 채무청산거래를 이용했음.

○ 청산구좌의 운영, 지불처리, 위체교류, 신용장개설과 같은 청산의 방법과 기술은 동·서독의 발권은행인 서독의 독일연방은행과 동독의 국립은행이 정해놓은 발권은행 합의서(Notenbankvereinbarung)(1951년 9월 20일자 동·서독 국립은행 간의 합의 Vereinbarung zwischen der Bank deutscher Laender-jetzt Deusche Bundesbank-und der Deutschen Notenbank vom 20. September 1951; 이는 베를린 협정의 별첨 7로 그 구성요소를 이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실무거래시의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 청산용 구좌(Verrechnungskonten)
  - 상호 간 지불대금은 양국의 발권은행이 나란히 운영하는 청산구좌에 기장되며 동·서독의 각 청산은행(Verrechnungsbank)에 입급된 대금은, 장부가 상호 간 일치하는 가운데 지출될 대금지급을 충당하기 위하여서만 사용됨.
- 세목구좌(Unterkonten)
  - 양국의 발권은행이 운영하는 세목구좌가 내독교역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의미가 있음.
  - 세목구좌는 감독기술상의 근거 및 정산기술상의 근거 때문에 설정되었는데, 내독교역 상인은 내독경제교류시 대금을 지불하거나 인수할 때 규정상 정해져 있는 해당 세목구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목구좌가 있었음.

» 세목구좌 1 : 베를린 협정 별첨 2의 상품목록을 근거로 하는 반출에 대한 대금지불과 별첨 1의 상품목록을 근거로 하는 반입에 대한 대금지불의 청산용.

» 세목구좌 2 : 베를린 협정 별첨 4의 상품목록을 근거로 하는 반출에 대한 대금지불과 별첨3의 상품목록을 근거로 하는 반입에 대한 대금지불의 청산용.

» 세목구좌 3 : 용역교류에 있어서의 대금지불의 청산용 철도나 도로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상품의 운송비용일 경우에는 대금지불은 다른 청산구좌를 통해 수행될 수도 있음.

» 세목구좌 "S" : 특수거래(Sondergeschaefte)의 처리와 관련되는 대금지불용. 동독기업체는 이 구좌를 이용하여 외화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서독 DM으로 입금할 수 있음.

• 내독교역 참여자는 주로 세목구좌1, 세목구좌2, 세목구좌3을 이용하며, 세목구좌 "S"는 단지 동독이나 동베를린으로 향하는 반출에 대한 동독측의 대금지불용으로만 일방적으로 사용될 뿐인데 이를 통해 입금된 서독 DM은 축적된 후, 동독을 위해 특정목적(대외무역, 고속도로 사용료 기타)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

- 내독교역 참여자는 내독교역시 대금지불이 수행될 세목구좌의 번호를 공지를 통해 또는 발급받은 허가서에서 알아 낼 수 있으며 또한 베를린 협정상의 4가지 상품목록을 근거하여 참여자 자신이 해당 번호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세목구좌 1과 세목구좌 2의 구분이 물품교류의 실무에서 중요하며 용역거래에 있어서의 대금지불은-부대비용이 아닌 한-언제나 세목구좌 3을 통하도록 되어 있었음.
  - 동독으로부터 입금된 대금은 독일연방은행에 의해 발주순위에 따라 해당 세목구좌에 자산(Guthaben)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Swing금액의 한도내에서 거래은행을 통해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의 구좌에 지불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변에 기장됨.
  - 오로지 청산경로에 있는 세목구좌를 통해서만 지불교류가 수행된다는

기본원칙은 청산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지불이 수행되는 개별사례가 있어 예외가 있었음.

- 이러한 거래는 항상 허가부처의 특수한 개별허가가 있어야 하며, 통과무역과 3각 무역의 대금지불은 청산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수행되었음.

– 지불기간(Zahlungsfrist)

- 동·서독 거래당사자 간의 대금지불기간 합의는 무역관행의 범위 내에서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반출과 반입을 위해 발급된 개별허가서에는 청산경로를 이용한 지불교류의 처리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물품운송의 시점과 관련될 뿐임.

– 처리은행(Abwicklungsbank)

- 청산은행의 임무를 띠는 동·서독 발권은행은 대금지불이 지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서독에서는 시중은행(Sparkassen, Girozentralen 및 기타 은행), 그리고 동독에서는 베를린의 독일 대외무역은행 주식회사와 그 지점을 하급기관으로 설정해 놓고 있음.
- 내독교역의 참여자는 바로 이러한 처리은행을 통해 대금의 지불과 인수를 할 뿐임.
- 따라서 동독국립은행이 발급한 독일연방은행에 대한 대금지불 위임만으로는 아직 독일연방은행에 대한 청구권이 설립되는 것이 아님.

– 대금지불의 조건

- 내독경제교류에 따르는 대금의 지불과 인수는 개별허가나 일반허가를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함.
- 반입이나 반출을 위해 발급된 일반허가에는 대금의 지불과 인수에 관한 허가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거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금지불 역시 일반허가 대상이나, 기타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 지불에는 항상 개별허가가 필요함.
- 물품교류를 위해 발급된 허가서(물품송장, 반입허가서)에는 물품 운송허가 이외에 항상 대금지불허가도 포함되어 있음.
- 대금지불의 위임이나 신용장 개설의 위임은 일반거래대상 물품 교류신고서나 기타 허가서의 명시된 사람들에게만 허가조치 되도록 함이 원칙적인 전제조건임.
- 지불위임장에 포함되어 있은 세목구좌, 상품의 종류, 계약체결일과 같은 내용은 지불수령이 대금수령시 제시하는 허가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대금의 지불과 수령은 개별허가서에 명기된 금액이나 일반허가대상 거래시 명기된 액수만을 지불하거나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

– 서류양식에 관한 규정

- 동독으로 대금이 위체될 경우에는 규정된 기록용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동·서 지불용 내독교류"라 표시된 독일연방은행의 제4175호 기록용지가 그것임.
- 기록용지의 8면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됨.
  - » 제1면 : 서독내 거래은행
  - » 제2면 : 독일연방은행
  - » 제3면 : 동독국립은행
  - » 제4면 : 동독내 거래은행
  - » 제5면 : 동독국립은행(통계용)
  - » 제6면 : 동독국립은행(지불고시용)
  - » 제7면 : 연방산업청
  - » 제8면 : 발주인
- 여러 개의 허가서를 근거로 하는 물품반입의 대금지불을 종합하여 하나의 위체로 처리할 경우에는 모든 반입/지불이 동일한 세목 구좌일 때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각 허가서의 해당번호를 열거한 후 위체총액란에 기재함.
  - » 대금지불이 상이한 세목구좌와 관련되는 한, 각 세목구좌마다 별도의 기록용지를 사용해야함.

• 동독에서 발급된 상품송장의 번호를 기록용지에 모두 기재해야 됨. 예컨대 선불이기 때문에 지불일에 번호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함.

4-4-2. 청산단위(VE) 대신 경화를 통한 지불거래

○ 1970년 초부터 서독정부는 각종 사안에 걸쳐 대동독 지불에 관한 통계를 집계하였지만, 청산단위(VE)에 의한 지불거래가 아닌 동독에 대한 경화를 통한 지불내용 파악은 어려웠음.

- 우선 양독 간에 체결된 관련 조약문, 회담기록, 서신 등을 분석하여 보면 연방예산, 서베를린주 예산, 연방체신청과 연방철도청 등 산하 기관의 예산에 의한 대동독 경화지불액이 어느 정도 파악됨.

- 그러나 특히 서독은행계는-기타 서방측 국가의 은행통계와는 다르게-동독에 대한 서독은행의 지불청구액이나 부채액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독일연방은행에 의하면 서독은행의 대동독 거래내용은 대외비로 취급되었음.

  • 특히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합류를 위한 비밀 협상을 통한 대동독 경화지불에 관한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 동독→서독으로 지불에 있어서는 서독은행들의 동독인의 자유구좌를 통한 동독의 서독에 대한 비상업적 지불에 관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

  • 동독측은 서독측과 거래에서 획득한 DM을 서독이 아닌 다른 국가와의 무역거래시 대외 결제에 사용했는데, 동독의 대서방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서독으로부터 유입되는 DM은 동독경제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정부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의 경로를 통해 예를 들어 동독인의 서독 방문시 서독 친·인척들이 제공한 DM, 동독방문 서독인들이 동독 친·인척들에게 제공한 DM, 서독인의 동독 방문시 인터숍(면세점)에서 물품구입으로 인한 DM 지불액 등을 통해 많은 DM이 동독으로 흘러들어 갔으나, 정확한 액수 파악은 안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4-2-1. 서독의 연방예산에 의한 지불

1) 통과여객일괄금(Transitpauschale)

○ 1971년 12월 17일자 통과여행협정(Transitabkommen)에 근거하여 1972년 1월 1일부터는 서독지역와 서베를린지역 간 통과시 징수되던 도로사용료, 세금부담조정세(Steuerausgleichsabgaben), 사증비용은 더 이상 개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않게 되었음.

- 연방정부는 이를 위하여 예산에 일괄금을 계상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동독이 지정한 서독은행의 구좌를 이용하여 동베르린 소재 동독의 독일대외무역은행 주식회사(Deutsche Aussenhandelsbank AG inn Berlin)"에게 송금하였음.

- 내독관계성은 동독이 이용하고 있는 서독내 은행의 자유구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공동경제은행(Bank fuer Gemeinwirtschaft)을 통해 일괄금이 송금되는 것으로 추측됨.

  • 왜냐하면 당시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 대표인 Guenter Gauss가 동독 교통성 차관 Horst Schtimpet에게 Helmsfedt와 Berlin 간 고속도로 건설비 지불에 관하여 1975년 12월 19일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서독이 지불할 금액은 매년 통과여객 일괄금과 함께 송금되며, 매년 3월 31일까지 Bank fuer Gemeinwirtschaft in Frankfurt/Main에 개설된 Deutsche Aussenhandelsbank AG in Berlin의 구좌를 이용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임.

- 애당초 통과일괄금은 연간 2억 2,490만 DM으로 확정되었으나, 동독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 1980년 3월 31일부터 4억 DM(1975년 12월 19일 결정). 1980년 3월 31일부터 5억 2,500만 DM(1978년 11월 15일 결정)으로 인상되었는 바,

  • 이 금액은 실제 교통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989년 말까지 지불되었음.

2) 승용차의 도로사용료 일괄금

○ 서독에서 신고된 승용차로 동독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개인이 지불하던 도로사용료를 대치하기 위한 일괄금이 1979년 10월 31일 합의됨.

- 1989년까지 연간 일괄금은 5,000만 DM이며, 서독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동독이 지정한 서독은행의 구좌를 이용하여 베를린 소재 동독의 독일대외무역은행 주식회사"에게 송금하도록 되었음.

3) 통과도로 보수용 지불

○ 1965년 이래 서독정부는 동독의 건축설비 계획 건설비용의 일정부분 부담을 통해 서독과 서베를린 지역 간 통과도로의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음.

○ Hirschberg 부근의 Saale교

- 서독정부는 이 교량의 복구를 위하여 총액 550만 DM을 지불하였는 바, 내독간 지불교류용 청산구좌를 이용하여 지불하였음.

○ Helmstedt-Berlin 간 고속도로

- 1975년 12월 19일자 합의에 따라 서독정부는 총액 2억 5,950만 DM(1976년 2,000만 DM, 1977년, 1978년부터 1979년까지 매년 1,983만 3,300 DM)을 "공동 경제은행에 개설된 독일대외무역은행 주식회사의 구좌"로 송금하였음.
- 1977년 12월 22일 동 프로젝트 보완건설조치로서 273만 DM의 추가금액이 합의되었고, 이 역시 상기 은행을 통해 송금되었음.

○ Berlin-Hamburg 간 고속도로

- 1978년 11월 16일자 합의에 따라 서독정부는 총액 12억 DM을 동독이 지정한 서독은행의 자유구좌를 통해 각각 다음과 같이 분할 지불하였음.
  - 1979년 3월 1일 : 1억 2,000만 DM
  - 1979년 12월 15일 : 2억 7,000만 DM
  - 1980년 6월 30일 : 2억 7,000만 DM
  - 1981년 6월 30일 : 2억 7,000만 DM
  - 1982년(준공시) : 2억 7,000만 DM

○ Wartha-Eisenach 간 고속도로 신설 및 확정

- 1980년 4월 30일자 합의에 따라 서독정부는 총액 2억 6,800만 DM으로 참여하여 "동독이 지정한 서독은행의 구좌를 이용하여 베를린 소재 동독의 독일대외무역은행 주식회사"에 각각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음.

4) 철도교통여행 개선용 지불

○ 서독정부는 서독과 서베를린 왕복 여객운송철도 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독에 지불하였음.

- 1976년도 철도건설대책
  - 서독정부는 애당초 각종 여객운송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5,100만 DM의 비용참여를 할 것이라고 동독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프로젝트 변경으로 인하여 4,460만 DM만이 지불되었음(1976년 2,600만 DM, 1977년 1,860만 DM).
  - 이 금액은 서독내에 있는 동독의 자유구좌에 의해 송금되었음.
- 1980/81년도 철도건설대책
  - 1980년 4월 30일자 교통관계 합의에 따라 서독정부는 총액 8,900만 DM을 지불하였음.
    - » 동독지역 공사에 1,000만 DM이
    - » 서베를린지역 공사에 900만 DM이 지불되었음.
  - 이 금액은 "동독이 지정한 서독은행의 구좌를 이용하여 베를린 소재 동독의 독일 대외무역은행 주식회사"에게 송금되었음.

5) 통과수로 수리·개선용 지불

○ 서독정부는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통과수로의 건설대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불하였음.

- 통과수로의 피해복구 지원

• 1978년 11월 16일자 합의에 따라 서독정부는 “통과교통으로 이용되는 동독내 수로의 대형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건설대책”으로서 총액 1억 2,000만 DM을 서독내에 있는 독일대외무역은행 주식회사의 자유구좌에 지불하였음.

- Teltow 운하 개통을 위한 건설지원

• 1978년 11월 16일자 합의에 따라 Teltow 운하 개통용 건설대책으로서 총액 7,000만 DM이 지불되었음.

• 이 금액은 서베를린의 한 동독의 자유구좌를 통해 “독일대외무역은행 주식회사”에 개설된 동독교통성의 구좌로 지불되었음.

- Mittelland 운하의 확장

• 1980년 4월 30일자 합의에 따라 서독정부는 Mittelland 운하의 확장을 위하여 총액 1억 5,000만 DM을 지불하였음.

• 이 금액은 모두 서독 은행에 있는 동독의 자유구좌를 통해 지불되었음.

6) 서베를린 시민들의 비자비용

○ 1972년 6월 4일부터 서베를린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동독과 동베를린에 체류할 때 비자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되었음.

- 체류허가용 비용은 서베를린 주정부와 동독정부 간에 직접 청산되었는데, 서베를린 주는 이 금액을 연방예산으로부터 충당하였음.

○ 동독과 직접 청산된 서베를린 시민의 비자비용은 일괄금이므로 개인여행 교통량과는 무관한 것임.

- 1972년도 총액 1,206만 DM 중에는 서베를린 주가 1972년 부활절과 오순절을 기해 동독에게 지불한 특별지불액도 포함되었음.
- 1973년도 지불액 중에는 전년도에 지불한 선불 역시 포함되었음.
- 서베를린주가 지불한 금액은 서베를린 한 은행의 동독의 자유구좌를 통해 지불되었음.

7) 연방은행 “구좌 U(Konto U)”의 적자분 충당을 위한 지불

○ 오늘날까지 내독 간 청산교류에는 비상업용 지불교류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사항이 없는데, 단지 1974년까지 각각 2개의 청소년 담당청(Jugedamt)을 통해 양국 간의 미성년자를 위한 생계비(Unterhaltungszahlung)가 청산될 수 있었을 뿐임.

○ 이러한 비현실적 지불관계가 케이스별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1974년 4월 25일자 “생계비 지불 이전에 관한 합의”(Vereinbarung ue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 1974년 6월 1일 효력 발효)에 따라 서독의 독일연방은행과 동독의 국립은행 간의 상계 청산(Clearingsverrechnug)으로 대치됨.

- 그 합의에 따르면 “ 회환송금에 의해 발생된 차액이 매 분기마다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국립은행의 구좌 “S”를 통해 결산되도록 되어 있음.
- 1974년 6월 이래 동독은 매우 적은액수의 생계비만 지불한 반면, 서독측은 많은 액수의 생계비를 지불하였으므로 그 부담이 서독연방은행에 발생하는 바, 1974년 가을부터 독일연방은행 청산구좌 “U”의 결산잔고를 특수구좌 적자분 “S”의 대변에 기장하여 왔으며, 이러한 적자분은 연방예산에 의해 충당되었음.

8) 동독의 석유제품 공급에 대한 보상지불

○ 기존의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EC 규정에 입각하여 1964년 초부터 서독정부가 석유세(Mineraloelsteuer)로 대치함으로써, 내독교역상 내국으로 취급되는 동독에게 막대한 수익손실이 발생하였음.

○ 동독의 석유제품 공급에 비해 이전보다 서독→동독에의 지불액이 적었기 때문에 청산구좌 I의 부채(차변기입)는 증가하였으며, 동독측의 강력한 요구로 결국 서독정부는 1964년도 7,500만 VE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함.

- 이는 1965년 중 내독 지불교류의 일환인 물품반출용 청산구좌를 통해 지불되었음.

○ 1968년 12월 6일자 내독교역에 관한 합의와 함께 서독정부는 1965년과 1966년도 동독측의 수익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지불금으로서 각각 6,000만 DM을 송금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함.

- 이는 1965년 중 내독 지불교류의 일환인 물품반출용 청산구좌를 통해 지불되었음.

○ 1968년 12월 6일자 내독교역에 관한 합의와 함께 서독정부는 1965년과 1966년도 동독측의 수익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지불금으로서 각각 6,000만 DM을 송금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함.

- 이러한 지불은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특별구좌 "S"를 통해 수행되었음.

9)환경보호 대책용 지불

○ 1982년 9월 28일자 환경보호 분야의 대책에 관한 내독 간 합의에 따라 서독정부는 동독의 여러 폐수정화시설에 인산염 감소장치(Phosphateliminier-ungsanlage)를 설치하기 위하여 총액 6,800만 DM으로 참여하여 지불하기로 함.

○ 이 금액은 "동독이 지정한 서독은행의 구좌를 이용하여 독일대외무역은행 주식회사"에게 DM으로 지불됨.

○ 서독정부는 Bayern주와 동독 간 접경지역을 흐르는 하천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1984년부터 1987년까지 매년 450만 DM을 서독내에 있는 동독의 자유구좌에 지불함.

10) 기타 지불

○ 1971년 9월 30일자 합의에 따라 동독 체신청이 1966년 12월 31일까지 우편교류와 전화교류에서 지불한 초과급부제공에 대하여 서독 연방예산에 의한 일괄금 2억 5,000만 DM으로 보상되었음.

- 이 금액은 1971년 말까지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국립은행(세목구좌 3)을 통해 내독 간 청산교류의 일환으로 동독체신성에 지불되었음.

○ 또한 서독정부는 1978년부터 동·서독 접경지역 고지대에 있는 동독도시의 식수제공에 따르는 수질검사, 수자원 시설, 보수정비를 위하여 연간 10만 DM을 지불하였는 바, 이러한 지불은 독일연방은행의 세목구좌 3을 통해 내독교역의 일환으로 상품반출과 급부제공 형식으로 이루어짐.

○ 1979년 중 세목구좌 3을 통해 Itz천 저수지 설치와 관련, 75만 DM의 비용 참여에 대한 지불이 있었음.

○ 연방정부는 상기와 같은 지불 이외의 "인도주의 분야에서 서독의 특별 노력", 즉 정치범 석방 및 이산가족 합류 등에 대하여 동독에게 비밀리에 막대한 외환지불을 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추정해 볼 수밖에 없음.

4-4-2-2. 연방철도청(Bundesbahn)과 연방체신청(Bundespost) 예산에 의한 지불

1) 동·서독 간 우편교류와 전화교류에 있어서 상호 급부제공에 관한 청산

○ 1966년 말부터 동독은 소포교류의 급부제공,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전화케이블 사용, 누적된 비용의 이자분 등을 1948년부터 소급하여 서독의 독일연방체신청에게 11억 DM, 서베를린주에게 7억 DM을 보상지불하라고 수차례 촉구하였음.

- 그러나 지불액수에 관한 논의는 청산기본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웠음.

○ 그래서 독일 연방체신청은 잠정적 자체계산을 근거로 당해 전년도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용역구좌(3)을 통해 동독체신청에게 지불했음.

- 1968년 10월 : 1967년 비용보상용 1,690만 DM
- 1969년 2월 : 1968년 전반기 비용보상용 510만 DM

○ 1970년 4월 29일에야 비로소 "동·서독 간 우편교류와 전화교류에 있어서 상호 급부제공에 관한 산출 및 청산에 관한 합의"가 달성되어 1971년 1월 1일부터 상호 제공한 급부에 대한 일관청산을 하기로 합의함.

- 애당초 연간 일괄금은 3,000만 DM으로 확정되었으며, "독일 연방은행에 개설된 세목구좌 3을 통해 동독체신청"으로 지불되도록 하였음.

○ 1970년 5월에 1967년, 1968년, 1969년을 위한 1회성 일괄금으로서 이미 지불된 금액을 포함하여 22,016,100 DM이 지불되었음.

○ 1977년 10월 19일자 합의에 따라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연간 일괄금은 8,500만 DM으로 인상되었음.

○ 동·서독 해당부처 간의 장기간 회담 후 1990년까지 연방체신청의 연간부담액을 2 DM으로 인상하기로 함.

○ 또한 그 다음 연도를 위한 선물로서 1억 DM을 1983년 중에 송금하기로 합의함.

2) 서독과 서베를린 간 통과 우편교류에 있어서 동독이 제공한 급부에 대한 청산

○ 1976년 6월 30일까지 서독의 독일연방체신청은 “서독과 서베를린 간 우편열차 운용을 위한 연간주행거리대금(Achskilomcterverguetung)으로서 “서베를린의 Berlin Bank에 개설된 동독의 대외무역은행 주식회사의 자유구좌”를 통해 동독체신청에게 정기적인 지불을 해왔음.

○ 1976년 6월 30일에 서명된 행정합의에 따라 이러한 지불은 없어지고, 1976년 7월 1일부터 독일연방체신청은 서독과 서베를린 간 우편교류에 있어서 동독의 우편행정 및 전화행정이 행한 급부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간일괄금 830만 DM을 지급했으며, 1976년에 처음으로 2회에 걸친 분기별 일괄금을 송금하였음.

- 이러한 보상지불은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 국립은행의 구좌 ”S”에 DM으로 수행되었음.
- 1982년 이래 일괄금은 1,120만 DM임.

3) 우편교류와 전화교류에 있어서 동독이 제공한 기타급부에 대한 정산

○ 1976년 3월 30일자 정부 간 협정 제13조 2항에 따라 제3국과의 우편교류 및 전화교류, 서독과 세베를린 간의 전화교류에 대하여 동독의 우편·행정이 제공한 급부가 1976년부터 처음으로 청산되었음.

- 이러한 정산은 CCITT(Civil Communications Intelligence & Telegraphic Transfer?)의 권장에 부응하여 수행되었으며, 지불정산은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특별구좌 “S”를 통해 달성됨

4) 독일연방철도청과 동독제국철도청 간의 잔고상쇄

○ 독일연방철도청은 화물운송, 여객운송, 화물차와 화물운반용 팰리트의 임대료, 열차서비스, 손해보상 등에 대하여 동독제국철도청에게 매년마다 잔고상쇄용 지불을 수행함.

- 1972년 말까지는 서독측이 양측의 급부제공액의 차액을 경화로 지불했으나,
- 1973년부터는 동독제국철도청이 자유스럽게 유통되는 DM이 아니라 연방은행에 개설된 용역을 세목구좌 3을 통해 VE로 상쇄하도록 하였음.

5) 기타 지불

○ 1972년 독일연방체신청은 베를린 전화선 투자비용 참여를 위하여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세목구좌 3을 이용하여 그 예산으로부터 단 1회에 걸쳐 300만 DM을 송금하였음.

- 그 다음해부터 서독과 서베를린 간에 신설된 지향성 무선장치(Richtfunk-strecke)와 관련된 기술적 초과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단 1회의 지불로서 총액 170만 DM을 독일연방체신청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용역구좌를 통해 VE로 분할 지불되었음.

4-4-2-3. 서베를린 주정부 예산과 서베를린 기업체에 의한 지불

1) 서베를린의 건설현장 찌꺼기, 흙더미, 쓰레기 등의 인수에 대한 지불

○ 1972년 10월 27일부로 1974년 말까지 동독에 의한 서베를린 쓰레기 인수에 관한 단기계약이 한시적으로 처음 체결됨.

○ 1974년 12월 11일 이 규정은 동베를린의 대외무역 기업체와 서베를린의 기업 상담 기업체 간에 동독에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장기계약(1994년 12월 31일까지)으로 변경됨.

- 서베를린 주정부와 동독은 막대한 재정적 파급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계약에 명기된 계약당사자 간의 의무수행사항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상호 보장하였음.
- 지불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건설현장 찌꺼기, 흙더미, 도시의 고체 폐기물 등의 인수
  - 서베를린 도시청소 폐기물의 인수와 처리

○ 이러한 지불은 내독 간 지불교류의 일환으로 용역구좌를 통해 수행됨

2) 서베를린의 폐수통과 및 처리에 대한 지불

○ 1968년 처음으로 서베를린 폐수의 통과와 처리 및 이에 대한 재정보상에 관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관계기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짐.

ㅇ 1974년 말부터 이 합의사항은 서베를린 주정부와 동독의 건설성에 의해 5년 간 연장되었음(1980년부터 매년마다 자동적으로 연장됨).

- 폐수처리에 관한 잔고청산은 서베를린 폐수처리공단(Entwaesserungswerke)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특별구좌 "S"를 통해 지불이 수행됨.

3) 지하철 사용료 지불

ㅇ 1968년부터 서베를린주의 자체운영기업인 베를린교통공단(BVG)은 동베를린을 통과하는 지하철의 사용료, 유지비, 운영비 조로 동독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음.

ㅇ 그러나 이러한 청산은 자유구좌가 아니라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국립은행의 용역용 세목구좌 3을 통해 수행됨.

4) 서베를린 가스주식회사의 운송비 지불

ㅇ 동독의 독일제국철도청은 서베를린 가스주식회사(Gasag)를 위해 연료를 운송하였는데 내독 간 청산교류의 일환이 아닌 특별정산으로 처리되었음.

- 운송비용은 서베를린의 Berliner Bank에 개설된 동독의 구좌에 DM으로 지불됨.

5)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독과의 결산

ㅇ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서베를린 주정부는 서베를린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비용, 보건서비스 비용, 환자운송 비용을 동독과 정산한 후 중간 결산하였음.

- 이러한 비용은 서베를린에 개설된 동독의 자유구좌를 통해 태환성 DM으로 지불된 것으로 추측됨.

6) 베를린내 지역교환(Gebietaustausch)과 연계된 지불

ㅇ 1971년 12월 20일 서베를린 주정부와 동독정부 간에 "지역교환을 통한 타국영토로 둘러싸인 지역문제 조정에 관한 합의"(Vereinbarung ueber die Regeling der Frage von Enklaven durch Gebietsaustausch)가 이루어짐.

- 이합의에 따라 17.1 ha가 서베를린으로, 15.6 ha가 동베를린으로 교환됨.

- 합의내용 중 "교환대상 지역의 면적과 가격에 관한 완전한 기준설정과 합의가 없으므로 서베를린 주정부는 동독정부에게 가격보상 조로 일금 400만 DM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음.
  - 1971년 7월 또는 8월 중에 지불이 수행되었으며, 1972년 6월 3일 지역교환이 완료되었음.

ㅇ 1972년 7월 21일 서베를린 주정부와 동독정부 간에 "지역교환을 통한 타국영토로 둘러싸인 지역문제 조정에 관한 1971년 12월 20일자 합의에 대한 구 포츠담역 인근지역의 편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

- 그러나 서베를린측은 지역교환용 대상지역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구 포츠담역 인근지역의 양도에 대하여 구매형식을 취했음.
- 서베를린 정부는 합의달성 후 10일 이내에 "가격보상조로 총액 3,100만 DM"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따라서 지역교환과 연계하여 1972년 중에 총액 3,500만 DM이 동독으로 지불되었는데, 서베를린 은행에 개설된 동독의 자유구좌를 통해 DM으로 수행됨.

7) 교외선(S-Bahn)

ㅇ 1983년 12월 3일 동독의 독일제국철도청과 서베를린 주정부 간에 체결된 서베를린 외곽 교외선(S-Vahn-Strecken)의 무상인수에 관한 합의에 따라 동독의 독일제국철도청은 1984년부터 노선의 사용, 운영유지 등에 관한 대금을 지불받음.

- 이러한 대금은 주로 자유스럽게 유통되는 DM으로 지불되었으며, 경미한 일부만이 내독 간 청산구좌를 통해 대금 처리됨.

ㅇ 1984년 중에 이와 무관하게 교통박물관 유지비 조로 300만 DM이 일회성으로 지불됨.

8) 기타 지불

ㅇ 동독정부는 폐기물의 장기적 인수 및 처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1,000만 DM(그 중 800만 DM은 주정부 예산)을 받음.

- 연방정부는 이를 1972년 중에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1973년에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국립은행의 용역용 구좌 3을 통해 지불되었음.

4-4-2-4. 동독의 대서독 지불

○ 해당 화폐의 용도에 따른 동독→서독 간 지불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었음.

- 내독 간 지불교류의 일환으로서의 VE지불(세목구좌1, 2, 3).
-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현금지불용 "특별구좌 S"를 통한 태환성 DM의 지불.
- "구좌 T"를 통한 지불.
- 서독(서베를린 포함)내 은행 자유구좌를 통한 태환성 DM의 지불.

○ 그러나 "특별구좌 S", "구좌 T", 자유구좌를 통한 태환성 DM의 지불만이 동독측으로 볼 때 외환보유고를 경감시키는 것인 반면, 독일연방은행에서 운용되는 세목구좌를 통한 청산지불은 단지 동독측으로 볼 때 외화의 유출 없이 Swing 청구권만 높여주는, 따라서 동독에 대한 서독측의 반출 청구권만 높여주는 것이었음.

○ 따라서 동독의 청산지불은 동독의 경화수입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연방은행과 동독국립은행을 통해 수행되었음.

1) 특수구좌 "S"(Sonderkonto "S")를 통한 지불

○ 1958년 이래 동독에게는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현금지불용 구좌(특수구좌 S)를 통해 상품할당량 및 Swing 청구권 최대한도 사용에 관계없이 태환성 DM을 지불함으로써, 서독으로부터 긴급히 상품과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었음.

○ 특수구좌 S는 서독내 자유구좌를 통한 동독의 송금으로 충당되기로 하였으며, 협정이나 합의에 따라 특수구좌 S를 통해, 서독측에 대한 지불거래에 이용되기도 하였음.

○ 60년대까지 특수구좌 S의 거래액은 경미했으나, 70년대부터 동독은 고액의 Swing 청구권 사용이 계속됨에 따라 현금지불을 통한 구매 가능성을 점점 더 증가시켰음.

○ 1975년과 1976년 들어 동독은 동독의 상품공급과 용역수출을 통해 Swing을 청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3,000만 DM(1975년)과 1억 4,400만 DM(1976년)의 태환성 DM을 특수구좌 S에 불입하면서 Swing 허용선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음.

2) 청산구좌 "T"를 통한 지불

○ 1974년 4월 25일 동·서독 재무장관 간에 "특정사안에 있어서 예금잔고를 통한 재정이전에 관한 합의"(Vereinbarung ue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Gaellen)가 달성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서독 주민들 간에 상대편 지역으로 이주한 연금수령자, 사회부조금 수령자, 양친이 없는 미성년 고아에게 동독(또는 서독)에 있는 폐쇄구좌를 통해 매월 200 DM 한도 내에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음.

- 송금은 기존 청산경로를 통하되,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송금액이 다른 국가의 송금액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그래서 구좌운영 기관인 독일연방은행과 동독국립은행은 기술적으로 단순히 차액보전을 위한 단기 신용대부(Uberbrueckungskredit : 일종의 추가적 Swing)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연간 최고 지불액의 1%를 1974년 6월에 개설된 청산구좌 "T"에 불입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동독→서독 지불위임이 서독→동독 지불위임보다 훨씬 많았으므로 극심한 지불연체와 대기현상이 나타남.

- 이에 독일연방은행은 지불초과를 근거로 1976년 5월 1일부터 1978년 11월 2일까지 서독인과 서베를린인에 의한 송금위임 접수신청을 받지 않았음.

○ 1978년 11월 16일에야 동독정부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연간 5,000만 DM을 1974년 4월 25일자 은행 간 합의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청산구좌에 불입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함.

- 동독의 최초 불입금은 1979년 2/4분기 초에 수행됨.
- 동독은 막대한 태환성 DM을 불입금으로 마련해야 하였기 때문에 애로에 봉착했는데, 서독과 "package deal" 형식으로 협상을 벌여 도로 건설을 위한 서독측의 대동독 경화지불과 통과일괄금 인상을 조건으로 1978년 11월 16일자 은행 간 합의가 달성된 것으로 추측됨.

○ 1982년 6월 18일자 의정서에 따라 동독은 연간 불입금을 6,000만 DM으로 인상함.

3) 서독과 서베를린내 은행 자유구좌를 통한 지불

○ 서독내에 있는 은행의 자유구좌를 통해 동독이 어떤 지불을 한다는 동·서독 기관 간의 합의는 전혀 없었음.

- 이 자유구좌를 통한 주요 지불내역을 보면 동독은 서독 주재 동독상주대표부 활동비 지원을 위한 송금을 서독과는 반대로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세목구좌 3을 통하지 않고, 연간 최소 200만 DM으로 추측되는 대금지불을 자유구좌에의 입금을 통해 수행했는데, 이는 기밀유지상의 근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그러나 서독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의 규모로 볼 때 사실상 지불된 활동비는 이보다 훨씬 상회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동독은 기밀유지 이유 때문에 정기적인 경화지불을 통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했음.

○ 나아가 동독정부와 동독공산당은 이미 50년대부터 서독공산당(KPD, DKP)와 그 하부조직을 지원했는 바, 서독의 정보기관은 1977년도에만 자유구좌만을 이용한 대금지불이 약 5,000만 DM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동독은 서독이나 서베를린의 자유구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대부분을 프랑크푸르트 외환시장을 통한 외환구입, 기타 서유럽으로부터의 DM 현금 구입, 이자가 높은 자산투자에 활용하였음.

- 이러한 추측은 동독의 대외경제 책임기관이 국제외환시장의 추세를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특히 DM과 스위스 프랑과 같은 "경화"로 동독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틀림없다고 할 수 있음.

4-5. 내독 간 자본거래

4-5-1. 자본거래의 유형

○ 내독 간 차관제공을 통한 자본거래는 3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졌음.

- 양독 간 채무청산용 차관인 "Swing"
- 내독무역 범주내에서의 거래시 상업 대부
- 서독측 은행에 의한 재정차관

○ "Swing"은 양국 간 채무청산구좌에 지불연체현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관의 한도액(Kreditlimit)을 뜻함.

-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쌍방이 필요한 경우, Swing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기적 지불균형을 이룩하기 위하여 비교적 빠듯하게 한도가 책정된 것인데 사용에 따른 이자는 지불하지 않음.
- 1960년부터 1968년까지 Swing 최고액은 2억 VE로 불변상태였으며,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무역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2억 VE로부터 7억 5,000만 VE로 인상되었다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8억 5,000만 VE로 "동결되었음".
-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다시 6억 VE로 삭감되었다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8억 5,000만 VE로 차관의 최고액을 다시 인상할 것에 합의하였음.
- Swing은 그 초기부터 동독측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지 서독측은 전연 사용치 않았다는 점이 특징임.
  - 다르게 표현하자면 동독은 내독 간 지불교류의 처리를 위한 특별제도인 Swing이 설치된 이래, 서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채무불이행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서독에게 더 많이 반출하기보다는 서독으로부터 더 많은 상품을 항상 반입했다고 하겠음.
- Swing의 이용으로부터 동독이 얻은 장점은 분명 있었으나, 이 장점이 일반인들에게 특히 외국에서 매우 과대평가되어 알려져 있음.
  - 첫째, 동독이 실제로 사용한 Swing은 허용 최고한계보다 훨씬 낮은

것이었고, 국제수지상 위급했던 수년 간에만 이러한 차관을 한도액까지 완전하게 사용하였을 뿐임.

» 예컨대 1985년 동독은 1억 7,200만 VE의 Swing만을 사용하였음.

• 둘째, 동독에게 장점은 단지 Swing 차관이 무이자라는 점이었는데, 동독대외무역기관은 사실상 내독 간 Swing을 통해 채무청산용 차관액에 대한 유럽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이자를 절약하였음(1985년도 시장기준 이자는 계산상 약 1,300만 DM에 달했음).

○ 동독기업체는 "베를린 협정"의 일환인 거래에 대하여 서독이나 서베를린에 있는 공급체나 은행으로부터 상업용 대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그 반대로 서독의 구매자도 동독의 신용대부를 이용할 수 있었음.

- 과거에 서독측의 관할 허가기관으로서의 독일연방은행은 이러한 상품공급용 신용대부와 조건부 재정차관을 제외한 서독은행의 대동독 조건 없는 재정차관제공을 단호하게 거절했었음.
- 이러한 이유로 서독에 대한 동독의 부채는 통독 진적까지 그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었음.
- 1980년 초부터 유럽 금융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조건 없는 재정차관의 무제한 제공과 같은 내독 간 경제교류에서는 전형적인 현상이 아님.
- 1985년 말 현재 서독은행과 공급체에 대한 동독의 부채는 약 45억 VE(총액)인데, 이는 주로 동독의 단기 물품공급과 관련된 신용대부임.

○ 독일연방은행은 동독에 대한 서독은행의 무조건부 재정차관제공을 항상 허용치 않았지만, 70년대부터 특히 서독의 대형은행들은 동독에게 중기적 유럽차관(Eurokredit)을 제공하기 시작했음.

- 이들은 Luxemburg, London, Paris에 있는 외국지점을 통해 재원을 유럽 금융시장에 마련해 놓고 국제은행 컨소시엄을 이용하여 동독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유럽차관업무를 수행했음.
-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며 대외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동독에 두 번에 걸쳐 대형차관(소위 "Jumbos")을 제공한, 1983년과 1984년에야 비로소 장기간에 걸친 이와 같은 실무거래 행위가 준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음.

- 그러나 연방정부 자체가 중개한 이러한 차관 역시 Luxemburg에 있는 서독은행의 지점을 통해서만 제공되었는데, 어쨌든 통독 직전까지 서독연방은행과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한 서독은행의 조건 없는 재정차관제공은 허가하지 않는 실무적인 원칙을 고수하였음.

4-5-2. '83, '84 대규모 대동독 은행차관의 정치·경제적 의미

4-5-2-1. '83, '84 서독정부 주선으로 제공한 은행차관의 내역

○ 동독정부는 동·서독 비밀협상의 주역이었던 대외무역성 차관이자 외환확보 회사 KOKO의 총책인 Schalck Golodkowski를 당시 기사당(CSU) 당수인 Franz Josef Strauss와 접촉케하여 동독정부가 서방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는데 서독정부가 주선하고, 보증을 서줄 것을 요청하였음.

- 당시 Strauss는 차관도입과 관련한 사전 접촉에서 동독측에게 협상개시 조건으로 동·서독 간 국경에서 여행규제 완화와 총격사살 행위 금지를 요구했으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동독측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경에서 여행수속절차가 대폭 완화되고 총격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 차관 제공 주선과 서독 정부 보증문제를 논의하는 본격 회담에는 서독측에서는 Strauss가 아닌, 공식적으로 독일정책 추진 주무부처인 수상실의 장관 Jenniger가 참여했음.
- 당시 서독수상 Kohl은 바이에른주의 한 은행이 대동독 차관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 콘소시움(Bankenkonsortium)을 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Strauss의 주선으로 바이에른 주립은행(Bayerische Landesbank) 총재인 Ludwig Huber가 은행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대동독 차관 제공의 주역을 맡음.
- 이러한 형태의 대규모 차관은 '83년에 10억 DM, '84년에 9억 5천만 DM이 제공되었는데, 동독의 대외무역 은행(Deutschem Aussengandelsbank AG)과 서독은행의 외국 자회사가 주축이 된 은행 콘소시움이 차관제공 계약을 맺었음.

’83, ’84 대동독 차관의 내용

계약일	동독측은행	서독측은행	차관액	Libor 금리	상환 기관
’83. 7	Deutsche Aussen-handelsbank AG	Bayerische Landesbank International SA(바이에른 주립은행의 외국 자회사)의 주도하에 서독 6개 은행 참여	5억 DM	1%	5년
’83. 7	Deutsche Aussen-handelsbank AG	Bayeriche Landesbank Internationa SA와 Deutche Bank Compagnie Finansiere Luxembourg(도이치방크의 외국 자회사)의 주도하에 17개 서독은행의 외국 자회사 참여	5억 DM	1%	5년
’84. 7	Deutsche Aussen-handelsbank AG	Deutche Bank Compagnie Finansiere Luxembourg 주도하에 25개 서독은행 및 그 외국 자회사 참여	9억 5천만 DM	1%	5년

- 이 차관제공으로 인한 서독정부의 예산부담은 전혀 없었으며, 다만 외국은행들이 1980년대 들어서 동독의 채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 동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서독 정부의 주선으로 서독의 은행들이 주축이 되어 차관을 제공한 것임.
- 이 차관제공으로 인한 독일 자본시장에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내 서독은행의 외국 자회사들이 참여하여 유럽자본시장에서 차관의 재원이 조성되었음.
- 금리도 보통 유럽자본시장 금리가 적용되었고, 이자에 대한 서독정부의 지원은 한푼도 없었음.

4-5-2-2. 차관 공여 당시의 동독의 대 내·외 경제상황

○ 동독은 70년대부터 서방 OECD 국가와의 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기존 서독과의 내독교역 청산단위인 VE를 사용한 신용거래인 Swing 이외에 무역결제용 경화를 사용한 신용대부 거래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음.

- 동독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경제가 수출의존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대 서방국가 무역량이 COMECON 국가에 대한 무역량보다 점점 커져갔음.
  - 70년대 평균 동독의 OECD 국가와의 무역량은 전체 무역량 중 19%였으며, 대 서독 무역량 비중은 12%로 대 서방국가 무역량 비중은 30%가 넘었음.
  - 1985년에는 총수입액 중 COMECON 국가가 49.3%, 서방국가(서독 포함)가 40%를 차지했으나, 1989년에는 오히려 COMECON 국가 비중의 39.4%로 떨어지고, 대 서방국가 비중이 53.1%로 늘어났으며, 수출액으로 보면 1980년 후반 평균 COMECON 국가는 43%, 서방국가의 비중은 46%였음.
- 동독 외환관리정책의 원칙은 수출이나 차관도입으로 획득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화는 서독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음.
  - 동독측은 서독측의 은행들이 외국의 자회사를 통해 동독측에게 신용대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대부를 통해 그때까지만해도 조건이 없이 확보한 경화를 다른 서방국가와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동독의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은행자산 보유고를 높이는데 사용하였지, 서독측의 물건을 구매하여 서독측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음.
- 동독은 그러나 채무를 기일 내에 상환하고, 동독의 경제가 호황을 누려 동독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야만 이러한 외환정책을 계속 견지할 수 있었음.
- 동독은 70년대 말까지 비교적 대외신용도를 유지하면서, 동독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목표(기술이전, 양질의 제품생산 등)와 정치적인 목표(서독에 대한 의존도 탈피)를 관철시키는 방향에서 자신의 외환정책을 견지할 수 있었음.
  - 1970년대 말까지 동독이 들여온 은행을 통한 상업차관은, 대부분 그 사용면에서 보면 조건이 없는 차관이었음.
  - 동독측이 화학과 철강분야에서 그들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설비투자를 할 때 들여온 조건부 차관(서독,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은행들로부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관이 조건이 없었음.

- 동독은 들여온 차관을 투자재 구입과 수출산업의 건설에 사용했지만, 1970년대 말부터 80년 초에 걸쳐서는 동독의 작황부진에 따른 서방으로부터 농산물(곡물과 가축사료) 수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했음.

○ 동독은 1980년부터 수출부진과 국제 금융시장의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대서방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누적된 대외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경화를 차관으로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었음.

1980년대 대외채무 현황(경화로 표시된)

단위 : 10억 US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외국은행에 대한 채무 외국수출업자에 대한 채무	9.9 1.6	10.7 1.6	9.1 1.6	8.6 1.6	8.5 1.7	10.4 1.6
총 채 무	11.5	12.3	10.7	10.2	10.3	12.0
외국은행에 대한 채권	−2.2	−2.2	−2.0	−3.4	−4.5	−6.5
순 채 무	9.3	10.1	8.7	6.8	5.8	5.5
내독교역에 따른 누적 채무(a) (DM/VE로 표시)	2.1 (3.9)	1.6 (3.7)	1.6 (3.8)	1.6 (4.1)	1.1 (3.1)	1.2 (3.5)
내독교역까지 고려한 동독 대외 순채무	11.4	11.7	10.3	8.4	6.9	6.7

* 자료참고 : Peter Ploetz/Klaus Bolz, Westhandel der DDR(HWWA 연구소 1987 보고서) P.269

* (a) : 물품, 용역거래, 현금지불(구좌 S를 통한)을 총망라한 액수이며, 환율은 1 US $=1.82 DM(1980), 2.26 DM(1981), 2.43 DM(1982), 2.55 DM(1983), 2.85 DM(1984), 2.94 DM(1985)임.

• 서독은행으로부터 1983년 10억 DM 차관(서독정부 보증)을 제공받기 직전인 1981년에 구동독의 대외 순채무가 최고치인 101억 $에 달했음을 알 수 있음.

- 아울러 1979년부터 미국측이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펴게 되자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이 1976년 연평균 5.6%이던 것이, 1980년에는 17%로 상승되었는데, 동독측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이자율 상승으로 이해, 수출로 인해 획득한 수익의 대부분을 대외 부채 이자를 상환하는데 지출해야만 했음.

동독 대외채무 이자에 대한 대서방 수출 순이익

년 도	대서방 수출 순이익 : A (백만 DM)	이자액 : B (백만 DM)	B/A (%)
1977	2751	975	37.9
1978	3020	1336	44.2
1979	2694	1889	63.7
1980	3762	2581	68.6
1981	4866	4294	88.2

* 내독무역을 제외한 대서방 수출 순이익과 대서방 채무 이자액만을 계산한 것임.

• 1981년에는 대서방 수출 순이익에서 채무 상환용 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8.2%에 이름

- 또한 1980년대 들어서는 각국 은행은 동독으로 하여금 대형투자 설비를 구입하는 조건으로만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부(gebundene) 차관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해, 자국의 수출산업보호와 차관제공의 연계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동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차관을 얻기가 힘들어졌음.

- 1980년대 초반부터 동독은 외환결제 불능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외환 확보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입을 줄이는 정책을 폈으나, 상환만기일이 도래한 채무가 점점 늘어나 동독 대외채무의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순채무의 비율 중 이자율 상환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외국의 은행들은 동독에 대해 더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기를 꺼리게 되었음.

• 당시 동독의 대 서방 채무는 액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채무의

구조가 악화된데 있었는데 1981년 기준으로 총 채무의 40% 이상이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 정부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서독뿐이었음.

4-5-2-3. 차관제공에 대한 동·서독의 입장과 내독관계에 미친 영향

○ 동독측의 입장

- 구동독 경제는 80년대에 들어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시련에 봉착해 있었음.
  - 국제 원자재·원유 값의 폭등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무역의존형 국가로서 동독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수출산업이 서방시장에서 그 시장점유율을 잃어감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방의 현대적인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고, 이는 또한 역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음.
  - 서방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따른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COMECON 국가 특히 소련으로부터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특히 동독경제 자력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음.
  - 그러나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 동독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동독의 대 서방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서방은행들이 동독에게 차관제공을 보이코트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해야만 서독과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회적 동요 없이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동독지도부는 체제 안정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음.
- 동독지도부는 서독정부가 내독교역을 독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독경제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진 가운데 이러한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독정부에 비밀협상 통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대 서독 차관요청을 둘러싸고 차관공여에 내포된 경제적인 필요성과 정치적인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벌어졌음.
  - 동독정부가 처음 서독에 40억 DM의 차관요청을 한 것은 1982년 여름이었으며, 그 후 서독 집권당이 사민당/자민당(슈미트수상)에서 기민당/자민당(콜 수상)으로 바뀐 다음인 1982년 10월부터는 새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였음.
  - 당시 동베를린 지구 공산당 서기장이자 정치국원이었으며, 동독지도부의 차관도입 요청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Konrad Naumann은 동독이 당시 처한 상황이 "사회주의를 독자적인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건설해야 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마샬플랜에 정치적으로 굴복하느냐"의 기로에 섰던 전후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하고, 동독의 정치적인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일시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노동자-농민이 더 열심히 일을 해 사회주의를 수호하자고 역설했음.
  - 그러나 Honecker를 중심으로 한 동독지도부는 동독체제가 단순한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데올리기의 강조에 의해 유지될 수 없으며, 경제능력에 의해서만 결국 지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은행들로부터의 차관도입을 계속 추진했음.
  - 동독지도부는 은행을 통한 차관제공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동독정부로서도 형식상은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또한 서독정부가 차관도입 주선을 통해 동독에게 도움을 주면서 명시적으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동독정부는 성의를 보이기 위해 내독 간 국경에서 검사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양국관계의 그간 형성된 상호 이익구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정치관계가 상업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였음.

○ 서독측의 입장

- 당시 국제정치적인 상황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유럽에 미·소 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되는 등, 1970년대 화해분위기에 이은 양 진영 간 신냉전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음.

- 서독정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NATO의 '이중결정'(Doppelbeschluss: 한편으로는 바르샤바측과 협상을 계속하되, 한편으로는 서유럽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유럽에도 배치하기로 한 핵군비 증강 결정임)을 따르기로 하면서도,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추진 이후 형성된 동독과의 화해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음.
- 아울러 서독측은 서독의 대 동독 화해정책과 내독 간 교류·협력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걷혀지기 시작한 '철의장막'이 내독 간에 다시 드리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다시금 미·소 초강대국의 안보이해 때문에 동·서독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하여 동·서독의 국제·외교적인 활동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

– 이러한 가운데 동독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체제의 위기로 동독 지도부내에서 온건주의자와 협상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다시금 소련의 노선에 편승해 서독으로부터 안보위협을 과장하는 체제안보론자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신냉전의 영향을 동·서독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음.

– 서독측 협상창구였던 기사당 당수 Strauss는 당시 동독 경제의 붕괴가 국제정치적으로 미·소 간 유럽내 중거리 핵배치와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하게 하여 독일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였음.

- 당시 서독 정부는 이러한 고려에서 동독을 궁지에 몰아넣기 보다는 미·소의 군사적 경쟁관계에서 동·서독 양 국가가 긴장된 영향권내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행동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며, 동독 주민들에게 동독 경제의 회생을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동독에 대한 차관공여 주선이라는 실용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 당시 내독 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기사당 당수 Strauss가 이 차관을 주선하기 위한 협상을 처음 수용했던 것으로 알 수 있음.

– 서독 정부는 또한 기민당/자민당 연립정부 구성 이후 정권이 바뀐 뒤로도 과거 브란트 집권 이전의 기민당/기사당과는 달리 대 동독 관계에서는 그간 사민당/자민당이 추진해 온 협상과 협정을 통한 '작은 걸음 정책'의 실용적인 기조를 유지하여, 주민들의 분단고통완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장차 민족적인 통일에 대비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독 정부에게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명확한 정책의지 표명을 할 필요가 있었음.

- 그러나 동독에 대한 지원은 늘 조건적인 것으로써, 서독측의 요구조건인 인적·통신교류의 확대 및 내독 간 국경에서의 수속절차 완화, 그리고 아직 동·서독 간 체결이 안 된 분야(환경, 문화, 교육 등)의 회담 재개들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음.

○ 서독은행의 대 동독 차관은 조건이 유럽 금융시장에서의 통상금리와 5년 상환조건으로 제공되었으므로 동독측에게 특혜 융자는 아니었지만 동독 경제상황 개선 및 내독관계의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동독측은 상환기일이 도래한 구채무를 일시에 변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외채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고, 대외신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 주민들의 생필품 확보에 필요한 대 서방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었음.

– 그러나 제공된 차관이 설비투자분야에 투입되지 않고, 결국 기존 부채의 상환에 사용됨으로써, 동독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차관제공에도 불구하고 없었음.

- 동독경제회생은 중앙계획 경제체제의 모순이 극복되어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음.

– 내독관계는 이러한 차관제공 이후 동독체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할 때(1987)까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내독 간 인적·물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음.

- 특히 미·소 간의 관계악화에 따른 소련의 반대로 Honecker의 서독 방문이 연기되는 등 국제정치적인 장애요인과 동독체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동독 정부의 체제단속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독 간의 관계는 상호이해와 이익구조형성의 바탕 위에서 더욱 심화되어 갔음.

4-6. EC와 내독 교역

4-6-1. 내독무역에 관한 의정서

○ '57. 3 Roma에서 서명된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협정(서명국 : 벨지움,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는 부속문서로서 "내독무역 및 그와 관련된 제 문서에 관한 의정서"가 첨부되었음.

- 기본법의 적용범위인 서독과 기본법 적용 제외지역인 동독 간의 무역은 내독 간 무역으로써 EEC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는 결코 기존 무역체제의 변경을 요하지 않음(1항).
- EEC의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에게 서독의 기본법 적용 제외지역인 동독과의 무역교류에 관련되는 합의사항(Abkommen) 및 그 시행상 필요한 제규정을 보고해야 하며 공동시장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말 것과 다른 회원국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항)
- 각 회원국은 대동독 무역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3항).

○ 제 1항에 따른 무역정책의 결과

- 관세동맹(Zollunion)으로서의 ECC의 9개 회원국에게는 대동독 관계에 있어서 국경이 개방된 상태였으므로 상당기간 동안 서독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역내 시장교란 때문에 부담스러운 존재였음.
- 공동체의 관세장벽에 뚫려 있는 "통제불능의 구멍"(동독과 서독의 특수관계를 지칭)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대동독 무역관계는 타격을 받게 되었음.

○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피하고자 회원국 상호 간의 보고의무를 못 박았으며 대동독 무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경제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될 것과 공동시장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함.

○ 제3항은 보호조항으로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대동독 무역으로부터 곤경을 받게 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됨.

○ 본 의정서는 사실상 서독이 추구했던 2중정책의 산물이었음.

- 서독이 서구편입의 일환으로 유럽공동시장에 편입됨과 동시에,
- 기본법정신(재통일 의무조항)에 따라 동독이 COMECON 역내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으려 함.

○ 이와 같은 독일 특유의 상황 근거라는 사실에 대하여 기타 EEC 회원국들도 승인하였으나 이해당사국 간의 이권충돌로 인항 내독무역의 잠재적 불안정은 늘 상존했음.

- 서독정부는 항상 동독으로부터의 구입품을 서독의 실제수요에 맞추어야 했으며, 동독산 제품이 다른 역내시장으로 유입되어서는 안되었음.
- 동독산 농산물이 주쟁점이었는데, 동독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EEC 농업기금의 결손 때문이었음.
  - EEC의 농업시장 규정상 수출지원금은 제3국에 대한 수출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독을 제3국으로서 간주할 것인가, 아닌가 문제가 대두됨.
  - '66. 5. 11 장기간에 걸친 회담결과 EEC 각료이사회는 농산물 재정지원에 관한 기본 원칙적 결정을 하였는 바, 동독은 제3국이 아니며 67. 6. 30까지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대동독 수출은 예외적으로 EEC 농업기금으로부터 수출지원금을 받으나 '67. 7. 1부터 가격 지원은 각국의 예산으로 지불되도록 함.
  - Strassbourg의 유럽의회에서 개최된 최종회의에서 EEC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Marjolin은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회 회원국 모두에게 공동관심사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함께 소련점령지역은 제3국이 아니므로 대동독 수출은 더 이상 공동기금의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 결정사항을 보고함.
- EEC 농산물 시장규정 및 동독에 대한 특수지위라는 사실을 이용함으로써 수행된 비합법적 무역활동과 재수출 문제는 기존규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불신과 비판을 불러일으킴.
  - '67. 11 독일연방 농림수산성은 EEC 농업 특수위원회의 대대적인 비난을 받았는 바 5,000톤의 동독산 버터를 이탈리아로 수출하면서 "EEC

생산품"이라고 하며 진짜 EEC 버터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기 때문임.

○ 70년대 들어 관계 정상화를 통해 동·서독 간 내독무역이 증가하고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동독국가의 실체인정 쪽으로 선회하자 동독의 특수상태에 관한 논의가 재론되기 시작함.

- 70년 초 EEC 집행위원회는 "내독무역 및 그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의정서"와 연계된 무역정책적 함축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는 바, 특히 EC의 대동구권에 대한 무역정책과 관계가 있었음.
- 동독의 대EC 특수관계로부터 누리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68년도 Berlin공대(TU) 부설 농업정책 및 농업통계 연구소는 4억 DM으로, 69년도 독일경제연구소(DIW)는 5억 DM으로 추산한 바 있음.
- 서독의 대소 및 대동독 경제관계는 EEC의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임.
  - 서독산 공업기계의 대소공급을 통해 EEC 6개 회원국의 경쟁상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Werner Plan(70년에 룩셈부르크 총리였던 Werner가 EEC의 경제통합 및 통화통합의 단계적 실현을 주장하였던 계획)으로 계획된 경제통합 및 통화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임.
  - 서독은 대 EEC 의무조항 이행을 역설하고 있지만 내독 간 교역을 이용, 우회하여 동구와의 관계를 갖을 가능성이 허다하다는 비난이 제기되었음.
- 내독무역에 대한 특수규정은 공동체의 대동구권에 대한 감독 불가능한 구멍을 뜻하므로 독일내 유럽주의자들조차 이와 같은 특수규정을 못마땅하게 봄.
  - 서독은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대동독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나 동독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감독상태가 전무하다고 주장했음.
- EEC의 준회원국이라할 동독이 갑자기 제3국이 되어 공동체의 비용으로 내독무역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함.
  - EEC 자체는 초과설탕생산 때문에 고전하고 있으나 Cuba로부터 설탕을 수입하는 동독이 막대한 양의 설탕을 서독으로 수출하고 Denmark산 돼지고기와 Swiss산 치즈도 동독을 거쳐 서독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비난함.
- 따라서 EEC 집행위원회는 공동보조를 맞추어 EC 노선과 일치하지 않는 각국의 단독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려고 하였음.

○ 동독의 대EC 특수관계에 대한 논란은 국제적 긴장완화와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인해 동독의 국가성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자 정치적인 측면에서 계속됨.

- '57 의정서에 의한 동독의 EC 준회원국 상태는 동독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광범위한 국제법적 승인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제3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독의 대EC 특수지위 페지 주장의 초점이었음.
- 이에 대해 서독의 공식입장은 기본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양독 간의 관계는 민족내부적인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57 의정서에서 확정된 출발 전제조건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
  - 사실상 국가성이 공식적으로 인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양 국가는 '57 당시부터 이미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여 왔기 때문에 여전히 "특수관계"는 변함없으며 또한 '57 의정서의 해석도 그에 따라야 한다고 함.
  - EC 가맹국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여·야 정치인들은 내독무역을 분단독일의 내적문제로 간주하여, 내독 간 재화교류의 증가(이에 따른 인적교류 증가)가 경제적 결속을 강화시켜 결국은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통일정책적 고려를 앞세웠던 것임.

○ 그러나 한편 내독무역의 통일정책적 관점에서 통합을 촉진하던 기능과 아울러 역기능적 측면이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 내독무역은 그 교류되는 재화구조로 볼 때 동독의 동구에 대한 무역상의 의무수행을 위한 측면이 있었음.
  - 동독의 대외무역의 70%는 COMECON 대상이었는데 그 중 40% 이상이 대소련 무역이었음.
  - 동독은 동구권 국가에 대한 필요한 재화공급 의무수행을 위해 서독과의 내독무역을 지속시켜야 했음.

- 따라서 내독무역을 통해 동·서독 간의 통합이 촉진되는 측면이 있었는가 하면, 동독으로 하여금 COMECON과 소련에 대한 의존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작용도 하였음을 알 수 있음.

4-6-2. 내독무역의 존속결과로서의 EC 시장교란

○ 내독무역의 존립으로 EEC의 일부 회원국은 국내시장의 곤경을 겪게 된다는 비난을 서독에게 했으나, 서독이 단호하게 내독무역 체제의 존립을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기본조약으로 상황이 변하였어도 시장교란 가능성의 문제점은 상존하였음.

- 기본조약에도 불구, 서독은 내독무역 "체제"(system)를 아무런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체제의 내용은
  - 특수한 국내무역 규정으로서 독일의 단일 관세지역화
  - 관세 면제 및 비회원국 농산물 수입에 대한 특별세 면세
  - 서독의 시장가격이 내독무역의 단일가격 수준으로 유지될 것 등임.
- 내독무역이 국내무역이라는 사실은 재화교류가 "한 국가의 국내경계 이내에서 수행되는 한" 국내무역이라는 명확한 개념정립으로 성립되는데,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당성이 확정되었음.
  - 동·서독 간 국경선은 동·서독을 분리하고 있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의 각 주에 걸쳐 있는 것"과 같은 경계선이므로 따라서 내독무역을 대외무역으로 간주하려는 관점은 잘못됐다는 것임.
- 의정서의 내용 중 "국내무역"이라는 말이 핵심적인 것으로 서독정부는 다음을 준수해야 했음.
  - 앞으로 동독으로부터 반입되는 재화는 서독과 Berlin의 수요에 맞추어야만 하며 관세와 EEC 비회원국 농산물 수입에 대한 특별세가 면제된 재화와 서비스가 서독을 통해 공동체내에서 자유유통되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방지됨.
  - 독일연방재무성은 이를 방지키 위해 동독재화를 수입하는 기업체가 그 재화를 다시금 반출하지 않을 때에만 일반거래세를 감면시켜주는 조치를 취함.

○ 시장교란을 방지하는 또 다른 조치로서는 내독무역의 재화에 대한 가격형성과 관련된 조치를 들 수 있음.

- 내독무역의 상품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 형성되는 진정한 시장가격이 아니므로 특히 낮게 책정되는 것이 허다함.
- 시장가격에 비해 저렴한 동독산 반입품은 역내무역을 교란할 우려가 있음으로,
  - 동독재화가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특수성을 소규모로나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반입가격은 공동체내적 가격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으며,
  - 내독무역과 유관한 상품이 EEC 기타 회원국의 시장에서 가격을 자극해서는 안 되도록 조치하였음.

○ 내독무역의 악용에 관한 비난은 내독교류물품을 외국상품으로 둔갑시켜 무역이익을 취하는 문제와 관련 있음.

- 내독무역으로 공급된 상품은 독일(서독 또는 동독)을 원산지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했음.
- '60. 8. 16일자 Berlin협정의 새로운 문안과 함께 원산지가 독일이 아닌 상품의 무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독정부는 내독무역의 범위내에서 외국상품의 무역으로 간주되는 예외적 성격을 가진 무역에 대해 구분을 명확히 했음.
- 국내무역이라 함은 우선적으로 국내 사업파트너가 국내상품을 교역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내독 간 상품교류나 서비스 교류가 국내무역의 특징을 벗어나 다른 형태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내독무역이라고 특징된 동·서독 간의 국내무역의 기본원칙은 자체소비, 서독의 시장가격, 원산지가 독일일 것이라는 3대 특징과 함께 책임감있게 수행되어야만, EEC 회원국에 대한 시장교란은 방지될 수 있었음.

- 서독이 이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는데 한해서 의정서의 계속 유효화 및 그에 따른 내독무역의 존속은 통독 직전까지 EEC 각료회의를 통해 회원국들도 동의했으며, 집행위원회 역시 동일한 견해를 표명했었음.

4-7. 동독의 외화 획득 사업과 내독 관계

○ 동독의 소비물자 공급 상황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으나, 서독의 TV 방송과 친지방문 등을 통해 서독의 생활상을 접할 수 있었던 관계로 동독 주민들의 기대치는 또한 상대적으로 그만큼 높았음.

- 1990년의 화폐·경제 통합 이후로 동독제 상품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서구제품의 마력을 잘 입증해주고 있음.

○ 소비물자 공급이 원활치 못한 이유는 동독의 비경제적·비효율적 제도 때문인데, 현존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 목표의 하나로서 대중소비(Massenkonsum) 실현을 추구하였지만, 이의 실현을 위한 소비물자 공급은 생산성 저하와 기타 여러 경제정책상의 과오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SED 수뇌부들은 서방 외제품으로 사치를 누리면서도,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의 이율배반에 사로잡혀 있었음.

- 국민 1인당 소비량과 1가구당 가전제품 보유에 관한 동독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동독 내 물자공급 상태는 국제수준에 비해 손색이 없었지만, 품질과 다양성,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모자란 점이 많았음. 말하자면, 동독주민들은 전후 기술혁신의 혜택을 매우 늦게서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임.

○ 개혁을 꺼리는 동독 수뇌부의 이중 가격 정책으로 인해 물자공급과 용역사업 부문에서의 낙후가 보다 심화되었음.

- 기본 수요, 즉 식량, 주거 , 공공교통수단 등의 요금은 종전 직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연금, 임금, 봉급 수준을 낮은 선에서 유지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물가억제정책은 고소득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액수의 보조비 지출이라는 결과를 낳았음.
- 반면, 기본 생필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음.
  - 세탁기, TV, 승용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제품과 품질이 우수한 의류, 가구,

도자기 제품 가격은 국제 시장가나 동독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 보아 터무니없이 매우 높은 편이었음.

- 이러한 고가제품은 단지 고급품 특별 판매업체인 Exquisit(의류, 신발 취급점)와 Delikat(고급 식품 전문업소)에서 특정인만 구입할 수 있었음.

- 제품가격은 생산비용이나 국제시장 가격과는 관계없이 정책상의 결정에 의해 책정되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억지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았으며 그 부정적 결과로서 가격구조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동독주민들은 빵 한 개에 0.05 동독 마르크(Ost-DM), 이발비로 1.9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한 반면, 칼라 TV 한 대를 구입하려면 거의 6천 동독 마르크를 지불해야만 했음.
  - 기본 식량과 집세를 값싸게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면서도 고가판매제도는 동독주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음.
  - 제품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물건 가격까지 터무니없이 높았던 관계로 동독인들은 항상 착취당하고 있으며, 소득 분배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등, 동독 경제제도에 대해 회의가 싹트게 되었음.
  - 동독 주민들의 이러한 경제적 소외 의식은 외화획득을 위해 특정인에게만 허용되는 고가소비제품 판매소(Genex와 Intershop 체인점)가 설치됨에 따라 노골화되었는데, 당 수뇌부와 고위 관리들은 이곳을 이용했고, 후일에는 서독인들이 동독의 친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이곳을 이용했음.

○ Genex와 Intershop은 동독의 일상생활과 주민들의 생활 감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내독 간 정치·경제 관계 전개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4-7-1. Genex(선물회사)

○ 50년대에 들어 동독은 내독 간 여행 및 우편교류에 대해 행정 규제(administratice Beschraenkung)를 가했는데, 이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서 외화결제 동독 선물센터사업이 본격화되었음.

- 이러한 행정규제는 통독 직전까지 계속되었는데, 서독 통신주문 판매업체에 의한 상업성 소포발송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개인적 선물에 대해서도 수입제한 및 금지조항이 적용되었는 바, 예를 들어 개인에 의한 TV 반입은 통일 직전까지도 허용되지 않았음.

- 휴대하는 서방제 선물에 부과하는 허가수수료 또한 방문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으며, 부피와 중량 때문에 소포발송을 할 수 없는 냉장고, 세탁기 등은 철도운송 화물로도 처리·발송될 수 없었음.

- 상속의 경우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서는 중고 내지 신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개인에 의한 동독으로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았음.

-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의 대내외 교역성(DIA: Deutscher Innen- und Aussenhandel) 산하의 담당부서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선물센타 업무를 수행하다가, 서독주민의 동독주민에 대한 선물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하나의 선물센터 및 소규모 수출회사(Genex: Geschenkdienst und Kleinexport GmbH)가 1957년에 처음으로 베를린에 설치되었음.
  - 사업 초기에는 취급 품목들이 다양하지 못하였으며, 판매실적 또한 부진하였으나, 장벽이 설치되고 나서부터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 Genex에 대한 서방측의 유보적 자세

- 사업이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서독 주민들과 행정기구는 Genex 사업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로 나왔음.
  - 부당하게 높은 가격과 인간관계를 물질로 대치시킨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 반응을 보였으나, 이러한 서독측의 유보적 태도는 기실 "외환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음.
  - 냉전 시대였던 당시, 서독측은 동독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만약 Genenx가 SED에서 직접 운영한 회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면, 그 거부반응은 보다 컷을 것임.

- 따라서 서독은 Genex 사업에 대해 소규모의 행정규제를 가했는데, 이 규제란 구체적으로 , 서독지역 내 Genex 대리점 설치와 선전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임.

- 사업은 외국 대리점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 1965년까지는 스위스 Luzern시 소재 Moos회사, 그 이후부터는 Zuerich 시 소재 Palatines 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덴마크에서는 Kopenhagen 소재 Jauerfood 회사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졌음.

- 이들 대리점은 서독에 우편환구좌(Postscheckkonto) 및 은행구좌를 개설해 놓았는데, 구좌를 통한 지불은 외환법상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였음.

• 초기에는 독일연방은행과 주립중앙은행에서 개별허가서가 발급되었으나, 1965년부터는 Palatinus 회사를 상대로 단체허가서가 발급되었음.

- 또 1966년 1월 1일부터는 100 DM 이상의 매입에 대해서만 개별 주문을 받았는데, 이 조치를 통해 소액 규모 선물발송은 가능한 한 개인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도록 유도되어졌음.

- 1970년 이후부터는, Genex를 통한 주문과 관련, 선물용이 아닌 동독주민들의 "자체구매"(Selbstkaeufe)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해졌음.

○ 대상 고객

- Genex의 사업목표는 "서방 국가 또는 서베를린으로부터의 위탁에 따라 선물을 동독내 수취인에게 면세로 중개"하는 것이었음.

- 서방의 주요 고객들로는, 동독에 친지들을 둔 서독인들 내지는 서베를린인들과 교회단체 등을 들 수 있음.

- 서독에 DM 구좌를 개설해 놓은 동독 주민들은 그 구좌를 통해 Genex 대리점에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었으나, 이때 일정한 제한이 가해졌기 때문에 주문은 주로 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

• "자체 구매자"에 대해서는 독일연방은행이, 1969년부터 따로 분리, 통계처리하였는데, 이들이 Genex 사업에서 차지했던 몫은 계속 증가하였음.

- 동독 내에 Valuta-마르크 구좌를 갖고 있었던 동독 주민들은 직접 상품을 주문할 수 있었음.

• Valuta 마르크 예입금은 주로 미지불 대외사례비 내지는 동독 예술인, 학자 및 기타 자유창작인들의 외국초청 공연 및 강연 수입에 의해 마련되었음.

• 80년대부터는 동독은행에 서방통화를 예치한 자에 대해서도 Valuta-마크르 구좌 개설에 허용되었음.

○ Genex 취급목록

- Genex는 매년 간행되는 카탈로그에 표시된 상품만을 취급하였는데, 이 카탈로그는 서방의 고객들에게만 배포되었으며, 동독으로의 재발송은 허용되지 않았음.

• 80년대 중반부터는 서독구좌 소지 "자체구매자"에 대해 동독 국립은행에 배치된 카탈로그 열람이 허용되었음.

- 매년 발행된 Genex 카탈로그를 살펴보면, 취급상품이 점점 다양해짐을 관찰할 수 있음.

• 90년도 카탈로그는 "2천여 선물품목"을 수록하고 있었음. 취급대상 품목으로는 기호품, 화장품, TV,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전자소비제품, 도자기, 가죽제품, 보석, 가구, 조립주택, 공구 및 정원용 가구와 승용차들을 들 수 있음.

• 이들 제품들은 주로 동독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일부는 허가생산품(Gestattungsproduktion), 즉 서방회사로부터 기술·재료를 제공받아 동독에서 생산된 물건들임.

• 서방제품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들은 같은 종류의 동독제품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음,

• 동독제 승용차로서는 Wartburg에서 트라반트, 라다, 스코다 모델들이 납품되었으며, 서방 승용차들로서는 르노, 피아트, 포드, BMW와 폴크스바겐사의 골프와 파사트 모델이 제공되었음.

• 동구권으로의 여행프로그램은 별도로 취급되었음.

- 제품 가격으로는 통화 단위의 표시가 없이, 막연한 숫자만이 기입되어 있었는데, 지불단위가 DM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인지 카탈로그 뒷면에 가서야 단위가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었음.

- 같은 종류의 제품들에 대한 동·서독 간 가격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Genex 가격은 대체로 서방의 일반 보통가격수준(할인가격 제외) 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었음.

- 동독으로의 소포 발송이 가능한, 또는 직접 반입이 가능한 품목의 가격들은 운송비, 수수료, 내지는 소량의 기타 비용을 감안했을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음.
- 승용차와 TV 같은 품목들은 뚜렷한 가격차를 보였음.

○ Genex 매상고

- 독일연방은행은 1962년부터 Genex-대리점에 대한 DM 지불 상황을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체 구매자의 결제 사항들은 69년부터 집계하였음.
  - 덴마크와 스위스의 대리점을 통해 1962년부터 1989년까지 매상고는 총 35억 2,610만 DM으로 나와 있음.
    - » 단, 외국에서의 직접지불, 프리드리히역 등에서 가능했던 현금지불, Valuta 마르크 구좌를 통한 결제 등은 포착되지 않고 있음.
- Genex를 통한 80년대에는 연간 주문액이 2억 DM 규모에 달하였음.

○ 상품 구조

- 승용차 및 그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70~80%에 달했으며, 초반에는 주문의 90%에까지 이르렀다고 함.
  - 국제선물센터에 신청된 승용차의 3/4이 동독제품으로서, 이 중 85%가 Trabi 일반 모델, 12%가 Warburg 모델, 3%가 Lada 모델로 밝혀지고 있음.
  - 서방 승용차 중에서는 폴크스바겐사의 골프모델이 주문의 90%를 차지하였음.
  - Palatinus 회사의 추정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사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전체 주문의 1/3에 달하고 있음.
  - 나머지 2/3인 동독제 승용차의 분포율은 Trabi, Wartburg, Lada가 각각 30%씩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가전제품과 실내 설비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매상고의 15~20%에 달함.
  - 개별품목으로는, TV(8.5%), 가구 및 조립식장(6~7%), 냉장고와 세탁기를 포함한 가전제품(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의류제품(1~2%) 식품 및 기호품(1%)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며, 동구권으로의 여행 프로그램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4-7-2. Intershop

○ Genex와는 달리 설립 당시부터 동독 주민들에 대한 물자 공급에 기여했던 Intershop은 여행자에 대한 여행물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설되었음.

- 동독의 외화획득에 기여했던 Duty-free-shop과 마찬가지인 Intershop은 70년대 이르러서는 국내 물자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
- 1955년 로스톡시와 후에는 비스마르시에 선박여행자(선원포함)들을 위한 특별 상점이 설치되었으며, 동독재무성과 대외무역기업 산하의 이들 판매소들은 식품을 취급하였는데,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한 1962년부터는 중앙상업회사(Zentral-Kommerz GmBH)가 설립되어, 그 판매업소가 Intershop으로 지칭되었음.
- Intershop이란 독립 법인체의 자격을 지닌 운영기관이 아니라 서방제품을 외화로 판매하는 관련 업소를 일컫는 명칭일 뿐임.
- 중앙 상업회사에서는 로스톡과 라이프찌히시에 세 곳의 Intershop을 운영하다가, 이를 기존의 무역업체인 동독 교통성 산하의 Mitropa와 Intershop에 각각 양도하였음.

○ Intershop 판매망은 점점 확산되었음.

- Duty-free-shop이 국제 항구와 공항에만 설치되었다면, Intershop은 국제 공항 뿐만 아니라 국경초소, 통과지역, 외국 호텔과 라이프찌히 박람회장에도 설치되었음.
- 초기에는 담배, 술, 과자류, 화장품, 향수, 직물, 시계 등과 같은 여행용품만을 판매하였음.
- 여행자 교류확대와 더불어 매상고도 증가하였는 바, 1970년 매상고는, 1억 Valuta-마르크에 달하였음.

○ 1970년 이후 내독 간 관계가 진척을 보이면서부터 Intershop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는 바, 매상 규모와 사업목표에서 변화가 일어났음.

- 1971년 12월 17일자 통과협정(transitabkommen) 체결과 1972년 10월 17일자 통행협정과 더불어 서독인들의 동독여행이 증가하였는 바, 이에 따라 Intershop의 매상도 증가하였고, 이로서 DM이 동독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였음.
  - Intershop 매상액은 1971년 1억 7천만 VM, 1972년 2억 4천 3백만 VM, 1973년 2억 7천 7백만 VM에 달하였음.
- 동독은 이러한 외화반입에 따른 조치로서 1974년 2월 1일부로 일반인의 소규모 외화소지를 허용하였음(외화 유출은 계속 금지됨).
  - 이에 따라 동독 주민들도 Intershop이나 기타 허가 판매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Intershop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는데, Intershop의 영업직능(Leistungsfunktion)은 중앙 상업회사로부터 분리되어, 1974년 1월 1일에 신설된 Forum 교역주식회사(Forum Handelsgesellschaft mbH: Forum은 Genex와는 달리 대외무역성 산하 Koko에 귀속된 하나의 국영기업체였음)로 이전되었음.

- 도매업체인 Forum 교역회사는 Intershop, 선박, 외교관 수용물자를 취급하는 Vergina 및 기타 외화결제 사업체와 Genex에 대한 물품 구입을 담당하였으며, 동시에 Intershop의 판매사업을 주관하였음.
- 그러나 실제 판매는 Mitropa와 Intershotel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국영소매상 체인점인 Ho(Handelsorganisation)에서도 1973년 Intershop 판매점을 설치하였으며, 1984년에는 로스톡시에 Forum 산하 Intershop판매점이 개설되었음.
- 모든 교역 단체들은 위탁 판매인 역할만을 하였을 뿐으로, 취급 품목 결정, 제품공급, 가격 책정은 전적으로 Forum의 소관사항이었음.
- 재고품과 판매수입은 전액 Forum에 반납되었으며, Valuta 비용과 외화로 지급되는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외화수입은 Koko의 외환기금(Devisenfond)으로 입금되었음.

- Ho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사례비는 동독 마르크로 지불되었으며, 판매직원들에 대해서는 완전 근무 이행시 월 30 VM의 프리미엄이 지급되었고, 직원들은 이 액수에 상응하는 제품을 Intershop에서 구입할 수도 있었음.

○ Ho 판매망은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고속도로 통과 지역내에 Mitropa 판매점들이 증설되었는 바, 서방인들에 대해서도 판매가 허용되었음.

- 국내 공급 목적을 위해 Interhotel의 Intershop 매장을 증설시켰으며, 1982년부터는 각 지역마다 Ho의 Intershop이 설치되었음.
- Intershop 매장은 1976년에 총 240여개에 달하였으며, 통일 직전까지는 총 470개로 증설되었음.

○ 취급 상품들은 국내 공급과 서방여행객들의 수요에 따라 각각 상이한 발전을 보였음.

- 대규모 Intershop 매장들은 소백화점 내지는 슈퍼마켓으로 거대화되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많은 전문 매장도 생겨나게 되었음.
- Intershop 취급 상품에서 차지하는 동독제춤의 비중은 대단치 않았는데, 1973년부터는 아예 취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허가생산품(Gestattungsproduktion)에서도 식품과 기호품만이 취급되었는 바, 특히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90%에 달하였음.
- 식품·기호품 외에도 가정용품, 의류, 기술제품, 건축자재와 가정 공구용품 등이 취급되었으며, 1975년부터는 Intershop을 통해 서방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었음.
- 대부분의 제품들은 Forum에 의해 내독 교역에서 청산단위(VE)로 구입되었음.

○ Forum의 가격 정책은 취급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었음.

- 서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가격은 구매력 확대를 위해 낮게 책정되었음.
- 1964년 연금자들에 대한 서베를린 방문의 자유화와 더불어 서베를린을 방문한 동독연금자들은 친지들을 위해 선물을 구입, 동독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게 되었는데, 이 까닭으로 Forum은 국내 제품에 대한 가격 책정시, 서베를린의 시장현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었음.

- Forum 수표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치약, 비누, 장난감, 승용차 등의 가격이 유동적일 때는 거스름 돈 문제로 계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음.

○ Intershop 확대에 따른 정치적 문제

- 이같은 외화획득 사업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DM이 동독에서 국내 통화처럼 사용되었는가 하면, 동독 사회는 서방과 관계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양분되었음.
  - Intershop 매장에 버젓이 전시된 서방제품들은 동독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꼴이 되었음.
  - Genex만은 독독 내에서 상품 카탈로그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동·서 간의 빈부 격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으나, Intershop과 Delikat 상점에 전시된 품목들 간의 가격 비교에 의해 DM과 동독 마르크 간의 가치차가 분명해졌음.
-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Intershop은 동독 지도부와 DM 비소지 주민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사게 되었음.
  - 이와 관련 호네커는 1977년 9월 26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Intershop 문제에 대해 직접 간여를 하였음.
  - 이와 관련 정치국은 당시 Intershop 확장 계획의 취소, 더 이상의 동독제 상품 취급 금지, Intershop 취급 상품 중 서독제품의 비중 축소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음.
  - Intershop에 대한 정치국의 제한초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나, Intershop에 대한 이념적 비판은 계속되었음.
- 소련도 Intershop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음.
  - DM은 독일인들을 융합시키는 끈이 되어 통일에의 소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였는 바, 이는 통독 당시 기우가 아니었음이 판명되었음.
- 70년대 말 이미 동독 경제의 외화 의존도는 지대하였으므로, 동독 지도부가 Intershop 사업을 축소하면 동독 경제가 지탱되지 못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었음..

- Intershop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는 길 밖에 없었는데, 그리하여 Delikat 상점들과 Exquisit 상점들을 증설하였으며, 급기야는 Forum 수표제도 등을 도입, 동독 주민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음.

○ Exquisit와 Delikat

- 동독 지도자들은 동독주민들에게도 일부 고급 소비제품 구입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독 마르크를 지불 단위로 한 고급 제품 판매 제도를 부활시켰음.
  - HO는 1961년 Exquisit 판매점을 개설하여, 유행복과 신발제품을 고가에 판매하였으며, 확장일로의 Intershop 사업에 대한 보조 역할로서, 기호식품 취급점인 Delikat 전문식품점을 설치하였음.
  - 이 고급제품 판매망은 Intershop 확장과 더불어 확산되었으며, 매상고 역시 이에 상응하게 늘어나게 되었음.
  - Exquisit 상점은 1989년 429개 업소에 달했으며, 1978년 공식 매상액은 7억 6천만 동독 마르크로 집계되었음.
  - 1978년 Delikat 상점 사업도 7억 2천 5백만 동독 마르크의 매상을 올렸음.
- Exquisit와 Delikat 사업의 매상증대는 기본물자의 공급난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고급 제품 판매 상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 기인함
  - 고가품 판매처에서는 주로 허가 생산품, 특히 동독제품으로 품질이 좋은 수물상품들을 취급하였으며, 서방수입제품은 적게 취급했음.
  - 이들 제품과 교역 단체에서 제공하는 기본물자들과의 가격 비교는 품질 차이로 인해 불가능하지만, 동일 서방제품과 견주어 보았을 때, 고가품 판매처 가격은 DM 가격보다 2~10배 이상 높았는 바, 이는 자유외환 거래비율에 버금가는 수치였음.
- 서방으로의 여행과 Intershop에서의 구매를 통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었던

동독 주민들이 이러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대해 언짢게 생각하였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Delikat와 Exquisit 상점의 존재는 사회주의의 단조로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일반 주민들로부터 용납되었음.

○ Forum 수표 발행

- 1978년 일반인의 DM소지를 금지, Intershop 사업활동을 제한토록 한다는 소문이 항간에 나돌기 시작하더니, 동독은 국가 설립 30주년일인 1979년 부활절에 예고 없이 Forum 수표제도를 실시하였음.
  - 이에 따르면, 대외 무역단체(Intertank, Genex, Intershop)는 동독 주민들에 Forum-대외무역회사 수표를 발급, 이를 지불단위로 하여 상품을 판매토록 되어 있음.
  - Forum 수표의 단위는 각각 50, 10 , 5 , 1, 0.50 동독 마르크로 구분되어 발행되었음.
  - Forum 수표에 발행자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는 없었으나, 반환과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 동독 지도부는 이러한 Forum 수표제도를 통해 동독 내 Genex 판매 사업의 활성화를 노렸으나, 이는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
- 이 규정은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으나 1989년까지 계속 적용되었음.
  - Forum 수표제가 실제 사용되었을 때 지불상의 불편이 뒤따르긴 했지만 판매사업 자체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음.
  - 즉 Forum 수표제란 DM의 유통을 은폐시키기 위한 성형수술에 불과하였는데, 동독 내에서의 DM 소지와 Forum 수표 양도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심할 것이라는 염려는 기우로 판명되었음.

○ Forum 수표제 도입 이후에도 Intershop 사업은 계속 번창하였으며, SED 정치국은 점점 심해지는 외화부족 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1983년 Intershop 확장을 결정하였으며, 1988년에는 Intershop 운영제도 자체를 확대·변경시켰음.

- 구체적으로, 서독에서 DM을 지불할 경우 동독 주민들에게 Forum 수표가 발급되도록 하였음.

- 이같은 Forum 수표 트란스퍼에 대해 동독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방의 후원자들과 Forum 회사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
  - Forum 수표 트란스퍼는 Genex 대리점을 통한 물건 구입을 외화로 지불 결제하는 대신 Forum 수표로 지불하는 편법을 통해 80년대 이미 실시되고 있었음.
  - 이로써 트란스퍼 교류가 서서히 정착을 하게 되었는 바, 이는 독일연방은행의 외환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 이에 독일 연방 은행은 동독 주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1987/88년 동독측과 비공식 회담을 가졌음.
  - 양측 회담 대표는 서독측에서는 인도적인 문제를 전담하던 연방 내독성 차관이, 동독측에서는 동베를린 변호사 포겔(Vogel)이었는데, 1988년 8월 19일 선물 교류 관계 규정에 대한 개선안 협정을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Stuttgart시에 신설된 Forum의 독일내 계약회사인 국제선물센터(Inter-Geschenkdienst)와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이 회사의 대리점을 통해 동독 내 수취인에 대한 Forum 수표 발급을(1:1의 비율로) 가능케 하였음.
  - 이와 관련 연방 은행은 1인당 연간 최고 주문액을 2만 동독 마르크로 설정하였으며, 동시에 동독이 Forum 수표 수입의 10%를 추가불입금 형식으로 폐쇄 구좌 이체(Sprrkontentransfer)에 사용토록 예치시켜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Forum 수표 트란스퍼 사업은 동독내 정세 변화로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중단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연간 매상 목표액 1억 DM 달성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음.
  - 후반기부터 시작된 1988년도 매상액은 1,490만 DM에 달하였으며, 1989년도에는 4,800만 DM(이 중 자체구매자들에 의한 매상액은 1,940만 DM)에 이르렀음.

○ Intershop 매상고

- Intershop은 동독의 주요 외화소득원이자 물자공급처였음. 그러나 Intershop의 매상고에 대해서는 정치국 위원 헤어만이 인민회의에서 1978년도 Intershop 매상고를 7억 Valuta 마르크라고 밝힌 것이 전부임.
  - 이전에 발표된 서독 언론과 경제인들의 추계는 이보다 높았음.
- 80년대의 Intershop 매상액은 연간 10억 DM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동독주민들에게는 이용이 금지되었지만 통과교통로상의 상점(Transitgeschaeft)이 차지하는 매상액은 2억 DM으로 추계되고 있음.
- Mitropa의 매상액이 전체 매상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음.
- 동독 지도부는 한편으론 Intershop을 통한 외화획득 증대를 열렬히 기대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체적인 매상액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원치는 않았음.

○ 물품구조

- 우선 Intershop의 주력 사업 품목으로 통과교통로 상점에서는 주류, 화장품들이 주로 판매되었음.
  - 통과교통로 상점 제품의 가격은 저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익은 매우 높았음.
  - 이는, 서방의 제품 가격에 첨가되는 고액의 세금이 이 상점의 상품에도 적용되어, 이를 통해 막대한 세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음.
- 커피, 코코아, 다과류 및 기술제품들은 주로 동독 주민들이 구입하였음.
- 1975년부터 Intershop을 통해 판매된 서방 승용차는 기술제품 분야에 속하는 바, 주로 피아트, 르노, BMW가 취급되었음.
- 반면, Genex에서 차지하는 승용차 매상비율은(연간 100~200대) 그리 높지 않았음.

4-7-3. 외환결제 상점들의 역할 및 내독관계에서의 의미

○ 사업 규모

- 독일연방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Genex는 약 30년 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총 35억 DM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총 매상액은 이보다 높을 것임.
- 1974~1989년도 Forum의 소매업체 매상액은 136억 VM에 달하며, 1971~1973년도 Intershop 매상을 합한 전체 매상액은 143억 VM에 이름.
- 1970년도까지의 추정 매상고까지 덧붙이면 Intershop 소매업체 전체 매상고는 약 150억 VM으로 추정됨
- 주요 외화획득기구였던 Intershop은 Genex보다 늦게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ntershop의 연간 매상고와 전체 매상고는 Genex의 5배에 달했음.

○ 동독의 외화조달과 서독측의 연대지원

- Genex와 Intershop에서 벌어들인 외화의 대부분은 서독 및 서베를린 주민들의 가계에서 유출된 것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서독측의 연대지원(Solidarleistung)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음.
  - Genex 수입 중 동독인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DM 구좌를 통한 자체 구매는 6억 DM(18.3%)에 달하였는 바, 서독인들에 의해 신탁구좌(Treuhand-Konto)를 통해 처리된 "은폐된" 자체 구매에 관한 액수는 집계가 불가능함.
  - 교회단체로부터의 단체 연대지원비가 3억 DM(7.5%)에 달하였으며, 서독인과 서베를린인들의 개인별 연대지원비는 약 25억 DM으로 추정됨.
- Intershop의 매상액에서 차지하는 연대지원비는 Genex에 비해 낮은 편임.
- 약 70억 DM에 달하는 현금 수입의 대부분은 서독인들의 동독 방문과 80년대 들어 확대된 동독인들의 서독방문시 이들이 받은 현금 선물에 의한 것인 바, 이에는 서독의 DM 구좌와 방문환영금조로 받은 동독인들의 자기자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80억 DM을 넘는 통과로 상점을 통해 Mitropa상점으로 흘러들어간 총 매상액은 서베를린인, 서독인 그리고 외국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입으로서, 이 수익의 대부분은 회사 자체의 목적에 사용되었고, 일부분만이 실제 동독주민들을 위해 쓰여졌음.

- Genex와 Intershop 매상액에서 차지하는 서독인들의 연대지원비는 총 100억 DM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소포 또는 동독 방문시 선물지참 등의 직접적 지원 액수의 1/3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됨.

○ 물자공급에 대한 기여

- Genex는 동독제 승용차 공급 등 동독 주민들에 대한 소비물자 공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
- DM 지불자에 대해 Trabi나 Warburg 형 동독제 승용차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동독 마르크로 지불하는 주민들에 대한 납품과 RGW-수출에 차질이 생기게 된 반면 혜택을 받은 동독 주민들은 수년 간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음.
  - 이 밖에도 TV, 가구, 가전제품 같은 주요 품목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였음.
- 동독 주민들은 가격과 부속품 조달 문제로 동독제품을 주로 찾았음.
- Genex는 카탈로그를 통해서만 구매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주민들은 이 카탈로그 조차도 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서방제품의 호화로움이 동독 사회에 무제한으로 전파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음.
- Intershop 총 매상의 약 절반가량이 동독 내 소비물자공급을 위해 사용되었는 바, 이는 Genex 매상의 2배를 넘는 액수임.
  - Intershop에서는 커피, 초콜렛, 사탕, 화장품, 워크맨, 소형 라디오, 유행복 등의 서방제품을 취급하였음, 이들 제품은 서방의 일반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품목도 다양하지 못하였으며, 고급 사치품도 아니었음.
  - 또한 동독 소비업체 매상에서 차지하는 Intershop의 비중도 낮은 편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ershop은 서방 소비생활의 한 단면을 동독사회에 전파하였으며, 이로써 동독주민들에 대해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
- 이 밖에도 Intershop은 서방인들에 대한 기호품 공급에도 한 몫을 하였음.
  - Mitropa 매상은 서베를린인들과 통과여행객들의 담배, 주류, 향수 등에 대한 자체 수요를 충족시켰음. 이들 제품 중 동독으로 유입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나, 피해를 입은 곳은 막대한 세수입상의 손실을 겪어야 했던 서독의 세무당국이었음.

○ 외화소득

- Intershop이 최대 규모의 외화소득원이었다면, Genex는 최고의 이윤을 보장한 외화소득원이었음.
  - Genex에서는 주로 동독제품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서방제품 구입을 위한 외화지출이 많지 않았으며, 동독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도 VM통화 단위 대신 동독 마르크로 지불하였던 관계로 Genex의 실제 외화가득률을 매상의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이것이 동독 국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의 문제는 이렇다고 단정짓기가 어려움.
  - 만약 SED가 이 수입금의 대부분을 국제 공산주의 활성화 운동과 독일 공산당 등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금 낭비가 아닐 수 없음.
- Forum은 담배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을 서방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외화지출도 많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um의 외화수입은 매우 높았는 바, 이는 통과여객사업에서 판매된 주류, 담배, 향수 가격에 첨가된 세금수입을 할당받았기 때문임.
  - Forum은 약 50%이상의 이윤을 낼 수 있었는데, 수입은 Koko를 통해 동독 대외경제 일반외환기금에 유입되었음.
  - 매상이 활발하고, 수익이 높았던 Forum 사업은 한 마디로 동독의 주요 외화소득원이었음.

○ 정치적 결산

- Genex와 Intershop 사업에 의해 동독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경제를 지탱하는데 있어서는 한 몫을 다 하였음.
  - Genex는 SED 금고에 계속 외화를 공급해 주었으며, 70년대 중반

Intershop이 개설된 뒤로는 동독의 외화 획득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

- 만약 이들 외화획득 사업이 없었더라면 동독의 파국은 앞당겨졌을 것임.

- Intershop 사업에 의한 외화 수입은 정치범 인도, 가족 재회 그리고 투자 참여를 위한 서독정부의 총 지원 액수를 능가하였음.
- 동독 주민들은 Genex에 대해 그리 큰 반감을 갖지는 않았는데, Genex의 사업 규모 자체가 우선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의를 RMf지도 않았기 때문임.
- Genex의 외화수입이 SED를 통해 정치적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반면 Intershop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음.
- DM 보유자에 대한 비보유자의 시기는 DM이 국내통화로 인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제2통화로서의 DM과 Intershop에 의해 전파된 서방제품에 대한 선망은 동독의 사회분위기를 오염시키고 체제를 위협하는 독소로 계속 남아 있었음.
  - 외화획득사업과 고가제품제도라는 또 다른 물자공급제도는 70년대 중반부의 동독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음.
  - 이들은 음울한 후기 사회주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밝게 만들어 주었지만, 밝은 앞날을 항구적으로 제시해 줄 수는 없었음.
  - 서방의 생활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희망 없는 추격이 계속되었지만, 갈수록 간격이 더 벌어질 뿐이었음.
- 1985년 여행규제개선과 1989년 장벽 붕괴로 인한 여행자유화와 더불어 동독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동독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있었음.

4-8. 내독 간 물품 거래시 유의사항

4-8-1. 물품의 반입·반출

1)허가의 의무화

○ 동·서독 간 교역용 물품과 재산의 반입·반출은 반드시 상대국의 허가가 필요함.

- 원칙적으로 1건의 사안에 대하여 양국에 의한 2중의 허가가 필요함.

○ 1968/69년까지의 물품 거래와 용역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개별 항목별 허가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그 이후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령(Interzonenhandelsverordnung)이 개정됨으로써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반적인 인가를 받은 물품 거래는 이러한 개별항목별 허가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음.

- 그 전제조건은 특정 준수사항의 충족과 신고서의 제출임.
- 또한 준수사항 충족이나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도 있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가된 무역거래가 아니고, 면제대상으로부터 제외된 경우에는 개별항목별 허가의 의무가 계속 적용되었음.

예: 동독 상품을 둘러 싼 서독 내 2개 회사 간에 체결된 계약서)

2) 허가 면제(Befreiung)

○ 다음과 같은 물품은 반입·반출시 허가면제조치대상임.

- 편지.
- 소포.
- 정상 소하물과 20kg 미만의 지급 송달물.
- 500 DM 미만의 가치를 지난 20kg 미만의 가격포기 소포.

※ 상기 4가지 경우에는 내용물 속에 모두 거래용 상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제 3국에 의한 상품반입규정에 따라 반입서류의 제출과 함께 동독을 통과한 후 서독으로 반입되는 상품.
- 서독을 통과한 후 제3국으로 운송될 동독 상품.

• 단, 서독의 독일연방은행이나 동독의 국립은행의 청산결제를 이용한 상품은 제외됨.

- 영업용이 아닌 운송수단(붉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제외)으로서 적정한 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 없이 다시 본 목적으로 반송되는 것.
- 물품 운송수단 운용시의 필요한 급식용인 식품과 기호품으로서 양과 종류로 볼 때 기본 수요를 충당하는 것.
- 운송기간 중 동물에게 줄 사료로서 기본수요에 충당하는 것.
- 포장재(일반거래시 사용되는 데, 안전장치, 장식품 등)로서 상품운반에 필수적인 것.
- 포장재로서 내독교역시, 빈 상태로 상품반송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 내용물을 비운 후 다시 반송되어야 하는 것.
-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용 물품(동물 포함).

• 일정기간내에 반송될 것을 전제함.

- 박람회(전시회)의 전시 때, 홍보용 등으로 사용될 물품.
- 무료 견본으로서 상품의 특성이 명기되어 있으며, 검사가 가능한 것 및 상품설명서.
- 조립작업, 수리작업, 가동작업 등 직업수행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참 물품(최고 5,000 DM 상당).
- 시가 5,000 DM 미만의 자연인이 자연인에게 주는 선물.
- 이주민의 짐, 상속재산, 가재도구.
- 관, 유골단지(시신이나 유골이 들어 있는 것, 시신이나 유골을 운송하기 위해 비어 있는 것 모두), 묘지의 설치나 확장, 유지, 미화용 물품
- 학술서적, 학술잡지, 기타 학술용 인쇄물로서 대학, 아카데미, 기타 학술기관의 교류계획의 일환으로 우편이나 철도편으로 운반되어야 하는 것.
-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 in Frankfurt) 비치용 서적의 초판으로서 무료인 것.

- 우표 및 우표를 인쇄한 봉투나 엽서로서 동·서독 주민 간의 교환계약에 의한 것이나, 서독주민과 동독지역 이외의 주민과 체결한 교환계약에 의한 것.
- 재난 구조용으로 사용될 물품.
- 산업전시회나 농업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 상품으로서 다시 반송될 물품.
- 거래나 산업용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입국시 지참하는 것.
- 물품가격 1인당 1회 입국시 최고 100 DM.
- 봉급이나 임금 또는 생계지원비를 동독마르크로 받는 사람이거나, 소득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동독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동독지역에서 자유업을 하는 사람들이 베를린지역을 여행할 때 지참하는 개인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

○ 세관은 상품송장의 제출이 면제된 상품이 동독으로 반출될 경우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함.

- 이때 반출자는 운송관련서류, 박람회(전시회) 출품 계약서, 상속증서, 증여증서, 이주허가서, 서류교환 등과 같은 면제 사실증명용 서류를 늦어도 검사시점까지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상품이 화물운송로를 통해 운반될 경우, 반출자는 운송장에 허가 면제 대상임을 명기해야 함.

3) 교역 물품목록(Warenlisten)

○ 동독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와 동독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경우를 구분하여 반출물품목록과 반입물품목록을 구분해 작성해 놓았는 바, 이는 청산용 구좌가 세목구좌(Unterkonto) 1과 세목구좌 2로 구분되는 점과 일치하는 것임.

○ 물품목록은 필요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이와 같은 물품 목록을 근거하여 허가 대상 반입물품목록과 반출물품목록이 연방관보를 통해 공지되었음.

○ 반출대상품목으로는 예컨대 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되었음.

- 금수품(Embargowaren)은 내독 간 교역시 반드시 특수규정이나 특수허가를 필요로 하였음.

- 반입대상품목 역시 제조업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상품이 공시되었는데 단지 3% 미만의 상품만이 반입양의 제한을 받았음.

4) 상품원산지(Warenursprung)

○ 베를린 협정체결 근본 취지는 동·서독에서 취득되었거나 생산된 생산품의 반출과 반입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독일 상품만이 허가대상이었으며 따라서 허가기관은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음.

○ 외국상품의 반출이나 반입에는 서독의 피점령지역 간 무역신탁처(Treuhandstelle fuer Interzonenhandel)와 동독의 대외무역성 간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함.

○ 독일이 원산지인 물품이라도 농산물과 같은 일정품목은 베를린 협정에 의거 교역상 일정한 제한을 받음.

- 이는 동독이 서독을 통해 EC 내에 동독물품을 관세 없이 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EC 가맹국의 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EC와 서독이 맺은 협정에 기인함.
- 서독은 베를린 협정체결시 동독과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5) 공시(Ausschreibung)

○ 허가면제대상 물품 이외의 어떤 물품이 매년 동독으로 반출되며, 어떤 상품을 동독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연방관보에 공시됨.

○ 물품은 제조업 물품, 식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로 세분화되어 공지됨.

○ 통산 매년 시작과 함께 공시연도가 시작되므로 계산연도 역시 공시연도와 일치함 - 단, 3월 31일까지 반출 또는 반입이 연장될 수 있음.

○ 공시는 연방경제부장관에 의해 관보에 게재되며

공지 L =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반출.

공지 B =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반입.

공지 D = 인쇄물의 반출과 반입으로 구분됨.

○ 상품별 공지번호는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며, 4단위 숫자로 된 일련번호임.

- 첫째 자리는 해당연도 표시임.
  - 해당 연도를 뜻하는 첫째 자릿수는 오로지 해당 공지 대상에만 적용됨.
  -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공지사항은 첫째 자릿수에 반점을 부여함.
  - 상품송장이나 구입허가서 취득시 년도의 마지막 숫자가 이 반점과 교체됨.
- 각 상품은 고유공지번호를 갖고 있으며, 1개의 알파벳과 조합되는 바, 알파벳은 베를린협정의 상품목록의 위치에 부응하는 것임.
- 마지막 3자리 숫자는 물품의 항목을 표시하는 일련번호임.
  - 새로운 물품일 경우, 이전 물품 다음 번호가 부여되며
  - 물품항목이 없어질 경우, 해당 일련번호 역시 없어지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 베를린협정에 수록된 물품항목 위치와 달리 연도별로 물품목록이 작성된다는 사실(특히 농산물의 경우)은 거래량이 제한을 받음을 뜻하는 것임.

- 즉, 수량의 제한을 받은 물품의 경우 허가신청시 일정한 액수에 도달했으면 더 이상 허가가 되지 않음.
- 그 반면, 물품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공지품목도 있는 바, 이는 연방관보에 허가대상품목이 아니라고 공지됨.

○ 상품의 반출이나 반입시 특수한 규정이나 준수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에도 연방관보에 공지되어야 함.

- 단, 연방산업청과 연방농수산청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공시 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허가부서

○ 서독에서는 신청자의 주소가 있는 해당 주정부의 최고경제 담당기관(통상 주정부 경제성)임.

○ 허가부처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할권이 저촉될 경우, 연방산업청과 연방농수산청이 간여할 수 있음.

○ 허가신청절차는 신청자와 해당 허가부처 담당자의 직접접촉을 금하고 있으나,

사안의 해명이 필요할 경우, 직접 문의할 수도 있음.

7) 신청권자

- ㅇ 물품반출과 반입의 허가대상자는 오직 서독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본점이나 지점임.
- ㅇ 직접신청자는 사주이거나 지배인이거나 기타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권이 있는 자임.
- ㅇ 특정회사가 유일한 해당분야의 거래인 또는 생산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공지할 수 있음.
- ㅇ 거래용 물품거래가 아닌 물품교류(예: 선물발송)일 경우에는 서독내에 주거지를 갖고 있거나,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할 수 있음.

8) 신청양식

- ㅇ 신청양식은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령상의 제규정에 알맞게 작성한 신청양식을 사용해야 함.

9) 확인 서약

- ㅇ 내독교역의 절차규정에 의하면, 내독교역 참여자는 반드시 선언서를 아래내용에 관해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계약이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개입하여 체결되었는지의 여부.
    - 이 경우 중개인이나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제시해야 함.
  - 제출된 계약서류에 하자가 없이 완벽하다는 점.
  - 부수적 합의사항이 없다는 점.
- ㅇ 신청자는 자필서명을 통해 신청서에 자신이 직접 이 거래를 관여하고 있으며, 개별허가 신청대상품목이 자신의 청구서 혹은 타인의 청구서로 처리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ㅇ 확인서약 내용은 기입용 서식용지에 기록되어 있음.
- ㅇ 위탁 창고보관을 위한 물품거래에는 이러한 확인이 필요 없음.
- ㅇ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 임을 확인하게 되면, 허가사항은 양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10) 계약

- ㅇ 양독 회사들 간의 거래상담의 진행과 계약체결은 그 회사들이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반적인 허가대상 거래규정을 따를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허가대상 거래로서 허가조지가 내리지 않을 경우, 계약서, 구매접촉, 판매접촉 등 상담이 이룩되었다 할지라도 미해결 사안으로 그 거래상담의 효력이 없음.
  - 구두 또는 전화상의 합의사항은 불충분하며, 서면상의 계약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ㅇ 허가부처는 거래합의사항의 내용이 무역거래의 관례에 부합하며,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ㅇ 동독으로부터 상품을 반입하는 동독측의 공급계약인 경우, 동독기관에 의해 “계산년도 19xx”라는 스탬프 및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 ㅇ 동독에서는 공급계약이 일반적으로 기입용 서식용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서독측에 구매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4부가 작성되어 1부는 구매자에게 또 1부는 관여자에게 나머지 2부는 반입허가 신청서 제출용으로 사용됨.
- ㅇ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령의 각종 규정에 따르면, 장기계약과 비장기계약이 구분되어 있음.
  - 비장기계약이란 신청서 제출 후 1년 이내 또는 익년 3월까지 합의한 공급기간이 준수될 경우를 말함.
  - 장기계약이란 합의된 공급기간이 상기의 기간을 초과하거나 당초의 계약 체결보다 몇년 간 더 연장될 경우임.
- ㅇ 동·서독 각 기관 간에는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전액을 허가하든지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이행되었거나 이행되어야할 계약 내용(공급수량)이 1년 이내에 정산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음.
  - 공급계약체결이 1년이 아닌 몇 년에 걸쳐있고, 매년마다 공급량과 공급액이 정해져 있도록 합의된 경우에는 매년 그 해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만 허가조치가 취해짐.
  - 그러나 수개년 간에 걸쳐 공급이 합의되고 합의시점에 매년 공급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동·서독은 허가의 종류와 방식에 관해 합의점을 모색함.

○ 독점판매계약과 독점구매계약의 체결시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상 합의사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매계약 허가조치 이외에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연방재무성, 연방경제성, 연방산업청의 특수허가가 필요함.

- 따라서 허가된 독점판매계약이나 독점구매계약이 개별적인 부차적 구입이나 공급계약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동·서독 간의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이 어떠한 종류이건 일단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계약인 경우라면 허가부처가 허가사항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한 부차적 약정을 하면 안됨.

- 또한, 계약체결로 인하여 부차적으로 제 3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발생하여도 안됨.
-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그 변경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양식을 갖추지 않아도 좋으나, 그 변경내용을 허가부처에 추후 허가를 얻기 위해 제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가된 거래일 경우에도 추후 신고를 필요로 함.

11) 가격 합의

○ 서독에서 통용되고 있는 내독교역법상의 각종규정에는 공급가격과 구입가격에 관한 특수한 규정이 내포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상품의 구입시 허가부처가 가격형성을 방관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된 가격 때문에 허가가 보류될 수도 있음.
- 만일 거래에 처한 쌍방이 합의한 가격이 서독의 국가적 권익에 위배될 경우, 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그와 같은 대상으로는 동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서독의 제조업 분야 제품과 중복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식료품시장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임.

○ 구입물품의 가격감독은 산업 분야일 경우에는 연방산업청이, 그리고 식품 및 농수산 분야 물품일 경우에는 연방농수산청이 담당함.

- 이와 관계없이 각 주정부의 허가부처는 자체적 책임하에 가격형성을 주시함.

- 연방경제성은 가격검토의 절차에 관하여 "내독교역에 의한 물품반입시 가격검토에 관한 행정지침"(verwaltungsanweisung ueber preispruefungen bei bezuegen im jnuerdeutschen haudel: 1970년 10월 3일자 연방관보 제184호)으로 확정해 놓았음.

○ 가격검토는 사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됨.

- 사전검사의 경우, 신청서에 수록되어 있거나 산업계에 의해 제출된 해당 제조업 분야 내지 그 일부에 대한 각종자료가 비교되는 바, 그와 같은 자료와 더불어 매상고, 생산데이타, 반입량과 반출량, 가격이 산출됨.
  - 연방산업청은 구입량으로 볼 때 별 의미가 없고, 각종 시장 데이터로 볼 때 심대한 손상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가격검토 절차를 중단해야 함.
- 그러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함.
  - 구입상품과 서독에서 생산되는 경쟁상품 간의 구체적인 가격비교가 면밀하게 취해져야 함.
  - 이때 품질의 차이가 검토될 것임은 물론, 구입량의 증가에 따른 가격 차이로 인한 손상이 어느 정도에 달하게 될지 역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분야의 대표에게 문의해 보아야 하나, 가격검토 절차는 가능한 한 3개월 이내에 종결되도록 해야함.

12) 허가통보

○ 개별허가(실무상 "라이센스"로 통함)를 통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동·서독 교역의 경로를 이용한 물품의 운송과 지불 역시 허가됨.

- 계약 체결, 물품의 운송, 내독교역을 통한 지불과 같은 3가지 실무사항은 일반적으로 허가된 반입이나 반출시에도 허가를 요함.

○ 허가서가 분실되었을 경우, 허가부처는 부본을 발행하여 대치할 수 있도록 함. 만일 분실되었던 허가서가 다시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허가부처에 반납해야 함.

- 허가서가 사용되기 전에 무효화되었거나, 허가취득자가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역시 허가서를 반납해야함.

- 사용하지 않은 허가서는 늦어도 허가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 반납해야 함.
- 일반적 거래로서 인가된 거래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거래 불이행에 관한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 간으로 한정함.

- 그렇지만 근거가 분명할 경우, 유효기간 연장 역시 가능함.

○ 허가에는 각종 준수사항을 지킬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준수사항은 이미 공지사항으로 알려져 있음.

- 예컨대 처리현황에 관한 중간보고와 같은 것이 요구될 수도 있음.

○ 반입허가를 받고 구입된 상품은 허가된 양과 허가된 가격을 비교한 후 형성된 가격으로 서독에서만 소비되어야 함.

-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반출된 상품 역시 상품송장에 허가된 양과 허가된 가격을 비교한 후 형성된 가격으로 운송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된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만일 한 계약이나 한 허가사항으로서 확정되었던 가격이 거래수행시 변경될 경우면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함.

○ 가격조절조항에 관한 합의는 법적으로 허용됨.

- 가격조절조항의 내용은 해당상품이 서독내에서 공인된 시세표와 시장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 설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임.
- 아울러 공급 당시의 구입가격이 이와 같은 공인시세표나 가격설정에 의해 산출된 가격일 때를 기준으로 한 계약가격일 것을 전제로 함.
- 계약내용에 가격조절조항이 포함될 것이 허용되어 있으면, 허가부서는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허가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반입예정 상품의 가격은 오로지 X년 X월 X일부 계약의 가격조절조항에 합의된 가격으로만 반입할 수 있음. 가격변경으로 인하여 반입허가량과 반입허가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가격변경에 대한 주정부 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

13) 신청 기각

○ 만일 개별허가신청이 허가부처로부터 해당 계산년도에 설정된 가격한계를 초과하거나 신청서 제출이 너무 늦어버렸거나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 때문에 기각될 경우 신청자는 행정법원 구성법 제6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판결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4) 라이센스 이전(Lizenzuebertragung)

○ 개별허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구입허가서에 명기된 물품은 서독내에서는 허가서(라이센스)에 명기된 사람에 의해서만 운송될 수 있음.

- 물품송장에 명기된 물품은 물품송장에 명기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운송될 수 있음.
- 일반적 허가를 물품소비 역시 이에 준함. 그러나 하청에 의한 운송이나 지불, 그리고 허가내용이나 자체 책임하에 작성된 물품송장에 적혀진 사람에 의한 청구서 역시 허용됨.

15) 물품 인도장소

○ 동·서독 물품거래는 동·서독 간 국경통과지역 중 일정한 장소를 통한 운송으로 이루어짐.

16) 물품거래의 감독

○ 동독은 관세법상 외국이 아니므로 동·서독 물품거래에 대한 세관 수속절차는 행해지지 않음.

- 그러나 동·서독 물품의 거래에 대한 기관의 감독이 없어서는 안되므로, 감독기관은 서독지역 내에서는 세관이며 동·서독 물품거래를 위해 지정한 국경통과지역에서는 국경검문소와 자유항 사무소에서 실시함.
- 또한, 동·서독 물품거래는 동독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음.

○ 운송물품의 검사는 규정된 서류에 관한 검토, 서류상 기재된 양과 종류에 관한 일치여부 검토 등으로 이루어짐.

- 물품검사 담당관은 상품검사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운송될 물품 역시 검사를 받을 사람이 신청할 경우, 동·서독 국경선이 있는 검문소나 항구의 세관과 자유항에 있는 세관은 서독지역내에 있는 세관으로 물품이 운송되어 검사될 수 있도록 위임할 권한이 있음.

○ 서독의 독일연방체신청은 동·서독 우편교류 및 소포교류시 일단 상역용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반입자나 반출자의 관할세관에 이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 이의 제기가 있으며 물품의 확보를 위해 압류가 가능함.

17)지불교류

○ 동·서독 물품거래에 따르는 반입과 반출에 대한 지불은 양국의 청산은행을 통한 청산용 구좌를 통해서만 수행됨. 거래당사자 간의 현금지불과 같은 계산서의 직접결제를 비롯하여 당좌계정에의 계정과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음(인쇄물은 예외)

○ 경유무역거래가 3각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지불교류에는 특수규정이 적용됨.

4-8-2. 임가공거래(Lohnveredlungsgeschaeft)

○ 임가공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함.

- 동독에 있는 거래상대자와의 적극성 임가공거래의 시행 절차는 제4차 피점령지역 간 교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보수 및 수선을 위한 물품의 반출 역시 이에 준해 처리됨.

1) 공시

○ 임가공거래는 원칙적으로 연방경제성 장관이 연방관보에 동독으로 보낼 반출용 물품이거나 동독으로부터 들여올 반입용 물품으로 공시된 물품에만 적용됨.

- 임가공거래를 활용하여 물건을 반입 또는 반출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공시내용에 열거되어 있음.

○ 제3국 상품(원산지가 외국인 상품)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단 이와 같은 것이 공시사항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으며 허용됨.

- 단 외국상품은 서독에서 자유스럽게 유통되는 것이어야 함.

○ 공시사항 중에는 가공비용의 상한선을 지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도 있음.

2) 적극성 임가공(Aktive lohnveredlung)

○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의 개념정립상 적극성 임가공은 서독에 있는 수주인이 물품을 동독으로부터 반입한 후 유상으로 가공하거나 처리하는 동·서독지역 간의 가공·처리 거래임.

- 수주인은 서독에서 임가공하기 위하여 동독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을 위하여 '피점령지역 간 교역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서독에서 임가공된 물품을 동독으로 발송할 경우, 임가공임금이 청산경로를 통해 돈으로 지불되는지 발주인이 수주인에게 지불할 임가공임금이 해당하는 임가공용 물품을 초과로 반출하는지에 따라 물품송장 'E'가 필요한지 상품송장 'U'가 필요한지 결정됨. 이때도 '피점령지역 간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른 물품송장 발급 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함.
- 이에 추가하여 허가부처는 수주인/신청인에게 물품송장을 교부하기 전에 임가공된 물품이 실제로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반입되었는지에 대해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임가공될 물품의 반입허가와 임가공된 물품의 반송을 물품송장은 허가부처에 함께 신청함.

- 추가적으로 임가공 거래시 다음과 같은 반입허가서 'S'의 특수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3) 소극성 임가공

○ 소극성 임가공은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에 따르면 서독에 있는 발주인이 동독에 있는 수주인에게 물품을 반출한 후 유상으로 물품을 가공하거나 처리하는 동·서독 간의 가공·처리 거래임.

- 임가공을 위해 동독으로 반출될 물품에 대해서는 '피점령지역 간 교역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른 물품송장발급 신청서'인 물품송장 'U'를 신청하여야 함.
- 임가공을 위한 반출시 기입용 서식 기재란 9에 계약에 따른 가격을 기재함. 만일 계약이 없거나 기타 평가기준이 없을 경우, 가공·처리용으로 반출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구분하여 물품송장 'U'의 기재란 4와 9에 기재함.
- 동독에서 임가공된 물품을 서독으로 반송하기 위해서는 '피점령지역 간 교역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 발급신청서'를 신청해야 함.
- 동독으로부터 임가공된 후 반입할 때 기재란 7에 완제품 가격을 기재하는 바, 이 가격은 합의된 임금비용과 발주인이 반출한 물품가격과 합한 것임. 그 다음 줄에 임금비용의 몫을 기재함.

4) 허가

○ 허가부처는 반입허가 신청서와 임가공거래에 의한 물품송장 신청서가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상의 제 규정에 위배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음.

- 형식상의 하지만으로 기각되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형식상의 하자는 허가부처에 의해 정정되던지 시청자가 정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만일 임가공비용이 물품의 초과반출로 상쇄될 경우이면 허가부처는 허가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

- "임가공비용... DM는 물품의 초과반출로 상쇄됨."

○ 허가부처는 소극성 임가공거래를 위해 발급된 물품송장 'U'에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함.

- "본 물품송장에 명기된 물품은 오로지 허가조치된 임가공을 하기 위하여서만 반출됨. 반입허가서 'L' 번호... X년 X월 X일자에 명기된 상품 중 물품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량만큼을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반출할 수 있음."

○ 만일 서독에 있는 발주자가 소극성 임가공거래시 동독에 있는 수주인에게 임가공을 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반출할 경우이면, 허가부처는 물품송장에 'U'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함.

- "본 물품송장은 자유스럽게 유통되는 물품의 반출만을 위해 그 효력이 있음."

○ 허가부처는 적극성 임가공거래를 위한 반입허가서 'S'에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함.

- "본 반입허가서에 명기된 물품은 오로지 허가조치된 임가공을 하기 위하여서만 반출됨. 물품송장 'E'번호 ....X년 X월 X일자와 물품송장 'U'번호... X년 X월 X일자에 명기된 물품 중 반입허가서로 활용할 수 있는 수량만큼 동독으로 반출할 수 있음."

5) 지불

○ 임가공임금을 물품의 초과공급으로 지불할 가능성을 활용할 수 없는 한 동독에 대한 임가공임금의 지불은 청산경로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음.

- 연방산업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간 지불요구가 동일한 계약이거나 기존계약과 관련되는 한 지불관계가 상호 간에 상쇄될 수 있도록 예외적 허가조치를 취할 수 있음.

4-8-3. 경유무역거래(Transithandelsgeschaeft)

○ 경유무역거래는 동·서독 간 물품 및 용역의 상호 간 직접거래를 규정하는 베를린 협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 외환관리법에 따른 광범한 거래금지 사항 중에 경유무역거래가 들어가 있어, 경유무역거래는 허가를 필요로 함.
- 이에 관한 규정은 1961년 8월 28일자 피점령지역 간 교역 회람 제98호(1963년 3월 7일 개정)에 포함되어 있음.

1) 개념

○ 협의로 본 경유무역이란 물품이 한 국가에 적치되거나, 변경되거나, 가공·처리되지 않으면서 그 국가를 통과하는 무역을 뜻함.

- 광의로는 물품이 원산지로부터 제3국에 있는 경유무역거래인을 통해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거래를 뜻함.

○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으로 볼 때, 상기 회람 제1조에 열거된 다음과 같은 거래가 경유무역임.

- 서독에 본사를 둔 기업체가 피점령지역 간 교역 협정 이외의 방식으로 동독기업체 물품을 구입한 후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거래.
- 서독에 본사를 둔 기업체가 외국인으로부터 서독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으로써 서독으로 반입될 물품이면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한 후 피점령지역 간 교역협정 이외의 방식으로 동독기업체에게 판매하는 거래.
  - 나아가 동일한 사람이나 기업체를 통하지 않고 구입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역시 경유무역거래로 간주됨.

○ 경유무역거래는 삼각무역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성격상 피점령지역 간 교역규정과 대외무역법의 제규정 간의 한계영역에 처해 있는 거래임.

- 피점령지역 간 교역규정과 대외무역법상의 제 규정이 중복될 경우, 그것이 정확하며 일치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우면 허가부처에 서면으로 문의해 보아야 함.

○ '구매'(Erwerb)와 '판매'(Verkauf)라는 개념은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에도 대외무역법에도 상술되어 있지 않음.

- 경유무역거래를 개시한다는 것이 동독 물품을 구매한 후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나아가 동독거주민이 비자영상인일 경우에도 경유무역거래가 성립되는지와 같은 의문점이 발생함.
- '구매'과 '판매'라는 개념은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바, 따라서 경유무역대상 상품의 구매와 판매만으로 충분하며 경유무역 거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필요 없음.

2) 신청

○ 동독과 경유무역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유무역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됨.

- 서식용지는 3면으로 되어 있으며, 먹지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제1면(흰색)은 신청용지이며, 제2면(파란색)은 수표발행 보증서, 제3면(노란색)은 보관용으로서 모두 허가부처에 제출함.
- 기재란에 '구매국', '원산지'. '소비국', '판매국' 등을 기재함.

3) 허가

○ 발급된 경유무역허가에는 허가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동독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그 지불행위.
- 동독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그에 대한 지불수령.

○ 발급된 허가는 허가받은 사람이 자영상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함.

- 만일 허가받은 사람이 위임을 받은 상태이거나 2개의 기업체로부터 위임받아 동독이나 타국에서 중간거래상으로서 거래를 수행하면 허가내용에 위배됨.

○ 경유무역허가의 범위는 동독과의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기간동안에만 적용됨.

- 제3국에 있는 거래당사자에 대한 동시적 거래관계와 수평적 거래관계는 경우에 따라 대외무역법의 제 규정이 적용됨.
- 제3국(외국)과의 경유무역거래는 기타 대외무역과 마찬가지로 각종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허가통보서는 활용하기 전에 무효가 되었을 때 허가부처에 즉시 반환해야 함.

- 또한 신청자나 허가소지자가 그 활용을 포기한 때에도 즉시 반환해야 함.

4) 준수사항

○ 경유무역허가는 조건, 준수사항, 기한설정, 반려조치와 함께 발급될 수 있음.

- 동독이 원산지인 물품을 경유무역거래할 때에는 항상 물품판매시 계산서에 '경유무역상품' 또는 '원산지 : 동독'이라고 표시될 것을 전제로 허가서가

발급됨.

- 이와 같은 표시는 반드시 독일어로만 될 필요는 없고, 계산서에 사용된 외국어로도 될 수 있음.

5) 물품의 통과(Warendurcchfuhr)

○ 만일 제3국 상품(외국상품)이 서독을 통과한 후, 동독으로 운송되는 경우이거나 동독상품이 서독을 통과한 후 제3국으로 운송되는 경유무역거래이면 물품송장과 반입허가서는 필요 없음.

○ 이 경우도 내독간 청산경로를 이용하여 지불될 상품일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서가 필요함.

- 세관고지서, 국제화물운송장, 발송증명서도 필요함.

6) 지불

○ 동·서독 간 물품 및 용역거래에 따른 지불관계는 오로지 동·서독의 청산은행의 규정된 청산경로만을 통해 수행된다는 통례적이고 지배적인 규정은 경유무역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 경유무역거래에서는 통상적인 내독 간 청산지불이 허용되지 않음.

○ 동독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그 구입대금은 서독 마르크와 각종 외국화폐로 지불됨.

- 동독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독의 금융기관에 구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이 구좌를 통한 지불 역시 허용됨.

○ 동독에 판매할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은 서독 마르크나 각종 외국화폐로 수령함.

- 이 경우 내독 교류 중 청산경로를 통한 지불의 수령은 허용되지 않음.

7) 신고

○ 경유무역거래에 의한 지불에 의해 동독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동독에 있는 사람에게 지불할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있음.

4-8-4. 삼각무역거래(Dreiecksgeschaefte)

○ 국제무역에 있어서 삼각무역거래는 통례적으로 무역정책의 장애나 외환정책의 장애를 회피하면서 무역관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 경유무역거래와 마찬가지로 삼각무역거래 역시 베를린 협정에 따른 내독교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음.

- 외환관리법에 규정된 거래금지 원칙에 의거 동·서독지역 간 삼각무역거래와 관련된 기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삼각무역거래시 허가 및 유의사항은 1970년 12월 16일자 제5차 피점령지역 간 교역시행령과 동년 동월 동일자 연방경제성 장관의 공지사항으로 공표되었음.

○ 동독과의 삼각무역거래는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은 물론 대외무역법의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예컨대 서독의 한 기업체가 외국의 한 기업체와 삼각무역거래의 일환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이면 이는 대외무역법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만일 삼각무역거래의 대상품목이 서독으로부터 직접 동독으로 운송되지 않고 그 대신 외국을 통하여 운송될 경우이면 물품 운송시-서독으로부터 외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대외무역 규정을 유의해야함.
-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상 삼각무역거래란 외국의 계약 당사자로서 주소나 기업소재지를 동독이나 서독에 갖고 있지 않는 외국기업체가 직접 또는 제3국을 경유하며 서독물품을 동독으로 반출하거나 동독물품을 서독으로 반출하는 거래를 뜻함.

○ 서독으로부터 반출할 때에는 물품송장, 서독으로 반입할 때에는 반입허가서가 필요함.

1) 서독으로부터의 반출

○ 연방경제성 장관의 공지사항에 따라 베를린 협정의 세목구좌 1과 2에 있는 물품목록표에 수록된 반출에 대한 물품송장이 발급됨.

- 동독으로 상품을 직접 반출하거나 간접적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물품송장 'U'를 사용해야 함.

- 만일 서독물품이 직접 동독으로 반출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동독으로 반출될 경우이면 기업체는 반출용 통관업무(반출시 세관의 업무)를 위한 대외무역법상의 반출규정에 따라 발송세관에게 반출증과 함께 반출품을 제시함.
  - 발송세관과 물품출발지 세관에게 반출증과 물품송장 'U'를 제출함.
- 만일 물품이 발송용 반출확인과 함께 반출될 경우이면 상품송장 'U'의 제2면과 발송용 반출확인서약을 함께 발송세관에 제출함.
  - 발송용 반출선언의 기재란 I에 물품송장 'U'의 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면의 '특별기재란'에 "물품송장이 첨부됨"이라고 표시함.
- 허가
  - 허가부처는 연방산업청의 동의하에 허가서를 발급함.
  - 허가부처는 물품송장 'U'의 제1면으로부터 제6면의 이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함.
    - »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동독으로 반출될 경우이면 물품송장에 병행하여 대외무역규정에 따른 반출증이 필요함.
  - 물품송장의 타인명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음.
    - » 그러나 허가부처는 물품송장을 다른 반입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은 재허가할 수 있음.
  - 허가내용의 모든 변경은 허가부처의 동의를 필요로 함.
- 부분발송
  - 발급된 물품송장 'U'를 근거하여 물품이 부분발송으로 반출될 때에는 물품반입시 부분발송과 그 절차가 동일함

2) 서독으로의 반입

○ 1970년 12월 16일자 공지사항에 따른 반입허가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음.

- 현재 반입허가서는 국제현물시장에 있는 동과 아연에 대해서만 발급됨.
- 그 이외 물품의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반입하기 위한 매매계약이나 공장도 공급계약에 대한 반입허가서는 발급되지 않음.
- 물품이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잔류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만 그 물품에 대한 반입허가서가 발급됨.

○ 신청서 제출

- 동독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반입코자 하면 반입허가서 'S'를 신청해야 함.
- 제3국을 경유한 반입일 경우이면 반입허가서 'S'와 수입허가서가 필요함.
  - 반입허가서와 수입허가서는 동시에 신청해야함.

○ 허가

- 반입허가서나 대외무역법상의 수입허가서와 같은 필요한 허가서는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상의 허가부처나 연방산업청이 발급함.
- 삼각무역거래의 일환으로 운송될 물품은 물품교역을 위해 설정된 모든 임시통과소로 운송될 수 있음.
- 삼각무역거래로 발생되는 지불관계는 내독교역용 청산경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삼각무역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국의 허가규정과 절차규정 그 국가를 경유하여 상품이 동독으로 반출되거나 외국의 계약당사자가 그 국가에 기업소재지를 갖고 있는 제3국의 허가규정과 절차규정을 적시에 알아보아야 함. 그리고 제3국의 각종 규정이 오로지 자국상품으로만 반출을 허용하는지 외국상품의 반출도 허용하는지 알아보아야 함.
  - 나아가 동독의 수취인이 서독의 반출인인 외국인 계약당사자에게 지불해야할 지불관계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서독의 반출기업체에게 계속 전달되는데 대해서도 적시에 확인해 보아야 함.

4-8-5. 인쇄물

○ 동독으로부터 인쇄물을 반입하거나 동독으로 인쇄물을 반출할 경우에 있어서도 피점령지역 간 교역규정에 있는 원칙적인 규제규정에 따라 처리되나 서적과 잡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 간 지불의무가 내독 간에 통상 규정된 청산교류가 아닌 당좌계정용 구좌를 통해 직접적인 상쇄계산을 통해 청산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신문과 잡지의 반입은 일반허가(1968년 7월 22일)의 1971년 3월 제2차 개정안으로 용이하게 되었음,

○ 개별적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반입이나 반출절차는 연방경제성 장관의 공시를 통해 규정됨.

- 인쇄물의 반입과 반출에 관한 연방경제성 장관의 최종 유효 공지사항은 1968년 1월 8일자이며, 1971년 5월 31일에 개정되었음.

1) 반입

○ 일반허가대상 반입.

- 개별적 허가가 아닌 신문과 잡지의 반입을 위한 근거는 연방경제성 장관의 일반허가서 제1호임(1968년 7월 22일자, 1971년 3월 26일 제2차 개정).
  - 이에 따라 동독에서 정기간행물로서 판매되는 신문과 잡지는 신문 판매기업과 출판사에 의한 자체지불 또는 타인의 지불로 서독내지 서베를린으로 반출될 수 있음.
  - 일반허가의 내용에는 반입계약의 체결과 변경과 지불관계가 되어있고 위탁창고계약을 근거로 한 반입일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에 있는 구매자에 대한 반입물품의 유상판매가 포함되어 있음.

- 조건
  - 반출자의 주소, 본사의 소재지가 동독일 것. 단, 사정상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 정상 거주지가 동독일 것.
  - 반입자는 신문과 잡지의 무역업을 하는 상인이거나 출판인으로서 주소, 본사의 소재지가 서독(서베를린)일 것. 단, 사정상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 정상 거주지가 동독일 것.
  - 반입과 관계되는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된 것이어야 하며 계약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함.
  - 계약당사자 간에 신문과 잡지의 반출에 관한 지불관계가 합의되어 있을 것.
  - 베를린 협정에 따른 세목구좌2를 이용하여 지불될 것이라는 내용이 계약에 명기되어 있을 것.
  - 계약 내용에 공급자로 하여금 지불의무가 있다는 조건이 없을 것.
  - 물품 반입이 물품 반출에 대한 대가가 아닐 것.
  - 신문과 잡지는 우편이나 상거래를 통하여 유상판매된다는 조건하에 반입될 것.
- 일반허가 반입 시
  - 매매계약, 신문과 잡지의 반입량과 판매량, 지불액을 신고할 것.
  - 보관용 신고서와 신고서 사본을 5년 간 보관할 것.
- 신고
  - 동독으로 신문과 잡지를 일반허가대상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
  - 반입자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연방산업청에 신고함.
  - 신고시의 모든 계약서류(계약서 원본 또는 계약체결 제공 및 계약체결인수 선언)의 등본이나 사본을 첨부함.
  - 신고서는 3면의 기재용식으로 되어 있는 '일반허가 제1호에 따른 일반허가대상 계약체결에 관한 신고'임. 계약내용의 추가변경은 '일반허가 제1호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를 사용하여 신고함.
- 지불
  - 연방산업청에 제출한 신고서(변경신고서)의 제3면을 해당은행에 제시하여 지불관계가 성립되도록 함.
  - 개별허가대상 반입
- 1971년 2월 15일자 연방경제성 장관의 공지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쇄물을 동독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으며 반입시 다른 법률의 금지규정(형법, 청소년 유해 서적 유포에 관한 법률)을 유의해야 함.
  - 서적, 잡지, 악보(인쇄, 출판을 위임한 것도 포함).

- 각종 인쇄물.
- 벽지도.
- 우표 앨범.

– 문학작품의 반입은 오로지 문학작품의 반출로 상쇄될 수 있음

2) 반출

○ 공시

– 1971년 2월 15일자 연방경제성 장관의 공시사항에 따라 인쇄물을 허가절차를 받아 동독으로 상쇄경로(반입과 반출)로 반출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 반입허가서와 물품송장 발급신청시 수량을 표시할 필요는 없음.

– 대학, 아카데미, 기타 학술기관 간의 서적교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과 라이프찌히 소재 독일도서관 비치용 초판 인쇄물에 대해서는 허가의무가 없음.

4–8–6. 영화 필름 거래

○ 영화상영권의 발급과 취득 및 영화의 반출과 반입에 관한 절차는 연방경제성 장관의 1957년 2월 23일자 피점령지역 간 교역 회람 제55호(개정 1966년 6월 22일)에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대상임.

1) 영화상영권(Auswertungsrecht) 위임

○ 영화상영권 발급허가를 위한 신청서는 기입용 서식 '용역 허가서 A'를 작성하여 계약서 3부와 함께 허가부처에 제출하면 되며, 허가부처는 연방산업청의 동의하에 허가조치를 취함.

○ 신청서 제출 시 영화 반출허가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일에 반환하겠다는 허가서도 동시에 해야 함.

2) 영화필름의 반출

○ 영화필름의 반출을 위해서는 물품송장 'U'를 신청함

– 영화필름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 반입허가서 'S'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허가부처는 이에 해당되는 물품송장 'U'의 번호를 반입허가서 'S'에 기록함.

– 허가기간은 최장 3개월임. 필요할 경우, 물품송장과 반입허가서를 부분발송용으로 신청할 수도 있음.

○ 허가신청권자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된 서독의 기업체나 개인임.

– 시사용 복사본의 반출과 반입에 대한 허가신청서는 위에 준한 서류양식에 따라 개인이 신청해도 됨.

3) 영화상영권의 취득

○ 영화상영권 취득허가 신청서는 기입용 서식 '용역허가 P'를 작성하여 계약서 3부와 함께 제출함.

– 이와 동시에 영화필름 반입신청서도 제출함. 연방산업청이 동의하면 허가조치가 취해짐.

4) 영화필름의 반입

○ 영화필름의 반입을 위해서는 반입허가서 'S'를 신청함.

– 영화필름을 동독으로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상품송장 'U'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허가부처는 이에 해당되는 반입허가서 'S'의 번호를 상품송장 'U'에 기록함.

– 신청권자와 시사용 복사본의 반입에 관한 사안은 반출시와 동일함.

5) 영화상영권 교환

○ 영화상영권의 위임과 취득은 상호교환을 통해서도 허용됨.

– 동독지역에 대한 영화상영권 발급은 서독에서 제작된 영화에 한해서만 취해짐.

○ 영화교환 허가신청은 3부로 작성된 기입용 서식용지와 3부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됨.

6) 지불

○ 허가받은 영화상영권이나 사용한 영화상영권에 대한 대금지불은 규정된 내독교역용 청산경로를 이용하여야 함.

- 지불관계가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수행될 경우에는 예외임. 내독교역용 청산경로를 이용하여 잔여 지불관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대금지불용으로 되어있는 용역 허가서 'A' 또는 'P'를 신청해야 함.

4-8-7. 쌍무거래(Gegenseitigkeitsgeschaefte)

○ 동·서독 간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쌍무거래는 예외조치 이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피점령지역 간 교역법의 개념정립에 따르면 쌍무거래란 계약의 내용 중에 물품반입이 물품반출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계약에 따른 지불관계가 의무화되어 있는 거래를 뜻함.

○ 쌍무거래 금지규정의 예외는 다음과 같음.

- 지불관계가 없는 영화상영권의 발급과 취득에 관한 계약.
- 동·서독 동물원 간의 지불관계가 없는 동물의 교환에 관한 계약.
- 지불관계가 없는 교환경로를 통한 인쇄물의 반출과 반입에 관한 계약으로서 대응공급으로 이룩될 청산이 공시사항으로 공시된 것일 것.

4-8-8. 물품의 통과운송(Warendurchfuhr)

○ 관세징수대상 물품으로서 물품반입에 관한 대외무역 규정의 반입용 구비서류를 갖추고 제3국(외국)으로부터 동독을 경유한 후 서독으로 반입될 때에는 반입허가서가 필요 없음.

○ 대외무역 규정의 반출용 구비서류를 갖추고 서독으로부터 동독을 경유한 후 제3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송장이 필요 없음.

○ 대외무역법의 제 규정에 따라 상품의 통과운송에 제한조치가 따름을 유의해야 됨.

4-8-9. 라이프찌히 박람회(Leipziger Messe)

○ 라이프찌히 박람회에 출품하려는 기업체나 박람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는 라이프찌히 박람회,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출장소, 동베를린 지사, 서독의 상공회의소 등에서 이루어짐.

1) 여객운송

○ 박람회 입장권 및 사증

- 방문자용 박람회 입장권과 유효여권을 제시하면 동독의 각 국경검문소에서는 동독 출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발급함.
  - 박람회 방문자에 대한 사증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음.
  - 박람회 방문자용 사증은 단 1회의 출입국에만 유효함.
- 박람회 입장권은 라이프찌히 박람회 관리소측이 의뢰한 서독 내 여행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음.
  - 또한 국경검문소에서 설치된 상공은행 환전소에서 특별한 수속절차 없이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음.
- 박람회 출품자는 출품자용 박람회 입장권과 유효여권을 제시하면 동독의 각 국경검문소로부터 동독 출입국에 필요한 복수사증을 발급받는데 사증수수료는 없음.
  - 출품자가 직접 주문할 경우 라이프찌히 박람회 관리소로부터 직접 송부받을 수 있음.
  - 출품자용 박람회 입장권은 박람회 스탠드 요원, 스탠드 설치요원, 차량 운전자, 차량 보조 운전자 등에게도 발급됨.

○ 여행

- 박람회가 방문자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라이프찌히로 여행하는지에 관한 사안은 자유임.
  - 여객운송이 허가된 모든 국경검문소를 거쳐 입국과 출국을 할 수 있는데 출국시 반드시 입국했던 국경검문소를 통과할 필요는 없음,
  - 항공편을 이용하여 라이프찌히로 여행하려는 사람을 위해 서베를린 통과 역시 가능함.
  - 플란드나 체코 입국 사증을 갖고 있는 한 폴란드 입국이나 체코 입국을 위해 개방된 국경검문소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음.
- 서독에서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라이프찌히 박람회를 방문할 경우 서독내에서 체결한 차량 책임보험이 동독에서 그 효력을 갖고 있음.
  -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동독국립보험 군지부에 즉각 신고해야 된다.
  - 라이프찌히로 향하는 차량은 소화기, 견인용 로프, 경고표식용 삼각대, 구급상자, 공구상자 등을 지참해야 함.

○ 지 불 수 단

- 서독 마르크나 기타 외국화폐는 무제한 지참할 수 있음. 단, 신고서에 지참 물품과 지불수단으로 기입해야 함. 지참했던 지불수단 중 신고액으로부터 최소환전액을 제한 나머지를 반출할 수 있음.
- 상공은행 환전소는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 환율 1:1로, 그리고 외국화폐에 대하여서는 동독에서 비상업적 지불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해당 환율에 따라 환전해 줌.
- 박람회 개장 기간 중 최소 환전액은 매일 25 DM, 박람회 기간 이외의 동독체류 기간 중에는 매일 10 DM을 상공은행 환전소에서 교환해야 함.
  - 일단 의무적으로 환전된 금액은 다시 환전할 수 없음.
  - 도착일과 출발일을 합쳐서 1일로 계산됨.
- 박 람 회 입 장 권 매 표 소 로 부 터 의 무 환 전 용 과 등 가 인 지 불 용 바우처(Voucher)를 구입할 수 있음.

  - 사용하지 않은 동독 마르크는 라이프찌히의 환전소로부터 다시 환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최소 의무 환전액과 바우처 지불액은 예외임.
- 서독 은행이나 기타 외국은행이 발행한 수표 등은 오로지 라이프찌히 상공은행 본점과 외국인 미팅 포인트에서만 환전해 줌.

○ 숙소

- 호텔, 간이호텔, 민박 등 숙소 소개는 일반적으로 동독의 여행사만이 대행함.
- 사전예약, 호텔예약증도 발행됨.
- 박람회 방문자는 라이프찌히시나 인근에 있는 친척이나 친지집에서 기거할 수도 있는데 숙소 안내 및 지정은 관청을 통하도록 되어있음.

○ 여행용 짐

- 여행자의 개인용품을 비롯하여 직업수행상 필요한 용품은 차량운행 중이나 동독 체류기간 중 필요한 것으로서 그 종류와 양으로 볼 때 여행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음.
- 액수가 큰 물품은 국경 통과소에서 지참물 및 지불수단 신고서에 기입해야 함.
- 종류와 양으로 볼 때 여행자가 목적지까지 도착하여 개인적으로 소모하게 될 식품이나 기호품과 같은 여행용 소모품 역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
- 4일 미만의 단기여행일 경우 매일 20 동독 마르크, 여행기간이 긴 경우 총 100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선물을 허가와 수수료 없이 반입 또는 반출할 수 있음.
  -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유의해야 함.
  - 상세한 내용은 '지참물과 지불수단에 관한 신고서'에 수록되어 있음.
  - 자유스럽게 태환할 수 있는 화폐나 동독 마르크를 지불수단으로 구입한 상품은 구입영수증이나 환전확인증을 제시한 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반출할 수 있음.

2) 박람회 전시상품의 운송

○ 허 가

- 라이프찌히 박람회로 운송할 상품의 규모는 박람회의 목적과 성격에 부응하며 박람회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서 출품자의 전시용 판매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것만이 원칙적으로 허용됨.
- 그 반대로 견본용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출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대량 운송과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라이프찌히 박람회 출품용 물품의 운송에는 허가가 필요함. 해당 주정부 기관에 물품송장 'U'를 신청해야 함.
- 물품송장 'U' 기재란 7(신고번호란)에 각 출품대상상품의 6단위 수치를 기재함.
- 다른 기업체의 전시대에 공동출품하는 기업체는 자체의 출품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물품송장 'U'(출품상품의 판매가 따를 경우 추가적으로 물품송장 'E')를 신청해야 함. 물품송장 'U'의 기재란 2에 공동출품자의 회사명을 기재함

ㅇ 검사용 명세서

- 국경을 통과할 때 '서독으로부터 라이프찌히 박람회를 위한 전시상품에 관한 검사용 명세서'를 동독의 감독기관에게 제시해야 됨.
  - 감독명세서에는 모든 전시상품은 물론, 설치용품, 홍보물 등도 기재해야 됨.
  - 우편을 이용한 발송일 경우 2부로 된 검사용 명세서를 발송품에 첨부해야 됨.
- 검사용 명세서 기입용 서식은 라이프찌히 박람회 관리소로부터 출품자에게 직접 우송됨.
  -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라이프찌히 박람회 관리소 지소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음.
- 출품자는 검사용 명세서 3부에 상품송장 'U'의 제4면을 첨부함. 물품송장 신청시 검사용 명세서를 서독의 허가기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물품송장 제4면에 대한 첨부물로서 허가받은 상품송장 'U'를 반환할 때 검사용 명세서를 제출함.
- 허가조치를 받은 다음 검사용 명세서의 사본을 물품송장 'U'의 나머지 면에 첨부함. 서독에서 적용되는 규정상 상품송장에 대한 특수한 명세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제출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이면(예: 상품송장 기재란이 모자라는 경우) 검사용 명세서의 사본은 신청서 제출용 구비서류로서 첨부할 수 있음.
- 검사용 명세서는 출품자(반출자)가 작성함. 이때 물품을 품목별로 요약하는 바, 예컨대 공구 1상자(150개 부품), 15개 부품으로 구성된 기계 1대와 같이 기록함.
  - 매 발송품마다(전시용품 1개가 아님) 검사용 명세서를 작성함.

ㅇ 박람회 설치용 자재, 홍보물 기타

- 박람회 스탠드 설치용 자재, 홍보자재 등은 물품송장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이러한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3부로 작성된 검사용 명세서가 필요함.
  - 생산국에서 자유스런 유통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홍보물은 박람회 전시품으로써 동독으로 반입할 수 있음.
  - 생산국에서 자유스럽게 유통되지 않는 물품(예: 자유항으로부터 온 상품)은 관세를 지불해야 됨.
- 전시상품의 운송에 관한 면세조치를 위하여 출품자는 라이프찌히에 있는 동독 세관의 박람회 담당처에 2부로 된 서면신청과 검사용 명세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됨.
- 만일 동독의 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선전용 인쇄물의 반입은 허가되지 않음.
  - 라이프찌히 박람회에 출품한 국가들과 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 동독의 법률규정과 도덕성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
  - 비인도적이거나 인종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
  - 포츠담 협정에 따른 국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 전적으로 인터뷰용으로 되어 있는 것.

ㅇ 박람회 전시상품의 매각.

- 박람회 전시상품으로서 동독으로 반입된 물품 중, 연방관보에 반출용으로 공시되어 있는 물품이면 공시의 조건에 맞게 판매할 수 있음.
- 만일 이러한 조건하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이면, 동독으로 운송할 때 사용한 물품송장 'U'의 번호를 기재한 물품송장 'E'를 지불인수용으로 추가 신청하면 됨.
- 외국상품으로서 라이프찌히 박람회에 출품되었던 물품의 매각시 청산구좌를 이용한 현금지불을 위한 물품송장 'E'는 이러한 외국상품의 반출이 특별한 공시사항으로 허용되었을 때 발급됨.
- 물품송장 'U'와 함께 라이프찌히 박람회 전시용으로 반출된 물품의 판매이득은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을 지변하는 것인 한 취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우는 물품공급에 대한 대금지불이 오로지 청산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음.

○ 박람회 전시상품의 반송

- 박람회 전시상품을 서독으로 반송할 때에는 반입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음.
- 라이프찌히 박람회 관리소가 박람회 전시상품의 반입운송과 반출운송에 관하여 발행한 안내책자에 따르면 박람회 전시상품을 발송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도록 되어 있음.
  -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또는 박람회가 끝난 다음 외국이나 서독(서베를린 포함)으로부터 반입된 박람회 전시상품의 반송, 운송, 매각처분, 입고 등에는 라이프찌히 세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
  -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검사용 명세서를 첨부해야 됨.
  - 이에 관한 신청서는 늦어도 박람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박람회 운송업자에게 제출하거나 기필코 출국 이전에 박람회 스탠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발급받도록 함.
  - 박람회 전시상품의 원만한 반송을 위하여 기간을 엄수해야함.
  - 아무런 문제점 없이 처리되려면 포장과 표식이 정연해야 함.

○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박람회 전시용품

- 박람회 전시상품을 외국으로부터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용 명세서 대신 박람회(전시회) 전시상품에 관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됨.
  - 독일어로 된 기입용 서식 2부를 매 운송품마다 타자기로 작성하여 운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함께 첨부함.
  - 박람회 전시상품은 세관으로부터 우선 통관 처리됨.
-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박람회 전시상품의 서독 내 동·서독 통과로 이용에 관한 사안은 서독의 허가부처, 상공회, 라이프찌히 박람회 프랑크푸르트 출장소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음.

○ 박람회 전시대 비용

- 박람회 전시대 비용의 대금지불에는 용역 허가서 P(소극성)가 필요함.
- 허가부처에 박람회 관련 정산서나 그 사본을 신청용 구비서류로 제출함.

4-9. 내독 간 용역 거래시 유의사항

○ 동·서독 간 용역 거래와 내독 간 청산 경로를 통한 용역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는 1951년 2월 3일 동·서독 간에 체결된 용역 거래에 관한 합의 사항(Dienstleistungsvereinbarung)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합의 사항은 베를린 협정의 별첨 사항으로 동 협정의 구성 요건 중의 하나임.

1) 법적 근거

○ 1954년 6월 26일자 피점령 지역 간 교역 회람 제27호(최종 개정 1971년 3월 23일자 제8차 개정안)에 서독에 있어서 적극적(aktiv) 용역 계약 체결과 소극적(passiv)용역 계약 체결, 용역 행위의 제공과 사용, 대금 인수와 지불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음.

2) 허가 의무

○ 동·서독 간의 용역 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일련의 거래 실무에 있어 반복되는 용역의 사용과 제공을 위하여 개별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일반 허가 조치가 허용됨.
- 반복성 용역 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별 허가는 허가 부처에 신청하면 됨.
  - 허가 조치는 개별 허가로서 또는 허가 의무가 있는 반복성 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허가 조치로서 별도로 취해짐. 특정한 적극성 용역 거래에 대하여서는 그 필요한 허가 조치가 예외적으로 취해지기도 함.

3) 위탁 창고

- 위탁 창고의 설치와 유지에 관계되는 용역 행위에 대하여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바, 피점령지역 간 교역 회람 제27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

4) 적극적 용역 행위(Aktive Dienstleistungen)

○ 적극적 용역 거래란 동독 기업의 주문에 따라 서독의 대리인, 중개인, 에이전트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허가를 받아야 됨.

○ 대리인, 중개인, 에이전트의 주거지나 기업소재지에 있는 주정부 허가부처를 경유하여 연방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함.

- 3부로 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대금 인수를 포함한 용역 행위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일반 허가 조치가 취해짐.

- 용역 행위의 공급에 대하여서는 적정한 대금 지불이 합의되어 있을 것.
- 대금 지불 조건은 상거래의 통례에 따를 것.
- 지불 관계는 오로지 청산용 구좌를 통해서만 수행될 것.
- 용역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동독의 관계 기관으로부터 지불과 관련한 허가를 받았을 것.

○ 다음과 같은 용역 행위 제공에 대하여 개별 허가나 일반 허가가 취해짐.

- 상업 상담, 기술 상담, 조직 상담 제공.
- 상업 교류에 있어서의 대리인, 중개인, 에이전트 등의 활동.
- 라이센스 제공.
- 산업용 보호권(저작권, 특허권 등), 특허, 상품, 실용신안의장, 상품등록의장, 모델 등의 사용권 이전.
- 보호 대상이 아닌 기술 공정, 설계 관련 서류 등의 사용권 이전 및 사용권 매각.
- 영화상영권 제공.
- 위탁 창고 계약의 체결.

○ 중개인이나 대리인용으로 신청자에게 발급된 예외적 허가 조치는 동독 기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합의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신청자는 대금 인수를 위해 허가서 'A'(aktiv의 첫 자)를 허가 부처로부터 받아야 됨.

- 중개인과 대리인을 위한 예외적 하가 조치는 한시적으로만 취해짐.
- 허가 조치를 연장하려면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함.
- 연장 허가서의 교부를 위해서는 소개비 인수를 위한 유효용역 허가서 'A'를 제시해야 함.
- 연장 허가서는 예외적 허가 조치와 연계되어 있음.
- 계약합의 사항의 변경은 허가 부처에 신고해야 됨.

○ 신청서 제출

- 주거지나 기업 소재지가 서독인 자연인과 법인이어야만 적극적 용역 허가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용역 행위 개시 이후 신청서 추후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5) 소극적 용역 행위(Passive Dienstleistungen)

○ 소극적 용역 거래란 서독 기업의 주문에 따라 동독의 대리인, 중개인, 에이전트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함.

○ 소극적 용역 행위에 관한 신청권과 그 수행에 따른 대금 지불 신청권을 일반 허가 대상으로서 적극적 용역 행위를 신청할 때 적용되었던 각종 원칙이 적용됨.

○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서는 일반 허가 대상으로서 허가 조치 됨.

- 특허권 사용료(신고 비용, 공시 사용, 연간 사용료).
- 상표권 사용료(신고 비용, 갱신 비용, 인쇄비, 동록 비용, 항의 비용, 이전 비용, 말소 비용, 연장 비용).
- 상품 등록 의장 사용료(신고 비용, 연장 비용).
- 상품 발송시 국경 통관에 따르는 비용(예: 동독으로 갈 상품 송장의 발급을 위한).
- 법정 비용, 변호사 비용, 공증인 비용.
- 법률공조 행위와 원본 취득에 따르는 비용.
- 신문 광고 비용.
- 철도와 차량의 책임보험으로부터의 손상에 대한 지불(동독과의 합의 사항의 기준에 따름).
- 철도 이용 상품의 운송비.
- 박람회(전시회)비용.
- 100 DM을 초과하지 않는 대금 지불.
- 내륙 선박 항행과 연계된 용역에 대한 지불.

○ 다음과 같은 용역 행위에 대한 신청은 오직 개별 허가로만 허용됨.

- 동독으로부터의 물품 반입과 관련된 용역 행위로서 반입 허가서로 충분하지 않은 것.
- 서독에 있는 기업체나 개인이 부담하게 될 물품 운송과 관련된 용역 행위(화물비, 운송비, 창고비, 통과비, 통관비, 연체비, 소개비, 운송 보험료 등).
- 운송 업체의 소득 정산 및 운영비 정산 후 남은 용역 요금.
- 수리 개선 비용과 조립 비용.
- 전문 감정인에 대한 사례비.
- 대리인, 중개인, 에이전트에 대한 사례비.
  - 연방산업청은 국민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 발급 동의를 취소할 수 있음.
- 라이센스에 대한 지불.
- 무역과 교류에 관련된 법적인 책임이나 계약상의 책임에 의한 손해 변상.
- 위탁 창고 설치에 관한 계약의 체결.

○ 동독과 외국 간의 거래 추진에 도움이 되지만 내독 교역의 범위를 벗어난 거래나 거래와 유사한 용역(예:화물 운송)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향하는 물품에 관한 용역 계약으로서 대금지불이 필요없는 경우이면 반입허가서 'S'를 필요로 함.

- 특수 규정
  - 여객 운송용 버스 교통과 이에 관련된 용역 행위의 대금 지불은 독일 연방

은행의 특수 규정에 따름, 은행 수수료, 소개비, 이자의 지불 역시 자기가 지불하거나, 타인이 지불하거나, 거래 은행의 특수 규정에 따름.

- 상품 교류시 부대비용(예: 운송비, 화물비)으로 간주되는 용역 행위로서 이미 반입 허가서 발급시 허가를 받은 것이면 용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기타 지불.

- 동독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권리자에 대한 대금 지불은 용역 행위의 합의 사항이 될 수 없음.
- 내독 교역과 내독 교류와 관련 없는 기타 지불을 위한 용역 허가 'P'는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음. 이와 같은 것은 특히 개인을 위한 반복성 급부 적용됨(예: 연금, 퇴직금, 임의성 생계비 지불 및 법정 생계비 지불, 세금 또는 기타 공과금 등).

– 신청서 제출.

- 적극적 용역 허가 신청서 제출시 적용되는 여러 규정이 적용됨.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용역 행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허가 부처에 제출되어야 함.

6) 적극적 용역 행위와 소극적 용역 행위의 공통 규정

○ 허가

– 용역 허가서 'A'와 용역 허가서 'P'의 발급과 함께 용역 계약의 체결, 용역의 제공 또는 사용, 대금의 인수 또는 지불과 같은 것이 허가됨.

– 대리인, 중개인, 에이전트에 대한 수고비와 관련되는 한, 연방 산업청의 사전 동의하에 해당 연방주의 허가 부처로부터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됨.

– 대리인에 대한 지불과 관계되는 허가서는 그때그때마다 신청하거나 1년 간을 위한 일괄 허가서/ 종합 허가서로써 신청할 수 있는데 1년 간 지불할 금액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음.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시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반환

– 허가서가 전연 사용되지 않았거나 그 중 일부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제3면과 제4면을 즉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허가 부처에 반환해야 됨.

○ 연장

– 발급된 허가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허가 부처에 제2면, 제3면, 제4면을 허가 연장의 근거로써 제출해야 됨.

○ 독점 구매 계약 및 독점 판매 계약.

– 동·서독에 있는 대리인 간의 직접 매매와 관련된 독점 구매 계약이나 독점 판매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이 외환관리법상 재산가치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됨.

– 해당 연방주의 허가 부처에 3부로 된 구비 서류(계약서의 사본 또는 공증된 등본)와 함께 서면으로 된 신청서(기재 형식 자유)를 제출하면 됨.

7) 내륙 선박 교류

○ 동·서독 간 경제 교류시 내륙 수로 상의 선박 교류는 합의된 통과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서독에 선적을 둔 선박은 현재 연합국 점령군의 유효 규정 때문에 내독 항행 허가서(Permit)와 더불어 승무원 명단을 지참하도록 되어 있음.

○ 내독 항행 허가서는 해당 수로국(함부르크와 뮌스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도 이곳에서 입수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구 내독 항행 허가서.

– 유효 계량 증명서 원본(공증된 사본이 아닐 것).

– 선적 등록 증명서 또는 내륙 항행선 등록부 등본.

– 선장의 신분증.

– 선장의 자격증에 관한 선언서.

– 선박 증명서.

○ 선박의 속도, 수면으로부터 측정한 선박의 비적재시의 최고 높이, 모터 생산 번호 역시 기재해야 함.

- 측정 장치를 새롭게 했던가, 선장의 교체, 내륙 항행선 등록부의 변경, 선주의 교체, 선명의 변경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내독 항행 허가서(Permit)를 새로이 신청해야 함.
- 선박이 동독의 국경 검문 지점에 도착하면 선주는 조세 부담 조정세(Steuerausgleichsabgabe) 납부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산액을 지불함. 납부액 계산시 취급주의 화물과 기타 화물이 구분되며, 지불된 금액에 대하여서는 영수증이 발급됨.
  - 조세 부담 조정세의 납부는 1968년 6월 11일자 '동독의 도로와 수로를 사용하는 서독 및 서베를린 기업체의 화물 운송 행위에 대한 조세 부담 조정세의 납부에 관한 규정(구동독 법전 Teil II Nr. 10)'에 근거함.
  - 모든 승무원은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1968년 6월 11일자 '동독 여권법 제5차 시행령'에 따라 동독지역 통과 여행시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베를린내의 항해시 다른 점령지역을 통과해야 될 경우이면 사증이 필요함.(실제로 사증을 2번 받아야 동베를린으로부터 서베를린으로 항행하는 경우도 있음.)
- 납부해야 될 조세 부담 조정세와 사증 발급 수수료는 선박이 동독으로 입항하기 전에 서독 지역의 국경 검문소에서 선주에게 부과됨.
  - 사전에 납부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박이 서독이나 베를린으로 재입항할 때 관할 국경 검문소에서 정산됨.
- 1965년 6월 25일 자 동독측 기관이 제정한 규정(Gesetzblatt der DDR, Teil II, Nr. 64 vom 25. Juni 1965)에 따라 서독의 선박은 동독의 수로를 항행하기 위하여 추가허가서를 지참해야 함.
- 이 허가서는 동독 교통성 수로·내륙 항행국에 신청하면 됨.
  - 현재 수수료는 매 선박당 연간 200 DM이며, 연장 시에는 100 DM임.
  - 이 이외에도 동독의 관계 기관은 선상에 있는 모든 인원에 관한 승무원 명단을 비롯하여 재고품 목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4-10. 내독 간 경제협력의 제 유형과 절차

4-10-1. 라이센스 거래(Lizenzgeschaeft)

- 라이센스 거래는 학술적, 기술적, 경제적 연구결과에 의한 라이센스의 제공(예: 특허, 상표, 등록의장, 산업의장 및 모델, 기술 노하우, 경험, 생산의 준비 및 수행에 관한 특수 지식)을 전제로 함
  - 라이센스 생산을 위한 물품의 공급 또는 라이센스 생산품의 반입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부가될 경우, 라이센스의 제공은 내독 간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라이센스 거래의 대부분은 서독 → 동독 방향이었으며 특히 허가생산(Gestattungsproduktion)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서독 기업 역시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생산성있는 동독의 기존 연구결과를 더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음.
- 라이센스 거래시의 유의 사항.
  - 기밀 유지, 지역적으로 상이한 제한 조치, 제3자에 대한 이전 불가 여부, 라이센스를 통해 얻은 추가 개발 내용에 관한 규정, 동독에서 부과되는 라이센스 세금, 제3자에 의한 보호권의 침해, 불가침 조항(Nicht-angriffsklausel) 등임.

4-10-1-1. 허가 생산(Gestattungsproduktion)

- 허가생산계약이란 학술적·기술적 연구결과 및 경제적 연구결과에 대한 라이센스의 제공과 이에 따른 생산품의 반출의무 및 (또는) 반입의무를 포괄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라이센스 제공에 대한 지불은 베를린 협정에 명기된 세목구좌 3을 이용한 청산단위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반출될 물품이나 반입될 물품의 총액으로 상계됨.
  - 허가 생산계약은 지금까지 서독→동독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음.
- 지금까지 주로 생필품 소비재 분야를 비롯하여 기술적 소비재를 중심으로 체결된 허가생산 계약물품으로는 신발, 과일쥬스, 간이음료, 화장품, 담배, 내의, 밧데리,

녹음기 등을 들 수 있음.

○ 허가생산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짐.

- 상품 생산을 위한 기계의 양도.
  - 기계의 양도는 반출품 또는 반입품의 제공으로 상계되는 무상 형식 또는 순수한 유상 형식으로 이루어짐.
  - 기계의 양도는 매매, 리스, 임대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유상 형식을 취할 때 분납 및 부분 청산도 가능함.
- 반출될 물품의 생산에 관한 확정적 합의.
  - 원자재 또는 이미 어느 정도 가공된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데 반드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어야 함.
  - 외국상품으로 반출될 경우 특수규정을 유의해야 함.
  - 만일 동독에서 생산된 물품이 서독으로 운반될 경우이면, 가공용 거치(Beistellung) 역시 가능함.
- 라이센스 생산에 의해 반입한 물품에 관한 확정적 합의.
  - 동독이 허가생산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독의 품질 좋은 생산품을 동독시장에 공급함과 동시에 서독이나 다른 국가에게 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수출하는데 있음.
  - 그러나 내독교역상 서독측에 반입 시 할당량이 지정된 상품일 경우이면 반입시 장애가 따름.
  - 따라서 서독의 계약 당사자는 서독측 반입시 계약 체결된 관할 경제기관(연방 경제성, 연방 농수산부, 연방 산업청 등)에 문의해 보아야 함.
- 허가 상품의 처리에 관한 지역적 제한.
  - 계약 내용 중에 허가 생산품이 오로지 특정 시장(예: COMECON 또는 개도국)에서만 판매될 수 있다고 확정해 놓을 수 있음.
  - 또한 라이센스 생산품이 오로지 서독의 허가권자에게만 반출될 수 있다고 합의해 놓을 수도 있음.
  - 재수출(동독에서 반입한 물품을 제3국으로 반출)이 허용되지 않음을 못 박아 놓을 수도 있음.
  - 만일 동독내 완제품 생산이 주로 서독 제품이나 외국 제품을 이용할 경우이면 원산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동독에서 상품의 재처리 정도 및 서독 원산품이나 외국 원산품의 처리 정도에 따라 반입이 가능함.
  - 한 동독 상품이 반입된 후 다른 EC 회원국으로 재수출될 경우, 각국의 보호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난점이 따를 수 있음.

○ 허가 생산 계약은 개괄 계약(Rahmenvertrag)으로서 일반적으로 허가될 수 있거나(Allgemeinegenehumigung) 연방 경제성 장관 또는 베를린주 경제성 장관에 의한 개별허가(Einzelgenehmigung)를 필요로 함.

- 만일 라이센스 제공에 대한 대금이 반출될 상품이나 반입될 상품의 총액에 전부 또는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을 경우이면 허가 생산 계약은 개별 허가가 필요함.
- 허가신청서는 연방산업청에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되 모든 계약 관계 서류의 복사본을 첨부함.

○ 만일 허가 생산 계약이 일반적으로 허가될 경우이면,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 사항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조건하에 일반 허가가 내려짐.

- 또한 일반 허가 조치는 계약 체결 16일 이내에 연방 산업청에 계약서의 복사본을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부여하고 있음.

○ 허가 생산 계약에 따라 계약 유효 기간 중 합의된 물량의 반입 및 반출이 확보되어야 할 경우에는 연방 경제성 장관에 의한 행정 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 제38조가 의미하는 확약이 필요함.

- 신청서는 개별 허가 신고서와 함께 연방산업청이 제출함.

○ 허가 생산 계약의 허가 사항에는 계약 체결만 포함되어 있지 그 수행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계약 수행에 의한 특정 계약의 허가에는 내독 간 물품 교류 및 용역 교류에 관한 각종 규정이 준용됨.

○ 물품 거래시 유의 사항.

- 반출시(예: 원자재, 반제품, 견본 및 시품, 기계의 양도).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내독 교역 시행령에 따른 개별 허가의 대상임.
    - » 라이센스 생산을 위한 기계양도(기계양도의 대금이 상계용으로 반출될 상품이나 반입될 상품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을 것).
    - » 일반 허가 제2호의 상품 목록에 없는 상품(주로 금수품) 또는 일반 허가의 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예: 지불 기한이 반출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물품)
  - 개별 허가는 상품송장 기입용지와 함께 기업체 소재지 관할 주정부 기관에 신청함.
  - 상품송장과 함께 허가된 상품은 단 1회의 발송 또는 수회의 부분발송으로 동독으로 운송될 수 있음.
    - » 부분발송의 경우, 상품송장을 한 세관에 제출한 다음 매 부분 발송마다 '부분발송용 상품송장'이라 기입하고 기입용지에 기재된 지시에 따름.
  - 일반허가는 상품의 종류와 반출동기에 따라 반출은 일반허가 제1호 또는 일반허가 제2호로서 허가됨.
    - » 이와 같은 2가지 일반허가는 일반허가 제1호의 경우 반출시 부대 서류가 필요 없는 반면, 제2호의 경우 항상 부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구분됨.
    - » 기타의 경우 상품은 일반허가 제2호용 상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임.
  - 일반허가 제2호에 따른 발송일 경우, 매 발송시마다 반출자는 상품 송장을 기재해야 하는 바, 그 내용은 개별허가용 상품 송장과 거의 구분되지 않음.
    - » 매매계약과 같은 특정사안은 계약체결 16일 이내에 연방산업청의 기입용지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함.
  - 만일 견본이나 시험용, 포장재, 서류철, 기업관련 서류의 반출일 경우라면 일반허가 제1호를 이용할 수 있음.

- 반입 시.
  - 반입대상 상품이 공시사항(어떤 상품이 어떤 조건으로 반입허가 되는지를 표시하는 연방경제부의 관보를 통한 공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이면 내독교역 시행령에 따른 개별 허가를 신청해야 함.
    - » 주로 섬유제품, 철강, 농산물과 같은 생산품이 그 대상임.
    - » 나아가 일반허가 제 3호의 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상품이 반출되기 전 30일 이상에 달하는 선불 조건으로 구매하는 경우)이면 개별허가를 신청해야 함.
    - » '반입 허가 발급 신청서'라는 기입용지를 이용하여 허가를 신청해야 함.
  - 상품의 종류와 반입동기에 따라 일반허가를 받은 상품은 일반허가 제1호 또는 일반허가 제3호에 따라 처리됨.
    - » 만일 일반허가 제3호의 경우 매매계약을 근거하여 반입될 때에는 상품은 일반허가 제3호용 상품목록에 수록되어 있어야 함.
    - » 신고서 및 처분서류로서는 '일반 허가 제3호에 따른 반입 설명서'라는 기입 용지가 있음.
  - 견본이나 시험용, 포장재, 서류철, 기업관련 서류의 반출일 경우이면 일반허가 제1호를 이용할 수 있음.
  - 반입수속을 위하여 반입허가서의 제2면이나 반입설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함. 제2면은 사전에 제출할 수도 있음.
    - » 여러 개의 국경검문소를 거치는 반입일 경우, 반입자의 관할 중앙세관의 허가를 받고 반입 허가서나 반입 설명서의 제2면(원본)을 Helmstedt 국경검문소에 제출하고 기타 국경검문소에 복사본을 제출함.
  - 반입자측으로 볼 때 허가생산에 있어서는 서독 시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물량과 가격으로만 허가된다는 점 때문에 난점이 따를 수 있음.

» 반입 물량은 이미 설명한 바 있는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연방경제성 장관의 확약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음.

» 만일 이와 같은 관계기관의 확약이 없을 경우에는 상품의 할당량이 정해 있거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허가 생산 계약이란 원칙적으로 고려될 수 없음.

» 이 경우 동독은 허가 생산의 범위 내에서 반출 할당량을 결정함.

○ 허가 생산에 따르는 용역 거래시 유의 사항.

– 허가 생산의 일환으로 각종 용역 제공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선전, 정비 및 고객 서비스, 라이센스의 취득 및 제공, 상업 상담, 기술 상담, 조직 상담 등임.

• 만일 이러한 용역 제공이 물품 거래의 부대 사항일 경우에는 이미 물품의 반입 및 반출 허가와 함께 허가됨.

• 자영업자에 의한 새로운 용역 제공일 경우에는 통보 제3호에 따라 허가 조치가 취해지는 바, 경제성 공시에 의해 열거된 대부분의 용역 제공은 일반적으로 허가 됨(신고 서류 역시 불필요).

– 개별허가가 필요한 일부 용역 제공: 중개업, 상업 상담, 기술 상담, 조직 상담, 동독에 있는 사람에 대한 라이센스 제공(이때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금수품 조항이 저촉되지 않는지 유의해야 함).

• 개별 허가는 '용역허가 발급신청서'라는 기입용지를 사용하여 기업체 소재 주정부 경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 이때 유의사항은 품질수준, 품질검사, 인력의 교육, 기술보좌관, 시장제한, 동독내의 허가세 등임.

4–10–2. 생산 협력(Produktionskooperation)

4–10–2–1. 임가공(Lohnveredelung) 및 수선(Ausbesserung)

○ 임가공(Lohveredelung)이란 일반적으로 독일 민법 제63조가 의미하는 청부계약(Werkvertrag)을 뜻하는 바, 반입자가 새로운 생산품이 생산될 소재를 제공하면 임가공자가 이에 필요한 보조재를 제공하여 필요한 공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임.

○ 임가공과 수선은 임가공으로 새로운 상품이 생산됨에 반해 수선은 상품의 원형이 유지되면서 가공된다는 점에서 구분됨.

○ 내독교역에 있어서 임가공과 수선은 서독에 있는 사람과 동독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수행되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를 말함.

– 물품이 서독으로부터 동독에 있는 수주자에게 반입되어 수주자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가공·처리되도록 할 때(적극성 임가공 및 적극성 수선).

– 물품이 가공·처리된 후 원산지(Herkunftsgebiet)로 반송될 때.

○ 임가공은 일종의 협력으로 간주되는 바, 그 이유는 임가공이 대부분 장기적 관계유지의 기반 위에서 수행되기 때문임.

– 대부분의 경우, 기초재 이외에 기술 보조재 및 기계 역시 함께 공급됨.

○ 수선 계약도 장기적 거래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며 협력으로 간주되나, 장기적인 반출 거래나 반입 거래의 전단계일 경우가 허다함.

○ 임가공은 예외 없이 개별허가를 받아야만 됨.

– 또한 임가공은 항상 동·서독 간 양쪽으로 물품 이동이 따르는 교역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운송 허가(상품 송장과 반입 허가서 또는 반입 허가서와 상품 송장)가 필요함.

○ 반출 및 반입을 위해 가공·처리될 상품은 임가공될 수 있다고 공시되어야 함(일반허가 또는 연방경제성의 공시를 통해).

○ 적극성 임가공은 사실상 금수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이 허가대상이며 외국 상품의 적극성 임가공 역시 마찬가지임.

ㅇ 반입자의 입장으로 볼 때, 반입이 일반적으로 허가되었거나 공개적으로 공시되어 있으면 적극성 임가공이 허가됨(즉 총액제한이나 물량제한을 받지 않음).

- 그러나 할당량이 정해진 상품은 원칙적으로 임가공되지 못하며 또한 외국상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임.
-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 조건별로 허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시에는 특히 노동시장정책 및 무역정책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함.

ㅇ 소극성 임가공의 경우 특히 원산지를 검토해야 되는 바, 과연 임가공된 상품이 동독이 원산지로서 표시되는지, 아니면 외국이 원산지로서 계속 보전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EC 회원국으로 재수출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임.

- 외국상품의 소극성 임가공의 경우, 위탁 가공된 상품의 반출은 관세법상 자유롭게 허용됨.
- 그러나 동독이 원산지인 내독 교역 상품은 기타 EC 회원국에의 재수출이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ㅇ 베를린 협정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임가공 거래의 위탁 가공 임금은-원래 일종의 용역이기는 하지만-베를린 협정 상품구좌(세목구좌 1과 2) 또는 적극성 임가공의 경우 구좌 S를 통해 지불되어야 함.

- 그러나 공시사항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임가공 비용이 가공·처리된 상품의 수회에 걸친 반출 내지 반입을 통해서 또는, 임가공으로 수행된 부산물의 위임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될 수도 있음.

ㅇ 임가공은 경제기관의 동의하에 완전거래(Vollgeschaeft)로서 수행될 수 있는 바, 이는 즉 임가공될 상품의 판매 또는 구입 그 반대로 임가공된 상품의 구입 또는 판매를 뜻함.

- 이러한 경우, 반출과 반입에는 일반 허가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될 수도 있음.

ㅇ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볼 때 임가공은 용역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는 바, 즉 소극성 임가공의 경우 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세무서에게 임가공대금의 5%에 상당하는 경감청구권(Kuerzungsausspruch)이 있음. (통상 세무서가 '완전 거래' 형식의 용역으로서 취급된다고 보기 때문인데 계약체결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적극성 임가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음.

ㅇ 베를린 협정의 일환으로 처리되는 임가공 거래 이외에 소위 3각 무역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임가공도 있음.

- 이와 같은 임가공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 동독으로부터 상품을(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서독으로 운송한 후 서독에게 임가공하여 EC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반출하는 거래를 뜻함.
- 이러한 거래는 자유롭게 유통되는 경화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됨.

ㅇ 수선은 임가공과는 반대로 공시에 의한 저촉을 받지 않음.

- 외국이 원산지인 상품의 적극성 수선에 관한 공시에는 총액이나 물량의 제한이 없음(이는 단지 안내의 성격일뿐임).

ㅇ 유상 적극성 수선(외국 상품 제외).

- 유상 적극성 수선은 일반적으로 허가되거나 개별허가를 받고 처리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구분은 수선된 상품의 해당 반출절차에 따라 결정됨.
- 적극성 수선을 위한 상품의 반입은 항상 일반허가 제3호에 의한 반입 설명서에 따라 수행됨.
- 수선된 상품의 반송은 일반허가 제2호의 상품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상품으로서 일반허가 제2호의 상품송장이 있는 상품이면 됨.
- 기타 상품은 내독교역 시행령에 입각한 상품송장을 신청해야 하며(금수품 조항) 반입 전에 반출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유상 소극성 수선(외국 상품 제외).

- 동독으로의 상품 운송은 상품이 일반 허가 제2호의 상품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한 일반적으로 허가됨. 기타의 경우에는 내독교역 시행령에 입각한 상품송장을 신청해야 됨. 개장된 상품의 반입은 일반적으로 허가되며 '일반 허가 제3호 따른 반입 설명서'와 함께 수령 됨.

ㅇ 외국 상품의 수선.

- 외국 상품의 적극성 수선과 소극성 수선에는 항상 개별 허가가 필요하며 동·서독 어느 방향으로나 허가됨. 다만 금수품의 경우 적극성 임가공은 물론 소극성 수선 역시 제한조치가 따름.

4-10-2-2. 위탁 조립(Auftragsfertigung)

○ 위탁 조립(Auftragsfertigung)이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견본, 모델, 노하우를 따라 그대로 생산된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뜻함(대부분의 사안에 걸쳐 이 이외의 부품, 기계, 장비의 지원도 따름).

- 내독 교역에 있어서 이러한 계약은 통상 청부반출계약(Werklieferungs-vertrag)이라 일컬어짐.

○ 청부반출계약은 구매계약이나 판매계약과 마찬가지로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됨. 이러한 계약은 상품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 허가를 받거나 개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계약시 유의사항은 품질수준, 품질검사, 손해에 대한 책임, 기밀유지, 공급기한, 상표보호 등임.

4-10-2-3. 공동 생산(Koproduktion) 및 전문화(Spezialisierung)

○ 공동생산(Koproduktion)이란 각 당사자가 최종생산품의 일부 또는 중요한 요소를 생산하는 협력을 뜻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은 당사자 중 1명 또는 양측이 제공할 수 있음. 최종생산품은 당사자가 각각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할 수 있음.

○ 전문화(Spezialisierung)란 각 당사자가 특정 생산 프로그램 중 일부만을 맡아 생산한 후 다른 당사자와 교환하여 양측을 위한 생산품을 완성시키는 것을 뜻함.

○ 이러한 거래는 허가절차상 구매 또는 판매와 동일함.

○ 이러한 거래시 유의사항은 공급기한, 품질보장, 시장에 관한 합의, 생산 및 결함에 대한 책임, 계속개발에 관한 합의, 공동 판로개척, 상표보호,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진출시 '이중 명칭(Doppelname)' 사용 등임.

4-10-2-4. 가공용 거치가 따르는 구매와 판매

○ 내독교역에 있어서 가공용 거치(Beistellung)란 첨가물(Zutaten) 또는 기타 부산물(Nebensachen)의 추가로 정의되는데, 한 생산품의 생산자가 새로운 물건이 생산될 자재(Stoff)를 제공하거나 구입하고, 반입자가 단지 첨가물이나 부대사항을 제공하면 가공용 거치에 따르는 구매가 성립하게 됨.

- 가공용 거치가 따르는 구매와 임가공은 거의 구분하기 힘든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명인 바, 과연 진정한 협력인지의 여부는 계약 기간에 달려 있음.
- 가공용 거치란 통상 특히 허가생산과 임가공에 있어서의 복합적 협력 생산 계약의 중요한 과정임.
- 가공용 거치와 더불어 최종 생산품의 품질달성에 필요한 특정한 기술적 생산방법 내지 첨가물 배합 방식이 보장되도록 함.

○ 가공용 거치에는(일반적 허가나 개별허가를 받는) 반입이나 반출의 허가에 입각한 처리에 관계없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함.

- 만일 서독인이 가공용으로 거치할 경우에는 상품운송을 위한 상품송장을 관할 주 정부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 동독에서 가공용으로 거치될 경우에는 반입허가서를 신청해야 됨.
- 반출자 측으로 볼 때 금수품이 아닌 한 허가조치는 취해짐.

○ 가공용 거치시 해당 운송 허가를 특히 유의해야 함.

○ 외국상품 역시 가공용으로 거치될 수 있으나 관세법상 자유스런 유통 상태로 반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4-10-3. 재구매의 의무가 있는 설비 공급(Anlagelieferung mit Ruechkauf-verpflichtung)

○ 이러한 거래는 서독측으로 볼 때는 별로 의미있는 경제 협력의 형태는 아니지만 동독은 기타 동구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급거래를 자국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기업경영적 협력의 중요한 형태로서 간주함.

- 궁극적으로 볼 때 설비를 공급한 후 현지에서 생산이 가동될 때까지의 조립과정을 망라하고 있는데 설비를 공급받는 측에서는 노하우, 특허, 라이센스, 판매권 제공과 같은 각종 부수 산업 연관 효과가 뒤따르게 되어 기술 이전의 효과가 있음.
- 서독 기업체는 통상 이러한 설비제공의 결과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재구매를 통해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refinancing 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거래는 그 총액 규모가 커서 원칙적으로 신용대부에 의한 재원조달(Kreditfinanzierung), 즉 상응하는 생산품 납품자 대부(Lieferantenkredit) 또는 금융 신용 대부(Finanzkredit)에 의해 재원 조달됨.

○ 허가절차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설비 공급시 반출의 일반 규정, 특히 금수품 반출의 해당 규정을 유의해야 함.

- 공급된 설비로 생산된 생산품을 반입할 때 무엇보다도 그러한 생산품이 반입제외품이 아닌지 물량이나 가격면으로 제한조치를 받지 않는지 유의해야 함.
- 또한 생산품을 기타 EC 회원국으로 재수출할 때 문제점이 따를 가능성이 없는지 유의해야 함.

○ 이러한 설비공급과 더불어 노하우의 제공은 후일 제3의 시장을 공동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거래시의 유의사항은 쌍무거래(Gegengeschaeft), 장기적인 신용대부에 의한 재원조달, 가능한 한 반출위험과 지불위험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증 등임.

4-10-4. 장기적 반출 및 반입거래

○ 장기적인 반출거래와 반입거래는 확정계약 또는 개괄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음.

- 확정계약일 경우에는 물량전체가 총액전체를 비롯하여 계약기간 중의 가격이 합의되는 바, 반출 또는 반입이 다년 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함.
- 개괄계약일 경우, 계약당사자는 가격을 확정시켜 놓지 않은 채 일정한 연간 물량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의무를 갖게 됨.

- 해당 연도마다 해당가격이 확정되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됨.

○ 따라서 장기적인 반출계약과 반입계약은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발생시킴으로 협력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신뢰가 증진되며 일회성의 순수한 반출거래와 반입거래로부터 기업경영적 협력사례로 발전될 수 있음.

○ 다년 간에 걸친 확정계약(즉 총액, 물량, 가격에 따라 전문화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되는 바, 그 이유는 (특히 계약체결 후 24개월이 초과하는 공급기한, 일반허가의 상품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상품. 반출 후 1년 이상 유예된 대금지불 등에 대하여) 일반허가 제2호 또는 제3호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 반출계약은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내독교역 시행령에 입각한 상품송장과 함께, 반입계약은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내독교역 시행령에 입각한 반입허가서와 함께 허가됨.
- 만일 상품이 연간공시내용에 포함되어 할당량이 지정되어 있으면 장기적 허가조치는 취해질 수 없음.

○ 개괄계약(즉 원칙적으로 물량은 확정되어 있으나 가격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은 통보 제2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가되는 바,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 계약 당사자 간의 모든 구두합의사항(Nebenabreden)이 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나아가 일반허가조치는 계약체결 후 16일 이내에 연방산업청에게 계약서 복사본을 송부한다는 조건부로 취해질 수 있음.
- 해당 연간물량이나 연간총액은 제한이 다를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확약을 통해 확보되어야 함.

○ 개괄계약의 수행으로 체결된 확정적 연구계약은 공시사항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가되는지 개별허가됨.

4-10-4-1. 위탁 거래(Kommissionsgeschaefte)

○ 위탁거래는 장기적 반출거래와 반입거래의 특수한 형태임.

○ 위탁판매인은 위탁자의 상품을 자기명의로 상업적으로 판매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배당(Provision)을 받음.

- 위탁판매품은 위탁판매인이 구매인에게 합법적으로 인계할 때까지 위탁자의 소유임.
- 내독교역에 있어서 위탁거래는 예컨대 위탁창고의 개설과 연계되는 한 협력사업의 일종으로 간주됨.

○ 내독교역에 있어서 위탁창고는 서독에는 물론 동독에도 개설할수 있음.

○ 위탁창고(Kommissionslager)는 계약상 동독에서 흔히 칭하는 송하창고(Konsignationslager)와 구별해야 함.

- 송하창고는 부품의 계속적 공급을 위한 것임.
- 인도창고나 부품창고(Ersatzteillaer)는 위탁창고와 마찬가지로 만일 창고에 서독 상품(부품의 경우 20% 이내의 외국상품이 함께 공급되어도 됨)이 반출될 경우이면 용역허가로서 허가됨.
- 전적으로 외국상품이나 통과무역 상품만을 위한 인도창고와 부품창고는 연방경제성의 허가를 필요로 함(기업체의 소재지가 서베를린일 경우, 베를린 주 경제성의 허가).

○ 서독내에 있는 위탁창고는 EC 역내시장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중대한 의의가 있을 수 있는 바, 창고장부를 기장할 때 서독(서베를린 포함)시장을 위한 상품인지 기타 EC 회원국의 시장을 위한 상품인지 원칙적으로 구분되어야 함.

- 서독 시장을 위한 상품은 통과무역으로서 원칙적으로 베를린 협정의 청산거래에 따라 기타 EC 회원국의 시장을 위한 상품은 통과무역으로서 자유스럽게 유통되는 외환으로 청산되어야 함.

○ 위탁창고의 설치와 운영에는 관할 주 정부 기관의 용역허가가 필요하며 '용역허가 발급을 위한 신청서'라는 기재용지로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용역허가가 취해짐.

- 상품의 운송이 일반허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가되었을 때.
- 상품의 반출과 반입이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조건 중에 상품의 위탁창고 운송이 허가되어 있을 때(물량과 가치가 제한적으로 공시된 상품은 공시조건상 위탁창고에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음).

○ 허가의 내용에는 위탁계약, 그 수행, 상품의 창고 판매, 이익배당과 부대 비용(예: 창고 임대료)의 지불과 인수(세목구좌 3), 판매이익의 인수와 지불(세목구좌 1 및 2)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서독 내에 있는 위탁창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독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매만이 허용됨.
- 서독 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상품의 판매는 근거가 충분한 개별사안일 때 판매대금이 위탁판매인에게 지불된다는 조건하에 허용될 수 있음.

○ 상품의 위탁창고에의 운송(반출 또는 반입) 및 위탁창고로부터의 반송(반송품: Rueckware)에 대하여서는 상품거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내독간 물품교류에 있어서는 통상 반출장소가 서독일 경우 6%에 상당하는 반출부담금(Lieferbelastung)을 반출자는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 1986년 11월 25일 연방재정법원(Bundesfnanzhof)이 판례를 내리기 전까지 판매위탁의 경우, 위탁인이 위탁상품을 위탁판매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반출이 이미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었음.
- 그러나 연방재정법원은 상기 판례를 통해 반출시점을 위탁인의 위탁판매인에 대한 반출시로 보지 않고 위탁상품의 구입자에 대한 공급 시점에야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위탁자가 위탁판매인에게 물건을 반출할 때는 6%에 상당하는 세금부담의 대상이 도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했던 것임.
  - 다만 동 판례에서는 아직도 구입자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동독에 있는 수많은 위탁창고는 구입자가 곧 위탁창고의 소유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독에 있는 위탁창고에 대한 반출일 경우 6%에 상당하는 반출 부담금 과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4-10-5. 판매 협력(Absatzkooperation)

○ 독점판매계약 또는 독점대리계약과 더불어 기업체는 동독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지역에 대한 특정상품의 독점시장진출에의 권한을 인수함.

- 이러한 계약에는 그 이외의 동독생산품에 대한 선전 광고, 정비, 고객 서비스 역시 포함될 수 있음.

○ 독점판매계약의 경우, 독점판매인은 자신의 명의와 자신의 지불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함.

- 독점대리인은 서독기업체와 동독의 대외무역기업체 간의 거래만을 중개함.

○ 원칙적으로 독점판매계약은 통보 제2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가됨.

- 그러나 연방경제성은 중요한 공급자재일 경우이거나 서독 기업과 경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인 경우 개별허가로서 조치하거나 허가를 취하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음.
- 일반허가조치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연방경제성에 계약서 복사본을 우송한다는 조건부로 발급됨.

○ 독점판매계약이나 독점대리계약의 수행을 위해 체결된 확정 반입계약은 상품교류에 관한 각종 규정에 따르든지, 통과무역거래일 경우이면 통보 제1호 각종 규정에 따라야 함.

4-10-5-1. 고객 서비스 협력 및 정비 서비스 협력

○ 전문적인 생산 제품의 판매에는 정비 서비스 제공과 고객 서비스 제공과 연계될 때가 잦은데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은 판매인 또는 구매인이 제공할 수 있음.

- 동독에의 판매시 동독이 보증서비스 제공과 고객서비스 제공을 인수하도록 합의되는 것이 흔한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계약당사자는 고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주요 내용.
  - 반출의 설치 및 가동.
  -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
  - 결함 발생시의 결함 제거.
  - 운용중 수리와 정비에 관한 수행 요령 교육.
  - 부품 창고의 설치.
  -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동독내 기업체의 선정.
- 고객 서비스 요원의 교육.
  - 교육은 원칙적으로 판매인의 의무이며 이 때 교육은 서독이나 동독에서 실시할 수 있음.
  - 교육이 서독에서 실시될 경우, 서독 기업체가 동독출신 전문직에 대한 숙소, 전문서적, 일당 및 기타 교육비용을 부담함.
  - 교육이 동독에서 실시될 경우, 서독 기업체가 서독출신 전문직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함.
- 부품 창고
  - 서독 측 판매인은 동독기업체에게 반출된 기자재의 부품과 마모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부품과 마모품의 정산은 수리가 보증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무료 또는 유료로 수행됨
- 기술관련 서류.
  - 고객 서비스 공장에 필요한 정비지침과 기계와 기자재의 기타 기술적인 설명서와 함께 갖추어 줌.
- 기밀 유지.
  - 고객 서비스 공장은 활동 중 모든 정보를 기밀에 입각하여 취급할 것과 제3자에게 유출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

○ 고객 서비스 계약은 통보 제2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가되며 일반허가는 계약체결후 16일 이내에 계약서의 복사본을 연방산업청에게 발송한다는 조건 하에 취해짐.

- 부품 창고의 설치와 유지는 통보 제3호의 제13조(위탁창고의 설치와 유지)에 따라 용역허가로서 발급됨.

○ 상품의 부품창고에의 운송은 일반허가 제2호에 따른 상품송장과 함께 수행되거나 개별허가대상 상품일 경우이면 내독교역 시행령에 따른 상품 송장과 함께 수행됨.

- 판매 이득은 세목구좌 1 및 2를 통해 접수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통보 제2호가 의미하는 20%에 상당하는 외국상품의 공동반출은 무관) 통과무역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연방경제성(또는 베를린 주 경제성)의 허가를 필요로 함.

4-10-5-2. 마케팅 분야와 매니지먼트 분야의 협력

○ 내독교역에서는 마케팅 및 매니지먼트 상담에 관한 계약은 지금까지 흔치 않았음.

○ 그러나 동독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마케팅 문제점으로 볼 때 마케팅과 매니지먼트는 앞으로 그 의의가 더욱 커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계약당사자 간에 특정한 용역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바, 그 분야는 시장조사, 시장분석, 마케팅 방안의 수립, 생산계획 및 생산품 디자인, 홍보활동 등이 있을 것임.

○ 이러한 급부제공은 서도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한 통보 제3호에 따라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며 기타의 경우 동독인력이 서독내에서 상담활동을 하지않는 한 일반적으로 허가됨.

4-10-6. 제3국을 통한 협력(Drittlandkooperation)

○ 제3국에 있어서의 협력은 주로 공동 프로젝트 및 투자설비의 공동설치로 구성되며 동등한 권한이 있는 당사자 간의 컨소시엄으로서 계약상 합의될 수 있음.

- 실제로 이러한 협력은 당사자 중 한 명이 기업 전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다른 한 명은 준공급자(Subliferan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잦음.

- 이러한 협력은 계약 당사자의 훌륭한 기술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든가, 한 당사자의 우수한 시장진출을 보다 유리하게 활용하는 등 양측에게 모두 장점이 있음.

○ 예컨대 기존의 대리점망과 판매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제3국 시장 개척용 특수 판매협력의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추진된 약간의 제3국 관련 협력은 거의 대부분 개도국에 있어서의 공동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임.

- 이 점에 관한한 경험적으로 보아 제3국의 경제상태에 따라 재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서독측 기업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시 동독 기업이 총책임을 맡을 경우, 제3국에 있는 발주자에 대한 동독 자체의 지불 청구권 대신 동독내 당사자에 지불청구권이 부여되도록 해야만 할 때는 계약시 'if and when'과 같은 조항을 피해야 될 것임.

○ 지금까지 제3국 관련 내독 간 협력은 이집트, 알제리, 그리스, 이라크, 모로코, 나이제리아 등지에서 있었음.

○ 제3국 관련 협력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의 보증(Hermes 보증 내지 신탁업무 보증)으로만 수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신탁업무 주식회사(Treuarbeit AG)에게 문의하면 됨.

○ 제3국 관련 협력시 특히 지불 - 베를린 협정의 청산단위를 통한 지불 또는 외환에 의한 지불-은 운송경로에 따라 허가조치가 취해짐.

- 상품이 제3국 시장의 프로젝트를 위한 것으로서 사전에 동독(또는 서독) 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반출과 반입은 청산단위로 처리될 수 있음.

- 만일 상품이 직접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이면 이러한 거래는 자유스런 외환으로 처리됨, 동독(또는 서독) 지역이 운송기술상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단순히 거쳐가는 경우에도 동일함(예: Hamburg항이나 Rostock항을 통한 선적).

- 상품과 용역의 공급 중 일부는 제1호에 따라 처리되고 일부는 제2호에 따라 치리되는 거래의 경우이면 해당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리 처리되어야 함. 단 전체 거래의 5%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반출량 전체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치리되어야 함.

○ 제1호와 제2에 따른 반출과 반입에 대한 허가는 동독과의 물품교류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에 따라 취해짐.

- 제2호의 경우 동독과의 거래 및 자유스런 통화에 의한 지불에는 관할

주립은행의 허가를 필요로 함.

- 상품수출에는 대외경제법(Auessenwirtschaftsrecht)의 반출규정이 적용됨.

○ 만일 제3국 관련 협력과 관계되는 공급과 지불이 순수한 대외무역거래, 즉 수권국에 대한 직접공급으로서 처리될 경우이면 내독 간 물품교류와 용역 거래의 매상고 처리에 관한 매상세 제26조 제4항의 행정규정은 무관함.

4-10-7. 연구와 개발에 관한 협력

○ 이러한 협력은 경험교환 및 의견교환과 같은 단순한 형태로도 성립되나, 내독교역의 일환으로 정보와 경험과 전문가의 교환을 상설화하는 것이 중요함. 예컨대 장기적인 반출계약과 반입계약 또는 허가생산과 같은 기타 협력과 연계시켜 볼 수 있음.

○ 연구와 개발에 관한 협력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협력인데 생산을 원할케하고 응용기술상의 문제점을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이 주요 사안임.

- 지금까지 이러한 협력은 오로지 서독→동독의 방향으로 극소수의 기업체에 의해서만 실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독내 협력가능 당사자 및 동독의 실용적 연구결과가 서독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동독내에 괄목할만한 자체 연구능력이 있고 그 중에는 매우 훌륭한 연구결과까지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음.

- 1987년 동독과 체결한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Abkommenueber die Zusammenarbeit auf den Gebieten der Wissenschaft und Technik)에 서독측에서는 단지 학술연구소만이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경영적 차원에 있어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이 많음이 시사되고 있음.

○ 협력사업은 비단 비용의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가까운 장래에 분명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인 바, 그와 같은 것으로서는 동독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던가 동독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같은 분야를 실례로 들 수 있음.

○ 중요한 정보제공자 및 상담상대역으로서는 국영 콤비나트 이외에 동독학술원(연구조직부) 등이 있음.

- 동독학술원 연구조직부는 연구와 개발에 관한 발주목록을 비롯하여 동독의 모든 학술연구기관의 학술용역에 관한 목록을 발간한 바 있음(1988년에 처음).

- 동독 국제 허가무역 중앙사무소(Das Zentrale Buero fuer inter-nationale Lizunzhandel der DDR) 역시 협력관계의 주요 기관인 바 대학과의 접촉을 중개하는데 대학과의 직접계약 체결도 가능함.

○ 이러한 연구협력은 동독인이 서독에게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동독에서 제공하는 한 허가절차상 일반적으로 허가됨.

- 서독내에서의 급부제공에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 때에는 금수품 관련여부조항을 배려해야 할 때가 잦음.

○ 계약시의 유의사항으로는 협력사업의 명확한 한계구분, 새롭게 얻은 지식의 이용권, 정기적인 상호 보고, 신고절차에 관한 합의, 보호대상 지식의 활용과 적용, 기밀유지 등임.

4-10-8. EC 역내시장 실현 이후의 기업 경영적 협력

○ EC 역내시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급자, 즉 서독의 기업체와 EC 회원국의 기업체는 물론 제3국의 기업체에게 새로운 기본여건을 마련해 줄 것인 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일 역내시장으로서 새로운 역동력이 일어나게 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증가시켜 줄 것임.

- 자국경제를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EC 역내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성과를 거둘 것이 틀림없는 바, 이러한 대외무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국가 중에는 동독 역시 포함되는데 동독 자체의 발표에 따르자면 사회 총생산의 약 50%가 대외무역으로 달성되고 있음.

○ 지금까지 기타 EC 회원국 내에서의 동독의 대외무역적 성과는 별로 크지 않음.

- 1988년도 EC 회원국(내독교역 포함)에 대한 전체 매출액은 약 170억 DM이었고 그 중 83%는 내독교역이었음.

- 동독의 제2 수출대상국인 프랑스에게는 단지 8억 DM 규모의 상품만이 수출되었음.
- EC 역내시장에 대한 무역관계의 증가는 동독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으며 동독은 관계개선을 위한 시장 활동을 매우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
- 이와 같은 관계로 볼 때 서독 기업체는 동독과의 양호한 관계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기타 EC 회원국의 시장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말하자면 중개자로서 등장하면서 동독과의 새로운 협력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 협력사업의 새로운 가능성

- 기업경영적 협력사업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전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임.
- 내독교역이 동독에 의해 기타 EC 회원국과 무역을 함에 있어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동독 생산품을 구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비롯하여 관세 면제 및 농산물 규제 면제와 같은 내독교역의 특수한 장점이 다른 EC 회원국에 대한 계속 판매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따라서 기타 EC 회원국의 시장으로 동독생산품이 진출한다는 것은 통례적으로 내독교역을 능가하여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각종 협력형태와 협력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널리 상존하고 있으며 EC 역내시장의 특수성 및 동독기업체의 EC 역내시장에 대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다음과 같은 것에 비중을 둘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기술규범과 기술수준에의 적응을 위한 협력.
- 시장분석과 상담을 위한 협력.
- 시장개척, 시장처리, 시장전력의 개발을 위한 협력.
- 판촉중개기능 인수를 위한 협력(예: 중앙식 창고유지, 중앙식 대리 기능, 중앙식 마케팅, 중앙식 고객 서비스).
- 제3국 관련 협력 등임.

5. 우편·통신 교류

5-1. 협상 및 주요 쟁점

○ 이 분야에 있어 동서독 간 최초의 조약상 합의는 1970년 4월 29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명시적인 합의가 있기까지 쌍방논의는 1966년부터 시작되었음.

- 1966년 말 동독은 내독 간 우편 및 전화교류 분야에서 서독에 비해 동독측이 더 많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와 연체이자 등을 합쳐 100만 마르크에 달하는 지불요청을 제기하였음.
  - 동독은 동독이라는 국가의 독립성을 주장하여 국제적 기본요율에 따라 정산해 줄 것을 요구했음.
- 당시 서독의 연방체신성 장관은 국제적 기본요율에 따라 정산하라는 동독의 요구를 거절하였음.
  - 연방체신성 장관은 만국우편연합(Weltpostverein)과 국제전화연맹(Internationale Fernmeldeunion)의 각종 조약과 의정서에 따라 동·서독은 독일이라는 단일국가로 간주되므로 국제적 기본요율에 따른 정산을 할 "여지가 없으며", 동독 자체가 1966년 12월 31일까지 AWP(연합국 우편·통신분야 정산실무위원회 : Allied Working Party)의

정산교류체제에 가입하여 그러한 방식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승낙할 수 없다고 하였음.

- 연방체신성의 견해에 따르면 동독이 제기한 지불요구에는 전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미 당시의 시점에 전체 계산액의 40%에 달했던 연체이자 지불요구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관례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제법규"에 대한 위반으로 받아들여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체신성은 동독에게 적정한 비용보상과 내독 간 우편 및 체신분야에서 시급한 상황개선을 위해 행정적 차원의 전문가 회담을 개최하자고 수차에 걸쳐 제안하였음.

- 그러나 동독이 서독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서독의 독일연방체신청(Deutsche Bundespost)은 비용보상을 위해 1967년도 분 1,690만 DM을, 1968년도 말에, 1968년도 전반기 분 510만 DM을 1969년도 2월에 스스로 송금조치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지불액은 동독이 요구한 지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
  - 실제로 동독이 독일연방체신청에 요구한 지불액은 1948년도부터 1968년 말까지 11억 마르크, 서베를린시에 대한 지불요구액은 7억 마르크에 달했음.

○ 동독이 1969년부터 협상거부자세를 포기하자, 1969년 9월 19일부터 동·서독 간 체신회담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회담의 결과 1970년 4월 29일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우편 및 전화교류에서 상호 수행된 활동의 계산과 청산에 관한 합의문"("Vereinbarug ueber die Berechnung und Verrechnung der im Post-und Fernmeldverkehr zwischen der DDR und BRD gegenseitig erbrachten Leistungen") 이 작성되었음.

- 이 합의에 따라 서독은 동독에게 1967년부터 내독 간 우편 및 체신교류에 있어서 동독이 수행한 초과활동분에 대하여 연간 3,000만 DM을 일괄금(Pauschale)으로 지불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음.
- 이 일괄금은 1976년 말까지 적용되었으며 추후 결정에 따라 일괄금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서독은 연간 8,500만 DM을 지불해야만 했음.
- 서독이 이미 지불한 금액은 정산시 공제되었음.
- 1970년 4월 29일자 합의에 따라 1966년 12월 31일까지의 초과활동에 대한 보상액은 회담을 통해 처리하도록 되었음.
- 동·서독 양측은 국경을 통과하는 우편 및 전화교류의 수행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해오던 범위 내에서는"(제1조) 보장할 의무를 갖게 되었음.
- 동·서독 양측은 합의된 대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1971년 9월 3일에 "동·서독 체신성 대표회담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서독은 동독에게 동독이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초과활동에 대해 2억 5,000만 DM을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동독은 우편 및 전화교류 분야에서 상황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통보하였음.
- 베를린도 이 의정서에 포함되었는데, 이로써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결속에 관한 전승 4대국 협정의 법적내용이 처음으로 내독 간 합의 사항에 적용되었음".

○ 동·서독은 기본조약 제7조에 대한 추가의정서 제5항에서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전화연맹의 정관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편 및 전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에 동의하였음.

- 1972년 12월 7일에 시작하여 3년 간 24회의 회담을 진행한 후, 우편교류, 전화교류, 우편 및 전화교류에 수행된 활동의 정산에 관한 1개의 정부간 협정과 3개의 행정협정(우편교류, 전화교류, 우편·전화교류활동정산)이 체결되었음.
- 이러한 협정(이하 우편협정이라 함)은 1976년 2월 27일에 가서명, 동년 3월 30일에 서명된 후 동년 7월 1일부로 발효하였음.

○ 서독 정부는 동독과 체결했던 모든 협정에서처럼 이 협정 역시 동독에 대한 특수관계를 고려할 것과 협정내용에 서베를린을 포함해야 한다는 두가지 기본입장을 견지했음.

- 동독은 이미 기본조약에 관한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전화연맹의 회원국이 되려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냈음.

- 그러나 동·서독이 UN 산하 특별기구에 아무런 추가적인 특수규정 없이 가입할 경우, 이는 공 동·서독 우편 및 전화교류가 외국과의 교류임을 뜻하는 것이 되므로 서독측은 신중을 기했음.
- 그래서 동·서독은 이러한 특수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본조약 제7조에 대한 추가의정서 제5항 제2절에 "이러한 우편협정 내용에 기존 합의사항과 양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절차가 포함된다"고 합의한 바 있음.

– 우편협정은 바로 내독 간 특수관계의 성격을 견지한 가운데 맺어진 일종의 합의 도출이었음.

- 이 협정에는 국내규정과 국제규정이 참작되었으며 양측은 회담결과, 협정을 자국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허용되었음.
- 동독은 이 협정을 일종의 국제적 우편협정으로 평가절상코자 하였으며, 이에 반해 서독의 연방정부는 우편교류와 전화교류에 관한 국제규범은 어디까지나 "양국 간에 적정한 규정이 없는 한, 단지 보충적으로만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우편협정 역시 동독과의 우편교류가 외국과의 교류로서 간주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수하였음.

ㅇ 동·서독 간에는 우편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통례적인 "단순규정"이 실제로 계속 적용됨으로써 외국과의 교류에 따르는 일반적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음.

– 만국우편연합의 서류양식이 사용되지 않고 독일어로 된 단순화되 양식이 사용되었으며 세관신고서(Zollinhalterklaerung)도 필요없었음.

– 서독은 변함없이 외국우편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동독에 대한 일괄금 보상조치는 "전독일적인 입장에 입각한 특수법"에 따른 것이었음.

– 소포의 무게는 2kg까지 허용되었으며 봉해진 채 배달되었으며, 소화물 무게는 최고 20kg까지 허용되었음.

- 소화물표는 교환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외국과의 소포교환에서처럼 소화물표의 사용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음.

– 양 체신청은 요금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국제규정과 크게 다른 점이었음.

– 서독의 독일연방체신청은 여전히 국내요금을 적용했던 반면, 동독은 1971년 7월 1일부터 "국경통과 거래"로 간주, 외국요금에 준한 요율을 적용했음.

ㅇ 서베를린이 우편협정에 완전하게 수용됨으로써 서독지역으로부터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우편물은 동·서독 접경지역의 Helmstedt를 통과하는 철도만을 이용하던 것을 허용된 모든 선로와 도로를 이용하여 운반되었음.

– 양측은 우편물의 분실, 압류, 손상, 절취사건이 발생할 때 서로 통보할 것에 합의하였음.

–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반송의 근거를 기록하여 제시하도록 되었음.

ㅇ 서독으로 향하는 우편물의 우편번호 앞에 기록하는 국가표식으로서 서독과 서베를린은 D로 표시할 것과 동독과 동베를린으로 향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DDR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5-2. 협정을 통한 주요 합의 내용

○ 1970. 4. 29 합의.

- 기존 우편·통신교류 보장.
- 1967년부터 소급하여 우편일괄금 지급(연 3,000만 DM 지급).
- 전신·텔렉스 회선 개통.

○ 1971. 9. 30 합의

- 1966년까지의 동독측에 대한 보상액으로 2,500만 DM 결정.
- 우편배달기간, 소포 반입규정적용 간소화.
- 전화·전신·텔렉스 회선 증설, 기기의 점진적인 자동화, 칼라 TV용 지향성 방송망 구축.

○ 1976. 3. 30 합의

- 동독의 만국우편연합 및 국제전화연맹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독 간 특수규정 합의.
- 동독의 국제기구 가입에도 불구, 양독 간 우편·통신교류의 특수관계 유지 합의(외국과의 교류가 아님, 요금정산시 국내요금 적용, 세관신고서 불사용 등).
- 26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1개의 정부 간 협정, 3개의 행정협정 체결.
- 서독과 베를린 간 통과 우편·통신교류 개선.
- 서독 국내 법령 개정.
  - 동독과의 우편·통신교류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ueber den Post- und Fernmeldeverkehr mit der deutschen Post der DDR, BGBI II 1976 S.633 = AmtsblVfg 445/1976).
  - 동독과의 우편·통신교류시의 기본요금에 관한 시행령(Verordnug ueber die Gebuehren im Post- und Fernmeldeverkehr mit der Deutschen Post der DDR, BGBI I 1976 S 1400=AmtsblVfg 445/1976, 1988년 현재 통용되고 있는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우편분야는 AmtsblVfg 967/1981, 전화·전보분야는 205/1988이 있음).

○ 1977. 10. 19 합의.

- 우편일괄금을 8,5000만 DM으로 증액(1977- 1982).
- 전화회선 증설, 자동화.

○ 1983. 11. 15 합의.

- 우편일괄금 2억 DM으로 증액(1983-1990).
- 우편배달기간의 단축.
- 전화 회선 증설.

○ 1983. 3. 15 합의.

- 서독 - 베를린 간 디지털식 지향성 방송망 구축.
- 서독 - 베를린 간 광섬유 통신망 구축.

○ 양독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독 직전까지 개선이 안 된 사항들.

- 우편배달 기간의 단축문제.
- 우편 분실·반송 건수를 줄이는 문제.
- 서독의 통화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부족한 전화·전신 회선수 증설 문제.
- 서독과 베를린 간의 통과우편·통신교류 장애문제.

5-3. 구체적 교류 사례

5-3-1. 우편(서신·소포) 분야

○ 내독 간 서신교류는 여행교류, 방문교류, 청소년교류 등의 인적 접촉 분야와는 반대로 동독측에 의해 완전히 단절된 적이 한번도 없었음.

- 동독정부로서 인적 왕래 없이 국경을 넘나들므로, 체제에 비교적 부담이 덜한 교류분야였음.
- 과거 동독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서신검열과 같은 불미스런 개입을 제외하고는 서신교류는 거의 아무런 장애 없이 진행되었음.
- 물론 내독 간 서신교류에서 국제적 관례를 벗어난 배달기간의 장기화라는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1970년 이래 쌍방 간 합의를 통해 상당히 개선되었음.
  - 그때부터 배달기간은 보통 5일 이내로 단축되었는데 국경을 통과하는 교류라는 점으로 볼 때 "그나마 수긍할만한 기간"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였음.
-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향하는 서신교류량은 1961년도부터-1962년도에 약간 침체되었으나-1965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음.
  - 그러나 1965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1968년도에는 1965년도 교류량의 약 32%(1961년도의 약 34%) 밖에 되지 않았음.
  - 1969/70년에 접어들어 약간 증가되었으나, 그 다음부터 다시 감소하였는데, 1977년 중 동독으로 향하는 서신량은 5,700만통에 불과했음(1965년의 약 15%, 1968년의 약 47% 해당).
-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향하는 서신교류량 역시 1961년부터 증가하다가 이미 1964년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계속 감소하였음.
  - 1968년도의 서신교류량은 1964년도의 약 50%(1961년도의 약 52%) 밖에 되지 않았음.
  - 그러나 1969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후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매우 증가"하였음.
  - 1977년 중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향한 편지 수는 1억 통 이상(1964년의 39%, 1968년의 약 79%)에 달했음.
- 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동·서독 서신교류의 감소 추세.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향하는 편지 수는 1977년까지 계속 정체 되었는데-로부터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소외현상이 일어났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는데, 70년대에 줄어든 서신교류는 동·서독 주민 간의 소외현상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왜냐하면 이제 편지 대신 전화라는 의사소통 방법이 널리 활용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연계하여 70년대부터 방문여행교류가 급증하면서 편지를 통한 접촉이 직접 대면 접촉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여행교류의 증가가 주로 70년대부터 비로소 나타나는 특징이었고, 1964년부터 동독이 연금수령자의 여행을 허용하므로써 서신접촉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세대교체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노년층의 서신교류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서신왕래의 수가 매우 감소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주민들 간에 소외현상이 일어났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음.

○ 60년대 초부터 동독과의 소포교류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는데 그것은 동독이 장벽을 구축한 후부터 발생한 물자공급의 난점이 소포교류와 더불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음.

- 초기에는 주로 기초식료품이 보내지다가 1964년부터 고급소비재를 비롯하여 기호품, 열대과일 등이 점증하였으며 6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개인적 연고에 관련된 선물이 대종을 이루면서 보내졌음.
- 선물용 소화물, 선물용 소포, 그리고 후일 여행교류시 직접 휴대한 각종 선물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물자교류는 인간적인 접촉이라는 의의는 물론 경제적 의의가 있었음.
- 예컨대 1963년부터 1965년에 걸친 개인에 의한 송달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때 내독 간 교역의 일환으로 공급된 상품의 가치와 맞먹는 것이었음.

- 여하간 동독과의 이러한 개인에 의한 상품교류가 국가 간에 있을 수 있는 "통례적 범위 이상"에 달했다는 사실은 당시까지만 해도 동·서독인들 간에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을 실증하는 것이었음.
- 비록 소포교류가 완전 단절된 적은 결코 없었지만 동독측이 제정한 내부 규정과 조치, 그리고 동독기관에 의해 이러한 규정과 조치에 관한 "편협하고 횡포스런 해석"이 잦았기 때문에 소포교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제한을 받기도 하였음.
- 1954년 동독이 제정한 "서독과 서베를린, 외국과 우편을 이용한 선물소포 교류 및 선물소화물교류에 대한 시행령"(Verordnung ueber den Geschenkpaket- und -paeckchenverkehr auf dem Postwegemit Westdeutschland, West Berlin und dem Ausland)에는 무게, 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었음.
  - 이러한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는 아무런 보상없는 압류 또는 반송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음.
- 1954년도의 동시행령은 1961년 10월 17일에 보완되었는데 그때부터 "각종 의약품의 반입"(제25조)은 일체 금지되었음.
- 1961년 11월부터 선물용 소포교류는 또 다른 추가적인 제재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음.
  - 일단 사용했던 의류나 신발이 든 소화물일 경우, "관할 주립 보건청"의 소독확인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음.
  - 그러다가 1974년부터 지역보건소의 확인증명이면 충분했으며, 1976년 우편협정이 체결된 다음부터야 비로소 보건기관의 소독확인증명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음.
  - 1978년 1월 1일부터는 사용했던 의류나 신발이 유품으로서 동독으로 보내질 때에도 보건기관의 소독확인증명이 필요 없게 되었음.
- 동독으로의 서적발송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음.
  - 서적선물은 동독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때그때마다 "완전히 자의적인 취급"을 받았으며 세계문학작품이나 학술간행물이 들어있는 소화물 조차 반송되었음.
  - 1973년까지 동독에서는 음반의 전면 수출입금지조치가 단행되었으나, 이 금지조치는 1973년 6월 14일자 동독관세법 제20차 시행규정에 의해 폐기되었음.
    - » 이때부터 "문화유산에 속하는 작품이거나 현대창작물"인 음반일 경우에는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또는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우송될 수 있었음.
    - » 그러나 서적과 음반의 우송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 연방정부는 70년대 초부터 동독과의 협상을 통해 개인 물자교류분야에 있어서는 약간 상황을 개선하고 교류를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하였는데, 동독은 기본조약 체결 이후 관세법에 대한 각종 시행규정을 통해 선물소포 교류와 소화물 교류의 대상품목에 대한 반입과 반출의 제한조치와 금지조치를 해제하거나 조건을 완화하였음.
- 소포교류의 증감추세 역시 서신교류와 비슷한 상태였음. 1965년 내지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동·서독 양방향으로 발송된 소포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었음.
  - 이러한 감소추세는 1969년/1970년에 멈춘 후, 이때부터 쌍방 소포 교류는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70년대 중반부터 쌍방 소포교류의 감소추세가 있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기간 중에 방문여행교류가 매우 증가되었음에 그 원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우편을 이용하여 선물을 발송하는 대신 직접 선물을 휴대하여 전달하였기 때문임.

ㅇ 내독 간 우편교류의 구체적인 내용.

- 우편물 송달(편지, 엽서, 인쇄물, 맹인용 점자 인쇄물, 소량 소포).
- 유가물 동봉 편지(Wertbrief).
- 보통 소포 및 고가품 소포.
- 등기 우편(편지, 엽서, 인쇄물, 맹인용 점자 인쇄물, 소량소포, 보통소포,

고가품소포).

- 수령증(Rueckschein) 송부(등기 우편물).
- 수취인이 꼭 수령하도록 보내는 등기 우편, 유가물 동봉 편지(Eigenhaendig).
- 부피가 큰(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화물(Sperrgut).

○ 내독 간에 실현이 되지 못했던 우편분야 교류.

- 항공우편.
- 우편을 통한 신문배달(Postzeitungsdienst).
- 우편환(Postanweisungdienst).

○ 우편배달기간 단축 문제.

- 동·서독 양측은 배달기간을 편지와 엽서의 경우 4일(각각 동·서독 우체국에서 처리기간을 2일씩으로 계산함), 소량소포와 소포의 경우 6일(동·서독 각 3일씩)로 합의했으나, 서독측 통계에 의하면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우송되는 우편물의 약 80%만이 이러한 기간 내에 전달이 되었음.
-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우송되는 우편물의 경우는 동독측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독으로 오는 우편물의 경우보다 더 배달기간이 길었을 것으로 추정됨.
  - 많은 경우 서독측 이용자들이 동독이 보낸 우편물에 대해 배달기간이 너무 길다고 이의를 빈번히 제기하였음.

○ 우편물 분실·반송 문제.

- 서독측 발송 우편물 분실 및 반송실태.
  - 우편물 분실건수는 서독측이 협상시마다 수차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여 계속 줄어들었음.
  - 그러나 연방체신청이 다른 나라와 우편교류시 또는 서독내에서 우편교류시 발생하는 분실율에 비하면 동독과의 우편거래의 분실율이 몇배나 높았음.
    - » 1976년도 동독과 이루어진 우편교류 중 소포분실율은 서독내 전체 우편교류시의 분실율보다 18배, 등기우편물의 분실률을 11배가 높았음.
  - 동독의 반입규정을 위반하여 반송되는 소포의 건수는 1984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되다가, 1985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였음.(1983년: 41,549건, 1988년: 272,403건)
- 동독지역에서 우편물이 분실되어도 연방체신청은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었는바, 그 이유는 서독측은 내독 간 우편교류를 외국과의 교류로 보아, 양도증명서류(Uebergabedokumente)를 서로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 1985년 이후 반송되는 소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동독의 관세당국이 반입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임.
- 이 이외에도 발송내용물 중 일부가 훼손되어 전달되는 사례가 잦았음.
- 이러한 분실, 반송, 훼손 등의 사례에 대해 서독측은 실무자 접촉에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음.

5-3-2. 전화·전신 분야

○ 1970년까지 동·서독 간의 전화회선은 단지 34회선이 있었으며 모두 수동식 교환방식에 의한 것이었으나, 동·서독간의 전화회선은 70년대가 지나면서 개선되어 갔음.

- 전화회선수는 34회선으로부터 1978년도 말 941회선으로 증가되었으며, 전화회선만 단순히 증가된 것이 아니라 기술 역시 크게 개선되었음.
- 수동식 교환방식은 점차적으로 반자동식 내지 일부 자동식 교환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1978년부터 서독지역에서 다이얼식으로 통화를 할 수 있던 동독지역은 629개소였는데, 그와 같은 지역으로는 Leipzig, Magdeburg, Neubrandenburg, Cottbus, Dresden, Frankfurt/Oder, Halle, Postdam과 같은 지역이었음.
  - 동독과의 전화교류는 회선이 더 많이 증가되면서 개선되어 갔음.
- 동독측에 의해 1952년도에 단절되었던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간의 전화 교류가 재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개선되었음.

- 서베를린으로부터 동베를린 및 동독 간에는 1978년말, 총 501회선이 있었음.
- 동·서베를린 간의 전화교류는 거의 자동화되었으며 서베를린으로부터 동독 간의 전화교류 역시 대부분이 자동화되었음.

– 독일연방체신청은 주민들 간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64년 이래 동독과의 수동식 전화교류에 대하여 국내요금에 따르는 낮은 요금을 고수해 왔음.

- 1977년 말부터 가능하게 된 동독의 일부지역에 대한 직통전화요금은 다이얼식일 경우 서독지역에서 적용되는 국내요금, 즉 100 KM가 넘는 지역일 때, 12초의 단위요금은 23페니히(Pf.)가 적용되었음.
- 그러나 야간통화나 주말통화의 경우 할인요금은 적용되지 않았음.
- 이러한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1970년 초부터 전화통화의 수는 매우 증가되었음.

○ 내독 간 전화·전신분야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

– 전화 운용.

– 전신 운용.

– 텔렉스 운용.

– 해상용 전파 운용.

–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교환용 중계.

– 임차된 회선을 통한 중계.

○ 그러나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Telefax나 정보자료 운용(Datendienst) 등은 내독 간 교류대상이 아니었음.

○ 동·서독 연결 통신망.

동 · 서독 연결 회선수

단위 : 회선

연도	전화	전보	텔렉스
1965	34	28	46
1966	34	28	46
1967	34	28	46
1968	34	28	46
1969	34	28	46
1970	74	31	90
1971	284	86	102
1972	383	86	126
1973	383	86	126
1973	383	86	126
1974	479	88	126
1975	719	88	126
1976	719	88	126
1977	821	88	126
1978	941	88	126
1979	1 061	88	126
1980	1 181	88	126
1981	1 301	88	126
1982	1 421	88	126
1983	1 421	88	130
1984	1 517	88	130
1985	1 517	88	130
1986	1 517	88	130
1987	1 529	88	130
1988	1 529	88	130

- 전화의 경우 1965년의 34회선에서 1988년 1,529 회선(서독에서 동독으로 1,314 회선, 동독에서 서독으로 215 회선)으로 늘어났으나, 내독 간 전화통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음.

- 전화자동화율은 1988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95% 수준이었음.

- 내독 간 전화통화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동독측이 회선을 증설하거나, 노후화한 기존회선을 보수하는 일을 경제적·정치적인 이유로 기피하였기 때문에 통화시 정체상태가 심했음.

5-4. 우편일괄금(Postpauschale)

○ 서독이 동독에 매년 지불했던 우편일괄금은 동독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정치적인 선물"이 아니었음.

- 만국우편연합(Weltpostverein)이나 국제전화연맹(Internationale Fernmeldeunion)의 협약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양국 간 체신교류시 일방의 우편 및 통신량이 반대방향의 우편 및 통신량보다 많아 불균형적인 서비스제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호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발송국에서 발송시 우편 및 전화요금을 다 수납했기 때문에, 상호 교류량이 불균형적일 경우 수취국에서는 우편배달과 전화연결에 다른 업무를 폭주하면서도 수입은 이에 훨씬 못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임.

- 동·서독 간에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향하는 우편 및 통신교류량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향하는 교류의 양보다 많았기 때문에 동독측은 서독측에게 이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며 서독측은 이를 보상해 주어야 했음.

- 동·서독은 1976. 3. 30 정부 간 우편협정을 통해 상호정산을 하되, 그 교류량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통계를 잡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pauschaliert) 총액으로 계산하기로 하였음.

  - 이 우편일괄금(Postpauschale)은 우편·전화·전신 분야 등 전 내독 간 통신분야 교류에 따른 정산액을 전부 포함하고 있음.

  - 서독에게 동독으로 발송되는 소포의 경우는 서독지역에서 다른 외국으로 발송되는 소포량을 전체 합친 것보다 항상 두 배 정도가 많은 양이 늘 우송될 정도로 많았음.

○ 우편일괄금총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동·서독 양측이 제시하는 기준이 달랐으나 서로 타협을 통해 결정되었음.

- 동독측은 서독과의 우편·통신 교류를 국제 간의 교류로 간주하여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전화연맹이 제시하는 국제기준요율을 근거로 산정하여 많은 액수를 요구하였음.

- 반면 서독측은 동독과는 국제적인 청산을 하지 않고, 국내 우편 요금에

준하여 동독측이 더 많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한다는 원칙이었음.

기간별 우편일괄금 내역

기 간	우편일괄금(매년)	증 가
1970–1976	30 백만 DM	
1977–1982	85 "	+183%
1983–1990	200 "	+135%
1991–	300 "	+ 50%

- 1991년부터 우편일괄금에 대해서 동독측은 애초 국제요율을 기준으로 요구했으나, 서독측이 협상에서 그간 우편교류량을 감안하여 기존 우편일괄금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자고 3억 DM을 제시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음.
- 이러한 우편일괄금은 동독이 다른 외국과의 우편교류시 적용했던 기존요율보다 훨씬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결코 동독에 대한 "정치적인 선물"로 간주될 수는 없었음.
- 동독은 이 우편일괄금을 우편업무(Postdienst)와 전화·전신업무(Fernmeldedienst) 담당청 간에 7:3으로 배분하였음.

내독간 우편·통신분야 교류시 대동독 지불내역(1989년 기준)

지불내용	금액(백만DM)	지불시기	송금구좌	협정상 근거	예산항목	기 타
1. 우편일괄금 (Post-pauschale)	200	매년 7월말, 12월말에 각각 1/2씩 지급	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국립은행 Unterkonto 3	'70. 4. 29 합의 – '76. 3. 30 정부 간 협정 제11조 – '83. 11. 15 서신 교환	Titel 2261	– 동 액수는 1990년 말까지 합의 – 동독은 우편과 전화·전신분야에 각각 7:3으로 배분
2. 제3국에 대한 우편·전화·전신 중계	매건마다 정산 후 결정	매분기 말에 정산처리	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국립은행 Konto S	– '76. 3. 30 정부 간 협정 제12조 – '76. 3. 30 정산에 관한 행정협정 제3조	Postdienst 와 Telekom 국제정산용 항목	
3. 서독–서베를린 간 통과우편 교류 지불	11.2	매분기 말 1/4씩 지불	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국립은행 Konto S	– '76. 3. 30 정산에 관한 행정협정 제2조 – '76. 3. 30 정부 간 협정 제13조 – '82. 6. 3 서신교환	Titel 2261	

지불내용	금액(백만DM)	지불시기	송금구좌	협정상 근거	예산항목	기 타
4. 서독-베를린 간 통과우편 교류 지불				– '76. 3. 30 정산에 관한 행정협정 제3조 – '76. 3. 30 정부 간 협정 제13조 – '85. 9. 11, '85. 9. 24 텔렉스	Titel 2261	
4. 1. 동축케이블 중계	매 건 마다 청산후	매분기 말에 정산처리	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국립은행 Konto S			
4. 2. 지향성방송(Richt-funk)	약 0.3	매분기 말에 1/4씩 지불	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국립은행 Konto S	– '76. 3. 30 정부 간 협정 제13조 – '85. 3. 15자 지향성방송 연결에 관한 합의	Titel 2261	
4. 3. 광파인도 케이블 (Licht wellen leiter) 설치	약 8.4	매분기 말에 1/4씩 지불	연방은행에 개설된 동독국립은행 Konto S	– '76. 3. 30 정부 간 협정 제13조 – '85. 3. 15자 광파인도설치에 관한 합의	Titel 2261	

5-5. 동독지역에 대한 선물용 소포발송시 유의사항

○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발송하는 선물용 소포에 대해서는 동독측은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규제해 왔음.

- 그 법적인 근거는 1973. 6. 13자 제20차 관세법 시행령(Zwanzigste Durchfuehrungsbestimmung zum Zollgesetz der DDR)임.

○ 동독 체신청(Deutsche Post in der DDR)은 서독지역으로부터 발송된 모든 선물 소포는 동독 관세청으로 보내, 시행령에 규정된 제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심사케 했음.

-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소포는 보상 없이 동독 세관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되거나, 반려되었음.
- 이러한 동독측의 규정에 어긋나 몰수된 소포에 대해서는 서독체신청도 보상을 해 주지 않았음.
- 따라서 서독인들은 동독지역에 소포 발송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꼭 지켜야 했음.

5-5-1. 수취인·발송인 및 선물용도

○ 내독 간 왕래하는 선물은 전적으로 개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야말로 상업적인 성격을 띠지않는 무상의 선물제공이어야 함.

-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모두 개인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위임을 받아 선물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회사, 기관, 기타 법인체의 발송은 허용되지 않음.
  - 출판사가 보낸 정기간행물의 경우도 선물로 취급되지 않음.
- 그러나 수취인의 성명기재와 관련 개인 이름만을 꼭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고, 가족 단위 "Karl Mueller 가족"(Familie Karl Mueller)라고 명기하는 것은 허용됨.

○ 선물내용물은 개인적인 필요(personenlicher Bedarf)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대량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됨.

- 선물은 수취인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사생활에 필요한 물건이어야지, 그 이외의 사람들을 위한 선물제공은 허용되지 않음.
- 선물 내용물은 동일품목이 대량으로 발송되어 이 물건이 수취인에 의해 재판매, 교환되어 상업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음.

5-5-2. 무게, 포장, 주소 기입

○ 보통 또는 등기의 소량 소포(Paeckchen)는 2kg까지, 소포(Pakete)는 20kg까지 허용되나, 그 안에 편지를 동봉할 수 없음.

○ 깨지기 쉬운 물건, 또는 고가품목에 대해서는 보통 포장이 아닌 특수포장이 허용됨.

○ 속달 송부도 가능하며, 등기·소포의 경우 수령증(Rueckschein)을 동봉할 수도 있음.

○ 내·외 포장은 반드시 인쇄가 안 된 포장지로 해야 하나, 색깔있는 포장지나 선물용으로 장식을 하는 것은 허용됨.

○ 모든 소량소포 또는 소포는 반드시 소포와 소화물표의 수취인 주소 위에 "선물용임, 상업용이 아님"(Geschenksendung, keine Handelsware)을 표시해야 함.

- 소량소포 또한 "소량소포"(Paeckchen)라고 표시해야 함.

○ 우편번호 기입은 소포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각 우체국에서 동독지역으로 우편번호를 알 수 있음.

- 우편번호(동·서독 모두 4자리의 우편번호를 사용하므로), 앞에 동·서독을 구별하기 위해 서독은 "D", 동독은 "DDR"을 표시함
  - 예: DDR - 5300 Weimar, D - 5300 Bonn

○ 소포내에는 편지나 기타 인쇄물이 동봉되어서는 안 되며, 소포 내용물에 관한 목록은 허용되나, 이 목록에 개인적인 의사교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5-5-3. 허용·금지된 내용물

5-5-3-1. 허용품목 및 제한된 허용품목

○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는 선물이어야 하나, 자동차 부속품, 가전제품, 음향기기 중 카세트나 녹음기, 취미용 공구, 퍼스날 컴퓨터와 프로그램(컴퓨터와 함께만) 등도 허용됨.

○ 기호품 특히 커피, 담배, 초콜렛, 독주, 포도주, 샴페인 등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한 제한없이 허용됨

○ 의약품 및 기타 건강유지와 관련된 물품은 동독이나 서독에서 처방이 의무적으로 필요없는 다음과 같은 품목에 한하여, 동독의사들의 처방전이 없이도 동독으로 선물이 발송될 수 있음.

- 약효가 없는 붕대와 같은 접착제(Verbandstoffe ohne arzneiliche Zusaetze).
- 일회용 반창고(Wundeverbandflaster).
- 영아·유아 양육 물품(Saeuglings-und Kinderpflegemittel).
- 영아·유아 식료품(Saeuglings-und Kindernaehtmittel).
- 다이어트 식품(Diaetetika, Naehrpraeparate).
- 비타민·광물성 함유 건강식품(Vitamin-und Mineralstoffpraeparate).
- 약학적인 물질이 함유된 포도주(Weine mit arzneilich wirksamen Bestandteil).
- 약초로 만든 차(Arzneipflanzen und Arzneipflanzenmischung).
- 식물성 즙(Pflanzensaefte).
- 약초로 제조한 약(Zubereitung auf der Grundlage von Ingaltstoffen von Arzneipflanzen).
- 의료용 목욕기구 및 비누(Medizinische Bander - Seifen).
- 의치 보호기구(Hft - und Pflegemittel fuer Zahnprothesen).
- 신체 보호기구(Koerperpflegemittel zur aeussren Anwendung).

- 소염제(Desinfektionsmittel).
- 의족·의수 등 의료 보조기구(Homoeopathische Erzeugnisse).
- 의료기기 중 혈압측정기, 체온기, 모터가 달리지 않는 윌체어, 보청기, 흡입기, 마사지 기기, 인공자외선기, 안경테 등임.

○ 귀금속은 한 번에 순금 10g, 치아용 금 12g까지 허용되며, 이보다 더 많이 보내고자 할 때는 특별한 허가를 요함.

- 귀금속 가공품은 약혼·결혼반지, 시계, 팔찌, 목걸이 등이 개인 선물용으로 허용됨.
- 이러한 귀금속을 발송할 때는 반드시 내용물 목록을 첨부해야 분실의 우려가 없고, 또한 약혼·결혼반지의 경우는 이러한 선물을 보내는 이유를 명시해야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음.

○ 어린이용 장난감의 경우 전쟁놀이품과 같은 "군사적인 색채를 띤" 장난감과 Monopoly-Spiel(주사위를 던져서 5대양 6대주를 점령하는 게임)과 같은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띤" 장난감은 일체 반입이 금지됨.

○ 음반, 카세트 테이프, 마그네트 테이프 및 자료입력용 디스크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나, 눈으로 볼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것들은 금지됨.

○ 문학서적, 인쇄물, 그림, 화보 등은 "평화지향적이 아니고, 파시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보복심에 가득 차 있고, 외설적이고, 동독과 동독주민들의 권익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반입이 불허되며, 이러한 기본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때만 아래와 같은 종류들은 서독에서 발송이 가능함.

- 스포츠, 모드, 취미, 여가생활, 건강, 자연과학, 과학기술, 정보, 건축, 의학, 노인복지 분야의 정기간행물.
- 주소록, 달력, 연감, 통계집, 우표 및 동전수집 목록 등임.

○ 화초의 구근, 씨앗 등은 식물검역 증명을 첨부하여 발송해야 함.

- 이러한 식물검역증명은 서독의 식물검역소나 주농림수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씨감자와 식물들은 포츠담 소재 동독 중앙식물검역소(Zentrale Pflanzenschutzamt Potsdam)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취인이 이곳에서 검역이 끝나야 찾아올 수 있음.
  - 식용감자의 경우는 동봉된 서독의 식물검역증만으로도 통과됨.

5-5-3-2. 완전 금지 품목

○ 현재 통용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지불수단으로 간주되는 모든 지폐, 동전, 저축통장과 유가증권.

○ 회사나 단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선전·판촉물 예를들어 카탈로그, 광고물, 볼펜, 매주잔, 자 등임.

○ 지도, 지구본, 필름, 사진원판, 인화지.

○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음반, 녹음용 카세트, 마그네틱 테이프, 컴퓨터 디스켓 등임.

○ 제반 개인 신분증명, 신분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 양식.

○ 방송 수신기(무선으로 조종되는 장난감 자동차 포함), TV와 그 부속품, 비디오와 비디오 테이프 및 그 부속품, 이러한 물품사용 설명서 및 조립 설명서.

○ 물품 제조기, 복제기(복사기 포함).

○ 상속 유품(특별한 조건하에서만 가능).

○ 우표(특별한 조건하에서만 가능).

○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금지된 품목(인화성 물질, 폭발물, 총기류, 독극물, 향신성 제품, 야생 동물 및 식물).

○ 기타 우편교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물품.

5-5-4. 서독 연방체신청(Deutsche Bundespost)의 책임·변상

○ 서독 연방체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변상함.

- 등기 우편 및 등기 소량소포의 분실시, 책임을 지고 변상하며, 그 발송물의 가치와 상관없이 매건 당 40 DM을 변상함.
  - 일반으로 보낸 우편 및 소량소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일반 또는 등기로 보낸 소포는 분실 시 그리고 파손 시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 변상을 하되, 매건 당 500 DM을 초과할 수 없음.
  - 소포에 가격표를 동봉한 경우는 직접 피해액에 대해서 변상을 하되, 그 표시된 가격까지만 변상함.
  - 동독이 제정한 법규정을 위반하여 보상없이 몰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연방체신청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않음.



CHAPTER III

분야별 교류 · 협력 편

6 비상업적 지불 및 청산 교류
7 학술 · 과학 · 기술 분야
8 환경 분야
9 보건 분야
10 문화 분야
11 청소년 교류
12 스포츠 교류
13 방송 · 언론 분야
14 도시 자매결연
15 종교 · 교회 분야

6. 비상업적 지불 및 청산 교류

6-1. 협상 및 주요 쟁점

○ 1948년에 실시된 양측의 화폐개혁 이후, 점령지역인 독일에는 더 이상 단일 화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업적 지불교류는 물론 개인적인 비상업적 지불교류도 불가능하게 되었음.

- 내독교역의 일환인 재화와 용역거래에 따른 상업적 지불교류에 대한 조약상의 근거는 1951년에 베를린 협정으로 마련되었던 반면, 비상업적 지불교류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독에서는 동독과 비상업적 지불교류의 법적인 근거도 역시 외환관리법(MRG 53)이었는데, 원칙적으로 거래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동독측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일연방은행(실제로는 주립중앙은행)의 허가를 통해 허용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허가도 서독에서만 유효하고, 동독의 와환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이 서독과의 비상업적인 지불·거래분야에서 외환의 거래를 허용할 때에만 교류가 가능했음.

○ 50년대부터 미성년자의 생계비 지급을 위해 상호 청산결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

- 청산결제는 양국의 청소년담당청(Jugendamt)을 통해 처리되었는데, 어디까지나 이러한 청산결제는 "양측의 청소년청이 각각 비슷한 금액의 생계비를 지불할 때만" 가능하였음.
- 따라서 정당한 신청권한이 있음에도 모든 사안이 처리될 수 없었고 미처리된 생계비 지불신청은 폐쇄구좌(Sperrkonto)를 통해 처리되었음.
  - 이미 1963년 말 서독과 동독 간의 생계비 지불 관계에는 약 1,000만 DM의 초과액이 서독측에 적체된 상태였으며 1964년도에는 1,840만 DM이나 적체되어 있었음.
- 이 분야에 관한 양독 간 조약상의 규정이 합의된 1974년도에는 서독에 적체된 금액이 2억 5,000만 DM에 달했음.
- 1963년도 정부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수지균형을 맞추려던 서독정부의 노력이 청산결제율을 1:1로 하자는 동독의 요구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의료수가, 변호사비용, 문학예술활동에 대한 지불, 선물용 지불, 생계지원 지불, 묘지관리비와 같은 개인적 지불교류목적의 송금가능성은 전혀 없었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불충분할 뿐이었음.

- 동독으로만 향하는 일방통행식 비상업적 지불교류가 내독교역용 청산구좌(Unterkonto 3)를 통해 가능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동독의 국립은행(Staatsbank der DDR)이 청산결제를 허용할 때에만 가능하였음.
  - 동독국립은행은 근로자 연금과 공직자 연금과 같은 일련의 지불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음.
  - 1971년 중 내독 간 청산결제방식을 통해 약 400만 DM에 달하는 개인적 지불액이 동독으로 송금될 수 있었는데 지불에의 필요성(수요)은 그보다 훨씬 컸음.

○ 그 반대로 동독측은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향하는 지불을 가급적이면 허용하지 않으려 하였음.

- 매우 까다로운 조건하에 서독과 동독내에서는 수많은 폐쇄구좌가 설정되기에 이르렀는데, 동독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서독내에 폐쇄구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독일연방은행의 일반 허가 범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매월

1,000 DM을 자신과 가족 이름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서독에 있는 수취인에게 매월 300 DM을 송금할 수 있었음.

- 특히 인도주의적인 문제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 역시 허용되었음.
- 동독인들은 허용된 조건하에 DM 폐쇄구좌를 통해 Genex 선물 서비스 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었음.

– 그러나 서독인으로서 동독에 폐쇄구좌를 갖고 있던 사람(상속, 부동산 매각 등)은 비록 심각한 사안일지라도 동독 기관은 송금을 허용치 않음.

- 동독에 있는 폐쇄구좌에 있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으로, 그것도 동독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동독으로 향하는 방문 여행일 경우 매 체류당 15 마르크,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금으로만 이 구좌를 통해 지출할 수 있었음.

○ 즉 비상업적 지불교류는 동독 법률에 의해 큰 제한을 받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사태가 매우 심각했던 때가 잦았으며, 서독에서도 제한조치가 없지 않았는데, 서독지역에 폐쇄구좌를 갖고 있는 사람도 무조건 자유롭게 금액을 사용하지는 못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내독교역 관계에서 유효했던 외환관리법(MRG 53)이었는데, 이 법에 따라 동독과의 외환거래는 독일인일지라도 에외없이 연방은행의 허가를 요했음.

– 연방은행은 그 허가실무를 해나가면서 점점 관대하게 처리하였지만 엄격한 조치를 취할 때가 없지 않았음.

– 연방은행은(예컨대 상속에 의한) 동독에의 송금을 차단시켰는데, 이는 이를 담보로 서독인들이 동독에 갖고 잇는 폐쇄구좌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독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편이었음.

○ 과거 동독시민들은 재판절차를 통해 서독내에 있는 예금을 사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외환관리법(MRG 53) 때문에 몇 건의 소송사건이 있었음.

– Luenburg 행정재판소는 1974년 8월 21일, MRG 53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MRG 53은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독의 정치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률로서, 시민들이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보장받는다는 법치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동·서독 간 비상업 지불교류 분야에 있어서 동 법의 적용과 계속유효성 여부에 대해 누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독일연방은행은 동독과 비교할 때 그 허가실무가 자유스럽고 관대하다. 동독 금융기관의 구좌에 예금을 갖고 있는 서독시민과 비교할 때 원고는 이미 오늘날 서독에 있는 금액의 상당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조건하에 있다. 만일 피고인(서독의 연방은행)이 불허조치를 내린 경우라면, 피고인이 상호주의 원칙(Prinzip der Gegenseitigkeit)에 의해 이를 반려했다고 보아야 한다".
- "허가실무에 있어서 피고인이 상호주의 원칙을 부인하게 되면 피고인을 통해 서독에 있는 독일인의 재산에 대한 권익을 허가실무를 통해 충분히 관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양측에게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더 이상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동독은 더 이상 회담에 응할 아무런 계기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동독에 예금이 있는 서독인의 권익이 그의 책임과 관계없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

○ 1969년 서독의 독일연방은행은 동독의 국립은행에 대해 비상업적 청산교류의 확대에 관한 회담을 개시하자는 편지를 처음으로 발송하였으며, 1970년 연방은행은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자고 다시 한 번 더 제안하였으나, 동독은 기본조약 체결 이전까지 이러한 두 번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으며, 서독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였음.

6-2. 협정 체결

○ 기본조약 제7조에 관한 추가의정서 제11항을 통해 양국은 비상업적 지불교류와 청산교류의 규정에 관한 회담을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음.

- 협상은 사회복지적인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하였음.

○ 1974년 4월 25일 동·서독 재무장관은 생계비 지불용 송금에 관한 합의(Sperrguthabenvereinbarung : 폐쇄구좌 예금합의)를 체결하였음.

- 이러한 합의와 서독연방은행과 동독국립은행 간에 체결된 은행 간 합의에 따라 양국의 은행은 U(Unterhaltszahlung: 생계비지불) 및 T(Transferzahlung: 이전용 지불)라는 명칭의 청산용 구좌를 운용하기로 하였음.
- 생계비 합의와 함께 그때까지 불충분하게 실시되어 오던 청소년 담당청간의 청산은 없어졌으며, 1974년 6월 1일부터 친족법의 근거에 따른 의무수행사항(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충족을 위한 생계비가 양국 간에 송금을 통해 지불될 수 있게 되었는 바, 권리자에게 전액 송금되었음.
- 폐쇄구좌 예금 합의에 따라 특정한 조건하에서 상대방 국가의 금융기관에 있는 구좌를 통해 그 국가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타 구좌 소유자에게 송금이 허용되었음.
  - 그와 같은 조건이란 사회복지적인 고려가 합의사항의 주안점이었으므로 오로지 특정인(정년퇴직자, 신체장애에 의한 퇴직자, 연금수령자, 미성년고아, 사회부조금 수령자)에게만 적용되었음.
  - 그러나 이 합의는 동독에 있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적용되지 않으며 몰수되었거나 국유화되었거나 국가의 강제관리에 처해있는 구좌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 송금액의 액수는 구좌소유자당 월간 200 DM(또는 동독 마르크)으로 확정되었음.

○ 합의사항 중에는 수지균형유지의 원칙(Ausgleichsprinzip)이 있었는데 이 원칙에 따라 한 국가의 송금액은 다른 국가의 송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

- 나아가 3,000만 DM(또는 동독 마르크)으로 각각 다른 편에 대한 연간 송금 최고한도액이 설정되었음.
- 청산은 두 가지 협정에서 공히 1:1의 화폐교환비율로 실현되었는데, 그러나 "이로써 양국 간 화폐의 등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서독측의 입장이었음.

6-3. 생계비 지불

○ 1974년도의 생계비 지불합의와 함께 동·서독 양쪽으로 향하는 생계비 지불이 전액규모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1974년까지 서독에서 처리되지 않고 적체되어 있던 2억 5,000만 DM 역시 그때부터 지불되었음.
- 1974년 6월부터 1978년 12월 말까지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송금된 생계비 지출은 총 1억 306만 DM이었으며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송금된 생계비 지출은 총 2,764만 DM이었음.

"U 구좌"를 통한 생계비 지불

단위 : 백만 DM

기 간	서독에서 동독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1974(6. 1부터)	23.66	3.85
1975	41.42	8.02
1976	17.10	6.38
1977	11.50	4.95
1978	9.38	4.44
총 계	103.06	27.64

○ 생계비 지불교류는 가족법상 부양의무가 잇는 자에게만 허용되었지, 자유의사에 의해 부양의무가 없는 친척들에게는 동·서독 협정상 허용되지 않았음.

- 따라서 주로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이었으며, 또한 부모로부터 성년이 된 자녀, 자녀로부터 부모, 부부 간에, 이혼한 부부 간에도 지불이 허용되었지만, 형제·자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음.
- 송금이 허용되는 지불액은,
  -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지불시 지불액은 법적으로 규정된 생계비 전액.
  - 이미 성년인 권리자일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경우는 법원의 판결액수 전액이고, 만약 법원의 판결이 없었던 경우는 매월 200 DM까지만 허용됨.
- 모든 송금액은 반드시 거주지 주립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생계비 송금시 필요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음.

- 송금인은 거주지 은행 및 금융기관에 비치된 소정의 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만약 제3의 기관(예를 들어 청소년청)이 송금인일 경우도 마찬가지임.
- 만약 수취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일 경우에는, 송금신청서 작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송금이 필요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 수취인이 동독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동독주민의 거주 관청으로부터 확인서가 필요하며, 수취인이 서독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서독 사회복지청의 확인서가 필요함.

○ 생계비지불 청산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되었음.

- 서독사람으로서 동독에 있는 연고자에게 생계비 지불을 해야 할 경우이면 상당하는 DM 액수를 각 주거지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연방은행 U구좌에 지불함.
- 그러면 연방은행은 서독의 의무자가 동독의 권리자에게 송금가능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동독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액수를 허가해 줌.
- 동독의 국립은행에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됨.
-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각각 동·서독 마르크로 지불하고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도 각각 동·서독 마르크로 자기지역에서 받음.

○ 동독인의 서독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서독에 거주하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수가 동독보다 많았으며 따라서 생계비 지불의 청산 결과 동독에게 유리한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연방은행은 이를 매 분기별로 동독국립은행의 S 구좌에 송금하였음.

- 1974년 6월부터 1978년 12월 말까지 동독국립은행에 초과 송금된 잉여금은 총 7,542만 DM에 달했음.

동독국립은행 잉여금

단위 : 백만 DM

기 간	액수
1974(7.-12.)	19.81
1975	33.40
1976	10.72
1977	6.55
1978	4.94
총 액	75.42

6-4. 폐쇄구좌예금(Sperrguthaben) 분야

○ 이 분야에 있어서 내독 간 합의의 목적은 양국의 주민들(연금생활자, 전쟁원호대상자, 중장애자, 재해보험대상자, 사회부조금 수령자)로 하여금 각각 상대방 국가에 있는 예금구좌를 사용하여 비상업목적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함에 있었음.

- 한 국가로부터 수행되는 송금액이 타국으로부터 수행되는 송금액보다 상회해서는 안된다는 수지균형유지의 원칙 때문에, 그리고 서독지역(서베를린 포함)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구좌소유자의 수요가 너무 컸기 때문에(동·서독 송금액의 비율은 약 1:10) 서독지역의 신청액 중 항상 그 일부만이 송금될 수 밖에 없어, 폐쇄구좌예금을 통한 지불교류합의는 시행 초부터 잘 이행되지 않았음.
  - 그래서 1976년 9월 23일 또 다시 회담이 재개되었는데, 양측이 합의한 연간 최고액인 상호 간 3,000만 DM(내지 동독 mark)은 그 어느 해에도 완전히 지불될 수 없었음.
  - 주원인은 상대방 국가에 구좌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의 수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것이었는데, 예컨대 1974년도 서독지역에 살고 있는 구좌소유자들은 약 840만 DM에 달하는 송금액을 신청하였으나, 동 기간중 동독에 살고 있는 구좌소유자들이 신청한 송금액은 단지 260만 DM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만 수행될 수 있었음.

○ 서독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한 송금액의 총액은 2년이 경과하는 도중 막대한 액수에 달하여, 다가올 일정 기간 동안 처리되지 못할 송금액의 계속적인 증가를 막고 양국 간의 송금액의 균형유지를 다시금 달성하기 위해 1976년 5월 1일부터 독일연방은행은 서독지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구좌소유자로부터 더 이상 송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1978년 11월 2일부터 신청접수 중지는 다시 해제되었는데 그것은 1976년 5월까지 신청된 송금액이 모두 동독국립은행으로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음.

- 그때부터 독일연방은행은 송금할 권리가 있는 모든 구좌소유자의 송금신청을 다시 접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단 200 DM의 송금액이 처리된 다음에 비로소 다음 송금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였음.
- 독일연방은행은 접수순서에 따라 동독국립은행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했는데 이는 일단 동독(동베를린 포함)에서 신청된 송금신청총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했음.

○ 양국 간의 통화정책적 원칙상의 차이는 그 초기부터 폐쇄구좌를 통한 지불교류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 문제와 연계된 양국 간의 합의는 오로지 동독에게 또 다른 추가적 외환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 방안이 모색될 때에만 가능하였음.

"구좌 T" 를 통한 이전액

연 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신청건수		신청액(백만 DM)		신청건수		신청액(백만 DM)	
	신청	최종처리	신청	최종처리	신청	최종처리	신청	최종처리
1974(6. 1)	4,047	2,579	2.6	1.47	42,426	4,500	8.4	0.9
1975	1,1912	12,182	16.2	15.08	144,721	78,799	28.8	15.6
1976	5,870	6,287	8.1	7.64	66,014	40,104	13.1	7.92
1977	5,533	자료없음	8.2	7.42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7.26
1978	7,039	자료없음	9.97	9.46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9.46
총 계	34,401	21,048	45.07	41.07	253,161	123,403	50.3	41.20

○ 폐쇄예금 구좌를 통한 송금은 생계비지출송금과 비슷한 절차를 통했음.

- 독일연방은행은 동독의 국립은행을 위해 DM 청산구좌를 운용하였는데, '독일민주공화국 국립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
- 동독에 주거지를 갖고 있으면서 서독에 구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출을 원할 경우 신청권자의 구좌가 있는 금융기관이 독일연방은행에게 일정액을 송금하면, 독일연방은행은 송금지불액 총액을 매일 동독국립은행 T 구좌에 입금하였음.
- 그러나 동독으로부터 온 사람이 서독에 있는 예금구좌로부터 인출할 경우이면 DM으로 지불되지 않고, 동독의 국립은행이 서독 DM과 동독 Mark의 환율 1:1로 해당자의 구좌에 입금해주었음.
- 동독국립은행 역시 독일연방은행을 위해 동독 Mark로 된 청산구좌를 운용하였는데 그 명칭은 '독일연방은행'이었음.
- 서독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독에서 인출하려고 할 경우(동→서 송금신청), 이 금액은 독일연방은행으로부터 서독의 DM으로 지불되었는데 이미 서→동 송금신청에 의해 동독으로 송금된 외환지불에 따른 총액에서 지불되었음.

○ 문제는 동독시민들이 이러한 처리절차의 일환으로 DM 예금을 인출할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DM액이 축적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수년간 신청된 동→서 송금액 신청은 충분한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고 1976년에는 미처리건수가 누적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임.

- 동독의 연금수령자-이들은 동·서독 합의상 최우선 순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나아가 서독으로의 여행도 허용되었음-들에게는 서독에 있는 예금구좌로부터 직접 DM액을 인출한 후 합법적으로 동독에 지참하는 것이 훨씬 타산이 맞았음.
- 이들에게는 DM액을 동독 Mark와 1:1 환율로 입금하는 것보다 Intershop과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임.

○ 폐쇄구좌예금 합의사항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1976년 말부터 회담이 재개되었음.

- 서독의 연방정부는 동독과 협상하면서 생계비지불과 폐쇄구좌 예금송금의 두가지 송금문제를 연계시켜 보려고 시도했는데, 즉 문제점 중 일부가 해결될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동독은 생계비 지불에 따르는 차변잔액을 송금에 의한 대변초과액으로 충당할 수 있었을 것임.
- 그러나 동독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음.

- 1978년 11월 16일 회담의 결과로서 폐쇄예금 합의사항에 대한 추가의정서가 타결될 수 있었음.
  - 동독은 이러한 새로운 합의를 통해 서독 연방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동독 국립은행의 청산구좌에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연간 5,000만 DM(매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음.
  - 1978년 11월 체결된 추가교통협정과 관련하여 서독이 지불하는 통과교통일괄금과 동독이 향후 4개년 간 지불용으로 수행되는 연간 5,000만 DM이라는 금액은 상호연관관계가 있었는데 통과교통 일괄금의 일부로 이를 충당하려고 했을 것으로 추측됨.
    - » 만일 이러한 추측에 타당성이 있다면 이는 결국 돈이 동독이 아닌 서독에 의해 제공되었음을 뜻함.
- 1979년 2월 9일부터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송금할 권한이 있는 구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독과 동베를린에 있는 폐쇄구좌 예금을 통해 지출되도록 매 분기마다 최고 600 DM까지 송금용으로 신청서를 연방은행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지난 번 송금신청이 일단 처리된 다음에야 다음 송금신청이 허가되던 1978년 11월 2일부터 적용되던 절차는 중지되었음.

6-5. 상속재산처분

6-5-1. 서독내에서 외환관리법에 의한 통제

○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우선권 결정은 서독의 외환관리법의 저촉을 받지않음.
- 상속순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님이 항상 외환관리법으로 인정되어왔으며, 오직 상속법적인 원칙이나 유언을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상속이 발효되었을 때 서독내의 재산가치로서 동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유언자의 유산일 경우이면, 동독내 상속권자에 대한 재산 이전시 유산가치의 외환관리법상의 제한이 따름
- 그 이유는 외환관리법(MRG 53) 제1조 제1항의 처분제한(Verfuegungs-beschraenkung)은 국내의 재산가치로서 동독에 있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관계되어 있으면 적용되기 때문임.
- 여러명이 상속자인 상속공동체가 동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서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됨.

○ 그 반대로 동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유언자가 서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나 서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상속공동체에게 상속할 경우이면 상속처리상 외환관리법의 제한은 받지 않음.
- 이러한 경우에 상속재산가치는 허가조치를 받지 않고 즉시 처분될 수 있음.

○ 상속권자나 상속공동체의 일원이 동독에 살고 있으며 유언자가 서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발생일로부터 외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 만일 상속공동체가 동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공동상속인(Miterben)과 서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공동상속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함.

○ 물론 동독에 있는 상속가치를 동독에 있는 사람이 상속할 경우이면 주립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관리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가치를 처분할 수 있음.

○ 서독내에서 상속순위에 관한 증명

- 동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던 유산인에 대한 상속순위에 관한 증명은 관할 지역 소련 점령군 법원의 상속증명서 이외에 (서)베를린 쇠네베르크 구법원에 의해서도 처리됨.
- 관련 상속증명서를 발급하는 동 법원의 처리근거는 비송사건처리법(Gesetz ueber die frdiwilligge Gerichtsbarkeit: 가족법 변경법 Familienrechtsaenderungsgesetz vom 11 .8. 1961)의 제73조 제2항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언자가 독일인으로서 상속개시 시점에 국내에 주거하거나 체류하고 있지 않을 경우이면 베를린 쇠네베르크 구법원이 관장함.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안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며 동 법원은 이송의무가 있음."

○ 상속재산의 관리

- 외환관리법 적용대상인 상속재산이 서독에 잇는 유언집행인이나 유산관리인(Nachlassverwalter 또는 Nachlasspfleger)에 의해 유산이 관리될 경우에는 개별적인 허가가 아닌 일반적 허가조치의 대상이 됨.
- 서독에 있는 유언집행인이 유산가치를 처분할 경우 또는 유언집행과정상 상속권자나 상속공동체에게 급부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외환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외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상속권자 간의 합의, 이러한 합의에 따른 분할도 일반허가의 대상임.

- 유산을 분할합의에 따라 개별 공동상속이나 수유자에게 이월할 때마다 이월된 권한을 등기부나 기타 공식 등기문서에 등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허가를 받아야 함.

6-5-2.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속재산 반입

○ 법적인 근거(동독법령)

- 1973. 7. 14자 제22차 관세법 시행령(Die Zweiundzwanzigste Durchfuehrungsbestimmung zum Zollgesetzder DDR)
- 1976. 9. 13자 제27차 관세법 시행령
- 1987. 11. 1자 제27차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

○ 반입이 가능한 상속재산(Erbschaftsgut)의 정의

-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법적인 상속인의 지위로서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획득되어진 재산으로서, 제3의 권리인과 소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동산만이 반입이 가능함.
- 다음과 같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상속받은 현금으로 구입한 재산.
  - 유산을 매각한 수입으로 다시 구입한 재산.
  - 공동소유 유산으로서 공동상속인들 간에 쟁송 중인 재산.

○ 반입되는 물건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상속증명(Erbschein)이 필요한 바, 유언장 원본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사본의 제시나 동봉이 요구됨.

○ 상속재산의 반입은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한 지 1년 이내나, 상속재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상속재산의 반입시는 반드시 세관의 통관절차를 받아야 함.

- 세관신고서 작성은 상속인 본인이나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상속재산 운송회사 또는 운송인이 할 수 있음.
- 관세수수료(Zollgebuehren)는 면제됨.
- 세관신고서 제출시는 특정한 양식에 의한 반입물품 목록표를 2통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 물품들이 동독 관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물품임을 상속인이 확인·서명해야 함.
  - 물건을 전체로 보내지 않고, 일부분을 나누어 보내는 경우, 목록표 작성시 일일이 다 기재해야 함.

○ 상속개산을 운송회사를 통해 운송하지 않고 소포롤 보내는 경우는 상속인에

의해 확인·서명된 물품목록표와 해당관청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상속증명 사본을 동봉해야 함.

- 소포 수취인 주소 위에 "상속재산-관세서류증명"임을 명시해야 함.
- 상속재산은 선물용 소포 발송 대상에서 제외됨.

○ 여행자들의 동독방문시 상속재산을 지참하여 반입할 수도 있으며, 국경에서 세관검색은 다른 반입절차와 같음.

- 그러나 운송회사에 맡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를 지참한 경우 화물트럭을 이용한 운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개인승용차나 개인승용차에 딸린 트레일러를 통한 운송만 허용했음.

○ 반입 제한·금지 품목

- 상속재산으로서 승용차나 생산재 등의 반입은 대외무역성의 특별한 허가를 득해야 가능함.
- 귀금속, 보석, 진주 또는 진주로 만든 제품의 반입은 외환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관서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함.
- 다음과 같은 품목의 반입은 금지됨.
  - 총포류 및 화약(가스총, 공기총, 공포탄 포함), 폭발물.
  - 동물.
  - 중고의류 중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있지 않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 지도 및 측량도.
  - 개인신분증명 및 신분증명 발급을 위한 양식.
  - 방송용 송·수신기 및 그 부품, 조립설명서.
  - 방사능 물질.
  - 군사적인 색채를 띤 어린이 장난감.
  - 의약품.
  - 주식, 저금통장, 유가증권.
  - 상업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대량물품.
  - 문화적인 유산으로 인정될 수 없는 악보.
  -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테이프, 정보처리 디스켓 등(음반이나 음악용 테이프는 가능함).
  - 문학서적·인쇄물·그림·화보 등은 "평화지향적이 아니고, 파시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보복심에 가득차 있고, 외설적이고, 동독과 동독주민들의 권익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반입이 불허됨.
  - 우표와 동전주화 등은 그 내용이 평화지향적이 아닐 때, 또는 선동적일 때 금지됨.
  - 필름, 필름원판, 인화지 등은 그 내용이 사회주의 국가와 그 주민들의 권익을 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금지됨.

6-5-3. 동독에서 서독으로 상속재산 반출

○ 법적인 근거 :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속재산 반입시와 같음.

○ 반출이 가능한 상속재산의 정의 : 반입이 가능한 상속재산의 정의와 같음.

○ 반출시도 반입시와 마찬가지로 상속증명이 필요하며, 유언장 원본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사본이 요구됨.

○ 반출도 반입시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한 지 1년 이내나, 상속재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상속재산의 반출시도 반드시 세관의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늦어도 반출 3주일 전에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세관에 세관신고서를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제출해야 함.

○ 상속재산의 반출도 반입과 같이 여행자들의 서독방문시 지참이 허용됨.

○ 반출 제한·금지 품목은 반입 제한·금지 품목과 거의 같으나 다른 반출품목은 다음과 같음.

- 은이나 귀금속으로 만든 생활용품은 귀금속법에 의한 반출허가는 필요없으나, 외환관리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함.
- 과학기술·경제적 측면에서 신발명품으로 간주되는 특허·신연구기술에 관한 자료 등은 반출이 금지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고서적 등 원문 등도 금지됨.
- 박물관에 보관할 가치가 있는 원광석·화석 등도 반출이 금지됨.
- 동독의 권익을 해한다고 간주되는 출판물과 원고 등도 반출이 금지됨.

6-6. 은행 구좌 설치 및 거래

6-6-1. 동독지역 이외 거주주민의 동독지역에 구좌 설치

○ 법적인 근거

- 1973. 12. 19 동독 외환관리법(Devisengesetz)
- 1973. 12. 19 동독외환관리법 제4차 시행령(Vierte Durchfuehrungsbestimmung)

○ 소위 "외환법상 외국인"(Devisesnauslaender)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동독에 "외환법상 외국인 구좌"(Devisenauslaenderkonto)를 설치할 수 있음.

- "외환법상 외국인"이란 동독에 주거지를 갖지 않거나 장기체류를 하지 않는 자이며 서독인과 서베를린인이 모두 포함됨.
- 분리할 수 없는 상속재산이나 공동재산이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이 "외환법상 외국인" 구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있음.
- 동독측은 그 "외환법상 외국인 구좌"를 A형과 B형으로 크게 나누고 있음.

○ "외환법상 외국인 구좌 A"에 입금시킬 수 있는 자산들은 동독에서 받은 임금 및 장학금, 동독여행시 최소의무환전 또는 임의환전을 했으나 다 소비하지 못하고 남은 동독 마르크 등임.

- 이 "A 구좌"를 통해서는 동독에서 물품구입이나 기타 지불비용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음.
- 그러나 "A 구좌"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귀금속 및 골동품 매입 등 투자목적의 지불을 할 수 없음.

○ "외환법상 외국인 구좌 B"에는 동독에서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합법적으로 이주한 자들이 남긴 은행자산, 집세나 기타 임차료 송금에 의한 은행자산, 유산으로 인한 상속자산을 입금시킬 수 있는 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서만 동독내에서 이 구좌 입금액을 이용할 수 있음.

-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부양·생계보조금 지불을 위해서.
- 집세·임차료 수입과 관련하여.

- 주택 보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불(수리 비용, 세금, 수도, 가스료 등).
-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택 또는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
- 기타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자 지불, 보험료 지불 등).

– 세금 지불을 위해.

– 타인에게 무상으로 송금을 위해.

- 구좌 소유자의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양부모, 양자, 동생들에게 1인당 월 200 동독 마르크까지 송금 가능.
- 다른 사람들일 경우 2인 가정을 기준으로 월 300 동독마르크, 1인이 추가될 때마다 월 50 동독 마르크 추가 송금 가능함.

– 구좌소유자나 그 전권위임자가 동독여행시 체제비로 월 3,000 동독 마르크까지 인출이 가능함.

- 이 경우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국경통과시의 여행허가서나 비자를 제시해야 함.
- 동독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돈은 다시 동독국립은행 지점을 통해 입금할 수 있음.

– 유산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 이사물품, 상속재산의 반출과 관련한 화물운송료 지불 및 그 보험료 지불을 위해.

– 법정소송 비용, 공증 비용, 법률·세무상담 비용, 행정 수수료, 특허·산업재산 보호권 신청시 등의 지불.

– 의사의 치료, 처방된 약품의 구입, 입원 등의 비용.

– 가족이나 친척의 장례 비용.

○ “외국인 구좌” 입금액은 수표발행을 통해 인출할 수는 없음.

○ “외환법상 외국인”은 동독주민(외환법상 내국인)에게 동독주민에 대한 채권을 구좌를 이용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1945. 5. 8 이후 동독정부의 허가없이 동독을 떠난 사람은 동독에 남겨 둔 재산과 은행 자산에 대해서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부의 관리하에 둠.

– 1972. 1. 1 이전에 동독을 허가없이 떠났으면서 1972. 10. 16 이후 동독내에서 상속재산을 갖게 된 사람은 제한적으로만 은행자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권을 행사함.

– 동독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또는 1953. 7. 11 이전에 동독정부의 허가를 얻어 동독을 떠난 자들이 1953. 6. 11 이전에 획득한 은행 자산의 경우도 국가관리하에 둠.

○ “외환법상 외국인”이 기관이나 동독주민들에게 은행자산을 선물형식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외국인 구좌 B”는 저축용 구좌(Sparkonto)가 아니라, 당좌예금용구좌(Girokonto)로만 개설이 가능함.

– 구좌액이 최소한 3,000 동독 마르크 이상일 경우에만 연 1%의 이자를 계상해 줌.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5%의 소득세가 부과됨.
- 구좌소유자는 동독에 주거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시 기초공제액 혜택을 받지 못함.

– 아울러 은행자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구좌액이 25,000 동독 마르크를 넘지 않으면 연 0.5%, 구좌액이 25,000~500,000 동독 마르크일 경우는 연 1.5%의 재산세가 부과됨.

○ “외국인 구좌 B”로부터 서독지역(서베를린 포함)으로 송금.

– 1974. 4. 25 동·서독 간에 체결된 구좌를 통한 송금합의에 따라, 일정한 목적에 한해 서독주민들은 동독에 있는 자신의 구좌를 통해 특정한 경우 송금이 가능하게 됨.

– 매 분기별로 600 동독 마르크까지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액은 DM 과 1:1로 교환됨.

- 이러한 송금신청은 서독지역에서 각 은행, Sparkasse, 우체국을통해 할 수 있음.
- 국가관리하에 있던 은행자산이나 부동산 수입(집세, 임차료)에 의한 구좌입금액은 이러한 서독으로 송금대상에서 제외됨.

○ 1945. 5. 8 이전의 제국 마르크(Reichsmark) 은행자산은 "구 은행자산 청산공채"("Altguthaben-Abloesungsanleihe")로 전환되었는 바, 동독지역 이외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

- 따라서 허가를 받고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은 물론이고, 동독정부의 허가없이 동독을 탈출한 사람도 동독으로 귀환할 때까지는 이러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함.
- 서독정부는 비상업분야 지불교류에 관한 협정에서 권리자들이 과거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6-6-2. 동독주민들의 서독 은행구좌

○ 동독주민은 서독의 금융기관에 자유규좌(Freikonto)와 폐쇄구좌(Sperr-konto)를 개설할 수 있었음.

○ 동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및 본사나 지사는 서독내 금융기관에 각종 화폐를 사용한 이자가 있거나 없는 자유구좌(Freikonto)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자유구좌에 입금하여 처리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서독 이외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은 사람이나 본사나 지사에 대한 대금지불.
- 서독 이외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본사나 지사 및 동독에 있는 사람이나 본사나 지사에서 지정된 대금지불.
- 서독에 정상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독으로 여행하기 위하여 지불될 대금 및 DM 여행자수표의 인출을 위한 서독 금융기관의 대금지불.
- 동독과 외국 간의 거래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및 이와 유사한 급부제공과 관계되는 대금지불.

○ 자유구좌에 있는 예금을 이용하여 서독은 물론 서독 이외 지역에 대한 모든 대금지불이 수행될 수 있음.

- 또한 수표를 통한 지불일 경우, 수표가 동독으로 우송될 수도 있음.

○ 1974. 4. 25일자 양독 간 송금이전에 관한 협정과 서독의 외환법 시행령(Devisenbestimmung)에 의거 동독주민들은 서독지역에서 폐쇄구좌(Sperr-konto)인 "동독주민용 DM 구좌"(DM-Konten-DDR)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됨.

- 동독 마르크와 DM의 교환비율은 1:1임.

○ "동독주민용 DM 구좌"는 연방은행에서 발급된 개별허가나, 연방은행 공지에 따른 일반허가의 조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됨.

- 아래 서술된 목적의 지불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서독지역에 체류하거나, 사업상 지점이 있는 경우, 이 구좌를 통해 인출할 수 있음.
  - 세금, 공과금, 소송경비, 행정수수료, 묘지관리비, 변호사 수수료.
  - 보험료.
  - 주택 융자금 지불.
  - 외환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없는 유가증권이나 저축증서.
  - 서독지역내 건물이나 대지 등 부동산 유지 및 관리에 드는 비용.
- 1년에 10,000 DM까지 인출할 수 있는 경우.
  - 서독지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무상현금제공 또는 서독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주문한 경우.
  - 동독주민들에게 선물로 보내어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구매를 서독지역 회사나 주민들에게 위탁할 경우.
- 동베를린에 위치한 선물용역대행회사인 GENEX-Geschenkdienst에 물건을 구입의뢰할 경우는 1년에 60,000 DM까지 인출이 가능함.
  - GENEX는 서독을 비롯한 서방지역에 3개의 주문위탁회사와 거래를 했는

바(① Inter-Geschenkdiennst GmbH, Lange Str, 4a, 7000 Stuttgart 1, ② Jauerfood, Mosedalvej 15, DK-2500, Kopenhagen-Valby, ③ Palatinus GmbH, Postfach 6583, CH-8023 Zuerich)이 회사에 주문하여 동독주민이 Forum 수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은 20,000 DM임.

- 구좌 소유자가 연간 한도내에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구입물건의 종류, 제공받고 싶은 용역의 종류를 정할 수 있음.

– 동독주민으로서 서독에 일시체류하는 경우 그 가족은 월 5,000 DM까지 인출할 수 있음.

○ 동독의 외환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독주민은 반드시 동독국립은행에 서독의 은행구좌에 소지하고 있는 은행자산액을 신고해야 함.

– 동독주민은 각 지방 재무담당 관서의 허가없이는 서독에 체류하는 동안 500 DM까지 자기 은행구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음.

- 따라서 상기의 목적으로 500 DM 이상 인출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동독에서 지방 재무담당 관서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함.

– 사용하고 남은 현금인 DM은 선물구입 목적으로 동독으로 지참이 가능하며, Intershop에서 선물을 구입할 수 있거나, 동독 마르크와 1:1로 교환이 가능함.

7. 학술·과학·기술 분야

7-1. 협상 및 협정 체결

○ 기본조약 체결 이전까지 학술·과학·기술 분야의 접촉과 교류는 동독측 지도부의 대서독 제한정책 추진으로 인해 매우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졌음.

– 베를린 장벽 설치 이전까지는 동독정부가 접촉과 교류에 많은 제한을 가하기는 했으나 양독 간 대학, 연구기관, 학회 간의 공동협력이 있었음.

- 이러한 동독측의 제한정책은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서독으로 이주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음.

–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동독정부의 허가를 얻어 서독을 방문하여 연구협력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자들은 선발된 공산당(SED) 당원이거나, 정치적인 신념이 강한 자들이었음.

- 1962년의 경우 50여 명의 학자와 예술가들이 동독으로부터 문화 여권을 얻어, 그룹으로 당간부들의 인솔하에, 동독의 국가성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동독대표단"임을 과시하며 여행을 한 바 있음.

– 양독 간 화해의 기운이 돌기 시작한 1963년부터 동독정부는 다시 진정한

학자들 간의 접촉을 허용하기 시작했음.

- 괴테사전과 라이브니쯔 전집 그리고 많은 학술잡지가 공동으로 편집·편찬되었음.
- 1966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서독 통합 총·학장 회의가 Bonn에서 열렸음.

– 이러한 학자·연구자 간의 교류는 60년대 말부터 공산당 지도부가 "전독일적" 통합 학술회의나 연구자들의 모임형식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거의 끊기게 되었음.

- 1970년 경제담당 정치국원 Mittag은 "동·서독 공동의 학술잡지 발간이나 공동의 과학·기술자 회의 등을 개최하기 위한 서독측의 '전독일적'(Gesamtdeutsch)인 성격을 갖는 모든 제안은 '제국주의적인 세계전략'의 일환"이라고 매도한 바 있음.

–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서는 동독정부의 분리노력으로 분단 이전의 과학·학술단체들이 동·서독으로 분열되거나, 국제기관으로 독립해 나갔음.

- 1963년에는 세익스피어협회(1864년 설립)가 동·서독으로 분리되었음.
- 1968년에는 에른스트-발라하협회가 분리됨.
- 다만 괴테협회(1885년 설립)는 국제기구화되면서 분열되지는 않았음.

○ 기본조약 체결 후 동·서독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두고서도 협상을 벌인 바 있음.

– 양독은 기본조약 제7조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실질적이고 인도적인 문제들을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1986년 5월 6일에는 양독 간 문화 협력에 대한 협정, 이른바 문화협정(Kulturabkommen)이 체결되어, 내독 간 과학·기술 협력의 가능성이 열림.

– 1987년 9월 8일 34회에 걸친 회담끝에 동·서독은 과학·기술협정(Das WTZ-Abkommen)을 체결함.

7-2. 주요 쟁점

○ 학술·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한 양측의 이해 관계는 다음과 같음.

– 서독(서베를린 포함)은 학술-, 예술-, 경제 부문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개개인 간의 인력 교류를 망라한 전부문에서의 내독관계를 확대하고 공고히 다진다는 원칙하에 과학·기술 협력부문에서도 가급적 많은 교류와 협력 관계를 맺고자 노력했음.

- 서독의 경우, 국가와 관공서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다수의 계획들은 관련단체와 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직접 추진화되었음.
- 이같은 협력관계 추진시 주요 기준은, 해당 양독 간 사업이 상호 간의 이해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였음.
-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상업성의 문제는 문화 교류 부문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시되었음.
  - » 상업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의 일례로 특허권 사용허가 문제를 들 수 있었음.
- 서독은 특히 연구 및 기술 개발 부문에서의 협력 관계가 안보 문제와 직결될 경우,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었는데,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무역 규정을 통해 통제하였음.

– 연구-기술부문에서의 양독 협력 관계를 보는 동독의 시각은 서독측과 근본적으로 달랐음.

- 동독은 서독처럼 양독 간의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보전한다거나 또는 내독 교역에서처럼 과거와의 연속성 유지라는 의미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음.
- 동독은, 내독관계를 서로 간에 정상적이고, 선린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기본 조약을 통해 분명히 다짐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독을 서독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독립 국가로 보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과학·기술체계의 확립을 원했음.

• 동독이 양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오로지 동독 국민 경제의 증대를 꾀하여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 였는데, 이를 위해 동독으로서는 서독으로부터의 기술 도입과 과학·기술 상의 Know-how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동독은 말로는 상호 이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험상 상호성이란 거의 기대하기 힘들었음.

• 대부분의 과학·기술 분야가 보호 부문으로 확정되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 동구권 국가들에게서 보이는 과민한 비밀 유지 성향이 동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음.

• 따라서 동독이 주장하는 '상호이익'(gegenseitiges Nutzen)이란 일방적으로 동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였음.

– 서독측 참가자들은 이러한 동독의 태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려 했으며, 협력관계가 한쪽으로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간의 이익'이라는 기본원칙이 실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했으며, 과학·기술협정에서는 이를 관철시킨 바 있음.

○ 연방 정부는 문화 협정을 토대로 한 기관 대 기관, 개인 대 개인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해 양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음.

– 양독은 국가 기관, 조직, 기구들 외에 있는 일반단체, 협의 그리고 문화 부문 종사자들도 양독 공동 협력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화 협정에 규정하여 놓았는 바, 이는 협정 내에 '개인적 요소'들을 첨가시키고자 한 서독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서독이 이해하고 있는 예술 및 학문의 자유 개념에 따를 것 같으면, 독일인은 모두 이 양독 간 문화 협력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동독측은 국내여행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개인적인 접촉을 방해해 왔으며 이점이 양독 간 협력 사업의 한계로 드러났음.

○ 양독 간 협력에 있어서 그 가능성과 한계는 다름아닌 헌법, 이념, 청치, 사회 전반에 걸친 시각차이에 의해 좌우되었음.

– 양독 간 과학·기술 협력관계 역시 정치적 영향권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없었는데, 전반적인 독일 정치 상황과 동·서 진영 간 국제 정치 관계가 이 분야의 협력 관계를 규정했음.

○ 과학 분야에서의 동독과의 협상은 동시에 진행 중이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서독과 소련 정부 간의 협상과도 관계가 있었음.

– 1986년 7월 22일 체결된 서독과 소련 간의 과학 협정은 정체된 양 국가 간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는 바, 이를 통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 보건 그리고 농업 연구 분야에서 '관계 분야 협정'(Ressort-abkommen)이 체결될 수 있었음.

– 서독 정부측에서는 이 모스크바 해결책이 동독과의 과학·기술협정 체결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했었음.

○ 베를린을 협정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과학·기술협정 체결시 서독측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시했음.

– 정치적 이유 외에도 베를린은 이곳에 기반을 둔 학문적 잠재력의 이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중요성을 띠고 있었음.

– 베를린에는 많은 유명연구소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종합 대학, 7개의 대학 및 전문 대학이 있으며, 약 7천 7백여 명의 연구원들이 종사하고 있었음.

• 예외적으로 이들 베를린 주 정부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은, 서베를린과 서독이 별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는 한 동독측에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음.

– 어쨌건, 서베를린에는 전체 서독 인구의 3.1%가 살고 있는 반면, 서베를린 거주, 연구원들의 비중은 11%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양독 간이 과학·기술 협정이 체결될 경우 반드시 서베를린을 포함하자는 것이 서독측의 기본 입장이었음.

7-3. 문화협정에 의한 학술·과학·기술 협력

○ 문화협정과 과학·기술협정에서의 양독 간의 협력은 단순히 자연 과학, 공학 그리고 기술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술 분야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 이같은 이유로 학술 분야 역시(교육 포함) 1986년 5월 6일 발효된 문화협정 부문 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 문화협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협력 대상 분야는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학술 분야임.
- 이 밖에 문화협정 제2조는 학술과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들과 협력형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 양독은 학술 및 교육 부문에서의 협력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
  - 경험, 지식 및 정보 교환을 위해 학자, 전문가, 연구원 파견 및 학술 회의 참가:
  - 강연, 연구, 유학을 통한 학자 교환:
  - 대학생 교환:
  - 전문 서적, 교재, 시청각 자료 및 교육 자료 교환 사업들은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함.

○ 문화 협정을 바탕으로 한 양독 간 학술교류는 계속 확대되었음.

- 학술 분야에서의 교류는 주로 강사 총빙 또는 학술 회의 참가 등의 형태로-질적으로는-개인적, 전문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류 증대 가능성 내지 양독 학자들 간의 관심에 비해 양적으로는 미미한 편이었음.
- 국가 차원의 협력, 교류 외에도 수많은 교류들이 연방의 지원없이 참가 법인 단체 또는 각 관련 기구들의 재정 부담하에 이루어졌으며 또 초청 동독인들에 대한 비용을 서도극 초청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 또한, 국제 행사를 통해 맺어진 양독 간 교류 활동이 점차적으로 동·서독 간의 협력 사안으로 발전된 경우가 종종 발견됨.
  - 동독은 학술 분야에서만 전세계적으로 수백 내지 근 1천여 기관으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비국가단체(NGOs : internationale nichtstaat - lichen Organisationen)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으며, 특히 UNESCO, ICOMOS, ICOM 내지는 국제 연극 기관인 ITI 등에서 적극적으로활동을 하였음.
  - 따라서 이들 단체들을 통해서도 쌍방 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전쟁 전에 맺어진 사업 관계 중 일부 편집 사업들, 심지어는 19세기에 시작된 일부 편집 계획 사업들은 이른바 '공동 계획'(Gemeinschafts-vorhaben)이라는 이름 하에 통독 직전까지 지속되었음.
  - 가장 대표적 사업으로서 '그림 독일어 사전'(Grimms Deutsches Woerterbuch) 편찬 사업을 들 수 있음.
  - 동베를린 소재 동독학술원 산하 언어학중앙연구소내 '독일어 사전 작업 연구부서'(Arbeitsstelle Deutsches Woerterbuch im Zentralinstitut fuer Sprachwissenschaft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 der DDR in Osterlin)와 괴팅엔학술원 산하 '독일어 사전 작업 연구부서'(Arbeitsstelle Deutsches Woerterbuch bei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Goettingen)가 공동으로 그림 독일어 사전 편찬 작업 활동을 하였음.
  - 이 사업은 분단 독일이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 학술 영역활동이라는 점 외에도, 공동의 언어와 문화 보전작업에 최상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의 모범이 되었음.

7-3-1. 연방내독관계성(BMB)을 통한 지원

○ 연방내독성에 의한 재정과 행정의 직접지원은 문화협력협정 제12조 2항에 근거하는 바, 문화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수개년 전부터 연방내독성은 이러한 지원을 수행하여 왔음.

- 문화협력협정 제12조 2항: "문화활동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성격상 협정의 목적에 부응하는 기타 대책에 대한 지원은 배제할 수 없다."

○ 동·서독 학자 간의 대부분 접촉은 연방내독성의 재정지원 및 막대한 행정 지원을

받고 촉진되는 바, 재정지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 학술접촉을 위한 직접지원.
- 양측의 합의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작성된 사업지원.
-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이 관장하는 대학생과 학자의 교환과 동독행 연구여행 및 자료수집여행(그때까지 연구여행 및 자료수집여행은 연방내독성의 직접지원을 받음) 지원.

○ 1985년 연방내독성 연감에 처음으로 이러한 사실이 발표되었는 바, 이에 따르면 지난 수년 간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동·서독 학자들간의 만남이 이미 지원되었음.

- 동독과 동베를린 학자들의 서독내 학술행사와 기관의 방문 여행.
- 서독과 서베를린 학자들의 동독내 학술행사와 관련된 기관의 방문여행.
- 동독과 동베를린 출신 학자들의 서독에의 교수 초빙.

○ 1985년 중 동·서독 학자들 간의 만남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2배가 증가한 200여명의 학자들이 각각 상대국을 방문한 바 있음.

○ 1987년도 연방내독성 연감에 따르면 1987년 중 동·서독 학자로서 지원받은 사람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동독으로 학술목적으로 연구여행을 한 교수와 학생 역시 지원을 받았음.

○ 연방내독성에 따르면 1988년 중 약 400명의 서독학자들이 동독 여행시, 약 250명의 동독학자들이 서독여행시 재정지원을 받았음.

- 8개의 동독행 학술연구여행(교수와 대학생)이 지원을 받고 동독 학술기관에 의해 후원받았음.
- 40개의 동독행 자료수집여행이 지원받았음.
- 4명의 동독출신 초빙교수가 지원받았음.

7-3-2. 문화협정상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의 학술협력

○ 문화협정 제12조 1항에 따르면 동·서독은 각각 2년 간 유효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음.

- 서독측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건의한 사항을 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는 바,
- 목록에는 문화, 교육, 학술 등의 제 분야가 망라되어 있음.

○ 학술분야의 건의로는 공동프로젝트나 콜로키움의 실시, 상대국에의 연구 체류와 안내체류, 객원체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 연방 각 부의 대표들과 각 주 문화장관회의(KMK)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건의안의 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연방내독성은 이를 동독과 협상함.
- 건의안은 해당 주정부 부서가 연방내독성에 제출함.

○ 1988/89년도 동·서독 사업계획으로는 약 100개의 사업이 합의되었는 바, 그 중 21개는 (광의의) 학술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분담 수행하는 연구로부터 안내여행과 콜로키움 등과 같은 것이 있었음.

- 전문분야별 프로젝트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음
  - 언어과학, 문화과학 ……6
  - 법학, 경제학, 사회학……10
  - 수학, 자연과학……2
  - 의학, 수의학……1
  - 농업, 임업, 식품과학……0
  - 공학……1
  - 미술, 음악, 체육……1

○ 문화협정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동·서독 학술협력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에 중점을 두었었음.

- 자연과학과 공학이 제한받지 않는 가운데 문화협력협정에 부응하여 이러한 중점이 계속 유지되도록 함.
- 제1차 사업계획(1988/89년)의 학술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정교수가 참여했으며 극소수의 경우에는 조교수와 연구원도 참여하였음.
- 연방내독성의 방침은 사업계획이 개인의 권익을 실현시키는 기구화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사업계획은 참여자의 교체를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합의되도록 하는 것임.

7-3-3.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을 통한 지원

○ 문화협정의 일환으로 체결된 제1차 2개년 사업계획에 포함된 동·서독 대학생 교환 및 후진학자의 교환은 DAAD가 수행하도록 위임되었음(문화협력협정 제2조).

- DAAD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회칙을 변경하였는 바, 그 이유는 기존회칙이 오로지 외국에 대한 관할권만을 규정하였기 때문임.

○ 교환대상 대학생과 학자의 수는 균등하지 않게 보이지만 대체로 주민수에 부응하여 수용능력이 결정되었음.

- 서독은 연간 200명의 동독 출신에게 최장 1개월, 100명에게 최장 6개월 간 서독체류의 편익을 제공하고,
- 동독은 연간 100명의 서독출신에게 최장 1개월, 10명에게 최장 6개월 간 동독체류의 편익을 제공함.

○ DAAD가 열거하는 지원요건을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중간시험을 마쳤을 것).
  - 박사학위 과정 대학생.
  -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학자로서 아직 교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 전공과목 : 모든 학문분야 및 예술분야.
- 성적이 우수할 것이 전제조건임.
- 선발위원회가 신청서를 판정, 결정함.
- DAAD의 동독측 상대역.
  - 교육성.
  - 문화성.
  - 학술원.

○ 최장 1개월간의 단기체류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되며 최장 6개월 간의 장기체류는 집중연구, 연구체류, 전문 과정 참여 등의 형태를 취함.

○ 문화협정이 체결된 2년후부터 DAAD가 대학생교환 및 학자교환을 수행함(1988년 여름부터)

- DAAD 접수한 문의건수는 1,400개, 신청건수는 308개
- 171명의 대학생과 학자가 단기체류 및 장기체류자로서 동독측에 통보됨.
- 동독측은 163명의 교환대상자를 통보함.

1988년도 DAAD가 지원한 동독과의 학술교환

	서독(서베를린 포함) 출신 장학생	동독(동베를린포함) 출신 장학생
단기체류(최장 30일 간)	24	106
연구체류(1개월~6개월까지)	24	20
총	29	126
그 중 교수/박사	1	111
박사과정/연구원	8	15
대학생	20	–
그 중 언어과학/문화과학	6	44
법학, 경제학, 사회학	13	10

	서독(서베를린 포함) 출신 장학생	동독(동베를린포함) 출신 장학생
수학, 자연과학	1	45
의학, 수의학	3	6
농업, 임업, 식품과학	1	1
공학	4	15
미술, 음악, 체육	1	5

○ 상기 도표를 보면 서독측 장학생의 전공과목의 약 2/3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임에 비해 동독측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자연과학과 공학 출신이었음.

- 특히 동독측에서는 단 1명의 대학생도 교환계획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반면, 서독측 장학생의 대종인 약 2/3가 대학생임.
  - 서독은 대학생과 신진학자 중심으로, 동독은 기존의 학자중심으로 학술교류를 추진하여 왔음.
- 1989년도 통계를 보면 동독측으로부터 134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신청되었는바, 그 중 63명은 교수이고 29명만이 "소장학자"임.

○ 동독으로부터 귀환한 교환계획 참가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동·서독 학술협력이라는 이 분야가 매우 늦게 시작되었지만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음.

- 장학생 일부가 참석한 기자회견에 관한 DAAD의 발표에 따르면
  - "장학생들은 동독 학술기관의 후견인들이 보여준 적극적 참여정신과 융숭한 환대를 노이 평가하며, 동독에 체류하는 중 해당 연구기관과 장기적인 연구접촉 내지 공동출판의 결실을 맺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함.

○ 문화협력협정은 개별학자 역시 한시적 체류를 넘어 문서관련여행과 연구여행 역시 가능하도록 해주었는 바, DAAD는 서독 대학 관계인을 위해 이러한 형태의 학술협력 역시 지원해 줌.

7-4. 과학·기술 협정 이후 협력

○ 과학·기술협정에는 동·서독 학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27개 프로젝트의 목록이 명기되어 있는 바, 그 공동 프로젝트 분야는 다음과 같음.

1) 석탄분석 등
2) 매연가스 처리 등
3) 원자로 안전
4) 핵물리학
5) 도자기 연구
6) 고에너지 실험
7) 산화방지 연구
8) 표면처리
9) 산업용 로봇
10) 산업심리학
11) 노동심리학
12) 미생물학
13) 면역체
14) 생물공학
15) 생물학 정보은행
16) 바이오 테크놀러지
17) 폐수처리
18) 인니 처리
19) 토양 생산성 증가
20) 분자 생물학
21) 산림연구
22) 암연구
23) 전염병, 에이즈
24) 주택건설
25) 유전 보전
26) 연구수립계획 및 학술개발
27) 특허자료 (협정 제2조 제2항 근거)

○ 연방과학기술성은 에어랑엔 대학 부설 IGW 연구소에게 동·서독 연락사무소(BzB) 설치를 위촉하고 상기 27개 프로젝트 구체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 있는데 BzB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았음.

- 연방과학기술성과 밀접한 협의하에 대동독 협력의 행정적, 재정적 후견 업무 및 가능시 과학·기술적 후견업무 수행.
  - 정보교환, 전문사절단 교환, 공동사업계획의 준비 및 수행, 개별계획 수행을 위한 학자 교환.

- BzB는 동독의 학술발전과 SED의 연구정책, 기술정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IGW 소장 문헌 및 정보자료 사용).

– 양독 간 협정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원칙상 미정이기 때문에 BzB는 각 학술기관과 협조하에 대동독 학술적 협력의 범위를 구체화해 나감.

○ 과학·기술협정이 체결되고, 각 공동프로젝트들이 미처 구체화되기 전에 동독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사업들은 통독 이후에 동독의 과학·기술 연구잠재력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한 바 있음.

○ 과학·기술협정 체결 이후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각 연구재단이나 기업체의 연구소 등이 동독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7-4-1. 독일연구공동재단(DFG)을 통한 지원

○ 독일연구공동재단 역시 지난 과거 DAAD와 마찬가지로 동독과의 학술협력을 지원할 수 없었지만 문화협력협정과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정치적 조건이 변화됨에 따라 동독과 과학·기술분야의 광범위한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통해 많은 기관을 지원했음.

○ DFG는 이미 수년 전부터 동구권과 동남구권 각국의 학술원과 학술협력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지원을 해 왔음.

– DFG는 1988년 12월 22일 동독 학술원과 학술협력에 관한 합의를 체결함.

– DFG와 동독 학술원 간의 합의의 목적은 “양측 학자들 간의 상호협조적 학술협력을 지원함”에 있었는데,

- 특히 연구프로젝트가 지원대상이며,
- 어떤 분야를 연구할지는 학자의 관심에 일임하고,
- 학문의 전분야에 걸친 협력이 강조되었음.

○ 공동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이 지원됨.

– 학술정보와 출판물의 교환

– 공동학술행사

–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를 위한 학자교환

○ 장기체류(1개월부터 6개월까지) 학자교환을 위해서는 연간 총 25개월, 단기체류(최장 4주간) 학자교환을 위해서는 연간 총 60주간이 계획되었음.

– 공동연구프로젝트와 공동학술행사의 일환인 체류는 이와 무관함.

– 나아가 각측은 합의된 학자의 수치 외에 특정 학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이에는 상대측의 동의가 필요함.

○ DFG의 발표에 의한 1989년 중반까지 동독에 연구체류를 원하는 서독학자의 신청건수는 적었던 반면, 동독학자를 서독의 연구기관으로 초청하려는 관심이 매우 컸음.

– 이와 같이 동독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하려는 서독학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독내 연구체류 신청건수가 매우 많음.

– 즉 1989년 중반 현재 약 40건의 동독 학자의 연구 체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대다수는 4주 간의 단기체류 목적이었음.

○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단기체류의 빈도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이유는 단기체류가 연구소와 현장의 연구조건을 습득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적절치 않기 때문이었음.

– 전문과목별로 볼 때 자연과학과 공학이 대종을 이루고, 그 반면 정신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협력은 매우 저조했음.

○ 학자교환에 비교하여 공동프로젝트의 발전이 매우 저조한 것은 자연적인 추세임.

– 그러나 1989년 중반에 이르러 공동프로젝트 분야에 2가지 계획중인 프로젝트가 확정되는 중대한 조치가 취해짐.

○ DFG의 특별 프로그램 “초빙교수제도”의 일환으로 이미 다년 간에 걸쳐 동독출신 학자들이 서독에 교수 및 연구차 체류할 때 지원을 받았음.

– DFG의 발표에 의하면 1988년 중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명의 동독 출신 초빙교수가 총 10개월 간 서독에 체류하였다고 함.

– 1988년 중 기타 동구권 출신 초빙교수는 총 18명이었음.

○ Max-Planck-Gesellschaft 역시 지난 수년 간 개별적으로 학술접촉을 해오다 동독 학술원과 1989년에 협정체결을 시도한 바 있음.

7-4-2. 폴크스바겐 재단(VW-Stiftung)을 통한 지원

○ 1989년 초 이래 VW 재단은 동·서독 학술협력을 지원하는 중요하고 흥미스러운 활동을 시작하였는 바, VW 재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동독의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학술협력을 지원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동·서독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하며 양국 간에 거행되거나 국제적으로 거행되는 심포지움 등 학술대회도 지원함.

- 각종 용도에 필요한 재원이 신청될 수 있음(단, 동독내 학술기관의 인건비는 제외).
- 따라서 동독내 학술기관을 위한 특정 학술기자재의 일회성 구입이 프로젝트로서 신청될 수 있었음.

○ 신청서는 VW 재단에 제출하면 되며 반드시 참가하는 양측이 공동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었음.

- 공동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측이 챔임지는 부분을 VW 재단에 제출하면 됨.

7-4-3. 쾨어버 재단(Koerber-Stiftung)을 통한 촉진

○ Hamburg 소재 Koerber 재단은 전적으로 개인 이니셔팁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단인 바, 동 재단 설립자인 Dr. Kurt A. Koerber는 다년 간에 걸쳐 체제를 초월하는 대화를 지원한 바 있고 1989년 1월 Dresden에서 국제적 환경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주관한 Bergesdorf 대화 서클의 창시자이기도 함.

○ Koerber 재단의 제한적 프로그램은 동·서독 학술교환에 중점을 두고 연간 총 10명의 동독학자를 지원했음.

- 지원자는 28세 미만이어야 하며 동독측이 선발함.
- 동 재단의 조건 중에는 지원자의 "일부"는 Dresden 출신일 것과 "일부"는 환경보호분야의 연구일 것도 포함.

○ Koeber 재단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인 장학생 수는 1988/89년에 5명이었으며 나머지 5명은 1989/90년 중에 선발 수여할 계획이었음.

- 1988년 당시 서독에 체류 중인 5명의 동독 장학생은 모두 수물학과와 공학을 전공하는 자들이었음.

7-5. 경제적 측면에서 본 과학·기술협력

○ 서독측은 내독교역을 통해 80년대 후반 매년 6천여 회사들이 6만여 건의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특히 차원높은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COMECON 국가들에 대한 하이테크 기술제품들의 수출이 주로 동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음.

- 이미 수십년 간 내독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서독기업들은 투자, 소비, 제조업 등 거의 전 분야를 막론하고 동독의 경제가 기술낙후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었음.
  - 생산시설과 제품품질 면에서 세계시장의 수준과 동독 경제부처가 내세우고 있는 요구치에 부응하고 있는 동독 회사들은 소수에 불과했음.
- 서방이 기술혁신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 70년대 초반 서방으로부터의 방대한 산업시설 도입과 예상치 않는 경제발전 부진 등으로 인해 적자에 빠지게 된 동독은 긴축재정정책을 펼쳐 나갔는데, 이 같은 긴축정책을 통해 동독은 COMECON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국제신용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현대화가 절실한 수많은 동독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되었음.
  - 최근 10년 간 서방이 눈부신 기술혁신을 이루게 됨으로써 동·서독 간의 기술 격차는 보다 더 커지게 됨.
  - 70년대 긴축재정 시기 동안 동독이 서독으로부터 들여온 제품들은 원자재와 기초자재 그리고 기껏해야 일부 부속품 내지는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정도로만 그쳤을 뿐, 생산설비 현대화와 관련된 제품들은 거의 거래가 없었음.

○ 오히려 동독정부는 비용부담이 클지라도 가급적이면 자력으로 경제회복과 현대화를 꾀하겠다는 경제정책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이와 관련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 강화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도 하였음.

- 서독기업들은 이러한 동독에서의 움직임을 큰 관심을 갖고 추적하였으며, 실제로 동독 중소기업과 연구단체 간에 협력관계가 긴밀해지기도 하였음.
  - 가격의 중앙통제제도, 기업 간 경쟁력 부재 등 체제의 한계 때문에 과학·기술개발의 동기는 유발되지 않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지도부는 전체 경제를 급격히 성장시켜줄 수 있는 결정적 활력소가 연구 및 개발분야-특히 핵심 기술분야-로부터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 동독의 전통적인 생산업계들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낙후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비합리적 생산조직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다, 핵심기술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뚜렷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부담만 가중되었음.

○ 이런 상황하에 동독경제학자 뇟쫄트(Noetzold) 교수는 1986년 서방학술지에 새로운 형태의 동·서 협력관계를 주장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는데, 동유럽 국가들과의 작업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선 동·서독이 기술집약 산업 부문에서 장기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음.

- 대 COMECON 국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서방 첨단기술제품들의 비중은 3%에도 못미치는 바, 그 이유로서 뇟쫄트 교수는 첫째, 서방의 무역규제조치, 둘째, 사회주의경제 체제상의 문제를 들고 있음.
  -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은 생산절차에 대한 첨단기술 도입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함. 이 밖에도 첨단기술은 기업 간 협력관계, 직접투자 그리고 특허권 이전을 통해 교환되기 마련인데, 기존 동·서 협력관계 범위에서는 언급한 교류 내지 활동들이 불가능하다고 함.
- 서독회사들은 소련과 동독에 대한 주요 납품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방국가들과의 사업규모가 보다 더 큰데다, 미국과 긴밀한 기술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등으로 해서 COMECON 목록에 따른 수출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음.
  - 특히 고성능 기술을 제공하려면 연방산업 관리청(Bundesamt fuer gewerbliche Wirtschaft)의 복잡한 승인과정을 거쳐야 함.
  - 서독정부는 전략적 측면에서 더 이상 보호가치가 없는 COCOM-무역 규제

대상은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계속 정치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매번 규제 대상 조정 과정에서 이른바 하급기술 종목에 대해 광범위한 해제조치를 취했음.

○ 서독의 주요기업들은 응용기술 부문에서의 동독 콤비나이트와의 협력강화에 큰 관심을 보였음.

- 물론 이같은 관심은 양측 모두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인데, 서독기업들은 특히 동독이 동구권과의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 교두보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독 간의 과학·기술협정을 환영했음.
- 특수시설 생산업자들은 과학·기술협정 체결 이후 양독이 과학·기술협력 차원에서 환경보호, 원자로 안전, 재생 에너지, 오물제거, 리사이클링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 자신들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았음.
- 통상의 기업협력형태인 허가생산(Gestattungsprodustion : 서방회사로부터 기술·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방법은-품질개선과 수출확대에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을 받았음.

○ 서독의 기술개발 엔지니어들도 동독의 연구원들과 콤비나트 연구부 및 기술개발부 담당자(Coumterparts)들의 know-how를 높이 평가했음.

- 이 밖에도 이들은 수차례 협력회의를 통해 접하게 된 다른 COMECON 국가, 연구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독 학자들은 같은 언어, 동일한 수준 그리고 동일한 산업 철학을 나누고 있다는 점을 동·서독 협력관계의 또 다른 장점으로 지적했음.
- 특히 취약한 시설상의 조건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일부 동독 연구팀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음.
- 동독 특허권 판매 증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이 소련과 개발도상국에서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는 서방에서도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기도 함.

○ 서독의 기업들은 과학·기술 교류 협정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될 대화들이 관료주의, 형식주의로 기운다거나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데 우려를 표시했음.

- 협상 대상자 목록을 만들어 협상을 규제하는-일부 COMECON 국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조치는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결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 이 밖에도 기업들은 가까스로 이루어 놓은 대화창구가 불필요하게 관료·경직화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했음.

○ 서독기업들이 양독 간 과학·기술 교류 등과 같은 협정 체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같은 협력관계는-적어도-장기적으로는 동독의 경제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로써 서방시장에서의 동독제품 판매 기회가 개선될 것인 바, 이는 다시금 동독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서독 자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고려에서였음.

○ 서독경제계의 견해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서독 기업들에 대한 동독 지도부의 신뢰를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며, 이같은 밀접한 협력관계야말로 서방에 종속될 우려에서 비롯된-주로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동독의 불신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음.

8. 환경 분야

8-1. 협상 및 협정 체결

○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환경보호상의 문제들에 관한 양독 간의 협상은 대부분 다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구체적으로 오스트제 보호협정(Ostseeschutzkonvention)을 들 수 있음.

○ 1972년 기본조약을 통해 결정한 합의사항에 따라 1973년 11월에 동·서독 간 환경보호 문제에 관한 협상이 개최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동독측의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소원해짐.

- 그 이유는 서독정부가 1974년 7월 서베를린에 연방환경청을 설립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 80년대 초반부터 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이 재개되었는 바, 그 중 베를린시의 하수문제 그리고 Werra강의 하천 보호대책 등을 들 수 있음.

- 1982년 말, 베를린 하천보호에 관한 협상이 종결됨.
- 1984년 말, Werra강의 염화 방지대책에 대한 협상이 개최됨.
- 1985년 1월, 동독과 서베를린 간에 쓰레기 처리계약이 수정됨.

○ 1985년 11월과 1986년 1월, 환경보호 기본협정(Umweltchutzrahmenabkommen)을 위한 협상이 개최되었음.

- 호네커의 서독방문을 즈음하여 1987년 9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사선 보호분야에서의 정보 및 경험 교환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관계개선을 위한협정이 체결됨.
- 다국적 차원에서의 협상으로서 1975년 헬싱키 CSCE 회의 및 1984년 뮌헨, 198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국제환경보호 회의를 언급할 수 있음.

8-2. 주요 쟁점

○ 동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환경 및 환경보호” 문제를 거의 등한시해 있음.

- 동독은 환경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정도였는 바, “산성비”(Sauerer Regen)와 같은 개념은 동독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었음.
  - 동독은 서방의 환경문제들을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부산물”로만 간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독에서 드러나고 있는 환경문제 역시 “자본주의의 유물”이라고 선전했음.
- 동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 우월함을 과시코자 했으므로 이 같은 경제분야의 경쟁의식이 환경보호에의 중요성을 간과케 만들었음.
  - 동독정부는 환경파괴를 산업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여겼음. 즉, 각 분야 모두 최대의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환경파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반면, 생산수단과 자원의 사유화를 폐지시킨 사회주의체제는 근로자와 자원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환경보호의 기본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동독은 사회주의체제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간의 문제를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서독에게 입증해 보일 수 없었음.
- 동독은 1973년부터 환경보호문제를 연간계획 및 5개년 계획안에서 다루어 오고 있으나,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실제투자는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 에너지 위기 및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환경보호문제는 점점 더 뒷전으로 밀려났었음.
  - 지방문화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격한 환경규범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바, 대부분의 환경오염도는 한계치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었음.
  - 또한 지방문화법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재정적 처벌 조치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음.
  - 단, 폐기물 재활용 부문에서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환경보호가 경제성과 연관되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줌을 의미했음.
- 경제와 환경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호는 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보장해 주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동독은 특정 이념에 기인하는 체제의 속성과 경제성장 문제에 급급해 이를 깨닫지 못했다고 보아야 함.

○ 서독정부의 환경정책은 예방, 원인제거 그리고 협력의 원칙하에 실시되었음.

- 환경보호정책은 환경오염 제거 내지 환경피해 감소를 그 목표로 하지만, 앞으로의 환경정책 즉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은 환경상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이와 관련, 환경피해 제거 비용을 그 발생자에게 직접 부과함으로써 환경보호의식의 향상을 유도코자 함. 이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 환경보호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개개 시민, 환경단체, 교회, 노조 등 사회집단 모두의 협력이 요구되는 바, 특히 국민들의 환경의식 증대는 환경보호정책에 있어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음.

○ 70년대 말부터 환경정책에 대한 양독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환경문제는 이제 사회·경제 문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띠게 됨.

- 환경보호 “문제 및 필연성”을 먼저 입법화시킨 것을 동독으로서 1968년에 제정된 동독 헌법 제 15조가 이 문제를 다루었음.
  - 헌법 15조를 근간으로 하여 관계법들이 제정되었는 바, 이들 환경법들은 1970년 발포된 지방문화법(Landeskulturgesetz)을 그 토대로 하고 있었음.
  - 동독 사회주의 지방문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법(Gesetz ueber die planmaessige Gestaltung der sorialistischen Landeskultur in der DDR)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포괄적인 법은 대기 및 하수오염, 소음공해, 오물제거 내지는 폐품활용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 각 부문에 대해 자세한 시행령을 마련했음.

- 서독은 1971년 환경보호계획 수립 이후 계속해서 새로운 법적조치들을 마련했음.
  - 구체적으로 1975년 수리(Wasserwirtschaft) 법영역과 관련된 세제 관리법(Waschmittelgesetz), 1976년 제4차 수리균형법(Wasserhaushaltshesetz) 개정안, 1978년 하수방출법(Abwasseralgabengesetz)을 들 수 있으며, 대기정화 부문에서는 1975년 연방 공해물질 방출 보호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그리고 1972년 쓰레기 처리법(Abfallbeseitigungsgesetz) 등이 제정됨.

○ 서독은 지형상 동독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심하게 받을 수 있고, 또한 환경 오염의 속성상 인위적인 장벽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양독 간의 환경보호 협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음.

- 하천부문의 경우, 동·서독 경계를 지나는 강의 상류가 주로 동독에 위치하고 있어, 서독에게는 매우 불리했음.
- 국경 간의 대기오염 문제 역시 동독의 오염도가 더 심한데다 기상학적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는 관계로 서독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음.

○ 내독 간에 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피해와 관련, 이에 대한 방지대책들은 주로 동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독측의 입장이었음.

- 동독 역시 원칙적으로는 환경피해 제거를 그 발생자에 부담시키는 원인제공자부담원칙(Verursacherprinzip)에 동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용상의 이유를 들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거부했음.
- 이 밖에 이같은 환경보호 조치는 일방적으로 서독에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동독은 양독 국경 간의 환경피해 제거를 미루어 왔음.
- 양독 간 환경보호 조치와 관련한 동독의 이 같은 태도는 서독으로 하여금 동독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서독의 환경기술사업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유도해 낸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음.
  - 이를 통해 동독은 환경보호 부문에서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기 때문임.

○ 동독과 서독은 형식적으로는 항상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에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내독 간 환경교류 분야에서처럼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심한 분야도 없었음.

- 동·서독이 함께 연한 오스트제(Ostsee) 오염도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였던 60년대 말/70년대 초, 내독 간의 정치적 갈등은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음.
  - 서독측은 동독 주권인정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방침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동독이 참여하고 있는 오스트제 주변국가들과의 국제협정 체결을 거부하였음.
- 기본조약 체결이 양독 간의 환경관계에도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무산되었음.
  - 서베를린에 연방환경청을 설립한 사실을 위법행위로 간주한 동독은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협약 협상을 완전히 중지시켰음.
  - 그러나 1974년~1980년 사이 양독 간에 환경보호와 관련한 대화가 전혀 없었던 이유는 사실 동독의 경제 및 석유위기에 기인함.
    - 즉, 경제발전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판에 비생산적인 환경보호에 투자할 여유가 동독에는 없었기 때문임.

○ 양독의 정치 및 경제상태는 환경부문에서의 내독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는 특히 동독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편이었음.

- 다시 말해 환경보호상의 필요성 및 인식만을 표명하는 것 만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양독 간의 관계를 구축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았음.
- 내독 간 견해차이가 계속 존재하는 한 그리고 경제상태에 따라 양독 환경보호정책 및 환경보호 협력관계가 좌지우지 되는 한, 양독 간에 건설적인 협력관계, 특히 환경보호에 중요한 장기적 차원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들었음.

○ 포괄적인 환경보호법을 구비하고 있는 동독이 실제 진보적인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닭은 일반적인 환경의식 결여 때문이기도 함.

- 동독이 지방문화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국제환경보호 협정을 체결한 것은 동독인들의 높은 환경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대외과시용으로써 오히려 이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 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동독 헌법과 지방문화법에 따를 것 같으면 환경보호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일이었으나, 동독정부는 실제 개개인의 의식적 환경보호 활동을 그리 달가와 하지 않았음.
  - 왜냐하면 환경보호 운동단체들이 동독 반체제 운동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부터 신교 신자들의 주도하에 환경의식 계몽 활동이 펼쳐지기 시작함.
  - 그리하여 1980년 "자연·환경보호단체"(GfUN : Gasellschaft fuer Natus und Unwelt)가 결성되어, 80년대 말 6만여 명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었음.
  - 이 단체는 서독의 환경 및 자연보호 연맹(Bund fuer Umwelt und Naturschutz)과 비슷한 기능을 맡고 있는 바, 1987년 이 두 단체 간에 공식적 회담이 개최된 바 있음.

○ 환경오염 문제는 동·서독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었음.

-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말 그대로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전유럽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문제였음.
  - 이 밖에 해상오염 내지 오존층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대기오염 등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보호 대책이 요구되었음.
- 동독 고유의 환경문제들도 양독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았는데, 우선 양독관계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오염과 대기오염상의 피해가 서독측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음.
  - 그러나 1,380㎞에 달하는 동·서독 간의 경계, 지리적으로 국경부문에 자리잡고 있는 광산업 그리고 경제체제상의 차이점 등이 양독 국경 간에 발생된 환경피해의 신속한 처리를 어렵게 만들었음.

- 환경보호를 위한 양독 간의 협력관계는 서독이 동독에 대해 관련분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였음.

8-3. 양독 국경지역에서 하천 보호 문제

○ 동독은 수리(Wasserwirtschaft)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음.

- 우선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부족한데다 연간 강우량 역시 서독에 비해 200mm나 적은 편이면서, 대단위 상수도 소비자이자 하수오염의 주범인 화학산업이 동독의 주요 업종이라는 문제가 있었음.
- 자연수의 공급량은 제한된 반면 산업, 농업 및 일반 주민들의 급수량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관계로 하수정화 문제는 시급한 사항이었음.
  - 심지어 일부 공업지역에서는 하수를 5차례 이상 정화시켜 재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했음.
  - 따라서 하수오염 방지책이 마련되야 했으나, 실제상황은 그렇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동독 뿐만 아니라 서독 역시 심각한 환경 피해를 겪고 있었음.

○ 양독 국경지역에서 벌어진 하천의 환경오염문제로서 다음 예를 들 수 있음.

- 동독 튀링엔 주 칼륨 공장은 1968년까지 염화나트륨 및 염화마그네슘을 대량 포함한 하수물을 일부는 지하로, 나머지는 Werra강과 Ulster강으로 방출시켜오다 1968년 이후부터는 매일 4만t에 달하는 소금물을 Werra강으로 직접 방출시켰음.
  - 그 결과 그대로 방출된 대량의 소금물이 Werra와 Weser강 좌우 400m 반경의 지하수에까지 침범하여 그 지역 식수처리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하였음.
- 엘베강의 피해 역시 심각했는 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부터 흘러들어온 오염물질 외에도 엘베강 유역의 대규모 화학, 금속, 섬유공업 단지로부터 흘러들어 온 브롬화물, 수은, Cadmiun 그리고 납 등의 보다 위험한 물질들이 엘베강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음.
- 서독 하노버 지역의 칼륨공장은 최신 처리시설을 개발하여 대부분의 찌꺼기를 지하 900m 깊이에 묻어 놓고 있는 바, 이로써 더 이상 하천의 염화를 야기시켜 있지 않았음.
  - 그러나 이 같은 처리방식은 동독, 칼륨공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처리 방식보다 5배 이상의 비용이 들었음.
- 동·서독 관계 전문가들은 동독 튀링엔주 칼륨공장으로부터의 서독 하노버 지역을 통과하여 직접 북해로 연결되는 염화수-pipeline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따른 어마어마한 시설비용 때문에 이 계획은 무산되었음.
- 동독은 Werra강 염화감축에 기본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동독이 서독식 최신 처리시설을 도입하리라고 기대를 걸 수 없었음.

○ 1982년 1983년 동·서독은 하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두가지 협정을 체결함.

- 이를 통해 동독은 Spree강과 Have강 그리고 베를린지역 호수보호를 위해 동베를린 정화시설을 추가로 보완하기로 결정함.
  - 이에 대한 투자비용중 6천 8백만 DM을 서독이 부담하기로 함.

8-4. 양독 국경지역에서 대기 오염 문제

○ 고도의 산업국가인 동·서독은 대기오염 문제가 다국적인 문제로서 매우 심각했음.

- 특히 서독의 경우 겨울철 동→서풍의 영향으로 동독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양독 국경지역인 Harz, Oberfranken 및 서베를린으로 날아들어와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음.
  - 1984년 서독으로 날아들어온 SO_2는 약 12만 2천t인 반면, 동독에서 측량된 양은 5만 3천t에 불과했음.
- 동독은 대량의 전력 및 난방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에너지 공급원의 8%를 자국내에서 생산하는 석탄으로 충당했으므로 SO_2의 방출이 매우 심했음.
  - 동독은 1986년 총 3t 이상의 갈탄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SO_2 방출에 있어서도 동독은 세계 최대인 바, 그 수치는 연간 450만에서 600만 t에 이르렀음.
- 서독의 경우 SO_2방출은 설비 현대화 그리고 여러 규제조치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독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었음.
- 동독은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일환으로 SO_2의 감소노력에 약속하였으나, 만성적인 투자자금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이를 달성할 수 없었음.
- SO_2 외에도 중금속 함유 먼지, 탄화수소 등의 이물질들이 서독으로 날아들어 왔음.

○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오염물질배출은 차량에 의한 매연가스로 인한 피해자가 특히 심한 편이었음.

-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서독은 공장에 대해서는 "고충 굴뚝 정책"(Politik der hohen Schornsteine)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이는 오히려 오염물질을 중유럽 전역으로 분배시키는 결과만 가져다 주었음.

○ 대기오염 감축조치는 서독에서만 실효를 거두었을 뿐임.

- 전체 석탄 및 갈탄 화력발전소의 80%가 연소로 가스 유황 제거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폐업시켰음.
- 서독은 1985년부터 차량에 대한 자발적 매연감소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1988년 10. 1일부터는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시켰음.

○ 그러나 동독의 경우 이 같은 대기오염 감축 조치들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 동독에 유황제거 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것은 기존 시설의 노화로 이같은 추가투자가 기술적으로 무의미했으나, 너무나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8-5. 내독 간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사업

○ 동·서독 모두 쓰레기의 양적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양독 간에는 쓰레기처리사업 협력, 이른 바 "쓰레기 관광"(Muelltourismus) 협력사업이 이루어졌음.

- 서독 뤼벡에서 5km 떨어진 동독 Mechklenburg주 쇠네베르그(Schoeneberg) 쓰레기 처리자의 처리능력은 약 4천만t에 달하는 바, 주로 서방에서 들여온 쓰레기들이 이 곳에서 처리되고 있었음.
- 동독과 서베를린은 1974년 20년 기한의 쓰레기 처리 조약을 체결하여 일정 양의 쓰레기를 동독으로 수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서베를린 도시정화담당부는 연간 3천 3백만 DM을 동독에 지불하여야만 하였음.
- 이 같이 서독정부로부터의 쓰레기 수입은 동독에게는 당장 이윤높은 외화수입원이었음.
- 그러나 이들 동독 쓰레기 처리장들의 안전장치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음.
  - 특히 Schoeneberg 쓰레기 처리장 밑의 지하수가 서독지역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뤼벡지역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
  - 이는 다시 말해 해독물질이 원래 발생지로 침투해 들어감을 의미했음.

○ 양독 공동의 민감한 문제로서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들 수 있음.

- 1987년 당시 동독은 2개의 가동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0년까지 2기의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음.
- 완전히 연소된 핵연료는 재생이용을 위해 소련으로 반출되었으나, 중·저 폐기물(Schwach- und mittelaktive Abfaelle)의 최종보관과 관련하여서는 양독 간에 문제가 제기되었음.
  - 동독 핵 폐기물 최종 처리장이 서독 Niedersachen주 헬름슈타트시 근방의 국경지역인 동독 오오스레벤에 설치됨으로써, 방사능 오염에 의한 서독주민들의 항의가 뒤따랐음.
- 서독 헬름슈타트시 주민들도 이 사실을 이미 수천통의 방사선 폐기 물질들이 이미 지하 400m의 갱내에 저장된 후에서야 알게되었는데, 주민들 및 지리학자 등 여러 분야에서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해당 주정부는 동독 관계당국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그 이유는 서독 역시 동·서독 국경지역이 고어레벤에 핵연료 처분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9. 보건 분야

9-1. 협상 및 협정 체결

○ 보건분야에서는 양독 간에 기본조약 체결 이전까지 거의 아무런 협력활동이 없었음.

- 전염병의 예방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국제보건기구 활동의 일환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했을 뿐임.
- 의약품은 단지 내독교역의 일환으로서만 교환되었으며, 우편에 의한 의약품의 개인적인 송부는 동독관청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
- 농축산물의 교역에 따른 수의·동물검역분야에서의 상호 협조는 베를린 소재 상공신탁처를 통해 이루어졌음.

○ 기본조약 7조 6항에는 보건분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1973년 4월 말 동독측은 기본조약 후속조치로써 이 분야에서 협상을 제일 먼저 제안하여 왔으며, 협상은 1973. 5. 23부터 시작되었음.

- 협상대표는 서독측에서 청소년·보건성 차관인 Prof. Dr. Wolter 였으며, 동독측에서 보건성 차관인 Dr. Toedtmann이었음.

- 이 동독측의 제안은 서독측에게는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졌는데, 왜냐하면 동독측이 이 분야의 협상을 제시할 당시에는 기본조약이 비준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 이 보건분야는 협상과 협정체결시 양측의 쟁점이 가장 적은 분야였음.

- 동독측은 동독체제를 서독에 크게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서부터 서독측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원하였는 바, 특히 서독측이 관심을 가졌던 문화·체육·과학·기술분야보다 이 보건 분야가 가장 체제에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보건협정(Gesundheitsabkommen)은 총 10회의 실무협상을 거친 후에 1974. 4. 25 체결되었으며, 서독에서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975. 11. 20 법률로써 제정되었고, 1976. 1. 1부터 발효되었음.
  - 아울러 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일반 행정 지침(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이 작성·발효되었음.

○ 보건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건협정 제2조에서는 이제까지 전염병의 발생시 국제보건기구의 규정에 따라, 상호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동·서독 중앙 보건행정 당국 간에 정기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로 합의함.
  - 제2조에 관한 의정서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한 위험상태 발생시 전염병 발생지역의 지역 보건기관끼리도 직접 상호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협정 의정서에 대한 동독측의 성명을 통해 동독 대표는 동독 여행자들이 서독 방문 후 친지들로부터 선물받은 중고의류에 대해 이제까지는 소독증명서(Desinfektionsbeschreinbung)를 요구해 왔으나, 보건협정 이후에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함.
    - » 이러한 소독증명서 요구는 일종의 동독 주민 여행 제한의 일환으로 실시해 왔는데, 여행자뿐만 아니라, 서독으로부터 송부되는 소포를 통한 중고 의류와 신발에 대해서도 동독측은 우편협정 체결 이전까지

소독증명서를 요구하며 난관을 조성해 왔었음.

- 제3조는 보건협정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으로 상대편지역 여행 도중 발병시 치료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세한 내용은 '9-2'에서 상술함.

○ 보건협정 제4조에서는 동·서독 주민은 원하면 상대편 국가에서 특수치료와 전지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환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활이 걸린 중증환자나 난치병 환자의 치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특수치료나 전지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보건성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각 보건성은 상대편 보건성과 협의하여 치료 가능 여부와 시기들을 합의함.
- 이 경우 치료비는 제3조 규정과 달리(국가부담) 환자 개인이나 의료보험기관이 지불해야 하며, 동·서독은 매 분기별로 자국에서 행해진 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상대편에 통보하고 상호 정산 조치함.

○ 보건협정 제5조에서는 비상업적 분야에서의 의약품의 교환을 위해 서로 장애를 제거하기로 합의함.

- 특히 동독 여행자들이 귀환할 때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일정기간 동안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귀환 후에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소포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합의함.

○ 보건협정 제6조에서는 마약이나 중독성 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환에 합의함.

○ 장애자 재활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 합의.

- 1977년 9월 서독의 노동 및 사회성 대표와 동독 보건성 대표가 장애자의 재활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위하여 회합했음.
- 이 회담에서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의학, 교육, 직업, 사회적 재활문제 등 불구자 구호활동에 중요한 분야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고, 정보 및 의견교환을 계속 하기로 함.

○ 수의학 분야에 관한 협의

- 동·서독은 1979년 12월 21일, 1977년 19월부터 협의되었던 수의학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음.
- 이 협정은 손실이 큰 동물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 협력하고 동물을 가공하여 생산되는 식료품의 위생기준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필요한 전문적·행정적 협력범위를 마련하고 경험교환과 전문정보제공 및 직접 접촉의 가능성을 마련해 주는데 의의가 있었음.
  - 이 협정은 양독 간에 동물 및 축산품 무역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호 간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는데 동 협정의 실제적인 의의가 있었음.
- 이 협정을 통해 전문가들이 직접 의견 교환을 통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학술적인 경험교환을 하게 되었음.

9-2. 상대편 지역 방문 도중 발병시 의료지원

○ 보건협정 3조 1항에 의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동독정부가 발행하는 동독시민(동베를린 포함)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가진 자로서 서독 또는 서베를린 지역을 여행하는 자.
- 제3국 국민으로서 동독(동베를린 포함)에 3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자로서 서독 또는 서베를린 지역을 여행하는 자.

○ 의료지원 및 신청가능 사례.

- 모든 급성 질병 치료.
- 사고시 치료.
- 과거 만성지병의 급작스런 악화 치료.
- 건강의 악화 및 고통의 경감을 위한 치료.
- 긴급한 의학적인 사오에 의해 첫 번째 응급치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 보건협정 제4조에 의한 특수치료나 요양치료는 의료지원의 대상이 되지않음.

○ 의료 지원 신청 절차 및 확인.

-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동독여행자는 원하는 일반 의사, 치과 의사, 병원에 본인이 동독주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을 제시하고 신청양식(각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을 작성하여 서명함.
  - 만약 여행자가 요구되는 신분증명을 제시할 입장이 못될 경우는 제3자가 신청서를 기입하고 요구되는 신분증명을 제시할 수도 있음.
-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병원은 여행자의 신분을 증명서와 대조·확인하고 의료행위를 한 후 의사의 소견서와 처방전 및 진단서에 따라 의료지원 증명서(Berechtigungsschein fuer medizinische Hilfe)를 발급한 지방행정기관에, 의료지원 신청서 문서번호와 처리번호를 송부해야 함.

○ 의료지원 혜택 가능 범위

- 일반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한 진료.
- 연방간병법 시행령(Bundespflegegesetzverordnung) 3조~5조에 따른 병원에 입원 치료.
- 긴급한 의학적인 사유에 의해 첫 번째 응급치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받는 재검사.
-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구입.
- 여행 도중 정형외과적 의료보조기구, 안경, 보청기, 의치나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구를 분실했거나 망실했을 경우 의사의 처방전과 이러한 보조기구가 서독에 머무는 동안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확인서에 의한 기구들의 구입.
- 의사의 증명서를 첨부한 응급차, 택시, 기타 대여차에 의한 환자의 수송, 또는 인근 병원까지 재수송.
- 의사의 증명서를 첨부한 내독 간 국경을 넘는 환자 수송.
  - 열차 수송의 경우는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동독지역 정거장까지 1등칸을 이용할 수 있음.
  - 병원차에 의해서는 국경통과소 혹은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동독도시 혹은 예외적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
  - 이 경우 환자가 수송에 의한 귀환에 동의하여야 하며, 수송업무를 위임받은 독일적십자사가 국경통과 장소와 시간을 미리 상호 연락하여야 함.
  -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국경을 넘어 운송될 경우 보호자가 동행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경비.
- 전지요양, 온천, 휴양목적의 서독 체류는 의료지원 대상이 안 됨.

○ 의료지원 행위에 대한 보상(치료비 보상).

- 동독으로부터 여행자들에게 상기의 의료지원 행위를 제공한 사람 또는 기관은 1975. 11. 20자 보건협정에 따른 법(Das Gesetz zum Gesundheits-abkommen) 제2조 및 동독 여행자 의료지원에 관한 일반행정 지침(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ueber medizinische Hilfe fuer Einreisende aus

der DDR und Berlin(Ost))에 따라 의료지원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대해 의료지원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상액 결정
  - 일반의사, 치과의사 진료에 대한 수가는 그 병원의 소재지 일반지역 의료보험회사(AOK)가 그 보험가입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 기준으로 지급함.
  - 입원비는 연방간병법 시행령 3조-5조에 따라 수가 결정.
  - 국경을 넘어 환자를 운송할 경우는 사전에 의료지원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요율에 따라 비용 산정.
  - 환자운송시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보상은 환자가 1등칸을 이용할 경우 병원차 왕복운임을 지급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귀환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함.
- 의료지원 제공자에 대한 정산
  - 의료지원 제공자는 의료지원 증명서에 제공한 의료지원 내역을 자세히 기록하여 그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소재한 지방행정기관에 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만약 다른 방법으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이면 청구서를 여행자 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함.
  - 이 증명서는 가능하면 의료지원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행정 기관에 제출되어 정산되도록 함.

○ 의료지원 비용의 부담 및 담당행정기관.

- 연방정부는 1975. 11. 20자 보건협정에 따른 법에 의거하여 의료지원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함.
-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독방문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비용청산업무를 실제로 담당함.
- 각 주정부가 지정한 지방행정기관이 의료지원 증명서를 발급함.
  - 이 증명서에는 발급기관 및 지역이 명시되어 있고,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문서번호와 처리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를 여행중인 동독주민에게 발급하여, 이 증명서 소정의 난에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의료지원 내력을 기록함.
- 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에 관해 List를 작성유지하며, 주정부에 보고함.
- 증명서 발급기관은 환자운송시 열차를 이용한 경우는 무료 열차 이용에 관한 현금증서(환자는 1등, 보호자는 환자 동행시 편도 1등, 귀환시는 2등)를 발급하며, 다른 수송수단 이용시는 이용운임 지불 약속을 함.
- 증명서 발급기관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의료지원 보상금액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회계상 이상이 없는지 심사함.
- 주정부는 이러한 각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취합된 보상신청금액을 연방정부와 매 분기마다 정산함.
  - 주정부는 매 분기별로 의료지원 총액과 해당 의료지원을 받은 동독여행자들에 대한 통계를 연방정부에 제출함.
- 만약 동독여행자가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했거나, 죽었을 경우, 그리고 이에 따라 여행자나 여행자 유가족이 보상절차를 거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증명서 발급기관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보상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증명해 주어야 함.
  - 이 경우 동독의 어떤 기관도 이러한 증명의 의무를 대신해 줄 수 없음.
- 동독 여행자의 인적사항이나,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기타 관련서류는 대외비(vertraulich)로 취급되어야 함.
  - 이러한 관련 서류들은 주정부 담당 부서나 기타 담당기관에 의해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하며, 5년 이내에 연방감사원의 심사를 받음.

○ 동독정부기관에 통보, 의사의 보고서

- 증명서 발급기관은 방문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스스로 동독지역에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방문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사망통지서 혹은 진단서를 여행자의 체류지 통지와 함께 서독주재 동독 상주대표부에 통지함.
  - 이러한 통보는 만약 환자가 그러한 통보에 반대하거나, 반대할 의사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추정될 때는 하지 아니함.

- 미성년자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에 따른 동의서가 필요할 경우, 담당의사는 법률상의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득해야 하는데, 특히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의 체류지가 미상인 경우 동독 상주대표부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도 생명이 위급할 때는 동의없이 먼저 치료할 수 있음.
  - 또한 미성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거나, 반대할 의사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동독 상주대표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함.

9-3. 건강·보건분야 전권위임자 접촉

○ 동·서독은 보건협정 제7조에 따라 1976년 초부터 건강·보건분야 전권위임자(Beauftragte fuer das Gesundheitswesen)를 임명하고 상호 정기적인 접촉을 가짐.

- 양독정부는 기본조약의 첫 후속협약으로 동 협정을 체결하였는 바, 양독간 상호 인전교류가 증대됨을 예상하여 양측 여행 및 방문자들이 긴급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상대편 지역에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음.
- 동 조약 제7조에 의하면
  - 1항: "양측 건강·보건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은 전권위임자를 임명하는 바, 그들의 임무는 동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서로 합의하여 마련하고, 동 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의견상충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해가는데 있음. 상주대표부의 관할사항은 이 임무와 무관함. 전권위임자들은 협상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해 회동하며, 관계직원을 대동할 수 있음".
  - 2항: "전권위임자들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양측 정부에 위임하여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함. 양측 협정당사자들은 합의된 규정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전권위임자들은 그의 활동이 특히 상주대표부의 원호, 원조(Hilfe-und Beistandleistung) 업무와 중복이 되지 않게 상호 긴밀히 협조하였음.

○ 양측은 보건성 장관이 보건성 직원을 전권위임자로 임명하였고, 서독측에서는 내독관계성 직원을 대표단에 참석시킴.

○ 전권위임자 접촉에서는 주로 상대편 지역 방문자들의 긴급의료 지원 문제, 긴급의료 사태발생시 통보, 특별치료 및 의약품 상호 교환문제 등이 논의됐으나, 나중에는 이 접촉을 통해 의학연구 및 상호 의료분야의 정보교환도 이루어졌음.

○ 이 전권위임자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번갈아가며 접촉을 가졌는 바, (1986년까지 총 21회) 전권위임자 접촉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로 해결이 되지않은 문제는, 정부 고위급 협상에 위임하였음.

9-4. 서독에서 동독으로 선물소포로 발송가능한 의약품

○ 동독주민들은 과거 내독관계에서 서독 친지들에게 의약품의 선물발송을 많이 의뢰하였기 때문에, 노인이나 연금생활자들의 서독방문시 소포를 통한 의약품 선물방송에 대해 동독측의 규제는 엄격했음.

○ 의약품 및 기타 건강유지와 관련된 물품은 동독이나 서독에서 처방이 의무적으로 필요없는 다음과 같은 품목에 한하여, 동독의사들의 처방전이 없어도 동독으로 선물이 발송될 수 있음.

- 약효가 없는 붕대와 같은 접착제(Verbandstoffe ohne arzneiliche Zusaetze)
- 일회용 반창고(Wundeverbandflaster)
- 영아·유아 양육 물품(Saeuglings - und Kinderpflegemittel)
- 영아·유아 식료품(Saeuglings - und Kindernaehtmittel)
- 다이어트 식품(Diaetetika, Naehrpraeparate)
- 비타민·광물성 함유 건강식품(Vitamin - und Mineralstoffpraeparate)
- 약학적인 물질이 함유된 포도주(Weine mit arzneilich wirksamen Bestandteil)
- 약초로 만든 차(Arzneipflanzen und Arzneipflanzenmischung)
- 식물성 즙(Pflanzensaefte)
- 약초로 제조한 약(Zubereitung auf der Grundlage von Ingaltstoffen von Arzneipflanzen)
- 의료용 목욕기구 및 비누(Medizinische Bander - Seifen)
- 의치 보호기구(Hft - und Pflegemittel fuer Zahnprothesen)
- 신체 보호기구(Koerperpflegemittel zur aeussren Anwendung)
- 소염제(Desinfektionsmittel)
- 의족·의수 등 의료 보조기구(Homoeopathische Erzeugnisse)

- 의료기기 중 혈압측정기, 체온기, 모터가 달리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흡입기, 마사지 기기, 인공자외선기, 안경테 등임

○ 동독이나 서독에서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의약품에 한하여 서독에서 동독으로 의약품의 선물발송이 가능함.

Aeqyamen
Aethoxysklerol1%Ampullen
Aethoxysklerol3%Ampullen
Akineton-Tabletten
Algesal-Creme
Aludrox-Tabletten
Alupent-Tabletten
Alupent-Dosier-Aerosol
Amuno-Kapsein
Ancotil-Tabletten
Androcur-Tabletten
Anusol-Salbe
Aolept-Tropfen
Aristochol Spasmolyticum Tabletten
Arteparon Ampullan
Arthrodestal perkutan
Arthro-Menthoneurin-Gel
ArthosenexSalbe
Aspection
Aspirin
Astonin H-Tabletten
Atroven-Dosier-Aerosol
Auxiloson-Dosier-Aerosol
Avamigran-Tabletten
Avamieran-Suppositorien
Azulfidine-Dragees
Azulfidine-RA-Dragees
Azulfidine Suppositorium

Bayolin Salbe
Beconase Dosier-Spray
Benemid Tabletten
Benzbromaron-Tabletten
Bepanthen-Roche-Salbe

Dentinox
Depot-insulin S Hoechst (CS) klar
Depuran
Diacard
Dilcoran 80-Tabletten
Dolo-Arthrosenex Salbe
Dolo-Attritin-Tabletten
Dolo-Exhirud
Dolo-Menthoneurin Gel
Dolorgiet-plus Gel
Dona 200 S-Retard-Dragees
L-Dopa-Ratiopharm
Doppel-Spalt
Dorithricin Halstabletten

Berotec-Dosier-Aerosol
Betaisodona
Bifiteral-Sirup
Biltrichide-Lacktabletten
Biogastrone Tabletten
Biolecit
Bisacodyl
Bisolvon-LinctuSaft
Bisolvon Losung
Bisolvon-Tabletten

Calcium Sandoz forte-Brausetabletten
Calcium Sandoz fortissimum-Brausetabletten
Canesten-Creme
Canesten-Losung
Canesten-Tabletten
Carotaben-Kapseln
Caye-Balsam
Cesol-Lacktabletten
Chibro-Timoptol-Augentropfen
Chindin-Duriles
Citropepsin
Combisonum Losung
Convulex-Kapsein
Convulex-Kapseln
Convulex-Tropflosung
Coramin-Tropfen

Dapson-Fatol-Tabletten
Daraprim-Tabletten
Decoderm-Basiscreme
Decoderm-Creme
DDD-Hautmittel
dehydro sanol tri Dragees

Hirudoid40,000
Hirudoid
Hydrocortison-Tabletten

infektionspistolen
Intal-Pilver in Kapseln zur Inhalation
Insulin Novo MC Actrapid
Insulin Novo MC Monotard
Insulin Novo MC Semilente
Insulin Novo Rapitard
Iscador
Isoket retard
Isoket-Spray

Dulcolax
durapental 400-Dragees
Dyneric
Dynexan A-Gel
Dynexan-Salbe

EAS oral
Einwegspritzen und -kanulen
Endrine-Nasentropfen
Enelbin-Salbe
Enzynorm-Bohnen
Enzynorm foorte-Dragees
Ergenyl
Essaven-Kapseln
Eugalac0Sirup
Eu-Med Tabletten
Euphyllin retard
Euphyllin retard mite
Exhirud Salbe
Eunova

Felixir-Flussigkeit
Ferlixir triplex-Flussigkeit
Finalgon extra stark-Salbe
Finalgon extra stark-Salbe
Fludrocortison-Tabletten
Forapin

Gelusil-Lac
Gero-H^3 -Aslan-Dragees
Gero-H^3 -Asla-injektionslosung
Glaucotat-Augentropfen

Hepathrombin
Hexoral-Spray
· hier kein Arzneimittel, aber im handel

Meladinine-Emulsion
Meladinine-Losung
Meladinine-Tabletten
Menthoneurin-Liniment
Metalcaptase
Metopiron-Kapseln
Minzolum-Kautabletten
Mobilat
Mobilisin
Mucret-Retardtabletten
Multilax-Dragees

Nacom
Nasivin
Nedalax-Dragees
Neo-Angin-Lutschtabletten
Neo-Ballistol-Kapseln
Neobiphyllin
Nervogastrol-Tabletten
Neuralgin N-Tabletten
Nitrolingual-Spray
Nizoral-Tabletten
Novalgin

Olynth-Losung
Optalidon
Opino-Geparinoid Gel
Optipect-Tropfen
Ospolot-Tabletten
Ostochont-Dragees
Otriven Losung 0,05%
Otriven Spray 0.1%

Pankreon forte Drag
Pansan-dragess
Pento-Puren-Retardkapseln
Pntoxifyllin-ratiopharom 400
Perclusone Suppositorium
Pernionin
Perulenicet
Phlebodril-Kapseln
Piniol
Pinimenthol-Kapseln
Plenosol
Pravidel-Tabletten
Primaquine-Tabletten
Primoblan S Tabletten
Procto-Jellin-Kombipackung
Procto-Jellin-Salbe

Truxal-Dragees
Tussipect Tropfen

Ulcurilen-Wundsalbe
Ulcus-Tablinen-Tabletten
Ulgastrin-Tabletten
Ultralan
Urbason-Dragees
Urbason-Tabletten
Uricovac M

Casomotal-tabletten
Venostasin-Gel
Viarox-Dosier-Aerosol
Vibrocil Nasentropfen
Vivimed Tabletten
Volon A Salbe (antibiotikafre)

Rhinopront
Rhinospray
Ribrain-Tabletten
RubrimentOl

Spalttabletten
Spasmo-Gallo-Sanol
Spasmo-Nervogastrol-Tabletten
Sprechhilfen furr Kehlkoft-und Stimmbandgeschadigte
Stadalax-Dragees
Sras-Salbe
Stutgeron foryr-Kapseln
Stutgeron-Tabletten
Symmetrel
Stnmmetrel
Synmiol-Augensalbe

Tacholiquin
Tagamet
Talcid-Kautavletten
Talcid-Suspension
Taractan-Dragees
Tavegil-Tavletten
Temagin
Teststrreifen und andere Schnell-diagnostika zur {atieneten-anwendung
Thioctacid Filmtabletten
Thrombophob
Togal
Tonoftal
Tremarit 5mg Tabletten
Trental=400 Dragees
Trental-600 Retardtavletten
Trifluorthymidin-Augensalbe

Volon A tinktur
Volonimat-Salbe
Voltaren-Dragees
Voltaren-Suppositorien

Warondo Flechtensalbe
Wick-Formel 44
Wick-Ingalierstift
Wick MediNait
Wick-Schnupfen-Spray
Wobenzym-Dragees

Zaditen-Kapseln
Zyloric-Granulat
Zyloric300-Tabletten
Zyloric-Tabeltten

Isoket-Tabletten
Iso Mack Retard
Iso Mack-Tabletten
Isopto-Epinal

Jellin-Salbe

Kaban-Salbe
KeliumDruiles
Ketosteril
Kohle-compretten
Kompensan-liquid
Kreon-Kapseln
Kreon magensaftresistentes Granulat
Kytta-Salbe

Latuflor-Sirup
Lactulose-Sirup
Laecilac-Sirup
Laylin Hustenloser Hustenbonbons
Lasix-lnjrktionslosung
Lasix 500mg Tabletten
Laxanin N-Dragees
Lenicet-Salbe
Lioresal 10-Tabletten
Lioresal 25-Tabletten

Magnsium Diasporal-Lutschtabletten
magnesium Veria-Dragees
Malinert-N-Tabletten
Mastu NH
Maycor Retard-Kapseln
Maycor-Tabletten

Procoto-Jellin-Zapgchen
Pyrimethamin-Heyl-Tabletten

Rabro
Rennie-Tabletten
Rentyllin 400
Rentyllin 600
Reparil-Gel
Resonium A
Rheumasan-Salbe
Rheumon-Creme
Rheumon-Gel

- 일단 동독의 의사들이 처방한 처방전을 서독으로 보내면, 서독에서는 이러한 처방전이 어느 약국에서나 인정되었고, 서독의 친지가 이 약을 구입, 선물 포장하여 동독으로 발송이 가능했음.
  - 발송시 선전용의 견본 의약품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제약회사의 원래 포장대로 발송되어야 함.
  - 선물 발송시는 수취인 주소 위에 "선물용임, 상업용이 아님"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9-5. 내독관계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역할

9-5-1. 이산가족 재회 추진

○ 제네바 국제적십자협정(1949. 8 . 12)제24조-제26조 및 국제 적십자총회 결의에 의하면 이산가족 재회 추진업무는 각국 적십자의 본연의 임무에 속함.

○ 그러나 구동독 적십자사와 구서독 적십자사 간에는 분단 이후부터 양독 간 교류·협력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이산가족 재회문제가 다루어지지 못했음.

- 1952년 재조직된 구 동독 적십자사는 상기와 같이 국제적으로 부여된 가족 재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았음.
  -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구 동독 적십자사는 당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당 외곽기구였으며, 적십자사의 주요 간부는 동시에 공산당의 고급당원이었기 때문에 강한 정치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서독정부는 1963년부터 내독관계성을 통해 동독과 별도의 채널을 마련하고, 특별사업으로서 반체제 활동을 하다가 투옥된 정치범 석방을 위해 물건으로 댓가를 지불하면서 이산가족의 재합류를 추진하게 됨.
  - 1963-1989년 동안 서독정부는 35억 DM을 동독측에 지불(현금이 아닌 물품으로)하며, 3만 4천 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25만 명의 이주를 도와 이산가족 재회를 성사시킴.
- 이산가족 합류를 위한 지불거래는 물론 동독측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서독 적십자사는 인도적인 문제를 처리하면서 돈을 지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양독 간의 이산가족 합류사업은 전적으로 정부(내독관계성)가 수행함.

○ 그러나 서독 적십자사는 동독 이외의 국가에 살고 있는 독일인 이산가족들의 재회사업을 줄곧 추진해 왔음.

9-5-2. 환자 수송

○ 양독 정부는 1974. 4 25 "보건분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상대편 지역에 여행 및 방문도중 긴급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응급 또는 입원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아울러 환자를 구급차로 국경선까지 수송해 주기로 함.

○ 이때 환자의 수송은 드레스덴(동독)과 본(서독)에 위치한 적십자사 사무국이 중앙본부가 되어 이 기관의 중계로 각 지방지부와 긴밀한 연락하에 이루어졌는데 이 업무가 양독 적십자사가 내독관계에 기여한 가장 큰 업적이었음.

- 양 중앙사무국 간에는 텔렉스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해 수송환자 신상명세, 국경 통과지점 장소 및 일시를 통보하고 국경통과소에서 환자의 인계 인수가 이루어졌음.
- 동독정부는 주로 연금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고령자들(서독 방문 도중 탈출해도 체제에 별로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 층)에게만 여행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서독방문 도중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아 서독쪽으로부터 환자 수송 횟수가 많았음.
- 원칙적으로는 국경선까지만 환자를 수송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옮겨 싣기 어려운 중환자일 경우 직접 국경을 넘어 상대편 거주지까지 운송하여 주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음.

9-5-3. 실종자 찾아주기

○ 각국 적십자사는 적십자사 고유 업무 중의 하나로 국제적십자사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 간 분쟁, 내전, 천재지변 등 때문에 실종된 자들을 찾아 가족합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미미하나마 양독 간에 협력이 있었음.

○ 국제적십자사는 실종자 찾기 중앙본부를 설치하고 각국 적십자사와의 협조하에 가능한 한 광범위한 수색망을 구축하여 실종자를 추적해가고, 가족상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양독 간에는 상대편 지역에서 2차 대전 중 실종된 자들의 가족들이 각

적십자사에 신고를 할 경우, 이들의 신상명세를 국제적십자사를 통하여 상대편 적십자사에 심인을 의뢰하여 공동작업이 이루어짐.

- 만약 상대편 지역에서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할 경우, 이를 즉각 통보하여 생존하고 있을 경우 가능하면 가족재상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그러나 양독 적십자사의 활동은 실종자의 신원파악에 한정되고 이산가족 합류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협상채널을 이용함.

9-5-4. 양 적십자사 간 접촉

○ 양독 적십자사는 인도적인 문제협의나 기타 예방조치를 위한 정기적인 공식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국제적십자사 총회에서나 서로 만나는 경우가 있었음.

- 양 독일은, 남북한과 달리, 상호 왕래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본회담이나 실무접촉 등을 갖지 않았음.

○ 양 적십자사 사무국 간에는 우리와 달리 적십자사 간 전용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텔렉스만 설치되어 접촉이 극히 사무적이었음.

10. 문화 분야

10-1. 협상 및 협정 체결, 주요 쟁점

○ 1963년 동독서기장 Ulbricht는 전독문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으며, 1964년에는 동독 문화성장관이 서독의 각 주 문화성장관들에게 문화협상을 벌이자고 제안해 왔음.

- 동독정부는 문화교류로서 그때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극과 오케스트라 방문연주를 정기화 하자고 제안했으며, 서독측은 이러한 문화교류 제안에 대해서는 환영했음.
- 그러나 동독측이 2개의 상이한 독일국가를 전제로 이 협상을 추진하였으므로, 동독의 실체인정을 전제로한 어떠한 협상이나 협정체결도 있을 수 없다는 당시 서독정부의 기본입장에 따라 성사가 불가능해졌음.
  - 특히 서독측은 문화와 학술분야의 교류를 정치화하는 동독의 자세를 비판했음.
- 동독측은 서독측이 협상을 거부하자, 그나마 간헐적으로 허용하던 방문연주나 연극공연 등에 문화예술인들의 입·출국을 제한하여 난관을 조성하기 시작했음.

- 동독측도 문화분야에서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 간 관계의 정상화를 들어, 서독측의 무조건적인 문화교류 제안을 반대했음.

○ 동·서독은 기본조약 제7조에 대한 추가의정서 제7항에서 문화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했음.

- 이에 따라 1973. 11. 27 기본조약의 후속협상으로서 문화협상이 개시되었는데, 양독 간 문화협정은 양측의 견해차이로 인해 협상이 개시된지 무려 13년인 1986. 5. 6에야 체결될 수 있었음.
- 협상 초기에 양측의 쟁점이 되어, 협상이 중단되게 되었던 문제는 "프로이센의 문화재"반환 문제였음.
  - 연합국측은 전후 전쟁기간 중 압류한 프로이센의 문화재를 서독측에 반환했고, 서독측은 재단을 설립하여 이 문화재를 관리해 왔는 바, 동독측이 현재 동독의 영토에 속하는 지역에서 연합국이 반출해간 이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해 왔음.
  - 서독측은 이 문화재의 반환문제는 법적으로 볼 때 연합국측의 관할 사항이며, 결코 동·서독 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 1975년 이후 7년만에 Honnecker는 문화협상을 재개하자고 선언했음.

- 1982년 9~10 동Berlin에서 개최되었던 서독의 도시환경정화에 관한 전시회("Stadt Park-Park Stadt")에서 호네커는 참석한 서독 수상실 장관Wischnewski에게 "프로이센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문제를 의제에서 제의하고, 문화협상은 재개하자고 제의했음.
- 당시 전시회는 동독측에 의해 서독에서도 같은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1981년 호네커-슈미트 정상회담 이후의 동·서독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음.
- 새로이 출범한 서독의 Kohl 정부는 이러한 동독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3. 9 문화협상을 계속했음.
  - 서독에서 문화문제는 기본법상 연방정부 소관이 아니고 주정부 소관이므로, 연방정부 대표 이외에도 여·야당을 대표하는 주가 각각 협상대표로 참석하였음.

○ 내독 간 문화협상은 다른 실질적인, 인도적인 교류협력에 관한 협상과는 구별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특수성에 기인하는 양측의 견해차이 때문에 문화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

- 서독측은 동·서독 간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국경을 초월하는 하나의 문화민족(eine Kulturnation) 개념으로부터 내독 간 문화교류를 추진코자 했음.
  - 1973. 1. 18 브란트 수상은 정부성명에서 "분단에도 불구하고 언어, 예술, 문화, 일상생활과 정신문화유산의 공통성에 기초한 민족은 영원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추진되었음.
  - 1982. 10. 13 콜 수상은 정부성명에서 "독일인의 민족국가는 분열되었지만, 독일민족은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존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음.
- 동독측은 서독과의 문화교류를 외국과의 문화교류로 간주했으며, 이라헌 문화 교류는 사회주의국가 동맹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제국주의와의 이념투쟁에 이바지해야한다고 주장했음.
  -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규정된 서명국들 간의 문화교류 이행과 관련하여, 동독측은 서독과의 문화교류 불이행 여부를 비난받곤 했으나, 동독측은 국가적 차원에서 서독과 문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구실삼아 이를 변명했었음.

○ 1986 .5. 6 양독 간 문화협정 체결시 동·서독의 입장

- 서독측의 기본입장은 문화협정이 독일정책추진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양독 주민들 간의 문화의 공통성을 유지·보존시키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특히 문화협정을 통한 문화분야 공동협력을 계기로 상대편 체제의 문화-사회생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서로 다른 군사동맹체에 소속되어 있고, 상이한 정치·경제적인 구조하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독일민족은 역사, 문화, 언어 공통성에 기초하는 하나의 독일문화민족으로서, 분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공통귀속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문화교류의 중점이 주어졌음.

- 동독측의 기본입장은 서독측이 주장하는 문화의 공통성을 부인하며, 사회주의 문화의 독창성을 내세웠음.
  - 동독측이 문화협정을 체결했던 주요 동기는 세계적 문화수준을 가진 서독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국제적으로 동독의 문화수준(많은 경우 분단 이전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나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지만)을 세계에 과시하고, 문화적 수준에서 서독과 대동한 관계임을 알리는데 있었음.
  -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동독내에서 문화분야 종사자(동독에서는 소위 '문화창조일꾼'이라 함)들이 외부세계(특히 같은 언어권의 서독과)와 접촉제한으로 고립감과 정신적인 소외감이 증대되어, 이들의 불만이 체제유지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문화협정을 통한 서독과의 문화교류증대(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자유왕래)가 이를 해소시켜주는 '배출구 기능'(Ventilfunktion)을 하였음.
- 양독 간 문화협정 체결이 다른 분야 후속협정 체결에 비해 늦어졌던 이유는, 동독체제가 서독문화의 동독사회 침투에 대해 크게 우려했으며, 이러한 문화의 침투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고수하는데 크게 역작용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임.
  - 동·서독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일별해 보면 이러한 동독지도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는데, 가장 자기체제에 부담이 적고 유익한 경제교류(1948년부터 시작), 우편교류(1970), 통행(1972), 스포츠·보건(1974)를 거쳐 1986년에야 문화교류를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학술분야교류는 더 늦어졌음(1987).
  - 다양성과 자유분방함을 속성으로 하는 문화의 본질상, 중앙집권적인 통제사회하의 동독 문화수준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서독 문화수준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른 동독 문화인들의 불만을 동독정부는 서독인들과의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적인 접촉허용으로 해소하려 하였음.
- 문화협정 체결시 동독측은 문화행사 개최와 관련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접촉에 한정하려 했던 반면, 서독측은 문화활동도 전적으로 개인소관으로 누구나 접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었음.
  - 또한 상호 문화행사 개최 회수도 서독측은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었으나, 동독측은 일정한 회수의 접촉만을 원했음.
  - 이러한 동독측의 접촉제한 의도는 물론 체제유지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과 함께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외환의 유출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계산도 고려 했음.

○ 문화협정의 주요 내용과 각 조항에 대한 쌍방의 입장.

- 전문에서는 문화협정의 의의가 기술되고 있는데, 동독측은 전문의 삽입을 통해 문화협정에 기타 양독조약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강조하려 했던 반면, 서독측은 기본조약의 후속협정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음.
  - 특히 CSCE의 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문화협정이 체결됨이 언급되었음.
- 제1조에서는 문화협력의 주체를 언급하고 있는데, 서독측의 주장으로 국가기관, 문화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각 개인들의 활동도 포함시켰음.
- 제2조에서는 학문과 교육분야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분야 협력은 협정체결시까지 거의 실현되지 못했던 분야로 서독측은 대학과 대학인들 간의 교류에 중점을 두었음.
- 제3조는 국가 간 협정체결 없이도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문학·예술·영화 박물관 분야의 교류확대를 언급하고 있음.
- 제4조와 5조는 상업적인 활동으로서의 문화교류를 언급하고 있음. 방문공연과 서적교류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중계인을 통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장려하기도 하였음.
  - 서독측은 특히 동독내에서 서독의 서적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감안하여, 동독측에게 상업적인 서적교류의 테두리내에서 출판물의 수입과 보급도 확대하자고 요구했음.
- 제6조와 7조는 도서관 분야, 역사적인 기록문서 교류에 있어서 협력사항을

언급하고 있음.

- 특히 서독측은 불충분하게 시행되어 온 동독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문서의 열람과 교환에 중점을 두었음.

– 제8조는 학술·문화행사에 상호조정, 제9조는 서독측이 강력히 요구했던 라디오와 TV분야 협력 및 해당기관과 협정체결 문제, 제10조는 체육분야에서 협력의 촉진을 언급하고 있음. 제11조에서는 학생·청소년들의 교류를 장려함.

– 제12조에서는 문화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2년 간의 사업계획(Arbeitsplan)을 작성하기로 하였음.

- 양측은 각각 50개씩 100개의 사업을 선정, 2년 동안 추진키로 합의함.
- 서독측은 교류사업 선정시 동독측의 재정부담과, 동독주민들의 문화적인 호기심을 우선 고려했음.
- 서독측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씩 재정부담함.
- 서독측 사업선정은 연방, 주 , 지방정부 공동위원회가 최종 선정함.

○ 사업계획에 따른 행사 개최시 비용처리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지역에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를들어 동독무용단이 서독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서독지역에서 호텔체제비, 일비, 식비, 사례비 등을 지불함.

- 다만 이 경우 처음 도착지까지 항공료 등 교통비는 동독측이 부담함.

– 이것은 동독측이 경화가 부족하였고, 송금문제가 있어 서독측이 배려하였기 때문임.

– 방문 공연시 수입도 서독에서 개최하였을 때는 서독측이, 동독에서 개최하였을 때는 동독측이 각각 취득함.

– 동독 예술인들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받는 일비는 서독 방문에의 큰 유인으로 작용했음.

10-2. 구체적 교류 사례

10-2-1. 기본조약 체결 이전

○ 1961. 8. 13 베를린장벽 설치와 더불어 그간 간헐적으로 지속되던 문화교류는 거의 단절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동독측의 국가적 차원에서 대서독 문화교류 제한정책은 이미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동독정부가 일찌기 분단 이전 동·서독 주민들이 공통의 문화와 문화의식을 간직하고 있었던 점을 간파하고 동독사회에 문화교류가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임.

- 동독측의 문화교류 주요 제한수단은 문화인들의 입국과 출국허가였음.

– 서독정부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대동독 문화교류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인 냉전기간 동안 동독으로부터의 소망스럽지 못한 문화의 유입에 대해서 늘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음.

- 예를 들어 60년대 동독작가 작품의 서독출판사에 의한 출간은 많은 공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는 바, 이는 동독의 문학작품을 서독에서 출판한다는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좌이나, 출판이 국가에 의해 저지당하지는 않았음.

○ 1970년대 들어서 대서독 문화교류 제한정책은 체제의 보호나 국제법적인 실체 인정을 받기 위한 이유 이외에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첨가되었음.

– 동독측은 서독측이 주장하는 “공동의 민족문화”를 거부하고, 서독의 “제국주의적 문화”에 대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 동독 공산당의 견해에 따르면 동·서독 문화는 전혀 공통성이 없으며, 독일 전통문화 유산 중 동독측에 의해 승계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문화적·인간적인 독일 전통”만이 동독의 문화라고 하였음.

- 1978년 동독정부는 나찌시대 박해를 받았던 조각가이자 작가인 Ernst Barlach 기념관을 건설하면서 “파시즘을 옹호하고, 반공주의와 군비경쟁을 부추키는 국가정책을 찬양하는 것”은 Barlach의 유산이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음.

10-2-2. 기본조약 체결 이후부터 문화협정 체결 이전까지

○ 이러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문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1975년 문화협상은 결렬되었으며, 제한적인 가운데 주로 동독의 문화예술인들이 서독에서 연주회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문화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왔음.

- 1975년에 처음으로 동독 조형미술협회 회장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담은 그림과 판화 120점을 함부르크에서 전시했음.
- 1977년에는 처음으로 동·서독 출판사 간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독일 예술 및 문화예술 유적 안내에 관한 책자가 동독에서 저술, 인쇄, 판매되고 서독에서는 동시에 출판사를 통해 판매되었음.
- 1977년에 처음으로 7명의 동독 미술가가 서독을 방문했고,
- 서독의 최초의 공식적인 전시회는 1977. 1 동베를린에서 "과학과 기술에 관한 사진전"형식으로 열렸음.
  - 이 전시회에는 15만 명의 동독주민이 몰렸으며, 동독측은 1979. 9 쾰른에서 "동독 사진전"을 답방형식으로 개최했음.
- 1978년 6월에 베를린 필하모니는 처음으로 동독에 연주여행을 할 수 있었음.
- 1980. 10 양독 국가 간에 "영화주간"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양국 3개 도시에서 7편의 영화가 상연되기로 했으나, 동독측이 서독영화 중 귄터그라스 원작의 "양철북"에 대해서는 상연 거부결정을 내려, 서독측이 이를 수용했음.
  - 서독측은 동독측이 1980년의 폴란드사태(자유노조형성) 때문에 "양철북"의 상연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1980. 9 동독 여행자에 대한 최소의무 환전액을 인상하며 난관을 조성하자, 서독에서 "영화주간" 행사에 정부대표를 공식적으로 참석시키지는 않았음.

○ 연극과 오케스트라 방문 공연

- 연극과 오케스트라 방문공연은 내독 간 문화교류 중 가장 활발했던 분야로 상호 방문회수 자체가 내독 간 문화협력의 지표를 의미했음.
  - 특히 과거 독일의 연극과 음악수준은 세계적이었기 때문에 유서깊은 악단과 극단이 분단에도 불구하고 각각 존속하고 있어, 이러한 상호방문 공연은 상대편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이 컸음.
- 베를린장벽의 설치와 더불어 줄어들기 시작한 상호방문 공연은 기본조약이 체결된 1973년부터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음.
- 동독측이 주관하는 공연은 대부분이 국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공연이 대부분이었음.
  - 1975년 서독 헌법보호청이 연례보고서에서 보고한 바 같이, 동독 공산당은 대서독 문화행사 개최를 정치적인 선전도구화하려고 하였음.
  - 동독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서독공산당(DKP)나 그 외곽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거 참여했음.
- 연극과 오케스트라의 공연 성사여부는 전적으로 동독측 기관으로부터 입·출국 허가를 획득하는데 달려있었는데, 동독측은 "상호성의 원칙"을 무시한채 서독에서의 공연을 대거 허가한 반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연여행에 대해서는 입국불허 결정을 내려, 늘 동독에서 서독으로 방문공연이 일방적으로 많았음.
  - 특히 서독의 유명한 극단, 오케스트라, 발레단의 공연은 매우 제한을 당했은데, 국제적인 행사의 일환으로서만 대부분 허용되었음.
  - 베를린 필하모니는 불과 두 번(1977, 1981) 밖에 동독 방문여행을 할 수 있었음.
- 일부 대중가요 연주공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극, 오페라, 음악공연을 국가의 보조없이는 공연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동독방문 공연도 정부의 보조가 있었음.
  - 관중 1석당 50~100 DM의 보조금 지불이 보통이었음.

- 내독 간 방문여행 중 최근에 성사되기 시작한 것이 재즈와 팝음악 분야의 공연임.
  - 대부분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공연이 많았으나, 동독의 재즈와 록그룹의 서독방문 공연도 있었음.
- 대부분의 상호방문 공연은 상업적인 문화공연 중계인을 통해 이루어졌음.
  - 서독측은 문화단체, 기관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방문 연주나 공연을 하기를 희망했으나, 동독측은 국가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문화, 예술 중계인을 내세워 공연진행과 비용문제를 처리했음.

○ 문학과 서적교류

- 동독문화계 지도자들은 "독일문학"(deutsche Literatur)과 구분되는 독특한 사회주의문학을 표방하며, 1973. 11 작가들의 모임인 "독일작가동맹"(Deutsche Schriftstellerverband)을 "동독작가동맹"(Schriftstellerverband der DDR)"으로 개칭했음.
  - 양독일 작가동맹 간에 공식적인 교류관계는 없었으며, 국제적인 화합에서 PEN 클럽과 작가협회들 간의 접촉이 있었음.
- 1963. 7. 4자 동독문화성 예규에 의하면, 동독내의 개인이나 각 기관은 서구의 문학작품을 문화성의 특별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었음.
  -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서독 서적들은 동독내 서점에서 자유로이 구입할 수 없었음.
  - 비교적 서독 현대작가들의 문학서적이 동독에서 수요가 많아 책이 나오면 금방 품절되었는데, 주요 인기작가는 Heinrich Boell, Max von der Gruen, Peter Weiss, Fanz Xaver Kroetz 등이었음.
- 반면에 동독의 서독들은 서독의 서점 어디에서나 구입이 가능했음.
  - 동독 현존작가의 작품들이 서독내에서 판권허가를 통해 널리 출판되었음.
  - 몇몇 작가의 작품은 동독에서는 아예 출판되지 않고, 서독에서만 출판되는 경우도 있었음.
  - 특히 동독내의 반체제 작가로서 동독작가동맹에서 축출되거나 서방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들의 글이 서독에서 많이 읽혔음.
- 서독에서 복제허가를 얻어 서독에서 출판되지 않고, 비평의 대상이 되거나 정치적, 문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서독에서 유명해진 동독 작가들은 거의 없었음.
  - 적지 않은 동독의 작가들이 서독출판사에서 먼저 작품을 발간하거나 서독 출판사에서만 작품을 발간한 예가 흔했음.
  - 동독은 동독 이외 지역에서 동독의 소설가들의 판권계약은 동독 저작권 관리청(Bueros fuer Urheberrechte)의 허가를 받게하고, 이 관리청이 저작료 등 판권계약에 따른 모든 문제를 처리토록 했는데, 동독의 유명한 작가인 Stefan Heym은 자신의 소설 "Collin"을 동독 관청의 허가없이 서독에서 출간했다가 벌금을 낸 바 있음.
- 양독일 국가는 전통적으로 서적출판 및 생산량이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출판물 거래가 분단 직후부터 내독무역의 일환으로 행해져 왔음.
  - 서독지역에서는 80년대 매년 평균 60,000권의 신간서적이, 동독에서는 6,000권의 신간서적이 발간되었음.
  - 양측이 발간하는 책자 중 물론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있었으나, 매년 100권 정도는 상호 판권제공을 통해 양독 간에 교환되었음.
- 출판도시였던 Leipzig에 집중되어 있던 출판사들이 전후 또는 동독의 국유화 조치 이후 서독으로 건너와 새로이 같은 상호로 또는 비슷한 상호로 출판사를 차려 이들 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음.
  - 동독이 정기적으로 매년 40여개 출판사를 참여시켰단 Frankfurt 도서박람회 개최시에, 서독에 있는 출판사의 상호와 같은 출판사를 서독측이 배제한 적이 있었으나, 동·서독 간의 서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 갔음(83년까지 상대방 출판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3건의 해결이 안된 사례가 있었음)
  - 특히 독어사전 편찬연구소 및 출판사였던 Duden은 leipzig와 Mannheim에 각각 연구소 및 출판사를 두고 있었는 바, 상호 기관의 존재를 인정하였음.
- 출판물 교역은 내독교역의 일환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80년대 평균

교역량은 1,800만 VE(전체 내독교역량의 0.1%)였음.

- 서독에서 소포로 선물발송시 문학서적이나 기타 인쇄물은 다른 선물과 함께 송부할 수 없고, 반드시 따로 보내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평화지향적이 아니고, 군국주의적인 보복심리에 가득차 있고, 파시즘적이고 또는 선정적이고, 동독과 동독주민의 이익에 반할 경우"는 발송이 금지되었음.

내독 간 서적 교류량

단위: 천 VE

연도	동독에서 반입	동독으로 반출	연도	동독에서 반입	동독에서 반출
1964	6,192	9,119	1971	6,015	14.107
1965	6,710	10,156	1972	6,337	13.323
1966	5,949	9,148	1973	6,007	14.263
1967	5,910	10,581	1974	6,318	14.891
1968	5,119	9,872	1975	6,533	15.383
1969	5,181	11,457	1976	5,375	
1970	5,686	12,285			

내독 간 서점을 통한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캘린더, 카드 교류량

단위: 천 VE

연도	동독에서 반입	동독으로 반출	연도	동독에서 반입	동독에서 반출
1964	11,662	12,370	1971	13,625	15,845
1965	11,486	13,634	1972	14,165	15,747
1966	11,017	12,762	1973	15,091	16,615
1967	12,511	14,469	1974	15,926	17,275
1968	10,706	13,253	1975	18,073	17,532
1969	11,628	15,256			
1970	11,732	14,344			

○ 신문과 정기간행물

- 분단 이후 동·서독 간에 신문과 정기간행물 상호구독은 제한적으로 국가기관, 언론사, 정당에만 허용되었음.
  - 동독은 국유화를 통해 모든 언론사를 장악했으며, 냉전기에 서독 또한 국가보안법(Staatsschutzgesetzgebung)을 통해 동독으로부터 신문, 정기간행물 유입에 대해서는 사전허가를 의무화하였음.
- 1964년 동독의 Ulbricht 서기장은 서독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통한 상호 신문교류를 제의하며, 그 선의의 징표로 서독의 "Die Zeit"지와 "Suddeutsche Zeitung"지의 기사를 당 기관지에 게재했으나, 서독측은 동독을 협상상대로 인정하는 정부차원에서의 회담을 거부했음.
- 1964년 서독측은 국회법사위에서 SED 당 기관지의 자유로운 반입판매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했으나, 당시의 정치상황은 이를 자유로이 허용하지 않았으며, 법률적으로 이의 반입과 판매를 제한해왔음.
  - 1968. 6. 25 제8차 형법 개정과 더불어 일정기간 동안 동독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반입과 판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했으며, 1971년의 형법개정(형법 8조)과 더불어 이러한 기간에 따른 조건을 없애고 무제한으로 동독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반입과 판매를 허용했음.
  - 서독측은 이러한 법적인 허용조치를 통해 동독으로부터 상응한 허용조치를 기대했으나, 동독측은 자신들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더 많이 서독에 반출하는 문제나, 서독으로부터 서독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 그리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음.
  - 1978년 현재 동독은 9,400여 개의 서독지역 정기간행물 중 150여개의 전문 잡지만을 구독했으며, 100개의 전국지와 주간지를 반입했음.
  - 동독은 서독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자유로운 가두판매와 개인적인 구독을 허용하지 않았고, 상점에서는 단지 서독 공산당의 기관지만이 판매되었음.
  - 동독내의 외국인 전용호텔에서는 서독의 신문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었는데, "Sueddeutsche Zeitung"과 "Frankfurter Rundschau" 등 비교적 좌파성향의 전국지가 서독의 경화로 두배나 비싼 값에 판매되었음.
- 서독에 반입된 동독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가두판매가 가능하지 않고, 단지 전문서적상을 통한 판매만이 가능했음.
  - 이는 동독측이 대 서독 반출 할당량을 낮게 정했기 때문인데, 서독에서는 할당량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측은 이를

증가시키지 않았음.

- 특히 1971. 7 그때까지 허용되던 우편을 통한 정기간행물 배달제도마저 동독체신청이 동독정부의 의도하에 폐지함에 따라 더욱 반입이 어려워졌음.
- 1978년 현재 600여 종의 동독측 간행물 중 400여 종만을 정기적으로 구독했음.

–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반입과 반출은 1948년부터 내독무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산결제방식을 취했음.

연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반출	동독에서 서독으로 반입	연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반출	동독에서 서독으로 반입
1964	5,015	2,995	1971	7,602	1,438
1965	4,766	3,200	1972	7,741	1,750
1966	5,074	3,285	1973	9,019	1,562
1967	6,601	3,742	1974	8,810	1,512
1968	5,587	3,206	1975	11,540	1,204
1969	6,447	3,415	1976	12,761	
1970	5,956	1,725			

○ 영화·TV

– 내독 간 영화필름 거래량

연도	동독으로 반출					
	독일영화	동일문화 다큐멘트	외국영화	외국문화, 다큐멘트	총계 (건)	가격 (VE)
1965	32	3	18	2	55	545,374
1966	24	10	8	1	43	207,500
1967	15	30	10	1	56	350,175
1968	22	13	61	–	96	434,410
1969	21	4	17	1	43	405,500
1970	11	4	33	–	48	426,400
1971	10	3	2	–	15	183,000
1972	11	5	27	–	43	456,000
1973	6	1	30	–	37	307,100
1974	15	24	18	–	57	306,200
1975	4	1	14	–	19	197,350
1976	50	14	47	–	111	807,388
1977	3	3	22	29	57	442,000

연도	동독에서 반입					
	독일영화	동일문화 다큐멘트	외국영화	외국문화, 다큐멘트	총계 (건)	가격 (VE)
1965	30	8	–	–	38	66,895
1966	22	71	–	–	93	371,008
1967	4	8	–	–	12	389,772
1968	2	5	–	–	7	35,794
1969	5	–	–	–	5	102,347
1970	11	1	–	–	12	308,080
1971	8	5	–	–	13	345,650
1972	36	12	–	–	48	470,889
1973	33	24	–	–	57	1,228,717
1974	54	36	–	–	90	925,428
1975	52	24	–	–	76	1,450,100
1976	38	11	–	–	149	777,620
1977	20	9	–	–	29	726,366

– TV 방송 프로그램의 교환은 독일 제2TV(ZDF)의 경우, 동독지역의 약 90% 이상이 수신가능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했음.

○ 역사적인 기록문서, 도서관, 박물관 분야

– 동독측은 60년대 중반부터 동독지역내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기록문서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그 원 소유주들의 접근을 차단했음.

- 특히 중세의 한자도시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문서가 큰 의의를 갖고 있었음.

– 동독측은 문화협정 이전까지 이러한 역사적인 문서의 교환이나, 국제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던 문서의 대여 등에 대해 서독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 동독측은 역사적인 기록문서교환과 열람 문제에 관해 서독측과 협정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는 특히 관심이 있는 동독 학자들은 얼마든지 서독의 국가문서를 서독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며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임.

- 반면에 서독주민은 동독의 문서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이용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이 어떤 경우는 허가를 하고 어떤 경우는 불허하는 등 동독측의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었음.

- 학술연구 도서관 이용분야에서는 양독 간에 상호대출에 관한 합의가 기본조약 체결 이후 이루어져 별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나, 그렇게 많은 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동독측의 서독측으로부터 대출 희망은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의 최신판 서독 및 외국서적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서독측은 동독으로부터 주로 동독지역에 관한 역사와 지리에 대한 도서대여 요청이 많았음.
  - 양측이 소장하고 있는 독일어 도서목록은 상대편 출판사들로부터 매년 신간서적 목록을 제공받아, 동독측은 Leipzig에 소재한 Deutsche Beucherei에서, 서독측은 Frankfurt에 소재한 Deutsche Bibliothek에서 각각 작성하였음.
  - 서독정부는 서독측 출판사들이 그들의 신간서적 목록을 Leipzig에 송부하는 것을 장려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서독출판사들은 목록을 송부하였음.
- 박물관 분야에 있어서는 상호 문화재 대여전시가 기본조약 체결 이후 활발해졌음.
  - 동독측은 그러나 서독측의 "프로이센 문화재단"측이 그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문화재를 서독으로 대여하여 전시하였음.

○ 문화·예술단체 활동

- 문화·예술단체 간 공동협력활동은 60년대 초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 소위 "전독일 단체"시대가 동독측에 의해 거부되고, 동독과 서독에 성격이 같은 독자적인 단체들이 생성됨에 따라, 점점 어려워졌음.
- 유일하게 "전독일 협회"의 형태를 잃지 않고 통독 직전까지 존속했던 단체는 "괴테협회"(Goethe-Gesellschaft, 구동독 Weimar 소재)였음.
  - 2년마다 한번씩 Weimar에서는 전독일과 세계각국의 괴테 전문가와 숭배자들이 모여 회합을 가졌는데, 동독정부는 "괴테협회" 활동의 국제화에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음.
  - "바하협회"(Bach-Gesellschaft)도 Leipzig와 Kassel(서독)에 각각 2개의 협회가 있었지만, "괴테협회"와 같이 국제적인 협회의 성격을 띠며 양독 간 공동협력을 한 바 있음.

10-2-3. 문화협정에 따른 교류

○ 동·서독은 문화협정 체결시 '문화'(Kultur)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연극·문화·음악·미술분야를 포함한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매체, 스포츠, 청소년 분야까지 확대하여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취급했음.

- 따라서 협정에 따른 양독 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시, 교류·협력 내용 확정에 있어서도 예술, 학술, 교육분야의 비율을 각각 2 : 2 : 1로 하였음.
  - 문화교류 중 40%는 학술분야의 교류에 사업중점이 주어졌음.
- 문화협정 2조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학술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음.
  - 학술대회나 심초지움 참석을 통한 전문가들의 경험교환.
  - 연구 및 학문목적의 체류.
  - 학생교류.
  - 전문서적 및 학술정보자료 교류.

○ 1987년 동·서독 과학-기술 협력 협정(WTZ-Abkommen)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협정에 따른 교류협력내용은 문화협정에 따른 학술분야 교류협력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면서도 그 협력분야는 달랐음.

- 우선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따른 학술교류는 자연과학 및 기술분야에 중점이 주어졌고, 문화협정은 인문·사회과학에 중점이 주어졌음.
- 과학-기술 협력 협정의 협력 대상 기관은 대형 연구기관이나, 문화협정에 의한 기관은 대학교가 중심임.
- 문화협정의 교류·협력사업은 일정한 학술분야에서 학술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술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학술분야에서 동·서독 주민들 간의 접촉을 증대시키는 문화정책적·독일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됨.

-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의한 교류·협력 사업은 연구기술부(BMFT)가, 문화협정에 의한 교류·협력 사업은 내독관계성(BMB) 이 각각 주관함.

○ 문화협정에 따른 1986/87 간의 첫 동·서독 공동협력사업계획서에서는 100개 사업 중 22개의 학술분야 프로젝트가 합의되었음.

- 동·서독은 첫 사업계획서에서는 상호 부담이 적은 전시회·방문공연 등에 중점을 두었음.

○ 그러나 1988/89 두 번째 사업계획에서는 동·서독 양측이 학자와 학술당국의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 광범위하게 학술분야 교류프로그램이 포함되게 됨.

- 학생교류에서부터 대학 간 자매결연까지, 고체역학연구로부터 문학분야 연구까지를 망라하였음.
- 양측의 협력사업은 역사학과 어문학분야에서 쉽게 이루어졌음.
  - 역사학 연구는 독일 중세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연구, 평화문제 연구, 사회·경제사 연구, 문화·학술사 연구를 망라했음.
  - 어문학 연구는 19세기 독일어로부터 사전편찬,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연구 등으로 이루어졌음.
- 동독측의 강력한 요구로 문화협정 사업계획서에도 자연과학분야의 연구협력 사업이 포함되게 됨.
  - 서독측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던 자연과학분야의 학술성과물들을 동독측과 의견교환 및 협력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는데 문화협정내 자연과학분야 협력사업의 중점을 둠.

○ 문화협정을 통해 가장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던 분야는 동·서독 대학 간의 자매결연이었음.

- 1986/87 첫 사업계획서에 Saarbruecken 대학과 Leipzig 소재 Karl-Marx 대학 간에 첫 자매결연이 맺어지고, 강의 및 학문연구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짐.
  - 연구중점분야는 의학, 의학기술, 화학, 물리학, 문헌학분야에서 이루어졌음.
- 1988. 4월에는 Muenchen 대학과 Karl-Marx 대학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짐.
  - 연구중점분야는 물리학, 화학, 수의학, 의학, 심리학, 생화학, 어문학, 독문학, 역사학, 신학 분야임.
- 동독측은 자연과학분야에서 서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흡수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협력사업이 많았음.
  - 1988. 3월에는 Achen 공대와 Dresden 공대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물리학, 화학, 교통공학, 수리공학, 전자공학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음.
  - Stuttgart대학과 Karl-Marx대학 공대 간에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기계공학, 금속공학, 수학, 물리학, 전자공학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짐.
- 동독측의 대학 수가 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동독의 몇몇 대학만이 서독의 많은 대학과 접촉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

○ 학술분야교류가 이루어지는 동안 동서독 양측이 발견한 사실은 이 분야교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초창기의 단순한 접촉증대라는 목표를 넘어 상호 상대편의 전문분야 연구성과물에 대한 인정과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음.

- 서독측 학자들은 너무 국제적인 학술교류에만 익숙해져 있었고, 또 동독의 수준을 비하하는 자세마저 보이기도 했으나, 문화협정에 의한 교류를 통해 차차 서독에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가 동독에서 연구되고 있는 영역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서독측 학자들은 동독측이 연구한 독문학과 역사학 분야에서의 성과물에 큰 관심을 가졌음.
  - 특히 이 분야 연구들이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동독학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새로운 연구성과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동독측이 요구한 자연과학분야 교류와 관련해서는 군사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기술이전과 관련되지 않는 한 동독과의 학술교류는 정부의 독일정책추진의 테두리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음.

○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독 정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교류·협력 사업이 재정보조를 받아 시행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반면, 실행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서독측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음.

-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측 학술전문가들 간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나, 각 개별연구자가 직접 접촉을 하기에는 개별연구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었고, 또한 동독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10-2-4. 문화협정에 따른 동·서독 공동사업계획서(전문번역)

동서독 간 문화, 학술, 교육분야의 관계를 발전시킬 희망에 따라 86. 5. 6 동서독 정부간에 체결된 문화협정 제12조에 부응하는 1990/1991년도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계획을 유첨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문화 및 예술

(1) 양측은 매년 자료수집 및 연규체류와 초빙과정 및 경험교환을 포함한 예술 및 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장기 1,200일, 단기 360일 간의 체류 기간으로 소장 신진학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문화 및 예술분야 종사자를 교환한다.

(2) 대표적인 전시회의 교환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전시회 부대행사(심포지움, 세미나, 강연회 등)에 10일 간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무관하게 대표적인 전시회나 중요문화계획의 개막식에는 공식사절 4명을 교환할 수 있다.

(3) 양측은 동독 국립영화보관소와 서독 연방문서보관소/영화보관소 간의 영화복원 및 재생의 협력을 지원하며 영화주간 행사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양측은 동독 국립영화보관소와 서독 연방문서보관소/영화보관소 간의 약정체결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4) 양측은 유적보전분야의 협력을 위한 약정체결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5) 양측은 90년도와 91년도 슐레스빅 홀스타인 축제에 참여하는 동독의 상업적 연주단을 지원한다. 양측은 동독출신 예술가의 축제오케스트라 협연을 지원하며 그 관할범위내에서 이 오케스트라의 동독내 등단 가능성을 검토한다.

(6) 양측은 베를린 음악대학과 쾰른 음악대학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6) 양측은 드레스덴 미술대학과 뒤셀도르프 복원본부 간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예술품 복원문제에 관한 협력을 지원한다.

(7) 양측은 비이마르소재 국립 독일 고전문학 연구소와 그 기념관측과 쉴러 박물관, 마아박소재 독일문학서고, 볼펜뷔테소재 헤어촉 아우구스트 도서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과 뒤셀도르프소재 괴테박물관측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연구와 협력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특히 문헌학, 독일고전 작가문헌학, 문서보관자료의 정리, 하리그랍 케쓸러 연구, 인셀 문서보관소, 괴테에게 쓰여진 서한문 일체의 연대별 출간의 정리, 헤어더 서한문, 괴테의 일기문과 서한문 연구를 지원한다.

(8) 양측은 이력 및 문헌학 대백과사전 "독일문학"의 정리를 지원한다.

- 그라픽전(베를린)
- 빌틱히 비엔날에(로스톡)
- 유럽음악제(90, 라스타트, 91, 북헨)
- 국제민속음악제(비트부억)

제2조

학술 및 연구

(1) 양측은 매년 신진 소장학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학술 및 연구분야 종사자를 단기연수는 총 2,200일 간, 장기연수는 총 1,300일 간의 체류기간 동안 교환한다.

(2) 양측은 다음 대학간의 자매결연 가능성을 검토한다.

- 괴팅겐대학과 예나대학
- 칼스루에 공대와 라이프찌히 공대

제3조

교 육

(1) 양측은 매년 86. 5. 6에 체결된 동서독 문화협정 제2조와 제11조에 근거하는 가능성의 범위내에서 단기연수는 290일, 장기연수는 70일 간 신진 소장학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교육분야 종사자를 교환한다.

(2) 양측은 동독 교육학 아카데미와 독일 국제교육학 연구소 간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영재교육개발 및 일반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

(3) 양측은 선정된 초중고교 간의 자매결연 가능성을 검토한다.

(4) 양측은 청소년연구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5) 양측은 제11조의 범위내에서 실습생교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6) 제3조(2)와 (5)에 열거된 사업의 실현은 제3조(1)과 제4조(4)의 할당범위내에서 수행된다.

제4조

기타분야의 협력

(1) 양측은 문서보관분야의 협력을 지원하며 양측은 매년 단기 30일, 장기 300일 간 체류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인원을 교환한다.

(2) 양측은 그 가능성에 부응하여 학자와 전문가의 국제전문회의, 세미나와 학술, 연구, 교육, 문서보관 분야의 전문박람회 참석을 지원한다. 그 실현은 각각 제1조(1), 제2조(1), 제3조(1) , 제4조(4)의 할당범위내에서 수행된다.

(3) 양측은 전문서적 교환을 지원한다. 그 방법은 별도로 합의한다.

(4) 서독측은 동독측에게 제1조(1), 제2조(1), 제3조(1), 제4조(1)에 합의된 교환할당에 추가하여 연간 200회의 단기체류(각각 30일까지)와 100회의 장기체류(각각 180일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개별사업계획

1990년/91년도 개발사업계획의 실현은 사업계획목록(유첨)에 따라 각각 지명된 상담대상자를 통해 수행된다.

제6조

일반적 기본조건

(1) 공식사절단 교환에 있어서 일정계획안은 상주대표부를 통해 파견국 해당기구 내지 해당기관에게 전달된다.

(2) 자유할당범위내 연구체류에 관한 신청서의 상호전달은 동독 외무부와 서독 상주대표부를 통해 수행된다. 인원선발은 파견자측이 결정한다. 학자, 전문가, 대학생 교환의 업무협조는 서독측에서는 본소재 독일 학술교류재단이 맡는다.

(3) 사업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정부는 적시에 전달되거나 교환되어야 하며 제6조 (2)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분기를 위해 체류분기의 제1주 첫날까지 제출해야한다(최소기간).

(4) 제6조 (2)에 따른 신청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거지)
- 직장, 직위
- 학술전공분야
- 방문계획 및 업무계획 건의서
- 예정체류 또는 예비체류의 시점과 기간

(5) 전시회의 파견 및 초청의 근거는 해당 대여대상자 간에 체결될 대여계약이다.

제7조

재정적 기본조건

(1) 인원교환시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파견자측

- 초청국내 최초 및 최종체류지까지의 교통비.

나) 초청자측

- 체류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여행비.

- 1개월 미만 체류시 적절한 숙소비 및 일일비용 보장 동독내 일일비용은 40 동독 마르크, 서독내 일일비용은 60 DM.
- 1개월 이상 체류시 월간지원 비용.

동독내

교수	최 고 1,200 동독 마르크
강사	“ 1,050 ”
박사소지학자	“ 950 ”
박사과정생	“ 850 ”
박사가 아닌 신진학자	“ 600 ”
대학생	“ 480 ”

적절한 무료숙소가 준비되어 있음

서독내

정교수	최 고 3,500 DM
대학강사	“ 3,000 ”
박사소지학자, 조교, 의사시보 기타	“ 2,700 ”
박사과정생 등	“ 2,000 ”
대학생 ,	“ 1,500 ”

- 합의된 방문계획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고비 지불(예: 초청과정, 초빙강연)
- 약정된 범위내에서 학술기관 및 기구의 사용비용.

(2) 장학생 교환시 초청자측은 규정에 관계없이 학비면제.

(3) 전시회와 그에 준한 행사수행시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파견자측

- 최초 체류지까지의 운송비.
- 전시회계획, 준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및 지역내 경찰보호 비용).

나) 초청자측

-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내내에서의 운송비 및 행선지까지의 반송비(제3국으로 계속운송시 행선지까지의 발송비용만 포함).
- 전시회에 필요한 장소비, 전시회와 관련된 기술적, 조직적 비용, 홍보비, 약정된 전시회 수행원의 체류비용.
- 전시회목록 비용 및 그 인쇄비(단 다른약정이 없는한).
  - 파견자측은 초청자측에게 목록자료(문장, 사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전시회목록의 발행부수, 분량, 장점 및 그 발행일은 사업계획 당사자 간의 별도 의견합의를 필요로 한다. 동독측이 전시회목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초청자측은 이를 구입할 수 있다. 서독측이 전시회목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그 판매이익을 서독의 외국인 외환계좌 B에 대변기입할 수 있다.
- 대여품목에 대한 그 상설전시장으로부터 대여국가 내에서의 거치 기간 및 대여품목의 상설전시장까지의 반송기간 중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피대여자는 대여품목에 대한 상기한 책임감에 근거하여 보증하거나 파손시 손해배상 지불의 용의선언과 함께 안전과 보험이 내포되어 있는 국가적 보증선언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행사와 관련된 모든 수입은 다른 약정이 없는한 초청자측에 둔다.

1989. 12. 19 드레스덴에서 독일어로 원본 2부 작성

서독정부를 대신하여	동독정부를 대신하여
독토 프란츠 베어텔레	쿠어트 니어

1990/1991년도 문화협력의 공동사업 목록

I. 문화 및 예술

I. 1 조형미술

I. 2 박물관, 유적보전

I. 3 예술대학, 예술전문대학

I. 4 문학 및 도서관
I. 5 음악, 연극, 영화
I. 6 초청연주
II. 학술 및 연구
III. 교육
IV. 청소년
V. 자료보존

10-3. 동독의 문화정책과 동독문화인들의 반체제 활동

○ 동독 문화정책의 전략적 목표(SED 제 Ⅸ 전당대회 결정사항)

- 문화정책의 객관적 원칙인 정치, 경제, 문화의 단일한 사고방식 형성.
- 문화정책을 통해 동독이라는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의 형성.
- 공산주의에로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원칙적인 전제조건의 조성.
-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국가와 친선·협력 계속적 강화.
-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결렬한 계급투쟁의 필요성 강화.

○ 동독 문화정책의 특징

- 사회주의적 문화의 물질적, 정치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모든 노동현장과 학습현장에 걸친 사회주의적 노동문화를 조직적으로 강화함.
- 도시, 마을, 휴양지에 사회주의적 문화공동생활의 형태를 개발하여, 여흥, 무도, 체육경연과 같은 문화적 공동체험 조성을 중시함.
- 독일역사의 민주적, 인도적 정통후계자로서의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창출을 시도함.
- 61년 이래 지속적인 "독일문화의 통일"이라는 테제를 표방, 서독에서 팽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문화"와 구별.
  - 제국주의에 직접 기여하는 자본주의적 문화생산품과 퇴색된 소망, 사상 등 서독의 문화표현양식과 평화, 긴장완화, 사회안보에 대한 요구로 표현되는 인도주의적, 민주주의적인 동독 예술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사회주의국가의 정치, 경제분야의 통합노력의 강화로 동독의 대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문화관계의 공고화를 꾀함.
  - 특히 소련과는 장기간에 걸쳐 문화 장관, 대학교육 장관, 인민교육 장관 간에 정규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예술인단체, 국가 간 업무 합의와 모든 분야에 걸친 협정이 체결됨.
- 80년대 초부터는 서방측과 대외문화교류를 이용하면서, 호네커의 오스트리아,

일본, 멕시코 방문을 전후하여 초청연주회 교환이 활성화되었고, 동독이 "독일문화유산"의 후계자임을 과시하려고 하였음.

○ 당의 공식적인 문화정책에 대해 문화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은 소련에서 탈스탈린화 기운이 돌기 시작한 이후임.

- Harith 교수 등 수정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철학교수에 대한 논쟁으로 1957년 E. Bloch 교수가 강제 은퇴함.
- 베를린장벽 구축('61. 8. 13)으로 동독의 내정은 안정된 반면, 예술가와 공식 문화정책 간에는 견해차가 두드러졌고 그 결과로 유명작가에 대한 출판금지 조치가 단행됨.
- 8차 전당대회(71)에서 작가와 예술가에 대한 사상논쟁이 벌어졌을 때, 호네커는 "공개적인 문화정책"을 표방했으나, 지도층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예술의 건설적 역할 강조는 체제에 대한 "비판적 요소" 기능을 간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 CSCE('75)와 유럽공산당 전당대회('76, 베를린) 이후 작가와 예술가들은 "현존하는 사회주의"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토론하기 시작함.

- 민중적 체제저항 가수인 Wolf Biermann(함부르크 출생, 1953년 동독 이주)의 서독공연으로 동독시민권이 박탈(76)되자 각 분야에 걸친 작가와 예술가 100여 명 이상이 연대행동에 돌입, 서독언론을 통해 항의하였는데 Biermann 동정파와 당정책추종파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함.
- 이에 Hager는 "체제반대자들의 프로파간다"에 동조, 동독 지성인들이 "제3노선"을 찾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호네커는 "문화정책을 통해 실질적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창조적 분위기 조성"을 강조함.
- 공식적인 문화정책을 표방하는 그룹과 자유를 추구하는 문화인들 간의 이와 같은 갈등의 와중에서 동독문화계의 Biermann 동조자들은 체포되거나 체포 후 수개월 후에는 서독으로 추방되었으며, 일부 작가와 배우들은 서독으로 합법적으로 이주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대다수의 Biermann 동조자들은 동독에 계속 머물면서 체제비판을 계속했으며 당지도층과 문화협회와 토론을 전개하기도 했는데, 서독 미디어 중 특히 TV의 도움을 받아 사회주의사회의 본질과 예술가의 역할에 관한 토론을 전개했음.
- 이에 SED는 미술분야에서만 최소한의 비판을 허용하였으며, 동독문화협회 제9차대회(77)에서는 당을 통한 대표임명이 조작된데 대해 대다수의 유명 문화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가 벌어지기도 했음.
- Biermann 동조자와 당지도층 간의 괴리는 대다수의 예술가와 당추종문화기구 간의 상극화 현상을 결정적으로 초래하였음.

○ 문화인들의 반항에 대한 동독정부 대응

- 동독내에서 활동하는 서독 언론인의 동독 문화인들과의 "여하한 인터뷰나 설문조사"도 허가제도하에 두었으며 S. Heym이 이를 어기자 서독 제2TV 특파원이 추방되었으며 그의 책이 서독에서 발행되자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음.
- 친당작가를 동원 당기관지를 통해 반체제작가들을 비난하면서 Heym, Schneider 등을 동독문인협회에서 제명을 기도하기도 함.
- 동독은 형법을 개정(79. 8. 1), "동독을 모독시킬 수 있는 뉴스, 원고, 기타 자료의 전달"을 반국가행위로 단정하여 예술가의 대서독 접촉을 단절시키려 했음.
- 그러나 당지도층은 유화정책도 병행했는데, 온건주의적인 작가의 장기간 서독체류를 위한 사증을 발급하였으며 연극정책과 출판정책에서는 대 서독교류에 있어 상당히 관대했음.
- 동독 신진작가들의 비판적 작품이 서독에서 출판되자 체포소동이 벌어지고 서독이주현상이 잦아졌으나 당지도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음.
- '81. 12 "베를린 평화촉진대회"와 함께 동독문화정책에 평화선전공세라는 새로운 악센트가 부여되기 시작하였으며 슈미트-호네커 정상회담의 종료와 함께 S. Heym은 동독정부의 허가하에 동서독 작가의 평화토론을 개인적으로 주장했으며, 이를 성사시켰음.
  -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동서독의 예술가와 학자들은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지만 문화인들 간에는 별다른 적대감은 없었음.

- '83년 말 유럽내 핵미사일 배치와 함께 호네커의 평화정책은 서독에 대한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당 추종 문화인들로부터 수십억의 차관과 함께 서독화로 사회주의 이상을 매각한다는 비난이 일어나기도 했음.
- '84년 이래 서독이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문화인들의 여행자유화 및 서독이주에의 욕구도 분출하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이주하여 동독체제의 비판을, 일부는 동독에 남아 사회주의체제의 개량을 위해 당 지도부와 힘든 싸움을 벌였음.

10-4. 동독으로부터 예술품·문화재의 반출

○ 동독측의 법적인 근거

- 1980. 7. 3자 문화재 보호법(Gesetz zum Schutz des Kulturgutes der DDR).
- 1982. 5. 3자 문화재 보호법 3차 시행령.

○ 동독으로부터 반출이 금지된 보호대상 문화재(Kulturgut)의 범위

- 독일노동운동과 국제노동운동에 관한 주요 문서.
-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유물.
- 과학기술, 예술활동, 교통·통신, 농업, 군사, 스포츠, 기타 산업용 기기분야에서 발달사를 기록하고 있는 문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물건.
- 동물과 식물의 진화를 알 수 있는 화석과 광물.
- 원시시대 역사와 관련된 유적.
- 민속적인 가치가 있는 물품.
- 회화, 조형, 응용미술 작품.
- 가구, 양탄자, 도자기, 유리잔, 가죽, 돈, 광석, 나무, 예술작품 중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것.
- 필름·사진, 전축판, 테이프, 역사적인 기념카드 중 수집용으로 수집된 것들.
- 학자, 소설가, 시인, 작곡가 등의 최초의 작품이나 기타 기념작품 중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 고서적.
- 역사적·학문적 가치가 있는 필사본·인쇄본
- 정치·예술·학문·사회활동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유품.
- 유명음악가들이 연주하던 악기나, 유명 악기제조자들이 만든 악기.
- 유명한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설계도.
- 역사적이고 시대사적 의의를 가진 수집가치가 있는 동전, 우표.
-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훈장, 메달, 영예수여증, 문장 등

ㅇ 이러한 보호대상 문화재의 반출은 동독문화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반출물품은 선물, 이사물품, 판매물품, 상속재산 등 모두에 해당됨.
- 사전 허가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신청인 주소·성명.
  - 문화재의 명세서, 등록번호(등록되어 있으면).
  - 반출의 목적.
  - 수취인 및 그 도착지.
  - 평가액(신청인 평가액 또는 감정가).
- 사전 허가 신청은 우선 지방관서의 문화재 관리국에 먼저 신청함.
  -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심사하되 2등급과 3등급은 지방관서가 책임지고 결정함.
  - 지방 문화재 관리국에서 2등급·3등급 문화재에 대한 허가를 기각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신청자가 반출허가에 관한 소원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방 문화재 관리국은 이를 문화성에 이첩하여 4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
  - 문화성은 1등급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반출여부를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소원제기를 할 수 없음.
- 허가신청시 신청자는 허가 수수료를 늦어도 반출시까지 납부해야 하는 바, 그 수수료액은 다음과 같음.
  - 1만 동독 마르크 상당액의 경우 3%(최소 50 마르크)
  - 1만~50만 동독 마르크 상당액의 경우는 2%(최소 300 마르크)
  - 50만 동독 마르크 이상일 때는 1%(최소 1만 마르크)
- 문화재의 반출이 동독지역에 거주지를 갖지 않는 수취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동독의 외환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해야 함.
- 반출허가서는 1년 동안만 유효하며, 타인이 양도할 수 없음.

ㅇ 동독지역에 거주지를 갖지 않은, 특히 서독으로의 이주자들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독측에 의해 반출허가가 기각된 경우는 동독정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청소년 교류

11-1. 협상

11-1-1. 협상과정

○ 패전 이후 독일의 정치인들은 독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나, 서방 점령국들은 청소년 단체조직에 신중을 기했음.

- 1946년 3월, 소련 점령지역에 독일 청소년 자유연맹(FDJ : Freie Deutsche Jugeng)이 결성되었음.
- 서방 점령국들에 깊숙이 뿌리 박히 "히틀러-청소년 단체"에 대한 불신에 따라, 미군정은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reeducation-Programm"을 마련했음.

○ 서방 점령국들은 청소년 단체의 설립을 제한함과 동시에 단체들의 활동을 감독하였는 바, 특히 FDJ와 서방 점령지역 청소년 단체들 간의 교류를 예의 주시했음.

- 당시 FDJ가 내걸은 목표는 독일통일 그리고 점령 경계선을 초월한 청소년 조직체의 결성이었음.
  - 1946년 10월 Hohen Meissner에서의 국제 청소년 모임에 참가한 여러 독일 청소년 단체들은 주로 소단체들의 주도하에 "민주주의 독일 청소년 연합회"를 결성하고자 주창함.
- 종전까지는 서방 점령지역의 소단체들이 FDJ와 주로 접촉을 가졌으나 1947년부터는 FDJ와의 대화를 큰 단체들이 맡아서 추진했음.
  - 5월 초 소련 점령지역에서 서방 점령지역 주요 청소년협회 대표자들과 FDJ 간에 교류방법을 둘러 싼 협상이 개시된 데 이어 11월에는 카돌릭 청소년회의 초청으로 서독에서 또 한 차례의 협상이 벌어짐.
  - 당시에 FDJ 사절단장 자격으로 서독을 방문한 에리히 호네커(후일 동독 공산당 서기장)는 이 협상에서 런던 외무수상회의로 보내는 독일 청소년 평의회 공동 결의안과 전체 독일 청소년협회 정관 초안을 제시함.
  - 전체 독일 청소년협회 결성과 공동 성명서 발표를 제안한 FDJ의 요구를 서방 점령지역 청소년협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음.
-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건립에 이어 10월 3일 서독 청소년 연맹(DBJR : Deutscher Bundesjugendring)이 결성됨.
  - DBJR은 FDJ를 회원 명단에서 제외시켰는 바, 그 이유는 FDJ가 서독 기본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 양독국가 수립 후 FDJ는 DBJR과 교류를 모색했으나, 냉전기의 양 청소년 단체 간 교류의 성과는 미미했음.

- 1952년 5월 Essen시에서 개최된 청소년 카라반에서 FDJ의 임원인 Phillip Mueller가 사망했으며, 1952년 겨울 동독 신교 청소년협회 임원들에 대한 탄압사태가 있었으며, 1953년 6월 17일에는 동독에서의 노동자 봉기에 대한 무력집압 등으로 양독관계는 악화되었음.
- 서독은 1954년 서독 내에서의 FDJ의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름.
- 1954년 11월 Weibaden에서 DBJR은 FDJ에게 다음과 같은 협상 조건을 내세움.
  - 정치적 이유로 투옥된 청소년 지도자 석방.
  - 국가 청소년 단체인 FDJ의 독자적 활동 포기 및 일반 청소년 단체 승인.

- 청소년 잡지 배급 허용.

- 이같은 요청에 FDJ가 불응하자 DBJR은 서독 청소년협회들에 대해 FDJ와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1960년까지 서독 DBJR은 계속 Wiebaden 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하며 동독 FDJ와 대화를 거부했음.
- 1964년 10월 Romscheid 성명을 통해 DBJR은, 민족 간의 이해와 독일통일에 대한 DBJR의 의지를 천명함.
  - DBJR과 FDJ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DBJR의 여러 회원단체들은 개별적으로 FDJ와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진 바 있었음.
  - 또한 국제 모임 등을 통해 DBJR과 FDJ 간에도 몇 차례 접촉이 있었음.

○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양독 청소년 단체 간의 대화 및 교류는 주로 FDJ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나 1970년부터는 DBJR이 적극적으로 FDJ와의 대화를 모색함.

- 이같은 DBJR의 협상 제안에 대해 FDJ는 동독에 대한 국가 인정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거부했음.
  - 국가 단체로서 정부의 정책을 간과할 수 없었던 FDJ는 DBJR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보일 수 없었음.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과 1975년의 CSCE 헬싱키 최종문서는 DBJR에 대한 FDJ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
- 1978년 1월 수년 간의 협상 끝에 DBJR과 FDJ는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코뮤니케 작성에 합의함.

○ 1979년 4월 DBJR의 회장이 처음으로 FDJ를 공식 방문하게 됨.

- DBJR과 FDJ는 1980년부터 매년 교대로 '청소년들의 관심-특히 평화에 대한 관심-을 대변키 위한 각기 다른 체제하의 청소년 단체들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 1981년 10월 당시 연방수상이던 헬무트 슈미트와 동독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 간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양독 간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그 이후 양독 간 청소년 교류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 1982년 9월 20일, FDJ 회장 에곤 크렌쯔와 DBJR 회장 요제프 홈베어그는 동베를린에서 동·서독 청소년 여행(Jugendtourismus)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

- 이로써 서독 청소년들에게는 적정한 비용으로 동독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반면, 동독은 방문객 수용 능력을 확장시켜야 했으며, 여행 프로그램 또한 이들 서독 청소년들을 겨냥해 점점 개선해 나가야 했음.
- 이 양독 청소년 여행은 70년대부터 지속된 동·서독 청소년 단체들 간의 관계, 특히 점점 "공식화"되어가고 활발해진 협회들 간의 관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 DBJR과 FDJ는 견해를 일치하고 있음.
  - 이러한 청소년 여행을 통해 보다 많은 양독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확대되어져야 한다는 것임.

○ 양독 간 청소년 여행이 점점 활발해져 협회원들의 봉사 업무만으로는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6개의 전문 청소년 여행사(동독은 국영업체)들이 이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됨.

- 이들 지정 여행사들은 동독 청소년 여행사와의 협의 하에 배당, 가격, 여행일자, 여행사측의 서비스 문제 등을 결정하였으며, 마케팅 절차, 참가자 선발, 공공 지원 등의 문제는 각국의 재량에 따라 처리토록 함.(전문 여행업체 또는 공익여행단체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국제 여행 교류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짐).

○ 청소년 여행합의에도 불구하고 DBJR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서독 청소년교류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았음.

- 1971년 4강 협정에 의거, 베를린을 양독 교류 활동에 포함시키는 문제.
- 양독 청소년 여행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 특히, 동독 청소년 여행단들의 일정에 보다 많은 서독 청소년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문제.
- 동독측이 마련하는 여행 프로그램의 다양화문제. 다시 말해 사회 각층으로부터의 참여를 요구함.

- 양독 간 청소년 여행사업에 대한 지원문제. 동독으로의 여행뿐만이 아니라 서독내 동독 여행단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함.
- 결론적으로 말해 동·서독 모두가 양독 간 청소년 여행을 보다 확대하고, 지금까지 교류활동에서 관찰된 불균형 해소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음.

○ 80년대 말부터 DBJR과 FDJ 간에 다루어진 주요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청소년 교류 그리고 서베를린 청소년 단체들을 양독 청소년 교류 활동에 포함시키는 문제였음.

- 1986년부터 내독 간에 맺어진 자매도시 결연 협정은 청소년 교류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 1987년 말 동독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서독 방문에 앞서 양독 청소년 여행 활동에 대한 서베를린 청소년들의 참여문제가 해결됨.
- 1988년 10월, 수차례 연기되었던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의 서독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DBJR과 FDJ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을 기림과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을 밝힘.
  - 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FDJ는 DBJR이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에 부응해 왔음.

11-1-2. 청소년 교류에 대한 동·서독의 상이한 입장

○ 동·서독의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그 사회적 역할은 매우 상이했음.

- 동독의 청소년단체는 철저한 국가통제하에 놓인 공산당 예비 후보자 당원 교육장이었음.
  - 동독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의 형성을 위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은 탁아소-Junge Pionier(초등학생 중심), -FDJ(중·고등학교), -Gesellschaft fuer Sport und Technik(18세~21세), -군대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이 단체들에의 가입은 명목상 자발성을 전제로 했으나, 이런 단체에서 열성적인 활동을 한 자들만이 공산당원으로 발탁될 수 있고, 또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므로 반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서독에는 각기 다른 정치적인 이념, 세계관에 따라 또는 전문 이익집단의 산하에 40개 이상의 청소년단체가 존재했는데, 가입은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했음.
  - 이들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국가에 의해 재정지원되었으나, 국가가 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기구는 아니었음.

○ 양 독일 국가의 청소년 대책은 독일문제와 관련된 각각 다른 정치적인 목표설정 때문에 상이했음.

- 서독측은 상반된 체제하의 분단된 독일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징치사회화 과정에서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상호 소외현상이 일어나 민족적인 동질성을 상실해 갈뿐 아니라, 장래의 독일통일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했음.
  - 긴장 완화, 상호 대화 등, 양독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 이같은 상황에서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접촉이 향후 독일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보았음.
  - 양독 청소년들 간에 사적 교류, 여행, 평화적으로 정치적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단체들 간의 공식적 모임 등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하여 이로부터 개인적 친분관계가 맺어지도록 노력했음.
  - 양독 청소년들 간에 서로를 보다 잘 알수록 그리고 서로 간에 보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적대감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내지 해소될 수 있으며, 이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동독정부는 특히 기본조약 체결 이후 서독측으로부터의 재정적·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의식하며, 이러한 서독측으로부터의 청소년 교류제의에 마지못해 응하면서도, 동독 청소년들의 사상적인 오염을 우려하며, 여러 형태의 차단조치를 취함으로써 양독 청소년들 간의 공개적이고 순수한 접촉은 통독 직전까지 이루어질 수 없었음.

- 공산당 후계자 양성소인 동독 청소년단체(FDJ)는 국가의 통제하에 전적으로 양독 간 청소년들의 만남을 감시했음.
-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으로의 여행은 체제맹종을 조건으로 한 일종의 포상으로 체제순응을 위한 교육적 기능이 있었음.
- 여행자의 구성을 살펴 볼 때, 서독측은 중·고등학생인데 반해, 동독측은 사회와 가정에 묶여 있는 26세 이상의 사람이 많았음.
- 동독측은 청소년들에게 여행가능성을 보장함으로 해서 다른 분야 제한 및 억압조치에 대한 욕구불만 분출구 역할을 기대했고, 아울러 동독 청소년들이 서독의 정치·사회제도와 조우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부각되도록 하여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동독체제를 좀 더 신뢰하기를 희망했음.
- 동독측은 2개 국가·2개 민족론에 의거 철저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동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른 체제와 접촉케 함으로써 동·서독 분리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둠.

○ 동독측과 달리 서독측은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 동독측의 선전으로 인한 서독 청소년들의 사상적인 오염에 대해 우려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서독 청소년들은 양독 간 국경을 통과하면서 동독측이 설치한 각종 국경봉쇄장치를 직접 목격하면서, 동독이 하나의 거대한 집단 수용소라는 인상을 받음.
  - 국경봉쇄장치는 서독측에서는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동독측에서만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를 우려하여 설치하였음.
- 제한적인 곳만 방문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었으나, 접하는 동독주민들의 일상생활조건이 서독에 비해 너무 열악하여 생활수준의 격차를 직접 체험했음.
- 동독에서 보도 듣는 신문과 방송의내용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실감함.

○ 따라서 동독에 대한 수학여행은 서독 청소년들에게는 동독에 존재하는 독재체재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생생한 정치교육이 되었음.

- 따라서 연방정부는 애초 미래 사회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의 인간적 만남을 장려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양독관계를 심화시키고 민족적 공통의식이 유지되도록 의도하였으나, 상호 이질감만 확인하는 계기가 됨.
- 다만 동독측은 청소년 교류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함으로써, 기대했던 성과(청소년단체 핵심간부들에게 서독에서의 현실체험을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를 오히려 동독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러나 양독 간 청소년 여행을 보는 서독측의 시각이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음.

- 일례로, 1984년 연방 내무성 장관은 83년도 국가 안보 보고서에서 동독 청소년의 서독여행을 동독 공산당의 반서독 정치 활동으로 간주한 바 있음.
  - 이에 동독은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 여행을 전면 중지함.
  - 사회 각계 각층의 건의와 진정에 따라 84년도 보고서에서는 연방 내무성이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여행에 대한 평가를 제외시킴에 따라 중단하였던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 방문이 재개될 수 있었음.
- 이 밖에 국경 통과시 발생한 사건으로 이른바 푸른 제복 사건을 들 수 있음.
  - FDJ의 푸른 제복을 착용한 동독 청소년들에 대해 나찌제복 착용금지와 같이 반국가적인 제복착용으로 간주 서독형법을 적용, 기소한 사건이 발생, 또 다시 양독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듦.
- Baden-Wuerttemberg 주 문화성 장관은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 직후 해당 주 전 학교에 대해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로의 여행을 일체 금지시킨 바 있음.
  - 이에 동독은 Baden-Wuerttemberg 주로의 동독 청소년 여행을 전면 취소시킴.

○ 청소년 교류를 위한 서독 연방정부 지원.

- 분단 직후부터 베를린장벽 구축시까지
  -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을 오거나 이주한 청소년들이 서독에서 사회체제에

동화되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각 주정부는 지원기금(Garantiefond)을 설치하고, 연방정부의 정착 지원계획(Eingliederungsprogramm)에 의거 지원함.

• 간헐적인 청소년 왕래가 특히 신교단체를 중심으로 있었는 바, 내방자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도시에서 서독지역 어느 유스호스텔에서나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무료숙박권(Wandergutschein)을 발급함.

– 베를린장벽 구축 이후

• 동독측에서 청소년들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하자. 당국 간 협상을 통해 이를 확대코자 노력함.

• 그러나 1972년 동·서독 통행조약에는 청소년교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일반인의 관광 및 개인여행에 관한 규정만이 있음.

• 1981년 10월 슈미트-호네커 정상회담을 통해 비로소 청소년교류를 확대할 것에 양측이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1982년 90월 서독 청소년연맹(Bundesjugendring)과 동독청소년단(FDJ) 간에 관광차원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해 합의함.

• 1983년부터 6개의 선정된 청소년 여행단체(동독의 국영 “청소년 여행사”와 서독의 5개 개인여행사)가 14~30세의 청소년 단체여행을 주선하여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청소년 단체여행이 이루어짐.

• 동독에서의 여행 프로그램(여행 경로, 방문자, 숙소)은 서독주재 동독 상주대표부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1명의 동독측 수행원이 늘 동행하여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음.

11-2. 협정 및 국내법적 근거

○ 1972년 동·서독 통행협정은 양독 간 여행교류의 기본원칙을 설정했으나, 통행협정에는 관광여행과 개인여행만을 취급하고 있을 뿐, 청소년교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 청소년 교류에 관한 동·서독 간의 구체적인 협정은

– 서독 BDJR과 동독 FDJ 간의 1982년 9월 20일자 청소년 여행에 관한 합의.

– 서독 청소년 여행 알선기관인 Jugendherbergwerk와 동독 청소년 여행전담 여행사 Jugendtourist 간의 1987년 9월 1일자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문.

– 1986. 동·서독 문화 협정 제11조에서 청소년 교류 증진의 대상 단체를 기존 청소년 간부가 여행사를 통하는 것과 더불어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일반학생들까지 확대하자고 합의함.

○ 서독 연방정부(주무 부처: 내독관계성)와 각 주정부는 기본법에 명시된 통일 명제에 의거 대동독 견학여행을 장려하는 바, 이와 같은 견학여행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연방 내독관계성이 작성, 각의에 제출한 “학생, 청소년, 대학생의 내독 간 견학여행 장려 지침”(Richtlinien fuer die Foerderung innerdeutscher Informations-und Bewegungsfahrten von Schuelern, Jugendlichen und Studenten).

– 연방예산법 시행령 44조 44a에 대한 임시행정조치(Vorlaeufige Verwaltungsvorschrifte zu den §44. 44a Bundeshaushaltsordnung)와 그에 상응하는 주정부 예산법 시행령.

○ 동독측은 청소년들의 대서독 여행을 여행에 관한 시행령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하다, 호네커 서독 방문 이후 1988년 11월 30일자 여행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통해, 18세 미만 동독시민의 대동구권 이외 지역 여행시 신청서 제출의무를 폐기한 바 있음.

11-3. 청소년들의 상호여행

○ 동·서독 간의 청소년 여행교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동·서독 여행자 수의 불균형, 동독 청소년들의 대 서독 여행에서 보이는 불규칙성 등임.

- 서독 학교들과 일부 서방국가 내지는 미국 학교들 간에 실시되는 학생교류(Schueleraustausch)의 형태는 동독과 이루어질 수 없었음.
  - 문화협정에서의 학생교환도 대학생들(특히 학위 취득 대학생들) 간의 교환사업을 다룰 뿐임.
  - 동독 방문에 대한 서독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심은 계속 늘어났으나(75%의 청소년 동독 여행이 수학여행 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25%는 청소년단체, 협회 및 기타 사회단체들에 의해 이용되었었음), 동독은 이를 크게 제한했음.
-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청소년들의 숫자가 서독에 비해 불규칙적인 데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청소년 여행"은 1975년 CSCE 헬싱키 조약과 1983년 CSCE 후속회담에서 결의된 사항 중의 하나임으로 동독으로 보면 이같은 청소년 여행 방안은 일종의 정치적 의무 사항임.
  - 그러나 이같은 조약상의 협정들보다는 실제 정책상의 결정과 양 독일 정부의 평가가 양독 간 청소년 교류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청소년 여행을 통해 강조하고자 한 바는 각기 상이하였음.
  - 서독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내독 간 견학여행을 장려하였음.
    - » 분단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초월한 독일 민족의 공통귀속성을 함양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통일의식을 고취시킴.
    - » 독일 분단의 현장을 견학케 하여 분단의 현실을 직시케 하고 이들에게 분단의 원인과 그 극복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 » 현 분단상황에 기초한 그 극복 방안으로써 독일(통일) 정책에 대한 상호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차세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
  - 동독은 청소년 여행(Jugendtourismus)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청소년 사업의 핵심은 아니었음.
    - » 이 밖에도 동독은 여행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증가하자, 양독 간 청소년교류는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류에 보다 주력함.

연도별 정부지원에 의한 서독에서 동독으로 그룹별 견학여행 현황

단위 : 횟수

연도	견학 여행 그룹별						총횟수 (총인원: 명)
	대학생 그룹	구성비 (%)	청소년 그룹	구성비 (%)	학생 그룹	구성비 (%)	
1984	45	5.2	127	14.5	705	80.3	877(22,000)
1985	34	3.5	160	16.7	109	73.7	961( )
1986	45	5.2	136	15.7	665	76.9	864(22,551)
1987	64	5.7	171	15.2	889	76.4	1,124(26,326)
1988	71	6.5	186	17.1	833	76.4	1,090(26,812)
1999	62	5.8	189	17.8	811	76.4	1,062( )

- 서독의 10~11학년(우리나라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급별 수학여행의 횟수가 전체 견학여행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음.

○ 청소년 교류여행에 대한 서독정부 지원.

- 지원대상 견학의 종류.
  - 동독과 동베를린으로 3일~10일 간의 장기 견학 및 상봉여행.
  - 동독과 동베를린으로 1일~2일 간의 단기 견학여행.
  - 최소한 4일 간을 베를린에서 체류하는 4일~8일 간의 서베를린 견학여행. 이 경우 동베를린도 하루 방문함.
  - 1일~3일 간의 내독 간 국경지대 견학.
- 견학 대상자

- 15세~25세 사이의 청소년 그룹(나이가 적은 청소년에게 우선 중점을 둠).
- 10학년(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대학생.
- 외국인 청소년, 학생.
  - » 이 경우 동독과 동베를린으로 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서베를린 방문과 국경방문만 허용되나 서베를린 방문시 24시간 이내에서 동베를린 방문이 허용됨.

–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 견학자들은 여행에 앞서 동독과 국경에서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사전교육을 통해 정보를 취득해야 함.
- 이러한 교육용 교재는 전독문제연구소나 정치교육센터에서 제공함.
- 여행자 수는 동독으로의 장기 여행의 경우 최소한 7명, 그 외의 경우는 최소한 20명, 최대한 60명이어야 함.
- 여행그룹에 미성년자가 끼어 있을 경우 교사나 청소년 지도자 등 성인이 동행해야 하며, 이 성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정부 지원의 규모와 절차

- 지원의 규모와 방법은 견학 종류에 따라 다르나 크게 교통비 지원과 체류비용 지원으로 나누어 짐.

견학의 종류	교통비 지원	체류비용 지원
▫ 동독과 동베를린으로 3일~10일 간의 장기 견학 및 상봉여행	▫ 출발지에서 동독 또는 동베를린까지 최단거리를 중심으로 – 철도여행의 경우는 2등 기준 단체여행 철도 요금의 전액 – 버스여행의 경우는 80%를 지원함.	▫ 하루 1인당 5 DM씩 지원
▫ 동독과 동베를린으로 1일~2일 간의 단기 여행, 4일~8일 간의 서베를린 여행	▫ 출발지에서 동독 또는 동베를린까지의 최단거리를 중심으로 km 별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 ▫ 동독에서의 교통비지원을 위해 1인당 1회에 걸쳐 7 DM 지급	“ (단 서베를린으로 여행하는 경우, 출발일과 도착일을 합해 하루로 보고 5 DM 추가) “
▫ 1일~3일 간의 내독 간 국경지대 견학여행	▫ 출발지에서 국경까지는 km 별로 일정부분 지원 ▫ 국경을 따라 가는 비용도 거리만큼 지급됨	“

- 신청 절차
  - »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출발 최소한 6주전에 허가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 신청서에 포함 내용
    -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은행구좌번호, 여행자들을 인솔할 대리위임자, 여행자 숫자, 여행 출발 및 도착시간, 전체 여행의 프로그램.
  - » 허가 관청
    - * 청소년, 학생, 대학생의 동독 여행 : 주정부.
    - * 외국인 청소년, 대학생의 서베를린 여행 : 베를린 문화교류센터.
    - * 외국인 일반학생의 서베를린 여행 : KMK 외국학생교류처.
    - * 외국인 학생·청소년, 대학생의 국경 여행 : 내독관계성.
  - » 우선 허가관청은 여행경비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준 후, 여행이 종료된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사후 정산함.
  - » 여행자들은 사후 정산을 거쳐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 여행의 진행 경과와 프로그램.
* 여행 참가자들의 인적사항.
* 각종 지출 증거서류.

○ 동독으로의 청소년 여행의 평가

– 전독문제연구소에서 집계한 동독여행 후 서독 청소년들의 소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고, 앞으로 동·서독 분단과 동독의 문제를 체제 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추어 보아야겠다는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관광이 너무 많고, 프로그램 진행을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동독 청소년 조직이 담당했기 때문에, 서독측이 의도한 교육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됨.

• 많은 서독 청소년·학생들이 동독으로 여행을 통해 동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지만 서독과의 심한 격차를 실감하였기 때문에 동독을 못사는 외국으로 또는 과거 못살던 시절의 독일로 느끼는 등 이질감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직접 노후한 생산시설, 낡은 주택 및 시가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체험을 통해 서독에서 자료로만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동독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음.

– 공식적인 여행 프로그램에 의한 접촉과 비공식적인 접촉 간에는 얻는 정보의 질이나 받은 인상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 여행중 공식적인 여행이나 시찰시 정보제공 및 주로 국영 유스호스텔 책임자나 동독 청소년 여행사의 안내인이 맡았음.

»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방문지의 명소 소개와 과거 역사설명이 주였으며, 동독 사회체제나 동독주민들 생활상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음.

• 여행시 서독 청소년들의 공식적인 접촉은 동독의 청소년단체(FDJ)의 대표들하고만 이루어졌는데, 동독지역 참가자들의 나이는 대부분이 평균 25세이거나 그 이상이었으며, 그 중 몇 명이 서독의 청소년들과 나이가 비슷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들도 발언과 행동에 있어 나이먹은 FDJ 대표들의 감시를 받았음.

» 공식접촉에서 논의되던 주요한 테마는 동독의 청소년 조직과 행동, 동독의 학교제도, 동독의 직업교육제도와 같은 비정치적인 것도 있었지만, 평화문제, 환경과 경제문제 등 정치적인 것도 있었음.

» 공개적인 토론시 동독측 대표들은 매우 딱딱한, 일정한 노선에 추종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서독 청소년들과 인솔 교사는 동독측 발언내용의 80% 이상이 “흥미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지루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전독문제연구소 발행, 1984년 동독으로 학생, 청소년, 대학생 그룹여행에 관한 연말보고서).

» 그러나 공식적인 토론행사가 말미에 소그룹으로 나뉘어 좀 더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각 소그룹에 참여한 동독 청소년들이 비교적 솔직하고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공식적인 접촉은 주로 청소년들이 묵었던 유스호스텔 오락장(디스코텍, 청소년 전용 클럽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서로 간에 형식을 배제하고 좀 더 이완된 분위기에서 상호의견을 솔직하게 교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FDJ 대표들로 구성된 감시인들의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음.

» 또 다른 비공식적 접촉의 형태는 길거리에서 또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나 대화도 공식적인 접촉과 대화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서독지역 대학생 그룹여행의 경우, 특정 전공분야에 대한 대화와 관련 인물 접촉을 원하기도 했는데, 동독측은 매우 호의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지원했음.

» 특히 교육학,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 노동운동 및 노조활동 등의 주제에 관해서는 관련된 교수, 도시행정가, 노조지도자들과의 접촉을 주선했음.

• 서독측 여행자들이 공식 여행프로그램에는 없는 교회단체나 개인적인

친지들과의 개별접촉을 원하는 경우, 동독측은 이를 전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는 묵인하는 경우도 있었음.

- 대부분의 서독 학생·청소년들은 국경을 통과하면서, 동독지역에 구축된 엄청난 국경폐쇄장치나 지루한 국경통과절차를 경험함으로써 분단의 물리적인 벽을 실감하게 됨.
  - 보통 국경통과시간은 1시간~90분이 소요되었으며, 통과지연은 서독 여행자들이 동독의 엄격한 여행규정을 사전에 몰랐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였음.
  - 국경통과시 지연의 주요 이유는 서독의 신문, 잡지 소지, 음악 테이프의 소지, 유효하지 않은 여권 소지, 불충분한 여행자명단 작성 등이었음.
-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관광과 일정한 분야의 정보 취득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했으나, 정치적인 선적목적으로 실시되는 관광안내와 일정 이외의 비공식적인 접촉의 금지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음.
  - 분단 이전의 동·서독 공동문화유산에 대한 시찰과 관광(Weimar의 괴테하우스, 드레스덴의 관광유적 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만족했음.
  - 일정 분야의 정보취득은 동독의 청소년 실태, 동독의 주거환경과 도시건설 현황, 동독의 농업구조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가능했음.
  - 그러나 Buchenwald의 나찌집단수용소 방문과 같은 경우는, 동독측이 반나찌를 강조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또 꼭 방문하도록 일정주선을 했으나, 서독 청소년들은 동독측의 일방적인 정치적 선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음.

서독측 청소년 여행단체가 요구한 일정과 동독측 여행사가 실제 주선한 여행 일정 비교(예)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일요일	요구			
	실제	출발	동독여행사 안내자 접촉	동독과 여행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월요일	요구	출발	Magdeburg시 관광	대화 및 토론 시간 (특정 주제)
	실제	Halle시로 이동	Halle시로 이동	자유 시간
화요일	요구	국영기업체 방문	Thale시 관광	국영기업체 직업훈련생들과 대화
	실제	농업협동조합(LPG) 방문	Gardelegen 유적지	자유 시간
수요일	요구	Buchenwald 나찌수용소 방문	Wwimar시 관광	다음 숙소로 이동
	실제	Thale시 문화유적지 방문	Queollenburg 유적지 방문	자유 시간
목요일	요구	농업협동조합(LPG) 방문	Halle시 관광	디스코텍 방문
	실제	Buchenwald 나찌수용소 방문	Wwimar시 관광	다음 숙소로 이동
금요일	요구	학교 방문	Bode 계곡 소풍	자유 시간
	실제	박물관 관광	국영기업체 방문 (일정 취소)	국영기업체 직업청소년들과 대화(일정취소)
토요일	요구	유적지 방문	Fallenburg 성 관광	Thale시 청소년들과 대화
	실제	유적지·박물관 관광	종유석 동굴 관광	동독청소년들과의 대화
일요일	요구	귀환	귀환	귀환
	실제	유적지 관광	귀환	귀환

- 서독측이 요구한 일정의 조정과 최종 확정은 동독측 청소년 여행사("Jugendtourist")가 맡아서 하며, 이 여행사는 동독 청소년 조직인 FDJ에 소속되어 있었음.

11-4. 신교 청소년단체 간 접촉

○ 서독 청소년단체 중 구 동독의 청소년단체와 가장 활발한 접촉을 벌였던 단체는 신교 청소년단체였음.

- 신교 청소년단체 간 교류는 동독의 신교단체가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 많은 접촉을 꺼렸기 때문에, 거의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하는 일방통행식 접촉이었음.
- 구교 청소년단체들은 동독지역에서 적당한 대화의 상대를 갖지 못해 접촉이 거의 없었음.
- 노조산하 청소년단체들도 동·서독 노총 간의 이념상 차이가 너무 커서 접촉이 어려웠음.

○ 동독정부가 신교 청소년단체들에 대해 서독과의 접촉을 허용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종교활동의 범위 안에서 통제위주의 동독사회에 대해 자칫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 층에게 일정한 탈출구를 제공.
  - 아무리 완벽한 전체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사회를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장악할 수는 없음.
- 이러한 신교 청소년단체 간의 접촉을 통해 서독으로부터의 물질적·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는 바, 교회를 통해야만 비로소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
- 동독 정부는 동독 청소년들이 서독의 체제와 접함으로써 그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이 부각되도록 유도하려 했음.

○ 신교단체 간의 접촉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통계가 거의 없음.

- 접촉이 공개되면 될수록 동독측이 거부반응을 보여, 차후의 접촉 회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FDJ의 간부들이었는데, 20~30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기혼자들은 부부 중 한 명이 꼭 동독에 남아 있어야 여행이 허용되었음.
- 1989년까지 간부급들의 접촉을 제외하고 실제 서독이 희망하던 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200~300명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청소년 교류에서 양측 청소년들은 매우 제한된 접촉을 통해 상대방 체제에 대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서독측이 의도한 상호 이질감이나 적대감 해소와 같은 성과는 거둘 수 없었음.

- 동독 청소년들은 서독 TV를 보거나 서독을 방문한 연금 생활자들을 통해 서독에 대한 사전정보를 얻었으며, 서독을 방문해서는 늘 접촉과 정보취득에 여행 감시원들의 통제를 받았음.
- 서독 청소년들은 학교 수학여행을 제외하고는, 동독의 방문이 주로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였고, 이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동독체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음.

○ 신교 청소년 단체 간 접촉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상호 전문가들의 의견교환 및 비록 일방적이기는 했으나 물자교류가 있었음.

- 청소년들의 종교문제와 성교육문제를 상호 토론하기 위한 교류가 있었으나, 동독측으로 전문서적을 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미미했음.
  - 동독측은 신교단체 간 접촉에서도 사회과학 서적(특히 교육학, 사회학)의 반입을 불허했으며, 단지 신학책만 선별적으로 허용함.
  - 서독측은 이들 단체들의 여행시마다 동독에 대해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등 교보재를 제공했는데, 동독측은 이를 비공개적으로만 접수했음.

○ 서독 정부(내독관계성)는 이러한 신교단체내의 접촉에 대해, 조건없이 재정지원을 했음.

- 접촉의 방법과 대상선정에 대해서는 신교측의 재량에 맡겼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신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했음.

※ 서독 신교의 대동독 신교지원에 대해서는 본 책자 제15장 종교·교회분야 교류편 참조.

12. 스포츠 교류

12-1. 단절과 경쟁의 스포츠 교류사(기본조약 체결 이전)

○ 내독 스포츠 관계는 급변하는 정치사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음.

- 나치시대 체육활동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고 있던 서방점령군은 1945. 12. 1일 독일의 전 체육단체들을 해체시켰으며, 지역차원에서의 비군사적 체육단체들의 활동만을 겨우 허용하였을 뿐임.
- 그리하여 국가올림픽위원회(NOK: Nationales Olympisches Komitee)는 1949년에야 겨우 결성될 수 있었으며, 서독스포츠연맹(DSB) 또한 1년 후인 1950년에 결성됨.

○ 소련 점령지역에서도 1948. 10. 1일 동독 스포츠 위원회(DSA)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지역 체육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소련식의 사회주의 체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거의 전통적인 독일 체육조직 구조는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음.

- 1946. 6. 30 소련 점령지역과 서방 점령지역 경계의 폐쇄는 베를린시 내에서의 스포츠 교류를 제외한 일체의 스포츠 교류를 불가능케 함.
- 동독측은 1950년부터 서방진영의 단결과 서독의 서구편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내독 간 스포츠 교류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함.
  - 동독 DSA는 서독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스포츠를 서독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의 이념교육의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려고 함.
  - 이와 관련, 동독의 대서독 정책의 일환으로 전체독일 선수권대회, 전체독일 체육회담 그리고 전체독일 체육인회담 등이 개최됨.
- 이 밖에도 1952년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상이 양독 간에 벌여졌으나, 베를린시 참가를 시비거리로 삼은 동독측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DSB는 이 회담을 결렬시켜 버림.
  - DSB의 이 같은 전격적인 반응에 주춤해진 DSA는 1952년 12월 12일 재개된 협상에서 스포츠 교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기로 DSB와 합의함.
- 그러나 얼마 안 가 이러한 동독측의 합의는 거짓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남.
  - 1952년 DSA는 DSB 소속단체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선동목적의 서신을 보내기 시작함.
  - 동독 체육계의 지도층은 체육의 정치적 중립화의 의무를 저버리고 "체육인으로부터 체육인에게", "체육단체로부터 체육단체에게"와 같은 제하의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 서독 체육인들이 아데나우어, 스트라우스, NATO, 독일연방군, 서독체육계 지도층에게 반기를 들 것을 선동하였음.
  - 이와 동시에 독일체육연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유럽방위공동체 반대 여론조사(54), 파리협정 반대투쟁(55. 3. 4), 서독의 병역의무 도입 반대(57. 2. 22), 동구권 공산당의 평화협정 반대투쟁(57. 12. 27), 핵무장 반대 공동투쟁(58. 10)을 전개할 것과 독일체육연맹이 소련의 평화협정 초안에 동의할 것과 소련이 의도하는 서베를린시의 "자유시"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
- 1957. 4. 27/28일 DSA는 동독 체조 및 체육연맹(DTSB: Deutscher Turn und Sportbund)으로 전환됨.

○ 동·서독 스포츠 교류의 단절

- DSB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57년부터 1961년 8월 16일까지 각각 1,530(1957),

386(1958), 624(1959), 683(1960), 738(1961) 차례에 이르는 활발한 내독 간 스포츠 교류가 전개됐으나,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1961년부터 1966년까지는 거의 아무런 교류가 없었음.

- 서독의 DSB와 NOK는 "동·서독 간의 정상적인 왕래가 가능할 때"까지 동독과 여하한 체육교류도 단절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간 동독측의 체육의 정치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맞섰으나, 한편으로는 서독체육계 마저 정치화한다는 비난도 받았음.
- 그 사이 있었던 내독 간 교류라고는 1964년 공동 올림픽선수단 결성과 관련하여 있었던 후보선수 선발경기가 고작이었음.
  - IOC는 전독단일팀만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동·서독 간 정상적인 체육교류는 없으면서, 세계인들 앞에 단일팀 구성을 과시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음.

○ IOC를 둘러 싼 동·서독 국가올림픽위원회(NOK, Nationales Olympisches Komitte)의 투쟁.

- '51. 4. 22(소련 가입신청 하루 전) 동독 NOK는 IOC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서독 NOK는 이미 '49. 9. 24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입결정을 기다리던 중이었음.
  - '51. 5. 7~9 IOC 집행위원회는 서독 NOK의 가입은 승인하고, 동독 NOK의 가입은 거절했는데, IOC는 동·서독 NOK의 통합을 종용했음.
- '51. 5. 17 Hannover에서 개최된 동·서독 NOK 회담에서 서로 판이한 쌍방간의 다른 입장으로 인하여 의견의 일치점을 찾을 수 없었음.
  - 그 입장이란 동독 NOK가 자기업무와 관련 일방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 반해, 서독 NOK는 독일체육연맹(DSB) 예하의 독자적인 체육협회를 배려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초월하는 결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임.
- 이에 Avery Brundage가 주관한 IOC 집행위원회는 '51. 5. 22 Lausanne에서 전독 단일팀 구성문제를 제기하여 동·서독 NOK는 서독 NOK가 전독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임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으며, '52년 헬싱키 올림픽에 전독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음.
- 이로써 서독 NOK가 전독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헬싱키대회를 위한 전독팀 구성에 책임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체육계는 이에 불복, Lausanne 합의서에 서명을 취소한 후 다시금 IOC 가입을 신청하였는 바, 헬싱키대회 참석의 조건부로 동독 NOK 인정을 연계시켰음.
- IOC는 독일을 둘러싼 정치문제와 맞부딪히자 쌍방을 위한 화해조치로서 '52. 2. 8 Kopenhagen에서 개최된 IOC 총회에 동독 NOK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초청하였음.
  - 헬싱키대회 조직위원회는 애초 동·서독 분리출전을 수용하려 하였으나 동독대표단의 정치적인 선전적 자세로 인하여 IOC는 동독팀의 출전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는 바, 이로써 서독팀은 단독으로 출전하게 됨.
- '55. 6. 18 파리에서 열렸던 IOC총회에서 27:7로 "전독 단일 올림픽팀을 구성하여 멜버른에 출전할 수 없음이 판단됨과 동시에 가입인정은 폐기된다."는 "잠정적"인 단서와 함께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시킨다는 조건으로 드디어 동독 NOK는 IOC에 임시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음.
- 1956년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부터 1964년 동계 하계 올림픽까지 동·서독은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였음.
  - 동·서독은 1956년 코르티나 동계(서독:58, 동독:18), 멜버른 하계(138:37), 1960 스퀘어벨리 동계(50:35), 로마 하계(189:130), 1964년 이스부르크 동계(68:49), 동경 하계(182:194)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각각 참여하였음.
  - 제18차 동경올림픽('64. 10. 10~24)은 동·서독이 단일팀으로 출전한 마지막 올림픽으로 선수 숫자로 보아 일본, 미국, 소련에 이어 4번째 대규모 선수단이었었음.
    - » 흑색, 적색, 황금색의 독일기 속의 오륜기를 새긴 단일기를 앞세우고 선수들의 단일복장으로 인하여 겉으로는 독일통일의 의지가 나타난 짙은 인상을 풍겼으나, 동독정권이 올림픽 경기장을 그들의 2개 국가론(동독, 서독) 내지 3개 국가론(동독, 서독, 서베를린)을 선전하는

정치무대로 간주하는 바람에 체육행사로서 의미가 퇴색되었음.

- 1968. 10. 12 IOC 연차총회에서 동독 NOK는 문서상 완전히 IOC에 가입하였고, 1972년 올림픽부터는 독자적인 국기, 국가, 휘장을 사용하며 단독으로 출전하게 됨.
- 여하튼 IOC의 결정은 국제적 인정을 위해 동독측이 벌인 투쟁의 결정을 이루었으며, 스포츠 부문에서 거둔 동독의 정치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스포츠는 주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벌인 동독의 노력에 있어서 일종의 선구자이자 원동력 역할을 함.

○ 1966년 내독 간 스포츠 교류가 재개된 후 DSB와 DTSB는 체육인들 간의 정기적인 만남과 경기교환에 관해 여러번 협상을 벌였으나, 구체적인 협정체결은 동독이란 국가의 인정문제에 부딪혀 기본조약 체결시까지 성과가 없었음.

12-2. 스포츠 교류에 대한 입장

12-2-1. 동독측 스포츠를 정치에 악용

○ 스포츠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스포츠는 변화하는 국내 및 국제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반대하여 펼쳐진 서방국가들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시합 보이코트, 이에 따른 동구 진영 국가들의 1984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경기 불참, 중국과 대만 그리고 남·북한 간의 갈등 등 수없이 많음.
  - 독일의 경우 스포츠와 정치 간의 불가분한 관계는 양독 간의 특수한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동·서 진영 간의 대립관계와도 관련되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전체독일 올림픽 선수단 구성, 동독의 국가인정, 베를린주 체육협회 참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한 스포츠 관계도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였음.
- 전후 동독 스포츠는 서방진영의 구축과 서독의 서방에로의 편입 등에 반대하는 캠페인으로 특징지워짐.
  - 이에 양독 스포츠 교류의 장은 동독측의 정치적 선동 및 선전의무대로 악용됨.
  - 서독의 서방화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소련을 선두로 동구진영국들 역시 서독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1955년부터는 동독의 주권(Eigenstaatlichkeit)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게 됨.
- 1972년 사실상 동독은 주권국가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되자, 그때부터 동독은 스포츠의 국내정치적 과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함.
  - 내독관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독 스포츠는 줄곧 서독에 대한 동독의 동·서독 분리정책(Abgrenzungspolitik)의 일환에 불과 하였음.
  - 반면, 서독은 경기에서의 승리보다는 독일인들 간의 인적교류를 통한

유대강화에 보다 주력함.

- 반면 연방체육협회들의 상부단체인 서독체육연맹(Sportbimd)은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결정하고 있었음.

○ 동독체육단체의 조직 및 구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 서독 체육단체와의 현저한 차이점뿐만 아니라 스포츠, 정당, 국가 간의 밀접한 연관관계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당 및 국가의 관심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음.

- 막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동독의 체육문화는 국가가 펼치는 범국민적 사업 중의 하나인 바, 이는 어린이-청소년 스포츠, 체육특기자 양성, 근로자의 여가 및 휴양활동으로서의 체육 그리고 훈련, 연습, 경기 전반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음.

- 타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분야 역시 당의 지도하에 운영, 감독되고 있었음.

  • DSB 사무국장 칼하인쯔 기젤러(Karlheinz Gieseler)의 말을 빌리자면 동독 체육계는 당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에 불과함.

  • 정치국과 동독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립스포츠 협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스포츠 단체들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

- 동독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체육부는 당과 DTSB 간의 중개자 역할을 맡고 있었음.

- 또 다른 주요기관으로서 1970년 7. 1일에 결성된 동독 국무위원회신체문화체육국(Staatssekretariat fuer Koerperkultur und Minister-rat der DDR)을 들 수 있었음.

  • 이 부서는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 체육학 및 체육연구, 체육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 조직은 주요 부처 대표들과 체육 및 대규모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 물론 서독의 DSB 역시 주변정세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나, 연방체육협회 임원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와는 관련 없는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회 조직 또한 중앙행정체제식의 동독 체조 및 체육연맹(DTSB : Deutscher Turn und Sportbund)과는 달리 연방체제 방식을 띠고 있었음.

  • DSB의 또 다른 특징은, 동독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과 선수들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동독에 비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었음.

○ 정당과 국가의 결정 및 지시사항들이 일반 국민들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중앙행정 원칙에 따라 15개의 군 단위 조직과 200개의 도시 및 지역단체로 구성된 구조체제에 기인함.

- 수많은 체육단체(Sportgemeinschaltl)와 9천개 이상의 직장체육회(BSG : Betriebs-Sport grmeinschaltl)들의 DTSB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 이 DTSB는 39개의 체육협회로 나눠져 있었음.

- 이 밖에 SV-Vorwarts, SV-Dynamo, 군 경찰 체육협회 등이 DTSB 소속 조직으로 남아 있었는 바, 이들 역시 체육국이 관리했음.

○ 동독은 특기종목스포츠(Leistungssport)를 특별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었음.

- 특기종목스포츠의 최고기관은 SED 산하 특기종목스포츠 중앙위원회로서, 특기종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있었음.

  • 이는 DTSB의 직속 상부기관이기도 함.

-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회단체로서 동독 자유노조연맹(FDGB : 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과 동독 청소년연맹(FDJ : Freie Deutscher Jugend)을 들 수 있었음.

○ 체육 및 체육 특기자들에 대한 동독정부의 재정 및 사회적 보장정책 역시 체육과 정치 간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음.

- 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은 국고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기금과 FDGB 및 FDJ 금고로부터도 염출되고 있었음.

  • DTSB의 자체 재정 충당비율은 서독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

  • 이 밖에도 체육특기자의 장래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관계로, 선수 개개인은 학교, 직업, 대학 진학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었음.

○ 체육관계 부처의 요직을 맡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동독공산당에 가입해있었으며,

대부분 당 및 국가의 고위직을 겸하고 있었음.

- 또한 고위직 정치가들이 체육부처의 요직을 맡은 경우도 종종 있었음.
- 따라서 정치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체육분야에 자신들의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었음.

○ SED는 스포츠를 정치적 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했음.

- 당시 FDJ 위원장이었던 에리히 호네커는, "스포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음.
- 동독 체육이 맡고 있는 국내정치적 과제는 1968. 9. 20일자 동독 국가평의회(Staatsrat) 결의사항, 1974. 1. 28일자 청소년법 그리고 체육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1968년 및 1974년도 동독 헌법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동독은 1957. 4. 28일 DTSB 창립선서를 통해 "DTSB는 회원들에 대해 사회주의적 사고와 행동·교육을 실시하며, 순수-스포츠정신 및 정치적 중립성 등과 같은 반동주의적-부르조아적 사상을 단호하게 배척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체육만을 위한 체육(순수 체육)을 거부하고 나섬.
  - 이 같은 정치공식은 1961년도 정관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입장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동독 정치가들에 있어 스포츠의 역할은 사회주의 사상 및 체제강화에 일조를 하는 것이었음.
  - 단체적인 체육활동을 통해 동독공산당이 꾀하고자 한 것은 단체 정신과 극기정신 함양, 나아가 전 분야에서의 경쟁력 및 능력향상 이었는 바, 이로써 스포츠는 생산과정상의 작업능력 및 생산력과도 연결 지어짐.
    - » 다시말해 "동독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훈련"으로 간주되었음.
- 스포츠의 또 다른 주요과제로서 군사력 강화를 들 수 있음.
  - 1952년 스포츠를 통해 조기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신설되어 체력증강과 신체적 건강 외에 이념적 정치교육을 목표로 한 활동들을 실시했음.

- 끝으로 동독공산당은 스포츠로 연결된 조직체제를 통해 주민동원력을 높이고자 하였는 바, 이 같은 빈틈없는 조직체계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데에도 매우 효율적이었음.

12-2-2. 동·서독의 스포츠 교류에 대한 동·서독의 입장

○ 내독 간 스포츠 교류의 과제와 목표는 동·서독이 추구하는 독일정책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을 보였음.

- 서독의 기본입장은, "연방 내독관계성 장관은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고 양독 간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스포츠 교류를 지원코자 한다"라는 1978. 8. 3일자 제4차 연방정부 체육보고서 내용을 통해 분명해짐.
  - 양독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서독정부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양독 간의 교류를 통해 독일인들 간의 동질감을 강화시키고자 했음.
  - 이에 서독정부와 DSB는 양독일인들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단합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 교류에 큰 의미를 부여했음.
- 반면, 민족(Nation)이라는 개념을 사회주의 계급 이론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있는 동독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서독측의 입장과는 달리 서독과 구분되는 동독 고유의 민족의식을 창출, 이를 확립시키고자 했음.
  - 이 같은 기본방침은 내독스포츠 관계에 대한 동독정부의 과제와 목표설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침.

○ 동독측이 내독 간 스포츠 교류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노리는 효과는 다음과 같았음.

- 동독의 정상급 선수들은 대외적으로는 동독을 대표하는 외교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동독사회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들은 내적으로는 능력발휘에의 모범이 되었었음.
- 동독정부와 당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동독 주민들로부터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특히 서독보다 우위에 있는 스포츠야말로 동독주민들에게 자의식과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고 그리고 동독국가의 우월성을 대표하는데 안성맞춤이었음.

- 이상의 이유로 동독은 특히 내독 간 스포츠 교류시 오로지 성공과 승리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보임.
  - 일례로, 주대항 축구시합에서 동독이 서독을 1:0으로 이기고 난 후부터는 후속시합이 열리지 않았는 바, 그 이유로서 동독의 축구 코치는 승리의 전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음.
- 내독 스포츠 교류는 이를 계기로 일부 동독주민들이 서독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내독 간 인적교류에서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Ventilfunktion)을 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음.
- 스포츠 분야에서의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동독은 실제로 이를 통해 국제적 명성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내독 간 스포츠 교류를 통해 달성코자 한 동독의 목표, 즉 동독고유의 민족의식 확립계획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없음.
  - 이는 서독 스포츠 선수단들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반응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즉, 많은 동독인들이 동·서독의 경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서독팀을 "우리팀"이라고 명칭하는가 하면 서독과 사회주의 우방국팀과의 시합에서는 서독을 응원하는 등 동독 관중들에게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유대감을 발견할 수 있었음.

12-3. 조약 및 협정

○ 동·서독은 기본조약 제7조에서 관계정상화의 일환으로 기본조약에 입각, 상호이익을 위해 스포츠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개발·육성시켜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양측은 추가의정서 제7조 8항에서 각 체육단체들 간의 스포츠 교류 육성활동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봄.

- 1974. 5. 8 DSB 회장인 한스 그멜린과 DTSB 회장 만프레드 에발트는 내독 스포츠 협상을 위한 공동성명서와 의정서에 서명을 함.
  - 동·서독 공동성명서에서 상호존중, 인정, 평등에 입각하여 관계를 구축시켜 나가기로 다짐함.
  - 의정서에서는 매년 연간체육계획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함. 스포츠 교류상의 재정문제 역시 이 연간계획서에서 다루기로 함.
  - 이 의정서의 주요사항은 상호 간의 스포츠 관계를 IOC 및 국제스포츠 조직의 결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서베를린 문제는 4강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율해 놓겠다는 구절임.
  - 이는 DTSB가 서베를린주 체육협회를 DSB 소속단체로 인정하겠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이밖에도 양독은 1986년 5월에 체결한 문화협정 제10조에 의거,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12-4. 스포츠 교류 계획(Sprtplaene)의 수립과 시행상의 제문제

○ 1974년에 체결된 체육협정에 따라 양독 간 체육단체인 DSB와 DTSB 간에 연간 내독 간 스포츠 교류 계획을 세우기로 합의함.

- 양측은 연간행사계획을 확정한 후, 계획에 따라 체육교류를 실시하며, 행사에 따른 재정부담을 하기로 합의함.
  - 방문자측은 원칙적으로 수하물과 체육기재를 포함하여 체육행사 거행지에로의 왕복여행경비를 부담함.
  - 초청자측은 합의된 참가인원에 대한 체류기간 동안 호텔비용 및 식비를 부담하며, 체류기간 동안 1인당 10 DM(동독 10 마르크)의 용돈을 지급토록함.
- 그러나 동독정부의 동·서독 분리정책(Abgrenzungspoltik)은 동독 체육협회측과의 교류계획 작성 및 실시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으며, 타 부문에서의 동·서독 교류활동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분야에서의 내독관계 역시 동독의 대서독정책, 나아가 주변정세 및 동·서방 관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
  - 실례로, 1980년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동·서독 체육행사가 올림픽 보이코트 사건으로 완전 취소된 사례를 들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의 스포츠 교류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규모와 참석자 수 면에 있어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내독 간 스포츠 교류계획에 의한 체육교류 현황.

연도	교류 계획 및 실시			참가인원	무산된 경기	
	계획된 경기수	실시 경기수	실시율		서독측	동독측
1974	40	37	92.5	468	2	1
1975	62	53	85.5	612	2	7
1976	64	61	95.3	623	2	1
1977	71	62	87.3	633	3	6
1978	75	74	98.7	867	0	1
1979	75	68	90.7	736	2	5
1980	77	56	72.7	627	12	9
1981	72	65	90.3	819	3	4
1982	80	78	97.5	919	2	0
1983	80	76	95.0	1,081	2	2
1984	75					
총 계				7403	30	36

○ 순수한 양독 간의 스포츠 교류는 오히려 1970년에 비해 줄어든 편이었음.

- 왜냐하면 그리 많지 않은 동·서독 스포츠 교류 행사 중 절반 이상이 국제 경기와 중복되었기 때문임.
- 내독 간 스포츠 교류는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방법상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 DSB는 국경에 근접해 있는 지역 체육단체들 간의 교류를 강화하자고 동독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같은 요청을 동독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부분의 내독 스포츠 교류가 대부분 특정분야의 정상급 선수들 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우승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동독측 방침으로 인해 스포츠 교류 종목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
  - 청소년들 간의 스포츠 교류 역시 DTSB가 청소년 교류 문제를 FDJ의 관할사항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 분야에서의 교류도 거의 전무한 편이었음.

○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스포츠 교류의 문호를 활짝 개방해 놓았음.

- 서독 또한 동독보다는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보다 더 활발한 스포츠 교류를 펼치고 있었음.
  - 예를 들어, 1986년에는 체코와 399, 헝가리와 221, 폴란드와 212 그리고 소련과는 152 차례의 스포츠 교류를 가진 바 있음.

○ 동·서독 간 합의에 따른 정례적인 체육교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독 스포츠 교류의 본질적인 장애와 한계는 극복되지 못했음.

- 동독정부가 스포츠를 통해 달성코자 하는 정치적 목표는 사회주의 우월성 과시 및 동독 고유의 민족의식 확립으로 동독은 이 같은 목표에 부응하는 스포츠 활동에만 관심을 보였음.
  - 일반 주민들 간의 관계를 긴밀케 하는 지역 스포츠 단체들 간의 교류는 동독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체제의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로 밖에 여겨지지 않음.
- 동독이 서독과의 스포츠 교류를 제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동독 체육인들의 서방탈주에 대한 우려에 있음.
  - 정상급 선수의 탈출은 동독측으로서는 여러 면으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음. 즉, 우수선수 상실로 인한 전력약화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쌓인 동독체육의 내부사항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위험까지 있었음. 이 밖에도 동독에서는 우수체육 특기자들이 국민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극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음.
  - 실제로, 내독 스포츠 교류시 동독의 유명선수들이 서독으로 탈출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음.

○ 스포츠를 통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민족 화합을 이루고자하는 서독측의 내독 간 스포츠 교류 방침에 대항하기 위해, 동독측은 동독 선수들에 대해 동독 정부의 이념교육과 외국여행에 앞선 세밀한 사전 교육을 강화시키고 서독 선수들과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감시를 해왔음.

- 물론 이 같은 조치는 주로 정상급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지 모든 내독 스포츠 교류에서도 항상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었음.
- 우선 체육특기자 선발 시 후보자의 근본 사상을 검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선수촌에 입영,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이념교육은 계속 병행됨.
- 만약 상부에서 내려진 규범에 위배된 행동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선수생활 및 이에 따른 모든 혜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독 선수들은 가급적 서독 체육인들과의 접촉을 꺼렸음.
- 이들 정상급 선수들 외의 일반 중급 및 하급 팀들 간의 교류에서도 전자의 경우에서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서독 팀들과의 접촉을 제한하였음.
- 내독 간 스포츠 교류에 빠지지 않는 임원 및 공식요원들의 참석 또한 모임을 경직화시키는 요소의 하나였음.
- 이 밖에도 DTSB는 동독 선수단들의 서독 출전시합 그리고 서독 선수단의 동독 방문과 관련, 완벽한 감시체제를 만들어 냈음.
  - 예를 들어, 서독팀이 동독에서 시합을 벌일 경우, 이들의 숙소를 개최지로부터 먼 곳에 자리잡아 놓음으로써 아예 처음부터 일반 주민들과 격리시켜 놓았음.
  - 도시 관광 및 견학 등은 동독체육회 임원들의 동승하에 이루어지며, 선수들 간의 첫 대면 역시 경기장에서 이루어짐.
  - 또한 동독에서 개최되는 양독 간 스포츠 시합에 대해서는 여론 내지 방송을 통한 홍보가 거의 없는 편이며, 관중들 역시 선별된 특정인들로 구성됨.
  - 시합후 개최되는 만찬은 서로 간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좌석배치 등으로 엄숙히 진행되기 마련이었음.
- 서독에서 시합이 개최될 경우, 동독측은 민박 대신 호텔 등에서의 단체 합숙을 요구했으며, 항상 따라다니는 임원들이 선수들 간의 접촉을 감시 규제하였음.
-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었음.
  - 오랜 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개최되는 연례 행사-이는 주로 중간 및 하급

단체들 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남에 국한됨-를 통해 일부에서는 개인적 교류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음.

○ 스포츠 교류를 통한 개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민족 화합에 기여코자 한 서독측의 구상은 최소한 중급- 및 하급단체들 간의 교류차원에서는 성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스포츠교류가 특히 양적인 면에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데다, 선수들 간의 만남 또한 극히 제한된 관계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이 같은 체제상의 차이로 인한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독일인이라는 데 대해 양측 모두 인간적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종종 확인 되었음.

○ 민족감정과 관련, 동독의 우승에 대한 서독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움.

- 1972년 뮌헨 올림픽 경기 직후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는 서독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독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54%가 동독의 우승을 함께 기뻐한다고 대답하였으며, 12%가 불쾌감을, 그리고 34%는 무관심을 표명함.
  - 또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동독 선수 중 어느 편을 응원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47%가 동독을 응원하겠다고 대답함.
- 동독의 우승에 대한 서독인들의 호의적인 태도는 "동독 선수가 우승하면, 우리 역시 어느 정도 함께 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한 빌리 브란트의 말과도 부합됨.
- 이에 대한 시기 내지는 적대감이 완전히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서 이룬 동독측의 성공이 독일인들의 민족의식을 파괴시키거나 또는 동·서독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었음.

○ 서독에서 개최된 동·서독 간의 경기에 많은 관중들이 몰리지 않은 이유는 동독에 대한 거부감에서가 아니라 점수와 상관없는 친선경기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 부족 내지는 경기 자체가 안고 있는 비인기성에 기인함.

○ 1974년 양독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 공존공영을 위한 협조체계의 기본적 토대가 이루어졌으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민족 화합에 일조를 가하고자 한 서독 방침은 이에 대한 동독 정부의 방해 및 대응정책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여짐.

- 그렇다고 내독 간의 스포츠 교류 활동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는 바, 왜냐하면 정상급 선수들 간의 시합을 제외한 일부 하급 스포츠 단체들 간의 교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임.
-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스포츠 교류 강화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내독 간 스포츠 교류에도 자극적인 역할을 했음.
- 또한 서독 방송매체를 통한 동·서 스포츠 교류에 대한 보도의 증가는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이것이 동독 정부에 대해 스포츠 교류를 강화케하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
- 이 밖에도 동·서독 간의 자매도시결연과 유사한 개개 지역 스포츠 협회 간에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고려되었으나,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체육교류에 머물렀음.

13. 방송·언론 분야

13-1. 협상 및 협정체결

13-1-1. 언론인 활동에 관한 협정상 근거

○ 동독 언론인은 50년대 이미 서독에서 다른 외국 언론인들과 같은 조건하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서독 언론인들은 1972년까지 동독에서 상주하며 활동할 수 없었음.

- 서베를린에 상주하는 서독 언론인들이 1972년까지는 동베를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할 때 가끔 초청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취재 허용대상과 취재가능 언론인의 선발기준은 늘 모호했으며, 동독정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음.
- 또한 다른 여행객들과 같이 언론인들도 만약 동독측이 '원하지 않는 인물'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동베를린을 하루 동안 방문하여 취재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음.
- 그러나 동독의 정부기관, 공장 등의 취재방문은 사전에 질문사항을 동독 공보처에 제출해야 하며, 공보처의 출입 또한 공보처의 초청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취재활동이 많은 제한을 받았음.

○ 동·서독 양측은 기본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1972. 11. 8 서신교환을 통해 언론인의 활동을 협정으로 보장키로 합의했음.

- 양측은 '각자 유효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언론인과 그 보조원들에게 '직업적으로 자유로운 정보수집과 보도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하였음.
- 1973. 2. 8부터 1973. 10. 15까지 이 1972. 11. 8자 서한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양독 간에 열린 바 있는데, 1973. 2. 21 동독측은 일방적으로 자국에서 외국언론인들의 활동가능성에 대해 규정한 '동독에서 외국 언론기관과 특파원의 활동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ueber die Taetig-keit con Publikationsorganen anderer Staaten und deren Korrespondenten in der DDR')을 제정·공포한 바 있음.
  - 동 시행령에 의하면 외국 언론인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규정'과 '동독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동독과 그 국가기관 및 지도자들을 폄하하고 모독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외국 언론인들은 보도시 사안을 '진실에 충실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며, '사건을 악의로 왜곡해서는' 안 됨.
  - 또한 언론인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됨.
  - 이러한 시행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경고, 주의, 취재활동 허가취소, 추방, 지사 페쇄조치가 취해짐
  - 외국인 언론인 담당창구는 동독 외무성 언론 및 홍보담당실임.

○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서독 언론인들은 동독에 주거지를 얻고 상주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음.

- 1973/1974년에 동독은 28개 언론기관에 특파원 상주를 허가했으며, 11명에 대해서는 불허결정을 했음.
- 서독의 언론 기관 중 전국지와 국영 TV방송, 주요 시사 주간지들을 제외한 소규모 언론사들은 상주비용 문제로 인하여, 상주허가를 받고도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 상주하지 않고 독일통신사(dpa)에 주로 의존했음.

- 상주 특파원 이외에도 단기 취재여행을 통한 언론인들의 동독방문이 늘어났음.
  - 문화행사, 체육행사, 전당대회, 박람회 개최 등을 취재하기 위한 단기 취재언론인 여행이 1976년에는 680명에 달했음.

○ 서독에는 6명의 특파원(통신사 AND, 당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국영 라디오·TV 등) 이 상주했는데, 이들은 서독 공보처에 등록을 하고 Bonn에 주재하는 다른 외국 특파원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음.

13-1-2.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

○ 86. 5. 16일 동서독 문화협정이 체결된 1년 후인 87. 5. 6일 동서독 간에는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졌음.

○ 서독 방송협회(ARD) 산하의 9개의 공영방송공사와 동독의 정무원 국가 TV위원회 간의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서독 간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 –

제1조

1. 계약당사자 쌍방은 상호 상대방의 TV프로그램을 매입한다. 상호매입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의 TV프로그램을 포괄하나, 특히 TV드라마, TV영화, 연극, 음악프로, 오락프로, 기록물, 스포츠프로, 청소년프로, 문화교양프로 등이 그 대상이 된다.

2. 당사자 쌍방은 자신들의 TV프로그램에 관한 판매제의서, 카타로그 및 기타 적당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대표들을 위해 1년에 1회 또는 2회 프로그램 시사회를 개최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희망에 따라 특별 시사회도 개최된다. 프로그램 매입조건은 매번 상호합의에 의해서 확정된다.

3. 계약상대방 쌍방에 의해서 장소, 내용,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입되지 않는 한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자료판매시 프로그램을 교부하는 계약당사자는 프로그램을 수령하는 계약당사자에게 현존하는 저작권상의 의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밖에는 성립된 프로그램 구매 계약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저작권상의 약정이 적용된다.

4. 계약당사자 쌍방은 체결된 프로그램 계약의 범위내에서 아울러 해당 저작권법 상의 약정을 고려하여 매입한 프로그램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즉 계약당사자 쌍방은 작품의 내용과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수령한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계약당사자 쌍방은 방영일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서 상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 당사자 쌍방은 양국 간의 법률규정과 이에 상응하는 가능성과 권한을 참작하여 상주특파원, 일시방문 특파원, 펜기자, 카메라팀을 지원한다.

제3조

유로비젼(Eurovision)과 인터비젼(Intervision) 간에 기존의 관행과 합의에 의해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비용부담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한, 계약당사자 쌍방은 정치, 문화, 스포츠 사건의 취재에 있어서 합의된 사례를 지불하고 상호 서비스(직접 위성중계 포함)를 제공받는다.

제4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공동제작을 도모할 것이다. 합의에 의한 공동제작을 위해서 특별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시사프로나 기타의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프로그램에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는 현존의 관행이 적용된다.

제6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호 희망에 따라 독일어로 된 제3국의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에 의해서 확정된다.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과 원저작자로부터의 방영권의 매입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서로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나 프로그램에 관한 간행물을 제공한다.

제8조

1. 계약당사자 쌍방은 상호 정보여행, 박람회, 전시회, 그밖의 행사에 대표자들을 파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개개의 경우 별도로 합의한다.

2. 제작기술상의 경험교환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제9조

계약 당사자 쌍방은 TV경연대회나 TV축제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다. 계약 당사자 쌍방은 작품출품 및 공식대표단 파견 등 행사참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검토한다.

제10조

계약당사자 쌍방의 대표들은 더 이상의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수시로 만난다. 이러한 회합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지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1조

양측은 본 합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을 법적인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12조

1. 본 협약은 3년 간 유효하며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적어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해지하지 않는 한 3년 간씩 연장된다.
3. 본 협약의 변경이나 보완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문서형식을 필요로 한다.

1987년 5월 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원복 2통이 작성됨.

독일방송협회(ARD) 소속 주방송공사들을 위하여

빌리팔트 힐프(Willibald Hilf)

동독 국무원 TV위원회를 위하여

하인츠 아다멕(Heinz Adameck)

13-2. 주요쟁점

13-2-1. 동·서독 간 언론의 자유문제와 관련한 쟁점

○ 동독 상주 특파원들의 '외신기자 클럽'(Verein der auslaendlischen Presse) 가입 문제

- 서독측은 동독 상주 특파원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따라서 연방기자협회의 일원으로 간주했었음.
- 동독측은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독이 서독에 대해 외국임을 주장하며 '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외신기자클럽'의 정관을 개정, 외신기자클럽의 회원이 되었음.

○ 동·서독 간 언론의 자유와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견해

- 서독측은 국가들로부터 독립된 언론기관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의 전파를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본전제조건으로 파악한데 반대, 동독측은 언론의 자유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목표에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함.
  - 동독측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관련 '브르조아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악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의 사회주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동자들의 창조적인 의사형성을 가능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활동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해야 함'이라고 해석하였음.
  - 동독 지도부는 서구사회의 정보에 접하려는 자들과 이를 유포시키려는 자들은 당의 영도성과 진리규정의 독점성을 의심하는 자들로 간주했으며, 이렇게 유입된 정보를 국가와 사회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수단으로 간주했음.
- 이에 따라 반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전파는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단죄됨.
  -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모든 비판적인 보도는 내정간섭과 모독으로 낙인찍히고 1973년 시행령에 의거 제재조치가 취해졌음.

○ 이러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상이한 견해 때문에 서독의 언론인들은 취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상주 특파원들은 군사시설과 민간인 통제구역을 제외하고는 동독의 전역을 여행할 수는 있었지만, 국가기관·인민공유기업과 콤비나트, 협동농장을 취재하거나 인터뷰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음.
- 더구나 단기 취재여행자들은 동독지역내에서 자유로운 여행마저 허용되지 않았음.

○ 서독 특파원들의 보도에 의거한 서독방송을 통해 동독주민들은 동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는 바, 동독지도부가 특정 사안보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체제의 불안요소가 될 것을 우려 '내정간섭'이란 이유로 이러한 보도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제재를 가했음.

- 동독의 경우 정보는 국가와 당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대중매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보도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서독방송에서는 동독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상세하게 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서독 TV를 거의 시청하였던 동독 주민들에 상주특파원들의 보도는 많은 영향을 미쳤음.
- 특히 동독지도부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서독특파원들의 보도대상은 다음과 같았음.
  - 국경에서의 탈출자에 대한 정조준사격에 관한 보도.
  - 자동발사 총기 등 국경폐쇄장치에 대한 보도.
  - 동독주민들이 UN 인권협약과 헬싱키 의정서를 근거로 서독으로 이주신청자가 많다는 보도.
  - 경찰 또는 보안요원들에 의한 반체제 인사(예를 들어 Havemann)들의 가택연금이나 탄압에 관한 구체적인 보도.
  - 저항가수(예를 들어 Biermann)의 국적박탈에 항의하는 신교 청소년들과 지식인·문화인들의 검거에 대한 보도.

○ 동독의 서독 언론인 탄압 주요 사례

- 1975. 12 Der Spiegel지 특파원인 Joerg R. Mettke 추방.
  - 동 기자는 서독으로 탈출을 통해 이주한 동독주민들의 자녀를 강제로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는 동독정부의 처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기사를 다룸.
  - 동독정부는 "도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동독정부를 모독했으며 그에 따라 건설적인 양진영 간 평화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추방이유를 밝히고 있음.
- 1976. 12 서독 제1TV(ARD) Lothar Loewe 기자 추방
  - 동 기자는 동독 반체제가수인 Volf Biermann의 국적박탈과 이에 항의하는 동독지식인 학생들의 데모에 관해 보도한 바 있으며, Wolf Biermann의 서독 Koeln에서의 연주회가 서독 제1TV를 통하여 방영되고, 동독주민들이 이를 시청하게 되자 동독외무성은 서독 제1TV측에 항의하였음.
  - 동 기자는 1976. 12 뉴스시간에 동독언론이 서독 수상 슈미트를 비난함과 관련 동·서독관계가 냉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동독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사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동독 주민들의 서독에로 합법적인 이주신청이 빈번히 위협적인 수단을 통해 기각되고 있고, 동독에서는 어린아이조차도 국경수비대가 국경에서 토끼를 쏘는 식으로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논평을 함으로써 추방됨.
  - 동독측은 추방 이유로 '동독과 동독주민들을 극악하게 모독했고 동독의 법적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동독의 내정에 간섭했으며, 동 기자의 적대적 행위들이 동·서독 간의 선린우호관계와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음'을 들었음.

○ 서독정부는 언론인 교류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음.

- 동독정부를 동방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위격상을 시키면서 언론 분야에 스스로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동독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지만 동독이라는 획일화된 사회내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서독의 언론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이익집단들이 존대한다고 보았음.
- 또한 서독의 언론인들에게 정부와는 다른 독자적인 시각으로 동독체제를 소개하고 비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
- 서독 정부가 취한 동독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정책은 동독정부로부터 일정한 양보조치를 낼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동독이 체제유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 제한조치를 취할 때는 동독지도부를 대화의 상대로 일단 인정한 이상 동독정부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딜레마가 있었음.
  - 특히 언론분야 교류는 동독의 체제유지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만큼 서독정부가 압력을 행사하는 데는 제한적이었음.

○ 동독정부로서는 동독주민들이 체제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대동독 화해정책에 따른 언론인 활동 개방 문제와 관련 체제유지를 위한 정통성 위기 극복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음.

- 호네커는 집권 후 광범위한 사회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동독주민들의 물질적인 욕구를 서독주민들과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을 만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저렴한 생필품 가격 및 주거비 유지, 공공교통요금, 무료교육과 의료혜택 부여 등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했음.
  -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생활수준 보장은, 경제산출액의 많은 부문이 투자에 쓰이지 못하고 소비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복지 제공의 원천이 되는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음.
- 한편 동독정부는 동·서독 주민들 간의 접촉과 서방언론인들의 활동에 의한 정보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서독에 대한 동독의 차별성을 이데올로기적인 교육을 통해 강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동독언론의 대서독 보도 태도를 보면 동독측의 서독측 비방이 두드러졌음.

- 1976년 서독 Hamburg의 평화연구 및 안보정책연구소(Hamburger Institut fuer Friedensforschung und Sicherhitspolitik)의 Joachim Krause가 동독의

당기관지 'Neues Deutschland'의 대서독 논조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사와 논평 중 50%가 서독의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을 중상·비방하는 글이었으며, 30%가 서독의 위기 상황 즉 실업이나 인플레 문제를 언급하는 글이었으며, 나머지 20%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보도였으나, 그 중에는 반 이상이 서독 내에서 활동하는 독일공산당이나 그 외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보도였다고 함.

- 따라서 동독측이 서방언론의 동독생활상 보도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비난의 구실로 삼았던 '내정불간섭'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동독측의 대서독 보도의 80~90% 이상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13-2-2. CSCE를 통한 언론인 활동조건 개선

○ 서방언론인들의 동구권에서 활동은 60년대까지만 해도 동구권 국가들이 상주취재 및 단기 여행취재를 거의 허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음.

- 동구권 국가의 체제가 안정되어 가고, 동·서방 진영 간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하자 점차 서방 언론인들의 활동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나, 자국내에서 취재된 내용이 서방에 알려지고 그 내용이 다시 동구권에 유입되는 사례가 잦아지자, 국가 간의 화해정책추진과 병행, 언론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늘 철저한 통제가 가해졌음.
- 동독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형적인 언론인 활동 제한 사례를 보면
  - 단기 취재여행의 경우 보도내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자발급여부를 압력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일단 입국해서 활동할 때는 밀착하여 이를 감시함으로써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취재를 할 수 없도록 함.
  - 보도활동과 관련된 기자재 및 보조기구의 반입·반출시 또는 서방측으로부터 인쇄기·복사기 등의 반입시 난관 조성.
  - 언론인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원천에 대한 접근에 많은 제한을 가함. 국가에 의해 조정되고 통제된 정보만이 서방언론인들에게 유포되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체제반대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가지며, 이들에 대해 보도하는 일은 많은 위험이 따랐음.
  - 서구지역에서보다 동구권지역에서는 보도 및 취재활동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언론인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았음. 주택과 사무실 임대와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데, 동구권은 독점적으로 책정된 고액을 경화로 지불하라고 요구하여 왔음.
  - 서방측 언론인들의 보도에 대해 동구권 국가들은 사전 검열은 하지 않았지만, 강도 높은 사호검열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에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기관(외무성 외국인 언론 담당)으로부터, 보도가 "객관적이지 못하다", "화해적인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등의 압력을 받았으며, 이러한 압력의 횟수가 잦아지다 급기야는 추방이나, 취재등록허가 박탈의 조치가 취해지곤 했음.

○ CSCE 최종의정서 범주 III에 규정된 '언론인 활동의 개선'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국가들의 이러한 서방언론에 대한 자세는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으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

- 동구권 국가들은 헬싱키 최종의정서 범주 I에 선언된 원칙 선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서방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음.
- 동구권이 흔히 내세운 정당화의 근거는 '내정불간섭' 원칙과 '헬싱키 정신에 입각한 동·서진영 간 평화의 보장'을 위해 그러한 보도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서방측은 헬싱키, 마드리드, 빈의 최종 합의서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동구권 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음.

- 단기 취재여행시 비자발급.
- 상주특파원의 복수 및 영구비자 발급.
- 관료적인 복잡한 행정절차를 완화하여 신속히 체류허가와 빠른 서류발급.
- 언론인들의 취재시 취재원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켜 줄 것.

- 언론인들의 보도 기자재(방송, 촬영용)의 반입·반출의 용이화.
- 언론인들의 활동결과물과 보고서나 영상자료 등이 파견국에서 적시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고·송출 보장 등임.

13-3. 서독방송이 동독체제에 미친 영향과 동독의 대응

○ 내독 간 국경은 사람과 물자의 통로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며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국경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향하는 전파 매체에 의해 이미 국경을 초월한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 투명해진 상태나 다름이 없었음.

- 이러한 전파매체에 의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정시·군사·경제적인 블록이 양독 간에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 간의 문화·언어·역사적인 공통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음.
- 대부분의 동독주민들은 동독 TV나 라디오보다는 서독 TV와 라디오의 정보와 오락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음.
  - SECAM 방식용의 동독 TV 수상기에 PAL 방식에 의한 서독 프로를 시청할 수 있는 칼라용 Decorder를 장치하면 서독 프로 청취가 가능하였으며,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서독상업방송도 시청할 수 있었음.
    - » PAL/SECAM 겸용 Decorder는 일반 전기상점에서 값싸고 손쉽게 구입한 후 기존 수상기에 간단하게 장치할 수 있었다고 하며 동독 System SECAM-Ost와 서독 System PAL 간의 흑백프로는 Decorder 없이도 시청 가능했다고 함.
    - » PAL/SECAM 겸용 칼라 TV는 Intershop이나 Genex 선물 서비스 센터에서 서독 DM으로 구입할 수 있었으며, 1978년 이후 일반상점에서도 겸용 TV를 동독 Mark로 구입할 수 있었으나 엄청나게 비쌌음(대당 5,500 동독 마르크).
    - » 1970년대 초부터는 대형 공동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케이블을 통해 위성수신까지 가능하게 되었는데 통계에 의하면 1985년에는 전 가정의 40%가, 1990년에는 전 가정의 2/3가 이러한 대형 공동안테나에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남.
- 동독 전 가정의 약 99%(1986 현재)가 TV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Mecklenburg 북동지역 및 Dresden 지역을 제외한 동독의 대부분 지역이 서독 TV의 가시청

지역이었음.

- 동독 TV가 안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서독 TV와 경쟁이었던 바, 동독 TV의 정보가 기존체제에 예속적이면서 너무 정치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지루하고 편파적이어서 서독 TV에 대해 동독주민은 끊임없는 매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임.
- 이러한 동독주민들의 서독 TV 자유 청취의 결과.
  - 동독주민들은 외부세계의 소식을 통해 동독체제의 억압적인 구조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실제 선호하는 서독 시청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이 많았음),
  - 서독인의 생활상과 생활방식, 심지어 어느 상품이 좋다는 인식에 이르기까지 동독인들이 서독 인들과 유사한 생각을 갖도록 해 주었고.
  - 급기야 1989년 이후 동독의 대변혁시 동독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과 시위 등 혁명적인 변화를 부추기는 촉매로서 역할을 하였음.

○ 동독지도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파매체의 속성과 동독주민들의 서독방송 청취에 따른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내부에서는 늘 정치적 논쟁거리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서독 TV의 청취를 막아보려고 시도한 바 있음.

- 호네커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기 이전(1971)에는 동독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동독주민들의 서독 TV시청을 막아 보려고 노력했음.
  - 동독 청소년 조직인 FDJ으로 하여금 서독측으로 행하는 안테나를 철거하는 운동을 벌이고, 각 도시의 예규에 대형 공동 안테나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설정하여 서독 TV 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려 하였음.
  - 공산당 체제유지의 강력한 무기였던 정치적 성격을 띤 형법규정을 임의로 적용하여 이를 단속하기도 하였음.
    - » 동독주민들이 방송을 수신하는 그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서방측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퍼트리거나, 공동으로 모여서 청취하는 행위는 동독 형사소추 기관에 의해 처벌되었음.
    - »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헌법 제6조를 통해 군국주의적이고 파시즘의 부활을 부추기거나 인종·민족차별을 조장하는 선전, 선동은 범죄로 규정하는 광범위한 유보조항을 두고 있었음.
    - » 언론통제의 도구로서 서독 TV를 시청하고 정보를 유포하는 동독주민들에게 적용된 주요 동독형법조항은 "전쟁 선전, 선동"(89조), "반국가적 선동"(106조), "공공활동비방"(220조), "공무집행방해"(214조) 등이었음.
  - 아울러 때때로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기술적으로 서독 TV 시청을 방해하려고 시도도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통제조치들은 동독주민들의 동독지도부에 대한 반감만 증폭시키고 정치적인 불안정을 오히려 조장했을 뿐,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는 못했는 바, 1970년대 초 동·서독 간 긴장완화와 더불어 호네커는 정책을 전환, 일단 동독주민들의 서독 TV 시청은 묵인하되, 동독 TV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동독주민들의 동독 TV 시청률을 높이는 방침을 정했음.
  - 동독지도부는 동독주민의 여가선용 방법 중 TV가 가장 선호됨을 중시, TV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당성과 인민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 지도층의 선전과 선동에 기여토록 노력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TV의 정치적 기능과는 반대로 오락프로와 스포츠 프로에 대한 시청자로서 동독주민의 욕구가 매우 컸으므로, 이에 따라 호네커는 제8차 SED 전당대회에서 "시청자로 하여금 지루함을 덜 수 있도록 훌륭한 오락물을 더 많이 넣을 것"을 강조함
    - » 그 이후 시청자의 구미에 맞추어 서방측의 연속물을 비롯하여 범죄물이 더 많이 허용되었으며 서독 제2TV(ZDF)의 Hit-parade를 모방, 팝뮤직 스튜디오를 프로로서 편성함과 동시에 소련,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등의 Film이 더 많이 반영됨.
  - 서방측 Film이 동독 TV에 많이 방영되면서 "소시민적 사고방식"이 활성화 내지 생성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초부터 주민의

소망에 부응하는 TV 프로그램 제작노선은 계속 유지되었음.

- '80년 초부터 SED 지도층은 프로그램 구조개혁을 통해 주민들의 탈정치화를 조작하기 위해 오락물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심심풀이식 살아가는 재미를 소개"하기에 주력했는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 뉴스 : "Aktuelle Kamera"가 매일 제1프로에 19:30~20:00 및 22:00(마감 뉴스), 제2프로에서 21:30에 반복.
  - » 정치정보 및 선전프로 : "Antworten"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층과 인터뷰.
  - » 서유럽의 일상생활 : 25분 간 연속물로서 서독과 기타 서유럽에 관한 리포트물로서, "자본주의 제도의 특정분야를 폭로한 후 고발함".
  - »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에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 출신이 참석함.
  - » 극영화의 거대한 수요(연간 500~600필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자체생산에도 주력하였음.
  - » 프로그램 구조개혁 이후 미국, 프랑스, 서독의 인기물(오락, 범죄, 모험, 문제성 작품)도 수입함.

○ 동독공산당 지도부가 서독 방송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서독 방송의 영향으로 인해 동독체제가 안으로부터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임.

– 첫째, 동독지도부의 체제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과신과 동독지도부가 TV의 기능 중 탈정치화 역할에 대해서만 주목했지, TV가 분단상황하에서 우월한 체제를 동경하게 하는 의사형성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 데 있음.

- 50년대와 60년대 냉전시기의 서독방송청취 금지조치들이 체제적으로 동독주민들의 불만을 증대시켜 오히려 정치적인 불안정만 강화시켰으므로, 동독지도부는 서독 방송 청취의 묵인을 통해 일종의 불만의 배출구 기능을 담당케 했고 이에 따른 체제의 가시적인 안정(실제적으로는 서독 TV 시청을 통해 안정이 저해되어 갔지만)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음.

- 내독 간 주민들의 상호 의사소통 과정에서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서독방소만이 동독주민들의 생활 방식 형성에 직접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 일반적으로 미디어 매체가 주민들의 심리적인 의사형성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따라서 서독 TV 방송뿐만 아니라, 동독 TV 방송 또한 특히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TV 시청 중독현상을 유발해서 주민들의 탈 정치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음.
  - » 동독정부가 동독주민들의 서독의 방송 시청에 대해 처음에는 각종 대중외곽단체를 동원하여 안테나 제거작업의 실시 등을 통해 이를 방해하려 했다가, 이를 점차 묵인하고 결국에는 서독의 오락프로그램 내용을 모방하여 독자적으로 더 많은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키고, 탈 정치화시켜 나간데서도 미디어의 주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을 파악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동독주민들이 동독 TV보다 서독 TV를 의식적으로 선호하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였다는 점은, 미디어가 내독관계에서 정치적인 의사형성을 위한 중요수단이 되어 분단극복과 양독주민들 간의 공통적인 의사형성 통로를 형성하는데 특정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독지도부는 이를 국제적·국내적 여건상 마땅히 방지할만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임.
  - » 특히 이러한 영향력은 동독주민들이 서독 TV 프로그램 중 정치적인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는 보도특집을 주로 선호 했다는 점에서 입증이 됨.

- 아울러 서독 TV의 현란한 상업광고가 동독주민들의 물질적인 욕구충족을 자극하고 풍요한 서독사회를 동경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 동독지도부가 너무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와 동독주민들의 그들 체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과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됨.

– 둘째는, 정보와 전파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국제법적인 제 규정과 동독이

서독과 별개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국가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교적 노력이 이러한 동·서독 간의 전파와 정보차단을 어렵게 만들었음.

-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free flow of ingormation)을 규정한 주요 국제법적인 장전은 "UN 인권선언"(1948. 12. 10),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1950. 11. 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1966. 12. 16), "CSCE 헬싱키 최종문서"(1975. 8. 1), "UNESCO 미디어 선언"(1978. 11. 28) 등임.
- 물론 동독이 이러한 국제협약에 서명을 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국제법적인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동독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독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해 왔기 때문에 노골적인 전파방해라든가, 동독주민들의 수신방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기당착에 빠지고 말았음.
- 다만 동독은 제3세계 국가와 동구권 국가들과 연대하여, 서구 제국의 소위 "문화제국주의"를 비난했으며, 정부가 정보독점권을 쥐고 있으면서 외부의 정보유입에 대해 제한정책을 폈던 이들 독재체제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정보질서(New Inter-national Information Oder) 창출을 위해 노력했음.

– 셋째는 서독 방송사들의 의식적인 대동독 방송제작 방침과 이에 대한 연방정부지원, 서독으로부터 전파매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던 동독측의 재정적·기술적인 역량의 미비를 들 수 있음.

- 서독정부는 정부예산으로 대동독용 서독정부시책 홍보 및 정보 제공 라디오 방송인 도이칠란트 풍크(Deutschlandfunk)와 독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나 방송프로그램 제작권은 미국공보처가 가지고 있는 리아스(Rias) 라디어·TV 방송을 통해 의식적인 대동독 주민용 방송 활동을 해 왔음.
  - » 특히 Rias 방송은 동독지역의 한가운데인 베를린에 위치하여 동독지역 사방으로 전파를 발사했기 때문에 동독주민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했음.
- 서독 공영방송사인 제1TV(ARD)와 제2TV(ZDF)는 대 동독용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대 동독용 전파송신을 통해 방영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 TV 설문조사에서 가장 동독 주민들이 선호했던 "Kennzeichen D"(ZDF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방영하는 동·서독문제 주요 쟁점에 관한 보도특집임)나 "Monitor"(ARD 방영 보도특집) 등을 들 수 있음.
  - » 특히 ARD는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부터 아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동독주민을 위해 방송을 송출했는데, 서독지역에서는 1981. 1월 이후에야 아침방송의 송출이 허용되었었음.
- 이러한 서독측의 전파공세를 기술적·물리적으로 차단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으므로 동독지도부는 동독 주민들의 서독 TV 시청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음.

13-4. 동독인들의 서독 TV·라디오 청취현황

○ 동독주민들이 서독 TV와 라디오를 광범위하게 시청했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없으나, 얼마만큼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증분석자료는 많지 않음.

- 내독관계성은 1985년 "다양한 의사소통과정의 결과로써 동독 이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관점"이란 연구주제로, Bamberg대학의 Kurt Rolf Hesse(저널리즘 연구소 연구원)에게 용역을 의뢰했으며, Hesse는 1985년 8월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온 이주민(Uebersiedler) 2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설문에 응한 205명의 이주민 중 82%는 동독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넘어 온 사람들이고, 18%는 탈출, 추방, 정치범 석방지불거래를 통해 넘어 온 사람들임.
  - 설문대상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50세까지이며, 동독에서 전부 직장이 있었고, 대도시 출신들로 국한하였음.
  - 설문대상자의 95%가 TV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을 내구재 소유 수준이 동독주민 대다수의 수준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였음.
- 이주민들이 동독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 내독관계에서 서독의 TV나 라디오가 얼마만큼 동독주민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연구결과

- TV 시청빈도
  - 설문대상자 중의 3/5이 선명한 화질의 서독 TV를 시청했으며, 1/5은 화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했으며, 1/5은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출신이었음.

TV 시청 횟수

단위 : %

	서독 TV 시청	
	가능 (162명)	불가능 (43명)
거의 매일 시청	82	–
자주 시청	12	–
가끔 시청	5	5
거의 시청하지 않음	1	42
한번도 시청하지 않음	–	53

- 설문 대상자 중, TV 시청가능자의 92%가 일정한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시청했으며, 그 방송시간대를 놓치지 않고 시청하려 하였음.

가장 선호한 TV 프로그램, 시청빈도

단위 : %

프 로 그 램	응답률	시청빈도		
		정기적	수시	안봄
· Kennzeichen D (동·서독 문제 주요 쟁점에 관한 리포트. 1달에 1번 정도 방영)	37	67	28	5
· 저녁 뉴스(제1TV)	34	65	35	–
· 저녁 뉴스(제2TV)	21	46	43	11
· ZDF-Magazin (주요사건특집, 수시)	20	42	37	21
· Report (주요사건특집, 수시)	20	48	38	14
· Monitor (주요사건특집, 수시)	16	32	53	12
· 스포츠 뉴스·특집	15	21	44	35
· Dallas(미국 TV 방송국)	10	29	33	38
· Kontraste (문화문야 특집)	10			
· Dender Clan (미국 TV 방송국)	7	26	26	48
· Der grosse Preis (퀴즈쇼, 오락)	6	22	47	31
· Dalli – Dalli (퀴즈쇼, 오락)	5	23	44	33
· Tatort (사건 추리극)	3	37	54	9

- 서독 TV 프로그램 중 퀴즈나 오락 그리고 미국 TV 방영물에 비해 저녁 뉴스나 정치적인 특집 보도에 대한 시청이 빈번했음.
  - "Kennzeichen D"나 "ZDF-Magazin" 등 정치적인 사건의 특집보도에 대해 동독주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았음.
    - »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특집에 대한 시청률은 서독주민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사특집극	시청률	
	서독 평균(1985)	동독이주민 시청빈도
Kennzeichen D	12	67
ZDF-Magazin	12	42
Monitor	26	32
Report	24	48
Panorama	22	32

출처 : Gfk Nertnberg

- 미국 TV 시리즈극인 "Dallas"나 "Denver-Clan"에 대한 동독인들의 반응은 즐겨 시청하는 측과 전혀 시청을 하지 않는 층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음.
  - » 특히 동독 여성시청자를 중심으로 한 이 방송을 즐겨 보았던 시청자들은 이국적이고 호화스런 상류층의 생활을 묘사한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동독이주민 응답자 중 Denver-Clan은 48%가, Dallas는 38%가 동독의 실제생활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또 과장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 방송에 뚜렷한 거부감을 나타냈음.

단위 : %

"Denver - Caln", "Dallas" 시청빈도	"Denver-Clan"		"Dallas"	
	남자(94명)	여자(68명)	남자(94명)	여자(68명)
정기적으로 봄	18	37	21	40
수시로 봄	25	28	29	40
안 봄	57	35	50	20

- TV 상업광고 시청
  - 동독주민들은 서독주민들보다도 TV 선전광고를 즐겨 보았는데, 이는 동독에서 물자부족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 특히 서독 기업들은 이러한 TV 광고 효과에 의한 잠재적인 동독 구매자들을 확보하여, 서독 친지를 통한 소비물자공급으로 매출액이 늘어나 시장확보에 큰 효과가 있었음.
    - » "당신은 선전·광고를 즐겨 보았습니까, 아니면 즐겨 보지 않았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답변에서
      - * 즐겨 본다 : 49%
      - * 가끔 본다 : 22%
      - * 즐겨 보지 않는다 : 31% 로 나타남
- 서독 TV가 시청되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동독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동독 TV 시청 빈도

	동독 TV 시청	
	시청 가능(162명)	시청 불가(43명)
아주 자주, 자주	10	49
가끔	18	28
거의 안 봄	72	23

  - 상기 통계는 서독으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통계가 전체 국민들의 동독 TV 시청 빈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문 답변자들의 94%가 다른 동독주민들도 거의 자기와 같이 동독 TV를 시청했을 것이라고 답변함.
- 동·서독 TV의 선별 시청
  - 설문 답변자들은 동독 TV를 선별적으로 시청(일단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TV를 껐음)한 반면, 서독 TV는 계속해서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단위 : %

선별 시청	서독 TV (162명)	동독 TV수신 지역	
		서독 TV 시청 가능	서독 TV 수신 불능
일정 프로그램만 시청	17	92	63
계속해서 시청	83	8	37

- TV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 설문답변자들의 서독 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동독 방송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았음.
    - » 완전 불신의 0으로부터 완전 신뢰의 10까지 10단계의 스칼라로 나누어 신뢰도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설문자들의 서독 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8.0, 동독 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2.5에 불과했음.

동독 방송에 비한 서독 방송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스칼라	신뢰도	답변 비율
0	서독 방송은 불신	9
1-3	서독 방송을 거의 불신	10
4-7	서독 방송을 많이 신뢰	56
8-10	서독 방송을 전적으로 신뢰	25

- 서독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예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 » 1978년 여름 서독 제1TV는 저녁 뉴스 시간에 90초짜리 뉴스를 통해 동독 재무성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동독의 외환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제한된다는 보도가 나가자, 그 다음날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환상점 앞에 줄을 서서 물건을 구입하려 했던 사례가 있었음.

동독출신 이주민이 본 서독 TV의 긍정적 측면

	빈도(%)
다양한 여론 공개성	56
방송종류의 질	42
프로그램의 다양성	20
정보의 고급화	18
표현의 종류, 형식에 구애받지 않음	14
긍정적인 전체 논평	9
현실성	7
기타	2

대 상 : 162명의 동독출신 이주민(서독 TV를 시청할 수 있었던 사람들)
빈도수 총계는 다중답변이 가능하였으므로 100이 넘음.

질문내용 : "귀하가 서독 TV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서독 TV의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까?"

- 동독 주민들의 동독 TV 시청기피현상과 동독정부의 대응
  - 동독 TV에 대한 거부반응의 이유는 매우 다양하나 정보분야에 있어서 특히 당에 의한 예속화와 이에 따른 정보의 신빙성이 낮은데 주원인이 있었음.
  - 동독 TV 프로그램 중 오락분야에 대하여서는 기분전환, 긴장완화, 레크레이션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설문자들은 대답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문제를 너무 자주 테마화하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함.
  - 그러나 동독 TV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반응은 단순히 노동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의 할당이 너무 많다는 문제보다 훨씬 복합적인 것이었음.
    - » 동독내에서 자체생산한 오락물 중 특히 록음악과 관련해서 동독 주민들은 정상급 스타들을 대다수의 동독주민은 "정부의 사도이자 공산당 왕조의 긍정 익살, 광개" 정도로 간주하였음.
    - » 서독미디어의 영향으로 70년대 이래 동독 TV는 개혁을 통해 "대중성"의 확보라는 맥락에서 오락성을 중시하여 왔음.

» 또한 '84. 9 이래 동독 영화·TV연합회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사회주의적 TV 프로그램에 더욱 밀착하도록"해주는 계획을 입안하여 방대한 방영 시간(21,000분)에 달하는 자체생산(400편)을 통해 사회주의적 표현 양식으로 프로그램 구성의 선택가능성이 있도록 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TV 오락방송에 대한 거부반응 없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

» '80년 이래 동독의 오락의 형태와 오락의 관습은 미국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오락문화에 대항하여 사회주의적 오락문화가 대체가능 수단으로서 강조되었으나, 오히려 80년대 중반부터 동독 사회주의 대중매체의 오락프로는 자본주의적 오락산업으로부터 거의 석권되어 버려, 서방측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오락에의 욕구는 동독 TV로 하여금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오락물 구매를 불가피하게 하였음.

» 이로써 동독의 사회주의적 문화의 정체성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서방측은 오락문화로 인한 부르조아지 사고방식과 소시민적 이데올로기가 전파되어 위협을 받게 되었는 바, "초국가적 미디어 재벌과 문화재벌, 제국주의 국가의 국제적 통신사와 오락산업체가 국가와 민족의 민족적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잠식한다"는 당 지도부의 경고가 빈번히 일어남.

•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의 장본인들은 "문화의 국제화"라는 현상을 문화적 정체성의 평준화(Nivellierung kulyureller Identitaet)와 불가피하게 연계되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 "후기시민사회"(Spaetbugerliche Gesellschaft)의 진보적인 요소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의 접목이라고 정당화하려 하였음.

» 즉, "서방적 생활방식"을 아무런 비판없이 복사할 것이 아니라 현대적 문화와 문명의 업적과 능력을 자체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보존, 발굴, 발전시키면서 창조적으로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대중적 인기예술"의 "사회주의 대중문화"에로의 발전은 "시민사회적 대중매체"에 의한 영향 때문이 아니고 오늘날 세계의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는 수렴이론(Konvergenztheorie)을 그 논거로 제시하였음.

• "사회주의내 오락예술"이냐 "사회주의적 오락예술"이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독내에서 "오락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락예술은 그 자체의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바, 계급의 반대자가 사회주의내 오락예술의 주된 적이 아니라 지루함이 바로 그 주된 적이라고 주장함.

» 너무 현학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이어서는 오락성이 상실되므로 사회주의적 오락은 교시적이거나 지적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결론적으로 동독에서는 각종 정보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락분야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서독 TV 시청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이데올로기적인 딜레마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 딜레마는 갈수록 심화되어 갔음.

– 라디오 방송 청추

• TV와 반대로 서방측 라디오 방송은 동독의 전지역에 걸쳐 도이칠란트풍크(DLF) 이외에 바이에른방송(BR), 헤쎈방송(HR), 북독방송(NDR), 자유베를린 방송(SFB)을 비롯하여 Rias(미국측에 편성권이 있던 베를린소재 방송) 방송이 청취가능했음.

» 전반적으로 서독 라디오 방송의 청취율은 매우 높았으며, 베를린의 Rias방송이 청취율이 가장 높았던 바 답변자의 절반 가량이 자주 들었다고 말함.

서독 라디오방송의 동독내 청취율

(단위 :%)

	자주	가끔	드물게	전혀
BR (바이에른방송)	39	6	18	37
DLF (도이칠란트 풍크)	34	14	25	27
HR (헨쎈방송)	18	12	14	56
NDR (북독방송)	22	10	19	49
RTL (라디오 룩셈부르크)	22	14	24	40
RiAS (리아스 베를린)	49	14	14	23
SR (자알란트방송)	3	4	18	75
SFB (자유베를린방송)	30	11	15	44
WDR (서독방송)	9	4	15	72
AFN (미군방송)	8	3	6	83
대 상 : 205명의 동독 출신 이주민				

동독 라디오방송의 청취율

(단위 :%)

	자주	가끔	드물게	전혀
동독 제1방송	1	7	28	64
동독 제2방송	1	6	23	70
베를린 방송	2	6	26	66
동독의 소리	3	6	25	66
대 상 : 205명의 동독 출신 이주민				

» 서방측 라디오방송에 비해 동독 라디오 방송의 청취율은 매우 낮았음.

- 동독이주민들은 계속해서 동독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서독방송의 청취를 긍정하고 있는 바 사생활 분야와 자기주택 이외 지역을 분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생활 분야(자기집에서)

* “누가 옆에 있건 말건 서독 방송을 들었다” : 87%

* “단지 혼자 있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들었다” : 13%

» 자기 주택 이외 지역

* “누가 옆에 있건 말건 서독방송을 들었다” : 74%

* “단지 혼자 있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들었다” : 26%

- 서독 라디오방송 청취율에 지역에 따른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서독 TV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의 방송청취율은 매우 현저하게 높았음.
- 서독 TV 시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는 라디오 프로 중 언어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음에 비해 이런 지역 출신 응답자의 9%만이 라디오 프로 중 음악프로를 듣기 위하여 서독의 라디오방송을 청취하였음.

서독에 대한 주요 정보 원천

(단위 : %)

주요정보원천	서독 TV 시청가능지역 (대상 : 162)	서독 TV 시청불가능지역 (대상: 43)
서독TV	64	2
서독 라디오방송	11	63
서독 신문/잡지	1	2
서독출신 친인척, 친구와 대담	23	33
동독 TV	–	–
동독 라디오방송	–	–
동독 신문/잡지	–	–
동독출신 친인척, 친구와 대담	1	–
	100	100
대 상 : 205명의 동독출신 이주민		

질문내용 : “이 목록에서처럼 서독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이 귀하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14. 도시 자매결연

14-1. 협상 및 협정 체결

14-1-1. 역사적인 전개과정

○ 1950년대와 1960년대 냉전기간 동안 서독측은 할슈타인 원칙에 의거 동독측의 외교적인 고립화 정책을 추진하였는 바, 동독측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적 차원의 접촉이 아닌 서독측의 지방자치단체와 접촉 및 자매결연을 통해 이러한 봉쇄정책을 타개하기를 원했음.

- 당시 서독정부는 철저한 반공주의에 의거, 동독의 고립을 위해 동독의 이러한 시도를 일체 거부했음.
  - 1966년 전독문제성(내독관계성 전신)은 당시와 같은 상이한 사회체제와 세계관으로 분단된 현실상황에서 동독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연방정부로서는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서독 내의 몇몇 도시(Ulm, Konstanz, Herrenberg 등)는 동독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음.
- 동독은 국가적 차원의 외교적 승인의 길이 서독측에 의해 봉쇄되자 다른 서방국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매결연을 통해 국가적인 승인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 1967년까지 동독은 프랑스의 16개 도시와, 이탈리아의 1개 도시, 세네갈의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음.

○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사민당 집권 이후부터는 동독보다 오히려 서독측이 도시 자매결연 성사를 위해 노력했음.

- 특히 서독측은 기본조약 체결 이후 각 분야에 걸친 동·서독 주민들 간의 접촉을 도모했는데, 자매결연을 통한 도시 간 접촉도 장려되었음.
- 이렇듯 서독측이 공세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동·서진영 간 긴장완화를 통해 냉전기에 동독측이 추구했던 정책적인 목표(동독의 국제적 승인)가 달성되자, 동독측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접촉을 회피하며 전제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함.
- 동독 외무성 본(Bonn) 주재 상주대표부는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자매결연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동독정부가 서독정부에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을 거부하였음.
  - 서독에 의한 동독주민들의 독자적인 국적인 인정.
  - 동독인민의회와 서독 의회의 공식적인 접촉 개시.
  - Salzgitter에 있는 중앙구동독폭력행위 기록 보존소 폐지.
  - 상주대표부의 대사관으로 승격.
  - 국제법에 따른 Elbe강 유역의 국경 확정.
- 동독측은 또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기본조약체결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해 있지 않고,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자매결연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다른 분야의 후속협상이 거의 체결되고 고위 정치인들의 회동에서 이러한 도시 간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독 간 도시 자매결연은 1985년에 가서야 체결될 수 있었음.

○ 도시 자매결연에 대한 동독정부의 완강한 태도는 1985. 11 사를란트 주지사

라폰테인(Lafontaine)과 호네커 서기장의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최초로 Saarlonis(서독 사를란트 주)와 Eisenhuettenstadt 간에 도시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을 공표함으로써 변화하기 시작함.

- 이러한 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소련측이 1985년 가을에 서독의 도시들과 도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임(2개월 안에 2개 도시 간).
  - 이 과정에서 소련과 동독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했으며, 소련측의 권고로 동독측은 서독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80년대 후반에 들어 미·소 간 군축협상의 재개와 더불어 동·서진영 간 화해무드가 고조되어, 이러한 분위기가 내독 간에도 영향을 미쳤음.
- 또한 호네커의 고향이 서독 사를란트주였기 때문에, 서독 사를란트 주지사 방문과 때를 맞추어 사를란트 주의 도시와 자매결연이 최초로 성사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음.
- 동독측은 도시 자매결연 초창기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으나, 도시 간 자매결연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저울질한 결과 득이 된다고 보고, 자매결연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음.
  - 동독측의 입장은 1986. 5 동독 상주대표부가 서독 시연합회(DST: 지방자치단체 연합회로써 최고 의사결정기관임)에 보낸 서신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도시 자매결연은 "양국 간 관계의 진전수준에 맞추어 발전시킬 것인 바, 국가 간 관계에서 성사가 불가능한 것은 도시 간 관계에서도 성사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서독측 지방자치단체는 동독측과 많은 접촉을 갖기를 희망했는데, 1989. 9까지 62개 도시 간에 자매결연이 성사되었으며, 700여개의 서독 도시들이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동독 공산당은 다른 비사회주의권과 제3세계와의 도시 간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서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서독과 도시 자매결연 분야에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외교정책 추진상의 맹점으로 받아들였음.
  - 1983년 현재 동독의 도시들은 외국도시와 총 243개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그 중 46개는 사회주의권 및 비사회주의권과, 197개는 제3세계국가군과 맺고 있었음.

14-1-2. 자매결연 합의문 작성

○ 동독측은 결연의 상대를 정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존했으나, 합의문 협상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자들이 직접 서독측과 접촉했음.

- 거의 대부분 동독측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방문을 했는데, 그의 대표단에는 공산당(SED) 시위원회 간부와 국가보위부 직원이 동행을 했음.
  - 주요한 결정은 실질적인 대표단장으로서 공산당 시위원회 간부가 내렸음.
  - 첫 방문에서 동독측이 합의문 초안을 제시하고, 서독측도 초안을 제시하면 통상 문안의 검토가 이루어짐,
- 동독측 대표가 돌아간 다음 서독측은 답방을 했는 바, 대개 동독에서 문안작성을 끝내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동독측은 동베를린에서 이 합의서가 서명되기를 원했음.
  - 동독측은 합의문안 협상시 공산당 도당위원회에 긴밀한 연락을 취했음.

○ 합의문 작성시의 주요 쟁점은 각 도시 별로 다양했음.

- Berlin - Spandau와 Nanen 간에는 Berlin의 지위문제가 쟁점이었음.
- Nuernberg와 Gera 간에는 Nuernberg 측이 자매결연 사업으로 교회의 활동과 역할을 강조하자 동독측이 이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음.
  - 자매결연 합의문에 교회의 활동을 삽입하자는 서독측의 요구는, 동독측이 완강히 반대하여 결국 서독측의 대부분 기존 동·서독 교회 간의 교류에 맡기기로 하고 동독측에 양보하였음.
- Sankt Ingber와 Radebeul 간에는 별로 중요치 않은 협상 대표단의 숫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음.
- Schwaebisch Hall과 Neustrelitz 간에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와 관련하여, 동독측은 청소년단체 관광여행사를 통한 교류를 서독측은 동·서독

체육연맹을 통한 교류를 각각 주장하여 쟁점이 되었음.

- 특히 동독측은 서독측의 도시 자매결연의 일환으로써 광범위한 청소년 교류 주장에 대해, 이를 제한하기 위한 논쟁을 벌였음.

○ 구체적인 사례로써 Hof(서독)와 Plauen시 간의 합의문 작성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두 도시는 내독 간 국경에 인접해 있으며(3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 분단 전에는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많은 이산가족이 살고 있었음.
- 동독측의 첫 번째 서독 방문에서 양측은 별 어려움없이 합의문 초안에 의견접근을 보았음.
- 그러나 서독측이 도옥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문안작성을 하기 위해 상호 초안을 다시 제시했을 때, 동독측의 초안은 애초의 초안과는 다르게, 동독측이 늘 주장해 온 군축과 평화지향의 동독 외교정책을 선전하는 내용이 전문에 포함되어 있었음
  - 이러한 문구들은 동독측의 공산당 상부 지시로 상입된 것으로 보였음.
- 동독측이 첫 번째 초안에는 포함시켰으나, 서독측의 반대로 최종합의서에서는 빠졌던 외교문서를 방불케 하는 합의서 초안의 주요 문구를 살펴보면,
  - 긴축.
  - 평화에 대한 공동 책임.
  - 비핵지대화.
  - 평화공존.
  - 책임공동체.
  - 무조건 상호 주권 존중.
  - 양독 국가의 동등성.
  - 여하한 형태로의 상호 차별 금지 등임.
- 서독측은 합의문 작성 시, 대외정책적인 문제와 관련된 외교적인 문구를 삭제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동독측의 강력한 요구를 어느 정도 절충적으로 수용하여 '평화'(Frieden), '긴장완화'(Entspannung), '선린관계'(gut-nachbarliche Beziehung) 등의 용어는 사용하게 되었음.

서독 Hof시와 동독 Plauen시 간의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합의문(원문 번역)

Hof시와 Plauen시는 상부상조하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보전하며, 긴장완화와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린우호관계 정립에 기여하기 위한 염원하에,

- 1972. 12. 12자 동·서독 기본조약의 정신으로,
- 1975. 8. 1자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와 1983. 9. 6자 마드리드 후속문서의 정신으로,
- 기존 동·서독 간 체결된 조약과 협정을 양도시가 공동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가고 지원하려는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Hop시와 Plauen시는 서로 도시 자매결연을 맺는다. 양측은 양측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의견교환을 하고, 우리시대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기여하는 바를 각자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대화의 장에 양측 주민들을 참여시킬 의무가 있다.

Hof시와 Plauen시와 그 주민들에게는 평화적인 삶과 성공적인 공동협력을 지향하는 제 국가들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양측 자매결연도시들의 관할권과 가능성 안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행해진다.

제 2조

(1) 양 도시는 양 도시 발전사, 그리고 양 도시 주민들의 생활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

모든 사회 계층 및 사회집단에 속한 주민들의 우호적인 접촉과 만남, 관계를 조직화하고 지원한다. 특히 양 도시 청소년들 간의 접촉에 중점이 주어진다.

(2) 1988년에는

- 양측 도시에서 거행되는 문화 및 체육행사에 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 양측 도시가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문서를 이용하여 각 도시, 지역사 연구결과를 상호교환하고, 공표하며
- 상대편지역에 각 도시 특산품을 진열하는 전시관을 설치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제 3조

양측은 아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 정기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에 합의한다.

- 도시개혁, 도시정비, 주택문제, 유적관리
- 상하수 처리시설, 근거리 교통, 보건·사회 분야를 포함한 도시 서비스 행정
- 여가 활동, 휴양, 스포츠
- 청소년 지원
- 예술과 문화
- 환경 및 자연보호

제 4조

(1) 이 합의서는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합의는 Hof시의 시의회와 Plauen시의 시대표장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합의서에 의해 양측에 부여된 임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다.

(4) 양측은 각 도시 주민들에게 합의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5) 1987. 8. 4일자 의정서 주석 또한 이 합의서의 일부이다

Hof시 시장
Dr. Henn

Plauen시 시장
Dr. Martin

Hof시와 Plauen시 간의 자매결연 합의서 의정서 주석(1987. 8. 4)

1. 양측에 의해 합의된 모든 조치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취해지고, 재정보조된다.
2. 방문단과 그 일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방문단을 보내는 측에서 부담한다. 문화행사라 할지라도 공연진행 비용과 사례금은 초청자측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방문단의 체제비와 문화·체육행사 요원들의 체제비는 초청자측이 부담한다. 초청자측은 초청자측 관계인들과 방문단과 공동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비용분담문제와 관련하여 이와 다른 규정은 양측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양측 도시의 활동과 발전상에 관한 정보자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4. Plauen시는 독일체조·체육연맹(DTSB)과 Hof시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체육과 스포츠를 장려한다.
5. 양측은 청소년교류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Plauen시는 동독 청소년여행사와 공동으로 청소년 교류를 장려한다.
6. 다음 해의 연간 실행계획은 매년 4/4 분기에 양측 시장들 간에 서명된다. 양측은 실행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에 관해 9월말까지 실무진 간에 협의한다.

Hof시와 Plauen시 간의 1988년 연간 실행계획

1. Plauen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주민들의 이니셔티브와 기여에 관한 세미나 개최 : 1988년 9월
2. Hof시는 양 도시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Hof시의 발전사에 관한 전시회를 Plauen시 시청에서 개최 : 1988. 4월
3. Plauen시는 Plauen시의 사회·문화적인 생활 발전상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Hof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함 : 1988. 10월
4. Hof시는 Plauen시립극장에서 Hof시 교향악단이 봄맞이 음악회를 개최토록 함 : 1988. 5월
5. Plauen시립극단교향악단은 Hof시에서 공연을 개최함 : 1988. 11월
6. Hof시 노동자들이 노조의 공동결정권과 기타 노동문제에 관하여 연구·토의하는데

대표단을 초청함 : 1988. 6월

7. 30명 범위내에서 청소년 여행단을 조직하여 상호 교환하고, 상호 방문도시에서 여러 날을 머물도록 한다.

8. Hof시와 Plauen시에서 각각 한 종목의 체육경기를 개최한다.

14-2. 주요 쟁점

○ 도시 간 자매결연이라는 형태에 대해서는 양측에 별 이의가 없었으나, 양측의 지방자치행정제도가 상이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둘러 싼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달랐음.

- 서독측은 기본법 28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었음.
- 반면 동독측은 헌법 41조에 '중앙의 지도와 계획하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있으며, 당의 영도성의 원칙과 소위 '민주적 집중주의 원칙'에 의거 행정권력이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 없었음.
  - 공산당에 의해 각 지방에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 기관이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중앙으로부터 통제하였음.
  - 1989. 11. 동독의 대변혁시까지 동독의 지방자체단체 지도자들은 서독과는 달리, 도시 자매결연을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없었으며, 자기 책임하에 서독과 교류협력도 실시할 수 없었음.

○ 서독정부의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은 독일정책 추진의 수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의 접촉과 왕래를 실현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단일성을 확보하는데 두었음.

- 서독 정부는 분단이 독일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동독 주민들이 공산당 지배하에 있는 한 동독 주민들의 자결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동독과 지방자체단체 수준에서의 교류증대는, 동독주민들이 자결권을 확보하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음.
- 도시 간 자매결연이 사람과 정보와 사상의 자유스런 이동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보았음.

○ 반면 동독측은 서독과의 도시 간 자매결연을 동독의 외교적 승인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하였음.

- 동독측의 대 서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독정부에 의한 완전한 외국으로서의 승인이었음.
  - 동독정부는 2개 국가론을 넘어 선, 2개 민족론을 주장하면서, 동독 정부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였음.
- 동독 공산당은 장기적으로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외국으로서의 지위를 서독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음.
  - 1986. 1. 호네커는 'Die Zeit'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독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다른 나라와의 도시 간 자매결연과 똑같은" 의미로 파악했음.
  - 동독에게 서독은 비록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선린우호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외국이었음.
- 동독 지도부가 정치적인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이용한 측면도 있음.
  - 1987년 동독 공산당 중앙위 5차회의에서 "양국 도시 간 자매결연, 장관급 정치인 및 의회지도자들의 교류는 양국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동독 지도부는 서독의 정통성 있는 집단이나 그 대표들과 대화를 가짐으로써, 대화의 상대로써 동독 지도부도 아울러 정통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서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들과의 교류 그 자체가 동독 지도부의 정통성 부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간주했음.
  - 동독 지도부는 지방행정 단위뿐만 아니라 서독과 접촉하는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대 서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제법적 승인과 체제내적인 정통성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음.
- 자매결연에 의해 상대편 도시를 방문한 동독의 대표단들은 상대편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당 지도부의 정책적인 노선에 따라 특히 국제적인 평화, 긴장완화, 군축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음.
  - 도시 자매결연을 통해 주민들 간의 접촉증대와 상호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회의 제공보다도 동독 지도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서독의 일반 주민들이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이해하고 이러한 견해들이 정치적인 의사형성 과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희망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동독측의 의도는 서독이 연방주의적인 원칙에 의해 외교와 국방정책 추진은 연방정부의 소관이고, 지방행정기관은 의사정책결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음.
  - 다만 동독측은 서독의 지방정부지도자들을 통해 연방 정부의 외교·안보·독일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음.
- 그러나 서독이 연방주의적인 정치구조하에 있고 내독관계에서 서독 주정부 정치지도자들의 역할과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측은 이러한 주정부 정치지도자들과의 접촉을 모색했음.
  - 특히 기민당이 정권을 인수한 80년대에는 야당인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강화했음.
  - 도시 간 자매결연도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사를란트 주 라폰테인 수상과의 회동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음.
- 동독은 또한 주정부 정치 지도자, 의회와의 접촉을 동독 인민의회와 서독의 연방 의회가 공식적인 접촉을 갖는 중간단계로 간주했음.
  - 물론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유한 고위 정치지도자들이 동독측의 정치지도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갖기는 했으나 서독 연방의회는 1989 구동독에서 대변혁이 일어날 때까지 동독 인민의회와의 공식적인 접촉과 교류를 거부했음.
  - 서독측의 거부 이유는 동독측의 인민의화가 민주적인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통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었음.
  - 물론 서독의회에서 이러한 동독인민의회와의 공식 접촉에 관해 논의된 적이 있기는 했으나(1988. 2) 동독측이 서베를린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베를린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차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 한, 서독의회는 동독인민의회와 공식적인 접촉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음.

○ 서독측은 제한받지 않은 기층 주민들 간의 광범위한 접촉을 원했던 반면, 동독측은 '통제받지 않는 대중들 간의 접촉'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음.

- 서독 자매 도시의 방문단은 이념적으로 무장된 당원을 중심으로 선발했으며, 이들은 서독에서 기층 주민들에게 동독의 대외정책과 대서독 정책을 선전하며 주민들의 반공주의를 희석시키고, 자기체제에 대한 서독 주민들의 호응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음.
  - 동독측은 기층 주민들과의 대화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동독 주민들의 독자적인 국가 인정, 나아가서는 동독체제를 인정토록 하는데 주력했음.
- 서독 방문단의 동독 방문시에도 서독 주민들의 동독 주민들과의 대화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을 우려하여, 될 수 있으면 공식적인 접촉만을 허용하려고 방문계획을 세웠음.

○ 서독측에서 일부 제기된 견해이긴 하나, 동독측의 도시 자매결연 수용은 서독에 친척이 없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지역을 방문하지 못하여 갖는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한 '배출구 기능'을 했다는 평가도 있음.

- 동독측은 서독에 친척이 있는 연금생활자나 긴급가사사유 발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서독으로의 여행을 허용했으며, 공산당(SED) 당원의 대 서독 여행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일체 금지해 왔음.
- 1986년 동독은 이러한 대 서독 여행규정을 완화했으며, 아울러 공산당원의 대 서독 여행금지도 해제했는데, 도시 자매결연으로 당원이 아니거나 서독내에 친척이 없는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라는 것임.
- 그러나 동독측이 상대편 지역 방문단의 구성시 늘 열성당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서독측으로부터 도시 자매결연이 '당원들의 여행'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결코 자매결연을 통해 일반주민들의 여행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간 자매결연, 여행조건완화, 당원들의 대서독 접촉제한의 완화조치 등은 호네커하의 동독 지도부가 내독 간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서 동독 기층 주민들로부터의 체제내적인 압력을 효과적으로 희석시키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체제위기 관리정책의 일환이었음.
  - 동독 주민들의 대 서독 자유왕래에의 욕구는 동독 지도부의 엄격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늘 체제유지에 부담이되는 '아킬레스 건'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을 아무리 독재체제라 하더라도 어떤 해소장치 없이 마냥 억제할 수만은 없었음.
- 이런 의미에서 도시 자매결연은 동독체제의 '개방'이라는 측면보다는, 점증하는 주민들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제내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동독 지도부의 애로타개책이라고 볼 수 있음.
  - 동독 지도부는 서독과 도시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 동독 주민들의 서독체제로부터 지속적인 격리조치가 결국은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 같음.

14-3. 자매결연 상대의 선택

○ 서독 지방자치단체들이 동독측과 상호 결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였음.

- 서독의 지방행정가들이 서독과는 다른 동독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해 사전지식이 없어 오해가 발생하였음.
- 서독과 다른 외국과의 자매결연 경험만 염두에 두고 동독과의 결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동독측이 무성의하게 반응하였음.
- 서독내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공동보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동독의 경우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개입하여 서독과의 접촉을 통제한 반면, 내독관계성은 연방주의에 의거, 서독 지방자체들이 이미 동독과 접촉을 시도한 이후에야 이를 인지한 경우가 많았음.
- 서독의 여러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동독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시도함으로써, 특히 정파가 다른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도시 간에 대 동독 접촉에서 과열현상마저 보이기도 했음.

○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동·서독 양측의 지방자치단체는 상대편을 자매결연 상대로 선택하게 되었는지는 일률적이지 않음.

- 동독측에서는 고위급의 정치적인 결정으로 서독의 자매결연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은 확실한, 결코 공식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을 공표한 적은 없었음.
  - 1988. 6. 내독관계성 장관 Wilms는 한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동독측이 자매결연을 확약하는 어떤 신뢰할만한 기준이 알려지 있지 않으며, 만약 그러한 결정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공표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동독측의 선발기준을 선정하는 데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서독 지방행정가들은 희망하는 동독 도시와 일단 접촉을 모색하고 나서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음.
- 다만 1989. 9. 현재 동독과 체결된 62개의 도시 자매결연의 현황을 분석해 볼 때, 몇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음.
  - 서독지역 도시 중 사민당(SPD)이 집권하고 있는 도시가 41개로 압도적이고, 기민당/기사당(CDU/CSU)이 15개, 자민당(FDP)이 1개, 기타가 5개 순이었는 바, 동독측이 대화의 상대로서 사민/자민 연정기간 동안 오래 대화를 지속해왔고, 이념적인 적의가 덜한 사민당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988. 3까지는 주로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로부터 중·소도시로 확산되었는 바, 동베를린을 제외한 동독의 14개 도청 소재지는 전부 서독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3만 이상의 시·군이 전체 자매결연의 1/3을 차지했음.
- 서독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인 공통성에 의거하여 동독측에 자매결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꼭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었음.
  - 역사적으로 같은 항구도시이자 한자도시였던 관계로 자매결연이 맺어진 경우는 Luebeck과 Wismar, Kiel과 Stralsund, Bremen과 Rostock을 들 수 있음.
  - 8세기 중엽부터 같은 교구에 속했던 종교적인 관계로 맺어진 경우는 Erfurt와 Mainz를 들 수 있음.
  - 2차 대전 중 가장 심하게 파괴되었던 인연으로 맺어진 경우는 Hamburg 와 Dresden, Nuernberg와 Gera, Ludwigschafen과 Dessau를 들 수 있음.
  - 내독 간 국경에 의해 분단되기는 했지만 2차 대전 이전부터 인접도시로서 경제적·문화적인 접촉이 많았던 국경도시로는 Hof와 Plauen을 들 수 있음.
  - 유명한 극작가인 Heinrich von Kleist가 Frankfurt/Oder(동독 도시)에서 출생하여, "Das Kaethchen von Heilbron"이란 희곡을 써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Frankfurt/Oder와 Heilbron(서독)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진 경우도 있음.
  - 농민전쟁 당시 공통성을 근거로 Boeblingen과 Soemmerda가 자매결연을 맺음.
  - 같은 고성과 정원이 있다는 이유로 Kronberg와 Ballenstedt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짐.

- 철도교통의 요지이자 신발류 제품 생산의 공통성을 강조하며 Kornwestheim과 Weissenfeld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짐.
- 같은 대학도시로서 대학 간 교류를 근거로 맺어진 경우는 Karlsruhe와 Halle를 들 수 있음.
- 같은 박람회 개최도시로 맺어진 경우는 Leipzig와 Hannover를 들 수 있음.
- Dillingen과 Hoyerswerda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맺어졌는데, 두 도시 다 철강·석탄 등 중공업 산업단지였기 때문임.
- 동·서독 간에 처음 맺어진 Saarlouis와 Eisenhuettenstadt는 다 같이 철강산업의 중심지라는 이유로 맺어졌음.

– 그러나 이러한 진정한 상호 공통성에 기초하여 자매결연이 맺어진 경우는 전체로 보면 소수에 그치고, 많은 경우 인위적으로 공통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음.

- 특히 동독측은 서독측과 자매결연시 이러한 공통성을 의식적으로 강조하려고 하지도 않았음.

– 서독측에서는 자매결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독을 잘 아는 전문가인 유명 정치인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었음.

- Flenburg(서독)는 동독의 Wismar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동독 상주대표부를 통해 접촉한 결과, 동독측으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얻지 못했으나, 대동독 협상의 주역이었던 Egon Bahr를 내세워 성사시켰음.
- 동독 정치국원들이 지시하여 성사된 경우는 서독의 수도인 Bonn과 Potsdam임.
- 내독관계가 성숙됨에 따라 동·서독에는 각 협상에 참여하고 접촉을 빈번히 하여 각각 상대편 체제를 잘 아는 정치인 그룹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상대편 지도부에 의해 신뢰를 받고 있었으며, 이들은 각 분야에서 접촉을 적극 장려하기도 하였음.

– 동독측이 서독측에 특별히 요청하여 맺어진 경우도 있음.

- 서독의 Trier는 Karl Marx의 고향이고, Wuppertal은 Friedrich Engel의 고향으로서 동독측이 각각 자매결연을 맺자고 동독인민의회 의장이 직접 요청해 왔음.
- 또한 동독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서독과 접촉하려 한다는 인상을 서독측에 주기 위해 제안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 Wismar가 Luebeck에 Gera가 Nuernberg에 제안한 것 등이 이에 속함.

–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무튼 자신들이 운하는 도시를 자매결연 상대로 100% 선택할 수는 없었음.

-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독 52개 도시 중 24개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었음.
- 또한 서독의 도시 중에는 특별히 어떤 도시를 희망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 동독측은 서독측의 유명 정치인이 중개인으로 나서는 경우는 서독측이 희망하는 도시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독측의 희망을 고려하는 입장을 보였음.

14-4. 구체적인 교류 사례

○ 전문가 협의회

- 도시 간 자매결연에 따른 개최행사 중 가장 빈도가 많은 것으로서 지방자치·지역행정에 관한 의견 및 경험교환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들 수 있음.
- 주요 협력 분야는 도시계획, 노후화된 주택정비, 도로 교통계획 등이며 상호 정보와 실제 경험을 전문가들이 모여 교환하였음.
  - 1988 Halle와 Krlsruhe 간에 '도시계획, 건축, 도시중심지개발, 유적보존에 관한 경험교환'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가 열린 바 있음.
- 이 밖에 환경문제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협의회가 많이 개최됨.
  - 1989, Hamburg와 Dresden 간에는 환경보호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서독측이 드레스덴의 3가지 환경오염제거 투자를 보조하기로 합의하였음.
- 자영 수공업자들의 의견교환(Mainz와 Erfurt 간), 의사들의 상호 방문 및 의견교환(Luebeck과 Wismar), 노동자 및 노조원들의 방문 및 의견교환.

○ 체육교류

- 각자 선수단을 선발하여 종목을 합의한 다음 상호 교환경기를 가졌는데, 서독측은 상대편을 꼭 이기는 경기보다는 고아범위하게 상호 접촉해서 친선을 도모하는 경기를 희망했음.
- 종목 선정은 정상급 스포츠인이 참여하지 않고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즐기는 볼링, 축구, 탁구 등이었음.

○ 청소년 교류

- 서독측이 특히 중점을 두었던 분야로써, 보통 15~30세 사이의 청소년 30명 정도가 상대편 지역을 방문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함.
- 동독측은 학교와 학생들이 이러한 청소년 교류에 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피했으며, 주로 결혼을 한 장년들을 방문단원으로 선발하여 보내곤 했음.
  - 동독측 지도층은 서독학교를 '이데올로기적인 학습장'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학교 간의 접촉은 가능한 한 금지시켰으며, 학교와 학교 간의 편지접촉도 편지를 반려하곤 했음.

○ 문화 행사

- 도시 자매결연 사업 중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연간 실행계획서에 주요사업으로 포함시켜 추진한 사업임.
- 구체적으로는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작가들의 초청강연 등이 주종을 이룸.

○ 신문 교환

- 전체 자매결연 도시 중 16개 도시가 지방신문을 상호 교환하였음.

○ 평화운동 활동

- 동독측의 강력한 요구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화운동이 연간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았음.
- 예를 들어 Neunkirche와 Luebben 간에는 1988 '주민들이 어떻게 평화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화'를 개최키로 하였음.
  - 1989 Salzgitter 와 Gotta 간에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어린이 미술경시대회를 개최키로 함.
  - Halle와 Karlsruhe 간에는 평화를 위한 여성의 기여와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의견교환행사가 개최됨.
- 동독측은 평화운동과 관련하여, 그들의 대외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독측 자매도시에게 평화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는 사례도 빈번했음.
  - 이러한 동독측의 시도는 동·서 간 핵무기 경쟁시대에 사회주의 국가는 평화옹호세력인 반면 자본주의 국가는 호전성과 제국주의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선전의 일환이었음. 특히 서독의 운동권 단체들이 반핵운동을 전개하면서 블록탈퇴와 군축을 주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음.
- 서독 연방정부는 서독 지방자치연합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연방정부의

소관이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는 사항인 독일정책 및 대외정책의 문제를, 동독측의 요구로 합의서 작성시 언급할 경우는 반드시 내독관계성과 협의하도록 하였음.

- 내독관계성 차관인 Prienitz는 1988. 9월 "독일정책 및 대외정책에 관한 동·서독 도시 간 공동선언은 결코 자매결연 협약이나 도시 간 접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바, 그 이유는 독일정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음.

○ 자매결연 사업 추진시, 서독측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동독측이 연간 사업계획서에 합의된 내용 이외에는 결코 예외적인 접촉이나 사업추진상의 재량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임.

- 동독측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추가적인 접촉이나, 참가인원수의 초과 등을 허용치 않으려 했음.
- 또한 서독측은 동독측이 허용한 범위 이외의 개인적인 동독주민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방해했으며, 개인 가정집에서 숙박하는 것을 단지 한두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였던 점을 비판했음.

○ 도시 자매결연이 민족적인 공통성의 유지나, 독일민족의 통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1988년 독일 시연합회의 도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로 평가해 볼 수 있음.

- "도시 자매결연이 귀 시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과 공통귀속성을 갖고 동독 주민과 더욱 친밀해지며 결국 독일통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32개 도시 중 14개 도시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6개 도시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는 답변을 유보했거나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하였음.
  - Nuernberg는 도시 자매결연을 통해 주민 상호 간에 '접촉공포증'이 사라졌다고 답변했음.
  - Trier는 주민들 간의 접촉이 반드시 국가적인 통일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음.
  - 많은 도시들이 상호도시와 접촉·교류를 통해 동독주민들의 생활실상, 생활조건 등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동독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지방언론매체(신문, 방송, 유선상업방송 등)들이 각 지방의 도시 자매결연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서독주민들의 도시 자매결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 도시 자매결연이 독일통일이나 민족공통성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도시들의 주요 답변 근거는 동독의 방문단 구성이 당원이나 체제옹호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음.

15. 종교·교회 분야

15-1. 동·서독 교회의 분리와 교회의 분단극복 노력

○ 1949년 동·서독 분리건국과 함께 제정된 양국의 헌법과 법률은 종교활동 보장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음.

- 우선 유사점은
  - 바이마르 헌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단체 구성의 자유가 보장되며,
  - 교회는 공법인이며,
  - 교회는 국가가 정해 놓은 세금목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대표적인 차이점은
  - 서독의 기본법은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을 정식과목으로 선언해 놓고 있음에 반해, 동독 헌법은 종교수업을 전적으로 교회활동에 국한, 단지 종교관련 학교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장해 놓았음.
  - 서독의 기본법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교회가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동독 헌법에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정당 정책적 목적에 어긋나는 교회기구의 악용 또는 종교활동의 악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 등이었음.

○ 1968년 동독은 기존헌법을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산당은 “민주적 집중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교회를 포함한 동독 사회의 모든 기관과 그 활동이 동독 공산당의 영도력에 예속되도록 하였음.

- 동독에서는 교회마저도 사회주의를 위해 참여해 줄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에 용의가 있을 경우, 자연히 SED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어 독자성을 상실하거나(예: 동독의 기독교인을 대변하는 동독 기민당), 이러한 참여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민사회의 잔재로서 매도되며 반동적인 배척의 대상이 되는 길 밖에는 없었음.
- 50년대와 60년대에는 동독 공산당의 교회에 대한 탄압 조치를 통해 신도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호네커가 집권한 70년대 이후부터는 교회세력을 이념적으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시민사회의 잔재라고 규정하고 교회의 사회체제 내에서의 역할을 인정하게 됨.
  - 중앙집권적 체제로 전환한 동독은 1952년에 지방자치조직인 5개주를 폐지하고 바이마르 시대의 국가와 교회 간의 협약은 물론 정교협약을 인정하지 않았음.
  - 다만 교회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묵계적으로 계속 지불하였는데, 보조금 중 목사에 대한 연간 급료를 삭감시키고, 지불신청권도 인정하지 않는 등 종교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국가 방해 활동을 전개했음.
  - 동독은 1964년 이래 인구조사시 종교생활에 관한 통계를 잡지 않아 정확한 신도수는 알 수 없으나, 80년대 중반의 서독측 추정에 의하면 신도수가 동독 주민의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동독 주민 신자 중 대부분은 신교도로서 1977년 기준 신교도가 790만, 구교도가 120만으로 동독 정부의 대교회 정책은 신교를 주대상으로 하였음.

○ 반면 서독에서는 교회의 지위, 특정 분야에 걸친 참여권과 발언권 등이 특별히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의사 결정에 기독교측의 참여가 가능하였음.

- 신교의 경우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국가와 교회 간의 협약이라는 바이마르 시대의 전통이 유지되었고,
- 구교의 경우 1933년 제국정교협약이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계속 적용되었음.

○ 독일신교연합회(EKD)는 분단 초기부터 민족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독일 통일이 곧 동·서독 교회의 소망이라고 주장하며, 동·서독 정부 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데 중개역할을 하고자 했음.

- 왜냐하면 동독주민의 대부분이 신교도임을 감안할 때 EKD만이 동·서독 주민들로부터 공히 신뢰를 받고 있었고 동·서독의 국가 지도층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임.
  - EKD는 서독뿐만 아니라 동독에도 전권위임자를 위임해 놓고, 1969년까지 전독일을 망라한 신교연합단체였음.
- 이는 교회가 당시 냉전 상황하에서 동독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신중을 기하며 서독 정치권의 전독일 단독대표권 주장과는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 교회의 공식문서에는 서독이 의식적으로 동독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인 "소련 점령지역 또는 중부독일"(SBZ 또는 Mitteldeutschland)이나 국호에 따옴표를 사용하는 대신 동독의 정식 국호를 사용했음.
  - 당시 신교는 동독 지배체제의 생성과 그 합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독의 국가로서의 직권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활동유지에 유리하다고 보았음.

○ 동독 신교연합회는 1969년 법적으로 완전히 독일신교연합회(EKD)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이 조직되었음.

- 이러한 동독 교회의 분리가 있고 나서야 동독 정부는 동·서독 교회 간의 접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으며, 동·서독 목회자 간의 여행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었음.

- 그러나 동·서독 교회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로 인해 분리될 수 없는 "특수한 공통성"(Besondere Gemeinschaft)을 공유하고 있었음.
  - 신학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 상이한 사회체제 하에서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eins in Christus)였기 때문에, 신자나 교회지도자들의 상호 의견교환이나 방문, 상호 물질적인 지원 등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
  -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독 신교교회는 분리되기 이전에 하나의 교회조직으로 존재했으며, 공동의 예배의식, 공동의 성서번역 전통을 가지고 있어 형식적인 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 다른 분야의 조직체 분리에서와 같은 상호 이질화 현상은 일어날 수 없었음.

○ EKD는 냉전기에도 분단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동·서독 종교인이 참가하는 종교대회(Kirchentag)를 개최해 왔음.

-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동·서독 분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EKD의 활동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
  - 종교대회가 동·서독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었을 뿐더러, 종교대회를 통해 교회의 공통성이 유지되고 분단상황하에서도 독일인들의 종교적인 경험교환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음.
- 신교도의 민족제전과 같은 양상의 이 종교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없었으며, 1949년부터 초기에는 매년마다 개최되다가 그 후 매 2년마다 5일간에 걸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신교도의 만남의 광장이 되었음.
  - EKD 종교대회는 EKD 산하 전독일 교회의 거대한 회합체이자 신교도 간의 대화의 광장이었음.
- 1951년 베를린에서 종교대회는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라는 주제하에 개최되었고 동·서독인 65만 명이 참석했던 1954년도 라이프찌히 종교대회는 냉전시 동·서독인들 간의 거대한 만남의 기회이자 신교교회의식이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음.
  - 분단된 동·서독 주민이 국경을 넘어 종교대회에 참석하여,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모임이 종교대회를 통해 가능해졌고, 많은 신자들은 이 EKD

활동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기도 했음.

-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기 직전 서베를린에서 동·서독 합동 종교대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미 동독 공산당은 동·서독주민 간의 접촉 분리와 동독의 국가적 인정을 위해 이 종교대회의 방해 공작을 폈었음.
  - 종교대회가 열릴 때마다 동·서독 정부의 고위층도 "신교도로서" 만났는데, 정치적인 토론을 위한 접촉은 서로 원하지도 않았고 허용되지도 않았음.
  - 1957년 프랑크푸르트 종교대회 때부터 동독 지도층은 독일국가 연합안에 의거 "독일인들이여 협상의 한 테이블로"라던 종래의 구호를 폐기하고, 동독의 국제법적인 승인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종교대회에서조차 견해차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음.
  - 종교대회는 민족의 결속을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모색하는 행사지만, 동독 지도부에게는 이 행사가 서독 모델에 따르는 재통일 달성을 지향하는 모임으로 받아들여 졌음.
- 베를린 장벽 구축으로 종교대회에서 더 이상 독일 전체의 만남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 서독지역에서만 개최된 제한적인 종교대회에서는 민족통일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음.
- 그 이후 서독에서만 종교대회가 개최되었는데 80년대 초에 들어서 비로소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평화운동 집회형식의 종교대회는 다시 동·서독인들이 참석하는 독일인의 대화의 광장이 되었는데 1985년 뒤셀도르프 종교대회는 대 성황을 이루었음.
  - 이때부터 종교대회는 민족통일의 문제가 아닌 평화문제를 테마로하여 상당히 국제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진행되면서 동·서독 간의 안보정책적인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했음.
- 한편 동독에서도 종교대회 개최가 끊임없이 시도되었는데 비록 전국적인 신교도 모임은 없었지만 지역 종교대회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었음.
  - 동독내 종교대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와 사회주의적 사회하에서의 기독교의 위치에 관한 문제가 비교적 공개적이고, 자유스런 가운데 다루어졌음.
  - 1983년 루터 탄생 500주년을 맞아 지역종교대회가 7개나 개최 되었는데, 이 대회에는 동독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서독출신도 매우 많이 참석했음.

○ 동독의 카톨릭은 동독체제에서 교회의 구조가 바뀌기는 했지만, 로마교황청의 감독과 보호아래 기존 서독의 관구에 소속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래의 공통귀속성을 보존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동독 슈베린은 서독의 오스나브뤽 관구에, 에어푸어트는 풀라 관구에 소속되어 있었음.
- 정치적·군사적 분단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바탕을 둔 정신적인 유대감은 동·서독 지역 교회 간에는 늘 의사소통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결코 소멸되지 않았음.
- 그러나 서독의 카톨릭 교회는 목회자들의 동독으로의 자유왕래가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동독보다도 왕래가 잦은 제3세계나 기타 동유럽 국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임.

○ 동독내에서 카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은 동독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간호서비스가 다른 기관에 비해 친절했으며, 둘째는 서독 교회를 통해 전달된 최신 의료기구를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임.

- 동독 정부는 동일 관구내의 서독교회로부터의 인적인 지원(목회자 파견)은 거절했지만, 물질적인 지원은 묵시적인 합의하에 이를 허용해 왔음.

○ 로마교황청은 동·서독 분단 이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교구의 운영과 주교회의 개최문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음.

- 로마교황청의 분단 직후 첫 조치는 동독이라는 국가의 탄생에 부응하여 베를린 주교에게 동독지역 주교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음.
  - "베를린 교구회의"(Berliner Ordinarienkonferenz)로 명명된 이 회의에는 동독지역 7개 관구 대표 성직자가 참석했음.
- 독·폴 간 조약이 맺어진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 이후 1972년에는 폴란드와

동독의 교구를 재조직하였음.

- 1973년 7월 23일 바티칸은 베를린 지역 주교를 통해 동독의 Erfurt, Magdeburg, Schwerin 소재 주교 전권위임자를 상설 사도행정관(Apostolischen Administrator)으로 임명하면서, 서독지역 주교가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고 공표함.
  - 주교 전권위임자는 서독지역 주교로부터 임명되어 감독을 받으나, 사도행정관은 직접 로마 교황의 지시를 받았음.
- 1976년 4월 10일에는 로마교황 바오로 6세는 "베를린 교구회의"를 "베를린 주교회의"(Berliner Bischofskonferenz)로 개칭하고, 이 동독지역 주교회의를 서독지역 주교회의와 동급의 회의체로 인정함.
- 동독 정부는 교회분야에 있어서도 동독의 독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동독 카톨릭 교회의 독자성과 서독으로부터의 분리를 위해 바티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했으며, 동독지역 카톨릭 교회가 어느 정도의 독립적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바티칸은 국가 단위의 관구설정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관구설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성서가 동일하게 번역되어 읽히는 동일언어지역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음.

○ 동·서독 카톨릭 자매교회 간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접촉과 교류는 동독 정부의 안보의구심을 자극하여 오히려 접촉에 득보다 실이 많아, 단기적이고 간헐적이며 개인적인 접촉이 주로 이루어졌음.

- 모든 목회자 간의 접촉에서도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독의 규정과 법을 준수해야 했음.
- 순수교회행사나 구호사업 등이 일부 교회내 정치적인 참여그룹의 맹목적인 정치적인 정열로 인해 그 자체의 활동마저도 할 수 없게 만들지 않도록 동독의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서독 접촉을 해 왔음.
- 구 동독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현존하는 사회주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기본원칙을 지키며 대동독 정부와 타협을 해 왔음.

○ 80년대 평화의 문제에 대한 동·서독 교회의 입장

- 교회가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동·서 냉전의 주 전장인 독일에서부터 세계의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서독 교회가 인식을 같이 했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서독 교회 간, 또한 서독내의 교회 지도자들 간에도 의견이 달랐음.
  - 주요 쟁점은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억지체제(Abschreckungssystem)의 유지를 통해서 평화가 보장되느냐, 아니면 기존의 무기를 서로 폐기함으로써 평화가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였음.
- 동독 교회지도자들과 서독의 평화주의자들은 정치인들과의 타협을 배제하고 무조건적인 대량살상무기의 폐지와 기존 NATO의 군사 독트린인 억지전략의 폐지를 주장했음.
  - 동독 신교연합회는 1982년 NATO의 억지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억지전략의 대안으로서의 여러 가지 안보정책(예를 들면 군사적인 신뢰구축조치, 비핵지대화 정책, 공동안보 이론 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1986년에 동독 신교연합회는 호네커 당서기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평화의 리포트"(Friedensreport)를 전달하기도 했음.
  - 반면 서독측 교회 주류 평화운동단체(예를 들어 서독 신교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1958년 설립된 Aktion Suehnezeichen/Friedensdenst 같은 단체)는 기존의 억지전략의 완전 폐기는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안인 만큼, 기존 억지 전략의 틀 안에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군축·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통한 평화 보장을 주장했음.

○ 80년대 동·서독 간 핵심테마였던 평화 보장, 인권 보장, 환경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동독의 교회들은 동독 정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으며, 1989년 동독의 대변혁에 교회지도자들은 시민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정치변혁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음.

- 신교도들은 부단히 군사교육 대신에 평화교육을 변호했고, 동독 청소년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군복무 의무를 거부할 경우 사회적인 대체활동으로 평화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며, 국가 사회의 군사화가 초래하는 위협을 강조하였음.

- 신교교회는 동독체제내에서 유일한 반체제 자유운동단체들인 평화·환경·인권보호 단체들에게 교회의 보호 아래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했으며 이들이 동독의 민주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하고, 동독주민들의 시위가 폭력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음.
  - 동독자유총선에 의해 당선된 첫 수상인 로타 드 메지에르는 정치변혁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음: “교회는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보호처를 제공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변호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교회는 폭력 사용 금지를 옹호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혁명을 평화롭게 완수케 하도록 하였다”.

15-2. 공산당의 대교회정책

○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에 통치 기반을 두고 있던 동독 공산당은 그들의 정책 수행에 유리한 방향에서만 동독 교회에 활동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동독 교회지도자들은 교회의 존속과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권과 접촉을 가져왔음.

- 그러나 동독 사회에서 교회는 유일하게 동독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자성을 인정받았던 독립된 조직이었음.
  - 1947년 헌법 제39조에 의거 활동의 내용과 기구의 설립 등에 있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독자적인 교육 기관을 통해 신학자, 성직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음.
- 동독 정부의 대교회정책은 2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우선 공산당과 교회 간의 세계관적-이념적인 상이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주의 사회체제 유지에 유용하도록 교회를 사회주의적인 사회로 흡수 통합시키는 노력을 계속함.
  - 동시에 체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교회내의 잠재세력이 교회 밖에서 활동하면서 동독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회 바깥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단하였음.
-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교회가 국가의 결정사항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보이고, 국가는 교회의 독자성을 존중해 주는 선에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음.

○ 1949~1958까지 공산당의 대교회정책

- 동·서독 냉전기 동안 무신론적인 정치선전을 통해 교회 탈퇴운동이 장려되고, 기독교인에 대한 직업상의 차별을 통해 사회적 주요 직책에서 신자들이 배제되었음.
- 종교수업(강의)은 모든 학교에서 금지되었으며, 종교세는 더 이상 징수되지 않고, 자발적인 헌금에 의하도록 하였음.

- 교회 바깥지역에서의 모든 종교행사는 금지가 원칙이었음.

○ 1958~1969까지 공산당의 대교회정책

- 동독 정부는 이 기간 동안의 대교회정책은 대서독 독일정책과 관련하에서 추진했는데 서독 정부가 1957년 독일신교연합회(EKD)와 군종협약(Militaerseelsorge)을 체결한 이후, EKD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일전체 교회연합회로부터 동독지역 신교교회의 분리를 시도하게 됨.
  - 동독 정부는 종교교육과 관련된 EKD와의 협상일체를 단절하면서, 동독 신교교회 지도자들과만 협상을 시도하며 의도적으로 동·서독 신교교회의 분리를 추구했음.
- 1958년 동독 신교자들과 동독 정부는 공동케뮤니케를 발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상응하여 합법성의 기초 위에 국가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아울러 사회주의의 발전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였음.
  - Ulbricht 공산당 서기장은 1960년, 1950년대 이후 기존의 무신론적인 대교회정책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와 사회주의가 설정한 인본주의적인 목표 사이에는 아무런 상충성이 없다"라고 선언하였음.
- 한편으로는 동독 정부는 과학적인 무신론(Atheismus) 연구를 위해 학과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대중을 상대로 공공연한 반교회정책 내지는 사회주의적인 무신론을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공산당 당원의 교육과 이데올로기적인 무장을 위해서였음.
  - 공식적으로는 교회와 국가 간의 협력관계가 강조되고 사회주의가 설정한 "인본주의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었음.

○ 1969~1978까지 공산당의 대교회 정책

- 동독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동·서독 교회단체 간의 분리정책의 성과로 1969년 독자적인 동독 신교연합회가 설립되면서부터 동독 정부는 교회가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을 개발하고 대변하는 기관이 되도록 요구했음.
  - 1971년 동독 신교 연합회의 총회는 "우리는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와 병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주의 내에서의 교회(Kirche im Sozialismus)를 원한다"고 천명하기에 이름.
- CSCE 헬싱키 최종선언문 서명과 아울러 동독 정부는 교회에 대해 CSCE 참여에 따른 동독의 대외정책적인 목표와 효과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그 지지를 요청했음.
- 호네커가 들어서면서 동독 정부는 그간 교회가 요구해 온 사항들에 대해 완화조치를 취했음.
  - 신교 산하 사회복지 구호기관인 Diakonie 종사자들의 교육을 교회가 직접 담당하도록 함.
  - 낡은 동독 교회 건물들의 개축을 서독 교회의 헌금으로 재정보조되어 실시되도록 허용됨.
  - 기독교인들에 대한 직업상·교육상 차별조치가 점차 완화되어감.
    - » 동독 정부는 교회지도자들과의 관계개선에만 신경을 쓰고, 일반 신도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차별대우와 간섭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으나, 1976년 8월 18일 Zeitz시에서 Oskar Bruesewitz 목사가 공산당의 교회 간섭과 청소년들의 군사화 경향에 반대하며 분신자살한 이후 일반 목사와 평신도들 사이에서 국가의 대교회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교회지도부와 정부는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차별화 조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게 됨.
    - » 1978년 3월 호네커 서기장과 동독 신교연합회 지도부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접촉을 가졌는데, 호네커는 사회주의 하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고, 아울러 모든 동독주민들이 세계관과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음.
  - 매주 일요일 예배시간에 맞춰 예배방송을 포함한 라디오와 TV를 통한 종교정보 방송이 허용되었음.

○ 1978년 이후 공산당의 대교회정책

- '1978년 9월 1일부터 동독정부가 9학년,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군사교육을 도입하게 되고, 세계질서가 화해기에서 신냉전기에 돌입하게 되면서 평화의

문제가 대교회정책에서 쟁점이 되기 시작함.

- 동독 신교연합회는 이러한 동독 정부의 청소년 군사교육에 반대했으나, 동독 정부는 이를 관철하는 대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사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신교지도자들을 설득했음.
- 동독 신교연합회 측은 독자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하였음.
- 교회를 중심으로 동독에서 일기 시작한 평화운동에 대한 동독 공산당의 태도는 이중적이었음.
  - 우선 동독 정부는 서독 정부가 NATO와 추진하고 있던 유럽내 중거리 핵무기 배치와 관련하여 반대하기 위해, 서독의 평화운동단체와 동독의 평화운동단체가 반핵평화운동을 벌이는 것을 적극 지지하였음.
    - » 1979년 9월 1일(2차 대전 발발 40주년 기념일)에 동·서독 신교연합회 간의 공도예배를 통한 공동 평화담화문이 동독 공산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동·서독 신교단체는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평화문제를 논의해 갔음.
  - 그러나 이 신교의 보호하에 성장하기 시작한 평화운동단체가 체제변혁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고, 일반 주민들의 이 단체에 대한 지지가 점차 광범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함.
    - » 특히 서독의 언론 매체가 이들 신교단체들의 활동을 공산당의 독점적 지배체제하에서의 비판적인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활동 가능성을 내포한 영역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 방송을 동독의 일반 주민들이 청취하면서부터는 이러한 평화운동 단체에 대한 서독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고, 교회 밖의 신교의 활동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음.

15-3. 과거 서독교회의 대동독교회 지원

○ 50년대부터 서독의 교회는 자체재원과 헌금을 통해, 그리고 서독정부의 위임을 받아 정부 예산으로 동독의 교회, 나아가서는 동독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 왔음.

- 서독교회의 동독교회에 대한 연대의식에 기인한 물질적인 지원은 이미 분단 직후부터 헌금 및 현물이전을 통해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서방 각국으로부터 희사금이 소련 점령지역으로 전달되다가 서독경제의 부흥과 더불어 서독의 지원이 대종을 이루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초기의 지원은 주로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나 주 단위 교회본부가 담당하였으나, 신교복지구호단체(Diakonie)와 같은 중앙기구가 담당하기도 하였음.
- 초기에는 현물형식의 물질적 지원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재정적 지원 형식을 띤 지원이 점증하였는데, 이전의 방법에 대해서는 양독교회 간에 합의한 바는 없고, 동독정부가 허용하는 한, 동독정부와 재정분야의 적절한 이전방법 모색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은 대동독 지원은 서독의 신교단체(자유교회 포함)뿐만 아니라 구교단체도 하였는데 동독의 교회, 교회기관 유지에 절대적으로 긴요한 것이었음.

- 우선 동독정부는 동독의 교회단체 목회자의 봉급 지불 및 교회와 교회부속건물의 유지를 위하여 서독의 지원을 묵인했음.
- 신교의 Diakonie와 구교의 Caritas 같은 사회구호복지기구의 사회 봉사활동은 주로 서독의 지원에 의존하였음.
- 동독에는 76개 교회 부속병원(12,000 침대)이 있었는데 서독의 지원 덕분에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보다 훨씬 양호한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물론 고위급 당간부를 위한 병원보다는 못하지만).
- 특히 서독의 지원은 동독의 교회가 운영하는 양로원, 간병원, 직업 훈련소, 유치원 시설 유지 및 확충에 더욱 큰 의미가 있었음.

○ 서독교회의 동독교회 지원은 규모와 수행방법에 있어서 기독교적 연대의식을 통해 특이한 방법으로 정치적, 법률적 장애를 초월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특징이 있음.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독의 교회 단체, 교회부속병원, 양로원 및 기타 기관의 수백만에 달하는 인간들의 분단에 따른 고통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었으며, 물질적인 혜택과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어 무신론적인 사회에서 교회가 생존해 가고, 또한 그와 더불어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중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동독내 체제 저항세력 양성의 밑거름이 되었음.
- 따라서 SED 정권의 안정에 일시적으로 기여한 듯 한 이와 같은 물질적 지원은 결국 다른 여러 가지 지원과 마찬가지로 동독정권의 안정을 오히려 안으로부터 저해하여 종말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음.

15-3-1. 현물을 통한 물질적 지원

○ 동독의 교회단체, 교회, 교회산하기구에 대한 서독교회의 재화 직접 공급은 양적으로 막대하였으며 통독 직전까지 계속되었음.

- 교회단체의 회원들에게는 자애의 선물 소포, 의료 및 기타 생활용품이 우편을 통해 전달되었음.
- 교회단체에게는 건축자재 및 실내 장식품들이, 병원에게는 대량의 현대적 의료기구가 현물로 직접 전달되었음.

○ 신교의 지원은 후견 지원 및 자매 지원을 맺은 교회 및 단체 간에 서독의 교회단체나 또는 서독신교연합회(EKD) 산하 Diakonie 기구의 중앙공급(Genex 주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57~1990년도 간 현물이전 총액은 약 18억 DM으로 추정되며, 1945년부터 1960년 말까지 분단기간 동안 총 5억 2천만 DM의 현금과 현물이 동독으로 지원되었는 바,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단위 100만 DM).

- 식품, 섬유류, 의약, 건축재 155.0
- 식품 및 일용품(소포 470만 매) 71.5
- 외국으로부터의 희사금 20.4
- 노상모금, 헌금 60.0
- 교회재건을 위한 모금 6.5
- 후견지원(중앙지원 포함) 185.0

○ 교회 간, 교회단체 간 자매지원(Partnerschaftshilfe) 형식을 띤 지원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였는데, '57~'90년 간 총 13억 970만 DM에 달했음.

- 주로 섬유류, 식품, 건축재, 냉장고 등 일용품, 의약품, 동독이 수입 허가한 서적 등이 자매 단체에 의해 보내졌으며, 재원을 동독 자매교회인 서독측 교회와 EKD의 Diakonie 기구가 함께 마련하였으나, 자매지원에 대한 서독정부의 보조금은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했음.

○ EKD의 Diakonie 기구를 통한 중앙지원 공급

- '57~'90년 간 3억 4,670만 DM에 상당하는 재화가 동독으로 전달되었으며 통독 직전 수년 간은 연간 2,200만 DM 정도였음.
- 주로 의료기구, 종이, 건축재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이와 같은 물품은 서독의 Diakonie 기구가 한꺼번에 구매하여 동독에 공급하였으며, 그 재정의 50%를 서독정부가 내독관계성 예산으로 보조하였고, 내독관계의 예산지출항목은 "전통적 특수 성격의 지원대책 촉진"(Titel 68521)으로 되어 있었음.
- 서독에서는 특별규정을 통해 이러한 물품의 구매와 공급이 거래 세법상 내독경제교류의 일환으로서 취급되어 거래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 6%의 거래세를 물었으며, 동독정부도 이와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수입허가 조치를 내렸음.

○ Genex의 해외 에이젠트(Zuerich와 Kopenhagen에 있는)를 통한 Diakonie 기구의 물품주문에 의한 지원

- Genex 유한회사는 '57년 동독정부에 의해 동독주민을 위해 선물용역 회사로서 설립되어 원래 동독에서 생산되었으나 서방측 상표가 붙은 서방측 상품을 공급하며 외환을 벌어 들였음.
- '50~'90년 간 EKD의 Diakonie 기구는 Genex에게 대동독 교회지원용 물품공급을 발주했는데, 동 기간 총액은 1억 3,000만 DM('81년까지 9,620만

DM)으로 추정됨.

- 주요 취급품목은 차량, 산업재, 휘발유 등임.
- 비료, 파종용 곡물과 같은 Genex의 정상 취급품목이 아닌 품목도 있었는 바, 이와 같은 것은 아예 상품판매용 카타로그에도 없었음.
- Genex를 통해 특정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저렴하였으며, 동독산 차량에 있어서도 허가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음.

○ 서독 구교의 지원 역시 신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매지원이나 재화의 직접 공급, Genex 발주로 이루어졌음.

- Genex를 통한 지원이 신교보다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후기에는 신교보다 훨씬 이용도가 커져 Genex 발주량은 신교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됨.
- '90년까지 구교의 현금 지원공급은 5억 내지 10억 DM으로 추정됨.

15-3-2. A형 교회사업: 동독 교회지원 목적의 원자재 공급을 통한 재정이전

○ 동독의 교회나 교회기구는 현물 지원공급만 필요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직원의 봉급과 교회 사업 수행상의 기타 지불에 필요한 돈도 서독 교회에 의존해야 했음.

- 동독 교회의 자체 수입은 '56년 교회세 제도의 철폐 이후 연간 국가보조금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 교회운영자금의 절대량이 부족하게 됨.
- 국가의 보조금으로 교회의 재정수요를 충당해 나가려면 동독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될 우려가 있어, 당시 동독의 교회는 서독으로부터의 재정이전을 요청했음.

○ '50년대에는 DM의 동독 직접이전이 다음과 같은 근거 때문에 불가능하였음.

- 동독의 교회기관은 동독의 외환관리법상 DM을 직접 인수할 수 없었음.
- 서독측으로서는 DM 이전을 통해 동독에서 동독 마르크와 1:1로 교환하는 것이 그리 큰 매력이 없었으므로 서독의 독일연방은행 역시 이를 허용하지 않았음.
- 환산단위(VE)에 의한 지불방법도 베를린 협정체제에 부합하지 않았고, 동·서독 화폐 간 환율차이 때문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

○ '56. 12. 3 당시 동독 수상인 오토 그레테볼과 서독 신교의 지도층 간의 회담을 통해 교회 간 이전 지출문제에 있어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음.

- 그로테블이 DM과 동독 마르크를 1:1로 동독의 국영은행에서 교환하자고 제안한 이후, '57년 초 서독신교지도자인 Grueber와 동독 대외무역성 장관인 Rau 간에 특수형태의 "혼합이전" 방식에 합의함(소위 "A형 교회사업": Kirchengeschaeft A)
  - 이 방식에 의하면 동독의 대외무역상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대외무역성은 서독으로부터 DM이나 VE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공급받는 대신에 물가의 현시가 만큼을 동독 마르크로 환산(후일 외환교환용 마르크 = Valuta-Mark)하여 동독의 교회기구 회계장부의 대변에 기입하여, 이 범위내에서 교회의 운영자금을 조달토록 허용하였음.
- 재화공급의 규모와 방법은 서독 주립교회의 대표자가 서독의 신교를 위해 동독의 대외무역성과 상담을 진해하였으며, 동독에서는 1966년부터 대외무역성내에 외환확보 전담회사인 KoKo가 신설된(당시 차관이었던 샬크 골로드곱스키가 담당관이었음) 이후부터는, 이 기구가 전담하였음.

○ 이와 같은 원자재는 내독무역형식으로나 COMECON 국가로부터 그토록 유리하게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독 교회의 원자재 공급에 큰 관심을 가졌음.

- 처음에는 미국산 코크스 석탄과 곡물로부터 시작하여 세월이 경과 하면서 각종 원자재를 모두 망라하게 되었음.

신교의 A형 교회사업 내역(단위 100만 DM)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원유	28.0	28.0	20.2	20.0	15.0
구리	24.2	19.5	17.0	12.0	12.0
자연산 고무원료	10.0	10.0	11.5	12.0	12.0
텅스텐 원광 정제품	10.0	10.0	7.5	8.0	8.0
주석 원광 정제품	–	–	1.0	–	–
은	5.0	–	–	–	–
수은	2.0	3.0	3.0	4.0	1.0
산업용 다이아몬드	–	–	4.0	4.0	4.0
코크스	6.0	–	–	–	–
원두커피	10.0	10.0	10.0	10.0	10.0
양모	10.0	10.0	10.0	10.0	10.0

- 동독은 이와 같은 공급된 원자재를 자체 수요에 충당할 수도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매하기도 하였음.
  - 서독의 주립교회 대표자는 원자재를 국제시장에서 믿을만한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여 동독에 제공하였으며 이와 같은 원자재가 외국산이었으므로 내독무역이 아닌 통과무역상의 공급으로서 서독 연방경제성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음.
  - 단 은(Silver)만은 서독지역에서 구매하여 내독무역의 일환으로 상품송장 U(무상)로 동독에 공급되었으며 공급품은 거래가 면제되었음.

○ A형 교회사업에 의해 공급된 원자재는 현시가에 의해 동독 대외무역성이 동독 마르크로 환산, 동독의 교회기구에게 이전하였고, 동독의 교회는 자유로이 이 돈을 교회운영자금으로 활용했음.

- '57년도 신교의 원자재 공급 현시가는 이미 2,300만 DM에 달했고, 사업 시작 당시 동독측은 연평균 4,000만 DM을 거론하기도 하였지만, 연간 원자재 공급량은 4,000만 내지 5,000만 DM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안정되었음.
- '57년 이래 이와 같은 원자재 공급 형식의 이전 총액은 14억 DM에 이르렀는데 서독측 공급액과 동독측 현시가 환산액의 비율은 늘 공개되지 않았으며, 고정적이지도 않았는데, 신교측은 동독정부에 대해 1:1의 비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 협상에 따라 추가로 이루어진 특별공급은 동독측에 의해 DM 가치가 절상되어 계상되기고 하였음.

○ 그러나 동독 마르크로 환산한 현시가 기준 이전지출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재 특히 건축분야의 재원조달시 불충분함이 판명되어, 현시가를 외환교환용 마르크(Valuta-Mark)로 환산하여 이전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동독의 외환교환용 마르크(Valuta-Mark)는 대외무역을 위한 단순한 통계상의 계산단위가 아니라 동독내에서 사용되던 일종의 외화나 다름없는 기준치였으므로, 동독 마르크로 거래할 수 없는 물품의 환산에 이용되었음.
- Valuta-Mark에 의한 환산액의 교회 장부 대변기입은 1966년부터 수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 연도의 건축용 자재 구매를 위한 액수는 150만 DM이었으며 연간 구매량은 1974년도의 교회의 특수 건축계획에 다라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80년대에는 동독 마르크의 이전액보다 능가하기 시작하였는데 1966년 이래 EKD의 계산에 다르면 Valuta-Mark 대변의 원자재 공급액은 총 7억 DM으로 나타남.

○ 구교에 의한 대동독 재정지원은 1966년부터 시작됨.

- 대동독 공급은 프라이부르크 소재 구교 사회복지기관인 Caritas에 의해 단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간 고정적인 액수가 공급되다가, 수차에 걸쳐 증액되었으며 유일한·취급품목은 전해동(Elektre-kupfer)이었음.
  - 음극동 및 동선 막대기로서 서독산일 경우에는 상품 송장U(무상)와 함께 내독무역의 일환으로 공급되었음.
- 1966년에 시작된 구교의 A형 교회사업의 공급액은 340만 DM이었으며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0만 DM, 3,500만 DM으로 증액되다가 1983년에는 4,000만 DM이 됨.
- 동독 마르크 및 Valuta-Mark에 대한 환산비율은 알려진 바 없음.

○ 서독의 신·구교는 A형 교회사업을 통해 총 28억 DM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동독으로 공급하였으며, 그 중 21억 DM을 신교가, 7억 DM을 구교가 담당하였음.

-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재원은 신·구교 공히 직접 마련하되, 서독정부가 내독관계성 예산(Titel 68521)으로 50%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15-3-3. B형 교회사업: 인도주의적 목적(정치범 석방, 이산가족 재합류)을 위한 원자재 이전

○ 이 사업은 이미 1-10장[동독지역 정치범 석방을 위한 내독 간 비밀 거래]에서 전술한 바 있음.

- 이 사업은 연방정부(내독관계성)의 위임을 받아 EKD가 "특별사업"으로 참여하였는데, 실무는 슈튜트가르트 소재 신교 사회복지 구호 기관인 Diakonie가 관장했음.
- EKD의 경리부장은 매년 계산서를 검토한 후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서독의 연방회계감사원장은 비밀사항으로 직접 인지하였음.
- B형 교회사업의 원자재 공급은 내독관계성 예산(Titel 68521)으로 100% 충당되었음.

A · B형 교회사업에 의한 지원액

단위: 백만

연 도	A형 교회사업			B형 교회사업 EKD (서독 DM)
	EDK		Caritas	
	동독 마르크	VM	동독 마르크/VM	
1957	23.5	–	–	–
1958	31.5	–	–	–
1959	36.2	–	–	–
1960	33.2	–	–	–
1961	34.7	–	–	–
1962	33.9	–	–	–
1963	36.3	–	–	–
1964	36.2	–	–	37.9
1965	40.9	–	–	67.7
1966	56.0	1.5	3.4	24.8
1967	43.0	4.5	15.0	31.5
1968	45.9	6.1	20.0	28.4
1969	40.1	7.0	20.0	44.9
1970	44.0	9.0	20.0	50.7
1971	44.1	11.3	20.0	84.2
1972	44.1	18.0	20.0	69.5
1973	44.0	14.0	25.0	54.0
1974	48.0	17.3	20.0	88.1
1975	40.0	23.0	25.0	104.0
1976	44.0	30.0	30.0	130.0
1977	51.0	30.2	35.0	144.0
1978	51.0	34.0	35.0	168.4
1979	44.0	33.9	35.0	107.0
1980	44.0	39.7	35.0	130.0

연 도	A형 교회사업			B형 교회사업 EKD (서독 DM)
	EDK		Caritas	
	동독 마르크	VM	동독 마르크/VM	
1981	44.0	45.6	35.0	179.0
1982	44.0	51.5	40.0	102.8
1983	44.0	51.5	40.0	388.0
1984	44.0	43.8	40.0	388.0
1985	44.0	56.3	40.0	302.0
1986	44.0	54.0	40.0	195.0
1987	44.0	47.6	40.0	163.0
1988	44.0	42.5	40.0	232.1
1989	44.0	42.7	40.0	267.9
1990				65.0
	1,386.0	696.7	708.4	3,436.9

참 고 문 헌

1. 정치적 화해

1.1. 내독관계의 성격

Birnbaum, Karl E. : East and West Germany. A modus vivendi. Farnborough 1973 pp 1-157

Blumenwitz, Dieter : Was ist Deutschland - Staats- und Völkerrecliche Grundsätze deutschen Frage und ihre Konsequenz. Bonn 1982.

Bredow, Wilfried von : Deutschland - ein Provisorium ? Berlin 1985.

Bruns, Wilhelm: Deutsh-deutsche Beziehungen. Prämissen, Problem, Perspektiven. Opladen 1984. pp. 1-212

Hacker, Hens: The German question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KiRN, Michael/Bluemenwitz, D. : Die Auswirkungen des Karlsruher Urteils auf die Verfassungs- und völkerrechtliche Situation der BRD, in: Deutschland nach den Verträgen. 1974. pp. 35-52

Kuppe, Johannes: Die deutsch-deutschen Beziehungen aus der Sicht der DDR. in: Weidenfeld, W./öimmermann, H.(Hrsg,): Deutschland Handbuch. München 1989. pp. 551-567

Mahnke, Hans-Heinrich: Die besonderen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Karlsruhe 1979. pp. 145-186

Ders.: Der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iblik Deutschland und der DDR, in: Deutschland-Archiv 11/1973 p. 1163ff.

Mattfeld, Antje: Modelle einer Normalisierung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Eine rechtliche Betrachtung. Düsseldorf 1973.

pp. 1-198

Schmidt-Jortzig, Edzard: “Gleichberechtigte” und “besondere” Bezi-hungen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durch den Grundvertrag. in:
Deutschlnad-Archiv 6/1976. p. 613ff.

1. 2. 내독관계의 중요쟁점

Bernhardt, Rudolf: Völkerrechtliche Bemerkungen zum Grundvertrags-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Recht im Dienst des Friedens.

Cieslar, E./Teitler, F.-C: Der Streit um den Grundvertrag. Eine Doku-mentation. München Wien 1973. pp. 1-373

Der Grundvertrag mit der DDR. in: Deutschlnd-Archiv 11/1972. p. 1205ff

Freiberg, Ralf/Doeker, Günther: Development of intra-German relations: time tabl 1969-1978. in: Doeker/Brückner: FRG and GDR in international rela-tions. 1979. pp. 463-483

Fritsche, Robert: Funktion und Bestand der deutschen Staatsanehörig-keit nach dem Grundvertragsurteil. Frankfurt/M. Bern 1981. pp. 1-132

Geiger, Willi: Der Grundlagenvertrag und die Einheit Deutschlands. in: 40 Jahr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9 pp 53-64

Haack, D./Hoppe, H.G(Grsg.): Das Wiedervereinigungsangebot des Grund-gesetzes. Köln 1989. pp. 1-280

Hacke, Chritian: Soll und Haben der Grundlanenvertrages. in: Deutsch-land-Archiv 12/1982. pp. 1-280

Hacker, Jens: Deutsche unter sich. Politik mit dem Grundvertrag. Stuttgart 1977. pp. 1-192

Klein. Eckardt: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Ostverträge. Bonn 1977.

Kupper, Siegfride: Die innerdeutschen Beziehungen im Wandel. in: Deutschland, Europa und die Welt. 1986. pp. 16-25

Mahnke, Hans Heinrich: Rechtsprobleme des Grundlagenvertrages. in: Deutschland-Archiv 2/1974. p. 130ff

Makarov. A.N./Mangoldt, H.v.: Deutsches Staatsangehörigkeitsrecht. Frunk furt/M. 1981

Magoldt, Hans von: Zur heutigen Bedeutung der Entschidung des Grund-gesetzes für 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in:Hartmut mauer(Hrsg.): Das akzeptierte Grundgesetz. 1990. p 119ff

Nawrocki, Joachim;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2 Aufl. Berlin 1988.

Sauer, Heiner/Plumerzer, Hans: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n SED-Staat. in:
Arbeitsgemeinschaft 13. August. Esslingen münchen 1991. pp. 1-305

Schierbaum, Hans-Jürgen: Intra-German Relattions. Development, prob-lems, facts. in: R. Politologie/Soziologie. Bd. 8. München 1979.
pp.1-68

Seoffert, Wolfgang: Auf der Höhe der Zeit. Zu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m sogenannten Teso-Fall. in: Deutschland-Archiv 4/1988. p. 375ff

Sonnenberger, H.J.?mangoldt. H.v: Anerkennung der Staatsangenöri-gekit und effektive Staatsangehörigkeit natürlicher Personen im
Völker. in: Berichte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Völkerrecht. Heidelberg 1988

Wengler, Wihelm: International law problems of the situation of Germany in: Review eguptienne de droit international. 1959. pp 1-18

Ders.: Anerkennung und Umdeutung der DDR-Staatsbürgerschaft in 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des Rechts. in: Recht in Ost und West 1988. p. 144ff

Wilke. Kay-Michael: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utsche De-

mokratische Republik. Grundlagen und ausgewählte Probleme. Berlin 1976.

Zieger. Gottfried: Staatsangehörigkeit im geteilten Deutschland-Versuch einer dualistischen Begründung. in: Deitschland-Archiv 3/1972 p. 249ff

1. 3. 정상회담 및 고위급 접촉

Deutschland-Archiv Dokumentaion: Gespräch mit der DDR. in: Deutschland-Archiv 4/1970 pp. 402-409

Deutschland-Archiv Dokumentaion: Das Gespräch von Kassel. in Deutschland-Archiv Dokumentaion 6/1970 pp. 620-648

Deutschland-Archiv Dokumentaion: Bindeskanzler Schmidt in der DDR. in: Deutschland-Archiv Dokumentaion 2/1982 pp. 201-205

Ludwig, Harold: Deutschlandpolitik "Rache für Erfurt ?" in: Deutschland-Archiv 6/1970 pp. 656-658

Schlosser, Horst Dieter: Verbal ein Sieg der DDR. Was Erich Honechker und Helmut Kohl getrennt und gemeinsam sagten. in: Deutschlnad-Archiv 11/1987 pp 1111-1118

Spittmann, Ilse: Gespräch mit der DDR. in:Deutschland-Archiv 3/1970 pp. 324-327

Ders.:Deutscher Gipfel in Erfurt. in: Deutschland-Archiv 4/1970. pp 431-433

1. 4. 분쟁조정기구

Bluemenwitz, Dieter: Die Errichtung Ständiger Vertretungen im Lichte des Staats- und Völkerrechts. Baden-Baden 1975. pp 1-136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Die Grenzkommission. Eine Dokumentation über Grundlagen und Tätigkeiten. Bonn 1986

Casten. Werner: Die Ständige Vertretungen in Bonn und Ost-Berlin Bonn 1987 pp 69-70 83-97&98-126

Mahnke, Hans Heinrich: die Ständige Vetretungen der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in: Jahresbuch für internationales Recht. Band 17 Berlin 1976 pp 36-59

1. 5. 내독관계에 대한 동서독 기관 관할권

Casten, Werner: Die Ständige Vertretungen in Bonn und Ost-Berlin Bonn 1987. pp 58-74

Rüss, Giesela: Anatomie einer Politischen Verwaltung. München 1973.

1. 6. 정단 간 접촉 · 교류

Arinkel, Wolfgang/Rodejohann, Jo(Hrsg.): Das SPD-SED Papier. Freiburg 1988 pp 34-120

Bahr Egon: Gemeinsame Sicherheit -Voraussetzung für kollektive Sicherheit. in: S + F Nr. 1 1980. pp 40-43

Blank, Karl: Beiträge zum innerdeutschen Gewerkschaftsdialog. in: Die DDR. Realitäge-Argumente. Bd. 1. Bonn Bad-Godesberg 1971

Blumenwitz, Dieter/Zieger, Gottfried: Die deutsche Frage im Spiegel der Parteien. Köln 1989

Brocke, Rudolf Horst: Deutschlandpolitische Positionen der Bindestagsparteien - Sunopse - Erlangen 1985

Bundesministerium fü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DDR-Handbuch Bonn 1985

Der Spiegel: Affären: Das heimliche Zusammenspiel von CSU- und SED-Grössen. in L DerSpiegel Jg. 45 Nr. 48. Hamburg 24.08.1992 pp 44-49

Ders. : Parteien: Archive enthüllen den Umgang con SPD- mit SED-Politikern. in: DerSpiegel Jg. 46 Nr. 35. Hamburg 24.08.1992 pp 44-49

Ders.: Der Historiker Christian von Ditfurth über die SPD/SED-Akten. in: Der Spiegel Jg. 46. Nr 35 Hamburg 2408. 1992 pp 50-65

Fühlberth, Georg: KPD nd DKP 1945-1990. Heibronn 1990

Lapp, Peter Hoachim: Die befreundeten Parteien der SED. Köln 1988. pp.71-132

öüäßereinbarung FDGB-DGB in: Deutschland-Archiv 7/1985 p. 688ff

Weber, Herrmann: DDR, Grundriss der Geschichte 1945-1990. Hannover 1991. pp 75-96

1.7. 서독내 공산당의 활동과 서독정부의 대응

Presse- und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Hrsg.) : Die Kommunistische Partei in Deutschland aufgelöst. in : Bulletin Nr. 154/1956 pp 1481-1483

Fühlbert, Georg: KPD und DKP 1945-1990 Heilbron 1990. pp 91-143 Ludwig, Harald: kommunisten in der Bundesrepublik in: Deutschland-Archiv, 10/1968 pp 888-891

Winterfeld, von Achim: Das Potsdamer Abkommen, das Grundgesetz und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in: Europa-Archiv 10/1956 pp 9203-9212

1. 8. 동서독 간 간첩사건

Bundesministerium der Innern(Hrsg.): Jahresbericht des Verfassungsschutzes 1976 pp 93 - 95 & 1977 pp 125-140

Crame, Dettmar: Schmidt statt Brandt. in: Deutschland-Archiv 6/1974 pp 561-563

Der Spiegel: Nr. 18/1974 p . 29 Nr. 26/1976 p. 26

Deutschland-Archiv Dokumentation; DDR-Reaktion zum Spionagefall Guillaume und zum Rütritt Brandts. Die DDR zum Regierungswechsel. pp 637-649

Rexin, Manfred: Wachwechsel in Bonn. in: Deutschland-Archiv 6/1974 pp. 564- 567

1. 9. 인권문제

Ammer. Thomas: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der DDR. In: Deutshland-Archiv 9/1985/ pp 948-959

Bruns, Wilhelm: Menschenrechtsaspekte und DDR. in: Deutschland-Archiv 8/1978 pp 848-853

Ders: Die DDR vor dem Menschenrechtsausschuss der UNO. in: Deutschlane Archiv 11/1984 pp 1193-1187

Frichke, Karl Wilhelm: Opposition in der DDR Köln 1984. pp 11-30

Ders.:Zur Menschen- und Grundrechtssituation politischer Gefangenen in der DDR Köln 1986. pp 17-23

Mahnke, Hans-Heinrich: Die Menschenrechtsfrage in den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in : Sowjetsystem und Ostrecht 1985 pp 805-831

Meyer, Thomas: menschenrechte in Ost und West-übereinstimmungen und Differenzen. in: Deutschland-Archiv 7/1989 pp 786-768

Wiemer, Wolfgang: Auf der Suche nach einem dialogfähigen Ansatz in der Menschenrechtsdisktssion. in: Deutschland-Archiv 7/1986 pp786-768

Wiemer, Wolfgang: Auf der Suche nach einem dialogfähigen Ansatz in der Menschenrechtsdiskussion. in:Deutschland-Archiv 9/1986 pp 953-958

Zeitler, Franz-Christoph: Die menschenrechte im geteilten Deutschland in: Dieter Blumenwitz (Hrsg.): Partnerschaft mit dem Osten. pp. 191-216

1. 10. 정치범 석방

"DDR-Häftlinge gegen Dm- ein Milliardenschwindel" Die Zeit vom 28.08.1992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03. Juni 19920

Geissel, Ludwig: Unterhändler der Menschlichkeit. Erinnerungen. Stutt-gart 1991. pp. 1-480

Meter, Michel: Freikauf. Menschenhandel in Deutschland. Wien Hamburg 1977 pp 1-218

Przybylski, peter: Tatort Politbü개. Band 1/2. Berlin 1991&1992

Reblinger, Ludwig A.:Freikauf. Die Geschäfte der DDR mit politischen Ver-folgten 1963-1989. Frankfurt/m. 1991. 99 1/251

Volze, Armin: Kirchliche Transferleistung in die DDR. in: Deutschland-Archiv 1/1991. 99 59-65

Ders: Eine Banannen-Legende und andere Irrtüer. in: Deutschland-Archiv 1/1993 pp 58-66

1. 11. 행정 · 사법공조

Röper, Erich: DDR-Behörden sind Deutsche Behörden. in: Deutschland-Archiv 5/1988. pp. 507-5112

Roth, Margot: Zwei Staaten in Deutschlnad. Opladen 1981. pp. 85-89

Wilke, Jay-Michael: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DR. Grundla-gen und ausgewählte probleme des geegenseitigen Verhäßltnisses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Berlin 1976. pp. 290-311

2. 외교 · 안보와 내독관계

2.1. 서독의 신동방 정책과 독일통일

Bahr, Egon: Rede vor der Evangelischen Akademie Tutzing am 15.7.1963. in: Deutschland-Archiv 8/1973. pp. 865-873

Ders.: Was wird aus den Deutschen? Reinbek 1982

Ders.: Vierzig jahre Deutschlandpolitik - Stationen und Entwicklungen in: SPD-Bundestagsfraktion Rücksicht auf Deutschland. Bonn 1993 pp 3-9

Bender, Peter: Neue Ostpolitik. München 1986

End, Hinrich: Zweimal deutsche Aussenpilitik. Internationale Dimen-sion des innerdeutschen Konflikts. in: Bibliothek Wissenschaft und poilitik Bd. 1 Köln 1973. pp 1-213

Gaus, Gümter: Wo liegt Deutschland? Hamburg 1983

Görtemaker, Manfred: Die unheilige Allianz. München 1979

Griffith, William: Die Ost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uttgart 1981

Jäger, Thomas: neue Wege in der Deutschlandpolitik. Erlangen 1986 pp 30-80

2. 2. 동독의 대서방 외교정책

Arms, Wilhelm: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DR in der internatio-nlen Politik. in: Eckhardt Jesse(Hrsg.): BRD und DDR. Berlin 1982 pp 377-382

Billa, Marcel: Zur Aussenpolitik der DDR. in: Deutschland-Report 4 von Konrad=Adenauer-Stiftung pp 1-54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DDR-Handbuch pp 1-54

End, Heinrich: Zweimal deutsche Aussenpolitik. Internationale Dimen-sion des innerdeutschen Konflikts. in: Biblionthek Wissenschaft und Poilitik. Bd.1. Köln 1973 pp 1-213

Fink. hans-Jürgen: Die DDR im Westen. in: Deutschland-Archiv 3/1979 pp. 290-294 7/1979 pp 495-497 12/1979 pp 1299-1302

Groot, Gerad-Rene de: Staatsangehörigkeit im Wandel. Köln Den Haah

1989

Herrmann, Detlef: Koexistenz, Ideologie und Wirklichkeit. in: Deutschland-Archiv 12/1975 pp.1262-1265

2. 3. CSCE와 내독관계

Auswärtiges Amt(Hrsg.):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Bonn 1986

Dobrosielski, Martin: Der "Dritte Korb" im KSZ-Prozess. in: Hans-D Jacobsen, Heinrich machowski, Dirk Sager: Perspektiver fü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pp 441-455

Delbrück, Jost: Grünbuch zu den Folgewirkungen der KSZE. Köln 1977 pp 79-104

Hennig. Otto: Die Auswirkungen der Schlussakte von Helsinki auf die innerdeutsche Beziehungen. in: Bulletin vom 7.7.1983 Nr 75 p.693ff

Kristof, Erich: Das Wiener KSZE - Folgetreffen aus deutschland-politischer Sicht. in: Deitschland-Archiv 4/1989. pp 39-406

Mahnke, Hans heinrich: Die KSZE und die deutsche Frage. in: Deutschland-Archiv 9/1976 pp 922-932

Shcweissfurth, Theodor: KSZE und Deutsche Frage. in :Deutscheland Archiv 9/1976 pp 936-939

Volle, Hermann-Wagner(Hrsg.): Konferenz übe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Das Belgrader KSZE-Folgetreffen. in: Beiträge und Dokumente aus dem Europa-Archiv

Wettig, Gerhard: verwirklichung der KSZE - Schlussakte durch UdSSR und DDR. in: Deutschland-Archiv 4/1977. pp 389-415

Ders.:Der östliche Kampf gegen den Informationsfluss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utschland-Archiv 10/1976. pp. 1039-1047

2. 4. UN에서의 동 · 서독 활동

Bluemenwitz, Dieter: Die deutsche Frage in den Vereinten Nationen seit dem Beitritt vo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DR. in: Deutschland und die Vereinten Nationen. Bonn 1981

Bruns, Wilhelm: Die uneinigen Vereinten. Zum Verhalten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bei der 29. bis43. UN-Generalversammlung. in: Deutschland-Archiv ff.

"Die beiden deutscher Staaten in den Vereinten Nationen: Rückblick und Bilanz". Deitscje Gesellscjaft für die Vereinten Nationen, Bonn 1990

Pawelka, Peter: die UNO und das Deutschlandproblem. Das Deutschlandproblem im Spannungsfeld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Tübingen 1971

2. 5. 군사 · 안보분야의 교류 · 협력

Bagr, Egon/Lutz, Dieter(Hrsg.): Gemeinsame Sicherheit. Idee und Kon-zept. Bd. I. Baden-Baden 1986. pp 83-158

Ders.: Sicherheit für und cor Deutschland. München 1991. pp. 119-163

Bruns, Wilhelm: Zur sicherheitspolitischen Rolle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in: Deutschland-Archiv 2/1988 pp 174-176

Gesamtdeutsches Institut (Grsg.): Hinweise für Geschenksendungen in die DDR und nach Berlin(0st). Bonn 1989

Heisenberg, Wolfgang/Lutz, Dieter(Hrsg.): Sicherheitspolitik Kontro-vers. Baden-Baden 1987

Martin, Ernst: Zwischenbilanz: Deutschlandpolitik der 80er Jahre Stuttgart 1986. pp 26-48

Seidelmann, Reimond: Deutsch-deutsche Rüstungskontrollpolitik ? in: Deutschland-Archiv 5/1984 pp 480-487

Ders.: Die Vereinbarung zwischen SPD und SED zur Schaffung einer Chemiewffenfreien Zone. Eine politische Bewertung. in: Deruschland-Archiv 9/1985 p . 935ff

Ders.:SPD und SED zir Schaffung eines atomwaffenfreien Korridors. Eine politische bewertung. in: Deutschland-Archiv 2/1987. p 134 ff

Voigt. Wolfgang: Streitfall Frieden. Heidelberg 1984

Weilemann, Peter R.: "Chemiewaffenfreie Zone" Ein Dauergeschenk der SPD. in Deutschland-Archiv 9/1985 p 943 ff

3. 인적교류(통행문제)

3. 1. 협상 및 협정체결

Adler-Karsson, GunnarL The US Embargo: Inefficient and Counterprofuctive. in: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Wirtschaftsbeziehungen

35.J. 1980.pp 170-187

Der Verkehrsvertrag mit der DDR. in: Deutschland-Archiv 7/1972 p 762ff

Gesamtdeutsches Institut(Hrsg.): Der Verkehrsvertrag. Bonn 1975

Roth, Margit: Zwei Staaten in Deutschland. Die sozialliberale Deutschladn-politik und ihre Auswirkungen 1969-1978 Opladen 1981

3. 2. 여행 및 방문교류

Baumann, Michael: innerdeutscher Tourismus. in: Deutschland-Archiv 5/1990. p. 750 ff

Beratungsstelle der Bundesregierung für den innerdeutschen Reise-verkehr im Gesamtdeutschen Institut. in: Deutschland- Archiv 10/1983 p.1023 ff

Bundesministerium für den innerdeutschen Reisd-verkehr im Gesamt-deutshen Instityt. in: Deutschladn-Archiv 10/1983 p. 1023ff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Entwurf einer Neufassung der Richtlinien für Hilfsmassnahmen zugunsten von Besuchern aus der DDR und Berlin(Ost). Bonn

Fastenrath, Ulrich: Erhöhung des Zwangsumtausches und vertraglichen Bindungen. in: Deutschland-Archiv 1/1981 p.44 ff

"Innerdeutscher Reiseverkehr 1984 gestiegen." Deutschland-Archiv 3/1985. p 237ff

Probst, Peter: Neue DDR-Massnahmen im innerdeutscher Reiseverkehr. in: Deutshcland-Archiv 4/1968 pp 434-439

Redaktion(Hrsg.): Auslandstourismus und innerdeutscher Reiseverkehr in: Deutschland-Archiv 1/1972 pp. 14 f

Roth, Margit:Der Mindestumtausch-Ein innerdeutsche Reiselust-Die Entwicklung des Verkehswesens. in: Deutschland-Archiv 3/1973

p.282 ff

3. 3. 동독주민 탈출 및 합법이주

Arp, Hans-Peter: Integrationsprobleme der übersiedler aus der DDR. Darstellung aus der Sicht eines {raktikers. in: Deutschland-Archiv 4/1986 p.372

Bundesministerium des Innern(Hrsg.): Eingliederung der Vertriebenen, Flüchtlngen und Kriegsgeschädig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1982 pp 84-90

Büscher, Wolfgang: "Warum bleibe ich eigentlich?" Reaktionen der ecangelischen Kirchen in der DDr uf die Reisewelle. in:Deutschladn-Archiv 7/1984 pp 61- 80

Finn, Gerhard: Die Opfer der Mauer. in: Deutschland-Archiv 8/1981 p. 790ff

Friedrich, Christian: Zur psychologischen Situation von DDR-Zuwanderer-erern. in: Deutschland-Archiv 5/1988 p. 526 ff

Hilmer, Richard/Köhler, Anne: Der DDR läuft die Zukunft davon, Die

übersiedler- und Flüchtlingswelle im Sommer 1989. in:Deutschland-Archiv 11/1989. p. 1220 ff

Hofbauer, Hans: Die berufliche Eingliederung con übersiedlern aus der DDR und Berlin(Ost). in: mitteilungen aus dem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sinstitut. 1985.pp 340-355

Kimminich, Otto:Fluchthilfe und Flucht aus der DDR i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Werkhfte H. 24 Frankfurt/M. 1974 p1-98

Koch, Reichard H.: Flucht und AUsreise aus der DDR. Ein Beitrag zum: Wohlbekannten" in: Deutchland-Archiv 1/1986 p.147 ff

Köhler, Anne: Ist die Übersiedlerwelle noch zu stoppen? Ursachen- Erfah-rungen - Perspektiven. in: Deutschland-Archiv 3/1990 p 425ff

Ders & Ronge, Volker: Ein Test auf die Wiedervereinigung? Die Reak-tion der Bundesdeutschen auf die übersiedlerwelle. in: Deutschland-Archiv 1/1985 p 41 f

Oucardm ErnstL Schutz bei Krankheit für DDR-Bürger sowie Aus-und übersid=edker, ubLSizuake Sucgerheit. Zeitschrift für Sozialpolitik Jg. 39 Nr. 3. Köln 1990. pp 81-82

Pratsch, Christina/Ronge, Volker: Ganz normale Bundbürger ? Zur Inter-gration von DDR-übersiedlern nach fünf Jhren im Westen. in:

Deutschland-Archiv 8/1989 p. 904 ff

Recht in Ost und West(Hrsg): die innerdientlichen Bestimmungen der DDR zu übersiedlungen, Eheschliessungen mit Ausländern, in: Recht in Ost und West Jg. 35.Nr.9. Berln 1991. pp. 280-286

Ronge, Volker: Die Kinder der übersiedler aus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1/1972 p 14 f

Ders.: Die soziale Integration von DDR-übersiedlern in der Bundesrep- lik Deutschland.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Jg. 40 Nr. 1-2

München Frankfurt/M. 1990. pp 39ff

Voigt, Belitz/ Demiritz, Meck: Die innerdeutsche Wanderung und der Ver-einigungsprozess. Soziodemographische Struktur und Einstell ung. in: Deutschland- Archiv 5/1990 p. 732ff

Wendt, Hartmut: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 - Bilanz einer 40 jährigen Geschichte von Flucht und Ausreise. in: Deutschland-Archiv 4/1991 p.386 ff

3. 4. 국경지역 개발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Ratgeber Zo-nenrandförderung. Bonn 1987

Pagel, Günter: Die Arbeit der Grenzkommission. Zum Regierungsprotokol1 über die deutsch-deutsche Grenze. Köln 1980

3. 5. 동 · 서독 교통망 확충 공통 프로젝트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Vorschläge der Reguerybg der DDR an die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dn.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Reihe II/Band 2. p. 428

Der Souegek: Nr 52/1975

Die Zeit vom 26.03.1976 p. 8

Roth, Margit: Zwei Staaten in Deutschland. Opladen 1981. pp 125-127

4. 경제교류 · 협력(통상문제)

4. 1. 내독교역의 국제정치적 및 국내정치적 재조명

Bopp, Helmut: Wirtschaftsverkehr mit der DDR. Allierte Rechtsgrund-lagen, Warenverkehr, Dienstleistungsverkehr. in: Das deuusche

Bundesrecht. Baden-Baden 1983

4. 2. 내독교역의 시작과 협상적 근거

Gross. K.-H: Entstehung und Bedeutung des innerdeutschen Handels. in: Deutschland-Archiv 5.1978

Kupper. S.: Der unnerdeutshe Handel. Rechtliche Grundlagen, plitische und wirtschaftliche Bedeutung. Köln 1972

Rauh, Siegfried: Regelungen des innerdeutschen Wirtschaftsverkehrs zusmmenstellung amtlicher Texte. Köln 1982

4. 3. 내독교역의 현황과 발전과정

Buck, Hansjörg F.: Der innerdeutsche Handel: Bedeutung, Rechtsgrundlagen, Geschichte, Organisation, Entwicklung Proleme. in: Inner-deutsche Rechtsbeziehungen. Deutsche Rechtsakademie. Heidelberg 1988. pp. 211-302

Cornelsen/Lambrecht/Melzer: Die Bedeutung des innerdeutschen Handels für die Wirtschafr der DDR. DIW SOnderhefr 138 Berlin 1983

Har,dt, John p.: The future of inter-German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in: Economic relations with the Sovjet Union. 1985. pp 147-167

Lambrecht, Horst: Die Entwicklung des Interzonenhandels von seinen Anfänngen bis zur Gegenwart.l Sonderheft des DIW. Berlin 1965

Ders. : Der Handel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n übrogen Ländern. Berlin 1977

Ders. : Der innerdeutsche andel - Ein Güteraustausch im Spannungsfeld zwischen Politik und Wirtschaf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Hefr 40. 1982

Ders. & Wessels. H.:Beschäftigungsaspekte des innerdeutschen Handel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utschland-Archiv 10/1990 p. 1694 ff

Meier, Harry&Sieggrid: Vom innerdeutschen Handel zur deutsch-deut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gemeinschaft. Köln 1990

Nehring, Sighart: Die Wirkungen von Handelspräferenzen im Warenaustausch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Tübingen 1978 tausch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Tübingen 1978

Riley, Hannelore/Schuster, f.: Untersychungsverfahren bei Dumping- und Niedrigpreiseinführen. inL Wirtschaft und Wettbewerb, 53. Jg. 1983. pp 765-775

Rösch, Franz: Thirty Years of the Berlin Agreement - Thirty Years of Inter-German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Thübingen 1981. pp. 525-1000

Schlemper, Annemarie: Die Bedeutung des innerdeutschen andels. Eine empirische Analys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Göttingen 1978

Schmidt, Paul-Günther: Die Entwicklung der innerdeutschen Wirtschafts- und Finanzbeziehungen im Spannungsfeld politischer und ökonomischer Interessen. in: Aufsätze zur Wirtschafts[olitik. Nr. 16. Forschungs-institut für Wirtschaftspolitik an der Universität Mainz. 1986

4. 4. 내독교역의 청산지불

Schmidt, Paul-Güther: Internationale Währungspolitik im sozialisti-schen Staat. Stuttgart 1985. pp. 365-382

Volze, Armin: Geld und Politik in den innerdeutschen Beziebungen 1970-1989. in: Deutschland-Archiv 3/1990. p. 382ff

Vortmann, Heinz/Schwartau. Cord: Zur Berechnung von Verbrauchergeldparitäten zwischen D-Mark und Mark der DDR. in: Deutschland-Archiv 1/1985. p. 39ff

4. 5. 내독 간 자본거래

Plötz, Peter/Bolz, Klaus: Westhandel der DDR. HWWA Institut für Wirt-

schaftsforschung. hamburg 1987

Spittmann, Ilse: Der Milliardenkredit. in: Deutschland-Archiv 9/1983. p 789ff

4. 6. EC와 내독교역

BIsckup, Reinhold: Deutschlands offene Handelsgrenze. Die DDR als Nutz-niesser des EWG-Protokolls über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Frankfurt/M. 1976

"Die Bedeutung des innerdeutschen Hnadel für die Beziegungen der EWG zur DDR" Deutschland-Archiv 3/1974

Morawitz, Rudolf: Der innerdeutsche Handel und die EWG nach dem Gr-und-vertrag,. in: Europa-Archiv 1/1973

Schafrf, Peter: Europäische Wirschaftsgemeinschaft und Deusche Demo-kratische Republik. Thübingen 1973

Ders.: Die Bedeutung des innerdeutschen Handels für die Beziehungen der EWG zur DDR. in: Deutschland-Archiv 3/1974. p 260ff

4. 7. 동독의 외화획득사업과 내독관계

Volze, Armin: Die Devisengeschäfte der DDR. Genex und Intershop in: Deutschland-Archiv 11/1992 pp 1145-1159

4. 8. 내독 간 물품거래시 유의사항

Frydecky, Herbert: Ratgeber für den innerdeutschen Handel. Stuttgart 1972. pp. 101-107

4. 10. 내독 간 경제협력의 제유형과 절차

Deitschland Archiv Dokumentation: "Erklärung von Franz Josef Strauss" in: Detuschland_Archiv 8/1983 pp. 889-891

Homann, Fritz/Siegfried Rauh: Innerdeutscher Handel: Form der betrieb-lichen Zusammenarbeit und ihre Behandlung des Rechts des inner-deutschen Handels. Deutsche Industrie- nd Gandelskammer. Bonn???? pp. 14-25

Mittag, Günter: Um jeden Preis. Berlin Weimar 1991. pp. 82-87

Ploetz, Peter/Klaus Bolz: Westhandel der DDR. Hamburg 1987. pp 258-276

Schmidt, Paul-Günther: Internationale Währungspolitik im sozialisti-schen Staat. Stuttgart 1985. pp 254-278

Spittmann, Ilse: Der Milliardenkredit. in: Deuschland-Archiv 8/1983 pp. 785-788

5. 우편 · 통신 교류

"Ausfuhr von Erbschaften aus (in) der (die) DDR" Bonn 1988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Auskünfte A-Z zum Stand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 Bonn 1978. p. 57ff

Der Spiegel: Nr. 91/1976 pp 36-39

Gesamtdeutsches Institut(Hrsg.):Hinweis für Geschenksendungen in die DDR und nach Berlin(Ost) Bonn 1989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Hrsg.):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64. 1969. 1971. 1974

Roth, Margit: Zwei Staaten in Deutschland. Die sozialliberale Deutschland. Opladen 1981. pp 129-143

Ders.: Zweistaaten in Deutschland. Opladen 1981 pp 129-143

Schneider. Beate: Konflikt, Krise und Kommunikation. Eine quantitative Analyse innerdeutscher Politik. München 1976

6. 비상업적 지불교류 및 청산교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Hrsg.): Merkblatt: Erste vereinbarung mit der DDR zur Regelung des nichtkommerziellen Zahlungs- und Ver-rechnungsverkehrs. Bonn 1974

Ders.: Bürger-Service Band 15: Vereinbarung mit der DDR zur Regelung des nichtkommerziellen Zahlungs- und Verrechungsverkehrs. Bonn 1979

Der Spiegel: Nr. 29/1978

Gesamtdeusches Institut (Hrsg.): merkblatt 6, 24: Verfügung von Per-sonen mit Wohnsitz ausserhalb der DDR, Bankguthaben von DDR- Bewohnern im Bundesgebiet und in Berlin(West). Bonn 1989

Ders.: Merkblatt 5: Ausfuhr von Umzugsgut aus der DDR. Bonn 1989.

Ders.: Merkblatt : Einfuhr von Erbschaftsgut in die (aus der) DDR. Bonn 1988.

Desr.: Merkblatt für Besucher aus der DDR und aus Berlin(Ost). Bonn 1988

Ders.: Merkblatt 18,19 : überführung der sterblichen überreste von Bewohnern der DDR (BRD) in (aus) der DDR (BRD) Bonn 1988

Ders.: Merkblatt : Bankguthaben von DDR-Bewohnern im Bundesgebiet und in Berlin(West) Bonn 1989

Deutsche Bundesbank(Hrsg.): Mitteilung com 25.9.1978 Nr. 6003/78

Fridecky, Herbert:Ratgeber für den innerdeutschen Gandel. Stuttgart 1972 pp 133-145

Roth, Margit: Zwei Staaten in Deutschland. Die sozialliberale Deutschland-politik und ihre Auswirkungen 1969-1978 Opladen 1981

pp 1-266

Ders,: Zweistaaten in Deutschland. Opladen 1981. pp. 165-172

7. 학술 · 과학 · 기술분야

Anweiler, Oskar: Innerdeutsche Beziehungen im Ber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in: Vergl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BRD/DDR. 1990 pp 671-675

Gytmann, Gernot/Mampel, Siegfred(Hrsg.): Wissenschaft und Forschung im geteilten Deutschland. Berlin 1988. pp 53-67

Institut für Gesellschaft und Wissenschaft(Hrsg.): Das WTZ-Abkomen Erlangen 1989

Lauterbach, Günter: Zusammenarbeit in Wissenschaft und Technik zwichen Bonn und Ost-Berlin. in; Deutschland-Archiv 4/1989 pp 434 ff

Roth, Margit: Zwei Staaten in Deutschlan. Die sozialliberale Deutshland-politik und ihre Auswirkungen 1969-1978 Opladen 1981 pp.107-109

Seidelmann, Reimund: Vorschläge zur Verbesserung der Ost-West-Wissenschaftskooperation. in: Deutschland-Archiv 3/1983 p. 252ff

8. 환경분야

Berg, v. M.: Zum Umweltschutz in Deutschland. in: Deutschland-Archiv ?/1984, Köln 1984 pp. 374-383

Ders.:Umweltschutz om Deitscj;amd/ Zisa,,emarbeot zwo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Geographische Rundschau 39 (1987) H. 11 pp. 606-609

Binus, H.:Neues Umweltbewusstsein - Ende der Marktwirtschaft ? in: Energie-Umwelt-Ernährung. Politische studien. Sonderheft 1/1980 München 1980. pp 85-104

Brunnengräber, R.:Deutschlane - Das andere Geographie-Buch. München 1982 pp63-70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DDR-Handbuch, Bd. 2. Köln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Hrsg.): Umweltpolitik. Bilanz des Bundesminister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Bonn 1987

Ders.: Innerd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 zwie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1986 Eine Dokumentation. Bonn 1986

De bardeleben, J.: Umweltschutz versus Wirtschaftswachstum. Aus der Sicht der DDr und UdSSR. Deutsche Studien. Heft 90. Lüneberg 1985 pp. 109-130

Dick, A.: Umwelt und Energie - Ein Problem verbund. in: Energie-Umwelt-Ernährung. Politische Studien. Sondereft 1/1980 München 1980 pp 5-12

Füllenbach, J.: Umweltschutz zwischen Ost und West. Umweltpolitik in Osteuropa und gesamteuropäische Zusammenarbeit. Schriften des For-scjungsinstituts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Auswärtige Politik Bonn 1977

Haenke-Hoppe/Merkel, K.(Hrsg.): Umweltschutz in beiden Teilen Deutschlands. Jahrbuch 1985. in:Gesellschaft für Deutschlandforschung Band 14. Berlin 1986.

Jegendorf,L/Geierhos, W.: "In aller Stille rieselt der Russ aus meine Poren" - Interpretationen und Materialien zur Umweltlylik aus der DDR. Deutsche Studien. Heft 90. Lüneburg 1985. S. 131-153

Lambrecht, Horst/Schwartau, Cord: Förderung des innerdeutschen Handels durch Sonderprogramme. "Umweltschutz durch Modernisierung." in: Deutschland-Archiv 6.1987 p 600ff

Mallinckrodt, Anita M.: Umweltdialog in der DDR. Literatur in ihrem soziopolitischen Zusammenhang. Ein forschungskonzept. in: Deutschland-Archiv 7.1987 p 708 ff

Prittwitz, V.: Die Luft hat keine Grenzne - Das Problem der witräumigen Luftverschmutzung. in: Die Luft hat keine Grenzen - Fakten und Trends. Frankfurt/M. 1986 S 61-67

Pritzel, Konstantin:Die Umweltpolitik in den intereutopäischen und innerdeutschen Beziehungen. in: Deutschland-Archiv 8/1980. p 834ff

Stinglwagner, W.:Energiewirtschaft in der DDR. GR 39(19987) H.11 S. 635-641

9. 보건분야

Assmann, Wolfgang/ohannes Posth: Das Gesundheitsabkommen mit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3/1976 pp 266-282

Bundesdrucksache 245/78: Allgemeine Verwaltungsschrift über medizinische Hilfe für Einreisende aus der DDR und Berlin(Ost)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Jahresbericht 1989. Bonn 1989. p25

Casten, Werner: Die Ständige Vertretungen in Bonn und Ost-Berlin. Bonn 1987. pp 71-72

Gesamtdeutsches Institut(Hrsg.):Merkblatt 26: Versand von Arzeimit-teln in die DDR und nach Berlin(Ost) Bpnn 1987 S 71-72

Roth, Margit: Zweistaaten in Deutschlane. Opladen 1981. pp 157-158

10. 문화분야

Ackermann, Mafred: Die Kulturbeziehungen seit Abschluss des Kulurtabkommens. in: Maria Händcke-Hoppe: 40 Jahre Innerdeutsche Bezie-hungen. Berlin 1989. pp. 141-152

Ders: Die wissenschaftliche Zusammenarbeit mit der DDR im Rahmen des Kulturabkommens. in: IGW-Report. Heft 4/1989 Erlangen 1989 pp 11-18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n Beziehungen(Hrsh.): Das Kulturabkommen. Bonn 1990

Gesamtdeutsches Institut(Hrsg.): merkblatt 21: Ausfuhr von Kunstwerken

Dokumenten und Antiquitäten (“Kulturgut”) aus der DDR. Bonn 1989

Gransow, Volker: Kulturpo:itik in der DDR. Berlin 1975

Jäger, Manfred: Kultur und Politik in der DDR. Köln 1982

Lieser-Triebnigg/Mampel (Hrsg.): Kultur im geteilten Deutschland. Jahrbuch 1983. in: Gesekkschaft für Deutschlandforschung. Band 9. Berlin 1984

Murawski, Klaus-Eberhard: Die Kulturbeziehungen zwischen der BRD und DDR. in: Erika Lieser-Triebnigg(Hrsg.): Kultur im geteilten

Deutschland. Berlin 1984 pp 45-58

Ders. : Das kulturabkommen -Entwicklung, Ziele, Praxis. pp. 88-90

Roth, Margit: Zwei Staaten in Deutschland. Die sozialliberale Deutschlandpolitik und ihre Auswirkungen 1969-1978. Opladen 1981 pp. 143-158

Seiffert, Wolfgang: Die zwei Gesichter des Kulturabkommens mit der DDR. in: Deutschland-Archiv 11/1986. p 1165ff

Zuchold, Gerd-H.: Das Kulturabkommen in der Berliner Realität. in: Deutschland-Archiv 3/1987. p 268ff

11. 청소년 교류

Beyme, Klaus von: Attitudes of German Youth toward relations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in: West Germany, East Germant and the german question. 1986 pp 33-43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Richtlinien für die Förderung innerdeutscher Informations- und Begegnungsfahrten von Schülern, Jugendlichen und Studenten. Bonn

Bunjes, Ulrich: Normalität stellt sich nur langsam ein. Zur Entwick-lung des deutsch-deutschen Jugendaustauschs. in: Ausserschulische Bildung. 1989. pp. 227-230

Deutscher Bundesjugendring(Hrsg.): Die unbekannten Nachbarn - deutsch-deutscher Jugendaustausch. in: Juhresbericht von Schüler-. Jugend- und studentengruppenreisen in die DDR und nach Berlin(Ost). Bonn 1984-1989

Helwig, Gisela: Jugendaustausch zwischen beiden deuten Staaten. in: Deutschland-Archiv 8/1984 p 804 ff

Hülsmann, Martin: Drüben bei uns. Eine Begegnung mit der DDR. Würzburg 1986

Kiersch, Gerhard: Die jungen Deutschen. Erben von Gpetje und Au-schwitz. Opladen 1986

Müller, Werner: Bon der “Völkerverständigung” zum “interkulturellen Lernen.” Die Entwicklung des Internationalen Jugendaustausches

Starnberg 1987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Hrsg.): Dokumentatopm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Bonn 1989. S. 195-197

Sauerhöfer, Werner: Die Jugend - Verbandskontakte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in: Kein Alter zum Ausruhen. Bonn S. 151-166

Schneider, E./Siebert, B.: Die bundis kommen ! Jugend erlebt die DDR. Eine Handreichung für Schülerreisen in den anderen Teil Deutsch-lands. in: Ein anderes Deutschladn. Bonn 1988 pp 1-196

Weinacht, Paul-Ludwig(Hrsg.): Mit offenen Augen in dei DDR. Anregungen für Klassenfagrten. München 1986

12. 스포츠 교류

Führungs- und Verwaltungsakademie Berlin des DSB(Hrsh.): Sport im geteilten Deutschland I bis IV. Berlin 1981

Knecht, Willi: Die geteilte Arena.. Nürnberg 1968. pp 1-98

Ders.: Die ungleichen Brüder. Fakten, Thesen und Kommentare zu den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Mainz 1971. pp 1-143

Ders: Wege nach Olympia - Entwicklungen des Sports in Deutschland Dortmund 1980

Ders.: Der Boykott. Moskaus missbrauchte Olympiade. Köln 1980

Ders.: "DDR"-Fahnen an bundesdeutschen Masten, in: Deutschland-Archiv 4/1969 pp 438-443

Ders.:Das V. Deutsche Turn- und Sportfest in Leipzig. in: Deurschland-Archiv 6/1969 pp 658-886

Ders.: München 1972-Modell für eine olympishe Erpressung. in: Deutschland-Archiv 11/1969.p 1221ff

Ders: Innerdeutscher Sportverkehr-Aktion gebremster Schaum. in: Deutschland-Archiv 6/1970 pp 662-667

Ders : Innerdeutsche Sportgespräche. inL Deutschland-Archiv 8/1970 pp 867-872

Ders:Gerüstet für Olympia - Der DDR-Sport auf dem Weg nach München I&II in:Deutschland-Archiv 2/1972 p. 46ff & 186ff

Ders.: Beginn des duetschen Sportverkehrs. in: Deutschland-Archiv 6/1974 p568fff

Ders.:DTSB/DSB. Auf ungleichen Wegen in die Zukunft. in: Deutschland-Archiv 7/1974 p 725 ff

Krebs, Hans-Dieter: Deutsch-Deutscher Sportverkehr zwischen Ungenügen

Krebs, Hans-Dieter: Deusch-deutscher Sportverkehr zwischen Ungenügen und Hoffnung. in: Deutschland.. in: Deutschland-Archiv 2/1986 p. 340ff

Kutz, Wilhelm/Thieme, Frank: Die Sportsoziologie der DDR als Beispiel für den "Trivialisierungsprozess" in der Wissenschaf. in: Deutsch-land-Archiv 11/1989 p 1276ff

Pabst, Ulrich: Sport-Medium der Politik? Der Neuaufbau des Sports in Deutschland nach dem zwischen Weltkrieg und ... Berlin 1980

Winkler, Hans-Joachim: Sport und politische Bildung. Modellfall Olym-pia. Opladen 1972

13. 방송 · 언론분야

Boehme, Erich: Deutsch-deutsche Pressefreiheit. Hamburg 1978. S. 14-37

Döschner, Jürgen: Zehn Jahre bundesdutsche Korrespondenten in der DDR. Eine Zwischenbilanz. in: Deutschland-Arthiv 8/1984 p. 859ff

Fastenrath, Ulrich: Völkerrechtliche Beurteilung der neyen DDR-Bestim-mung für Journalisten - Zum unterschiedlichen Verständnis. in: Deutschland-Archiv 11/1979. p 1174ff

Goss, Anthony John: Die Darstellung des deutsch-deutschen Verhältnis-ses in der Fernsehberichterstattung beider deutscher Staaten. in: Deutschland-Archiv 4/1980 p 403ff

Hesse, Kurt R.: Westmedien in der DDR. Nutzung. image und Auswirkun-gen

bundesrepublikanischen Hörfunks und Fernsehen. in: Bibliothek Wis-sen-schaft und Politik. Bd. 42. Köln 1988

Ders.:Nutzung und Image des "Westfernsehens" bei DDR-übersiedlern. in: Media Perspektive 4/1986. Frankfurt/M. 1986. S. 2650272

Krause, Joachim: Arbeitsbedingeungen für Journalisten nach der KSZE. in: Jost Delbrück/Nobert Ropers(Hrsg.): Grünbuch zu den Folge-wirkungen der KSZE. Köln 1977. S. 411-428

Noelle-Neumann, Elisabeth/Wilke, Jürgen(Hrsg.): Publizistik und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M. 1989. S. 84-98&156-168

Pfennig, Werner: The Role of Media in Divided Nations: Ways to Utillize Media to Overcome Division. The German Experience. Hong Kong???

Picaper, Jean Paul : Westliche Korrespondenten in der DDR. in: Deutsch-

land-Archiv 12/1974 p 1285ff

Roth, Margit: Zwei Staaten in Deutschland. Opladen 1981. S. 180-184

Spittmann, Ilse: Die neue Journalistenverordnung - Honecker beteuert Vertragstreue. in: Deutschland-Archiv 3/1972 p. 228ff

Wild, Christoph: Fernseh- und Hörfunknutzung in der DDR im Frühjahr 1990. in: Media Perspektiven 9/1990 Frankfurt/M. 1990. S. 558-572

14. 도시 간 자매결연

Burgmeier. Inge Maria: Städtepartnerschaften als neuses Elmenet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 Forschungsinstitut der Dutschen Gesell-schaft für Auswärtige Politik. Bonn 1989 p 1-174

Hoesch, Jan: Drei Jahre kommunale Partnerschaften mit der DDR. in: Deutschland-Archiv 1/1989. p, 37ff

Lanfer, Hans-Günter: Begrenzte Bürgerkontakte. Erfahrungen mit der Städtepartnerschaft Trier/Weimar. in: Deutschland-Archiv 1/1989 p. 51 ff

Palow, Nicole-Annette: Innerdeutsche Städtepartnerschanften. Berlin 1990.p 1-152

Probsr, Lothar: Ein Jahr Partnerschaft Bremen/Rostock. in: Deutsch-land-Archiv 1/1989. p45ff.

15. 종교 · 교회분야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DDR-Handbuch. Bd. 1 pp. 715-728

Dähn, Horst: Konfrontation oder Kooperation - Das Verhältnis von Staat und Kirche in der SBZ/DDR 1945-1980. Opladen 1982

Helwig, Giesela(Hrsg.): Kirchen und Gesellschaft in beiden deutschen Staaten. Köln 1982. pp. 7-92& pp. 203-209

Volze, Armin: Kirchliche Transferleistungen in dei DDR. in: Deutschland-Archiv 1/1991. pp 59-72

Zander, Helmut: Zur Rolle der Kirchen in den Friedensbewegungen der beidun deutschen Staaten. Ein Vergleich für die Jahre 1978-1983(unveröffentlichte Staatsexamensarbeit). Bonn 1984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인 쇄 일 2015년 4월
발 행 일 2015년 4월
발 행 처 통일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전 화 02-2100-5757 팩스 02-2100-5759
편집 · 인쇄 케이앤케이컴 070-4090-8421